

大韓民國選舉史

第5輯 (1988. 2. 25~1993. 2. 2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858-090015-14

大韓民國選舉史

第5輯 (1988. 2. 25~1993. 2. 2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발 간 사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된 지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미루어진 『대한민국선거사』 발간사업을 재개하여 제4, 5, 6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선거사는 통계와 사료(史料) 중심이었던 이전의 『대한민국선거사』와는 체제와 내용을 달리하였습니다. 매년 선거가 끝난 후 통계 중심의 선거총람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선거의 전 과정을 역동성 있게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선거제도의 변화,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전략, 선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진솔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교훈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선거사가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문화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선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선거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역사 기술의 객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거관리기관으로서 선거사 기술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검찰청·국가기록원 등 다른 기관의 자료도 수집·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근·현대 역사서와 신문·연감·정치인의 자서전 등도 참고하는 등 객관적 기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 수집의 한계와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하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역사 기술에 있어서 완벽하게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선거사』 발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애써 주신 편찬위원회 위원과 편찬실무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 승 태

이봉능

일 러 두 기

1. 『대한민국선거사 제5집』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기인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실시된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이나 변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이나 이후의 내용도 기술하였다.
2. 『대한민국선거사 제5집』의 체제는 본문(6장)과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본문 제1장(개관)에서는 수록대상 5개 선거의 실시 배경과 특징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제2장부터 제6장까지는 1개 선거를 1개 장으로 분류하고, 내용은 ‘장·절·1·가·1’ 순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3. 본문 각 장의 하부 목차인 절은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하였다. 즉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선거제도, 후보자 추천과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공명선거활동, 선거법위반 행위, 선거결과,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 9개 주제로 통일하였다.
4. 본문 각 절의 하부 목차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그 절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통일하였다. 다만,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은 당시 선거 또는 정당과 관련된 주요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의 관심을 모은 사회적 사건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특화하여 구성하였다.
5. 부록은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의 실시상황과 주요 통계, 『대한민국선거사 제5집』에 수록 대상인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후보자 득표상황, 연표, 참고문헌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6. 서술방법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과 인명은

한자 또는 영어 등을 같이 표기하였다. 정당의 명칭은 약칭을 표기할 경우 시대에 따라 같은 명칭이 많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정식 명칭을 표기하였다. 법률과 규칙(폐지된 것 포함)의 명칭은 「」안에 표기하였다.

7. 각종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가 큰 금액은 읽기 쉽도록 ‘○○억 ○,○○○만 ○○원’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만 표기하였다.
8. 각주는 기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였고, 자료 출처는 부록 참고문헌에 일괄 표시하였다. 각주와 참고문헌은 ‘편저자, 발간연도, 문헌의 제목, (문헌의 출처), 출판사, 쪽수’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헌이 단행본일 경우는 문헌 제목을 『』안에 표기하였고, 논문 등일 경우는 “ ”안에 표기하되 그 출처를 함께 표기하였다.
9. 이 책에 게재된 사진은 우리 위원회가 직접 촬영한 것도 있지만 국가기록원과 언론사 등에서 제공한 것도 있다.

大韓民國 選舉史

목차

제 1 장 | 개 관

제 2 장 |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35
1.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	36
2.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시기 논란	37
3. 야권통합 활동과 실패	38
4.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	41
제2절 선거제도	43
1. 선거법 개정	43
가. 개정경위 / 43	
나. 선거법 개정 주요쟁점 / 45	
1) 선거구제 / 45	
2) 전국구의석 배분방식 / 47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48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 48	
나. 선거구와 의원정수 / 48	
다. 선거인명부 / 49	
라. 후보자 등록 / 49	

마. 선거운동 / 49	
바. 선거비용 / 50	
사. 투표 / 50	
아. 개표 / 52	
자. 당선인 결정 / 52	
차. 기타 사항 / 52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54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54
가. 민주정의당 / 54	
나. 통일민주당 / 56	
다. 평화민주당 / 57	
라. 신민주공화당 / 58	
마. 기타 정당 / 59	
2. 후보자 등록	60
가. 후보자등록 상황 / 60	
1) 지역구후보자 / 61	
2) 전국구후보자 / 63	
나.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 / 65	
다. 후보자등록관련 사건 · 사고 / 65	
3. 기탁금	66
가. 기탁금 납입 및 반환 / 66	
나. 기탁금 위헌심판 / 69	
제4절 선거운동	72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72
가. 민주정의당 / 72	
나. 통일민주당 / 75	
다. 평화민주당 / 78	
라. 신민주공화당 / 80	
마. 기타 정당 / 82	
2. 선거운동	83

가. 선전벽보 / 84	
나. 선거공보 / 86	
다. 합동연설회 / 89	
라. 기타 선거운동 / 91	
3. 선거쟁점	92
가. 안정론과 견제론 / 93	
나. 제1야당 경쟁 / 94	
다. 권력형 비리사건 / 95	
제5절 선거비용	97
1. 선거비용제한액	97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 97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 98	
2. 선거비용지출	99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 99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 100	
제6절 공명선거활동	101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101
가. 언론매체 이용 / 101	
나. 인쇄물 이용 / 103	
다. 시설물 이용 등 / 104	
2. 정부의 공명선거 활동	105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106
1.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106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 106	
나. 검찰의 단속활동 / 107	
다. 경찰의 단속활동 / 107	
2. 위반행위 발생상황	108
3. 주요 위반사례	109
가. 돈 봉투 우편발송 사건 / 109	
나. 금품제공 사례 / 110	

다. 후보자 비방 사례 / 110

제8절 선거결과111

1. 선거인.....111

2. 투 표.....113

가. 투표상황 / 113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 114

1) 투표통지표 관련 사례 / 114

2) 투표용지가인 착오 / 115

3) 선거인명부 대조 착오 / 116

4) 투표소에서 커피제공 사례 / 116

5) 투표지 공개 / 116

6) 대리투표 / 117

3. 개 표.....117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자 / 118

1) 민주정의당 / 119

2) 평화민주당 / 120

3) 통일민주당 / 121

4) 신민주공화당 / 122

5) 기타정당 및 무소속 / 122

나. 기타 개표결과 현황 / 124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 125

1) 투표구간사 납치 및 투표관계서류 탈취 / 125

2) 투표함 운송방해 / 126

3) 우편투표 소인누락 / 126

4) 개표진행 방해 / 126

5) 투표자수 집계착오 등 / 127

6) 부재자 우편투표봉투 소각 / 127

7) 개표결과 사전방송 / 129

4. 선거소송130

가. 선거소송 제기 / 130

나. 선거소송 결과 / 131

- 1) 동해시선거구 선거무효 사건 / 132
- 2) 영등포구을선거구 선거무효 사건 / 133
- 5. 선거결과 특징137
 - 가. 여소야대 국회 / 137
 - 나. 지역주의 투표성향 재현 / 139
 - 다. 득표율과 의석비율 불일치 / 141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142

- 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142
- 2.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143
 - 가. 1989. 4. 14 동해시재선거 / 143
 - 1) 재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 144
 - 2) 선거양상 / 145
 - 3) 후보자 매수 사건 / 146
 -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시작 / 147
 - 5) 선거결과 / 149
 - 나. 1989. 8. 18 영등포구을재선거 / 149
 - 1) 재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 150
 - 2) 선거양상 / 151
 - 3)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 152
 - 4) 선거결과 / 153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퇴 / 154
 - 다. 1990. 4. 3 대구 서구갑보궐선거 / 154
 - 1) 보궐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 154
 - 2) 선거양상 / 156
 - 3) 선거결과 / 158
 - 라. 1990. 4. 3 진천군·음성군보궐선거 / 158
 - 마. 1990. 11. 9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 / 160
 - 1) 보궐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 160
 - 2) 선거양상 / 161
 - 3) 선거결과 / 163

제 3 장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67
1. 국회 5공비리 청문회	167
2.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	169
3. 3당 합당과 민주자유당 창당	170
4. 민주당 창당	172
5.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단식투쟁	173
6. 민주자유당의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파문	173
7. 수서사건	174
8. 지방자치제 부활	176
가. 지방자치제 역사 / 176	
나. 지방자치제 부활 / 179	
제2절 선거제도	182
1. 선거법 제·개정	182
2. 선거법 주요 내용	183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 184	
나. 선거구와 의원정수 / 184	
다. 후보자등록 / 185	
라. 선거운동 / 185	
마. 투 표 / 186	
바. 개 표 / 186	
사. 당선인 결정 / 187	
제3절 후보자등록	188
1. 후보자 등록상황	188
2.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사망	191
3. 기탁금	191
제4절 선거운동	193
1. 각 당의 선거전략	193

가. 민주자유당 / 193	
나. 평화민주당 / 194	
다. 민주당 / 195	
2. 선거운동	196
가. 선전벽보 / 196	
나. 선거공보 / 198	
다. 소형인쇄물 / 200	
라. 합동연설회 / 201	
마. 현수막 / 202	
3. 선거쟁점	203
가. 수서사건 규탄집회의 위법성 논란 / 203	
나. 정부의 선심성 정책발표 논란 / 205	
다. 후보사퇴 공방 / 206	
제5절 선거비용	209
1. 선거비용제한액	209
2. 선거비용 지출	210
3. 선거비용지출 확인	211
제6절 공명선거활동	212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212
가. 언론매체 이용 / 212	
나. 인쇄물 이용 / 214	
다. 시설물 이용 / 216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217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활동	218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221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221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 221	
나. 검찰의 단속활동 / 223	
다. 경찰의 단속활동 / 224	
2. 위반행위 발생상황	224

- 3. 주요 위반사례225
 - 가. 불법유인물 배포 / 225
 - 나. 허위사실 공표 / 226
 - 다. 금품제공 / 226
 - 라. 호별방문 / 226
- 제8절 선거결과227**
 - 1. 선거인227
 - 2. 투 표229
 - 가. 투표상황 / 229
 -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 230
 - 1) 투표구위원장 사인날인 누락 및 착오 / 230
 - 2) 대리투표 / 231
 - 3) 투표함 운반차량 교통사고 / 231
 - 3. 개 표231
 - 가. 개표상황 / 232
 -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 234
 - 4. 선거쟁송234
 - 가. 선거소청 / 235
 - 나. 선거소송 / 235
 - 5. 선거결과 특징237
-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238**

제 4 장 | 시·도의회의원선거

-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241**
 - 1. 야권통합 실패241
 - 2. ‘평화민주당’ 을 ‘신민주연합당’ 으로 당명 변경.....242
 - 3. 강경대 학생 사망사건244
 - 4. 개혁입법 변칙처리246

제2절 선거제도	248
1. 선거법 개정	248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249
가. 선거구와 의원정수 / 250	
나. 후보자 등록 / 251	
다. 선거운동 / 251	
라. 투표 / 252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254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254
가. 민주자유당 / 254	
나. 신민주연합당 / 255	
다. 민주당 / 256	
라. 기타 정당 / 257	
2. 후보자 등록	257
가. 후보자 등록상황 / 258	
나.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 / 260	
3. 기탁금	261
제4절 선거운동	262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262
가. 민주자유당 / 262	
나. 신민주연합당 / 264	
다. 민주당 / 265	
라. 기타 정당 / 266	
2. 선거운동	267
가. 선전벽보 / 267	
나. 선거공보 / 269	
다. 소형인쇄물 / 271	
라. 합동연설회 / 273	
마. 현수막 / 275	
3. 선거쟁점	275

가.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 폭행사건 / 275	
나. 3당 합당의 정당성 · 부당성 공방 / 278	
다. 내각제 개헌 논란 / 278	
라. 지역감정 논란 / 280	
제5절 선거비용	281
1. 선거비용제한액	281
2. 선거비용 지출	282
3. 선거비용지출 실사	282
제6절 공명선거활동	284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284
가. 언론매체 이용 / 284	
나. 인쇄물 이용 / 285	
다. 시설물 이용 / 286	
라. 기타 공명선거활동 / 286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288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288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290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290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 290	
나. 검찰의 단속활동 / 291	
다. 경찰의 단속활동 / 292	
2. 위반행위 발생상황	292
3. 주요 위반사례	293
가. 불법유인물 배포 / 293	
나. 금품제공 / 293	
다. 불법당원단합대회 / 294	
제8절 선거결과	295
1. 선거인	295
2. 투 표	296

- 가. 투표상황 / 296
-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 297
 - 1)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 / 297
 - 2) 투표함에 담뱃불 투입사건 등 / 298
 - 3) 투표함 회송차량 교통사고 등 / 298
- 3. 개 표299
 -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인 / 300
 -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 303
 - 1) 투표함 열쇠 등의 미봉인 / 303
 - 2) 일부 투표함의 회송 누락 / 304
 - 3) 투표지 분류 착오 / 304
- 4. 선거쟁송304
 - 가. 선거소청 제기 및 처리결과 / 305
 - 나. 선거소송 제기 및 처리결과 / 305
- 5. 선거결과 특징306
 - 가. 여당의 시·도의회 장악 / 307
 - 나.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 투표성향 표출 / 308
 - 다. 낮은 투표율 / 309
-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311

제 5 장 | 제14대 국회의원선거

-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315
 - 1.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민주당’ 으로 신설합당316
 - 2. 통일국민당 창당318
 - 3.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320
- 제2절 선거제도323
 - 1. 선거법 개정경위323
 - 가. 개정경위 / 323

나. 선거법개정 주요쟁점 / 325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327
가. 선거구와 의원정수 / 327	
나. 선거인명부 / 328	
다. 후보자 등록 / 328	
라. 선거운동 / 329	
마. 선거비용 / 330	
바. 투표 및 개표 / 330	
사. 당선인 결정 / 330	
아. 기타사항 / 331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333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333
가. 민주자유당 / 333	
나. 민주당 / 335	
다. 통일국민당 / 338	
라. 기타 정당 / 339	
2. 후보자 등록	340
가. 후보자 등록 상황 / 340	
1) 지역구후보자 / 340	
2) 전국구후보자 / 342	
나. 등록무효 및 후보 사퇴 / 343	
3. 기탁금	343
제4절 선거운동	345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345
가. 민주자유당 / 345	
나. 민주당 / 348	
다. 통일국민당 / 350	
라. 기타 정당 / 352	
2. 선거운동	353
가. 선전벽보 / 353	

나. 선거공보 / 355	
다. 소형인쇄물 / 356	
라. 합동연설회 / 358	
마. 정당연설회 및 무소속후보자 연설회 / 360	
바. 기타 선거운동 / 361	
3. 선거쟁점	362
가. ‘3당 합당’에 대한 공방 / 362	
나. 안정론·견제론과 경제문제 / 363	
다.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선거개입사건 / 364	
라. 군부재자 부정투표 논란 / 366	
마. 한맥청년회 불법동원 사건 / 367	
바. 정주영 대표의 후보자격 논란 / 368	
사. 기타 쟁점 / 369	
제5절 선거비용	371
1. 선거비용제한액	371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 371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 372	
다. 정당의 소형인쇄물 및 연설회비용 제한액 / 373	
2. 선거비용 지출	373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 373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 374	
3. 선거비용지출 실사 / 374	
제6절 공명선거활동	375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375
가. 언론매체 이용 / 375	
나. 인쇄물 이용 / 377	
다. 시설물 이용 / 378	
라. 기타 공명선거 활동 / 379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379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380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383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383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 383	
나. 검찰의 단속활동 / 384	
다. 경찰의 단속활동 / 385	
2. 위반행위 발생상황	385
3. 주요 위반사례	387
가. 금품·음식물 제공 / 387	
나. 불법선전물 등 배부 / 388	
다. 기타 위법사례 / 388	
 제8절 선거결과	 390
1. 선거인	390
2. 투 표	391
가. 투표상황 / 391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 392	
1) 동일필적 우편투표 / 392	
2) 대리투표 / 393	
3) 투표구위원장 사인 미달인 / 393	
4) 투표사무원 폭행 / 393	
3. 개 표	393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인 / 394	
1) 민주자유당 / 394	
2) 민주당 / 396	
3) 통일국민당 / 396	
4) 기타 정당 및 무소속 / 397	
나. 기타 개표결과 상황 / 399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 399	
1) 부재자투표함 개표 방해 / 399	
2) 개표결과 불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점거·농성 / 400	
3) 무더기표 / 400	
4. 선거소송	401

- 가. 선거소송 제기상황 / 401
- 나. 선거소송 처리결과 / 401
- 5. 선거결과 특징407
 - 가. 여소야대 재현 / 407
 - 나. 지역주의 투표성향 고착화 / 408
- 제9절 보궐선거410**
 - 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410
 - 2.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413
 - 가. 1993. 4. 23 국회의원보궐선거 / 414
 - 1) 후보자공천과 입후보 상황 / 415
 -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 415
 - 3) 선거결과 / 416
 - 나. 1993. 6. 11 국회의원보궐선거 / 417
 - 1) 후보자공천과 입후보 상황 / 417
 -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 418
 - 3) 선거결과 / 419
 - 다. 1993. 8. 12 국회의원보궐선거 / 420
 - 1) 후보자공천과 입후보 상황 / 420
 -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 421
 - 3) 선거결과 / 422
 - 라. 1994. 8. 2 국회의원보궐선거 / 423
 - 1) 후보자공천과 입후보 상황 / 423
 -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 424
 - 3) 선거결과 / 425

제 6 장 | 제14대 대통령선거 

-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429**
 - 1. 제14대 국회 원(院) 구성 지연429

2.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양심선언	432
3. 중립내각 구성	435
제2절 선거제도	437
1. 선거법 개정경위	437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439
가. 선거인명부 / 439	
나. 후보자 등록 / 440	
다. 선거운동 / 441	
라. 선거비용 / 441	
마. 투 표 / 442	
바. 개 표 / 442	
사. 기타 주요 개정내용 / 442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444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444
가. 민주자유당 / 444	
나. 민주당 / 447	
다. 통일국민당 / 449	
라. 기타 정당 / 450	
2. 후보자등록	451
가. 등록상황 / 451	
나. 후보 사퇴 / 454	
3. 기탁금	454
제4절 선거운동	457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457
가. 민주자유당 / 457	
나. 민주당 / 459	
다. 통일국민당 / 461	
라. 기타 정당 / 462	
2. 선거운동	463
가. 선전벽보 / 464	

나. 소형인쇄물 및 정견·정책집 / 465	
다. 방송연설 / 468	
라. 방송광고 / 471	
마. 신문광고 / 472	
바. 연설회 / 474	
사. 기타 선거운동 / 480	
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 482	
3. 선거쟁점	484
가. 금권·관권선거 논란 / 484	
나. 부산 초원복집 사건 / 486	
다. 간첩단 사건과 사상논쟁 / 488	
라. 박태준 의원의 통일국민당 입당설 논란 / 491	
제5절 선거비용	494
1. 선거비용제한액	494
2. 선거비용 지출	495
3. 선거비용지출 실사	496
제6절 공명선거활동	497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497
가. 언론매체 이용 / 497	
나. 인쇄물 이용 / 499	
다. 시설물 이용 / 500	
라. 기타 공명선거활동 / 501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502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503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504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504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 504	
나. 검찰의 단속활동 / 506	
다. 경찰의 단속활동 / 507	
2. 위반행위 발생상황	507

3. 주요 위반사례	508
가. 서산 간척지 등 선심관광 / 508	
나. 금품제공 / 509	
다. 신문·방송 부정이용 / 509	
라.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509	
마.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 510	
제8절 선거결과	511
1. 선거인	511
2. 투 표	513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 513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 515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 517	
1) 선거인명부 대조 착오 / 517	
2) 대리투표 / 517	
3) 투표마감시각 경과 후 투표요구 / 518	
4) 침수로 인한 투표용지 훼손 / 518	
5) 투표개시 지연 / 518	
3. 개 표	519
가. 후보자별 득표상황 / 519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 522	
1) 잔여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개표중단 / 522	
2) 유효투표집계전 첩부 착오로 인한 개표중단 / 522	
3) 참관인이 아닌 자의 개표참관 / 523	
4. 선거소송	523
5. 선거결과 특징	524
가. 지역주의 투표성향 / 524	
나. 낙선한 후보자들의 선거결과 승복 / 526	

부록



- 1.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상황.....531
- 2.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통계537
- 4.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541
- 4.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604
- 5. 연 표667
- 6. 참고문헌672

大韓民國

選舉史

1 장 개관



개 관

『대한민국선거사 제5집』은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의 집권기에 실시된 각종 선거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5년간이었다. 이 기간에 대통령선거 1회, 국회의원선거 2회, 시·도의회의원선거 1회,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회 등 총 5회의 전국적인 선거가 실시되었다. 또한 5곳의 국회의원선거구, 13곳의 시·도의회의원선거구, 48곳의 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등 총 66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스스로 민선대통령이라고 하였듯이, 유신시절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제5공화국 시절의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요식행위에 불과한 형식적인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것과 달리,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기간 중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하여 지방의회의원을 지역주민이 직접선거로 뽑게 되면서 선거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의 집권기간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선거를 통해서만 부여된다는 선거본연의 기능이 뿌리내린 정착기라고 할 수 있었다. 노태우 정부의 집권기간에 실시한 다섯 차례 전국적인 선거의 실시배경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거는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였다. 이 선거는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제12대 국회의원의 당초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하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4개월 전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정의당의

총재 자격으로, 패배한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지역구 또는 전국구 후보로 선거에 직접 참여하여 '1노 3김'의 2차 대결구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선거전은 1노 3김의 연고지역에 따라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2파전 또는 4파전 양상을 보였다. 갓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정국안정을 위해 원내과반수 의석이 필요했고, 양김(김영삼, 김대중)은 향후 야권통합 등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해 제1야당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선거분위기가 뜨거웠다. 더욱이 그동안 여야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중 선거구제가 폐지되고 17년 만에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면서 후보자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은 전체의석의 41.8%인 125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의석에 미달하여 의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평화민주당은 70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이 되었고, 통일민주당은 59석, 신민주공화당은 35석을 차지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

두 번째 선거는 1991년 3월 26일 치러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였다.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60년 마지막으로 실시된 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지시켜 그동안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여야 후보가 모두 지방자치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그 실시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 지방자치제 부활이 임박해지는 듯하였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오랫동안 진통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90년 제151회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1991년 상반기 중에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30년 만에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 공천이나 선거운동 과정에 정당의 참여를 배제시켰지만 각 정당은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자기 당 후보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는 등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였다. 선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선거일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터진 수서사건과 정부의 선거선심성 정책발표 및 야당성향 후보자들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었다. 선거결과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임에도 유권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55%라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친여성향의 후보자들이 호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선되었다.

세 번째 선거는 1991년 6월 20일 실시한 시·도의회의원선거였다. 시·도의회의원선거 역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후 실시하지 못하였다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1991년 6월 20일 실시하였다. 당초에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여야 간에 정치적 이해가 엇갈려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치른 지 3개월 후에 별도로 실시하였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어 총 5개 정당이 참여하였다. 선거전은 초반부터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제1야당인 신민주연합당의 양당 대결구도를 보였다. 선거전의 최대 쟁점은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한 이른바 '3당 합당'에 대한 공방이었다. 민주자유당은 3당 합당의 불가피성을, 신민주연합당은 비도덕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의 폭행사건도 큰 쟁점이 되었다. 선거결과 민주자유당은 전국 866개 의석의 65.1%인 564석을 차지하였고,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의회를 장악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은 전체의석의 19.1%인 165석을 차지하였으나 호남에서는 다수 의석을 얻어 광주·전남·전북의 3개 시·도의회를 장악하였다.

네 번째 선거는 1992년 3월 24일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였다. 이 선거는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9개월 앞두고 실시하여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선거전은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만든 통일국민당의 3당 대결구도가 되었다. 선거전에서 쟁점이 된 것은 3당 합당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재벌그룹 회장 출신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안정론·견제론 등이었다. 또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선거개입,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폭로 사건 등도 선거쟁점이 되었다. 선거결과 민주자유당은 전체의석의 49.8%인 149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고, 민주당은 97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이 되었으며, 통일국민당은 31석을 차지하여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처음에 과반수의 의석에서 1석이 부족하여 여소야대였으나 선거가 끝난 후 무소속 당선자들을 계속 영입하여 제14대 국회 개원 전에는 과반수를 넘어 여대야소가 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거는 1992년 12월 18일 실시한 제14대 대통령선거였다. 이 선거는 제13대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하였다. 대통령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정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여파로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며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후 현승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중립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관련선거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선거에는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선거초반부터 여당인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제1야당인 민주당 김대중 후보, 통일민주당 정주영 후보의 3자 대결구도를 보였다. 김영삼 후보는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며 ‘신한국 창조’를 내세웠고, 김대중 후보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이번에는 바뀐시다’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정주영 후보는 다른 후보보다 경제운용 능력에 우위가 있음을 선전하며 ‘경제대통령론’을 폈다. 선거전에서 쟁점이 된 것은 검찰·국세청이 현대그룹의 4개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금권선거와 관련선거 공방이었다. 또한 간첩단 사건과 사상논쟁, 부산 초원복집 사건 등도 선거쟁점이 되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대규모 청중을 동원하는 연설회나 폭력사태는 없었으나 지역주의 정서는 여전히 나타났다. 특히 3당 합당의 영향으로 호남 대 비호남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그동안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부재자투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선거사상 처음으로 운영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유효투표총수의 42%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은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선거결과에 승복하였다. 특히 김대중·정주영 후보는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표 1-1〉 노태우 정부시절 선거실시 상황

연번	선거명	선거일자	선거 실시배경 및 특징
1	제13대 국회의원선거	1988. 4. 26	○ 헌법개정에 따라 제12대 국회의원의 임기 조기종료 ○ 17년 만에 소선거구제 부활
2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991. 3. 26	○ 1990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선거시기 결정 ○ 30년 만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부활
3	시·도의회의원선거	1991. 6. 20	○ 1990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선거시기 결정 ○ 낮은 투표율
4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992. 3. 24	○ 제13대 국회의원의 4년 임기 만료 ○ 재벌그룹 회장의 정치참여
5	제14대 대통령선거	1992. 12. 18	○ 제13대 대통령의 5년 임기 만료 ○ 부재자투표소 최초 운영

2 장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988. 4. 26 실시)

개요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제12대 국회의원의 당초 임기(1985. 4. 11~1989. 4. 10)를 다 채우지 않고 임기종료일을 1년 정도 남겨둔 1988년 4월 26일 실시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실시하는 선거였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정의당의 총재 자격으로, 패배한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사실상 당을 지휘하면서 지역구 또는 전국구 후보로 선거에 참여하였으므로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1노 3김'의 제2차 대결이었다.

선거전은 초반부터 연고지역에 따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4당 대결구도를 보였다. 갓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향후 정국안정을 위해 원내과반수 의석이 필요했고, 양김(김영삼, 김대중)은 정국주도권 장악을 염두에 두고 제1야당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선거분위기가 뜨거웠다. 더욱이 그동안 여야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중선거구제가 폐지되고 17년 만에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면서 후보자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은 전체의석의 41.8%인 125석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의석에 미달하여 의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평화민주당은 70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이 되었고, 통일민주당은 59석, 신민주공화당은 35석을 차지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

여소야대로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야3당은 정부가 요청한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시키고, 5공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전두환 정권시절의 각종 사건과 비리의 진상을 파헤치는 등 그 위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함으로써 여소야대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제1절 _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2절 _ 선거제도

제3절 _ 후보자 추천과 등록

제4절 _ 선거운동

제5절 _ 선거비용

제6절 _ 공명선거활동

제7절 _ 선거법위반행위

제8절 _ 선거결과

제9절 _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의 부칙 제3조에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2대 국회의원의 당초임기(1985. 4. 11~1989. 4. 10)를 다 채우지 않고 그 임기종료일을 1년 정도 남겨둔 1988년 4월 26일 실시하게 되었다.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이후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까지 3년간은 우리 현대사에서 큰 정치적 변혁기였다. 이 기간 중에 ‘1천만 개헌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축소사건’, ‘4·13 호헌조치’,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쳐 대통령직선제로의 헌법개정을 위한 ‘제6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또한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되어 제13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 후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약 4개월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이 기간 중의 주요 정치적 상황으로는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시기 논란’, ‘야권 통합 활동과 실패’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이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것도 이 시기에 일어났다. 이상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



▲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선서(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헌법 부칙에는 이 헌법의 발효시기를 1988년 2월 25일부터로 하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의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의 7년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제13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은 1988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각계인사 2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하고 5년 임기의 대통령직무를 시작하였다.

이날 취임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국민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라고 말한 후 “이제는 지역감정, 당파적 이기심, 개인적 섭섭함을 이 새로운 출발의 광장에 모두 묻읍시다”라고 당부하며 제13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역감정 등의 양극을 떨쳐내려고 하였다. 그는 “국민의 뜻을 담은 새 헌법의 발효와 함께 바로 이 시각에 탄생하는 새 정부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합니다”, “물량성장과 안보를 앞세워 자율과 인권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등 전두환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발언도 하였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개혁과 국민화합으로 이제 우리는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부의 부당한 축적이나 편재가 사라지고 누구든지 성실하게 일한만큼 보람과 결실을 거두면서 희망을 갖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자신의 선거전략의 하나였던 ‘보통사람’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취임식에 앞서 1988년 2월 19일 노태우 당선자는 새 내각의 각료를 발표하였다. 국무총리에 이현재 전 서울대총장, 부총리에 나웅배 상공부장관, 외무부장관에 최광수, 내무부장관에

이상희, 국방부장관에 오자복, 통일원장관에 이홍구를 임명하는 등 23개 부처의 장관 가운데 16명을 새로 임명하였다. 7명의 현직 장관은 재기용하였다. 제6공화국의 첫 내각에 대해 언론에서는 참신성보다 국정 연속성에 더 큰 비중을 둔 ‘실무내각’이라고 평가하였다.

2.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시기 논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1987년 8월과 9월 제5공화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헌협상 과정에서부터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때 민주정의당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1988년 2월에 실시하자고 하였고, 제1야당이던 통일민주당은 1988년 4월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 차이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새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헌법부칙에 명시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쳤다(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제6차 국민투표 참조). 이로 인해 제13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의원선거 시기에 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개정된 헌법, 즉 제6공화국 헌법의 공포일은 1987년 10월 29일이었고, 이 헌법의 부칙에는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1988년 4월 29일까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시기는 여야 간에 이해가 얽혀있는 문제였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정의당은 승리의 여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빨리 실시하려고 하였고, 패배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은 패배의 후유증 극복과 당원들의 사기진작 등 전열 정비를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가급적 늦추려고 하였다.

민주정의당은 제13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3일 후인 1987년 12월 19일, 정국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선거를 1988년 2월 10일 전후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1987년 12월 31일에는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가 주재한 지구당위원장회의에서 “1988년 2월 대통령 이·취임식 전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며 2월 국회의원선거 실시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는 1987년 1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1988년 4월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평화민주당도 1988년 4월말 이전에 실시하

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야당이지만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전인 1988년 2월까지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같은 선거시기에 대한 논란은 1988년 1월 중순부터 여야의 관심이 선거구제로 옮겨가면서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선거구 협상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자 민주정의당이 2월 국회의원 선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우므로 3월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도 이에 수긍하여 3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하였다. 그러나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된 제138회 임시국회(1988. 1. 18~1. 29)와 제139회 임시국회(1988. 2. 10~2. 23)에서 선거구 개정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됨에 따라 3월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1988년 3월 2일 제140회 임시국회가 소집되었고, 3월 8일 민주정의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한 민주정의당은 국회의원선거를 4월 하순에 실시하자고 제의하였고, 야당에서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88년 3월 10일 민주정의당은 국회의원선거 일자를 4월 26일로 잠정 결정했고, 4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1988년 4월 26일 실시한다고 공고함으로써 선거시기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3. 야권통합 활동과 실패

제13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1개월 정도가 지난 후, 정국의 관심이 국회의원선거로 모아지면서 야권통합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야권통합은 주로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갈라진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양당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분열된 상태로 국회의원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야권통합을 먼저 제기한 쪽은 통일민주당이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2위를 한 통일민주당은 야권통합에 있어서 공세적이었던 반면, 3위를 한 평화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통일민주당 총재단은 1988년 1월 18일 야권통합을 위해 평화민주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2월 8일에는 김영삼 총재가 야권통합을 위하여 총재직을 사퇴하고 평당원으로 백의중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월 10일에는 김재광, 최형우, 김동영, 박종률, 황명수, 김정길 등 6명으로 '야권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와 김영삼 통일민주당 전 총재 야권통합 논의 (1988년 2월 23일, 서울 가든호텔)

평화민주당도 1988년 2월 10일 문동환, 이중재, 최영근, 박영숙, 조세형, 이상수 등 6명으로 '야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1988년 1월 26일 평화민주당의 양순직·유제연 전 부총재와 김현수·김성식·장기욱 의원 등 5명이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 패배할 것이 분명한데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야권통합에 적극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야권통합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 탈당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평화민주당을 탈당하였다. 그러나 탈당자 중 유제연·김현수·김성식 세 사람은 2월 2일 통일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야권통합을 위해 평화민주당을 탈당했다는 명분을 약화시켰다.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의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는 1988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합동회의를 갖고 ①양당은 야권대통합의 원칙에 합의한다, ②통일민주당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수용한다, ③양당 합동의원총회를 2월 15일 개최하여 원내대책을 논의한다, ④통합의 세부적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구를 구성한다는 4개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이 통합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소선거구제를 통일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자 합동의원총회는 열리지 못하였다. 이후 양당은 서로 상대방 측이 통합의사가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통일민주당 전 총재와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1988년 2월 2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전격적으로 회동하면서 야권통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날 회동에서 양김(兩金)은 야권대통합을 위해 ①통일민주당의 당론을 소선거구제로 환원한다, ②재

야의 신당창당 중지와 야권통합에 동참을 권고한다, ③양당의 통합추진기구를 조속히 재가동 한다는 3개항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당은 1988년 2월 26일 양당 통합기구합동회의를 다시 열고 3월 5일까지 야권대통합을 위한 통합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였다. 3월 3일에는 양당이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통합을 결의하고 각각 150명씩으로 수입 기구도 구성하였다.

그러나 통합신당의 지도체제 문제와 관련, 평화민주당은 양김의 공동대표제를 주장한 반면, 통일민주당은 양김(兩金)이 아닌 제3의 인물을 통합신당의 대표로 하는 단일지도체제와 김대중 총재의 2선 후퇴를 주장함으로써 통합대회는 열리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1988년 3월 8일 국회에서 민주정의당이 단독으로 소선거구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양당의 통합문제는 김대중 총재의 거취 문제로 좁혀졌다. 하지만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1988년 3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통합 전에 퇴진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자 3월 11일 통일민주당의 김명윤 총재직무 대행이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퇴진 없는 야권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통합노력 포기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무산 직전에 이르렀던 야권통합 활동은 1988년 3월 17일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야권통합을 위해 총재직을 사퇴한다고 밝힘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같았다. 이날 김대중 총재의 사퇴발표는 박영숙 평화민주당 부총재가 대신하였는데 “통일민주당이 김대중 총재의 사퇴 없이는 통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퇴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3월 18일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한겨레민주당(가칭) 등 3당의 통합협상대표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을 위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3월 19일 서교호텔에서 열린 ‘6인 소위원회’의 회의장에 200여명의 청년과 학생들이 진입하여 회의장을 점거하고 “무조건 통합”, “통일민주당 각성” 등을 외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통합협상은 다시 결렬위기에 처했다. 통일민주당은 평화민주당이 이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평화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평화민주당은 일부 불순세력이 야기한 방해책동이라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통일민주당이 3월 21일 통합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야권통합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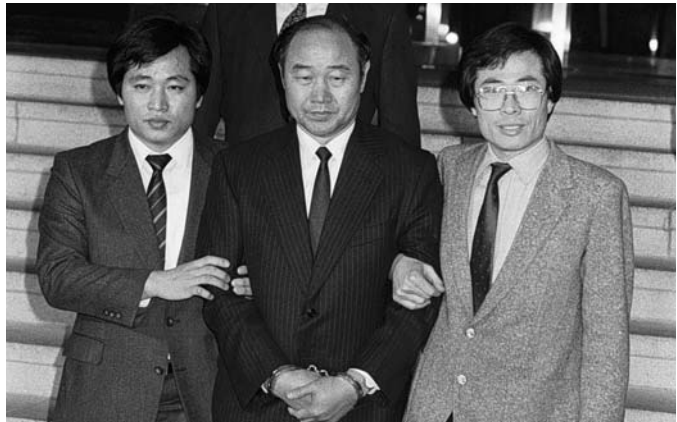
4.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전경환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이하 이 장에서 “회장”이라고 한다)이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하 이 장에서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전경환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시절인 1974년부터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하다가, 친형인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후인 1981년 1월부터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사무총장을 맡았고, 1985년부터는 회장을 맡았다. 당시 전경환 회장은 ‘리틀 전두환’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따라다녔다.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은 이전에도 언론에 오르내리긴 하였으나 크게 부각된 것은 1988년 3월 15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직원 600여 명이 의혹사건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면서부터였다. 그 다음날인 3월 16일 야당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그러자 이틀 후인 3월 18일 전경환 회장이 돌연 일본 오사카로 도피성 출국을 하였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를 비난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경환 회장에게 귀국하도록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고, 3월 20일 그가 귀국하였다. 검찰이 3월 21일부터 수사를 착수하여, 3월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경환 회장을 횡령 및 탈세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검찰은 전경환 회장이 제5공화국 통치기간 동안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을 지내면서 새마을운동본부 기금 등 각종 공금 7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하여 인창상가 매입 등에 사용하고, 새마을신문사의 법인세 10억여 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하여 그 대가로 4억 1,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경



▲ 전경환 구속(1988년 3월 31일)

환 회장의 동서 등 관련자를 더 구속하고 1988년 4월 16일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며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을 공격하였다.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정의당에게 악재로 작용하였지만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8년 4월 13일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주정의당 명예총재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경환 회장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재판결과 1989년 7월 15일 징역 7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 7,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 관련자 11명 모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2절 선거제도

대통령선거제도가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뀌는 등 제6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제도도 바뀌어야 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4개월 전인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와는 달리 여야뿐만 아니라 야당 간에도 의견이 달라 진통을 겪었다.

1. 선거법 개정

가. 개정경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제137회 정기국회(1987. 9. 21 ~ 11. 10) 때부터였다. 이때 여야 4개 정당의 협상대표들이 당대 당 협상을 통하여 쟁점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도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 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회의원선거법」은 시급한 「대통령선거법」개정에 밀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1987년도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치권의 관심이 국회의원선거로 옮겨가던 1988년 1월 중순부터 각 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개정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선거구제 문제 등으로 참여하게 대립하면서 「국회의원선거법」 처리를 목표로 소집한 제138회 임시국회(1988. 1. 18 ~ 1. 29)가 지나가고, 다시 제139회 임시국회(1988. 2. 10 ~ 2. 23)가 지나갈 때까지 합의를 못하였다.

또 다시 제140회 임시국회(1988. 3. 2 ~ 3. 8)가 소집되었다. 새 헌법의 규정대로 1988년 4



▲ 야당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장성만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1988년 3월 8일)

월 29일까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준비 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국회의원선거법」처리를 미룰 수 없었음에도 여야의 협상은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민주정의당은 1988년 3월 3일 청와대에서 고위당직자회의를 갖고 당내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1개 선거구에서 1 ~ 4인을 선출' 하는 기존의 혼합선거구제 당론을 '1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 하는 소선거구제로 변경하였다.

당론을 변경한 민주정의당은 1988년 3월 7일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사봉과 마이크를 뺏는 등 실력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내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자 야당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본회의 상정을 완강하게 저지하였다. 야당이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구제 확정과 부정선거 방지장치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월 8일 새벽 2시 10분 장성만 국회의장이 국회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국회의장석 뒤편 셋문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와 본회의 속개를 선언하고 곧바로 선거법안을 상정하여 7분 만에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로 공포되어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나. 선거법 개정 주요쟁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된 것은 선거구제와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이었다. 이 두 가지 쟁점사항은 각 정당의 의석확보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여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히 선거구제 개정은 현역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같은 정당 내에서도 지역구가 당해 정당의 지지를 많이 받는 지역이나 아니냐에 따라, 또한 지역구가 대도시나 농촌이나에 따라서 국회의원마다 의견이 달랐다.

1) 선거구제

선거구제의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 내지 4명을 선출하는 ‘혼합선거구제’, 2명 내지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세 가지 방식을 놓고 각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성을 가미한 구·시·군 행정구역단위를 기초로 1선거구에서 1~4인을 선출하는 혼합선거구제를 주장하였다. 즉, 인구수 25만 미만은 1구 1인, 인구수 25만 이상 50만 미만은 1구 2인, 인구수 50만 이상 75만 미만은 1구 3인, 인구수 75만 이상은 1구 4인을 선출하되, 인구수가 7만 1,000명 미만은 생활권이 동일한 인접 시·군에 병합하는 안을 내놓았다. 혼합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소선거구제는 극심한 경쟁으로 과열·타락이 우려되고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몰표를 얻게 되어 지역당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은 처음에는 민주정의당의 1선거구 1~4인제에 대하여 농촌지역에서는 여당이 의석을 독식하고, 야당성향이 강한 대도시에서는 동반 당선을 노리는 무원칙한 ‘신관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비난하며, 평화민주당과 함께 소선거구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988년 1월 13일 정무회의에서 이를 철회하고 인구비례에 의해 1선거구에서 2인 내지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다. 즉, 인구수 15만 이상 45만 미만은 1구 2인, 인구수 45만 이상 65만 미만은 1구 3인, 인구수 65만 이상은 1구 4인을 선출하는 안을 내놓았다. 당론을 중선거구제로 변경한 이유는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참패는 필연적이고, 같은 야당인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의 양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서 이진투구식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과다경쟁과 지역감정에 따른 국론분열의 후

유증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평화민주당은 처음부터 즐기치게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였다. 평화민주당은 통일민주당이 소선거구제 당론을 버리고 중선거구제를 새 당론으로 채택하자 유신독재 정권과 정부·여당이 기도해 온 나눠먹기 정치에 통일민주당이 안주하려는 처사라며 비난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선거법협상이 진행 중이던 1988년 2월 20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당원·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선거구제 및 민주국회의원선거쟁취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민주정의당이 제안한 중선거구제는 군부독재의 안정적 집권을 노리는 여야 동반당선의 음모”라고 비난하고, 소선거구제 쟁취와 득표율에 따른 전국구비례대표제 실시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1선거구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주장하였다. 즉, 인구수 35만 미만은 1구 2인, 35만 이상 70만 미만은 1구 3인, 70만 이상은 1구 4인을 선출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극한적인 선거과열과 지역당의 출현을 막고, 정치적 안정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각 정당이 이렇게 주장한 이면에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계산이 내포되어 있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으로서는 여야 동반당선이 가능한 혼합선거구제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제1야당이던 통일민주당은 중선거구제의 동반당선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당초 소선거구제의 당론을 바꿔가면서까지 중선거구제를 주장한 것이었다. 제3당인 평화민주당으로서는 소선거구제가 되어야 제1야당이 되는데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일관되게 소선거구제를 주장했으며, 다른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신민주공화당은 중선거구제의 동반당선이 자당의 의석확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각 정당의 당론은 협상과정에서 바뀌기도 하였다.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은 1선거구 1~3인 선출제에 대해 거의 합의단계까지 갔으나 마지막에 통일민주당이 이를 번복하여 무산되었고, 통일민주당은 평화민주당과의 야권통합협상이 진전되면서 중선거구제 당론을 소선거구제로 다시 환원하기도 하였다.

각 정당의 의견차이로 선거법 처리를 위해 소집한 제138회 및 제139회 임시국회가 지나갈 때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자, 민주정의당이 당초 혼합선거구제의 당론을 소선거구제로 변경한

후 제140회 임시국회를 열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였다. 형식은 단독처리였지만 어느 정도는 야당과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로써 유신시절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야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도입하였던 1선거구 2인 선출 중선거구제는 폐지되고, 1971년 제8대 국회의 원선거 이후 17년 만에 소선거구제가 부활되었다.

2) 전국구의석 배분방식

전두환 정권시절인 제11대 및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시행된 전국구의석 배분제도는 전국구 전체의석(92석)의 3분의 2인 61석을 제1당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었고,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이를 모두 차지하여 그동안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었다. 따라서 민주화가 진척된 상황에서 실시하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각 정당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민주정의당은 전국구의석수를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정수의 2분의 1에서 5분의 1로 대폭 줄이고, 배분방식도 제1당에게 3분의 2를 배분하던 것을 2분의 1로 낮추는 안을 제시하였다. 즉, 전국구의석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배분하되, 제1당의 의석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할 때에는 전국구의석의 2분의 1을 배분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는 그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통일민주당은 전국구의석수를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정수의 3분의 1로 하고, 배분방식은 지역구에서 10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게 배분하되, 총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전국구의석수를 지역구의원 정수의 5분의 1로 하고,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획득한 정당에 배분하되, 배분방식은 제1당에게 기득권을 주는 대신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 각 정당의 총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각 정당의 협상결과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선거구제와는 달리 크게 대립하지 않고 대체로 민주정의당의 안과 비슷하게 결론이 났다. 즉, 전국구의석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배분하되, 제1당의 의석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만 전국구의석의 2분의 1을 제1당에게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제2당 이하 정당에게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다.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소형인쇄물 배부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운동원수와 현수막 게시매수를 늘리는 등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투표용지가인 제도와 투표통지표교부 입회인 제도를 부활시키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용시설에서는 부재자투표시 기표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였다는 특징도 있었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였다(법¹⁾ 제8조, 제9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선거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았다(법 제11조, 제12조).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의 벌금액 기준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였다(법 제11조, 제12조).

나.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구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와 전국선거구(이하 “전국구”라 한다)의 2종으로 구분하였다(법 제13조). 하지만 1개의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는 2인에서 1인으로 줄였다(법 제14조). 전국구 의원정수도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정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였다(법 제15조). 이에 따라 지역구수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92개에서 132개 늘어나 224개가 되었고, 지역구의원정수는 184명에서 40명이 늘어난 224명이 되었다. 반면 전국구의원정수는 92명에서 17명이 줄어들어 75명이 되었다.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한 국회의원 총 정수는 299명이었다.

1) 이 장에서 법이란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4003호)을 말한다.

다.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의 작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 감독권자를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하였다(법 제19조). 지역구후보자 등이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교부받아 선거운동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제도를 부활시켰다(법 제26조).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제도는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63년 제6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폐지되었고,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다시 도입되었다가 유신시절인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다시 폐지되었는데,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부활된 것이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1개 투표구의 선거권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2개로 분철하던 것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000명을 초과할 때 1,000명을 단위로 분철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

라. 후보자 등록

지역구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즉, 무소속인 경우에는 그 지역구 안에 있는 선거권자 500명 이상 700명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았다(법 제27조). 하지만 지역구후보자의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무소속후보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전국구후보자의 기탁금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법 제33조).

마.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최장 18일간이었다(법 제39조).

선거운동의 주체인 선거사무원 수에 대해서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읍·면·동수에 상당한 인원으로 하던 것을 지역구의 선거사무소에 40인 이내, 선거연락소에 20인 이내, 투표구마다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그 인원을 대폭 늘렸다(법 제45조). 또한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리(里)·동(洞)·통(統)·반(班)의 장이 선거일공고일 전 10

일까지 사임해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1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었던 ‘후보자 성명 게시’를 폐지하고 대신에 ‘소형 인쇄물’을 새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현수막, 소형인쇄물의 5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법 제40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6조·제57조).

‘선전벽보’와 ‘선거공보’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합동연설회’는 지역구당 3회 개최하되 1개의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시·군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시·군마다 각각 3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인구수나 읍·면수에 따른 추가가 개최요건을 단순화하였다(법 제51조). ‘현수막’은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지역구는 지역구당 10매 이내, 기타 지역구에서는 시(市)당 3매 이내, 읍·면당 1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구·시는 지역구의 관할 동수 이내, 군에 있어서는 읍마다 2매 이내, 면에는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여 게시매수를 대폭 늘렸다(법 제57조).

‘소형인쇄물’은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정당명·경력·정견 등을 게재하여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이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수량을 제한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제작·배부할 수 있었다. 다만, 소형인쇄물에는 허위사실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게 하였다(법 제56조).

바. 선거비용

선거비용에 관해서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차이가 없었다. 즉, 선거의 과열과 타락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정하여 공시하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이 공시된 금액 내에서만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법 제88조).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모든 선거비용을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았다(법 제87조).

사. 투표

투표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권자에게 모두 1표씩 주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도록 하였으며(법 제100조), 기표소 안

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하여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였다(법 제101조). 기표방법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 표를 하는 것이었다(법 제110조).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달라진 것은 투표용지 인쇄순위(이하 “기호”라고 한다) 결정 방법, 투표용지 가인제도, 투표통지표교부 입회인제도, 부재자투표용 기표소 설치 등이었다. ‘기호’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먼저 정당추천후보자끼리 추첨에 의해 앞 순위 번호를 결정한 후, 다음 순위 번호는 무소속후보자끼리 역시 추첨에 의해 번호를 결정하였었다. 그러나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추첨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간의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간의 순위는 정당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후보자’ 간의 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다만, 같은 순위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그 후보자 간의 순위는 추첨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03조).

‘투표용지 가인제도’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대리인 2명이 투표용지에 가인(加印)하고(법 제104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회의 다수의석 순에 의한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2명이 다시 가인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107조). 투표용지 가인제도는 투표용지의 위조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 제도는 1963년 11월 26일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유신시절인 1973년 2월 27일 실시한 제9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폐지되었는데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활된 것이었다. 가인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투표용지에는 청인과 투표구위원장의 사인을 포함하여 최대 6개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투표통지표교부 입회인 제도’란 구·시·읍·면에서 선거인에게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과정에 후보자 측에서 지명한 사람 1명씩을 입회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법 제106조), 투표통지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는 과정에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 이 제도는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시행되었다가 유신시절인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폐지되었는데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활되었다.

부재자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100인 이상 소속된 영내, 함정, 병

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선박 등에서는 ‘부재자투표용 기표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법 제109조).

아. 개 표

개표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즉, 선거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설치된 개표소로 이송하여 후보자 측에서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표는 투표구 단위로 구분하여 개표하는 이른바 ‘투표구별 분리개표’ 를 하도록 했다(법 제122조~제126조).

자. 당선인 결정

당해 지역구에서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32조).

전국구는 지역구 선거결과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다. 다만, 지역구 선거결과 제1위를 차지한 정당(이하 “제1당” 이라고 한다)의 지역구의석수가 지역구의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제1당에게 전국구의석 총수의 2분의 1을 배분하도록 하였다(제133조).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제1당에게 전국구의원정수의 3분의 2를 배분하도록 하여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개정된 것이었다.

차. 기타 사항

위 개정내용 외에도 야당에서 부재자투표참관인 제도를 신설하고, 부재자투표함을 일반투표함과 분리하여 개표하지는 주장을 하였으나 민주정의당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였다. 또한 야당은 개인연설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청중동원 경쟁으로 선거가 과열될 수 있고 선동적 정치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며 민주정의당이 반대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비교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비교

요 목	제12대 국회의원선거(개정 전)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개정 후)
의원정수	276명(지역구 184, 전국구 92)	299명(지역구 224, 전국구 75)
지역구수	92개	224개
1개 지역구당 선출인원	2인	1인
전국구 의원정수	지역구의원정수의 2분의 1(92명)	지역구의원정수의 3분의 1(75명)
전국구의석 배분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제1당에게 전국구의석의 3분의 2를 우선 배분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제1당의 석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제1당에게 전국구의석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
기탁금	○지역구 정당추천후보자 : 700만 원 ○무소속후보자 : 1,500만 원 ○전국구후보자 : 700만 원	○지역구 정당추천후보자 : 1,000만 원 ○무소속후보자 : 2,000만 원 ○전국구후보자 : 1,000만 원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규정 없음)	지역구후보자에게 교부
선거사무원수	지역구의 읍·면·동수에 상당한 인원	선거사무소에 40인 이내, 선거연락소에 20인 이내, 투표구마다 3인 이내
선거운동방법	5가지(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현수막, 후보자 성명게시)	5가지(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현수막, 소형인쇄물)
현수막 게시매수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10매 이내 ○기타 시는 3매 이내 ○군은 읍·면당 1매	○구·시는 지역구 관할 동수 이내 ○군은 읍마다 2매 이내, 면은 1매
기호결정	추첨	국회의 다수의석 순,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 순,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
투표통지표 교부입회인	(규정 없음)	후보자 측에서 지명한 1인씩 참여
투표용지 가인	(규정 없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대리인 2명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2명이 가인
부재자투표용 기표소	(규정 없음)	부재자투표용 기표소 설치 의무화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1987년 12월 16일 실시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정의당은 선거가 끝나고 20여 일이 지난 1988년 1월 초순부터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은 1988년 3월 8일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공천신청을 받았다.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극심한 지역주의 영향으로 인해 각 정당 최고지도자의 연고지역은 당선가능성이 높아 그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리는 반면 다른 지역에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 심한 지역편중 현상을 보였다. 더구나 소선거구제가 부활되어 지역구수가 92개에서 224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야당은 마땅히 내세울 후보자가 없어 인물난을 겪었다.

가. 민주정의당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공천 작업은 민주정의당이 제일 먼저 시작하였다. 민주정의당은 1988년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신청을 받았다. 여당으로서 이례적으로 공개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1월 8일까지만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천신청자가 많아서 3일을 더 연장하여 1월 11일까지 받았다. 이 기간 중에 1,413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심사 작업은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1988년 3월 10일부터 시작하였다. 이날 민주정의당은 채문식 대표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별로 안배한 9명의 위원 등 모두 10명으로 ‘10인 공천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심사 작

업에 착수했다. 이때 공천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심명보 사무총장(강원), 남재희 정책위의장(서울), 이대순 원내총무(전남), 유흥수 사무차장(부산), 이한동(경기), 이춘구(충청), 정순덕(경남), 고건(전북), 김종권(경북) 의원 등이었다.

민주정의당의 공천심사기준은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6가지 사항이었다. 그 기준은 ①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이란 시대정신을 구현함에 있어 6·29정신을 실천하는 자생력이 강한 참신한 인물, ②지역주민의 신망과 신임이 높은 인물, ③4·19세대 이후 젊은 층의 진출을 늘려 40~50대가 주축을 이루되 30대가 60대 이후의 경험 많은 층과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④출신지역·학력·경력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⑤특정직능이나 특정분야가 너무 많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 ⑥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이 증대되도록 할 것 등이었다.

민주정의당은 1988년 3월 18일과 3월 26일 두 차례로 나누어 전국 224개 전 지역구의 공천자를 발표하였다. 민주정의당의 지역구후보자 공천특징은 제5공화국의 이미지 청산과 제6공화국의 정치질서 재편 및 노태우 대통령의 친정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민주정의당의 지역구 공천결과 전국 92개 지구당위원장 중 출마포기 등 6명을 포함하여 현역 지구당위원장 34명이 탈락되었고, 영입인사가 공천자의 55.8%를 차지하였다. 유학성 상임고문은 경북 예천군, 심명보 사무총장은 강원 영월군·평창군, 류홍수 사무차장은 부산 남구갑, 류경현 대변인은 전남 구례군·승주군 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이종찬(종로구)·이세기(성동구갑), 대구에서 정호용(서구갑)·이정무(남구), 인천에서 서정화(중구·동구)·심정구(남구갑), 경기도에서 장경우(안산시·옹진군), 이한동(연천군·포천군), 강원도에서 김문기(명주군·양양군)·정재철(속초시·고성군), 충북에서 이춘구(제천시)·신경식(청원군), 충남에서 이규규(서천군), 전북에서 고건(군산시), 경북에서 김윤환(군위군·선산군)·정창화(의성군), 경남에서 하순봉(진주시)·이학봉(김해시·김해군), 제주에서 현경대(제주시)·양정규(북제주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영입인사인 민관식 전 국회의장대리는 서울 중구, 박준규 전 민주공화당의장서리는 대구 동구, 김재순 전 민주공화당 원내총무는 강원 화천군·철원군, 이승윤 전 재무장관은 인천 북구을, 이규효 전 건설부장관은 경남 창원시, 한승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강원 춘천시 선거구 등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외의 각 지역구별 구체적인 공천자 명단은 부록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정의당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중에는 당 대표를 역임한 권익현 상임고문, 권정달 창당 당시 사무총장, 정석모 전 사무총장,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 이상익 전 중앙위의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서인 김상구 국회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등 제5공화국 때의 당 중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국구 공천결과는 1988년 4월 12일 발표하였다. 민주정의당은 전국구후보 인선에 있어 국민과 역사가 요청하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그 제도화를 위한 유능한 신인을 발굴하여 당과 국회주도의 정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전국구후보자는 62명이었는데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채문식 대표위원을 1번으로 하여 2번 윤길중, 3번 정석모 전 사무총장, 4번 강영훈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이원조 전 은행감독원장(10번), 박철언 대통령정책보좌관(17번), 강재섭 서울고검 검사(32번) 등이 전국구 공천을 받았다.

나.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은 평화민주당과의 야권통합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1988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천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중에 498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민주당은 김명운 총재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상현 부총재, 김수한 의원, 박종률 사무총장, 황명수 전당대회회장, 김동영·최형우 전 부총재 등 6명의 위원으로 공천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지역구후보자의 공천심사 기준을 민주화 투쟁에 기여했거나 당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인사, 현역의원으로서 하자가 없는 인사, 전직의원으로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인사, 학계·법조계·장성 출신과 노동계·농민 대표 등 각 분야의 참신하고 저명한 인사, 기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사 순이라고 밝혔다.

통일민주당은 1988년 3월 29일부터 몇 차례로 나누어 전국 224개 지역구 중 202명의 공천자를 발표하였다. 통일민주당은 기성정치인과 신진세력과의 균형을 이루는 공천을 했다고 밝혔으나, 참신한 인물을 많이 영입하겠다는 당초의 목표와 달리 기존 당원과 김영삼 전 총재의 비서 및 특별보좌관 출신 등을 많이 공천하였다. 호남지역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 상당수의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못하였다.

통일민주당의 지역구 공천결과 김명운 총재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김영삼 전 총재는 부

산 서구, 김현규 원내총무는 대구 중구, 김재광 상임고문은 서울 은평구을, 김태룡 대변인은 대전 서구에 각각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백남치(노원구갑)·서청원(동작구갑), 부산에서 최형우(동래구을)·이기택(해운대구), 대구에서 유성환(서구을), 인천에서 정정훈(북구갑), 경기도에서 이인제(안양시갑)·이규택(여주군), 강원도에서 최정식(속초시·고성군), 충남에서 황명수(온양시·아산군), 경북에서 오경의(안동시)·권오태(영천시·영천군), 경남에서 황낙주(창원시)·김동영(거창군), 제주도에서 강보성(서귀포시·남제주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또한 이원범(영등포구을) 등 전직의원 27명, 노무현(부산 동구) 및 강신옥(서울 마포구을) 등 변호사 9명, 현승일 국민대교수(서울 성북구을) 등 교수 10명도 공천을 받았다. 야권통합의 기폭제가 되겠다며 1988년 1월 26일 평화민주당을 탈당하여 통일민주당에 입당한 유제연(인천 서구), 김현수(충북 청주시갑), 김성식(충남 예산군) 등도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현역의원 중 박한상, 박해충, 서종렬, 이진일, 신병렬, 한석봉 등 6명은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 중 박한상·박해충·서종렬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이진일 의원은 통일민주당을 탈당한 후 신민주공화당에 입당하여 부산 해운대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외의 각 지역구별 구체적인 공천자 명단은 부록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구 공천자는 1988년 4월 13일 발표하였다. 전국구후보자의 공천기준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선거지원을 위해 정치현금을 낼 수 있는 사람, 당에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는 10번 순위 이내의 공천자들 대부분이 재력가로 밝혀져 정치현금이 전국구후보자의 주요 공천기준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전국구후보자는 총 40명을 공천하였는데 1번은 병원장인 송두호, 2번은 사업가인 이행구, 3번은 역시 사업가인 노홍준 등의 순이었다. 사무총장인 박종률(10번)도 당선 가능권 순위에서 공천을 받았다.

다.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은 통일민주당과 야권통합 협상이 진행되던 1988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천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비공개 신청자를 포함하여 모두 431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민주당은 김영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최영근(영남), 허경만(호남), 안동선(경기·강원), 임채정·이길재·이해찬(이상 재야담당) 등의 6인을 위원으로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심사에 착수하였다.

평화민주당은 1988년 3월 30일부터 몇 차례로 나누어 지역구공천자 168명을 발표하였다. 평화민주당의 공천은 재야인사와 김대중 전 총재의 특별보좌관이나 비서관 출신이 많이 공천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영남지역의 대부분 지역구에는 공천자를 내지 못하고, 충청권과 강원도 등에서도 형식적인 공천수준에 머물렀다.

평화민주당의 지역구 공천결과 노승환 야권통합추진위원은 서울 마포구갑, 김영배 사무총장은 서울 양천구을, 허경만 원내총무는 전남 순천시, 안동선 대변인은 경기 부천시 중구에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정대철(중구)·이해찬(관악구을), 광주에서 신기하(동구)·조홍규(광산구), 경기도에서 이찬구(성남시을)·문화상(의정부시), 전북에서 김원기(정주시·정읍군)·김태식(완주군), 전남에서 권노갑(목포시)·유준상(보성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이상수 변호사(서울 중랑구갑), 양성우(서울 양천구갑), 서경원 전 한국가톨릭농민회장(전남 함평군·영광군) 등의 재야인사들도 공천을 받았다. 김대중 총재의 특별보좌관이나 비서관 출신인 김경재(서울 강남구갑), 권노갑(전남 목포시), 한화갑(전남 신안군), 이협(전북 이리시), 설훈(서울 성북구갑) 등도 공천을 받았다.

평화민주당의 지역구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중에는 3선인 이진연 의원과 서울 용산구에 공천을 신청한 이길재 의원(전국구) 등이 있었다. 전 부총재인 이종재 의원은 본인이 출마를 포기하였다.

전국구 공천자는 1988년 4월 13일 발표하였다. 공천자는 38명이었는데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는 10번 순위 이내의 공천자들이 대부분 사업가로 밝혀져 통일민주당과 같이 정치현금이 전국구 공천의 기준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전국구 1번은 한국여성단체연합부회장 출신인 박영숙 총재권한대행, 2번은 송헌섭 국회의원, 3번은 이동근 현대공론 사장 등이 공천을 받았다. 김대중 전 총재는 11번에 공천을 받았다.

라. 신민주공화당

야당 중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작업에 가장 먼저 착수한 정당은 신민주공화당이었다. 국회의원선거를 2월 중에 실시하자고 제의했던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1월 6일 조직강화특별위

원회(위원장 김용채 사무총장)를 열고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공천심사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천심사기준은 ①국가유공인사, ②당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학식과 덕망 그리고 지도역량을 갖춘 지도급 인사, ④국가와 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인사, ⑤당선 가능성이 많은 인사, ⑥조직관리 능력이 있는 인사 등의 6가지라고 밝혔다.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3월 22일부터 몇 차례로 나누어 181명의 지역구공천자를 발표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의 지역구공천 특징은 당 중진을 주로 서울지역에 공천하였고, 민주공화당 시절 장관출신을 다수 공천했다는 것이었다. 신민주공화당은 호남지역의 대부분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못하였고,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형식적인 공천을 한 경우가 많았다.

신민주공화당의 지역구 공천결과 김종필 총재는 충남 부여군, 이병희 부총재는 경기 수원시, 김용환 정책위원회의장은 충남 대천시·보령군, 김용채 사무총장은 서울 노원구를, 최각규 당무위원은 강릉시에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신오철(도봉구갑), 경기에서 최무룡(과주군)·이택석(고양군), 충북에 김진영(청주시갑)·이종근(충주시·중원군), 충남에서 이인구(대덕군·연기군), 경북에 임진출(경주시) 등이 공천을 받았다. 또한 민주공화당 시절 내무부장관을 했던 오치성(가평군·양평군), 양찬우(동래구을), 구자춘(고령군·달성군) 등 3명도 공천을 받았다.

전국구공천자는 1988년 4월 12일 발표하였다. 공천자는 25명이었는데 10번 순위 이내가 대부분 전·현직 국회의원과 관료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전국구 1번은 광주상경대학 이사장 출신의 김인곤, 2번은 국회의원 정시봉, 4번은 농수산부장관을 역임한 이희일 등이 공천을 받았다.

마. 기타 정당

앞의 4개 정당 외에도 신한민주당을 비롯한 10개 정당에서 160명의 후보자를 공천했다. 제12대 국회에서 한때 제1야당이던 신한민주당은 이철승 의원(전북 전주시을)을 비롯하여 김병수 의원(서울 송파구갑), 유갑종 의원(전북 정주시·정읍군) 등 지역구 23명과 전국구 1명 등 총 24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제11대 국회에서 제1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은 유치송 총재(경기 송탄시)를 비롯하여 지역구에서만 5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제12대 국회에서 한때 제2야당이던 한국국민당은 이만

섭 총재(대구 달서구) 등 지역구에서만 11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민주적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1988년 4월 6일 창당된 한겨레민주당은 예춘호 총재(부산 영도구)를 비롯하여 제정구(서울 종로구), 조순형(서울 도봉구갑), 김부겸(서울 동작구갑), 원혜영(경기 부천시남구) 등 지역구 63명과 전국구 5명 등 68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민족정기의 선양과 사회정의에 입각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표방하고 1985년 11월 6일 창당된 기독교성민당은 진복기 총재(서울 도봉구을) 등 지역구에서만 2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의 수립을 표방하고 1988년 3월 11일 창당된 민중의당은 정태윤 대표(서울 구로구을)를 비롯하여 김두관(경남 남해군·하동군) 등 지역구에서만 16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민주적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고 1985년 7월 15일 창당된 후 신정사회당을 흡수합당하고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자를 냈던 사회민주당은 한상필(서울 종로구) 등 지역구에서만 4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인간다운 삶과 거래의 하나됨을 목표로 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1987년 3월 11일 창당된 우리정의당은 김상철 대표(서울 강남구갑) 등 지역구 21명, 전국구 2명 등 총 23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민족자존·자유민주·통일조국 등을 표방하고 1987년 3월 13일 창당된 제3세대당은 이경표(서울 강서구을) 등 지역구에서만 9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한주의 온열사상을 표방하고 1987년 11월 5일 창당된 한주의통일한국당은 김정민(서울 종로구) 등 지역구에서만 6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2. 후보자등록

가. 후보자등록 상황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988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였다. 이 기간 중 전국구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후보자는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1988년 4월 13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지역구후보자는 1,046명, 전국구후보자는 173명 등 총 1,219명이 등록하였다.

1) 지역구 후보자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총 1,046명이었다. 이 중 14개 정당에서 추천한 정당추천후보자는 935명이고, 무소속후보자는 111명이 등록하여 평균경쟁률은 4.7대 1이었다.

정당추천후보자 935명의 소속 정당별 내역은 민주정의당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일민주당 202명, 평화민주당 168명, 신민주공화당 181명 등이었으며 나머지 10개 정당이 160명이었다. 각 정당별 후보자수는 <표 2-2>와 같다. 민주정의당은 전국 224개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냈지만 다른 정당은 후보자를 다 내지 못하였다. 통일민주당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평화민주당은 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신민주공화당은 전남·북 지역에서 주로 후보자를 내지 못하였다.

<표 2-2> 제13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상황

정 당 명	합 계	지 역 구	전 국 구
합 계	1,219	1,046	173
민주정의당	286	224	62
통일민주당	242	202	40
평화민주당	206	168	38
신민주공화당	206	181	25
신한민주당	24	23	1
민주한국당	5	5	-
한겨레민주당	68	63	5
한국국민당	11	11	-
기독교민당	2	2	-
민중의당	16	16	-
사회민주당	4	4	-
우리정의당	23	21	2
제3세대당	9	9	-
한주의통일한국당	6	6	-
무 소 속	111	111	-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총 14개 정당이 참여하여,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9개 정당보다 5개 정당이 더 많이 참여하였다. 또한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 제6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가장 많은 정당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많은 정당이 참여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결과 민주화가 획기적으로 진척되어 정치적 욕구가 다양해졌고,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야권통합에 실패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2-3〉 역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수 현황

제헌 국선	제2대 국선	제3대 국선	제4대 국선	제5대 국선	제6대 국선	제7대 국선	제8대 국선	제9대 국선	제10대 국선	제11대 국선	제12대 국선	제13대 국선
48	39	14	14	15	12	11	6	3	3	12	9	14

※ 제5대 국선은 민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한 것임

무소속후보자는 111명으로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29명보다 82명이 더 출마하였다. 무소속후보자 중에는 지난 1987년 12월 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양김(兩金)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통일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철 의원이 서울 성북구갑, 박찬중 의원이 서초구갑, 장기욱 의원이 강남구갑선거구 등에서 출마하였다. 경남 울산시 동구에서 정몽준, 광주 서구갑에서 이필선, 경기 안성군에서 이해구 등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표 2-4〉 역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 현황

선거별	제헌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제13대
무소속 후보자수	417	1,513	797	357	977	(무소속 출마제한)	115	255	106	29	111
무소속 비율(%)	44.0	68.5	66.0	42.5	64.4	(무소속 출마제한)	33.9	53.9	16.7	6.5	9.1

※ 제5대 국선은 민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평균경쟁률은 4.7 대 1로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쟁률 2.4 대 1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초대부터 제8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평균경쟁률 5.9대 1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제9

대부터 제12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평균경쟁률 2.9대 1보다는 두 배 가량 높았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진 주된 이유는 양김(兩金)의 분열로 야당이 쪼개지고, 분열된 야당들이 전국 정당화 내지는 제1야당을 지향하며 당선가능성이 낮은 지역에도 후보자를 공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표 2-5〉 역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쟁률

선거별	제헌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제13대
지역구 경쟁률	4.7:1	10.5:1	5.9:1	3.6:1	6.7:1	6.5:1	5.4:1	3.8:1	2.3:1	3.1:1	3.5:1	2.4:1	4.7:1
전국구 경쟁률	-	-	-	-	-	3.5:1	2.7:1	2.4:1	-	-	2.5:1	1.9:1	2.3:1

※ 제5대 국선은 민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지역선거구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서울 구로구을, 관악구갑, 도봉구갑선거구였다. 이곳에서는 각각 9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횡성군·원성군, 속초시·고성군, 충북 괴산군, 전남 보성군, 구례군·승주군, 경북 월성군, 성주군·칠곡군, 경남 양산군 등 8개 선거구로 각각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구후보자 1,046명의 직업별 현황은 현역 국회의원 172명, 전직 국회의원 99명, 정당인 364명, 농업 51명, 상업 47명, 회사원 34명, 변호사 28명, 교육자 28명, 건설업 24명, 기타 166명이었으며 무직도 33명이었다.

학력별 현황은 대학원 졸업 454명, 대학교 졸업 501명, 대학중퇴 44명, 전문대 졸업 7명, 고졸 25명, 고등학교 중퇴 3명, 중졸 이하 12명이었다. 후보자의 연령별 현황은 40대가 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40명, 30대 147명, 60대 56명, 20대 30명, 70대 2명 순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1,032명이고 여자가 14명이었다.

2) 전국구후보자

전국구후보자는 7개 정당이 총 173명을 등록하였다. 가장 많은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민

주정의당으로 62명을 등록했고 그 다음은 통일민주당 40명, 평화민주당 38명, 신민주공화당 25명, 한겨레민주당 5명, 우리정의당 2명, 신한민주당 1명 순이었다.

전국구후보자의 경쟁률은 의원정수 75명에 173명이 출마하여 2.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경쟁률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경쟁률 1.9 대 1에 이어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전국구후보자 173명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정당인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 국회의원 16명, 전직 국회의원이 15명, 공업 11명, 공무원 10명, 건설업 5명 기타 55명이었다. 학력별 현황은 대학교 졸업자가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 45명, 대학중퇴 8명, 전문대 졸업 2명, 고졸 1명, 초등학교 졸업 1명이었다. 연령별 현황은 50대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4명, 60대 21명, 30대 15명, 70대 2명, 20대 2명 순이었다. 성별 현황은 남성이 160명이고 여성이 13명이었다.



▲ 후보자등록 접수 장면(서울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나.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

후보등록 후 사퇴한 후보자가 4명이었고, 피선거권 결격사유와 무소속후보자의 당적보유 등으로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가 7명이었다.

사퇴한 후보자는 지역구에서 전북 전주시갑선거구 민중의당 허정, 전북 군산시선거구 무소속 강근호, 경북 포항시선거구 평화민주당 최영만 후보 등 3명과 전국구에서 평화민주당 34번 한충수 후보 등이었다. 허정 후보는 민주정의당을 패퇴시키기 위하여, 강근호 후보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최영만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위하여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는 지역구에서 경기도 남양주군선거구 무소속 이용곤,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선거구 통일민주당 김휘원, 전남 신안군선거구 평화민주당 한화갑, 경남 거창군선거구 평화민주당 이종천 후보 등 4명이었다. 전국구에서 무효가 된 후보는 통일민주당 35번 주정룡, 평화민주당 15번 김옥두, 한겨레민주당 1번 최종국 후보 등 3명이었다.

무소속 이용곤 후보는 당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탈당하도록 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일공고일에 민주정의당을 탈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통일민주당 김휘원, 평화민주당 한화갑, 평화민주당 이종천, 통일민주당 주정룡, 평화민주당 김옥두, 한겨레민주당 최종국 후보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가 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는 당시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이들 중 이용곤·이종천·한화갑 후보는 등록무효취소소송과 등록무효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선거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스스로 취하하였다.

다. 후보자등록관련 사건·사고

후보자등록 마지막 날인 1988년 4월 13일 오후 4시 58분경 마산시갑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중의당 김종석이 기탁금 없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반려하자 지지자 30여 명이 농성을 하여 한때 소란스러웠다. 농성자들은 마산시갑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기로 합의한 후 농성을 풀었다.

강원도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중의당 김기봉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인 4월 13일 마감 시각(오후 5시)을 경과한 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지지자 20여 명이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민중후보 등록거부에 대한 항의” 등의 대자보를 게시하고 시위를 하였으나 4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할위원회의 후보자등록접수거부가 적법하다는 질의회신을 받고 해산하였다.

3. 기탁금

가. 기탁금 납입 및 반환

후보자등록신청 시 납부하는 기탁금은 지역구 정당추천후보자 및 전국구후보자는 1,000만 원이고, 무소속후보자는 2,000만 원이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 총액은 133억 원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 총액은 지난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45억 900만 원보다 87억 9,100만 원이 많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기탁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구 정당추천후보자 및 전국구 후보자의 기탁금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인상하고, 무소속후보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인상하였다. 둘째, 후보자가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611명에서 2배나 많은 1,21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때, 선거결과 지역구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때,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 중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선전벽보 등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인명부사본 교부비용을 공제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에는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득표하지 못하였더라도 국고에 귀속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국고에 귀속되지 않은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운동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그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끝난 후 국고귀속대상자 762명의 기탁금 70억 7,632만 원은 국가에 귀속되고, 반환대상자 457명의 기탁금 39억 5,190만 원은 해당 후보자에게 반환되었다. 지역구후보자의 경우 기탁금을 반환받은 후보자는 295명(당선자 224명과 유효투표의 3분의 1 초과 득표자 71명)으로 지역구 전체 후보자의 28.2%였고, 나머지 751명(71.8%)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선거 후 기탁금의 국고귀속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항을 달리하여 기술한다.

전국구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있는 민주정의당·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4개 정당의 기탁금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전국구후보자의 기탁금을 제외하고 모두 반환되었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한 신한민주당·한겨레민주당·우리정의당 등 3개 정당의 기탁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었다.

한편 기탁금 중에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작성비용과 선전벽보 등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기탁금 총액의 17.2%인 22억 8,239만 원이었다. 구체적인 기탁금 반환 및 귀속내역은 <표 2-6>과 같다.

<표 2-6>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및 귀속상황

(단위 : 원)

구분	기탁금액 (후보자수)	공제 금액					이자	반환금액 (후보자수)	국고귀속 (후보자수)
		계	선거인명부 사본비용	선전벽보 비용	선거공보 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합계	13,300,000,000 (1,219명)	2,282,396,298	123,016,845	494,160,474	1,082,981,170	582,237,809	10,622,861	3,951,903,373 (457명)	7,076,323,190 (762명)
지역구	11,570,000,000 (1,046명)	2,282,396,298	123,016,845	494,160,474	1,082,981,170	582,237,809	9,673,551	2,331,903,373 (295명)	6,965,373,880 (751명)
전국구	1,730,000,000 (173명)	-	-	-	-	-	949,310	1,620,000,000 (162명)	110,949,310 (11명)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8년 5월 2일 실시한 제4대 국회의원 선거 때였다. 이 기탁금제도는 제5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유지되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 실시된 제6대~제8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정당추천후보자만 출마할 수 있고 무소속후보자는 입후보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유신시절인 1973년 2월 27일 치러진 제9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부활되어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유지되었다.

기탁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정당추천이나 무소속 구분 없이 후보자 1인당 기탁금은 모두 50만 원이었다. 이후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 차등을 두고, 물가가 오르기

나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인상되어 왔다. 역대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액 변천상황은 <표 2-7>과 같다.

<표 2-7> 역대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액 변천상황

구분		제4대 국선	제5대 국선	제9대 국선	제10대 국선	제11대 국선	제12대 국선	제13대 국선
지역구	정당추천후보자	50만 환	○민의원 : 30만 환 ○참의원 : 50만 환	2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무소속후보자	50만 환	○민의원 : 30만 환 ○참의원 : 50만 환	3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전국구후보자		-	-	-	-	-	700만 원	1,000만 원

※ 초대~제3대, 제6대~제8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기탁금제도가 없었음. 제4대와 제5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금액이었음. 전국구후보자의 기탁금은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됨.

기탁금의 국고귀속요건도 처음 도입된 이후 변화가 있었다. 기탁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때’, ‘선거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의 유효투표총수의 6분의 1에 달하지 못한 때’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중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때’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변함이 없었으나 후보자의 득표수에 관한 규정은 강화되어 왔다.

후보자 득표수에 의한 국고귀속요건은 기탁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6분의 1’에 미달한 때였으나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5분의 1’로(민의원선거)로,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다시 ‘3분의 1’로 강화되어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유지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가 진척된 상황에서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유신시절인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규정된 국고귀속요건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즉, 정치신인들이 기탁금 부담 때문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기탁금 국고귀속요건의 변천상황은 <표 2-8>과 같다.

〈표 2-8〉 역대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 국고귀속요건 변천상황

제4대 국선	제5대 국선	제9대 ~ 제13대 국선
○ 후보자의 사퇴 및 등록무효	○ 후보자의 사퇴 및 등록무효	○ 후보자의 사퇴 및 등록무효
○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 유효투표총수의 6분의 1에 미달 (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	○ 후보자의 득표수가 민의원선거는 당해 지역구 유효투표총수의 5분의 1, 참의원선거는 7분의 1에 미달(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	○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에 미달 (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

※ 초대~제3대, 제6대~제8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기탁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나. 기탁금 위헌심판

신민주공화당의 추천을 받아 서울 종로구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정인봉 후보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탁금을 1,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차등'을 둔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기탁금)와,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얻지 못한 낙선자의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 시키게 하는 같은 법 제3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정인봉 후보는 종로구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122,598표)의 12.3%인 15,139표를 득표하여 3위를 하였다. 따라서 정인봉 후보의 득표수는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기탁금 1,000만 원 중 선전벽보 등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8,079,640원은 국고에 귀속되었다. 정인봉 후보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기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재판의 전제가 된 위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988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사건번호 88카56572)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89년 9월 8일 7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사건번호 88헌가6)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기탁금 1,000만 원과 2,000만 원은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헌법 제11조 평등보호원칙, 제24조 참정권,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1989년 5월말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저축액이 693만 원인데 이에 비해 현행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재력 있는 사람만 입후보할 수 있고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국회의원 입후보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후보자 난립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둘째,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탁금을 1,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차등을 둔 것은 헌법 제41조의 평등선거원칙과 헌법 제11조 평등보장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헌법이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소속후보자에게 정당추천후보자보다 두 배나 되는 금액을 기탁하도록 한 것은 무소속후보자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만들어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셋째,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얻지 못한 낙선자의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선거제도의 원리에 반하고, 선거정비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제116조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1위로 당선되지 아니하면 대부분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²⁾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본질을 부정하는 모순이 있고, 기탁금 중 선거비용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기탁금액의 10%(무소속 후보의 경우) ~ 20%(정당추천 후보자의 경우)에 불과한데 그 나머지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낙선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탁금의 액수가 무소속후보자는 정당후보자보다 배액인데 국고에 귀속하는 금액도 2배 이상이 되어 무소속후보자의 기회균등의 요구를 이중으로 가중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면서도 1991년 5월말까지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변형결정을 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시기가 1991년 5월말이므로³⁾ 그 이전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에서는 현행의 기탁금 규정을 적용하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들 간의 동질성 및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회 스스로가

2)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 1,046명 중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자는 259(24.8%)명이고, 나머지 787명 중 등록무효(4명) 및 사퇴(3명)를 제외한 780명(74.6%)은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 당선자 224명 중에서도 16%인 36명이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 낙선자 815명(총 등록자 중 당선자와 등록무효 및 사퇴자 제외) 중 71명만이 3분의 1 이상을 득표했고 나머지 744명(낙선자의 91.3%)은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

3) 당시 「국회의원선거법」 제144조에 의하면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국회의원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권위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3년 8개월 정도가 지난 199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를 개정하여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개정된 기탁금 규정이 적용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1인당 기탁금액을 정당추천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1,000만 원으로 통일하였고, 기탁금의 국고귀속요건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때로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제4절 선거운동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4개월 전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17년 만에 소선거구제가 부활되어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도 격렬해지고 위법행위도 많이 나타났다. 또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극심하게 표출된 지역주의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전략이나 선거공약의 주요 골격은 4개월 전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뿐만 아니고 낙선한 3김도 당내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므로 선거전략 등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었다.

가.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은 1988년 3월 29일 채문식 대표위원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고 심명보 사무총장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들어갔다. 이보다 10일 전인 3월 19일 서울 가락동 정치연수원에서 지역구공천자들을 대상으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선거전략 등을 시달한 바 있었다.

1) 선거전략

민주정의당의 선거전략은 무엇보다도 먼저 안정론이었다. 안정론은 역대 선거 때마다 여당이 계속 집권해야 하는 당위성을 내세우는 단골 선거전략이었지만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4개월 전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안정론을 내세워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민주정의당이 안정론을 내세운 배경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의 시위과정에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중산층과 보수층 등의 안정회귀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야당들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국정운영의 독주가 예상되므로 이를 견제해야 한다”며 견제론을 내세우고 있었으므로 대응전략으로 안정론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유권자들의 여당 견제심리를 희석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다.

민주정의당이 안정론을 내세운 명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원활히 실천하기 위해서 원내과반수의 안정의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개정된 헌법에 의해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국이 불안정해진다고 하였다. 즉, 국회가 국정감사권과 총리 및 국무위원해임건의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반해 행정부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선거전략 하에 채문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이나 심명보 선거대책본부장 등은 기자회견이나 전국 지원유세 등을 통해 안정론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다. 각 지역구의 후보자들도 선전벽보 등의 선전물이나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정국안정을 위해서는 민주정의당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외에도 민주정의당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은 여당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역발전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안정론이 중앙당 차원의 선거전략이었다면 지역개발 공약은 지역구 차원의 선거전략이었던 것이다.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고흥발전 다진일꾼 다시뽑아 지역번영’ (전남 고흥군, 이대순 후보), ‘구례군과 승주군의 지역개발공약 추진사항’ (전남 구례군·승주군, 유경현 후보), ‘일터와 쉼터를 함께하는 도시건설’ (강원도

춘천시, 한승수 후보) 등의 제목으로 지역개발에 관한 공약을 게재한 후보자들이 있었다.

2) 선거공약

민주정의당은 1988년 4월 8일 선거공약의 기본방향과 ①민주정치, ②국민기본권, ③선진경제, ④시장경제원리 확립, ⑤국민복지, ⑥지방화시대, ⑦복지 농어촌 건설, ⑧근로자 보호, ⑨교육문화, ⑩안보통일 등 10개 분야로 구성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선거공약의 기본방향은 6·29 선언과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선거공약 및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등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틀림없이 실천하며, 안정된 다수의 생산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충실히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정치’에 관한 공약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고위직 공무원 등의 지역편중 인사를 지양하여 지역감정 해소,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 사회 각 부문 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새마을운동의 재정립, 국회기능 활성화 및 깨끗한 정치자금 확충,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정책결정의 공개주의 실천, 6급 이하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1세까지 연장, 5급 승진시험제도 개선 등으로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및 신분보장,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 완전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국민기본권’에 관한 공약으로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제한 근절, 사법권독립 최대한 보장, 법과 제도의 공정운영으로 기회균등 보장, 생활사범 단속으로 안심사회 건설 등을 제시하였다.

‘선진경제’에 관한 공약으로 1인당 국민소득 5,000만 달러 이상 달성, 세계 10위 내 교역국 실현, 연평균 8% 이상 성장 지속, 물가의 안정기조 지속,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대외개방화의 계속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입국 실현, 국내부존자원 및 대체에너지 개발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시장경제원리 확립’에 관한 공약으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용,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대기업에 대한 특혜 배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금리의 자유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 보호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국민복지’에 관한 공약으로는 경제정의의 실현, 조세부담의 공평화와 중립성 확보, 토지공개념의 확대 실시, 공공임대주택 대폭 건설, 근로자의 주택취득 능력 향상,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노인복지시책 강화, 국가유공자의 명예존중과 국가지

원 강화, 여성 활동영역의 제도적 보장, 영세민의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수립, 환경보전과 공해방지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화시대’에 관한 공약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방경제 활성화, 대규모 교통시설의 건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실현, 첨단 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이용 대중화, 쾌적한 휴식 공간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복지농어촌 건설’에 관한 공약으로는 농어촌 공업화의 촉진, 영농구조 개선과 기술혁신,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농어민단체의 자율역량 제고, 농어촌지역의 제반여건 개선, 어장의 유복한 생활터전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근로자 보호’에 관한 공약으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질서 확립, 적정 임금의 보장, 근로조건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촉진사업의 적극 전개 및 노동시장 기능 강화, 학력위주의 사회제도를 자격·기능위주로 개선, 근로자 소득증대, 근로자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문화’에 관한 공약으로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교육개혁사업의 지속 추진, 실업교육의 충실과 평생 교육가치관 확립, 교육자치제 개선과 대학의 자율화,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 청소년들의 발전지향적 가치관 고취,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제시하였다.

‘안보·통일’에 관한 공약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자주국방력 강화, 평화·민주·자주원칙에 따른 민족통일 적극 추진, 88올림픽 성공적 수행,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전개, 재외동포의 적극 보호 지원, 예비군복무기간의 실질적 단축,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조성, 방위병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민주정의당은 채문식 대표위원과 심명보 사무총장이 지역별 당원단합대회나 필승결의대회 등에 참석하여 서울 등 대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 마산시에 구청 및 출장소 설치 검토, 서해안지역종합개발계획 등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선거공약을 내놓기도 하였다.

나.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은 1988년 4월 4일 김명윤 총재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고, 김상현·김동영 등 전·현직 부총재 7명과 박종을 사무총장을 부분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당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1) 선거전략

통일민주당의 선거전략은 김영삼 전 총재의 연고지인 부산·경남지역의 지지표를 결집시키는 것과 야당바람을 일으키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당 지도부의 출마 지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통일민주당의 최대목표는 제1야당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거에 참여한 다른 정당이 대구·경북(민주정의당), 광주·전남·전북(평화민주당), 충남(신민주공화당)을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려면 김영삼 전 총재의 지지기반인 부산·경남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선거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통일민주당 바람을 일으켜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 하에 김명윤 총재직무대행이 서울 종로에서, 김영삼 전 총재가 부산 서구에서 각각 출마하였다.

특히 4개월 전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전 총재가 자신의 연고지인 부산·경남에서 얻은 득표율(53.7%)이 다른 후보자들이 그들의 연고지에서 얻은 득표율⁴⁾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통일민주당으로서는 부산지역의 지지표를 결집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통일민주당은 정통야당임을 내세워 평화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전략도 사용하였다.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민주당과 경쟁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정통야당임을 내세워 비교우위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정의당의 거대 여당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견제세력이 정통야당인 통일민주당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전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의 양당대결 구도로 몰아가려고 하였다. 김명윤 총재직무대행(서울 종로구)이 선전벽보에 “부패세력의 독주냐 양심세력의 견제냐”라고 게재하고, 노무현 후보(부산 동구)가 선거공보에 “민정당과 맞설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게재한 것은 이러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통일민주당은 제1야당의 이점을 살리는 전략도 사용하였다. 다른 야당에게 표를 분산시키면 사표가 되어 결과적으로 민주정의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게 되므로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4)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68.1%,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광주·전남·전북에서 88.4%를 득표하였다.

2) 선거공약

통일민주당은 1988년 4월 12일 ①주권재민과 인권신장, ②민주정치 질서의 기틀 확충, ③행정의 정치적 중립화와 민주봉사체제 확립, ④자주평화통일·외교안보 강화, ⑤문교·문화·여성정책의 혁신, ⑥공정배분 경제의 구현, ⑦국민경제의 내실 있는 성장, ⑧농업정책의 혁신과 농어촌 경제의 회생, ⑨민주노조활동과 노동자 권익보호 등 9개 분야로 구성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주권재민과 인권신장’에 관한 공약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0일에서 48시간으로 대폭 단축, 경찰서 내의 수사보호실 폐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형제도의 개선, 구속자 석방과 사면·복권 추진, 각종 반민주 악법 폐지 및 개정, 보안처분제도의 개선, 법률구조의 전면적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정치 질서 기틀 확충’에 관한 공약으로 「정당법」 개정을 통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국회의 입법조사활동 강화와 청문회제도 도입, 광주사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 새마을 비리와 권력형 부정에 대한 국정조사, 부채자투표 참관인제도 도입 및 투표등가성 원칙에 입각한 국회의원선거구 재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의 정치적 중립화와 민주봉사체제 확립’에 관한 공약으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국가안전기획부의 기구 및 기능 축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 설치, 경찰청 독립,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자주평화통일 및 외교안보 강화’에 관한 공약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교류의 실질화, 재외국민 보호정책 강화와 교민청 신설, 대 미국 및 일본 외교의 자주성 확보, 북방외교 강화 및 황해경제협력권 형성, 병무행정 개선, 강제징집제도 철폐, 연간 예비군교육시간 30시간 단축, 민방위대상자 연령 50세에서 40세로 인하 등을 제시하였다.

‘문교·문화·여성정책의 혁신’에 관한 공약으로 고용·승진·임금·퇴직 등에 있어서 여성 차별 금지, 교육위원회를 주민직선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여 교육자치제 실시, 자주언론의 실천대책, 주제적 민족문화의 창달, 학제를 5·3·4·4제로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공정배분 경제의 구현’에 관한 공약으로 중소기업의 획기적 육성, 물가대책의 적극적 수립, 민생치안의 각종 세법 개정, 중소기업육성인 육성보호, 지방경제 활성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 억제, 저소득자 및 영세민들의 경제자립기반 조성, 증권시장의 건전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국민경제의 내실 있는 성장’에 관한 공약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각종 규제 및 준조세 철폐, 기술입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금융의 자율화 실현, 도시재개발 사업의 개선 및 철거민 대책,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수립, 민생우선의 주택정책 구현 등을 제시하였다.

‘농업정책의 혁신과 농어촌 경제 회생’에 관한 공약으로 농어촌 부채경감 대책 수립, 농·축산물의 가격보장 대책 수립, 농·수·축산물 수입정책의 혁신, 농업재해보험제도의 조기실시, 농·수·축협 민주화, 농지기본법의 제정, 농어촌 의료보험 개선 및 농어민 연금제도 실시, 비료 및 농약정책의 획기적 쇄신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노조활동과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공약으로 각종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위원회 개편 및 노동심판소 설치, 노동권과 노동자의 생활권 확보, 자주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의 확립, 정확한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취업대책 수립, 노동자 복지활동 지원, 노동연구원 및 노동대학 창설, 운전 정밀검사제도 폐지 및 완전월급제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다.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은 1988년 4월 1일 박영숙 총재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하고, 최영근 당무지도 위원회의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당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1) 선거전략

평화민주당의 선거전략도 통일민주당의 선거전략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즉, 당 최고지도자의 연고지역과 상대적으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덜한 수도권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평화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통일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정의당이 대구·경북을, 통일민주당이 부산·경남을, 신민주공화당이 충청을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려면 김대중 전 총재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에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선거전략이 필요하였다.

특히 4개월 전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전 총재가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득표율 1위를 한 곳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평화민주당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었다. 선거공약으로 ‘서울지역(대도시 지역)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사항’을 제시하고, 선거일 이틀 전인 1988년 4월 24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서울지역 전 지구당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김대중 전 총재가 전국구로 출마한 것도 선거전략의 일환이었다. 평화민주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연고지역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강했으므로 당시 분위기상 호남에서는 별다른 선거운동이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김대중 전 총재가 서울지역의 지원유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국구로 출마하는 것이 유리했던 것이다.

평화민주당은 통일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자신들은 군사독재 아래서 가장 고생한 민주투사들이 모인 선명야당이라고 내세우는 전략도 사용하였다. 제1야당 경쟁상대인 통일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화투쟁을 해온 재야인사들을 수도권에 많이 공천하였다.

호남지역에서 출마한 평화민주당 후보자들은 김대중 전 총재의 후광과 지역정서를 이용하는 전략도 사용하였다. 즉, 선전벽보 등에 “김대중과 함께 민주시대로”(전남 순천시 허경만 후보), “가자,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시대로”(나주시·나주군 이재근 후보), “이번에도 몰아찍어 대중의 한 풀어주자”(보성군 유준상 후보) 등 김대중 전 총재의 이름을 넣은 선전문구를 넣어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2) 선거공약

평화민주당은 ①전 국민의 중산화, ②농어촌 문제 해결, ③근로 관계법의 전면 개폐, ④확실한 통일정책의 추진, ⑤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역점 정책사항, ⑥기타 중요한 정책안 등 6개 분야의 선거공약을 제시하였다.

‘전 국민의 중산화’에 관한 공약은 근로자, 농어민, 도시 영세민의 3개 부류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근로자의 중산화를 위한 방안으로 물가연동제에 의한 소득보장, 주 5일근무제 도입, 최저임금제 전면실시, 노동3권 완전보장을 통한 완전한 남녀고용평등 실현 등을 내놓았다. 농어민의 중산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부채정리특별법’ 제정과 농산물 가격보장 대책 수립, 농지구입 자금을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 등을 내놓았다. 도시영세민의 중산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금액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 연

간 매출액 2,000만 원 이하의 영세상인 면세조치, 영세민 임대주택을 13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1,000만 원에 공급하는 것 등을 내놓았다. 또 국·공기업의 주식 50%를 국민주로 매각하여 주식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것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농·어촌 문제 해결’에 관한 공약으로 농민의 부채를 일시에 탕감하고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부채탕감 채권을 정부에서 5년간 분할 상환하며, 농지경작에 따른 철저한 소득비례식 부담원칙이 지켜지도록 의료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근로 관계법의 전면 개폐’에 관한 공약으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8시간 근로시간 엄수, 최저임금제 실시, 불합리한 근로관계법을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전면 개폐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통일정책’에 관한 공약으로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론, 휴전상태 종식과 평화협정체결 추진, UN 동시가입 추진과 불가능 시 단독가입 방안 적극 검토, 남북책임자회의 연례화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역점 정책’에 관한 공약으로 영재교육을 통한 우수 공립고등학교 부활, 국비 장학생의 대거 선진국 파견, 국회의 대행정부 권한강화로 미국의 부당한 압력 배제, 세계시장의 다양화로 대미·대일 의존 무역정책을 탈피하겠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기타 중요 정책’에 관한 공약으로는 정년퇴직 연령을 65~71세로 추진, 화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한·중외교에 기여, 정부관리·군 인사의 공정화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평화민주당은 1988년 4월 14일 전남지역의 7개 지구당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전 총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을 포함한 지방자치제의 조속시행, 도 단위 행정구역 개편, 본적제도 폐지, 공직자의 지역 간 인사 교류실시, 언론자유 보장과 정치자금 양성화 등의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라. 신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3월 29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대회를 열고, 3월 30일에는 김용태 고문과 김용채 사무총장을 각각 위원장과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1) 선거전략

신민주공화당도 통일민주당이나 평화민주당과 같이 당 최고지도자의 연고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김종필 총재의 연고지인 충남에서 신민주공화당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략을 펼쳤다.

특히 지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종필 총재가 충남에서 얻은 득표율(45.0%)은 다른 후보자들이 그들의 연고지에서 얻은 득표율⁵⁾에 비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충남에서 신민주공화당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김종필 총재는 자신의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한국의 희망, 부여의 자랑”, “김종필하면 부여, 부여하면 김종필” 등의 문구를 게재하였다. 충남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는 “멋진 김종필에 찬사를”(대전시중구 김홍만 후보), “김종필 총재를 모시고 당진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당진군 송영진 후보) 등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문구를 게재한 후보자도 있었다.

신민주공화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임을 내세워 다른 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전략도 사용하였다. 즉,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을 반대와 분열을 일삼는 수권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공격하고, 자신들은 국정경험과 대안이 있는 정책정당이라고 내세웠다. 이런 전략 하에 “이당 저당 못 믿겠다, 이번에는 신민주공화당”이라는 선전구호를 사용하였다.

2) 선거공약

신민주공화당은 먼저 국회의 정치 본산화, 반민주 악법의 폐지, 민생·부민경제 실현, 정권 교체 기반조성 등 4개 항목의 국정기본자세와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민주화 실현’에 관한 공약으로 불법체포·고문 등 일체의 인권유린 근절, 안전기획부·보안사령부 등 권력기관의 정보공작정치 근절, 공안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경찰독립, 책임규명과 보상 등 광주사태의 원천적 해결, 주민 직접선출의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농어민 고통해결’에 관한 공약으로 농어민 부채를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농축산물의 수입 금지와 농어민 의료보험의 50%이상 국가부담, 영농자금의 호당 100만 원선 확대, 농·

5)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68.1%,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부산·경남에서 53.7%,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광주·전남·전북에서 88.4%를 득표하였다.

수·축협조합장의 농어민 직접선출 등을 제시하였다.

‘영세서민 생활보장’에 관한 공약으로 영세상인의 자활을 위한 가설시장 설치,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 금지, 서민용 값싼 임대주택 건설촉진, 생활보호자의 생계비 보조 현실화, 의료보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신장’에 관한 공약으로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제 전면실시, 최저임금을 1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실업보험제의 조기실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의 전원 복직과 구속된 근로자의 전원석방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육성 진흥’에 관한 공약으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정책 획기적 전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공약으로 여성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및 배우자간의 상속·증여세 전액 면제, ‘부정·부패 발본색원’에 관한 공약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불법·비리 재조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입시지옥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 설립 지원, 대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망의 지하철 연계 및 도심 순환도로 신설·확충, 국민편익 도모를 위해 인허가 업무 대폭 간소화 및 대학생 과외활동 허용,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제2경인고속도로 신설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관광단지와 공업단지 건립, 시민회관 및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확충, 향토문화 발굴, 읍의 시 승격과 시의 직할시 승격 등 지방도시의 개발 촉진, 댐 건설과 하천유역 개발 등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마. 기타 정당

앞의 4개 정당 외에도 신한민주당·민주한국당·한겨레민주당·한국국민당·기독교민당·민중의당·사회민주당·우리정의당·제3세대당·한주의통일한국당 등 10개 정당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다. 이들 정당의 선거전략이나 선거공약은 언론이나 유권자들로부터 크게 주목 받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들 정당은 주로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의 분열을 공격하여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제12대 국회 초기 한때 제1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은 정통야당의 뿌리임을 내세우고,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을 분당과 분열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공격하며 보수성향의 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민주한국당은 중소기업 육성과 대기업 독주 근절, 불량청소년의 범죄행위 예방 및 범법자 선도 등 청소년 제도개선, 농어민·서민근로자·저소득 노동자의 의료비 100% 정부 부담을 통한 국민 보건향상 등의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한겨레민주당은 다른 정당 후보자의 대다수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민주화 혹은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특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한국국민당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이합집산을 겪지 않은 유일한 정당임을 강조하며 철새정치의 청산을 내걸고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및 신민주공화당 등을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기독교민당의 후보자들은 선거공보 등을 통해 투표소에서의 개표, 국토변경에 관한 사항의 국민투표 실시, 부정·부패·범죄 등이 없는 성민사회 건설, 도덕성과 합법성으로 전 국민의 새마음운동 전개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중의당은 도시빈민층 및 근로자 특히 운동권 학생들을 집중 공략대상으로 삼고 독점재벌의 경제지배 타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도시서민의 생존권 확보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사회민주당은 정통 진보주의적 정당임을 홍보하는 선거전략을 사용하며 민족·민주·진보된 개혁정치 전개, 망국의 근원인 지역감정 해소책 강구, 금권·타락선거의 배제를 위한 선거공영제 실시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우리정의당은 정치인의 세대교체와 생활인의 정치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민족의 주체적 역량 확립, 사회적 정의의 구현, 민주이념의 생활화, 한민족의 통일된 민주공동체 실현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2.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1988년 4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선전벽보·선거공보·현수막·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 등의 5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기간 전

부터 지구당창당대회나 당원단합대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가. 선전벽보

지역구후보자의 선전벽보는 후보자가 원고를 작성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쇄하여 4월 21일까지 첩부하였다. 선전벽보의 첩부기준은 지난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구·시 지역은 인구 300인에 1매, 군 지역은 100인에 2매 비율이었다. 이런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첩부된 선전벽보는 366,219개소에 1,583,663매였다.

전국구후보자의 선전벽보는 원고를 제출한 정당이 없어서 첩부할 수 없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선거 때 전국구제도가 부활되면서 전국구후보자도 선전벽보를 첩부할 수 있었는데, 제11대 및 제12대 이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국구후보자의 선전벽보를 제출한 정당이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첩부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선전벽보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 등의 건물 벽이나 담벼락에 주로 첩부하였는데 건물주들이 벽면 훼손을 이유로 첩부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대도시의 경우에는 임시계시관을 설치하여 선전벽보를 첩부하였다.

후보자들은 선전벽보에 자신의 성명과 정당명, 사진, 기호, 학력 및 경력, 짤막한 선전문구 등을 게재하였다. 선전문구는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 자신의 정치적 위상, 지역구의 제반 사정, 상대편 후보자의 비중 정도 등에 따라서 그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소속 정당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후보자도 있었고, 지역발전 공약을 부각시키는 후보자도 있었다. 여당 후보자는 주로 지역공약에 관한 문구를, 야당 후보자는 소속 정당이나 개인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일부 야당 후보자 중에는 자당(自黨) 최고지도자의 이름을 선전문구로 인용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정의당 심명보 사무총장(강원도 영월군·평창군)과 유홍수 사무차장(부산 남구갑)은 “나라와 지역의 큰 일꾼”, “밀어주자! 큰 정치인!”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대순 원내총무(전남 고흥군)는 “고흥발전 다진일꾼 다시뽑아 지역번영”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지역발전을 부각시켰고, 이종찬 후보(서울 종로구)도 “종로의 뿌리 깊은 나무”라고 게재하여 지역연고를

부각시켰다.

통일민주당 김영삼 전 총재(부산 서구)는 지난 대통령선거의 패배를 의식한 듯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김명윤 총재권한대행(서울 종로구)은 “부패세력의 독주나 양심세력의 견제나”를 게재하여 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문구를 게재하였고, 김현규 원내총무(대구 중구)는 “90년대의 기수, 정치 1번지 중구의 명예”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지역적 연고를 부각시켰다.

평화민주당 김영배 사무총장(서울 양천구)은 “인물보고 몰아찍자, 양천이 키운 나라의 큰 일꾼”, 허경만 원내총무(전남 순천시)는 “새 순천 새 각오 새 출발 김대중과 함께 민주시대로”, 안동선 대변인(경기도 부천시중구)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평화민주당 전남 지역의 후보자들은 김대중 전 총재의 이름을 선전문구로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박상천 후보(전남 고흥군)는 “대중은 김대중, 고흥은 박상천”, 이재근 후보(나주시·나주군)는 “가자, 김대중과 함께, 민주화시대로”, 유준상 후보(전남 보성군)는 “이번에도 몰아 찍어 대중의 한 풀어주자”라는 선전문구를 게재하였다.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충남 부여)는 “한국의 희망, 부여의 자랑”, 김용채 사무총장(서울 노원구)과 조용직 대변인(서울 송파구)은 “이번에는 공화당을!”이라는 선전문구를 사용하였다. 신민주공화당 충남 지역의 후보자 중에는 김종필 총재의 이름을 선전문구로 인용한 경우도 있었다. 김홍만 후보(충남 대전시중구)는 “멋진 김종필에 찬사를, 깨끗한 김홍만에 한표를”, 송영진 후보(충남 당진군)는 “김종필 총재를 모시고 당진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신한민주당 이철승 후보(전북 전주시)은 “막자! 야당독주 세우자 민주야당”, 한겨레민주당 예춘호 총재(부산 영도구)는 “영도가 낳은 큰 일꾼”, 민주한국당 유치송 총재(경기 송탄시)는 “참된 인간 바른 정치”, 한국국민당 이만섭 총재(대구 달서구)는 “지조 지킨 이만섭 경륜으로 달서발전”이라는 선전문구를 게재하였다.

무소속 이철 후보(서울 도봉구)는 “죽음을 넘어선 용기와 지조 고난을 이겨낸 신념과 원칙”, 무소속 박찬중 후보(서울 서초구)는 “90년대 선구자 박찬중 단일화·통합서명과 무소속”, 무소속 홍사덕 후보(서울 강남구)는 “야당개혁! 홍사덕”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선전벽보와 관련된 사건·사고로는 선전벽보를 잘못 인쇄하여 이를 폐기하고 다시 인쇄한

사례가 있었다. 연천군·포천군선거구에서 출마한 평화민주당 김유근 후보자의 경력 ‘민권당 연천·포천지구당위원장’을 인쇄소의 잘못으로 ‘민정당 연천·포천지구당위원장’으로 잘못 인쇄하였다. 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 인쇄한 선전벽보 4,000매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고 새로 인쇄한 후 첩부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전벽보



나. 선거공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원고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쇄하여 부재자신고인에게는 4월 18까지, 매세대에는 4월 22일까지 우편발송하였다. 전국적으로 발송한 선거공보는 총 11,136,812통(부재자 678,370통, 매세대 10,458,442통)이었다.

선거공보는 선전벽보보다 크기는 작지만 2개면으로 작성할 수 있었고, 게재 가능한 글자수도 선전벽보의 1,000자 보다 많은 5,000자였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선거공보에 긴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민주정의당 심명보 사무총장(강원도 영월군·평창군)은 “왜 심명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왜 민정당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집권당의 이미지와 자신의 역할을 연결시키는 문안을 게재하였다. 같은 당의 유경현 대변인(전남 구례군·승주군)은 “고마우신 부모 형제자매님께” 제목으로 구례군과 승주군의 지역개발공약과 그동안의 공약추진사항을 게재하였다. 같은 당 한승수 후보(강원도 춘천시)는 “일터와 쉼터를 함께하는 도시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지역개발 위주의 공약을 게재하였다.

통일민주당 김영삼 전 총재(부산 서구)는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야당을 재
건하겠다는 내용을 실었다. 같은 당 노무현 후보(부산 동구)는 “제6공화국은 5.5공화국이다,
민정당과 맞설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의 편에 서고 싶다, 부산시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같은 당 김상현 부총재는 “17년 동안 묶였던 독재의
사슬을 여러분의 손으로 풀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역정과 서대문구와의
연고를 부각시키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민주정의당 유경현 후보(전남 구례군·승주군)

통일민주당 노무현 후보(부산 동구)

평화민주당 허경만 후보(전남 순천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충남 부여군)

평화민주당 허경만 원내총무(전남 순천시)는 “평화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10대 이유”를 적시하였다. 같은 당 문희상 후보(경기 의정부)는 “의정부의 아들 키우자 몰표로”의 제목으로 지역개발공약을, 조운형 후보(서울 성북구)는 “큰 정치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정치적 역정과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 이유 등을 게재하였다. 역시 같은 당 권노갑 후보(전남 목포시)는 “권노갑의 당선은 위대한 목포시민의 승리이며 김대중 선생님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충남 부여군)는 “김종필하면 부여, 부여하면 김종필” 등의 문안을 게재하여 충청도와 부여에서의 연고를 강조하였다. 신한민주당 김병수 사무총장(서울 송파구)는 “더불어 살아갈 인정 많은 사나이, 항상 노인을 공경하고 함께하는 사람” 등 개인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한겨레민주당 조순형 후보(서울 도봉구)는 “야권 대통합과 진정한 군정종식”을, 민주한국당 유치송 총재(대구 달서구)는 5선 의원의 경륜을, 한국국민당 이만섭 총재(대구 달서구)는 참 정치인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선거공보와 관련된 사건·사고로는 부주의로 인쇄를 잘못된 경우와 선전구호를 1면에 게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인천 북구갑선거관리위원회와 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같은 인쇄소에 인쇄를 맡겼다. 인쇄소의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북구갑선거구과 북구을선거구의 후보자 간에 사진과 경력 등이 서로 바뀌어 인쇄가 되었고, 이 선거공보가 매세대에 발송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당원들이 북구갑선거관리위원회와 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선거연기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북구갑선거관리위원회와 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다시 인쇄하여 재발송하고, 각 동사무소의 행정방송 등을 통하여 사과방송을 하였다. 선거가 끝난 뒤 북구을선거구에서 낙선한 통일민주당 이병현 후보, 평화민주당 지영길 후보, 신민주공화당 허섭 후보 등이 북구갑·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당선자인 민주정의당 이승윤 후보를 상대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결과 대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다.

충남 대천시선거구에서는 선거공보 제1면에 선전문구를 게재하여 상대방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공보의 제1면에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고, 제2면에는 경력·정견 등의 선전문구와 전국구후보자 성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사진을 제외한 제1면의 기재사항을 제2면에 기재할 수 있으며 성명·기호는 양면에 모두 기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전문구는 제1면에는 기재할 수 없었다. 민주정의당 이대희 후보는 이 규정을 어기고 제1면에 “내고장 토박이 큰머슴”이라는 선전문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의 당원들이 이의제기를 하며 부재자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이 선거공보를 동봉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였다. 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우편투표용지 발송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부재자신고인에게 보내는 선거공보는 문제의 선전문구를 흑색으로 지워 알아볼 수 없게 한 후 발송하였고, 매세대에게 보내는 선거공보는 올바르게 다시 인쇄하여 발송하였다.

충북 청주시갑선거구에서도 선전문구를 제1면에 게재하려는 후보자가 있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통일민주당 김현수 후보가 학력과 경력 및 선전문구를 제1면에 게재한 선거공보원고를 제출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제2면에 게재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다. 김현수 후보는 선전문구 삭제는 동의하였으나 학력과 경력의 삭제는 거부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현수 후보에게 수정할 것을 권유하고, 등기속달 우편으로도 이런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김현수 후보는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국 해당부분을 제외한 채 선거공보를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선거결과 김현수 후보는 낙선하였고, 그는 이런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청구하였다. 소송결과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하였다.

부산시 부산진구을선거구에서는 선거공보의 편철을 잘못하여 후보자 측에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선거공보를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 한 권으로 제본하여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었다. 부산진구을선거구의 선거공보 중에는 인쇄소의 제본 착오로 기호 2번 통일민주당 김정수 후보의 제2면 편철순서에 기호 6번 이창용 후보의 제1면이 편철된 것이 있었고, 김정수 후보 등 20여 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찾아와 항의하였다.

다.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는 지역구마다 3회 개최하되,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시·군으로 된 경우는 시·군마다 각각 3회씩 개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1988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846회의 합동연설회가 개최되었다.

법정 개최횟수는 이보다 3회가 더 많은 총 849회였으나 경상북도 울릉군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전원이 참석을 포기하여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846회만 개최하였다. 울릉군에서는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도 3회 중 1회만 개최하고 나머지 2회는 청중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자 전원이 참석을 포기하여 개최하지 못하였다.

합동연설회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 후보자들은 주로 정국안정과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원내 안정의식의 필요성, 투쟁과 분열을 일삼는 3김 청산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발전은 여당후보만이 할 수 있다며 지역개발에 관한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이에 반해 야당후보자들은 새마을운동본부 비리 등 제5공화국의 권력형 부정사건 등을 거론한 후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의 체제연장이라며 정부·여당을 공격하였다. 또한 야당후보자들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였다. 야당후보자들은 정통야당·선명야당에 관한 주장을 벌이기도 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 장면



서울 동대문 전곡초등학교



연설순위 추첨 장면(경남 총무)

합동연설회는 당시 가장 핵심적인 선거운동이었다. 따라서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가 합동연설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후보자들은 이전의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자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일당을 주고 합동연설회장에 청중들을 동원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합동연설회장의 청중수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총 청중수는 490만

여 명이었는데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보다 80만여 명이 줄어든 407만여 명이었다. 청중수가 줄어 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사항이 어느 정도 걸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양김의 분열로 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이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느낀 것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었다.

합동연설회의 진행과정에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났다. 후보자들이 청중을 동원하여 복과 팽과리 등을 치며 세를 과시하는가 하면 선거운동원들 간에 싸움도 자주 일어났다. 연설 중인 후보자에게 돌 등을 던지기도 하고, 후보자를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광주 서구갑선거구에서 개최된 합동연설회에서는 청중들의 야유와 소란행위로 합동연설회가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청중들이 돌과 구슬 및 계란 등을 연설 중인 후보자에게 던졌고, 상대방 후보자 측의 지지자들과 서로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1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부산 안락초등학교에서 개최된 동래구갑선거구의 합동연설회에서는 민주정의당 강경식 후보와 통일민주당 박관용 후보의 지지자 수십 명이 충돌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마에 3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고, 다른 사람도 음료수병에 눈을 맞았다. 이외에도 여러 곳의 선거구에서 상대방 후보자 지지자들과 패싸움 등의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라. 기타 선거운동

앞에서 기술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외에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할 수 있는 법정 선거운동은 현수막 게시와 소형인쇄물 배부 등이 있었다.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및 소속정당명만을 게재할 수 있었으나 선전구호 등은 게재할 수 없었다. 현수막의 게시매수는 구·시 지역은 관할 동수에 상당하는 매수 이내, 군 지역은 읍은 2매 이내, 면은 1매였다. 이런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게시된 현수막 매수는 총 15,638매였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운동기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가 많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철거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후보자 측의 선거운동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선거관리위



▲ 선거운동 현수막 (서울 종로구)



▲ 선거운동 현수막 (서울 종로구)

와 수량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배부할 수 있었는데, 주로 합동연설회장 등에서 많이 배부하였다.

3. 선거쟁점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3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실시되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큰 정치적 쟁점들이 이미 걸러졌으므로 새로운 쟁점거리는 별로 없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쟁점거리가 되어 온 안정론과 견제론, 선명야당 경쟁, 권력형 비리사건 등이 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쟁점이 되었다.

원회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강원도 강릉시선거구에서 밤에 누군가가 통일민주당 허순욱 후보의 현수막 10매와 신민주공화당 최각규 후보의 현수막 3매를 훼손하는 등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현수막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례가 있었다.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연령·소속 정당명·직업·경력·정견 등을 게재하여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에게 이를 직접 배부할 수 있었다. 종수

가. 안정론과 견제론

안정론과 견제론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일반적인 선거쟁점이었다. 역대 선거에서 여당은 주로 안정론을 내세우고 야당은 견제론을 주장하였는데 제11대 및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되풀이되었다. 다만, 안정론과 견제론을 내세우는 명분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새로운 헌법은 국정감사권, 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반면 행정부는 국회 견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민주정의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적 전환기에 정국안정이 필요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원활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도 민주정의당이 원내과반수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견제론으로 맞섰다. 야당은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한 민주정의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다수의석을 획득하여 거대여당이 되면 제5공화국 비리 문제, 내각제 개헌 등 주요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국정운영의 독주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야당으로 표를 분산시키지 말고 견제세력의 역할을 맡을 자기 당으로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였다.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전 총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합동연설회 등을 통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거대여당으로 가려는 민주정의당의 독주를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며 정통보수 야당인 통일민주당을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키워달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전 총재도 전국순회 지원유세를 통해 민주정의당이 부정선거를 통해 비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견제세력의 존재가 절실한 만큼 선명야당인 평화민주당을 지지하여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도 전국 순회유세를 통해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민주정의당에게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줄 경우 상투적인 힘의 논리밖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야당들이 거대여당 독주에 대한 견제론을 내세우자 민주정의당 또한 선거중반까지 안정론을 강조하였다. 선거일을 6일 남겨둔 1988년 4월 20일 민주정의당 채문식 대표위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정의당 후보들은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와 지역감정 등으로 인하여 서울·부산·충남지역에서 예상보다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안

정의석을 얻지 못하면 국정운영의 마비 등 과문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당이 안정 의석을 얻지 못하면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실천 불가, 행정부의 국회 인질화, 나라살림의 파행적 운영, 국정감사권 과잉발동, 경제발전·민주화·올림픽 차질 등 8대 과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안정론과 견제론의 대결양상은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선거일 전날인 1988년 4월 25일 여야 각 정당은 대표와 전 총재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안정과 견제를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공방전을 전개하였고, 선거일인 4월 26일에도 각 정당은 안정론과 견제론을 둘러싼 성명전을 벌였다.

나. 제1야당 경쟁

‘제1야당 경쟁’도 ‘안정론과 견제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재현되는 선거쟁점이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민주한국당과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경쟁을 벌였다.

정치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경쟁논리도 이전의 선거와는 달랐다. 제11대와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주로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강력한 민주화 투쟁의지를 내세우는 것을 경쟁 논리로 삼았다. 그러나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거대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야당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 양김이 분열하고,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뀐 후에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여서 경쟁이 더욱 치열하고 복잡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같은 야당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숙명적인 경쟁관계였던 양김이 향후 야권통합 등 정국 주도권 장악을 염두에 두고 총력을 기울였으므로 제1야당에 대한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통일민주당은 당시 제1야당이었으므로 계속 제1야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통야당임을 내세워 평화민주당을 공격하였다. 즉, 민주정의당의 거대 여당화를 막기 위해서는 견제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통야당인 통일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분산시키거나 사표를 만들지 말고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 후보자들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선명성과 이념성을 내세우는 논리를 전개하여 통일민주당을 공격하였다. 즉, 유신 이래 군사독재 아래서 가장 고생한 민주투사들이 모인 선명야당이고, 중산층과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민정당임을 내세웠다. 대신에 통일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몰아붙였다. 또한 대통령직선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서 관철시킨 ‘믿을 수 있는 야당임’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신민주공화당도 유권자들에게 제1야당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집권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분열을 일삼는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는 안 되고, 집권경험이 있고 여당의 생리나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신민주공화당이 제1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권력형 비리사건

권력형 비리사건도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흔히 나타나는 선거쟁점이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등이 개입된 어음사기 사건인 ‘이철희·장영자 사건’, ‘정래혁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의 부정축재의혹 사건’, 김철호 명성그룹 회장의 거액 횡령 사건인 ‘명성사건’, 이정식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부회장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사건인 ‘이정식 사건’ (또는 ‘대지사건’이라고도 함) 등이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선거쟁점이 되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선거사 제4집』, “제6장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참조).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절 선거전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거일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터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의 횡령 및 탈세사건 즉,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이 선거쟁점이 되었다. 야당은 일제히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민주정의당을 공격하였다.

통일민주당 김명윤 총재권한대행과 김영삼 전 총재는 전국 지원유세를 통하여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을 부각시킨 후, 노태우 정권이 이를 은폐하려고 한다며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평화민주당도 “노태우 대통령이 제5공화국의 내무부장관 시절 새마을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예산이 역대 어느 장관 때보다 많았고, 20여 명의 새마을 관련자가 민주정의당의 공천을 받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정의당을 공격하였다. 김대중 전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이 전경환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종결지으려는 것은 1980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전두환 전대통령의 소환조사도 촉구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제5공화국의 비리·부정을 수록한 “민주정의당을 고발한다”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 등을 비판하고, 제6공화국은 힘의 논리로 유지된 제5공화국 체제의 연장일 뿐이라며 민주정의당을 공격하였다.

이와 같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민주정의당은 전경환 전 회장의 구속사례를 들어 대통령의 친인척도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이 선거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을 비롯하여 과거비리의 척결 의지를 밝히며 제5공화국과의 단절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제5절 선거비용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등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정당이나 후보자가 부담하되, 그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가 끝난 후 그 지출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1. 선거비용제한액

지역구후보자와 전국구후보자는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출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산출주체도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달한 비목별 산출기준표에 의해 산정한 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988년 4월 11일까지 공시하였다. 비목별 산출기준은 ①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②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등의 실비보상액, ③자동차·선박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④현수막·소형인쇄물 등의 작성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⑤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⑥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등 6가지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전국 224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8,282만 4,196

원으로 지난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평균 제한액(7,058만 783원)보다 17.3% 인상된 금액이었다. 이 인상은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가장 낮았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보다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사무원수를 늘리는 등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요인이 생겼는데도 인상이 낮았던 이유는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선거운동의 지역적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표 2-9> 지역구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및 인상률

(단위 : 원)

구분	제10대 국선 (1978. 12. 12)	제11대 국선 (1981. 3. 25)	제12대 국선 (1985. 2. 12)	제13대 국선 (1988. 4. 26)
지역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11,629,016	49,431,000	70,580,783	82,824,196
직전 국회의원선거 대비 인상률(%)	-	325.1	42.8	17.3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는 전남 해남군·진도군선거구로 1억 6,426만 4,000원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구는 강원도 동해시선거구로 5,595만 9,000원이었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출에 있어서 읍·면·동수나 투표구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읍·면·동수나 투표구수가 많은 지역구는 선거비용제한액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적었다.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구선거사무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등 4개의 기본비목에다가 전국구후보자 1인당 가산액(125만 원)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기본비목이 3개였는데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비목 1개를 추가하여 4개 비목으로 늘렸다.

<표 2-10> 전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산출기준

(단위 : 원)

기본 비목					전국구후보자 1인당 가산액
전국구선거사무소의 임 차료 또는 유지비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의 수당과 실비보상액	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소 계	
11,881,000	42,078,000	65,739,000	2,987,000	122,685,000	1,250,000

이와 같은 산출기준에 의해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한 결과 민주정의당이 2억 18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일민주당은 1억 7,268만 5,000원, 평화민주당은 1억 7,018만 5,000원, 신민주공화당은 1억 5,393만 5,000원이었다. 후보자 1인당 가산액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많이 공천한 정당은 선거비용제한액도 많았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기본비목과 전국구후보자 1인당 가산액은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비해 각각 119.1%와 34.4%가 인상된 금액이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비해 기본비목이 1개 추가됨에 따라 인상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표 2-11〉 전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기본비목 및 1인당 가산액 인상률

(단위: 원)

구 분		제11대 국선	제12대 국선	제13대 국선
기본비목	금 액	28,627,000	55,996,000	122,685,000
	인상률(%)	-	95.6	119.1
전국구후보자 1인당 가산액	금 액	890,000	930,000	1,250,000
	인상률(%)	-	4.5	34.4

2. 선거비용지출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지역구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나고 1988년 5월 11일(선거일 후 15일)까지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후보자는 없었다.

지역구후보자 1,046명이 지출한 선거비용 총액은 약 509억 원이고, 후보자 1인당 평균지출액은 4,957만 260원으로 평균제한액(8,282만 4,196원) 대비 59.8%를 지출하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17년 만에 소선거구제로 치러져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으므로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이보다 더 많이 지출했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자는 민주정의당 정시채 후보

(전남 해남군·진도군)로 1억 5,681만 6,500원을 지출하였고, 가장 적게 지출한 후보자는 한 주의통일한국당 김사석 후보(전남 담양군·장성군)로 60만 원을 지출하였다. 두 후보자는 모두 낙선하였다.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전국구후보자를 등록시킨 7개 정당은 선거가 끝나고 1988년 5월 11일까지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당이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정당은 없었다. 또한 민주정의당·평화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개 정당은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으나, 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겨레민주당·우리정의당 등 4개 정당은 선거비용을 아예 지출하지 않았다.

3개 정당이 지출한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약 1억 7,000만 원이었다.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정당은 신민주공화당으로 제한액 대비 54.0%인 8,31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은 제한액 대비 41.2%를 지출한 민주정의당, 2.6%를 지출한 평화민주당 순이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2-12>와 같다.

선거결과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을 하나도 지출하지 않은 통일민주당은 13명의 전국구후보자가 당선되었고,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신민주공화당은 8명의 전국구후보자가 당선되었다.

<표 2-12>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전국구후보자 선거비용지출상황

(단위 : 원)

정 당 별	선거비용제한액	지출액	지출비율
민주정의당	200,185,000	82,500,000	41.2%
평화민주당	170,185,000	4,500,000	2.6%
통일민주당	172,685,000	-	-
신민주공화당	153,935,000	83,108,000	54.0%
기타 정당	378,055,000	-	-

제6절

공명선거활동

공명선거활동을 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였다. 일부 종교단체와 재야단체가 공명선거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감시활동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었다. 일부 단체는 공명선거활동 명목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활동의 목표를 선거관리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데 두었다. 이는 4개월 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났던 ‘구로구을선관위 우편투표함 탈취사건’을 비롯하여 투·개표과정의 물의사례들이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야기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에는 주로 언론, 인쇄물, 시설물 등이 이용되었다.

가. 언론매체 이용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명선거활동은 신문·방송에 광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담화문 발표 등이었다. 또한 언론사 자체적으로 공명선거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언론을 이용한 공명선거활동이 신속성과 전파성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제13대 대통령선거와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그 비중이 점차 커져갔다.

방송광고는 주로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방법 안내,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텔레비전에 96회, 라디오에 699회를 실시하였다. 신문광고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샘물”,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다음 문제다”, “선거일 하루 만이 아닌 앞으로 4년간을 생각합시다”라는 제목

으로 3종을 제작하여 중앙지와 지방지에 총 34회 게재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신문광고

후보자는 깨끗하게, 유권자는 올바르게, 선거권리는 공정하게

선거는 민주주의의 샘물



**샘물이 오염되면 건강을 지탱할 수 없듯
불법·탈법으로 선거가 오염되면
민주주의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물에 있듯이 민주주의의 생명은 바로 선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샘물이라고 합니다. 샘물이 오염되면 사람들이 건강을 지탱할 수 없듯이 불법·탈법으로 선거가 오염되면 민주주의 또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장담 후보자는 청정양양리 경쟁하고 국민 모두는 청정스러운 마음으로 한표를 행사하여 이땅에 청되고 건전한 민주주의가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선거일 당부의 말씀이 필요한 청정양양리 국민에게
이의 신청을 통하여 바로 관측 수 있습니다.

●기간: 1988. 4. 14~4. 15
●장소: 양양군청 3층 대회의실
●참석: 유, 민, 당사자, 언론, 유, 민의 장이 지정된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선일보 1988년 4월 14일 3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유권자는 올바르게, 선거권리는 공정하게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다음 문제다”

민주주의의 진가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면에서 승부수립됩니다.” 민주주의의 진가는 결과가 아니라
“최의 대신 고종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해 줄 사람으로” 찾아지는 것 -
이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후보자들간에 오고갈 위한 선거에서 오고 가는 많은 것이 나라를
이런 연합을 상징합니다. 위한 발전적으로 수놓을 때, 이기고 지는 것은 민주 속에서의
기을리고, 패자와 그 지지자는 자기 고장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4년간 정을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것이 밝혀지는 우리의 4년간 정을 향유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선일보 1988년 4월 21일 13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유권자는 올바르게

선거일 하루만이 아닌 앞으로 4년간을 생각합시다.

88

선민의 날이 왔습니다.
나의 선의의 시민이나 열린 공
개인의 이해에 차주된 것은 아닌지?
가장이나 유권자에게 한복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누가 진정 새시대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을 대표로서 자라야
있고요! 선민의 날이 올 때, 우리
장숙한 민주야망을 후당없이 발휘하여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여 화합합니다.
선거일은 당 유권자의 이해 관계에
앞으로 4년, 아니 국가의 백년대계가
결리있음을 생각합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2

(조선일보 4월 24일 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담화문은 3회에 걸쳐 발표하고 이를 신문에 광고형식으로 게재하였다. 1988년 4월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는 선거일공고에 즈음하여 유권자에게는 주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것을, 후보자에게는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투·개표참관인에게는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당부하였다. 4월 1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는 합동연설회장의 선거폭력과 불법 집회, 헛불 행진 등 과열된 선거운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월 25일 발표한 담화문에서는 올바른 선거권행사, 투·개표질서유지, 선거결과 승복 등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들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60여 회의 대담·해설프로에 참석하여 선거절차나 기권방지, 공명선거 등을 안내 또는 당부하였다. 언론사 자체적으로 공명선거를 전파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기획보도 등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언론사에서 100여 회의 기획보도 등을 실시하였다. 이때 신문에 보도된 기사나 사설로는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치러진다”(조선일보), “후유증 없는 총선을 치르자”(서울신문), “땃땃하게 깨끗하게, 선거풍토부터 달라져야”(한국일보) 등이 있었다.

나. 인쇄물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인쇄물로는 포스터와 담배광고 등이 있었다. 제한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시작하여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공명선거활동에 많이 이용하였던 표어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제작하지 않았다.

포스터는 ‘도자기를 빚는 손’이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에 “정성이 깃든 내 한표를”, “엄마 아빠의 바른 선택 아들 딸의 밝은 미래” 등의 문구를 넣어 22만 부(3종)를 제작하여 첩부하였다.

담배광고는 전매청의 협조를 받아 ‘술’과 ‘아리랑’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뱃갑 표면에 공명선거를 상징하는 그림과 문구를 게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광고에 활용된 담뱃갑은 총 3,500만 갑이었다.

이외에도 ‘바른선거 바른절차’라는 제목으로 선거절차를 해설한 책자 19만여 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국회의원선거 계도자료집 344부와 계도방송문안집 49,000여 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등의 행정기관에서 행정방송에 활용하게 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포스터



다. 시설물 이용 등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시설물은 아치, 선전탑, 육교 현판, 청사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현판, 현수막, 입간판 등이었다. 전국적으로 아치 13개, 선전탑 26개, 청사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현판 9개, 현수막 286개, 입간판 269개를 설치하였다.

시설물 이용 시 게재한 홍보문구는 주로 “후보자는 공정하게 유권자는 현명하게”, “서로 믿는 밝은 사회 정성 깃든 내 한표로”, “바른 선택이 바른 정치를 만듭니다”, “민주발전 사회 안정 올바른 내 한표로”, “내 한표가 올바르게 공명선거 절로 된다”, “질서 속에 선의경쟁 화합속에 밝은 내일” 등이었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깨끗하게”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선거 절차를 해설하는 영화(10분 분량) 1편과, “바른 선거 바른 절차”라는 제목의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전국의 극장과 텔레비전 및 유선방송국 등을 통하여 상영하였다. 또한 기권방지 등을 안내하는 가두방송용 녹음 테이프도 제작하여 동·리의 행정방송과 방송용 차량을 이용하여 방송하였고, 합동연설회장에서도 연설회 개시 전후에 방송하였다.

선거계도용 시설물(서울, 부산)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정부는 국무회의나 관계부처 장관의 담화문을 통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활동을 하였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988년 4월 7일 이현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선거공고일 이전부터 현수막·벽보의 불법 부착, 주민등록의 이전 등 탈법 사전선거운동이 난무하고 공명선거분위기가 크게 흐려졌다”고 지적하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불법선거운동 및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수집과 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였다.

선거일공고일인 1988년 4월 8일에는 이상희 내무부장관과 정해창 법무부장관 공동명의로 “선거에 즈음한 담화문”을 일간신문에 게재하였다. 정부는 이 담화에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집행하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뒤,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내일을 기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4개월 전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정의당의 총재로, 패배한 3김은 여전히 자신이 소속해 있던 당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에서 직접 지역구나 전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치러지는 선거였다. 이 때문에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1노 3김’의 제2차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만큼 선거가 과열되었다. 더욱이 이전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만 선출하게 되어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도 많이 나타났다.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한 기관은 검찰과 경찰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단속활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반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1년 후 1989년 4월 14일 실시한 동해시재선거 때부터였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반을 편성한다든가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선거법 준수와 위법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공한문 등을 보내고, 가로변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철거하는 정도의 단속활동을 하였다.

위법한 서적광고 3건에 대하여 위법광고 자제를 요청하였고,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여론조사팀이 당해 대학신문사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신문에 발표하자

여론조사 실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당의 단합대회를 일반인에게 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정당 집회에 참가시키는 행위를 억제하였다. 또한 후보자들이 불법 현수막이나 선전물을 빈번하게 게시·첩부하자 철거를 요청한 후 이에 불응한 자들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 11,622매를 강제로 철거하기도 하였다.

나. 검찰의 단속활동

1988년 3월 1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대하여 제13대 국회의원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지침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국회의원선거를 20여 일 앞둔 1988년 4월 4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지침을 시달하였다.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정해창 법무부장관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선거분위기의 과열이 염려된다고 전제한 후 검찰은 각종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는 특히 유세장 난동 등 선거폭력은 민주국가 최대의 공적이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뿌리뽑으라고 지시하였다.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연설회장의 폭력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므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다시 나타날까봐 이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 경찰의 단속활동

치안본부는 1988년 3월 9일 전국 시·도경 수사·형사과장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전국 시·도경에 선거전담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지침을 시달하였다. 치안본부는 이 지침에서 선거전담반은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공고일 후의 선거범위반사례, 투·개표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청부 폭력과 유세장에서의 폭력행위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1988년 4월 20일 이현재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집회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강력히 경고하는 등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음날인 4월 21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정의당이 원내 안정의석 확보에 필요한 과반수를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분위기를 흐

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당선되어도 불법이 적발되면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단속의지를 밝혔다.

2. 위반행위 발생상황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검찰에 의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656명이었다. 검찰은 이 중 79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577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24명이었다. 입건된 선거사범의 처리상황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현황⁶⁾

수리 (입건)	기소			불기소				비고
	계	구속	불구속	계	기소유예	무혐의	기소중지	
656(24)	79	18	61	577	366	188	23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범은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선거사범(입건 167명, 기소 42명)보다 입건은 4배, 기소는 2배 정도 늘어났다. 선거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소선거구제로 치러져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했고, 1노 3김이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또다시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 총력적을 펼치면서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입건된 선거사범 656명의 위반행위유형을 보면 후보자비방이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각종 제한규정 위반과 부정선거운동이 각각 105명, 금품제공 등이 99명, 허위사실공표 66명, 사위투표 18명, 벽보 등 방해 17명, 선거자유방해 13명 등의 순이었고, 기타 유형은 70명이었다.

6) 법무부, 1989, 『법무연감』; 대검찰청 공안부, 1988, “국회의원선거사범 처리결과”

3. 주요 위반사례

주요 위반사례는 위장전입, 금품제공, 대리투표, 개표방해 등이었다. 위장전입이나 대리투표 및 개표방해 등의 선거절차와 관련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제7절 선거결과”에서 기술하고 여기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금품제공 등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가. 돈 봉투 우편발송 사건

선거일을 이틀 남겨둔 1988년 4월 24일 경북 안동에서 민주정의당 권중동 후보 측이 현금 2만 원과 ‘민주정의당 권중동’ 이라고 고무인이 찍힌 선전인쇄물이 들어있는 봉투 4,455개를 우체국을 통해 관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었다. 이 사건은 통일민주당 오경의 후보와 당원 10여 명이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고 안동우체국에 찾아가 발송작업 현장을 확인한 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여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 경북 안동시 당북동 안동우체국 2층 우편계사무실에서 현금이든 민주정의당 권중동 후보명의로 우편봉투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1988년 4월 25일 낮 12시20분 경 안동우체국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돈 봉투를 압수수색하여 5시간 동안 개봉한 결과 봉투 안에는 총 8,910만 원(2만 원 × 4,455개)이 들어 있었다.

민주정의당 권중동 후보 측은 이 우편물을 우체국에 보낸 일이 없다며 권중동 후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날 밤 돈 봉투를 발송의뢰한 신현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신현웅은 나중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었다.

나. 금품제공 사례

대구의 한 선거구에서는 그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1회에 400만 원씩 3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주면서 관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라고 지시하고, 이 돈을 받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구민 7명에게 400여만 원을 나누어 주었다가 발각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대구지법상주지원은 돈을 배부한 보좌관에게는 금고 6월형을,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제주도의 한 다방에서는 이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비누가 들어 있는 선물세트 등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준비한 선물세트가 부족하여 그 자리에서 선물을 받지 못한 30여 명에게 다음날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적발되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제주지방법원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후보자 비방 사례

경남 마산시 한 합동연설회장에서 ‘마산시민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삼재 후보는 12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마산역전 합동연설회⁷⁾에서 기상천외한 연극을 꾸며 당선되었던 후보”라는 취지의 유인물 3,000매를 살포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통일민주당 당원으로 있다가 1988년 4월 10일경 제명처분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강삼재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나중에 이 사람은 마산지방법원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 1985년 2월 8일 마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합동연설회에서 강삼재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에 연단으로 뛰어 올라 온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연단 아래로 떨어진 사건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제6장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참조

제8절 선거결과

1. 선거인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는 1988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하고, 열람 및 공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1일 확정되었다. 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1968년 4월 27일 이전 출생자(선거일 현재 20세 이상)로서 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인수는 26,198,205명이었다. 이 선거인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선거인수(25,873,624명)보다 1.3%(324,581명) 증가하였다.

〈표 2-14〉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인구수 및 선거인수

인구수	선거인수		
	계	남자	여자
41,578,821	26,198,205 (678,427)	12,926,481 (638,539)	13,271,724 (39,888)

※ ()안은 부재자수로 본수에 포함.

시·도별 선거인수는 서울이 6,603,354명으로 전체 선거인수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도 3,413,513명(13.0%), 부산 2,329,238명(8.9%), 경상남도 2,222,547명(8.5%) 순이었다. 선거인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전국 선거인수의 1.1%인 283,689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적은 곳은 광주로 609,578명이었다.

부재자신고기간은 1988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였다. 이 기간 중에 신고를 하여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수는 678,427명이었다. 이 부재자신고인수는 지난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부재자신고인수(735,727명)보다 7.8%(57,300명) 줄어들었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제13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인수(854,700명)보다는 20.6%(176,273명) 줄어들었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잠시 이전해 놓은 위장전입자가 많이 발견되었다. 서울 영등포구을선거구 관내에서 선거일공고일이 임박하여 이 지역으로 81명이 주민등록을 옮겨 투표를 한 다음 선거가 끝나자 바로 종전 주소지로 복귀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이 중 41명은 민주정의당 김명섭 후보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 선거무효소송 등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은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민주정의당 안양시갑지구당위원장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의 간호사와 직원 등 45명을 관내 26평의 한 아파트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킨 사례가 있었다. 이 사실이 신문 및 방송 등에 보도되자 선거일공고일 전날인 1988년 4월 6일 이들은 주민등록을 이전의 주소지로 원상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평화민주당 임실군·순창군지구당위원장이 임실군 임실읍과 지사면에 각각 2,498명과 1,656명의 선거인이 위장전입하였다며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들을 모두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선거인명부를 잘못 작성하여 물의를 빚은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착오로 한 지역의 24세대 60명의 선거인 모두를 선거인명부에 등재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나중에 관련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천 남구에서는 연령이 20세 미만이어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시킨 사례가 있었다. 이 사실은 선거일 당일에 이 사람이 투표하려고 투표소에 오는 바람에 알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았다.

2. 투 표

1988년 4월 26일(화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3,81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투표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원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158,023명(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88,707명, 투표사무종사원 69,316명)이었고, 정당 또는 후보자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165,744명이 투표과정을 지켜보았다.

가. 투표상황

투표결과 총 선거인수 26,198,205명중 19,850,815명이 투표하여 75.8%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투표율은 지난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84.6%)보다 8.8% 포인트가 낮고, 4개월 전에 실시한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89.2%에 비해서는 무려 13.4% 포인트가 낮았다.

〈표 2-15〉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기권수	비 고
26,198,205 (678,427)	19,850,815 (661,888)	75.8 (97.6)	6,347,390 (16,539)	

※ ()안은 부재자수로 본수에 포함.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시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던 민주화나 군정종식 및 전두환 정권의 비리 등에 관한 사항이 제13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려져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양김의 분열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야권통합에 실패한 것을 보고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커졌으며, 선거일 날씨가 좋아 유권자들이 투표를 외면하고 야외로 나가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시·도별 투표율을 보면 경북이 8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충북 83.1%, 제주 82.6%의 순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69.3%였고, 그 다음은 인천 70.1%, 경기도 71.3% 순이었다. 서울은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 투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선거인(서울 서초구)

한편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인 678,427명 중 661,888명이 투표하여 97.6%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부재자투표율은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부재자투표율 96.8% 보다 0.8% 포인트가 높았다. 또한 <표 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재자투표제도가 도입된 1963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부재자투표율로는 가장 높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부재자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꼭 투표할 사람만이 부재자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즉,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인이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3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각각 7.3%와 20.6%가 줄어든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표 2-16> 역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율 비교

(단위 : %)

선거별	제5대 국선	제6대 국선	제7대 국선	제8대 국선	제9대 국선	제10대 국선	제11대 국선	제12대 국선	제13대 국선
투표율	83.5	93.2	94.0	95.6	96.9	97.5	94.8	96.8	97.6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1) 투표통지표 관련 사례

투표통지표는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 및 투표시간 등을 알려주는 통지표로서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약 이때까지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고, 투표구선

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투표통지표가 없어도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투표통지표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1988년 4월 25일 전남 목포에서 3명의 유권자가 투표통지표를 받지 못했다며 이웃 주민 40여 명과 함께 관할 동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마침 해당 동사무소의 실무책임자인 사무장이 자리에 없어서 해명을 하지 못하자, 항의하는 군중이 주민과 학생 등 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항의 군중이 충돌하면서 최루탄이 발사되고 화염병과 돌맹이 등이 투척되어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날 자정을 넘어 항의 군중이 자진 해산함으로써 사건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서울시 양천구갑선거구와 구로구을선거구 관내에서는 통장이 투표통지표를 선거일 당일 까지 가지고 있다가 선거인에게 교부한 사례가 있었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통일민주당 투표참관인이 투표통지표의 인쇄농도 차이를 이유로 가짜 투표통지표가 발급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투표진행을 제지하여 투표가 한동안 중단되었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시청 시정계장과 투표통지표를 인쇄한 인쇄업자를 불러 해명을 듣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투표를 계속 진행하였다.

2) 투표용지가인 착오

투표용지가인이란 정당대리인과 정당추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투표용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것으로, 투표용지의 외부유출 방지와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 투표용지가인 제도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8대 국회의원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가 17년 만인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활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꽤 일어났다.

당시 선거법에는 투표용지가인에 사용하는 도장은 가인하는 사람의 이름만 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 강동구갑선거구 관내의 한 투표소에서 민주정의당 추천위원이 자신의 이름과 군번이 조각된 도장으로 투표용지 318매를 가인한 사례가 있었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도장으로 가인한 투표용지는 별도로 보관하여 선거인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하였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다른 도장으로 교체하여 가인작업을 마쳤다.

3) 선거인명부 대조 착오

부산 부산진구를 개금제1동 제2투표소에서는 다른 투표소에 투표할 선거인이 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인근의 가양제2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이 잘 모르고 이 투표소로 투표하러 온 것인데 선거인명부 대조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투표하게 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그 선거인이 투표를 하고 나가던 중에 알게 되었다. 개금제1동 제2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가양제2동 제2투표소에 알려 주고, 그 선거인이 한 투표는 유효 처리하였다.

4) 투표소에서 커피제공 사례

제주시 삼도제1동 제2투표소에서는 이 동(洞)의 부녀회가 투표사무를 관리하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비롯하여 투표사무종사원 등에게 커피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자 통일민주당 참관인들이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다. 통일민주당 참관인들은 부녀회는 민주정의당의 하부조직이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허가 없이 부녀회원이 투표소에 들어온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녀회원들을 투표소 밖으로 퇴소시켰으나 통일민주당 투표참관인들은 투표참관을 거부하였다.

5) 투표지 공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선거인들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투표지를 공개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있었다.

서울 관악구갑선거구 관내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만취한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펴들고 “이렇게 투표하면 됩니까”라며 투표소 안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인으로부터 투표지를 회수하여 ‘공개된 투표지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이 투표지는 개표과정에서 무효처리하였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최태순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에 낙서를 한 후 기표소 밖으로 들고 나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흔들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

지발언까지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공개된 투표지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이 투표지 역시 개표과정에서 무효처리하였다.

6) 대리투표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제2투표소에서 선거인 전명순이 이미 투표를 한 후 이웃주민 김순덕의 투표통지표를 가지고 다시 투표하러 왔다가 투표참관인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사례가 있었다.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읍 제1투표소에서 이 투표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영진이 같은 마을에 사는 김주훈의 투표통지표를 가지고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다가 통일민주당 참관인 이 중복에게 발각되었다. 김주훈은 외지로 출타하여 투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중복은 노영진이 대리투표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노영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서로 언쟁을 벌였다. 선거가 끝나고 노영진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을 사직하였다.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제4투표소에서 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인 최춘찬이 신혼여행을 간 자신의 딸의 투표통지표를 이용하여 투표를 하다가 신민주공화당 투표참관인 고태옥에게 발각되었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최춘찬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직에서 해촉시켰다.

전남 여천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이 투표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민주정의당 투표참관인과 공모한 후 아들의 투표통지표를 이용하여 민주정의당 투표참관인에게 대리투표를 하게 하려다가 평화민주당 투표참관인에게 발각되었다. 나중에 대리투표를 공모했던 두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3. 개 표

1988년 4월 26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한 뒤 전국 28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일제히 시작되었다. 개표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원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26,430명(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2,525명, 개표사무종사원 23,905명)이었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8,856명이 개표과정을 지켜보았다.

개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충북 청주시을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1988년 4월 26일 오



▲ 개표장면(서울 강남 경기여고)

후 7시 10분에 개표가 시작되었다. 개표가 가장 늦게 끝난 곳은 서울 구로구갑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선거일 다음날인 4월 27일 밤 11시 40분에 끝났다. 개표가 끝나자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자 299명이 결정되었다.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자

개표결과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14개 정당 중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겨레민주당 등 5개 정당은 당선자를 냈으나 나머지 9개 정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무소속은 9명이 당선되었다. 구체적인 정당별 당선자수 및 득표율은 <표 2-17>과 같다.

〈표 2-17〉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자수 및 득표율

정 당 명	당 선 자 수			득 표 수	득 표 율 (%)
	계	지 역 구	전 국 구		
합 계	299	224	75	19,642,040	100.0
민주정의당	125	87	38	6,670,494	34.0
평화민주당	70	54	16	3,783,279	19.3
통일민주당	59	46	13	4,680,175	23.8
신민주공화당	35	27	8	3,062,506	15.6
한겨레민주당	1	1		251,236	1.3
민 중 의 당				65,650	0.3
한국국민당				65,032	0.3
신한민주당				46,877	0.2
민주한국당				32,799	0.2
우리정의당				25,433	0.1
제3세대당				16,148	0.1
한주의통일한국당				3,736	-
사회민주당				3,267	-
기독교민당				2,247	-
무 소 속	9	9		933,161	4.8

1)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은 유효투표총수의 34.0%를 득표하여 지역구에서 87명, 전국구에서 38명 등 총 125명이 당선되어 선거에 참여한 14개 정당 중 가장 많은 당선자를 냈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의 당선자수는 전체의석 299명의 41.8%밖에 되지 않아 의정사상 최초로 집권여당이 과반수의석에 미달하는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정의당의 득표율 34.0%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득표율(35.2%)과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당선자수는 23명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전국구의원정수가 줄어들고, 또한 전국구의석 배분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전국구의원정수가 92명이었으나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75명으로 줄어들었다. 전국구의석 배분방법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제1당에게 전국구의석 3분의 2를 우선 배분하던 것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분의 1만 배분하도록 바뀌었다.

민주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심명보 사무총장(영월군·평창군)과 남재희 정책위의장(강서구을) 등의 당직자를 비롯하여 이한동(포천군·연천군)·이춘구(제천시)·정순덕(충무시·통영군·고성군)·김중권(울진군) 후보 등이 당선되었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이종찬(종로)·강성모(서대문갑), 인천에서 이승윤(북구을), 대구에서 박준규(동구)·정호용(서구갑), 경기도에서 이용희(용인군), 강원도에서 한승수(춘천시)·김재순(화천군·철원군), 충북에서 박준병(보은군·옥천군·영동군), 경북에서 김윤환(군위군·서산군)·이상득(영일군·울릉군)·유학성(예천군), 경남에서 박희태(남해군·하동군) 등이 당선되었다. 특히 정치1번지로 불리던 서울 종로구선거구에서 이종찬 후보가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인 김명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그의 정치적 입지가 커지게 되었다. 구체적인 지역구별 당선자 및 득표상황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이하 다른 정당도 같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로는 이대순 원내총무(고흥군)를 비롯하여 유홍수 사무차장(부산 남구갑), 유경현 대변인(구례군·승주군), 강경식 정책조정실장(부산 동래구갑), 장성만 국회부의장(부산 북구갑), 최영철전 국회부의장(목포시), 임방현 중앙위의장(전주시갑), 고건(군산시) 등 당 중진급 인사들이 있었다.

전국구에서는 채문식 당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윤길중, 정석모, 강영훈, 박태준, 이광노, 이원조, 지연태, 박철인, 최창윤, 나창주, 서상목, 손주환, 양경자, 김길홍, 강재섭, 조남육, 도영심 후보 등 전국구순위 1번부터 38번까지 당선되었다.

2)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9.3%를 득표하여 지역구에서 54명, 전국구에서 16명 등 총 70명이 당선되었다. 선거 전 제1야당이던 통일민주당보다 11명이 더 당선되어 통일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 되었다. 평화민주당은 김대중 전 총재의 연고지인 광주·전남·전북의 37개 지역구 중 1개 지역구를 제외하고 모두 당선되는 등 주로 호남에서 많은 당선자를 냈다.

평화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김영배 사무총장(양천구을)과 허경만 원내총무(순천시) 등의 당직자를 비롯하여 서울에서 정대철(중구)·조세형(성동구을)·이상수(중랑구갑)·한광옥(관악구갑)·이해찬(관악구을), 광주에서 신기하(동구)·정웅(북구), 경기에서 이찬구(성남시을), 전북에서 채영석(군산시)·김원기(정주시·정읍군)·이상옥(진안·무주·장수군), 전남

에서 권노갑(목포시)·박상천(고흥군)·유준상(보성군) 등이 당선되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로는 안동선 대변인(부천중구)을 비롯하여 한영애(용산구), 설훈(성북구), 임채정(노원구), 박영록(구로구), 이용희(영등포구), 이석현(안양시), 문희상(의정부시) 후보 등이 있었다.

전국구에서는 박영숙, 문동환, 이동근, 이경재, 김대중, 조희철, 송현섭, 조승형, 최봉구, 허만기 후보 등 전국구순위 1번부터 16번까지 당선되었다.

3)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은 유효투표총수의 23.8%를 득표하여 지역구에서 46명, 전국구에서 13명 등 총 59명이 당선되었다. 통일민주당은 평화민주당보다 총 득표율에서는 4.5%를 더 얻었으나 당선자수에서는 11명이 뒤져 제1야당 자리를 평화민주당에게 내주었다.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전 총재의 연고지인 부산의 15개 지역구 중 1개 지역구를 제외하고 모두 당선되는 등 주로 영남에서 많은 당선자를 냈다.

통일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김영삼 전 총재(부산 서구)를 비롯하여 서울에서 강신옥(마포구)·서청원(동작구)·김덕룡(서초구), 부산에서 노무현(동구)·김정길(영도구)·박관용(동래구)·최형우(동래구)·이기택(해운대구)·서석재(사하구), 경기에서 이인제(안양시)·최기선(안양시), 충남에서 황명수(온양시·아산군)·박태권(서산군), 경북에서 신영국(점촌시·문경군), 경남에서 황낙주(창원시)·강삼재(마산시)·김동영(거창군), 제주에서 강보성(서귀포시·남제주군) 후보 등이 당선되었다. 경북 안동에서 민주정의당 권중동 후보의 '돈 봉투 우편발송 사건'을 신고하였던 오경의 후보도 당선되었다. 김영삼 전 총재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8선 의원이 되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로는 김명윤 총재권한대행(종로구)을 비롯하여 김현규 원내총무(대구중구)·조홍래 정책심의회위원장(의령군·함안군)·김상현 부총재(서대문구)·권오태(영천시·영천군) 부총재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송원영(동대문구)·김수한(관악구)·박일(밀양군) 후보 등 당 중진급 인사들도 낙선하였다.

전국구에서는 이행구, 유승변, 박종률, 송두호, 황대봉, 김운환, 노홍준, 이행구 후보 등 전국구순위 1번부터 13번까지 당선되었다.

4) 신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5.6%를 득표하여 지역구에서 27명, 전국구에서 8명 등 총 35명이 당선되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 신민주공화당은 김종필 총재의 연고지인 충남의 18개 지역구 중 13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등 주로 충남과 경기도에서 많이 당선되었다.

신민주공화당은 지역구에서 김종필 총재(부여)와 김용채 사무총장(노원구을)을 비롯하여 서울에서 신오철(도봉구갑), 경기도에서 이병희(수원시을)·최무룡(파주군)·김문원(의정부시)·이대엽(성남시갑), 이택석(고양군), 강원도에서 최각규(강릉시), 충북에서 오용운(청주시을), 충남에서 김용환(대천시·보령군), 경북에서 구지춘(달성군·고령군) 후보 등이 당선되었다. 민주정의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신민주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한 이인구(대덕·연기군) 후보도 당선되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로는 최재구(강남구갑)·김효영(태백시)·오치성(가평군·양평군)·윤석민(청원군) 등 4명의 부총재와 조용직 대변인(송파구갑) 등이 있었다. 한병기(서초구을), 강경식(부산진구을), 양찬우(동래구을) 후보 등도 낙선하였다.

전국구에서는 김인곤, 신철균, 정시봉, 옥만호, 연제원 후보 등 전국구순위 1번부터 8번까지 당선되었다.

5) 기타 정당 및 무소속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14개 정당 중 앞에서 기술한 4개 정당을 제외하고 당선자를 낸 정당은 한겨레민주당뿐이었다. 한겨레민주당은 유효득표총수의 1.3%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1명이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전남 신안군선거구에서 출마한 박형오 후보였다. 이 선거구에는 평화민주당 한화갑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박형오 당선자는 1988년 6월 11일 평화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한겨레민주당은 얼마되지 않아 원외정당이 되고 말았다. 한겨레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던 예춘호 총재(부산 영도구)를 비롯하여 제정구(종로구), 조순형(도봉구), 원혜영(경기 부천시남구) 후보 등은 낙선하였다.

선거에 참여했던 나머지 9개 정당은 민중의당이 유효득표총수의 0.3%를 득표한 것을 비롯

〈표 2-18〉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자 명단

정당별	당선자수	당선자 성명(가나다 순)
민주정의당	125	〈지역구〉 강성모, 강우혁, 권달수, 권해옥, 김근수, 김기배, 김명섭, 김문기, 김영균, 김영선, 김완태, 김용태, 김윤환, 김인영, 김일윤, 김재순, 김종호, 김중권, 김중위, 김진영, 김진재, 김태호, 김한규, 김현옥, 남재희, 노인환, 류돈우, 박우병, 박재홍, 박정수, 박준규, 박준병, 박지원, 박진구, 박희태, 서정화, 서정화, 신경식, 신상식, 신재기, 심명보, 심정구, 안병규, 안영기, 오유방, 오한구, 유수호, 유학성, 이강희, 이금규, 이덕호, 이민섭, 이상득, 이성호, 이승윤, 이영문, 이용희, 이응선, 이자현, 이정무, 이종찬, 이진우, 이춘구, 이치호, 이태섭, 이학봉, 이한동, 임무웅, 장경우, 장영철, 전용원, 정동성, 정동윤, 정동호, 정순덕, 정종택, 정창화, 정해남, 정호용, 조영장, 최운지, 한승수, 함종한, 황병우, 황성균, 황윤기, 황철수 (이상 87명)
		〈전국구〉 강영훈, 강재섭, 김길홍, 김동인, 김인기, 김장숙, 김정길, 김종곤, 김종기, 나창주, 도영심, 박승재, 박철언, 박태준, 서상목, 손주환, 신영순, 양경자, 유기천, 윤길중, 이광로, 이도선, 이동진, 이병용, 이상하, 이상희, 이원조, 이윤자, 이재황, 임인규, 정석모, 조경목, 조남욱, 지연태, 채문식, 최재욱, 최창윤, 홍세기 (이상 38명)
평화민주당	70	〈지역구〉 강금식, 권노갑, 김길곤, 김덕규, 김득수, 김봉욱, 김봉호, 김영배, 김영진, 김원기, 김종완, 김충조, 김태식, 노승환, 박상천, 박석무, 박 실, 박종태, 서경원, 손주환, 신기하, 신순범, 양성우, 오 탄, 유인학, 유준상, 이돈만, 이상수, 이상옥, 이영권, 이원배, 이재근, 이찬구, 이철용,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춘원, 정균환, 정대철, 정상용, 정 응, 조세형, 조순승, 조윤형, 조찬형, 조홍규, 채영석, 최락도, 최 훈, 한광욱, 허경만, 홍기훈, 홍영기 (이상 54명)
		〈전국구〉 김대중, 김영도, 김주호, 문동환, 박영숙, 송현섭, 이경재, 이교성, 이등근, 이형배, 정기영, 조승형, 조희철, 최봉구, 최영근, 허만기 (이상 16명)
통일민주당	59	〈지역구〉 강보성, 강삼재, 강신욱, 김광일, 김덕룡, 김동규, 김동영, 김동주, 김봉조, 김영삼, 김우석, 김일동, 김재광, 김정길, 김정수, 노무현, 문정수, 박경수, 박관용, 박용만, 박재규, 박태권, 백남치, 백찬기, 서석재, 서청원, 신상우, 신영국, 신하철, 심원구, 오경의, 유기준, 이기택, 이인제, 장석화, 정상구, 정재문, 정정훈, 조만후, 최기선, 최정식, 최형우, 허재홍, 황낙주, 황명수, 황병태 (이상 46명)
		〈전국구〉 권현성, 김 남, 김성룡, 김윤환, 노홍준, 유승번, 문준식, 박종율, 석준규, 송두호, 이행구, 최이호, 황대봉 (이상 13명)
신민주공화당	35	〈지역구〉 구지춘, 김문원, 김병용, 김용채, 김용환, 김제태, 김종식, 김종필, 김 현, 김홍만, 박병선, 박충순, 신오철, 오용운, 유기수, 윤성한, 윤재기, 이대엽, 이병희, 이인규, 이재연, 이준근, 이택석, 정일영, 조부영, 최각규, 최무룡 (이상 27명)
		〈전국구〉 김두윤, 김인곤, 신진수, 신철균, 연제원, 옥만호, 이희일, 정시봉 (이상 8명)
한겨레민주당	1	〈지역구〉 박형오
무소속	9	〈전국구〉 고세진, 박찬중, 유승규, 유한열, 이기빈, 이 철, 이해구, 정몽준, 홍희표
계	299	

하여 한국국민당 0.3%, 신한민주당 0.2%, 민주한국당 0.2%, 우리정의당 0.1%, 제3세대당 0.1%, 한주의통일한국당 0.02%, 사회민주당 0.02%, 기독교민당 0.01% 등 모두가 0.3% 이하의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이들 9개 정당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당시 「정당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4월 29일 정당등록이 모두 취소되었다. 따라서 제11대 국회에서 제1야당을 했던 민주한국당, 제12대 국회에서 한때 제1야당을 했던 신한민주당, 제11대 국회와 제12대 국회에서 한때 제2야당을 했던 한국국민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들 정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신한민주당 이철승 의원(전북 전주시을), 민주한국당 유치송 총재(경기 송탄시), 한국국민당 이만섭 총재(대구 달서구) 등은 모두 낙선하였다.

무소속후보자는 총 111명이 출마하여 유효투표총수의 4.8%를 득표했고, 당선자는 9명이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득표율(3.2%)과 당선자(4명)에 비해 득표율은 1.6%, 당선자는 5명이 늘어났다. 무소속후보자 중에 당선된 사람은 이철(성북구갑), 박찬종(서초구갑), 류승규(태백시), 유한열(금산군), 정몽준(울산시 동구), 고세진(제주시), 이기빈(북제주군) 등이 있었다. 또한 민주정의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해구(안성군)·홍희표(동해시) 후보도 당선되었다. 무소속 당선자 중 류승규는 1988년 5월 6일 통일민주당에 입당하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홍사덕(강남구을)·이택돈(안양시갑) 후보는 낙선하였다. 각 정당별 당선자 명단은 <표 2-18>과 같다.

나. 기타 개표결과 현황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다득표 당선자는 광주 북구선거구의 평화민주당 정웅 후보로 127,579표를 얻었다. 정웅 후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지역에 있는 군부대의 사단장이었는데 전역 후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였었다. 최소득표 당선자는 경기도 구리시선거구의 민주정의당 전용원 후보로 14,738표를 얻고도 당선되었다. 최고득표율 당선자는 최다득표를 했던 광주 북구선거구의 평화민주당 정웅 후보로 유효투표총수의 91.5%를 얻었고, 최저득표율 당선자는 서울 송파구갑선거구의 통일민주당 김우석 후보로 유효투표총수의 24.5%를 얻고도 당선되었다.

당선자들의 당선횟수별 분포를 보면 초선이 166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재

선 59명(19.7%), 3선 43명(14.4%), 4선 16명(5.4%) 등의 순이었다. 또한 5선은 7명, 6선 5명, 7선 2명, 8선 1명 등이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재선이 110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초선이 102명(37.0%)이었는데,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초선이 전체 의원의 55.5%를 차지해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선자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현 의원(88명)과 전 의원(39명) 및 정당인(62명) 등 정치인이 189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변호사(16명), 교육자(9명), 공업(7명) 등의 순이었다. 당선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138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 111명(37.1%), 60대 이상 32명(10.7%), 30대 이하 18명(6.0%) 등의 순이었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293명(98.0%)이고 여자는 6명(2.0%)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1) 투표구간사 납치 및 투표관계서류 탈취

서울 성동구 중곡제2동 제1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이하 이 항에서 “중곡2동 제1투 간사”라고 한다)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관할 개표소인 성동구청 대강당으로 운송한 후, 이를 개표소 측에 인계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중에 평화민주당 당원들에게 끌려가서 구타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곡2동 제1투 간사는 투표함 등을 인계하기 위해 개표소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중에 인계인수서의 내역 중 투표록 ‘2부’라고 기재해야 할 것이 ‘1부’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1’을 ‘2’로 수정한 후, 수정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수정부분에 투표구위원장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하였다. 마침 현장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평화민주당 당원 4명이 중곡2동 제1투 간사가 선거부정을 하려고 한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관계서류와 함께 그를 평화민주당 중앙당사로 끌고 갔다. 투표구간사는 끌려가 있는 동안 평화민주당 당원들에게 구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평화민주당에게 요구하여 선거일 다음날인 1988년 4월 27일 오전 7시 40분 투표관계서류를 돌려받아 개표를 마쳤고, 끌려갔던 중곡2동 제1투 간사도 풀려났다. 중곡2동 제1투 간사는 끌려가 있는 동안 린치나 구타당한 일에 대하여 형사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

2) 투표함 운송방해

전남 화순군 북면에 있는 5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개표소인 화순군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거리가 너무 멀다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들이 운송차량에 탑승하기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투표함 운송차량에는 5개 투표구의 간사와 경비경찰관 2인만 동승하였다.

이 투표함 운송차량이 화순군청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곳에 있던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투표참관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선거부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부는 운송차량 위로 올라가서 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 300명 정도의 군중이 모여들어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송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나 평화민주당 개표참관인들이 이들을 설득하여 선거일 다음날인 1988년 4월 27일 오전 5시 37분경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송하여 개표를 마쳤다.

3) 우편투표 소인누락

경남 통영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부재자투표함 개함과정에서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져 있지 않은 우편투표봉투 3매를 발견하고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하여 한때 개표가 중단되었다. 통영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기번호와 우체국명이 표시된 등기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유효로 처리한 후 개표를 속개하였다.

전북 이리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도 부재자투표함 개함도중 우편투표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누락된 것을 평화민주당 참관인이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리우체국장을 개표소로 불러 소인이 누락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표를 속개하였다.

4) 개표진행 방해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야당 개표참관인들이 수성2·3가동 제3투표소에서 3명이 대리투표를 하였다고 항의하며 이 투표소의 투표함에 걸터앉아 개표를 못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경찰에 원조를 요청하여 항의하는 참관인들을 강제로 퇴장시킨 후 개표를 속개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이 선거구에서 낙선한 신민주공화당 이상희 후

보가 이런 이유를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경찰의 지원요청을 통해 개표방해자를 퇴장시킨 점’ 과 ‘이후 일부 야당 참관인이 재입장하여 참관한 점’ 등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참관권을 박탈하였다거나 야당 참관인들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하였다.

서울 영등포구을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자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개표참관인들이 우편투표봉투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고 선거부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워 약 7시간 동안 개표가 중단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며 개표진행을 방해하여 경찰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강제로 퇴장시키고 개표를 속개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이 선거구에서 낙선한 통일민주공화당 이원범 후보가 이런 이유를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5) 투표자수 집계착오 등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신민주공화당 개표참관인이 송현제2동 제4투표구의 개표결과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47매가 많으며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간사를 개표소로 불러 확인한 결과 투표록을 잘못 작성(투표용지교부수를 50매 적게 기재하고,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50매 많게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서울 노원구을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상계제3동 제1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수보다 투표지가 3매 더 많이 나오자 평화민주당 참관인이 부정투표라고 주장하며 개표진행을 방해하여 한동안 개표가 중단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 확인결과 바로 앞서 개함한 도봉제1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 3매가 개표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밝혀져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각각 정정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개표참관인이 도봉제1동 제1투표구의 개표결과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매 더 많으며 전면 재개표를 주장하며 개표진행을 방해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원조를 요구하여 이 개표참관인을 퇴장시킨 뒤 개표를 속개하였다.

6) 부재자 우편투표봉투 소각

경남 진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가 종료된 후 부재자 우편투표봉투를 바로 소각해 버

린 관계로 직원들이 직무유기 및 문서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고, 통일민주당 당원들이 부정선거규탄대회 등을 개최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서류는 당선인의 임기동안 보존하되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진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후 우편투표봉투를 빈 투표함에 넣어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사무과장이 개표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출장을 간 사이 위촉직원(정주섭)과 임시직원(박종석)이 창고를 정리하면서 개표가 끝났으니 우편투표봉투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소각장으로 가져가 소각해 버렸다.

소각 사실은 법원에 제기된 증거보전신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진양군선거구에서 민주정의당 안병규 후보에게 209표 차로 낙선한 통일민주당 김재천 후보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마산지법 진양지청 주경진 판사가 1988년 4월 30일 진양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증거보전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편투표봉투가 소각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통일민주당 김재천 후보 측은 부정개표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고의로 우편투표봉투를 소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과 소각한 직원 2명을 직무유기와 공문서 손괴 및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또한 통일민주당 당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규탄대회를 거리에서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와 민주정의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야합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이들은 진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감시하기도 하였으며, 선거소송이 진행 중이던 마산지방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정의당 당원들도 우편투표봉투 소각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할 것과 자기 당 소속 안병규 후보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통일민주당 김재천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우편투표 부정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고, 검찰에 고소된 진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도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다.

7) 개표결과 사전방송

선거일 전날인 1988년 4월 25일 제주 MBC-TV가 화면조정시간 중인 오후 5시 3분부터 1분 30초 동안 자막이나 그림 없이 “민주정의당 현경대 후보 30,506표, 통일민주당 김성범 후보 14,300표, 평화민주당 강종호 후보 9,017표, 무소속 고세진 후보 0표로 이날 새벽 1시 현재 39.9%의 득표율로 민주정의당 현경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의 음성방송을 내보냈다. 이 방송은 아직 투표를 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것도 여당 후보자가 당선되었다고 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야당이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KBS가 개표방송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던 터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MBC 제주문화방송 측은 이날 오후 7시 55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방송을 연습 중에 기술진의 실수로 일어난 잘못”이라는 해명 및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통일민주당 김성범 후보와 평화민주당 강종호 후보가 당원 등 100여 명과 함께 방송국으로 몰려가 ‘컴퓨터 조작기도’라며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 제주MBC-TV의 개표시험 방송사고와 관련하여 고려대생들이 교문앞에서 이를 투·개표 조작음모라고 주장하며 규탄시위하고 있다(1988년 4월 26일).

선거가 끝나고 통일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이와 관련,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단순한 방송 실수라며 1989년 1월 18일 소송을 기각하였다. 제주지검도 이 사건

과 관련 김기주 문화방송 사장과 보도국장 등 9명을 국회의원선거법상 허위방송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였으나 1988년 7월 15일 무혐의 처분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 현경대 후보는 낙선하고 무소속 고세진 후보가 당선되었다.

4. 선거소송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지고,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1노 3김의 격돌체제가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소송도 많이 제기되었고, 선거소송 처리결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선거무효 판결이 난 곳도 있었다.

가. 선거소송 제기

선거소송은 총 26건이 제기되었다. 이 중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이 6건,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당선무효소송’이 4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동시에 주장한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이 16건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보면 통일민주당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정의당 4명, 평화민주당 4명, 신민주공화당 5명이었으며, 무소속도 2명이었다. 이 중 인천북구을선거구의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건은 원고가 통일민주당 및 신민주공화당 후보자 2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선거소송 제기건수 26건 보다 원고수가 1명이 더 많았다.

선거소송의 청구이유는 주로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운동 목인, 참관인을 강제로 퇴장시키고 개표진행, 정당의 당원이 무소속후보자로 등록, 대리투표, 위장전입자의 투표, 우편투표의 우체국 소인 누락, 관련 개입, 선거관리위원회의 득표수집제 부정 등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소송건수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3건보다 무려 7배 이상 증가했고, <표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가장 많았다. 선거소송이 많이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첫째, 후보자 간에 경쟁이 치열했다. 이전의 중선거구제가 1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

선거구제로 바뀌어 후보자 간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정당 간에도 경쟁이 치열했다. 여당은 갓 출범한 제6공화국 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야당은 서로 제1야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수 의석이 필요했던 만큼 정당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여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한 것도 선거소송이 많이 제기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일부 후보자들은 투·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그마한 실수를 한 것을 마친 선거부정을 한 것처럼 확대하여 소송이유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게 된 원인으로는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야당 후보자들의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원고를 수정·삭제한 사건⁸⁾과,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구로구을선관위 우편투표함 탈취사건’⁹⁾이 사실과 다르게 유언비어가 퍼진 점을 들 수 있었다.

〈표 2-19〉 역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 제기건수

제 현 국선	제2대 국선	제3대 국선	제4대 국선	제5대 국선	제6대 국선	제7대 국선	제8대 국선	제9대 국선	제10대 국선	제11대 국선	제12대 국선	제13대 국선
-	39	31	108	50	38	280	45	22	14	9	3	26

나. 선거소송 결과

제기된 26건의 선거소송 중 4건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스스로 취하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22건이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 1건은 각하되고, 18건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선거무효 판결이 났다.

각하된 1건의 각하사유는 소송청구 대상의 부적합이었다. 18건의 기각사유는 주로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선거부정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당락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등이었다. 선거소송의 구체적인 청구이유와 처리결과는 〈표 2-20〉과 같다.

8)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제6장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참조

9)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제8장 제13대 대통령선거” 참조

인용된 3건은 서울 영등포구을선거구의 통일민주당 이원범 후보가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역시 같은 선거구의 평화민주당 이용희 후보가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강원도 동해시선거구의 민주정의당 김형배 후보가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이었다. 인용된 3건의 구체적인 청구이유와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해시선거구 선거무효 사건

동해시선거구는 선거결과 무소속 홍희표 후보가 15,166표를 얻어 차점자인 민주정의당 김형배 후보(14,794표)를 37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차점자인 민주정의당 김형배 후보는 당선자인 홍희표 후보가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선자인 홍희표는 1980년 민주정의당이 창당될 때부터 창당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그 후 민주정의당에 입당하여 강원도지부 상임부위원장, 중앙당민원상담실장, 제12대 민주정의당 전국구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 민주정의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주정의당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자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후 1988년 4월 8일 동해시선거구에 무소속으로 후보등록을 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탈당신고서를 중앙당에 제출한 것이었다.

당시 「정당법」 제23조(탈당)에 의하면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 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등록)에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하였을 경우 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홍희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그의 탈당신고서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공고일인 1988년 4월 8일 전까지 소속 지구당에 제출되었어야 하였다. 다만, 중앙당에 제출한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에 회송되었다면 탈당신고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홍희표가 중앙당에 제출한 탈당신고서가 그때까지 지구당에 회송되었다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1988년 4월 16일 무소속 홍희표 후보의 당적을 조회한 결과 민주정의당으로부터 홍희표 후보는 1988년 4월 8일까지 민주정의당 서울 제2지구당(마포구·용산구), 4월 9일부터는 민주정의당 용산지구당의 당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물론 그가

중앙당에 제출했다는 탈당신고서도 소속 지구당에 회송되지 않았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은 사실을 홍희표 후보에게 추궁하자, 그는 이 지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확약서와 반증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희표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후보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선거결과 홍희표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그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정의당 김형배 후보가 1988년 4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김형배 후보는 ‘홍희표 후보가 소속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는데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차점자인 자신이 당선인이 되어야 한다며 당선인결정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 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김형배 후보가 홍희표 후보의 당선결정 무효 확인과 차점득표자인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달라며 대법원에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을 낸 것이었다.

1989년 3월 14일 대법원은 탈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정당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고, 그 후보자의 등록신청은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홍희표의 후보등록신청이 위법인 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그 등록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선거관리를 잘못된 것이라며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형배 후보가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달라고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은 기각하였다.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해시선거구는 1989년 4월 14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영등포구을선거구 선거무효 사건

영등포구을선거구는 선거결과 민주정의당 김명섭 후보가 31,888표를 득표하여 2위를 한 통일민주당 이원범 후보(31,423표)와 3위를 한 이용희 후보(31,337표)를 각각 465표와 55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2위를 한 통일민주당 이원범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관리를 잘못(후보자별 득표수 허위발표, 잔여투표용지와 기권자수 불일치, 동일인의 필적인 100여 매의 부

재자우편투표를 유효처리, 야당 개표참관인을 강제로 퇴장시키고 개표진행)하였다며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3위를 한 평화민주당 이용희 후보도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잘못(동일인 필적의 우편투표 유효처리, 무더기표 다수 발견, 개표진행 위법)을 이유로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한 선거구에 2건의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1989년 5월 26일 대법원은 두 후보자가 주장한 일부 내용은 기각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다. 첫째, 위장전입자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선거소송 진행과정에서 선거일공고일이 임박하여 81명이 영등포구을선거구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겨 투표를 한 다음 선거일 직후에 종전의 주소지로 복귀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사람들 중에는 41명이 당선자인 김명섭 후보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잘못하였다는 것이다. 김명섭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통해 자신이 선거구민 2만여 명에게 1,200원짜리 비누세트를 제공했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합동연설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국회의원선거법」 제191조에 규정된 고발의무를 외면하고 묵인 방치한 것은 선거관리를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당선자와 2위·3위 낙선자 사이의 표차가 470표, 548표 차¹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을선거구는 1989년 8월 18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10) 대법원의 검증결과 개표 당시의 표차와 차이가 났다.

〈표 2-20〉 제 13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 처리결과

선거구명	소송구분	소송 당사자		소송 청구이유	처리결과(사유)
		원 고	피 고		
서울 동대문구을	선거 및 당선무효	평화민주당 고광진	○당선자 김영구 ○해당 선관위위원장	○투·개표관리의 부정 ○불법선거운동 및 방치	1989. 2. 14 기각
서울 서대문구갑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민주당 김상현	○당선자 강성모 ○해당 선관위위원장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운동	1989. 3. 14 기각
서울 구로구갑	선거 및 당선무효	평화민주당 박영록	○당선자 김기배 ○해당 선관위위원장	○투·개표관리의 부정 ○당선자의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1989. 3. 14 기각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민주당 이원범	○당선자 김명섭 ○해당 선관위위원장	○투·개표관리의 부정 ○집계의 허위발표 ○부재자우편투표 부정	1989. 5. 26 선거무효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 및 당선무효	평화민주당 이용희	○당선자 김명섭 ○해당 선관위위원장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부재자우편투표 부정	1989. 5. 26 선거무효
부산 동래구을	선거 및 당선무효	민주정의당 김용균	○당선자 최형우 ○해당 선관위위원장	○당선자의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선거운동	1988. 8. 18 취하
부산 금정구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민주당 이대우	해당 선관위위원장	○개표관리 부정	1989. 9. 16 취하
대구 서구갑	선거무효	신민주공화당 백승홍	해당 선관위위원장	○부재자우편투표관리 부정 ○투·개표관리의 부정 ○합동연설회 방해 등 불법선거운동	1989. 3. 16 기각
대구 서구을	선거무효	통일민주당 유성환	해당 선관위위원장	○부재자우편투표관리 부정 ○개표관리 부정 ○관권선거 등 불법선거운동	1989. 3. 14 기각
대구 북구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민주당 박승국	해당 선관위위원장	○부재자우편투표관리 부정 ○투·개표관리의 부정	1989. 3. 2 기각
대구 수성구	선거무효	신민주공화당 이상희	해당 선관위위원장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투·개표관리의 부정	1989. 3. 30 기각
인천 북구을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민주당 이병현 신민주공화당 허 섭	○당선자 이승윤 ○해당 선관위위원장	○부재자우편투표관리 부정 ○투·개표관리의 부정 ○유사기관 설치 등 불법선거운동	1989. 3. 16 기각

선거구명	소송구분	소송 당사자		소송 청구이유	처리결과(사유)
		원 고	피 고		
인천 북구을	선거무효	평화민주당 지영길	해당 선관위위원장	○위법한 선거공보 작성·배포 ○선전벽보 첩부누락	1989.3.16 기각
경기 안양시갑	당선무효	신민주공화당 당원 김치랑	당선자 이인제	○신민주공화당 진성범 후보를 매수(2천만원 약속 1천만원 지급)	1989.7.13 취하
경기 부천시남구	당선무효	무소속 박규식	해당 선관위위원장	○개표관리부정	1988.12.27 기각
경기 남양주군	선거무효	무소속 이용곤	해당 선관위위원장	○민정당 당적이탈 타당 ○입당원인 무효	1989.3.10 기각
강원 동해시	선거 및 당선무효	민주정의당 김형배	○당선자 홍희표 ○해당 선관위위원장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으로 입후보 ○당선인의 착오시정을 도외시한 선관위의 결정은 위법	1989.3.14 선거무효
충북 청주시갑	선거무효	통일국민당 김현수	해당 선관위위원장	○선거공보의 경력난 삭제 ○선거공보의 송부과정 위법(통·반장이배달)	1989.1.18 기각
경북 경주시	선거 및 당선무효	신민주공화당 임진출	○당선자 김일윤 ○해당 선관위위원장	○조작된 선거공보의 제작, 발송(사진, 경력이 타인과 대체되어 작성, 배부) ○흑색선전물 제작·배포 등 불법선거운동	1988.8.29 취하
경북 영천시·영천군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민주당 권오태	○당선자 정동윤 ○해당 선관위위원장	○관련개입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1989.5.26 기각
경북 점촌시·문경군	당선무효	민주정의당 이영화	당선자 신영국	○개표관리 부정 ○부재자우편투표관리 부정	1989.2.22 기각
경북 청송군·영덕군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민주당 김찬우	○당선자 황병우 ○해당 선관위위원장	○부재자우편투표관리 부정 ○투·개표관리의 부정 및 불법선거운동	1989.1.26 각하
경북 경산군·청도군	당선무효	민주정의당 박재욱	○당선자 이재연 ○해당 선관위위원장	○개표관리 부정 ○부재자우편투표관리 부정	1989.3.10 기각
경남 진양군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민주당 김재천	○당선자 안병규 ○해당 선관위위원장	○투·개표관리의 부정 ○개표후 투표관계서류 등의 보관, 관리상의 위법(부재자회송용 봉투의 소각)	1989.5.11 기각
경남 밀양군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민주당 박 일	○당선자 신상식 ○해당 선관위위원장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운동	1989.5.26 기각
제주 제주시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민주당 김성범	○당선자 고세진 ○해당 선관위위원장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 묵인 ○제주 MBC의 불법행위	1989.1.18 기각

※ 소송당사자 피고란의 "해당 선관위위원장"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말함

5. 선거결과 특징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특징으로는 집권당이 원내과반수 의석에 미달하는 여소야대,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심하게 표출된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재현,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 등을 들 수 있었다.

가. 여소야대 국회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원내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민주정의당은 선거결과 지역구에서 87석, 전국구에서 38석 등 총 125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1당이 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 의석수는 전체의석(299석)의 41.8%에 불과하였다.

〈표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은 제3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전체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선거와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소속해있던 자유당이, 1963년 제6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소속해있던 민주공화당이,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선거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소속해 있던 민주정의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했었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선거와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집권당의 개념이 모호하였고,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한 후에 치러진 선거여서 역시 집권당의 개념이 모호하였었다. 따라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이 과반수의석에 미달한 것을 두고 언론 등에서는 의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보도하였다.

여소야대가 된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는 국민들의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심리와 제5공화국 비리에 대한 비판심리 등이 작용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적 지지기반이 확 실한 1노 3김이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다시 대결하면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재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소야대는 야당 주도의 국회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국회운영에도 많은 변화를 가

져왔다. 여소야대로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3당은 공조체제를 구축해 노태우 대통령이 요청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시키고, 각종 결의안 등을 채택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등 이전의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 2-21〉 역대 국회의원선거의 집권당 의석점유율

선거별 구분	제헌 국선	제2대 국선	제3대 국선	제4대 국선	제5대 국선	제6대 국선	제7대 국선	제8대 국선	제9대 국선	제10대 국선	제11대 국선	제12대 국선	제13대 국선
의원정수	200	210	203	233	233	175	175	204	219	231	276	276	299
집권당 의석수	55	24	114	126	175	110	129	113	146	145	151	148	125
점유비율(%)	27.5	11.4	56.2	54.1	75.1	62.9	73.7	55.4	66.7	62.8	54.7	53.6	41.8

※ 유신시절인 제9대와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 의원 각각 73명과 77명을 집권당의 의석수로 산정한 것임



▲ 경향신문 호외(1988년 4월 27일자)

특히 국회에 ‘5공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8년 11월 3일부터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전두환 정권의 각종 비리·의혹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청문

회를 개최하여 여소야대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청문회는 급기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에 저지른 온갖 비리를 시인·사과하고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발표한 후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로 은둔하는 사태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1990년 1월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및 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합당을 선언한 후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키면서 여소야대 정국은 2년 만에 끝나게 된다.

나. 지역주의 투표성향 재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4개월 전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다시 나타났다.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심하게 표출되리라고는 예상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통령선거 때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1노 3김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4개 정당의 연고지별 득표율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와 비교해 보면 외견상 그 정도가 완화된 면도 없지 않았다. <표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정의당은 연고지인 대구·경북에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비해 18.2% 포인트, 평화민주당은 연고지인 광주·전남·전북에서 19.3% 포인트, 통일민주당은 연고지인 부산·경남에서 8% 포인트 적게 득표하였다. 따라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만큼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표를 찍었으므로 일견 지역주의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전국평균득표율과 지역별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자기 당의 연고지에서는 많은 득표를 하고, 상대방 정당의 연고지에서는 낮게 득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주정의당의 전국평균 득표율은 <표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였으나 연고지인 대구·경북에서는 이보다 15.9%포인트가 높은 49.9%를 득표하였다. 반면에 평화민주당의 연고지인 광주·전남·전북에서는 전국평균 득표율보다 11%포인트나 낮은 23%를 득표하였다. 평화민주당의 전국평균 득표율은 19.3%였으나 연고지인 광주·전남·전북에서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69.1%를 득표하였다. 반면에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서는 각각 0.8%와 1.5%의 아주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통일민주당의 전국평균 득표율은 23.8%였으나 연고지인 부산·경남에서는 이보다 2배 정도 많은 45.7%를 득표하였다. 반면에 광주·전남·전북에서는 0.9%라는 아주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신민주공화당의 전국평균 득표율은 15.6%였으나 연고지인 충남에서는 이보다 3배 정도 많은 46.5%를 득표하였다. 반면에 광주·전남·전북에서는 1.6%, 부산·경남에서는 8.6%의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표 2-22〉 제13대 국선과 제13대 대선 정당별 득표율 비교

(단위 : %)

지역별	정당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제13대 국선	제13대 대선	제13대 국선	제13대 대선	제13대 국선	제13대 대선	제13대 국선	제13대 대선
전국 평균		34.0	36.6	23.8	28.0	19.3	27.1	15.6	8.1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30.3	34.4	23.7	28.7	22.3	28.4	16.7	8.4
부산·경남		36.1	36.6	45.7	53.7	1.5	6.9	8.6	2.6
대구·경북		49.9	68.1	26.0	26.6	0.8	2.5	14.9	2.4
광주·전남·전북		23.0	9.9	0.9	1.2	69.1	88.4	1.6	0.5
충남		30.2	26.2	15.0	16.1	3.8	12.4	46.5	45.0
기타 (강원·충북·제주)		42.6	53.2	20.1	27.0	3.2	10.9	23.2	8.5

각 정당의 연고지 시·도별 당선자수를 비교해 보면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더 쉽게 알 수 있었다. 민주정의당은 대구의 8개 선거구 전체와 경북의 21개 선거구 중 17곳에서 당선된 반면 광주·전남·전북의 37개 선거구에서는 단 1명도 당선되지 못하였고, 부산의 15개 선거구에서는 1명만 당선되었다. 평화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의 37개 선거구 중 36명이 당선되었으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비롯하여 강원·충남·충북에서도 1명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통일민주당은 부산의 15개 선거구 중 14곳, 경남의 22개 선거구 중 9곳에서 당선되는 등 야당으로서는 비교적 여러 지역에서 당선되었으나 광주·전남·전북에서는 1명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충남의 18개 지역에서 13명이 당선되었으나 부산과 대구를 비롯하여 광주·전남·전북 등에서는 1명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재현된 것은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때 형성된 지역감정이 유권자들의 투표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었다. 정치인들은 겉으로 지역감정을 비판하면서 이를 이용한 측면도 있었다. 정당 지도자 입장에서는 지역감정을 이용하여야 정당을 자신의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었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다고 보았던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지역감정이 확대되어 이후 매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나타났다.

다. 득표율과 의석비율 불일치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득표율에서 2위를 한 통일민주당의 의석비율이 득표율에서 3위를 한 평화민주당에 뒤졌다는 것이다. 즉, <표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민주당은 전체 유효투표수의 23.8%를 득표하여 19.3%를 득표한 평화민주당보다 득표율에서는 4.5%를 앞섰으나, 당선자수에 있어서는 평화민주당의 70명보다 11명이 뒤진 59명이었다.

통일민주당이 평화민주당에 비해 득표는 더 많이 했으나 당선자수가 적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었다. 첫째, 통일민주당이 평화민주당에 비해 2위 득표자가 더 많았다. 즉, 사표(死票)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통일민주당은 2위 득표자가 모두 54명이었고, 평화민주당은 14명이었다. 2위 득표자가 얻은 표는 모두 사표가 되어 당선자를 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었다. 소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으므로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자마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통일민주당이 평화민주당에 비해 2위 득표자가 많았던 것은 평화민주당의 168명보다 34명이 더 많은 202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또한 호남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비교적 고른 득표를 하며 평화민주당 후보자들보다 득표율에서 앞섰기 때문이었다.

둘째, 전국구의석 배분기준이 득표율이 아니라 의석비율이었기 때문이었다. 전국구의석을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였다면 득표율에서 4.5%를 앞선 통일민주당이 전국구의석을 1석이라도 더 많이 배분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선거법은 지역구 당선자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민주당의 지역구당선자는 46명으로 평화민주당의 54명에 비해 8명이 적었으므로 전국구의석도 평화민주당의 16석에 비해 3석이 적은 13석을 배분받을 수밖에 없었다.

<표 2-23> 제13대 국선 정당별 득표율과 당선자수 비교

구 분	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기타 정당 및 무소속
득표율(%)	100.0	34.0	23.8	19.3	15.6	7.3
당선자수(명)	299	125	59	70	35	10
의석점유율(%)	100.0	41.8	19.7	23.4	11.7	3.4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1988. 5. 30~1992. 5. 29) 중에 전국구 4명, 지역구 5명 등 총 9명의 국회의원이 궐원되었다. 궐원된 전국구의석은 후임자 4명이 의석을 승계받았고, 궐원된 5개의 지역구에서는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전국구국회의원의 궐원은 총 4명으로 궐원사유는 모두 사직이었다. 이들은 민주정의당과 민주자유당 소속이었다. 이들은 국무총리나 장관 또는 대통령비서관 등에 취임하기 위하여 사직하였다. 전국구국회의원이 궐원되면 그 국회의원이 선거당시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승계자를 결정한다는 「국회의원선거법」규정에 따라 <표 2-24>와 같이 후임자가 의석을 승계 받았다.

〈표 2-24〉 제13대 전국구국회의원 궐원 및 의석승계 상황

궐원된 자	궐 원 사유	승계자	승계일
민주정의당 강영훈	국무총리 취임을 위해 1988. 12. 22 사직	심기섭	1988. 12. 23
민주정의당 최창윤	1988. 12. 22 사직(대통령정무수석 비서관 취임)	안찬희	1988. 12. 23
민주자유당 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 취임을 위해 1990. 3. 21 사직	권오석	1990. 3. 26
민주자유당 손주환	1990. 12. 28 사직(대통령정무수석 비서관 취임)	최상진	1991. 1. 3

※ 민주자유당은 1990년 2월 9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이 합당하여 만든 정당임.

2.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의 궐원은 총 5명으로 선거무효판결에 의한 의원직 상실 2명, 사직 1명, 사망 1명, 피선거권 상실 1명이었다. 지역구국회의원이 결원된 지역에서는 1989년 4월 14일부터 1990년 11월 9일까지 4회에 걸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구 및 구체적인 실시사유는 <표 2-25>와 같다.

<표 2-25> 제13대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상황

선거일	선거실시지역	선거 구분	선거 실시사유
1989. 4. 14	강원 동해시	재선거	1989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
1989. 8. 18	서울 영등포구을	재선거	1989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
1990. 4. 3	대구 서구갑	보궐선거	1990년 1월 5일 정호용 국회의원 사직
"	충북 진천군·음성군	보궐선거	1990년 1월 13일 김원태 국회의원 사망
1990. 11. 9	전남 함평군·영광군	보궐선거	1990년 8월 24일 서경원 국회의원 피선거권 상실(퇴직)

가. 1989. 4. 14 동해시재선거

동해시재선거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민주정의당 김형배 후보가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1989년 3월 14일 선거무효 판결을 함으로써 1989년 4월 14일 실시하였다(선거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8절 선거결과. 4. 선거소송” 참조).

동해시재선거는 국회의원재선거로는 1970년 5월 22일 경상남도 제3선거구(고성군·충무시·통영군)재선거 이후 19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었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는 1개 선거구에서 2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고, 2인이 모두 궐원되어야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였으므로 실시사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 재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1989년 4월 14일 동해시재선거 전의 주요 정치적 상황으로는 ‘제5공화국 비리 조사를 위한 국회청문회’와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벌어진 공방을 들 수 있었다.

1988년 4월 26일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되어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야당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88 서울올림픽’이 끝나자 국회에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8년 11월 3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청문회는 TV로 생중계되었는데 올림픽의 시청률을 뛰어 넘을 정도로 국민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제5공화국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청문회 정국은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에 저지른 비리를 사과하고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로 은둔하는 사태까지 만들었다.

1988년 말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문제는 1989년도에 접어들면서 제5공화국 비리청산 문제와 맞물려 당시 최대의 정치현안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던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시절,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올림픽을 치른 후 6·29 선언과 그간의 모든 선거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또한 중간평가에 대통령의 신임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여야 간에 오랫동안 논



▲ 중간평가 무기연기를 발표하는 노태우 대통령 기자회견(1989년 3월 20일)

쟁을 벌였다. 논란 끝에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간평가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취했으나,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의 신임과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동해시재선거를 1

개월 정도 남겨둔 1989년 3월 20일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를 현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은 나라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간평가 유보를 선언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이 사건으로 야3당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공조가 붕괴되었고, 이후 동해시재선거에서는 야당 간에도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어 결국 다른 당의 후보자를 매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선거양상

1989년 3월 27일 선거일이 공고되고, 4월 1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5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다. 민주정의당은 지난 제13대 국회의원선거(기술 및 구분 편의상 이하 이 절에서 “총선거”라고도 한다)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재선거사유를 발생시킨 장본인 홍희표를, 평화민주당은 국회의원보좌관 출신인 김숙원을 각각 공천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총선거에서 3위를 한 이관형을, 신민주공화당도 총선거에서 4위를 한 이홍섭을 각각 다시 공천했다. 총선거에서 평화민주당의 공천으로 출마해서 5위를 했던 지일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따라서 평화민주당의 김숙원 후보를 제외하고는 4명의 후보자가 총선거에 이어 재선거에 다시 출마하였다. 그러나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재선거를 실시하게 했던 김형배는 출마하지 않았다.

선거초반에는 1노3김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특히 중간평가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는 이 선거를 중간평가의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1989년 4월 1일 동해시 현지에 내려와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정치이슈보다는 4당의 인기대결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각 정당의 중앙당이 동해시재선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정당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선거운동이 과열되어, 4월 7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10명 전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선거중반인 1989년 4월 9일에는 김대중 평화민주당총재가, 4월 10일에는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4월 12일에는 박준규 민주정의당대표위원이 동해시에 내려와 자당(自黨)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군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득표활동을 함으로써 선거분위기는 더욱 과열되었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타락·불법선거운동이 극심해짐에 따라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4월 10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재,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영삼 통일

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에게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래도 위법행위가 가시지 않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전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3) 후보자 매수 사건

선거과열은 급기야 다른 당의 후보자를 매수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선거를 이틀 앞둔 1989년 4월 12일 신민주공화당 이홍섭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통일민주당 이관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동해시 현지에서 선거를 지휘하던 서석재 통일민주당 사무총장이 이홍섭 후보에게 우선 5,000만 원을 주고, 선거가 끝난 후에 1억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홍섭 후보는 4월 15일 구속되었고, 서석재 통일민주당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매수사실을 부인하다가 통일민주당을 탈당한 뒤 4월 21일 구속되었으며,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 통일민주당 서석재 사무총장 구속 (1989년 4월 20일)

한편 신민주공화당 이홍섭 후보는 사퇴 성명을 발표한 1989년 4월 12일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와서 사퇴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하려면 중앙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선거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반려했다. 이런 과정에서 신민주공화당이 1989년 4월 14일 이홍섭 후보를 제명하고 그의 당적이탈 통지를 해움에 따라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홍섭 후보의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일 당일 후보자는 4명으로 줄어들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시작

불법·타락 및 후보자매수 사건 등으로 얼룩진 동해시재선거는 우리 선거사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가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선거로 기록된 것이다.

유신시절인 1972년 제8대 대통령선거부터 1981년 제12대 대통령선거까지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형식적인 선거였다. 특히 제8대부터 제11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1명만 출마한 단독선거였고,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후보자 간에 경쟁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 결과 정치적 민주화가 획기적으로 진척된 후 실시한 제13대 대통령선거는 그동안 국민들이 염원하던 대통령직선제가 16년 만에 부활되면서 이전의 대통령 선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정계를 대표하던 유명정치인 3김이 모두 출마하여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으로 선거가 과열되면서 불법선전물 대량 첩부, 불법 가두방송, 흑색선전, 금품살포, 대규모 청중동원 등 불법·타락행위가 만연하였다. 또한 1노 3김의 지역적 기반이 모두 달라 극심한 지역감정이 표출되면서 다른 지역 출신 후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연설회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선거기간 중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웠다.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4개월 만에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과열·타락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특히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동안 여야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1구 2인을 뽑던 중선거구제가 폐지되고 17년 만에 1구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부활되어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위법행위가 더욱 많이 나타났다. 지역감정 문제에 있어서도 선거결과 각 당의 득표가 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각 당 총재의 출신지역으로 확연히 나누어졌듯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이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지역감정은 영·호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선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 형태에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전의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의 단속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보고 주로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의 첩부·발송, 합동연설회 관리, 투표 및 개표 등의 선거절차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념했었다. 그러나 제13대 대통령

선거 및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서 헌법상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무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를 아무리 공정하게 관리하여도 불법선거운동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후보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의 자제를 요청하고, 불법선전물을 직접 철거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시점에 실시하게 된 동해시재선거에서 위법행위가 나타났고, 특히 각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선거분위기가 더욱 과열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자제촉구나 불법선전물의 강제철거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후 최초로 선거법위반행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3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에서 감시·단속활동을 시작하였고, 1989년 4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봉규 사무총장이 동해시 현지에 내려가 단속활동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결과 총 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경고, 41건은 주의·시정 조치를 하였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동해시재선거에 출마했던 5명의 전 후보자와 그들의 선거사무장 5명 전원을 1989년 4월 7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들의 주요 혐의는 불법선전물 및 불법현수막 첩부·게시, 가두방송, 유사기관 설치, 금품수수 등이었는데 검찰에서 전원 기소하였다. 선거가 끝난 후 이들에 대한 재판결과 민주정의당 홍희표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전윤식은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선고유예의 형이 내려졌다. 평화민주당 김숙원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이용기는 1심에서 각각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통일민주당 이관형 후보는 3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이, 그의 선거사무장 송희덕은 2심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신민주공화당의 이홍섭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홍석순은 3심에서 각 150만 원의 벌금형이, 무소속의 지일웅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정명선은 3심에서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동해시재선거에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을 처음 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국회의원재·보궐선거 등에서 단속활동을 더욱 확대하였다. 1991년 두 번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지방공무원을 파견 받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였고,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단속활동에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점차 확대하여 갔다.

5) 선거결과

동해시재선거의 선거인수 57,211명(부재자신고인수 1,620 포함) 중 45,234(부재자투표자 1,565 포함)명이 투표하여 79.1%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민주정의당 홍희표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57.8%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통일민주당 이관형 후보는 2위, 무소속 지일웅 후보는 3위를 하였고, 평화민주당 김숙원 후보는 최하위였다. 구체적인 득표수 현황은 <표 2-26>과 같다.

재선거의 투표율이 총선거의 투표율(82.5%)보다 3.4%가 줄었지만 당선자 홍희표 후보는 총선거 때 자신의 득표수(15,166표)보다 1만 표 이상 더 득표하였다.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의 김숙원 후보는 총선거 때 자기 당의 후보자가 얻었던 득표수(4,361표)의 58.3% 밖에 득표하지 못하면서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뒤졌으며, 통일민주당의 이관형 후보는 자기 당이 일으킨 후보자 매수사건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총선거 때에 자신이 얻은 득표수(7,057표)보다 4,992표를 더 득표하였다.

<표 2-26> 동해시 재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무소속	계		
		홍희표	김숙원	이관형	지일웅			
57,211	45,234 (79.1%)	25,688	2,543	12,049	4,165	44,445	789	11,97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나. 1989. 8. 18 영등포구를재선거

영등포구를재선거는 지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평화민주당 이용희 후보와 통일민주당 이원범 후보가 각각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1989년 5월 26일 선거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1989년 8월 18일 실시하였다(선거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8절. 4. 선거소송” 참조).

1) 재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영등포구을재선거는 동해시재선거가 끝나고 4개월 후인 1988년 8월 18일 실시하였다. 영등포구을재선거 전의 주요 정치적 상황으로는 평화민주당 서경원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고, 이와 관련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국가안전기획부의 구인조사를 받은 이른바 공안정국을 들 수 있었다.

1989년 6월 27일 국가안전기획부는 서경원 의원이 1988년 8월 19일부터 2박3일간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김일성·허담 등과 회담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서경원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7월 3일 국가안전기획부는 김대중 총재가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실 사전인지와 서경원 의원이 북한에서 가지고 왔다는 5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수수했는지 여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총재는 정치조작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총재를 구인하려고 하는 등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성토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김대중 총재가 3차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1989년 8월 2일 서울 중부경찰서로 구인하여 19시간 정도 조사를 벌였다. 영등포구을재선거일을 6일 앞둔 8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은 김대중 총재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입건했고, 평화민주당은 영등포구을재선거를 겨냥한 조작극이라고 반박했다.

그 뒤 이 사건은 영등포구을재선거가 끝나고 1주일 후인 1989년 8월 25일 서울지검에서 김대중 총재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와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 2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후 정치적 합의 하에 기소중지로 일단



▲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서경원의원의 밀입국사건과 관련, 안기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한광옥(왼쪽), 박상천 의원과 함께 중부경찰서로 들어가고있다 (1989년 8월 2일).

락되었다. 다만, 서경원 의원은 이후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되어 국회의 원직에서 퇴직되었고, 그의 지역구인 영광군·함평군선거구에서는 1990년 11월 9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2) 선거양상

영등포구을재선거는 서울, 특히 국회의사당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에서 치러지므로 각 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가 있었고, 공안정국의 와중에 치러져 각 당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어 선거시작 전부터 과열될 조짐이 있었다. 따라서 선거시기가 늦어질 경우 입후보 예정자들이 음성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기간이 길어져 그만큼 위법·타락 행위가 많아질 것이므로 선거를 가급적 빨리 치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한 후 90일 되는 1989년 8월 24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그러나 1989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선거무효를 판결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우려했던 대로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법행위가 나타나는 데도 대통령이 선거일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1989년 6월 23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영등포구을재선거를 조기에 실시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선거일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선거일공고가 늦어질 경우 불법·타락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규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이로부터 다시 한 달 정도가 지난 7월 31일에 가서야 선거를 8월 18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였다.

1989년 8월 5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6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다. 민주정의당에서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제10대와 제12대 국회의원을 지낸 나웅배를 공천했다. 평화민주당에서는 총선거 때에 3위를 한 이용희를, 통일민주당에서도 총선거 때에 2위를 한 이원범을, 신민주공화당 역시 총선거 때에 4위를 한 박상웅을 공천하였다. 무소속으로는 부장판사 출신의 고영구와 대한적십자회담사무국 남북대화담당관 출신의 김형주가 출마했다.

영등포구을재선거는 동해시재선거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하게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불법 선전벽보나 현수막 등을 첩부·게시하는 가시적 위법행위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원배가운동 명목으로 입당을 권유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교육·당원단합대회 등의 합법적인 정당활동과 향우회·친목회 등의 각종 모임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음성적인 불법행위는 여전히 많았다. 선거중반에는 각 정당에서 소속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의 부인까지 동원하여 득표활동을 하였고, 사랑방좌담회 명목의 향응제공, 불법선거운동 감시 명목으로 각 후보의 지지자들끼리 편싸움,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흑색선전물 배포 등의 행위도 나타났다.

선거일을 3일 앞둔 1989년 8월 15일에는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재명으로 나옹배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편지를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에게도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한때 논란이 되었다. 야당은 이 편지를 일반선거구민에게도 발송했으므로 대통령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대통령이 당총재의 자격으로 당원에게만 보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현지조사를 한 결과 편지를 받은 사람 중 당원이 아니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¹¹⁾. 그러자 민주정의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지조사에서 당원명부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다시 민주정의당 영등포구을지구당을 방문하여 입당원서철과 당원명부에 의해 12명을 확인한 결과 입당원서가 있는 사람(8명), 당원명부에 등재된 사람(3명), 확인이 안 되는 사람(1명)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영등포구을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후보자의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잘못된 것 때문에 치르게 되었으므로 동해시재선거보다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1989년 6월 12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시작하였고, 선거중반에는 단속반을 120명으로 증원하였다.

11) 무작위로 255가구를 조사한 결과 편지를 수령한 가구는 55가구였다. 편지를 수령한 55가구 중 당원이라고 인정한 가구는 21가구, 당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구가 5가구였으며, 29가구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선거사상 처음으로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증거채집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결과 총 70건을 적발하여 7건은 고발, 2건은 경고, 61건은 주의·시정조치하였다. 특히 민주정의당 나용배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임익상, 평화민주당 이용희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김용진, 통일민주당 이원범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이계훈, 무소속 고영구 후보에 대해서는 1989년 8월 14일과 8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이들의 주요 위반혐의는 호별방문, 금품제공,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부, 가두행진, 합동연설회장 질서문란 등이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또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모두를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피고발자 전원이 기소되었던 동해시재선거와 대조를 보여주었다.

4) 선거결과

영등포구을재선거의 선거인수 168,812명(부재자신고인 2,455명 포함) 중 117,870명(부재자신고인 2,405명 포함)이 투표하여 69.8%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민주정의당 나용배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8.7%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평화민주당 이용희 후보는 2위, 통일민주당 이원범 후보는 3위를 하였다. 후보자별 구체적인 득표수 현황은 <표 2-27>과 같다.

민주정의당은 동해시재선거에 이어 영등포구을재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했고, 2위를 한 평화민주당은 제1야당의 위치를 공고히 했으며, 3위를 한 통일민주당은 동요하는 모습이었다. 통일민주당은 선거가 끝나고 1주일 후인 1989년 8월 25일 대폭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하였다.

<표 2-27> 영등포구을재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선거 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 주 정의당	평 화 민주당	통 일 민주당	신민주 공화당	무소속	무소속	계		
		나용배	이용희	이원범	박상웅	고영구	김형주			
168,812	117,870 (69.8%)	45,187	35,089	21,945	5,737	8,340	528	116,826	1,044	50,94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퇴

영등포구을재선거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난 1989년 10월 13일 당시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동해시재선거와 영등포구을재선거의 불법·타락선거를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1988년 7월 27일 제8대 위원장에 취임한 지 1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불법·타락선거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동해시재선거와 영등포구을재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남다른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터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회창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사퇴라는 마지막 방법을 통해 공명선거의 의지를 표현했다”, “정치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치권의 유형·무형의 압력이 작용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서는 책임회피를 했다”는 반응도 있었다.¹²⁾

다. 1990. 4. 3 대구 서구갑보궐선거

대구 서구갑보궐선거는 이 지역의 민주정의당 정호용 국회의원이 1990년 1월 5일 사퇴하여 1990년 4월 3일 실시하였다. 정호용 의원의 사퇴배경은 1988년부터 시작된 국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3당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국회의원을 발포책임자로 지목하여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했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1) 보궐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대구 서구갑보궐선거는 영등포구을재선거가 끝나고 8개월 후 1990년 4월 3일 실시하였다. 서구갑보궐선거 전의 주요 정치적 상황으로는 5공 청산 종결과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한 것을 들 수 있었다.

1988년 6월 국회에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5·18 광주민주화운

12) 조선일보 1989년 10월 15일

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후 1989년 말까지 정치권에서는 5공청산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1989년 12월 15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영수회담을 갖고 5공청산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회담에서 5공청산과 관련 합의된 내용 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과 정호용 국회의원의 공직사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백담사에 은둔하고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9년 12월 31일 TV로 생중계된 국회의 양대 특위 합동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정호용 국회의원은 당초 공직사퇴를 거부했으나 태도를 바꾸어 1989년 12월 29일 사퇴 성명을 발표한 후 1990년 1월 5일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및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을 통합한다고 선언하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통합이유는 민주발전과 국민대화합 및 민족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합당된 새 정당의 명칭은 민주자유당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여 2월 15일 수리됨으로써 법적인 정당 성립절차도 마쳤다. 이로써 정국은 여소야대의 4당 구도에서 여대야소의 2당 구도 즉,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의 양당 구도가 되었다.

평화민주당은 3당합당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대중 평화민주당총재는 1990년 2월 27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당 합당은 반민주적 정치쿠데타라고 규정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국민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표로 만들어준 여소야대를 임의적으로 여대야소로 만들었으므로 3당 합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며, 민주자유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3당 합당 저지 1천만 서명운동 등 국민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당 합당에 반발하여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3당 합당을 거부한 통일민주당 소속 이기택·김정길·김광일·노무현·장석화 국회의원 등 5명과 무소속의 박찬중·이철 국회의원 등의 주도로 1990년 2월 27일 한국종합전시장 대강당에서 민주당(가칭)창당발기인대회를 갖고 창당작업을 시작하였다.



▲ 민주당(가칭)창당발기인대회(1990년 2월 27일)

2) 선거양상

1990년 3월 16일 선거일이 공고되고, 3월 21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문희갑을 공천하였고, 무소속으로 정호용·백승홍·김현근 등 3명이 출마하였다. 지난 총선거에서 민주정의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정호용은 자신의 사퇴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출마이유를 밝혔다. 백승홍 후보는 지난 총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으로 출마하여 2위를 했었고, 김현근 후보는 지난 총선거에 민중의당으로 출마하여 4위를 했었다. 따라서 민주정의당 문희갑 후보를 제외하고 3명의 후보자가 지난 총선거에 이어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였다.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선거초반에는 민주자유당 문희갑 후보와 무소속 정호용 후보 간의 2파전이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에서 정호용 후보를 사퇴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민주자유당에서는 당초 선거일이 공고되기 이전부터 정호용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였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보기관의 차량이 정호용 후보측을 미행하고, 그의 친척들에 대한 세무사찰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호용 후보는 자신이 5공청산의

희생양이므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직접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며 출마하였다.

정호용 후보는 1989년 말까지 민주정의당의 경북·대구지부의 대표자를 맡는 등 TK 핵심 인사이고, 1990년 3월 2일 탈당하기까지는 민주자유당의 당원이었으므로 지지층이 문희갑 후보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치적 성향이 같은 지지층 간의 대립으로 선거가 과열되자, 민주자유당 내 민정계와 정호용과 친분이 있는 경제계 인사들이 그를 만나 사퇴하도록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용 후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990년 3월 26일 마침내 후보사퇴를 선언하였다. 사퇴 이유는 “자신이 보궐선거에 출마함으로써 고향사람들 간에 반목하는 현상이 일어나 대구 사회가 분열되었으며, 대통령에게도 큰 걱정을 주게 되어 후보를 사퇴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사퇴하기 전인 3월 15일과 3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노태우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용의 후보사퇴와 관련 평화민주당은 노태우 대통령이 정호용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선거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처사라고 비난하고, 1990년 3월 28일 평화민주당 조세형 국회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의 방문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호용 후보의 사퇴과정에 어떤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고, 정호용 후보 본인이 스스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자유로운 의사로 사퇴서를 제출했으므로 수사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가려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용 후보의 사퇴로 선거분위기는 민주자유당 문희갑 후보와 당시 창당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민주당(가칭)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백승홍 후보 간의 양자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각 후보 진영은 승패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정호용 후보 지지성향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 사퇴 정당 성 여부의 공방을 선거운동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초반부터 직원 109명을 동원하여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을 벌였다. 동해시재선거나 영등포구을재선거에 비해 불법 선전물 또는 현수막 게시·첩부 등의 외형적인 위법행위나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집단폭력 사태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원단 합대회·당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는 위법행위는 여전히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6건은 수사의뢰하고, 2건은 경고, 12건은 주의·시정조치 하였다. 그러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음식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는 수사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3) 선거결과

서구갑보궐선거의 선거인수 132,364명(부재자신고인 1,794명 포함) 중 84,649명(부재자투표자 1,744명 포함)이 투표하여 64.0%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민주자유당 문희갑 후보가 유효투표총수의 51.6%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무소속의 백승홍 후보가 2위, 무소속의 김현근 후보가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후보자별 구체적인 득표수 현황은 <표 2-28>과 같다. 언론에서는 민주자유당 문희갑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사실상 민주자유당의 패배라고 평가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백승홍 후보가 “민주자유당이 정호용 후보를 회유·위협 및 알선하여 사퇴하게 하고, 관권·금권선거 등 전반적인 불법·부정을 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거가 무효”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990년 11월 9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표 2-28> 대구 서구갑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 상황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문희갑	무소속 김현근	무소속 백승홍	계		
132,364	84,649 (64.0)	41,970	5,199	34,242	81,411	3,238	47,71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라. 1990. 4. 3 진천군·음성군보궐선거

진천군·음성군보궐선거는 이 지역의 민주정의당 김완태 국회의원이 1990년 1월 13일 사망하여 대구 서구갑보궐선거와 같은 날인 1990년 4월 3일 실시하였다. 진천군·음성군보궐선거는 같은 날 실시하는 서구갑보궐선거에 언론이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바람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1990년 3월 16일 선거일이 공고되고, 3월 21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다. 민주자유당에서는 충북도지사 출신인 민태구를 공천하였고, 지난 총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최하위 득표를 한 허택이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하였다. 허택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당시 창당 작업을 하고있던 민주당(가칭)에서 추천했다고 발표하였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제로 민주당(가칭)의 도움을 받았다.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은 서구갑보궐

선거에 이어 진천·음성군보궐선거에도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민주자유당 민태구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무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당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무소속 허탁 후보는 호남지역이 최근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야당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거중반인 1989년 3월 28일 허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박찬종 국회의원이 민주자유당의 선거운동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었다. 이를 계기로 양측 선거운동원들 간의 심한 감정대립과 투표전날까지 비방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흑색선전도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131명을 동원하여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총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 중 1건은 수사의뢰하고, 1건은 경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주의·시정조치하였다.

진천군·음성군보궐선거의 선거인수 89,987명(부자재신고인수 3,582명 포함) 중 70,356명(부재자투표자수 3,294명 포함)이 투표하여 78.2%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허탁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54.6%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허탁 후보가 당선되자 평화민주당과 민주당(가칭)은 “3당 통합에 대한 준엄한 국민심판”이라고 했고, 민주자유당은 과장을 최소화하기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29〉 진천군·음성군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군별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민태구	무소속 허탁	계		
계	89,987	70,356 (78.2%)	31,178	37,441	68,619	1,737	19,631
진천군	36,544	27,625 (75.6%)	10,149	16,822	26,971	654	8,919
음성군	53,443	42,731 (80.0%)	21,029	20,619	41,648	1,083	10,71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마. 1990. 11. 9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는 이 지역의 평화민주당 서경원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0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직에서 퇴직됨에 따라 1990년 11월 9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서경원 국회의원은 1988년 8월 19일부터 2박 3일간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김일성·허담 등과 회담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가 이 사실을 알고 1989년 6월 27일 그를 구속하였다. 이후 서경원 의원은 1년간 1심과 2심 법원의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위의 형이 확정되었다.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는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 서경원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퇴직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었다.

1) 보궐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는 대구 서구갑 보궐선거와 진천군·음성군보궐선거가 끝나고 7개월 후인 1990년 11월 9일 실시하였다. 보궐선거 전의 주요 정치적 상황으로는 김대중 평화민주당총재의 단식투쟁과 민주자유당의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파동을 들 수 있다.

1990년 10월 8일 김대중 평화민주당총재는 여당의 내각제 포기과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당시 국회는 제 150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90년 7월 14일 민주자유당이 ‘국군조직법개정안’과 ‘방송법개정안’ 등 26개 의안을 33초 만에 일괄 처리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7월 23일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의원회관에서



▲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단식 투쟁

모두 철수하였다. 의원직사퇴 후 3개월이 지나고 정기국회가 개최되었으나 정국의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대중 총재가 단식투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김대중 총재가 단식을 시작한 지 5일째인 1989년 10월 12일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위원이 단식장을 방문하여 1시간 정도 비밀요담을 가졌다. 10월 15일에는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는 단식 13일째인 10월 20일 단식투쟁을 중단했다. 이유는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위원이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여야총무회담에서 지방자치제 협상이 진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식중단 이유 중에는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사의 추측도 있었다.

민주자유당의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과동은 1990년 10월 25일 모 일간지에 그 사본이 실리면서 시작되었다. 합의문 형식의 이 각서는 1990년 5월 6일 작성된 것으로 노태우·김영삼·김종필 세 최고위원이 민주자유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각제 개헌추진을 다짐하는 내용이였다. 세 최고위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이 각서에는 1년 이내에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며, 이를 위하여 금년(1990년) 중 개헌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각서의 유출로 이때까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며 각서의 존재를 부인하던 김영삼 대표위원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김영삼 대표위원과 민주계 의원들은 김영삼 대표위원을 음해하기 위하여 민정·공화계에서 고의로 각서를 언론에 흘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삼 대표는 1990년 10월 31일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각제 개헌반대 투쟁의사와 개헌 추진과인 민정·공화계가 개헌 포기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당무집행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부친이 살고 있는 경남 마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11월 6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위원이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내각제 포기를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2) 선거양상

1990년 10월 22일 선거일이 공고되고, 10월 27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다. 민주정의당은 지난 총선거에서 2위를 한 조기상을 공천하였고, 평화민주당은 영남대학교 교수출신인 이수인을 공천하였다. 무소속으로 농민운동가 출신의 노금노와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이 지역에서 김대중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던 김기수 등 2명이 출마하

였다. 김기수 후보는 평화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평화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이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영남출신 이수인 후보를 공천한 것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감정 해소의 명분으로 외지인을 공천한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이 일면서 선거초반부터 지역감정 문제가 선거쟁점이 되었다.

민주자유당 조기상 후보는 평화민주당의 영남 출신 공천은 오히려 지역감정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지역대표는 고향사람으로, 지역개발은 우리 손으로”라는 구호 속에 평화민주당의 영남인사 공천을 비판하였다. 평화민주당 이수인 후보는 “망국병인 지역분열은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가장 큰 장애”라며 평화민주당이 정권을 쟁취하여 지역차별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소속 김기수 후보는 “영남사람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영·호남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영남인사 공천을 비난했다.

김대중 평화민주당총재는 1990년 11월 4일부터 영광군·함평군 현지에 내려와 직접 득표 활동에 나섰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선거가 아니라 호남을 차별하는 민주자유당 정권에 승리하기 위한 선거”라며 영남인사의 공천에 대한 지역주민의 냉담한 반응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지역주민의 냉담한 반응에 김대중 총재는 수십 명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면소재지까지 누비며 지역감정 해소와 평화민주당이 정권쟁취를 위해 불가피한 공천이었음을 호소하고 다녔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기수 후보가 1990년 11월 6일 사퇴를 하여 선거일 현재 후보자는 3명으로 줄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269(연인원)명을 동원하여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지구당개편대회에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을 참석시킨 위법행위 1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 11건은 경고처분, 18건은 주의·시정조치하였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은 불법 선전물 및 현수막 등의 배부·첩부, 불법집회 개최, 가두 행진, 음식물 제공 등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에서 종래에 시도하지 않았던 ‘선거법위반사례집’ 과 ‘위법행위배격 계도벽보’ 등을 처음 제작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등에 활용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실시된 5건의 재·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상황은 <표 2-30>과 같다.

〈표 2-30〉 제13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관위의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상황

선거구별	단속반 활동기간	단속반 연인원	단속결과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주의 시정
합 계		665	189	20	10	21	138
동해시재선거	1989. 3. 15 ~ 4. 14 (30일)	36	58	12		5	41
영등포구을재선거	1989. 6. 20 ~ 8. 18 (70일)	120	70	7		2	61
서구갑보궐선거	1990. 1. 20 ~ 4. 3 (70일)	109	20		6	2	12
진천군·음성군보궐선거	1990. 1. 20 ~ 4. 3 (70일)	131	8		1	1	6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	1990. 9. 1 ~ 11. 9 (70일)	269	33	1	3	11	18

3) 선거결과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의 선거인수 104,352명(부재자신고자 3,678명 포함) 중 77,009명(부재자투표자 3,253명 포함)이 투표하여 73.8%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평화민주당 이수인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75.3%를 득표하여 예상했던 대로 당선되었다. 민주자유당 조기상 후보는 2위, 무소속의 노금노 후보가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후보자별 구체적인 득표수 현황은 〈표 2-31〉과 같다.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해 평화민주당 측의 주장처럼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첫 시도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오히려 지역감정의 두꺼운 벽을 실감시키는 가장 지역감정적 결과만 낳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표 2-31〉 함평군·영광군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군별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조기상	평화민주당 이수인	무소속 노금노	계		
계	104,352	77,009 (73.8)	16,581	55,557	1,613	73,751	3,258	27,343
함평군	44,595	32,403 (72.7)	5,235	24,712	1,145	31,092	1,311	12,192
영광군	59,757	44,606 (74.6)	11,346	30,845	468	42,659	1,947	15,15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3 장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991. 3. 26 실시)

개요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육군소장 중심의 군사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지시킨 이후 30년간 실시하지 못하다가 199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지방자치제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1991년 3월 26일 실시하게 되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는 후보자공천이나 선거운동 과정에 정당의 참여를 배제시켰지만 각 정당은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자기 당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한 후 이들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였다.

선거에는 총 10,159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2.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선거일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터진 수사사건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발표 및 야당성향 후보자들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었다.

선거결과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임에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55%라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친여성향의 후보자들이 호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선되었다.

제1절 _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2절 _ 선거제도

제3절 _ 후보자 등록

제4절 _ 선거운동

제5절 _ 선거비용

제6절 _ 공명선거활동

제7절 _ 선거법위반행위

제8절 _ 선거결과

제9절 _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지 3년 만에 실시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1992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까지 3년 동안에도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때 일어난 주요 사건이나 조치로는 ‘국회 5공비리 청문회’,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 ‘민주자유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민주당 창당’,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단식투쟁’, ‘민주자유당의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파문’, ‘수서사건’, ‘지방자치제 부활’ 등이 있었다.

1. 국회 5공비리 청문회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되어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 3당은 공조체제를 구축한 후 전두환 정권시절에 일어났던 각종 비리와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1988년 6월 27일 국회에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 (이하 “5공비리특위”라고 한다)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하 “5·18광주특위”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5공비리특위와 5·18광주특위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88 서울올림픽’(1988. 9. 17~10. 2)이 끝나자 1988년 11월 3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5공비리특위의 청문회에서는 전두환 정권시절에 대통령경호실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낸 장세동과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등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각종 기금모금의 강제성, 정경유착 실태 등을 추궁하였다. 5·18광주특위의 청문회에서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과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등 여러 사람을 출석시켜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



▲ 전두환 전 대통령 국회 증언(1989년 12월 31일)

의 불법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정확한 사망자 수', '공수부대의 지휘책임 및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등을 추궁하였다. 이들 청문회는 TV로 생중계되었는데 올림픽의 시청률을 뛰어넘을 정도로 국민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른바 5공비리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청문회를 통해 전두환 정권시절의 각종 비리가 폭로되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 전기환과 처남 이창석 등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로 인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 23일 자신의 재임 중에 저지른 비리를 사과하고, 정치자금 139억 원과 연희동 사저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밝힌 후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로 은둔하였다.¹³⁾

1989년 들어서도 5공비리특위와 5·18광주특위의 청문회는 계속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

13)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에 은둔한 지 769일 만인 1990년 12월 30일 연희동 자택으로 귀환했다.

의 중간평가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야 3당의 공조체제가 무너지면서 청문회의 열기가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또한 1989년 3월 26일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 6월 28일 평화민주당 서경원 국회의원의 밀입북사건, 6월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수경 학생의 방북사건 등 공안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청문회는 위축되었다.

1989년 12월 15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5공비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들의 공직사퇴 및 고발,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입법추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 등 11개 사항에 합의하는 선에서 이른바 5공 청산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백담사에 은둔하고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9년 12월 31일 5공비리특위와 5·18광주특위의 합동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이날 증언은 TV로 생중계되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에게 심한 야유와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2.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

제13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1987년 12월 12일 당시 노태우 후보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올림픽을 치른 후 6·29선언과 그간의 모든 선거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였다. 선거결과 노태우 후보는 당선되었고,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중간평가 문제가 정가의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1988년 말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문제는 1989년도에 접어들면서 5공비리 청산과 맞물려 당시 최대의 정치현안이 되었다. 중간평가 문제의 핵심은 언제 실시할 것인지와 중간평가에 노태우 대통령의 신임을 거느냐 마느냐이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은 대통령의 신임을 연계시키지 말고 단순한 정책평가로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신민주공화당은 중간평가 자체를 반대하였다. 반면에 통일민주당은 중간평가를 노태우 대통령의 신임과 연계시켜야 하고, 실시시키는 5공비리

청산 후에 실시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1989년 3월 7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회담을 갖고 중간평가로 정국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월 10일에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화민주당총재가 회담을 갖고 중간평가를 단순한 정책평가로 하자는데 합의하였다.

이런 상황이 되자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는 중간평가 실시를 요구하며 1989년 3월 13일 태백시와 3월 18일 온양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에서 김영삼 총재는 “중간평가는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중간평가를 대통령의 신임과 연계시키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 “정부가 중간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태우 정권의 퇴진운동을 펴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 3월 20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를 현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은 나라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간평가 유보선언을 하였다. 이로써 중간평가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중간평가 문제로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의 관계가 악화되어 야 3당의 공조체제가 붕괴되었다.

3. 3당 합당과 민주자유당 창당

민주정의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및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 3인이 1990년 1월 22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을 합당하겠다고 선언하였다. 3당 합당 선언은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오랫동안 야당생활을 해온 김영삼 총재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합당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합당선언 이후 3당은 각자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해체하기로 결의하고 합당 수임기구를 구성하였다. 3당 합당 수임기구는 1990년 2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수임위원 111명 중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당대회를 열어 민주자유당(약칭 “민자당”)을 창당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이날 합당대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형평·복지·통일 등 개혁추구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강령과 정강·정책 등을 채택하였다. 또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공동대표로 선출된 3인은 인사말을 통해 3당 합당이 구국적 결

단임을 강조하고, “후세가 3당 합당을 나라와 경제를 살린 위대한 정치혁명으로 평가” 할 것이라 하며 합당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민주자유당의 3인 공동대표는 1990년 2월 13일 박태준 의원을 최고위원대행에, 박준병 의원을 사무총장에, 김동영 의원을 원내총무에, 김용환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박희태 의원을 대변인에 각각 임명하였다. 민주자유당은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등록(신설합당)을 신청하여 수리됨으로써 법적인 정당 성립절차도 마쳤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원내의석이 216석이 되어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되었다. 따라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나타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는 2년도 채 가지 못하고 여대야소가 되었다. 즉,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야당인 평화민주당의 양당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평화민주당은 3당 합당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1990년 2월 27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당 합당은 반민주적 정치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국민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표로 만들어준 여소야대를 임의적으로 여대야소를 만들었으므로 3당 합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후, 민주자유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3당 합당 저지 1천만 서명운동’ 등 국민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하였다.

한편 통일민주당 소속 이기택·김정길·김광일·노무현·장석화 의원 등도 3당 합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3당 합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3당 합당으로 파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야당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3당 총재 간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3당 합의는 밀실야합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들은 나중에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3당 합당 이후 치러진 1991년 두 차례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당 합당이 선거쟁점이 되었다. 야당은 3당 합당이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몇몇 정치인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정치적 혼란 해소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구국적 차원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3당 합당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인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대야소로의 국

면전환이 필요하였고, 평화민주당에게 제1야당 자리를 빼앗긴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입장에서야권 내에서 입지가 약화되어 이를 해소시킬 돌파구가 필요하였으며, 제4당의 처지에 있던 신민주공화당 김충필 총재 역시 열세만회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3당 합당을 성사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3당 합당으로 호남지역을 상징하는 평화민주당과 여타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자유당의 지역주의 대결구도를 더욱 구조화시켰다.

4. 민주당 창당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만들자 이에 합류하지 않은 통일민주당 이기택·김정길·김광일·노무현·장석화 국회의원과 무소속 박찬종·이철 국회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1990년 2월 27일 한국종합전시장 대강당에서 창당발기인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창당절차에 착수한 후, 약 4개월 후인 1990년 6월 15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대의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민주당은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 소속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꼬마 민주당' 이라고도 불렀다.

민주당은 창당대회에서 이기택 의원을 총재로 선출하고, 김현규·홍사덕 전 국회의원을 부총재로 추대하였다. 또한 대통령중심제의 유지발전, 정당추천과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정강·정책 등을 채택하였다. 창당대회에서 총재로 선출된 이기택 총재는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자유당의 영구집권 분쇄, 야권통합, 당내 민주주의 확립 등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는 후보 공천이나 정치자금, 당의 정책결정 등에 있어서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민주당은 창당대회를 마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여 1990년 6월 18일 수리됨으로써 법적인 정당성립 절차도 마쳤다. 이후 민주당의 주요 당직에는 사무총장에 이철 의원, 원내총무에 김정길 의원, 정책심의회회장에 김광일 의원, 대변인에 장석화 의원 등이 선임되었다.

5.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단식투쟁

3당 합당으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1990년 10월 8일 여당의 내각제 개헌 포기,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군의 정치사찰 중지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이 단식투쟁은 10월 20일까지 13일간 계속되었다.

이에 앞서 민주자유당은 제150회 임시회 회기(1990. 6. 18~7. 17) 중이던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되어온 ‘국군조직법 개정안’ 과 ‘방송법 개정안’ 등 26개의 안을 변칙 처리하였다. 이날 평화민주당 의원들이 박준규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실력으로 저지하자, 본회의석 중간에 앉아 있던 김재광 부의장이 갑자기 일어나 의안을 일괄 상정시킨 후 속기록도 없이 긴급 녹취하는 편법으로 단숨에 처리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이에 반발하여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1990년 7월 23일에는 평화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원이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7월말까지 의원회관에서 철수하였다. 평화민주당의 의원들이 사퇴한 지 약 3개월이 지나고 정기국회가 개최되었지만 정국의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대중 총재가 단식투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김대중 총재가 단식에 돌입한 지 5일째인 1990년 10월 12일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위원이 단식장을 방문하여 1시간 정도 비밀요담을 가졌다. 10월 15일에는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김대중 총재는 단식을 시작한 지 13일째인 10월 20일 단식투쟁을 중단하였다. 단식을 중단한 이유는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여야 총무회담에서 지방자치제 협상이 진전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 민주자유당의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파문

정치적 성향이 다른 3개 정당이 합당하여 만든 민주자유당은 언론에서 ‘한 지붕 세 가족’ 이라고 평하였듯이 얼마가지 않아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의 3대 계파가 이해관계에 따라 사사건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대립은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파문으로 절정에 달했다.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파문은 1990년 10월 25일 한 일간신문에 그 사본이 실리면서 시작되었다. 합의문 형식의 이 각서는 1990년 5월 6일 작성된 것으로 노태우·김영삼·김종필 세 최고위원이 민주자유당의 전당대회(5월 9일)를 앞두고 내각제 개헌추진을 다짐하는 내용이었다. 세 최고위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이 각서에는 1년 이내에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며, 이를 위하여 금년(1990년) 중 개헌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각서의 유출로 이때까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며 각서의 존재를 부인하던 김영삼 대표위원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민주계는 민정·공화계가 김영삼 대표위원을 음해하기 위하여 각서를 언론에 흘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삼 대표위원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당무를 거부한 채 서울 상도동 자택에 머물다가, 10월 31일에는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추진과인 민정·공화계가 개헌 포기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당무집행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부친이 살고 있는 경남 마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급기야 민주자유당은 분당사태의 위기까지 맞게 된 것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사태수습을 위해 1990년 11월 2일 김윤환 원내총무를, 11월 4일에는 민주계인 김동영 정무장관을 마산으로 보냈다. 이 사태는 11월 6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위원이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내각제 포기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중심으로 당을 결속하기로 합의한 후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은 김영삼 대표위원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민정·공화계의 생각과는 달리 그 위상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7. 수서사건

수서사건이란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서울 수서·대치지구 내 조합주택 건축사업을 위해 수서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권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수서비리사건’, ‘수서특혜 분양사건’이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에서는 ‘수서사건’이라고 하기로 한다.

수서사건은 박세직 서울시장이 부임한 지 20일 만인 1991년 1월 21일 강남구 수서·대치택지 개발예정지구의 민간주택조합 소유토지 35,000평을 이들 조합에게 특별 분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세직 서울시장의 이 결정은 고건 전

임 시장의 ‘공영개발지구 내 토지를 특정조합에게 특별분양할 수 없다’는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일반주택청약 가입자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였고, 특혜분양이라면서 결정을 철회하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1991년 2월 3일 청와대 비서실과 평화민주당이 수서택지 분양과 관련 서울시에 발송한 협조공문이 공개되면서부터였다. 청와대 비서실은 1년 전인 1990년 2월 16일 홍성철 비서실장 명의로 “적법한 가격으로 우선 분양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하여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평화민주당도 1990년 8월 31일 “민원인들의 주장을 전폭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건설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민주자유당의 당정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이 참여한 조합에게 특별 분양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서택지를 분양받은 26개 조합에 경제기획원, 서울지방국세청, 군부대, 언론사 등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수서사건을 둘러싸고 여론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2월 5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지시하였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였다. 감사원은 1991년 2월 12일 “수서지구 택지를 특정조합에게 특별 공급하는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어긋나므로 서울특별시의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감사결과를



▲ 노태우 대통령 수서비리사건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조선일보 1991년 2월 20일)

발표하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국회건설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건설부 공무원 등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1991년 2월 16일 관련 혐의자인 정태수 회장, 청와대 장병조 비서관, 국회건설위원회 오용운 위원장과 이태섭·김동주 의원(이상 민주자유당), 이원배·김태식 의원(이상 평화민주당), 이규황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을 구속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2월 19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수서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시장에 임명된 지 2달도 되지 않은 박세직 서울시장을 경질하였으며, 민주자유당의 당직도 개편하였다. 서울시의 특별공급결정도 전면 백지화되었다. 이로써 수서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축소·은폐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촉구하였고,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재야단체 등도 재수사와 특별검사제를 촉구하면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수서사건은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6월 20일 실시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당초 여야는 1991년 2월 제152회 임시국회에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를 1991년 상반기에 동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었다. 그러나 수서사건 이후 민주자유당은 양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여당이 수서사건을 호도하기 위해 당초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던 선거를 분리했다며 비난하였다. 또한 야당과 시민단체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수서사건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8. 지방자치제 부활

가. 지방자치제 역사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에 서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방법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률은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이었으며,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처음 실시한 것은 1952년 4월 25일이었다.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부 수립 당시부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를 허용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며,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을 지역주민이 선거에 의해 뽑도록 명시하였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특별시·도의회의원과 시·읍·면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읍·면장은 시·읍·면의회에서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처음 실시된 것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년 후의 일이었다. 1952년 4월 25일 실시한 시·읍·면의회의원선거와 이로부터 2주일 후인 5월 10일 실시한 도의회의원선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지방의회의원선거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6·25전쟁 중이라서 전선에 인접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경기도와 강원도, 계엄령이 선포된 전북 남원·완주·순창·정읍 등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처음 실시할 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된 면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놓고도 ‘치안을 확보하고 민심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선거실시를 보류하다가 6·25전쟁 중이던 1952년에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이때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의회의원을 국회의원의 대항세력으로 이용하기 위한 점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2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간선제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국회 표결에서 163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9표, 반대 143표, 기권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다. 개헌안이 부결되자 이승만 정권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민의의 또 다른 대변자인 지방의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한 것이었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당 계열의 사람들이 관권 등을 이용하여 많이 당선되었다. 이렇게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은 임시수도인 부산에 와서 국회의원들에게 ‘너희들만 백성이 뽑았냐? 우리도 백성이 뽑았다’며, 당시 국회가 있던 경남도청을 포위하고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이승만 대통령을 지원하였다. 결국 대통령직선제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두 번째 실시된 것은 1956년의 일이었다. 이때에는 시·읍·면의회의 간선제였던 시·읍·면장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와 시·읍·면장선거를 1956년 8월 8일 동시에 실시하고, 서울특별시·도의회의원선거는

5일 후인 8월 13일 실시하였다. 이때도 휴전선 인근인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김화·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등 8개군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서울특별시·도지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이전보다 좀더 진전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시·읍·면장선거에서 야당성향의 사람이 상당수 당선되자 1958년 12월 26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읍·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제로 바꾸어버렸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는 훨씬 활성화되었다. 제2공화국 장면 정부는 이전에 대통령이 임명하던 서울특별시·도지사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도의회의원선거, 12월 19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2월 26일 시·읍·면장선거, 12월 29일 서울특별시·도지사선거가 실시되었다. 세 번째 실시한 지방선거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박정희 육군소장 중심의 군부세력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후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지시켰기 때문이었다.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꾸었다. 이어서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제3공화국을 탄생시킨 박정희 정권은 제3공화국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지방의회의 구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 1972년 유신체제를 만들어 계속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부칙에 조국통일 시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집권기간인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1980년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전두환 정권의 집권기간인 1980년부터 1988년 2월까지도 박정희 정권 때와 같이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표 3-1〉 역대 지방자치단체선거 실시상황

구분	선거명	선거일	지방자치단체 총수	선거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수	정수
1차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2. 4. 25(금)	1,542	1,397	17,559
	도회의원선거	1952. 5. 10(토)	9	7	306
2차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6. 8. 8(수)	1,491	1,458	16,961
	시·읍·면장선거	1956. 8. 8(수)	1,491	580	1,491
	서울특별시·도회의원선거	1956. 8. 13(월)	10	10	437
3차	서울특별시·도회의원선거	1960. 12. 12(월)	10	10	487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60. 12. 19(월)	1,518	1,468	16,909
	시·읍·면장선거	1960. 12. 26(월)	1,468	1,468	1,468
	서울특별시·도지사선거	1960. 12. 29(목)	10	10	10

나. 지방자치제 부활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제가 폐지된 이후 지방자치제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주로 야당에서 제기하였는데 지방자치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거나 정당대표자의 연두기자회견 등을 통해서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주장이 좀더 강하게 제기된 것은 민주화 열기가 거세게 불어닥친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였다. 이때 선거에 참여했던 여야 모든 정당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이 이에 굴복하여 1987년 10월 27일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있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 유보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제 실시를 가시화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7년 12월 18일 실시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였다. 민주화가 획기적으로 진척된 후 실시한 이 선거에서 야당인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도 지방자치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곧바로 지방자치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야당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여당은 늦추려고 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년 이내 구·시·군의회(이하 “기초의회”라고도 한다) 구성, 2년 이내 시·도의회(이하 “광역의회”라고도 한다) 구성,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반면에 야당 측은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1988년에 동시에 실시하거나, 1988년에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부터 먼저 실시’하자고 주장하며 맞섰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주정의당은 제12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140회 임시국회(1988. 3. 2~3. 8)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지방자치제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서는 ‘1989년 4월 30일 이전에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광역의회는 기초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법률로 정할 때까지 실시하지 않고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지방자치제 관련 법안은 마련했지만 선거를 실시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었다.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되었고, 공조체제를 구축한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 3당은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방자치제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였다. 야 3당은 지방자치관계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1989년 이내에 광역의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고, 1990년 이내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1989년 3월 15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개정할 수 없었다.

여야는 협상을 다시 시작하여 1989년 12월 30일 여야합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시·도 및 구·시·군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선언하고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자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경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1990년 10월 8일부터 13일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와 여당의 내각제 포기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단식투쟁을 하였고,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단식 중이던 김대중 총재를 방문하여 지방자치 실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9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92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한 지방자치제 관련 3개 법안¹⁴⁾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중지된 지 3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이들 법에서 규정한 대로 1991년 상반기 중에 치러졌지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또 한번의 진통을 겪은 뒤 이들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3년 후인 1995년에 치러졌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치르게 되면 한 해에 4번의 선거(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제14대 대통령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단체장선거를 말함)를 치르게 되어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연기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때 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체제로 치름으로써 관권선거를 자행하려는 속셈이라고 정부·여당을 비난하였다.

14) 3개 법안이란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말한다.

제2절 선거제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1988년 4월 6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관한 별도의 선거법이 없었고, 「지방자치법」 안에 선거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1950년대와 1960년대 총 세 차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실시하였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바로 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리되어 1988년 4월 6일 제정되었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앞둔 1990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되었다.

1. 선거법 제·개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은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부터 시작되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야는 선거가 끝나자 지방자치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제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 간에 지방자치제 실시시기와 범위 등에 관한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았다(구체적인 내용은 제1절 “8. 지방자치제 부활” 참조). 합의가 되지 않자 1988년 3월 8일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단독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정부에 이송되어 1988년 4월 6일 공포되었다.

당시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여야가 시급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신경을 쓰느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등한시한 경향이 있었다. 1988년 3월 8일 새벽 2시경에 민주자유당은 당시 여야의 쟁점사항이었던 「국회의원선거법」을 국회에서 변칙 처리하였고, 이에 항의하여 야당의원들이 퇴장하

였다. 민주정의당은 이날 오후 자기 당 의원들로만 국회 본회의를 속개하여 출석의원 146명 중 찬성 14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과시켰었다.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얼마가지 않아 야당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 3월부터였다. 이때에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만들었고,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이 이에 반발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수차례 회담을 갖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시기와 방법 등에 이견을 보여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민주자유당이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26개 의안을 변칙 처리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철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양당은 협상을 계속한 끝에 1990년 11월 17일 민주자유당 김윤환 의원과 평화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양당 총무회담에서 마침내 합의사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양당은 2명씩, 모두 4명으로 실무 협상팀을 구성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1990년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1호로 공포되어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허용여부였다. 평화민주당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 모두 정당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고, 반면 민주자유당은 모두 정당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협상과정에서 양당은 조금씩 양보하여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2. 선거법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적용한 「국회의원선거법」을 근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요 골격은 「국회의원선거법」과 비슷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

거리는 특수성 때문에 일부 내용은 큰 차이가 있었다. 「국회의원선거법」과 차이가 있는 내용 위주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각각 20세 이상과 25세 이상인 국민에게 부여하여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절에서 ‘국회의원선거’라 함은 ‘1987년 4월 26일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말한다)와 같았다. 다만, 지방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에다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는 ‘주소요건’을 추가하였다. 즉,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로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였다(법¹⁵⁾ 제9조 및 제10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선거법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았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의 벌금액 기준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0만 원이었으나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50만 원으로 올려 그 기준을 완화하였다(법 제11조 및 제12조).

나.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확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법 제15조). 1개의 읍·면·동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은 2만을 초과하는 때 2만까지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하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병행하였다(법 제14조). 이런 기준에 의해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인 구·시·군은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초과하는 구·시·군은 45인으로 제한하되, 인구 70만을 초과하는 구·시·군은 50인으로 하였다(법 제14조). 의원정수의 최소수와 최대수를 제한한 것은 구·시·군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확정된 선거구

15) 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함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을 말함

수는 총 3,562개였고, 의원정수는 4,304명이었다.

〈표 3-2〉 구·시·군의회의원 정수별 선거구현황

계	의원정수 1인 선거구	의원정수 2인 선거구	의원정수 3인 선거구	의원정수 4인 선거구
3,562	2,844	695	22	1

다. 후보자등록

정당의 당원도 출마는 가능하나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구수 1,000명 미만의 선거구는 30명 이상 70명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법 제28조). 후보자등록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하는 기탁금은 200만 원으로 정하였다(법 제36조).

라.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은 최장 18일간으로 정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과 같았다(법 제39조).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으로 제한하였다(법 제41조).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을 선거운동의 주체에서 제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선거운동방법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현수막의 5가지로 제한하였다. 다만, 선전벽보 등의 작성방법이나 첩부·발송·게시 수량 등의 기준은 국회의원선거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전벽보나 선거공보의 원고는 후보자가 작성하고 인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였으나,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원고 작성뿐만 아니라 인쇄도 직접 후보자가 하게 하였다. 첩부와 발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하였다(법 제47조 내지 50조).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당 2회씩 개최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선거의 3회보다 1회를 줄였다(법 제51조). 합동연설회의 관리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하였

지만,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직무대행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내에 여러 개의 선거구가 있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구의 합동연설회를 다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소형인쇄물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그 종류와 제작·배부수량을 사실상 제한하지 않았지만,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종류는 3종, 제작·배부수량은 종류별로 선거구 안의 유권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배부방법에 있어서도 합동연설회장이나 선거사무소 또는 가두에서 배부하게 하거나 우편배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호별방문 배부, 신문삽입에 의한 배부, 첩부, 살포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다(법 제54조).

현수막은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선거구 안의 투표구마다 2매씩 게시할 수 있게 하였다.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이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55조).

마. 투 표

투표는 국회의원선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즉 1인 1표로 하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도록 하였으며(법 제97조),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하여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였다(법 제98조). 기표방법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 표를 하도록 하였다(법 제107조). 또한 투표용지가인 제도(법 제101조, 법 제104조), 투표통지표 교부 및 입회인 제도(제103조) 등도 국회의원선거와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선거와 다른 점은 투표용지 인쇄순위(이하 “기호”라고 한다) 결정방법이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였으나,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모두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00조).

바. 개 표

개표도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즉, 선거일 오후 6시 투표가 종

료된 후 투표함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설치된 개표소로 이송하여 후보자 측에서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표는 투표구 단위로 구분하여 개표하는 이른바 ‘투표구별 분리개표’ 를 하도록 했다(법 제121조~제123조).

국회의원선거와 다른 점은 부재자우편투표의 개표방법이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우편투표는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하도록 하였으나 구·시·군선거에서는 일반투표함과 분리하여 별도로 개표하도록 하였다(법 제121조).

사. 당선인 결정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였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29조).



제3절 후보자등록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후보자공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모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은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각 지구당에서 내부적으로 자기 당 후보자들을 사전에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1. 후보자 등록상황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991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이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구수 1,000명 미만의 선거구는 30명 이상 70명 이하)의 추천을 받은 추천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 기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였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공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두 사전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10,159명이 출마하여 2.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경쟁률은 지난 1956년과 1960년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선거의 각각 경쟁률 2.3 대 1, 2.0 대 1과 큰 차이는 없었다. 등록된 후보자 중 196명이 선거 전까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선거일 현재 최종 후보자수는 9,963명으로 줄어들었다.

선거구별 경쟁률을 보면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천안시 원성제1동선거구로 8 대 1 이고,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선거구를 비롯하여 441개 선거구로 당해 선거구의 정수만큼만 후보자가 출마하여 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수가 의원정수에 미달한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경쟁률이 1 대 1인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모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무투표선거구' 라고 하였다.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등록마감 당시에는 441개였으나 이후 선거일까지 사퇴한 후보자가 늘어나면서 최종 무투표선거구는 493개로 늘어났다. 무투표선거구의 후보자는 총 614명이었는데 이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이 확정되었다. 무투표당선자는 주로 대도시에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남과 경북에 많았다. 그 이유는 대도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 곳이 많았고, 경남과 경북은 여권 성향의 후보자가 많아 야당 성향의 후보자가 별로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도별 경쟁률은 강원·충남·전남이 각각 2.8 대 1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6 대 1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는 전국 평균경쟁률에 크게 못 미쳤다. 후보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선거구는 2인을 선출하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선거구로 모두 11명이 출마하였다.

〈표 3-3〉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경쟁률

구 분	선거구수	의원정수	등록 후보자수	비 고
계	3,562	4,304	10,159	2.4 대 1
투표 실시 선거구	3,069	3,689	9,349	2.5 대 1
무투표 선거구	493	615	614	1 대 1

각 정당은 후보자등록이 끝나자 자기 당 소속 후보자수를 밝혔다. 후보자 가운데 자신의 직업을 정당인으로 표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속정당과 성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음에도 각 정당은 자체 집계자료를 발표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전체 후보자의 42.8%에 해당하는 4,339명, 평화민주당은 1,524명, 민주당은 200명 정도가 자기 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라고 주장하였다.

등록후보자 10,159명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농업이 3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상업 25.8%, 건설업 6.8%, 회사원 4.8%, 공업 3.8%, 의사·약사 2.5%, 운수업 2% 등의 순이었다. 1960년 시·읍·면의회의원선거 당시에는 농업이 80.0%로 가장 많았었다.

후보자들의 학력은 고졸이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졸 22.4%, 대학원졸 11.1%, 중졸 9.2%, 초등졸 7.9%, 대학중퇴 7.1% 등의 순이었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고졸보다 대



▲ 후보자추천장 교부장면(1991년 3월 8일)

줄이상의 고학력자가 더 많았고, 도 단위 지역은 고졸자가 많았다. 그러나 후보자등록신청 시 학력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후보자가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원 교양과정 등의 학력을 정규학력인양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의 연령은 25세~30세 1.2%, 30대 14.5%, 40대 36.4%, 50대 38.8%, 61세 이상 9.1%의 분포를 보여 40대와 50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1960년의 시·읍·면의 회의원선거 때에는 30대와 40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전국 최고령 후보자는 서울 동작구 상도제1동선거구의 위병룡 후보로 81세였고, 최연소 후보자는 광주시 북구 중흥제3동선거구의 박정희 후보로 25세였다.

여성후보자는 모두 123명이 출마하여 전체후보자의 1.2%를 차지했다. 1988년의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여성후보자가 2.3%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여성 참여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한편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중인 1991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7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90헌마28). 이 조항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염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 해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합장이 명예직이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는 법적인 지위가 다르므로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조합장이 후보자등록을 해올 경우 현행법의 입후보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을 수리하였다.

2.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사망

후보자등록 후 선거일인 1991년 3월 26일까지 196명의 후보가 사퇴하거나 사망 또는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당초 10,159명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9,963명으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3-4>와 같다.

<표 3-4>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사퇴 등 현황

(단위: 명)

최초 등록 후보자수	사퇴·사망·등록무효				선거일 현재 후보자수 (최종 후보자수)
	계	사망	등록무효	사퇴	
10,159	196	2	12	182	9,963

※ 선거일 현재 기준임.

등록무효 사유는 피선거권이 없거나(7명), 입후보제한직(4명), 후보자등록 시 법정서류 미비(1명) 등이었다.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이고, 입후보제한직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이 출마한 경우였다.

사퇴한 후보자수는 182명으로 후보자등록자수 10,159명 대비 1.8%에 달하였다. 사퇴한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퇴신고서에 의하면 사퇴이유는 ‘일신상, 건강상, 지역 화합, 선거풍토 실망’ 등이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가 강박과 매수 등으로 야당성향 후보자들의 사퇴를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공격하였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제4절 3. 선거쟁점” 참조).

3. 기탁금

후보자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하는 기탁금은 후보자 1인당 200만 원이었다. 이 기준에 의하여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0,159명이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 총액은 203억 1,800만 원이었다.

당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28조(기탁금의 기탁)에 기탁금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후보자등록을 못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 파주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각 30분 전에 등록서류와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파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금으로는 기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자기앞수표를 구하려고 하였지만 은행이 문을 닫은 후였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다. 결국 이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선거결과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 미만인 경우 선거인명부사본 작성비용과 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 등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투·개표참관인 수당 등을 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선거가 끝난 후 전체 후보자의 97.5%인 9,905명은 기탁금을 반환받았지만 나머지 후보자 254명은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들의 기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다. 반환받지 못한 사유는 사퇴 182명, 등록무효 12명, 법정요건 미달(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 미만 득표) 60명 등이었다. 구체적인 기탁금 반환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 내역은 <표 3-5>와 같다.

<표 3-5>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및 귀속상황

(단위 : 천원)

기탁금액	공제금액						반환금액	국고귀속
	계	명부사본 작성비용	선전벽보 비 용	선거공보 비 용	합동연설회 비 용	투·개표 참관인 수당		
20,318,000 (10,159명)	6,029,619	89,315	601,393	949,563	3,240,598	1,148,750	13,835,239 (9,905명)	469,010 (254명)

※ 지방자치단체 귀속 금액에는 은행이자 15,869 천 원이 포함되었음.



제4절 선거운동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3당 합당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였고, 3개월 후에 시·도의 회의원선거와 1년 후에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연이어 치러질 예정이어서 권력 재편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각 정당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였고,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 간 대결양상도 나타났다.

1. 각 당의 선거전략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정당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각 정당은 ‘후보자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자기 당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한 후 이들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지원하였다. 또한 각 정당은 내천 후보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 유권자들에게 자기 당에서 내천한 후보자임을 알리기도 하였다.

가.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표면적으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최소한으로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이 선거전을 정당차원의 대결로 몰아가려고 하자 중앙당의 지원활동을 모두 취소하는 등 정당개입의 극소화 전략을 구사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수서사건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문제가 쟁점화될 경우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중앙당에 선거상황실만 설치한 후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도

로포장·상하수도 문제 등이 다루어지는 마을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정치문제가 선거전의 쟁점으로 대두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선거기간 중 중앙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하거나 지방 순회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전략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구당 차원에서 자기 당 후보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지구당 위원장들은 앞으로 실시될 시·도의회의원선거 공천 희망자들에게 지역을 할당한 후, 그 지역의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득표율을 가지고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공천심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독려하는 등 광역의원선거의 공천 희망자들을 활용하였다.

민주자유당의 전략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당세가 유리한 영남·중부권에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로 표면에 나섰지만, 호남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당성향 후보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50% 이상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여야 후보자가 동반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지역을 정책지구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은밀히 당세확장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합당 이전의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당원들에게 민주자유당의 당원임을 확인시켜주며 당세를 확장하고, 이를 향후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4대 대통령선거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나.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은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달리 정치문제를 선거쟁점으로 삼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선거전을 정당대결 구도로 몰아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수서사건으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선거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총재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수서사건 규탄대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평화민주당의 지원을 받는 후보자들에게 합동연설회에서 수서사건을 적극 거론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에 대규모 옥외 순회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결정을 하자 이를 수정하여 옥내행사인 당원단합

대회로 변경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지구당 차원에서 당원단합대회와 당원배가운동 등을 펼치면서 자기 당 후보자들을 지원하였다. 특히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후보자를 ‘지방자치대책위원’으로 임명하고, 이를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에 경력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평화민주당 후보자라는 것을 알리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후보자들의 선전벽보나 현수막 등도 중앙당에서 정한 표본에 따라 같은 색상과 디자인으로 제작하게 하여 유권자들이 평화민주당 후보임을 쉽게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평화민주당도 민주자유당과 같이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을 펼쳤다. 당세가 유리한 광주·전남·전북과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주 공략대상으로 삼아 집중 지원하여 이들 지역의 구·시·군의회만이라도 장악한다는 방침이었다. 대신에 당세가 약한 부산·대구·경북·경남 등은 마땅한 전략이 없어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 민주당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민주당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의 양당구도를 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재야인사들을 영입하며 당세 확장사업을 벌였다. 특히 수서사건에서 자유로운 민주당은 이를 활용하여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민주당만이 깨끗한 정치집단임을 선전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민주당도 평화민주당이 사용하던 전략과 비슷한 방법으로 자기 당 후보자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려고 하였다. 즉, 지원대상으로 삼은 후보자를 ‘지방자치대책위원’으로 임명하고, 이를 선전벽보 등에 경력으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임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선거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지역적 기반이 없고, 지구당 창당도 부진한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전국 선거구의 3분의 1정도에 후보를 내려던 당초의 목표에 후보등록율이 훨씬 못 미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기초의원선거에의 적극 개입방침을 철회하고 다음에 치르게 될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의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정하는 듯하였다.

2. 선거운동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991년 3월 8일부터 3월 25일까지(당해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만 할 수 있었다. 선거운동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현수막 등의 5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었다.

가. 선전벽보

구·시·군의회선거의 선전벽보는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원고 작성뿐만 아니라 인쇄도 후보자가 직접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즉, 후보자가 선전벽보의 원고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후보자가 그 원고에 의하여 인쇄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선전벽보를 인쇄하여 1991년 3월 16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9일까지 첩부하였다. 선전벽보의 첩부기준은 시와 구 지역은 인구 300인에 1매, 군 지역은 200인에 5매 비율이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전국의 358,225개소에 1,180,722매의 선전벽보가 첩부되었다. 무투표당선자와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한 제출대상 후보자 340명이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의 선전벽보는 첩부할 수 없었다.

후보자들은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등에 특정정당에서 내친을 받은 사실을 알리려고 그 정당의 상징색을 활용하거나 당원경력을 표기한 사례가 많았다. 당시 민주자유당은 파란색을, 평화민주당은 노란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제2동선거구에 출마한 김종채 후보는 ‘평화민주당 도봉구갑지구당 운영위원, 평화민주당 지방자치대책위원’ 등의 당원경력과 함께 기호, 구호, 성명의 외곽배경을 노란색으로 인쇄하여 평화민주당에서 내친한 후보자임을 알리려고 하였다.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선거구에 출마한 오갑식 후보는 ‘민주자유당 협의회장’ 경력을 기재하고 기호를 파란색으로 인쇄하여 민주자유당의 지원을 받는 후보자임을 알리려고 하였다.

각 후보자들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걸맞게 지역발전과 관련된 선전문구를 많이 게재하였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제5동선거구의 김군수 후보는 “우리지역 봉사자”를, 강남구 청담

나. 선거공보

선거공보도 선전벽보와 같이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1991년 3월 16일까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991년 3월 19일까지, 매세대에는 3월 22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때 전국적으로 발송한 선거공보는 총 10,886,063통(부재자 559,207통, 매세대 10,326,856통)이었다.

무투표당선자와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한 제출대상 후보자 408명이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의 선거공보는 발송할 수 없었다. 충남 온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신정동선거구의 김태현 후보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원고에 후보자의 정견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접수를 거부하였고, 결국 김태현 후보의 선거공보는 발송되지 못하였다. 선거가 끝난 후 김태현 후보는 이런 사유를 들어 선거소청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선거공보와 선전벽보 등에 후보자들이 허위학력을 게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대학원의 단기연수과정을 정규과정처럼 표기한 사례가 많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것을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보고 경력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기도 하였다.

선거공보의 내용은 지역공약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구·시·군의회의원이 해결할 수 없는 공약도 있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으로 발표한 것들이 많았고, 중앙부처의 발표사업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그린벨트 완화, 자연녹지 해제 등 구·시·군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도 상당수 있었다.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선거구의 윤도현 후보는 간척지 조성, 치어생산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선거구의 이강권 후보는 “선거법에 규제받아 찾아뵙지 못하고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로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군청 유치, 학교승격, 청정해역 일부 해지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경상북도 경산군 하양읍선거구의 이호원 후보는 하양도시계획재정비, 하양 그린벨트 완화, 토지 및 임야매매 자유화, 농촌실정에 맞는 이중곡가제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선거구에 출마한 이종우 후보는 농어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내 땅 지키기 운동 적극전개로 부동산투기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선거공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여러 건 발생하였다. 서울 도봉구 쌍문제1동선거구에서는 송성렬 등 선전벽보 첩부인부 5명이 선거공보와 선전벽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200여 매의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거공보



강진군 칠량면



거제군 거제면



경산군 하양읍



남제주군 안덕면

선거공보를 가로변 등에 첨부하였다. 이들은 뒤늦게 잘못 첨부한 사실을 알고 남은 선거공보를 리어카에 싣고 동사무소로 돌아가다가 풀을 쏘아 선거공보가 훼손되자 문책을 우려해 선거공보 9,000여 매를 동사무소 소각장에서 불태워버렸다. 도봉구갑선거관리위원회는 소각 등으로 부족해진 선거공보를 후보자들에게 추가로 제출받아 발송하고 잘못 첨부된 선거공보는 철거하였다. 사건을 일으킨 관할 쌍문제1동의 동장과 사무장은 직위 해제되었다.

선거법에서 선거공보는 단색으로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제3동선거구의 김용준 후보는 단색으로 인쇄한 일부 선거공보의 경력란 4곳에 적색 형광펜으로 색을 칠하였다. 이런 사실은 우체국에서 매세대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 발송통수 6,539통 중 아직 배달이 안 된 4,400통을 회수하여 선거공보봉투를 모두 개봉하였다. 그 결과 1,039통의 선거공보봉투에서 색칠이 되어 있는 김용준 후보의 선거공보가 나왔다.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용준 후보의 선거공보 중 색칠이 되어있지 않은 것은 그대로 발송하고,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은 발송하지 않았다. 또한 선거공보봉투 개봉 시 김용준 후보의 소형인쇄물 50매가 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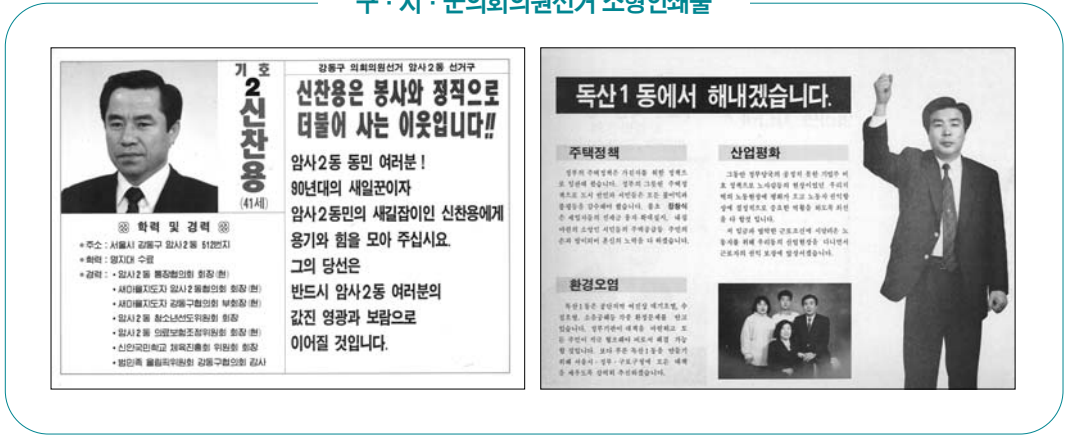
경기도 의왕시 내손제2동선거구에서는 우편집배원이 선거공보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안양우체국 업무과장과 집배원이 1991년 3월 21일 경기도 의왕시 내

손제2동 669번지 일원에서 일부 선거공보봉투를 도로가 음식점 앞에 내려놓고 다른 우편물을 배달하고 온 사이 누군가가 344통을 가져가 버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던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다. 소형인쇄물

소형인쇄물은 선전벽보나 선거공보와 달리 후보자가 직접 배부할 수 있었고, 색도·규격·종수·게재내용 등에 대한 제한도 비교적 적었으므로 후보자들이 선호하는 선거운동이었다. 소형인쇄물은 후보자별로 3종까지 제작할 수 있었다. 총 10,159명의 후보자 중 1종만 제작한 후보자는 2,793명(27.5%)이었고, 2종을 제작한 후보자는 3,094명(30.5%)이었으며, 3종을 다 제작한 후보자는 2,964명(29.2%)이었다. 나머지 1,308명(12.9%)의 후보자는 사퇴, 사망, 등록무효, 무투표 당선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제작하지 않았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소형인쇄물



후보자들은 소형인쇄물에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여 선전벽보나 선거공보보다 더 풍부하게 자기소개, 사진, 공약 등을 게재하였다. 또한 선전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활용하여 자신이 그 정당에서 내천 받은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려고 하였다. 특히 특정 정당의 당사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정당의 배지를 착용한 사진 등을 게재한 후보자들도 있어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6조에 규정된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기 금지’에 위배된다는 시비가 일기도 하였다. 소형인쇄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16절 정도)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한 후보자도 있었다.

후보자들이 소형인쇄물에 게재한 내용은 선거공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지역발전과 자신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임을 부각시키는 것들이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제2동선거구의 신찬용 후보는 자신의 봉사활동, 장학금 전달, 동네 방범순찰 활동 등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독산제1동선거구의 장창식 후보는 ‘뚝심과 의리의 사나이! 제하로 세입자들의 전세금 용자확대 실시, 내집 마련의 소망인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였다.

라.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선거구마다 2회씩 개최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1991년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5,951회의 합동연설회가 개최되었다. 법정개최횟수는 7,124회였으나 무투표선거구 972회와 후보자들끼리 담합하여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201회는 개최하지 못하였다.

합동연설회는 1회당 평균 300여 명의 청중밖에 모이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1991년 3월 19일 강원 삼척군 도계읍선거구에서 개최한 합동연설회에 가장 많은 2,3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였고, 3월 22일 경북 포항시 제철동선거구에서 개최한 합동연설회에 가장 적은 11명의 청중이 참석하였다. 청중이 적게 참석한 이유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쌀쌀한 날씨 때문이었다.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이 연설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호남의 일부지역 후보자들은 주로 수서사건 은폐, 시·도의회의원선거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분리실시 등 중앙정부의 정치적 쟁점사항을 거론하였다. 반면에 중소도시와 시골지역의 후보자들은 도로포장, 버스노선 증설, 쓰레기 등 생활 공해 해결, 농공단지 조성, 하천 보수, 교통난·식수난 해소 등 지역발전과 숙원사업 등 그 지역의 주민이익과 직결되는 내용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합동연설회 관련 사건·사고도 일어났다. 1991년 3월 19일 전남 나주시 향교동선거구에서는 앰프고장으로 3명의 후보자 중 마지막 후보자가 연설을 하지 못하자 5일 후 같은 장소와 시간에 그 후보자의 연설을 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부산 서구 서대신제1동선거구의 합동연설회장에서는 김순철 후보가 연설했던 중에 그와 평소 관계가 좋지 못했던 지역주민 김영태가 인분을 담은 장난감 고무물총으로 김순철 후보의 얼굴을 쏘았다. 나중에 김영태는 후보자 폭행혐의로 기소되어 1991년 7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합동연설회



서울 중구



인천 북구

마. 현수막

현수막은 후보자가 제작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당해 선거구의 투표구마다 2매씩 게시하였다. 이런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81,223매였다. 이 중 9,409매는 분실·훼손되어 교체하였다.

도시의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현수막 게시장소가 부족하여 후보자 간에 서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거리에 너무 많은 현수막이 게시되어 교통신호 등을 가리거나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일부 상점주들은 현수막이 상점의 간판을 가린다면 이를 몰래 철거하기도 하였다.

후보자끼리 합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은 선거구도 있었다.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4명은 선거비용을 줄이고, 선거과열 분위기를 막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

3. 선거쟁점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선거는 1980년대와 달리 민주화가 진전되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시기에 실시하였고, 또한 정당이 원칙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거쟁점도 별로 없었다. 수서사건에 대한 규탄집회, 정부의 선심정책 발표, 후보자 사퇴 등을 둘러싼 논쟁 등이 선거쟁점이 되었다.

가. 수서사건 규탄집회의 위법성 논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최대쟁점은 선거일을 불과 두 달 정도 남겨두고 터진 수서사건이었다. 수서사건은 청와대와 국회, 여당인 민주정의당,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 건설부 등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사건이었다. 수서사건이 터지자 노태우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경위를 밝힌 후 관련자 구속, 민주자유당 당직개편, 서울시장 경질, 대국민사과문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해 사건을 재빨리 수습하려고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제1절 8. 수서사건” 참조).

그러나 재야와 학생단체들은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또한 평화민주당과 민주당 등의 야당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정부 규탄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화민주당은 선거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1991년 3월 9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수서사건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탄대회는 선거기간 중에 열리기 때문에 곧바로 선거법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1년 3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라매공원의 수서사건 규탄대회에서 선거관련 발언이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행위가 있거나, 선거관련 발언 등이 없더라도 같은 성격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반복하여 개최될 때는 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야당과 재야단체들은 “정당의 시국강연회와 집회 등을 선거법위반으로 확대해석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수서사건을 비롯한 비리에 관한 대정부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음모다”라고 비난하면서 자칫 선거가 공안 분위기



▲ 수서사건 관련 보도(중앙일보 1991년 3월 7일)

속에서 치러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였다.

특히 평화민주당은 1991년 3월 9일 개최되는 보라매공원 규탄대회 자체는 선거법위반이 아니지만 집회를 전국적으로 순회하는 등 반복할 때는 선거법 위반사유가 된다는 단서에 대해 “위법행위가 아닌 것은 수십 번 반복하여도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국순회 집회는 선거와 무관한 수서사건 규탄을 위한 정당의 고유활동임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확대해석이라고 비난했다.

평화민주당은 1991년 3월 9일 예정대로 보라매공원에서 수서사

건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대중 총재는 수서사건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주장한 후, 노태우 대통령에게 수서사건에 대한 TV토론을 요구하였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면 전국순회 규탄대회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서사건에 대한 논쟁을 자제하던 민주자유당은 평화민주당이 보라매공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자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민주자유당 박희태 대변인은 평화민주당이 정당관여를 배제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주장한 뒤, “평화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군중집회를 연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수서사건 규탄집회가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정당 간 대결로 이끌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팽배해지자 평화민주당은 1991년 3월 12일 총재단회의 및 당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선거

운동기간에 수서사건 규탄 전국순회 집회를 취소하고, 그 대신에 선거법에서 허용된 당원단 합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1991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순회 집회 불허조치가 정부·여당의 정략에 의한 것이지만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히고, 전국 6대 도시 순회집회계획을 전면 취소하였다.

나. 정부의 선심성 정책발표 논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1년 3월 12일 정부는 충청·호남지역의 신산업지대 육성, 전국 25개 노선의 2,100km 고속도로 건설, 주택 538만 가구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3월 18일에는 3조 6,800억 원을 투입하여 2001년까지 실시예정인 ‘상수도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가 3월 14일 개최한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회의’와 3월 19일의 ‘노사정 대토론회’가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안을 선거기간에 발표하고, 더욱이 TV로 생중계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 발표라고 주장하였다. 야당은 정부의 이런 행위는 여론후보의 득표를 돕기 위한 명백한 간접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야당은 KBS와 MBC가 이례적으로 낮 시간에 이를 생중계한 것은 분명한 관권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4,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선거운동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야당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와 민주자유당은 “국가의 중요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관례이고, 이는 선거와 무관하며 국민의 이해기반을 구축하는 데 뜻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통상적인 국정수행임을 강조하였다. 생중계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야당은 이와 같은 선심정책 발표 등의 중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1년 3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가 고유 업무에 속하는 정책을 수립·홍보하는 것은 선거기간 중이라고 하여 중단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의 정책발표가 특정 정당의 당원인 후보

자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조선일보 1991년 3월 22일

다. 후보사퇴 공방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후 선거일인 1991년 3월 26일까지 전체 후보자의 1.8%인 182명이 ‘일신상, 건강상, 지역화합, 선거풍토 실망’ 등의 이유를 들어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정부가 강박과 매수에 의해 야당 성향 후보자들의 사퇴를 조장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 홍영기 부총재 등이 1991년 3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여당성향의 후보자들을 무투표 당선시키기 위하여 민주자유당과 공안기관이 사퇴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후인 3월 13일(후보자등록마감일)에는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관련개입으로 선거는 공포분위기로 변했다”, “애초 출마를 약속했다가 포기한 야당 후보자들이 경기도 지역에서만 30~40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출마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안기부가 주도하고 있고, 군기무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3월 16일에는 김대중 총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후보사퇴가 공안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지, 민주자유당이 민주자유당계 후보자들을 단일화하기 위해 사퇴를 종용했는지, 후보 간 금품거래에

의한 담합사태가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1991년 3월 16일 장석화 민주당 대변인은 “후보자 등록 마감 뒤에도 후보자 사퇴가 줄을 잇는 것은 후보조정을 통하여 무투표당선을 노린 민주자유당과 공안기관이 개입하였다는 혐의가 짙은 공안관련 부정행위로 규정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야당의 상투적인 억지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자유당 박희태 대변인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관권이 개입하느냐”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민주자유당 장경우 사무부총장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함을 현실적으로 느껴 사퇴한 것 아니냐”면서 “농어촌 등 시골지역보다 서울·대구 등 대도시에서 후보 사퇴가 많은 것으로 봐도 권력개입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관권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991년 3월 18일 금품·관권에 의한 6건의 후보사퇴 사례를 발표하였다. 1991년 3월 20일에는 전북 고창군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민주자유당 전북도지부 부위원장인 이백룡 후보가 평화민주당이 내친한 신세재 후보를 매수하여 사퇴를 종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두 후보자의 대화가 담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공개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이 사건이 그동안 심증으로만 주장해 왔던 여당의 사퇴공작에 관한 결정적 물증이라고 주장하였다.

평화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후보사퇴 사유가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자, 문중·사제 간의 경합에 의한 도의적 사퇴, 건강’ 등이라고 밝히고, 관권에 의한 사퇴는 없었음을 주장하였다. 1991년 3월 20일 평화민주당이 공개한 전북 고창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매수사건에 대해서도 “평화민주당이 민주자유당 측 후보의 재력을 악용해 선거법을 위반토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금품요구는 평화민주당 측 후보가 먼저 했다”고 주장하였다.¹⁶⁾

이후에도 후보자들의 사퇴가 계속되었고,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은 관권개입에 의해 야당 성향의 후보들이 사퇴하고 있다면서 관권개입 증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우열

16) 검찰조사 결과 두 후보는 민주자유당 측 후보가 평화민주당 측 후보에게 현금 1억 원과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평화민주당 측 후보의 사퇴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져 두 후보와 5명의 선거사무원이 선거법 위반행위로 구속되었다.

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련의 후보사퇴에 대해 1991년 3월 21일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경쟁이 보장된 선거법 체계에서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자유스럽게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면 그 사퇴는 유효한 것이고, 1991년 3월 20일 현재 163명이 사퇴한 것은 외국이나 과거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비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각 정당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법사퇴는 단 한 건도 회보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제5절 선거비용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등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가 끝난 후 그 지출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도 다른 선거와 같았다.

1. 선거비용제한액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달한 비목별 산출기준표에 의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991년 3월 11일까지 공시하였다. 비목별 산출기준표는 ①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②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의 수당 및 실비보상액, ③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④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의 작성·게시 등에 필요한 경비, ⑤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⑥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등 6가지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전국 3,562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610만 8,000원이었다. 선거비용제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비목은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의 작성·게시 등에 필요한 경비'로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의 40.9%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의 수당 및 실비보상액' (36.7%),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9.2%) 등의 순이었다.

〈표 3-6〉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천원)

평균 선거 비용제한액 (합계)	선거사무소· 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등 의 수당 및 실비 보상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현수막 의 작성·배부 게시 비용	자동차· 선박 임차 료 또는 유지비	후보자 자신 의 선거운동 에 필요한 경비	기타 선거 사무의 연락 에 필요한 경비
16,108	822	5,911	6,588	1,015	1,482	290
비율(100%)	5.1	36.7	40.9	6.3	9.2	1.8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선거구로 3,572만 7,000원이었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여주군 산북면선거구로 864만 5,000원이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제한액의 과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수·세대수·선거인수·투표구수 등이었으므로 이런 것들이 많은 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

2. 선거비용 지출

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나고 1991년 4월 10일(선거일 후 15일)까지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총 10,159명의 후보자 중에서 충남 온양시 신정동 선거구의 김태현 후보를 제외하고 10,158명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지출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선거사무장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태현 후보의 선거사무장은 1991년 4월 24일 검찰에 고발되었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선거비용지출액 총액은 847억 613만 5,334원이고, 후보자 1인당 평균지출액은 833만 8,850원으로 평균제한액(1,610만 8,000원) 대비 51.8%를 지출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비목별 지출비율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의 수당 및 실비보상액'이 4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의 작성·게시 등에 필요한 경비' (36.1%),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9.8%) 등의 순이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자는 경기 고양군 지도읍

선거구의 김영구 후보로 2,87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가장 적게 지출한 후보자는 경기 용진군 송림면선거구의 박철훈 후보로 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거결과 두 후보는 모두 낙선하였다.

3. 선거비용지출 확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사실조사를 벌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조사는 하지 못하고 당선자 4,295명을 포함한 총 4,506명으로부터 현금출납부, 지출내역서,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서면심사를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심사 결과 선거비용지출보고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영수증을 구비하지 않는 등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여러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3개월 후인 1991년 6월 20일 실시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부터 현장조사를 하였다.

제6절

공명선거활동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였다. 특히 이전의 선거와는 달리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발하게 공명선거활동을 벌였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활동 목표를 국민의 올바른 선거의식과 주권의식 고양,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배격,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증진에 두고 언론매체와 인쇄물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공명선거활동을 펼쳤다.

가. 언론매체 이용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명선거활동은 주로 방송과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었다. 방송광고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절차 안내,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내용 등으로 텔레비전에는 100회, 라디오에는 210회를 실시하였다.

신문광고는 ‘공명선거는 지방자치의 뿌리입니다’, ‘누가 진정한 일꾼인가?’, ‘3월 26일은 귀중한 내 한 표를 행사하는 날’이라는 제목 등으로 중앙일간지에 3회, 지방일간지에 143회 등 총 147회를 실시하였다.

신문 광고



공명선거는 지방자치의 뿌리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본연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실시하는 과정
의외 피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선거법이 자속됩니다

- 규율·윤서풍·선상관행을 세공해가나 받는 행위
- 후보예정자의 선권을 위한 인사망·소행인래질·한수인 등을
배부하거나 개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 목적의 표명행위이며 공권력·공명력 갖는 모임을
갖는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1991년 2월 8일)



누가 진정한 일꾼인가?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바로 보아 살핍시다.**

우리를 위해 일할 내고장이 일문을 활는
지방의회선거!
누가 바른 선거운동을 하고 누가 우리의
상당인인가를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명절히 판단하여 소중한 민주시민의
의향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3월 16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선거인 명부에 잘못이 있으면 명부정합기(현황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기간 : 1991. 3. 14 ~ 3. 16
■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읍·동·리의 접이 지장한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1991년 3월 14일)

“불법·타당후보가 당선되면
그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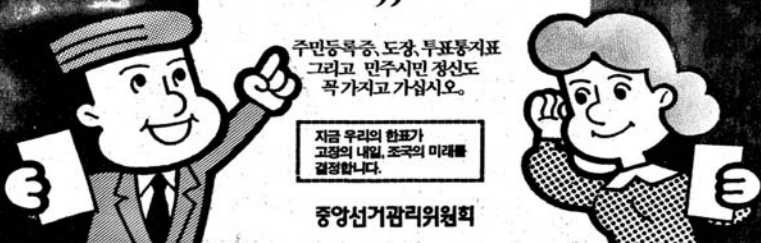
“3월 26일은 귀중한 내 한표를 행사하는 날!”

주민등록증, 도장, 투표통지표
그리고 민주시민 정신도
꼭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우리의 한표가
고장의 내일, 조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고 선정한 한표로
주권을 행사해야죠.”



3차(1991년 3월 23일)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담화문을 2회에 걸쳐 광고형식으로 신문에 게재하였다. 1991년 3월 8일 선거일공고에 즈음하여 발표한 담화문에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켜 깨끗하고 밝은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내 고장과 이웃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3월 25일 발표한 담화문에서는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여야 하며, 선거결과에 승복하여 줄 것” 등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들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대담·해설 프로 등에 440여 회 참여하여 선거절차나 기권방지, 공명선거 등을 안내 또는 당부하였다. 또한 언론사 자체적으로 공명선거를 전파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기획보도 등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언론사에서 240여 회의 기획보도 등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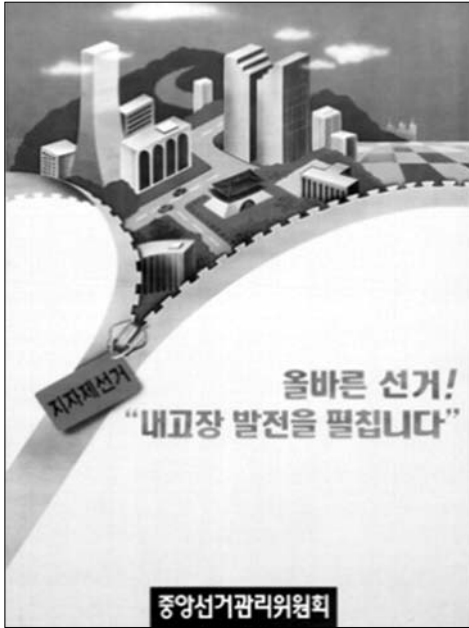
나. 인쇄물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인쇄물은 포스터, 계도전단, 담뱃갑 등이었다. 포스터는 “올바른 선거! 내고장 발전을 펼칩니다”, “공명선거 뿌리내려 주민자치 열매맺자”, “공명선거로 꿈과 희망을” 등의 제목으로 316,000부(4종)를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로변이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첩부하였다.

계도전단은 1,300여만 부를 제작하여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때 동봉하여 매 세대에 배부하였다. 담배인삼공사의 협조를 얻어 공명선거를 상징하는 그림과 문구를 게재하여 판매한 담배는 1,000만 갑이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절차 안내도 3만여 매, 계도벽보 8만여 매, 기권방지 계도벽보 및 전단 15만여 매, 기표방법 안내문 3만여 매, 공명선거 만화집 10만여 부, 시각장애자용 점자투표절차안내 책자 6천여 부, 선거절차해설 책자 22만여 부를 제작하여 공명선거활동에 활용하였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정당과 후보자 등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공한문 11만여 매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공명선거 포스터



다. 시설물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시설물은 청사현판, 육교현판, 선전탑, 현수막, 게시판 등이었다. 전국적으로 청사현판 150개, 육교현판 52개, 선전탑 15기, 현수막 4,556개, 게시판 176개를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시설물에 게재한 주요 홍보문구는 “모두가 지켜보자 후보자의 준법정신”, “올바른 나의 한 표 지역발전 나라발전”, “올바른 지방선거 내고장을 살기 좋게”, “공명선거는 지방자치의 뿌리입니다”, “우리고장 우리대표 올바른 내 한표로”, “눈길모아 부정감시 양심모아 공명선거”, “3월 26일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날” 등이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를 해설하는 비디오테이프 2편을 제작하여 전국의 극장과 유선방송국 등을 통하여 상영하게 하였다. 또한 기권방지 등을 안내하는 가두방송용 녹음테이프도 제작하여 동·리의 행정방송과 방송용 차량을 이용하여 방송하였고, 합동연설회장에서도 연설회 개시 전후에 방송하였다.

공명선거 계도 시설물



선전탑



육교현판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의 성명이나 담화문을 통해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위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활동을 하였다. 1991년 1월 11일 안용모 내무부장은 전국 시·군·구 단위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구성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활동을 펼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안용모 내무부장은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시장, 군수 등 해당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1991년 3월 8일에는 안용모 내무부장과 이종남 법무부장이 공동명의 담화문을 발표하여 30년 동안 중단된 지방의회 부활의 의미를 알리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귀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해 달라는 당부도 하였다.

1991년 3월 6일에는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시·도지사, 검사장, 교육감, 경찰국장들이 참석한 전국 주요 관서장 회의를 열고 선거법위반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특히 통·리·반장의 선거운동 개입을 엄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선거일정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국자치구·시·군의회의원총선거일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의 하의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구	시	군
서울	서울	서울
부산	부산	부산
대구	대구	대구
인천	인천	인천
대전	대전	대전
충청	충청	충청
경상	경상	경상
전라	전라	전라
제주	제주	제주

표 부 표 노 태 우

1991. 3. 26 일

판 하 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관리위원회

1991. 3. 26 일

▲ 선거일공고 및 정부의 담화문 발표(1991년 3월 8일)

3.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활동

각종 시민운동단체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사회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여러 시민운동단체들이 공명선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계기는 30년만의 지방자치 부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금권·타락선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1990년 말부터 입후보예정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선거과열이 우려되자 유권자와 시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선거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나타났다. 이들 시민단체는 주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활동이나 후보자 선택기준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시민단체로는 처음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91년 1월 12일 선거부정고발창구를 설치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고발과 제보를 접수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기독교계 인사 200여 명도 ‘공명선거실천기독교협의회’의 발족식을 가졌다. 1월 21일에는 ‘교수불자연합회’ 등 불교계의 11개 단체가 ‘공명선거추진불교도시민운동연합’을 결성하였고, ‘한국부인회’는 서울·부산 등 15개 지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했다. 1월 29일에는 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가 ‘공명선거실천기독교청년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3월 18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부정선거운동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활동을 펼친 시민단체는 전국적으로 총 424개였다. 시·도별 참여단체수는 충남이 7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 66개, 서울 65개, 전북 53개 순이었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선거부정고발센터를 설치하거나 공명선거감시기구 등을 발족시킴에 따라 이를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대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991년 2월 7일 YMCA회관에서 9개 단체(홍사단, 공명선거실천기독교협의회, 공명선거추진 불교도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자유지성300인회, 숙년회, 21세기클럽)가 주관하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공선협’이라 한다)를 창립시켰다.

공선협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이번 선거가 금권과 관권이 난무하는 불법·타락선거로 진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서울본부 '공명선거 실천시민감시단' 발족식
(1991년 3월 7일, 서울 YWCA 강당)

행될 경우 이 땅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될 것이다. 공명선거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모아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공동으로 활동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공선협은 이날 송월주 공명선거추진불교도시민연합대표, 박종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전대련 서울YMCA총무를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또한 부정선거감시 및 고발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했다. 공선협은 선거운동기간인 1991년 3월 14일 공명선거실천감시단을 발족하면서 각 개별단체의 공명선거감시와 별도로 독립된 고발창구들을 개설하였는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총 157건의 부정선거운동사례를 접수하고 이 중 23건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선협은 선거법위반행위 감시와 더불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선협은 1991년 3월 6일 ‘이런 사람을 뽑읍시다’라는 제목으로 10가지 기준과, ‘이런 사람을 뽑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8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후보자선정기준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였다. 또한 공선협은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후보 뽑기 운동’을 벌이려고 하였다. 그러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었다.

모든 시민단체가 공명선거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공명선거활동을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순수한 공명선거활동은 적극 지원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시민단체는 지도·단속하였다.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였다. 일부 후보자들이 제13대 대통령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위법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후보자가 15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위반행위 발생건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및 경찰이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1989년 4월 14일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에서 처음으로 단속활동을 시작한 이래 선거법위반행위단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1989년 4월 13일 실시한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선거법위반행위의 단속을 시작한 선거였다면,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에서 처음으로 단속활동을 시작한 선거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단속은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의 2가지였다. 먼저, ‘예방활동’은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어떤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내해주는 것이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들은 직업적인 정치인이 아니어서 선거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지난 제13대 대통령선거와 제13대 국



▲ 공명선거추진기동반(서울)

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무질서하고 타락적인 선거운동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만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예방활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선거법 위반사례 등의 예시집 50만 부를 제작하여 정당이나 후보자 및 행정기관 등에 배부하였다. 또한 선거질서 확립을 당부하는 공문도 보내고, 선거법위반 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음은 '단속활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및 직원 1,729명과 주로 구·시·군청 등에서 파견 받은 지방공무원 5,914명 등 총 7,643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현장에 투입하였다. 지방공무원을 파견 받은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직원만으로는 위반행위를 단속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방공무원을 단속활동에 투입한 것에 대해 야당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평화민주당 등 야당은 지방공무원

을 동원하여 선거법위반행위단속반을 구성한 것은 관권선거와 편파단속을 하려는 것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해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1년 3월 21일 지방공무원 파견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들이 관권선거와 편파단속을 한 사례가 없다고 밝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동단속반 외에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으로 위법행위 사례수 집반을 편성·운영하였다. 사례수집반의 임무는 자신들의 생활근거지 주변에서 선거법위반 사례를 수집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주는 것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단속활동을 펼쳐 총 65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경고·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3-7>과 같다.

<표 3-7>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관위의 위법행위 단속결과 조치상황

(단위: 건)

총 적발건수	조치내역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시정	자체종결
657	657	15	25	156	55	406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이거나 기소권이 없었기 때문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의 법적 조치는 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기소된 후 법원에서 유죄뿐만 아니라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때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건수의 53%를 기소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위반행위의 유형을 보면 인사장·연하장 등의 불법유인물 배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 금품·향응제공, 불법현수막 게시 등의 순이었다.

나. 검찰의 단속활동

검찰은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민주선거의 규율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역사 역류사범’으로 규정하고 기부행위, 매표알선, 사전선거운동, 폭행, 협박, 비방, 투표위조 행위 등 12개의 선거사범유형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991년 1월 14일 전국 50개 선거사범전담 수사반장회의를 열어 선거사범척결에 모든 검찰력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서 3월 12일에는 전국公安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입당권유, 호별방문, 금품 및 향응제공, 매표알선 등 주요 범죄를 유형화한 ‘선거사범 100개 유형’을 시달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또한 전국의 선거사

범 전담수사반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시키고 수사전담요원을 총동원했다. 특히 경쟁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사범’, 금품제공이나 매수알선행위 등 ‘금권선거사범’, 후보자·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협박사범’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다. 경찰의 단속활동

치안본부는 1991년 1월 12일 각 시·도 경찰국과 전국 208개 경찰서에 ‘사전선거운동 채증수사반’을 설치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한 불법 사전선거행위를 집중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112신고와 우편 및 구두신고를 받았다. 또한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하여 사전선거운동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였다.

치안본부는 선거일을 3일 앞둔 1991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벌이기도 하였다. 치안본부는 검문검색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투표일 막바지에 이르러 유권자들에게 선물 및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다지기 위한 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 위반행위 발생상황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에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56명이었다. 검찰은 이 중 607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649명은 불기소하였다. 기소율은 48.3%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기소율 12.0%에 비해 4배 정도 높았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에 구속된 사람은 80명이었다.

<표 3-8>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거사범 현황¹⁷⁾

발생건수 (입건)	기 소			불기 소				미 제
	소계	구 속	불구속	소계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 타	
1,256	607	80	527	649	240	381	28	-

17) 대검찰청, 1995, 『1995 4대 지방선거 선거사범백서』, 79쪽

검찰이 입건한 1,256명의 소속 정당별 현황을 보면 민주자유당 120명(9.6%), 평화민주당 96명(7.6%), 민주당 2명(0.2%)이었고, 나머지 82.6%에 해당하는 1,038명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었다. 정당의 참여를 배제한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사범도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많았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당선자 중에서 기소된 사람은 총 99명이었다. 이들의 재판결과 11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나머지 88명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표 3-9〉 당선자 중 기소된 선거사범의 재판결과¹⁸⁾

(단위: 명)

당선자 중 기소인원	재판결과			
	집행유예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유예
99	10	1	73	15

3. 주요 위반사례

가. 불법유인물 배포

경기도 안산시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사진과 주요경력기 기재된 연하장 1,000매를 인쇄하여 일부는 통장 등에게 직접 건네주고, 일부는 우편발송한 사례가 있었다. 선거가 끝나고 이 사람은 1992년 3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간 강남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윤상용이 강남신문에 입후보예정자 3인을 강남구의회의원의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례가 있었다. 선거가 끝나고 1991년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언론·출판자유 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광주시 서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조기수 후보는 소형인쇄물은 3종 이내에 제작·배부해

18) 대검찰청, 1995, 『1995 4대 지방선거 선거사범백서』, 81쪽

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1종을 더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2종의 소형인쇄물에 자신이 특정정당으로부터 추천받았다는 내용을 표기하였다. 선거결과 조기수 후보는 당선되었다. 조기수 후보는 이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4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100만 원 이상)이 아니었으므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 허위사실 공표

부산 영도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최인생 후보는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중퇴하였음에도 선전벽보 등에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으로 기재하였다. 선거결과 최인생 후보는 당선되었으나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다. 금품제공

강원 강릉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김형준 후보는 선거기간 전인 1990년 12월 29일 통장 및 주민 등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내의를 기부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준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은 1991년 6월 27일 그를 기소하였다. 선거결과 김형준 후보는 당선되었다. 김형준 후보는 이 혐의로 법원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 호별방문

대전 유성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김면술 후보는 1991년 3월 18일 선거구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호별방문을 한 것이었다. 김면술 후보는 선거가 끝나고 199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과주군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김윤재 후보도 1991년 3월 16일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였다. 김윤재 후보는 이외에도 조기축구회원 15명에게 5만 원을 기부한 사례가 있었다. 선거결과 김윤재 후보는 당선되었다. 김윤재 후보는 1991년 8월 28일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40만 원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8절 선거결과

1. 선거인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는 1991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구·시·읍면장이 작성하였다. 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1971년 3월 27일 이전 출생자(선거일 현재 20세 이상)로서 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공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 3월 21일 확정되었다.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인수는 28,301,580명이었다. 이 선거인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26,198,205명)보다 2,103,375명이 늘어나 8.0%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 선거구당 평균 선거인수는 7,945명이었다.

〈표 3-10〉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인구수 및 선거인수 현황

(단위: 명)

인구수	선거인수		
	계	남자	여자
43,422,640	28,301,580 (650,082)	13,962,631 (630,984)	14,338,949 (19,148)

※ () 안은 부재자신고인수로 본수에 포함됨.

그러나 493개 무투표선거구의 선거인수 4,234,436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투표할 선거인수는 24,067,144명이었다. 투표를 실시한 선거구와 무투표선거구의 선거인수 및 투표구수의 구체적인 현황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투표 실시 선거구 및 무투표 선거구의 선거인수 등 현황

구 분	계	투표 실시 선거구	무투표 선거구	비 고
선거인수(명)	28,301,580	24,067,144	4,234,436	
선거구수(개)	3,562	3,069	493	
투표구수(개)	15,072	13,185	1,887	

시·도별 선거인수는 서울이 전체 선거인의 25.5%(7,202,903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 14.1%(3,984,615명), 부산 8.9%(2,513,245명), 경남 8.4%(2,387,727명) 순이었다. 선거인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전국 선거인의 1.1%(312,217명)이었고 그 다음은 대전으로 2.3%(661,953명)였다.

부재자신고기간은 1991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였다. 이 기간 중에 신고를 하여 확정된 부재자수는 전체 선거인수의 2.3%에 해당하는 650,082명이었다. 이 부재자신고인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부재자신고인수(678,427명)보다 28,345명이 줄어들어 4.2%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전의 선거에 비해 선거인수는 늘어났으나 부재자신고인수가 줄어든 것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광주시 북구 본촌동선거구에서 본촌동 산63번지에 있는 '사랑의 시튼 수녀원'의 유권자 89명이 집단으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선거인명부작성자인 광주 북구청은 "수녀들의 전·출입이 잦아 이들의 주민등록을 별도 관리해왔는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무착오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은 "주민의 주권행사가 집단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은 현 정권의 공명선거 의지가 허구임을 드러낸 좋은 예"라고 주장하고, 이들에 대한 참정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누락자를 추가로 등재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규정에 따라 이들은 끝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 투표

가. 투표상황

1991년 3월 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3,185개 투표구에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투표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전국 총투표구수는 15,072개였으나 무투표선거구인 1,887개의 투표구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투표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원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147,474명(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83,959명, 투표사무종사원 63,515명)이었고, 후보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158,320명이 투표과정을 지켜보았다. 정당의 참여가 배제된 선거였기 때문에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수가 부족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투표결과 무투표선거구를 제외한 투표대상 선거인수 24,067,144명 중 13,237,093명이 투표하여 55.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투표율은 가장 최근에 실시한 1988년 13대 국회의원선거의 75.8%에 비해서는 20.8% 포인트,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89.2%에 비해서는 무려 34.2% 포인트나 떨어진 것이었다. 역대 지방의원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1960년 12월 19일 시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 62.6%보다도 훨씬 낮은 투표율이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수서사건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 선거에 정당참여 배제, 유권자들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무관심 등을 들 수 있었다.

〈표 3-12〉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

(단위: 명)

선거인수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비고
24,067,144 (557,545)	13,237,093 (535,695)	10,830,051 (21,850)	55.0 (96.1)	

※ () 안은 부재자로 본수에 포함됨.

시·도별 투표율은 가장 높은 곳이 경북으로 70.2%였고, 제주 70.1%, 전남 69.4%, 강원 68.7% 순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2.3%였고, 그 다음은 인천 42.6%, 대구 44.4% 순이었다. 서울 등 6대 대도시는 광주가 유일하게 50.8%를 보였을 뿐, 나머지 5개 도시

는 모두 50%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부재자투표의 공정성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부재자신고인수가 100인 이상인 군부대·경찰서·교도소 등 961개 기관·시설에서는 총 3,419개의 부재자투표용 기표소를 설치하여 부재자투표를 하였다.

육군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자율투표참관인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공정성 시비 등을 감안하여 각 부대마다 장교 1명, 하사관(현재의 부사관) 1명, 사병 4명 등 모두 6명씩 부재자투표참관인을 구성하여 부재자투표과정을 참관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투표장면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1) 투표구위원장 사인날인 누락 및 착오

서울 동대문구 용두제1동 제4투표소에서 착오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인을 날인하지 않은 투표용지 216매를 선거인에게 교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 투표지는 개표 시 무효처리 되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제2동 제1투표소에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착오로 자신의 사인이 아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인으로 투표용지 1,358매를 날인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표과정에서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위원장의 단순한

실수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이 투표지들을 유효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개표가 거의 끝나가던 3월 26일 밤 11시 45분경 다수의 참관인이 무효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워 개표가 중단되었다. 결국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날인 3월 27일 오전 6시 10분 해당 투표지를 무효처리하였다. 인천시 서구 신현동 제5투표소에서도 투표구위원장 사인란에 직인을 날인한 사례가 있어 그 투표지를 무효처리하였다.

경기도 구리시 수평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구위원장의 사인을 정당추천위원가인란에 날인한 투표용지 250매를 교부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 투표지는 참관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여 유효처리 되었다.

2) 대리투표

전북 익산군 함라면 제2투표소(신남초등학교)에서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장기출타 중인 것을 알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투표를 하려다가 발각된 사람이 있었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고 퇴장시켰다. 투표소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투표참관인이 이 사람을 이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3) 투표함 운반차량 교통사고

경상남도 의령군 공유면에서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던 차량에 갑자기 취객 1명이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투표함을 개표소에 운송한 후 돌아가던 차량이 노면의 결빙으로 말미암아 하천으로 추락해 투표사무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3. 개 표

1991년 3월 26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한 뒤 전국 298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시작되었다. 개표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원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31,402명(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2,354명, 개표사무종사원 29,048명)이었고, 후보자 등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20,218명이 개표과정을 지켜보았다.

개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충북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오후 7시 10분에 시작되었고, 개표가 가장 늦게 끝난 곳은 전남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선거일 이틀 후인 3월 28일 오전 12시 35분에 끝났다. 개표가 늦게 끝난 이유는 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로 관내 섬 지역에 있는 투표소의 투표함을 실은 배가 이틀째 발이 묶였기 때문이었다.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개표장면

가. 개표상황

개표결과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당선자 4,303명이 결정되었다. 이 중 투표를 실시해서 당선된 후보자는 3,689명이었고, 나머지 614명은 무투표당선이었다. 의원정수는 총 4,304명이었으나 당선자가 4,303명으로 1명이 부족한 것은 경북 구미시 선주동선거구의 후보자가 모두 사퇴하여 당선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선거구는 1991년 4월 30일에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었으므로 각 정당별 당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각 정당은 자체적으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당의 자체집계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자유당 지지성향의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3〉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당선인수 상황

의원정수	당선자수			비고
	계	투표실시	무투표	
4,304	4,303	3,689	614	구미시 선주동선거구의 후보자 2명이 모두 사퇴하여 당선자 없음

민주자유당의 자체집계에 따르면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당선자 중 민주자유당 당적보유자는 49.8%(2,142명)로, 평화민주당 18.2%(785명)와 민주당 0.8%(33명)에 비해 큰 차이로 앞섰다. 민주자유당의 집계에 따르면 당적이 없는 당선자는 31.2%(1,343명)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민주자유당 지지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민주당도 자체집계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민주자유당의 발표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민주자유당 지지성향의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평화민주당은 자기 당이 지원한 후보가 총 901명 당선되었고, 광주에서 90%를 넘는 당선율을 비롯하여 전남(81.3%)과 전북(72.5%)에서는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당력을 집중했던 서울에서는 당초 목표했던 40%에 크게 못 미치는 24.2%선에 머물러 서울의 22개 자치구의 회 중 야당성향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는 단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최다득표 당선자는 경북 경주군 안강읍선거구의 최학철 후보로 6,230표를 얻었다. 최소득표 당선자는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선거구의 이희석 후보로 51표를 얻고도 당선되었다. 근북면선거구는 민통선북방 통일촌마을로 선거인수가 총 146명밖에 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작은 선거구였다. 최고득표율 당선자는 전남 목포시 산정제1동선거구의 신재돈 후보로 93.6%를 득표하였고, 최저득표율 당선자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선거구의 지기원 후보로 10.5%를 얻고도 당선되었다.

전북 순창군 구림면선거구에서는 김옥만 후보와 오기덕 후보가 모두 똑같이 969표를 얻어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김옥만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충북 중원군 살미면선거구에서도 김영휘 후보와 이복덕 후보가 모두 548로 동점표가 나와 연장자인 김영휘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당선자들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농업이 26.5%로 가장 많았고, 상업 26.2%, 건설업 8.0%,

공업 5.3%, 회사원 4.5%, 의사·약사 3.4% 등의 순이었다. 1960년 실시된 시·읍·면의원선거 당시에는 당선자의 85.7%가 농업이었는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자들의 직업도 다양해졌다.

학력별 현황은 고졸이 3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졸 24.5%, 대학원졸 15.0%, 중졸 8.2%, 초등학교 졸업 7.0% 등으로 나타났다. 고졸이상이 전체 당선자의 79.5%(3,419명)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 현황은 50대가 4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 38.2%, 30대 12.2%, 60대 이상 8.6%, 20대 0.7% 순이었다. 전국 최고령 당선자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제1동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된 위병룡 후보로 81세였고, 최연소 당선자는 광주시 북구 중흥제3동선거구의 박정희 후보로 25세였다.

당선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은 99.1%인데 비해 여성은 0.9%(40명)밖에 되지 않아 여성들의 구·시·군의회 진출율이 극히 저조하였다. 여성 당선자의 반수가 넘는 22명은 서울에서 당선되었다.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제주도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관내 한경면 제10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하자 투표지 10매와 2매가 각각 함께 접어져 있는 무더기표 2묶음이 발견되었다.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무더기표 12매를 무효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개표참관인이 해당 투표함의 투표지를 전부 무효처리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여 30분간 개표가 중단되었다.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 개표참관인을 퇴장시킨 후 개표를 속개하였다. 나중에 이 무더기표의 행위자가 해당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판명되었다.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람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에서 해촉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4. 선거쟁송

선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인 선거쟁송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차이가 있었다.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는 바로 대법원에 선거소송

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여 그의 결정을 받아본 다음에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가. 선거소청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 당선자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었다. 선거소청은 총 43건이 제기되었다. 이 중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선거무효소청’은 9건,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당선무효소청’은 29건,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를 동시에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소청’은 5건이었다.

선거소청의 제기이유는 주로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잘못이었다. 또한 동점표가 나와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순창군 구립면선거구와 충북 중원군 살미면선거구와 같이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부정확 등을 이유로 선거소청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청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처리결과 33건은 기각되고 나머지 10건은 청구자가 스스로 취하하였다. 따라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표 3-14〉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거소청 처리결과

(단위: 건)

제기건수	처리결과				비고
	합계	기각	취하	인용	
43	43	33	10	0	

나. 선거소송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선거소송은 총 6건이 제기되었다. 그 유형은 선거무효소송이 3건, 당선무

효소송이 1건,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이 2건이었다.

고등법원의 선거소송 처리결과 3건은 기각되고, 2건은 소송 진행과정 중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스스로 취하하였으며, 1건은 취하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었다. 기각사유는 ‘당선인의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소송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등이었다.

〈표 3-15〉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거소송 처리결과

선거구명	소송구분	소송 당사자		소송 청구이유	처리결과(사유)
		원 고	피 고		
부산 서구 서대신제2동	당선무효	김형권	노기식 (당선인)	○유권자의 기권이 많음 ○당선자의 학력허위	1991. 12. 6 기각(당선무효소송의 원인이 될 수 없음)
대구 서구 평리제5동	선거 및 당선무효	장상환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투표지 효력에 이의 ○개표결과 변경 ○이의제기 목살	1991. 10. 8 취하
경기 안산시 공단동	선거무효	이명복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위장전입 ○투표통지표 교부절차 위배 ○흑색선전물 배포	1991. 8. 27 취하간주
충남 온양시 신정동	선거무효	김태현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공보원고 미수리 ○선거공보 미발송	1992. 2. 25 기각(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선거공보를 미송부 또는 미발송한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경북 청송군 청송읍	선거 및 당선무효	박규동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투표지 효력에 대한 이의 ○개표결과 변경 ○이의제기 목살	1991. 10. 29 취하
경북 영천군 화남면	선거무효	황봉수 조 휘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미조치	1992. 9. 25 기각(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공모·가담·묵인했다는 증거 없음)

5. 선거결과 특징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결과 가장 큰 특징은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역사적 의미가 컸으나 투표율이 55.0%밖에 되지 않았다. 이 투표율은 1960년 12월 29일 기명식으로 치러진 서울시장·도지사선거의 39.0%를 제외하고 역대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 동안 치른 여덟 차례의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에 비해서도 20% 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었다.

<표 3-16> 최근 10년간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

(단위 : %)

제5차 국민투표 (1980. 10. 22)	대통령선거인 선거 (1981. 2. 11)	제11대 국선 (1981. 3. 25)	제12대 국선 (1985. 2. 12)	제6차 국민투표 (1987. 10. 27)	제13대 대선 (1987. 12. 16)	제13대 국선 (1988. 4. 26)	구·시·군 의회 의원선거 (1991. 3. 26)
95.5	78.1	78.4	84.6	78.2	89.2	75.8	55.0

이처럼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서사건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정당의 선거참여가 배제된 관계로 특별한 정치적 쟁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이 구·시·군의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후보자를 잘 몰라서 선거에 관심이 낮았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뚜렷한 선거쟁점의 부재, 국민들의 무관심, 20~30대 젊은층의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무명 후보들에 대한 인물선택의 어려움도 투표참여 욕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각 정당도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는데 여야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기대했던 정도의 투표율이라고 전제한 후, 도시지역 유권자들의 공동체 의식 결여로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투표율이 낮아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에 야당인 평화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분리실시를 강행하여 국민들이 반발한 것이며, 정부의 억압 분위기 조성공안 통치적 공작이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흥미를 잃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부패와 통치능력을 상실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고 주장하였다.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의 임기(1991. 4. 1 ~ 1995. 6. 30) 중에 총 565명의 구·시·군의회의원이 궐원되었다. 궐원사유는 사직 395명, 사망 97명, 피선거권 상실 56명, 제명 11명, 당선무효 6명 등이었다.

구·시·군의회의원이 궐원된 곳에서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총 551개 선거구에서 궐원되었으나 이 중 137개 선거구(재선거 8, 보궐선거 129)에서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나머지 414개 선거구에서는 “의원정수가 3분의 2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하거나 선출되는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구·시·군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특정 지역 몇 곳에서만 소규모로 치러지고, 정당의 참여가 배제된 관계로 언론이나 유권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투표율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부 시골지역에서는 의외로 투표율이 높은 곳도 있었다. 1992년 6월 23일 실시한 경기 안성군 고삼면선거구의 보궐선거는 87.8%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137개 구·시·군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제2동선거구의 보궐선거로 21.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표 3-17〉 구·시·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상황

(단위: 선거구)

구 분	사유 발생	선거 실시					미실시
		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계	551	137	14	34	71	18	414
재선거	8	8	2	4	2	-	-
보궐선거	543	129	12	30	69	18	-

4장

시·도의회
의원선거

(1991. 6. 20 실시)

選舉史

개요

시·도회의의원선거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후 실시하지 못하다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부활되어 1991년 6월 20일 실시하게 되었다. 당초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엇갈려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치른 지 3개월 후에 별도로 실시되었다.

시·도회의의원선거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어 민주자유당,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민중당, 공명민주당 등 총 5개 정당이 참여하였다. 선거전은 초반부터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제1야당인 신민주연합당의 양당 대결구도를 보였다.

선거전의 최대 쟁점은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한 이른바 '3당 합당'에 대한 공방이었다. 민주자유당은 3당 합당의 불가피성을, 신민주연합당은 3당 합당의 비도덕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의 폭행사건도 큰 쟁점이 되었다.

선거결과 민주자유당은 전국 866개 의석 중 65.1%인 564석을 차지하여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의회를 장악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은 전체의석의 19.1%인 165석을 차지하였으나 호남에서 다수 의석을 얻어 광주·전남·전북의 3개 시·도의회를 장악하였다. 민주당은 전체의석의 2.4%인 21석을, 민중당은 1석을 차지하였으나 공명민주당은 의석을 얻지 못하였다. 무소속후보자는 115명이 당선되었다.

제1절 _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2절 _ 선거제도

제3절 _ 후보자 추천과 등록

제4절 _ 선거운동

제5절 _ 선거비용

제6절 _ 공명선거활동

제7절 _ 선거법위반행위

제8절 _ 선거결과

제9절 _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치러지고 3개월 후인 1991년 6월 20일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주요 정치적 사건으로는 야권통합 실패, 평화민주당의 당명 변경,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의 시위 중 사망사건, 국회의 개혁입법 변칙처리 등이 있었다.

1. 야권통합 실패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1990년 2월 합당하여 국회 전체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을 만들자, 상대적으로 왜소해진 제1야당 평화민주당도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곧바로 야권통합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평화민주당의 제1차적 야권통합 대상은 민주당(총재 이기택)이었다.

평화민주당은 1990년 2월부터 6월까지 창당과정에 있던 민주당과 야권통합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민주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제1절. 4. 민주당 창당” 참조). 그러나 당의 지도체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당의 견해 차이가 커서 통합협상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불투명해지자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예술계, 노동계 등 각 분야 인사들이 1990년 6월 28일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¹⁹⁾를 결성한 후 야권통합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 김관석 공동대표는 1990년 7월 20일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 이기택 총재의 3자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양측과 접촉하

19)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에는 박형규 목사, 오충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공동의장, 제정구·이부영·유인태·김부겸 등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 탈퇴파, 박세경 변호사, 이우정 전 여성단체연합회장 등 133명이 참여하였다.

며 여러 차례 야권통합을 위한 절충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통합절차, 지도체제, 지분문제 등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였다.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1990년 10월 22일 대표경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야권통합 방안을 양당에 마지막으로 제시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평화민주당은 수락하였으나 민주당은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의 김관석 공동대표는 야권통합 조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였고,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1990년 12월 21일 야권통합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따라서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의 야권통합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도 자체내부 갈등으로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2. ‘평화민주당’ 을 ‘신민주연합당’ 으로 당명 변경

평화민주당은 민주당과의 통합에 실패한 이후에도 재야와 야권통합 작업을 계속하였다. 마침 재야에서도 야권통합 중재에 나섰던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가 해체된 이후 친평화민주당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범민주수권정당추진모임’ (대표 이우정)을 구성한 후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범민주수권정당추진모임은 1991년 3월 23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2,500여 명의 창당발기인과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신민주연합당(가칭)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우정 전 여성단체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시기 야권통합의 실패를 거울삼아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야권통합의 토대를 닦기 위해 발기인대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혀 창당 목적이 평화민주당과의 통합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신민주연합당(가칭)과 평화민주당과의 통합작업은 곧바로 시작되었다. 신민주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지 6일 후인 1991년 3월 29일 평화민주당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4월 4일 이우정 신민주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장이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통합을 선언하였다. 이어서 4월 9일 서울에 있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통합전당대회는 먼저 평화민주당의 대의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여 평화민주당의 당명을 '신민주연합당' (약칭 "신민당")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신민주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1,500여 명이 '신민주연합당'에 입당한 후 이들이 함께 통합전당대회를 개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즉, 형식적으로는 통합전당대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평화민주당이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 '신민주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을 흡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합전당대회는 평화민주당이 당명을 '신민주연합당'으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 「정당법」에 따른 별다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²⁰⁾.

이날 신민주연합당은 당 총재에 김대중 전 평화민주당 총재를 선출하였다. 또한 김대중 총재가 지명한 이우정(수석최고위원) 최영근 박영숙 노승환 이용희 박영록 박일 김말룡 등을 최고위원으로 인준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총재수락연설을 통해 "유일야당인 평화민주당과 재야민주세력의 주류인 신민주연합이 통합을 이룸으로써 정권교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합야당



▶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와 이우정 신민주연합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의 통합선언
(1988년 4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 당시 '신민주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출현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1992년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전체 야권의 총 연합과 단일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후, 눈앞에 다가온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당 운을 걸고 싸우자는 당부도 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의 사무총장은 김봉호 의원, 원내총무는 김영배 의원, 정책위의장은 조세형 의원, 대변인은 박상천 의원이 맡았다. 통합전당대회가 끝난 후 신민주연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1991년 4월 15일 수리됨으로써 법적인 변경등록 절차도 마무리하였다.

평화민주당이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 당명을 신민주연합당으로 변경한 것은 당의 이미지 변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평화민주당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호남당’이라는 지역정당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심어져 있어서 이를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따라 언론과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재야와 통합하는 형식으로 당명을 바꾸어 이미지 변신을 꾀한 것이었다. 즉,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평화민주당의 취약지역인 영남과 충청 및 강원 지역의 세력을 보강하여 전국정당화를 지향한 것이었다.

3. 강경대 학생 사망사건

1991년 4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 400여 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던 이 학교 강경대 학생이 진압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명지대학교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총학생회장의 석방과 학원자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강경대 학생은 교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충돌을 벌이다가 소위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집단 구타당한 뒤 동료 학생들에 의해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후인 1991년 4월 27일 안용모 내무부장관을 경질하는 등 사태를 조기수습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야당은 이 사건을 공권력의 횡포가 빚은 제2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²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내각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정치쟁점

2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관들에게 물고문을 받다가 숨진 사건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제7장 참조.



▶ 강경대 학생 장례식(1991년 5월 14일)

화 하였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등의 재야단체들도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고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며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연일 개최하였다. 또한 종교계 인사들과 대학 교수 및 초·중·고교 교사들도 정부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강경대 학생 사망사건 이후 1991년 4월 29일 전남대학교 박승희, 5월 2일 안동대학교 김영균, 5월 3일 경원대학교 천세용 등 대학생들이 학내시위 도중 잇달아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시국이 어수선하였다.

야당은 “1990년 12월 27일 노재봉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재야와 학원 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여당의 ‘개혁입법 변칙처리’ 사건과 연계시켜 ‘노재봉 공안내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5월 24일 노재봉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그 후임에 정원식 전 문교부장관을 지명하였다.

하지만 강경대 학생 사망사건 이후에도 학원가의 격앙된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19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강의하러 온 정원식 국무총리서리를 대학생들이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선거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4. 개혁입법 변칙처리

시·도의회의원선거를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소집된 제154회 임시국회(1991. 4. 19~1991. 5. 11)에서 여야는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 및 「경찰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여당은 ‘반국가단체’ 개념을 존속시킨 채 그 범위를 축소시키자고 제안한 반면, 야당은 이 법 자체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해서 여당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 인정범위를 ‘찬양·고무죄’만 제외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형법상 간첩죄’로 국한하여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경찰법」에 대해서 여당은 국가경찰제도와 내무부장관 소속의 지방경찰청을 둘 것을 제안하였으나, 야당은 국가경찰제도와 지방자치경찰제도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1991년 5월 9일까지 접촉을 갖고 정치적 타결을 모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때는 노재봉 국무총리가 경질되기 전이었는데 신민주연합당은 노재봉 내각이 사퇴할 경우 양보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개혁입법 협상과 내각 사퇴문제를 연계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자유당은 협상에 진전이 없자 1991년 5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과 「경찰법」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최종 입장을 통보했고, 신민주연합당은 소속 국회의원을 총동원해 이를 실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개혁입법 협상을 위해 회기를 이틀간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충돌위기를 모면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1991년 5월 10일 「국가보안법」과 「경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처리하였다. 이날 박준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휴대용 마이크를 이용해 2개 법안을 동시에 상정한 뒤 심사보고 및 찬반토론을 생략한 채 40초 만에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개혁입법안이 처리되자 야당은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은 1991년 5월 19일 대전역 광장에서 ‘노태우 정권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 시국대강연회’를 개최하고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요구조건으로 노재봉 공안내각의 사퇴, 백골단 해체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 「국가보안법」 등 악법에 의해 처벌된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등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부산에서 ‘민생과탄·폭력살인 및 노태우 정권 퇴진촉구 부산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민주자유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원인무효라고 전제한 뒤,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경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당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자유당 해체와 노태우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당의 개혁입법 강행처리에 대해 야당원들이 저지하고있다(1991년 5월 10일).

제2절

선거제도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1988년 4월 6일 처음 제정되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시·도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선거법은 제정 이후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한 차례 전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에 의해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개정할 수 없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개정하였다.

1. 선거법 개정

시·도의회의원선거를 1개월 정도 앞둔 1991년 4월 23일 민주자유당 김윤환 사무총장과 신민주연합당 김봉호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전의 다른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개정협상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커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여야는 2명씩으로 실무협상팀을 구성해 절충작업에 들어갔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개인연설회와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 등이었다. 민주자유당은 합동연설회를 줄이고 개인연설회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은 시·도의회의원선거에도 국회의원선거처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권의 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여야는 설전만 거듭했을 뿐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합의가 되지 않자 여야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기탁금과 농·수·축협조합장 등의 출마금지 조항에 대해서만 개정하기로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제154회 임시국회(1991. 4. 19~1991. 5. 11)의 회기 중인 1991년 5월 8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1991년 5월 23일 법률 제4368호로 공포되어 당일부턴 시행되었다. 이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1년 4월 11일 여야의 선거법 개정협상과는 별도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금지’를 ‘개별적 제한·금지’로 전환하여 금지된 방법이 아닌 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또한 후보자 개인연설회와 전화 및 지역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밖에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위해 정당에서 작성·배부하는 소형인쇄물을 폐지하고,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을 일정부분 규제하자는 의견도 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에 대하여 선거과열이나 정당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괄적 제한·금지를 개별적 제한·금지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야당은 찬성하였으나 여당은 반대하였다.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였다. 하지만 이로부터 3년 후인 1994년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 등 4개의 선거법을 통합하여 만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2. 개정 선거법 주요 내용

시·도의회의원선거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같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주요 선거제도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시·도의회의원선거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므로 후보자등록이나 선거운동 분야 등은 상이한 점이 있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주요내용은 “제3장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와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가. 선거구와 의원정수

시·도의회의원의 선거구는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획정하되, 관할구역은 선거법 별 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법²²⁾ 제15조).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법 제15조).

시·도회의의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자치구·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초과하는 매 20만까지만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시·군은 2인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된 의원정수가 23인 미만이 되는 직할시는 그 정수를 23인으로 하고, 17인 미만이 되는 도는 17인으로 하였다(법 제13조). 의원정수의 하한선을 제한한 것은 시·도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산정된 의원정수는 총 866명이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므로 선거구수 역시 866개였다.

시·도별 의원정수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 117명, 경남 89명, 경북 87명 등의 순이었다. 의원정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17명이었다.

<표 4-1> 시·도회의의원선거 선거구수 및 의원정수

(단위: 선거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66	132	51	28	27	23	23	117	54	38	55	52	73	87	89	17

22) 여기서 법이란 「지방의회의원선거법」(법률 제4368호)을 말한다.

나. 후보자 등록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정당의 공천이 허용되지 않아 모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정당의 공천이 허용됨에 따라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2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법 제28조).

후보자등록 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200만 원보다 배가 많은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법 제36조). 당초 기탁금은 7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민중당 소속으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금액이 너무 많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91년 3월 11일 위헌결정(91헌마21)을 함에 따라 국회에서 1991년 5월 8일 선거법을 개정하여 400만 원으로 인하한 것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700만 원은 너무 과다하여, 자연인의 경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의 경우는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3월 11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7호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한 바 있었다. 이 조항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연원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합장이 명예직이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는 법적인 지위가 다르므로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들 조합장이 출마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다.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같았다. 그러나 선거운동주체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차이가 있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정당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1조). 정

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허용한 것이었다.

선거운동방법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같이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현수막, 소형인쇄물의 5가지였다. 다만,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의 작성방법, 소형인쇄물의 종수, 현수막의 게시매수 등은 차이가 있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의 원고뿐만 아니라 인쇄도 후보자가 하도록 하였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너무 많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하기에는 업무부담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고 작성은 후보자가 하고, 인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하였다(법 제47조 및 제49조).

소형인쇄물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3종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3종,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2종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4조). 현수막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에는 ‘투표구마다 2매’ 까지 게시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읍·면·동마다 2매’ 로 축소하였다(법 제55조).

라. 투 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이하 “기호”라고 한다)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모두 추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추천후보자’ 간에는 국회에서 다수의석 순으로,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당추천후보자’ 간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후보자’ 간에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동일한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추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법 제100조).

한편 신민주연합당은 당명을 약칭인 ‘신민당’ 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투표용지에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당헌에 약칭이 규정되

어 있다면 정식명칭이나 약칭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신민주연합당의 후보자들은 투표용지에 '신민당' 이라고 기재하였다.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끝나자 각 정당은 곧바로 3개월 후에 실시될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공천준비에 들어갔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의 공천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공천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자기 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는 공천희망자가 쇠도한 반면, 상대편 정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는 희망자가 없어 심한 인물난을 겪었다. 한편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료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도 하고,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결과에 반발해 지구당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공천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가.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의 후보공천은 지구당별로 공천신청을 받아 지구당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1~2인의 공천후보자 명단을 중앙당에 제출하면, 김윤환 사무총장과 김종호 원내총무 및 나웅배 정책위원장 등 10인으로 구성된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자를 최종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구당에서 공천자를 바로 결정할 경우 탈락자들의 반발로 지구당 조직에 내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민주자유당은 지역 명망가나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참신한 청장년층과 여성계 지도자들을 적극 발굴해 공천한다는 방침 아래 1991년 5월 12일까지 전국 지구당별로 공천신청을 받았다.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866개 선거구에서 1,119명이 신청해 평균 1.3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여 영남과 강원도 등 민주

자유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천신청자가 쇠도한 반면, 호남지역에는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자유당은 호남지역의 후보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공천신청 기간을 1991년 5월 23일까지 연장하였다.

추가 공천신청을 받은 민주자유당은 1991년 5월 29일 전국 866개 선거구 중 821개 선거구의 공천자명단을 발표하였다. 45개 선거구(전남 36, 전북 9)는 공천희망자가 없어서 공천을 하지 못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집권당과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866개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낸다는 방침에 따라 다시 호남지역의 공천신청 기간을 6월 6일까지 연장하였다. 하지만 전남과 전북의 27개 선거구는 끝내 공천자를 찾지 못하여 최종 839명²³⁾ 공천하였다.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이영호 전 체육부장관, 정한주 전 노동부장관, 김찬희 전 산림청장, 강태홍 전 부산시장, 노창현 전 인천시장, 이봉학 전 대전시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있었다. 인기가수 이선희도 서울 마포구제3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관심을 끌었다.

민주자유당의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수수 사건이 발생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민주자유당 하남시·광주군지구당위원장인 유기준 국회의원이 시·도의회의원선거 공천내정자들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자유당은 관련자들의 공천을 취소하고 사태를 수습하였고, 유기준 의원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991년 6월 5일 구속되었다.

나. 신민주연합당

정당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선거는 아니었지만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평화민주당은 선거가 끝나고 일부 재야단체와 통합하여 당명을 신민주연합당으로 바꾸었다. 신민주연합당은 1991년 4월 11일 김봉호 사무총장과 정대철·최락도·권노갑 의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인선 작업에 착수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은 당명을 바꿈에 따라 지역당의 선입관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고,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866개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낸다는 목표를

23) 민주자유당은 839개 선거구에 각 1명씩 총 839명을 공천하였다. 그러나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1명이 사퇴를 하여 그곳에 새로 1명을 공천하였으므로 통계상으로는 총 840명이었다.

정했다. 하지만 지지기반인 호남지역과 서울의 일부지역에서는 공천희망자가 넘쳐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마땅한 책임자가 없어서 인물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신민주연합당은 당초 1991년 4월 20일까지 공천자를 결정하려던 방침을 뒤로 미루고 인물영입에 나섰다. 특히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신민주연합당의 전신인 평화민주당이 서울에서 최다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어서 수도권의 후보자 인선에 공을 들였다.

신민주연합당은 총 557명을 공천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이 당초 공천했다고 발표한 사람은 이보다 더 많았으나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신민주연합당 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은 557명이었다. 영남지역은 255개 선거구 중 83명밖에 공천하지 못할 정도로 인물난을 겪었다. 호남지역은 공천희망자가 많았지만 5개 선거구(광주 3곳, 목포 1곳, 무안 1곳)는 재야세력을 위해 공천자를 내지 않았다. 신민주연합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는 '5·18 광주의거 유족회장' 전계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항의해 스위스에서 할복자살을 기도했던 농민 이경해, 탤런트 김인문 등이 있었다.

신민주연합당의 공천과정에서는 합당 전 평화민주당 출신과 재야세력 간에 지분안배와 공천기준 등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또한 공천희망자가 많아 과열 경쟁을 했던 호남과 서울의 일부지역에서는 중앙당과 지구당이 대립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결과에 반발해 이태찬·이철용·김길곤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지구당 간부들이 탈당하였고, 공천탈락자들 중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심한 공천후유증을 겪었다. 신민주연합당도 민주자유당과 같이 당선이 유력시되는 지역에서는 공천헌금과 관련한 구설수에 휘말렸다.

다. 민주당

민주당은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끝나자마자 각 지구당에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 선발전칙을 내려 보내는 등 당선 가능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구당위원장의 재량으로 지역 내 지명도와 당선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공천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정당과 차별화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참신한 전문직업인을 영입하여 공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공천희망자가 많지 않아 인물난을 겪었다. 특히 민주자유당과 신민주연합당에 비해 조직과 지지기반이 열세여서 한계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철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470명을 공천하였다. 민주당도 신민주연합당처럼 당초 공천했다고 발표한 사람은 이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는 프로야구선수 출신인 최동원, 텔런트 김을동, 1984년 서울 망원동 수재 당시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해서 승소한 한정자 등이 있었다.

라. 기타 정당

앞의 3개 정당 외에도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민중당은 재야의 이부영 이재오 장기표 오세철 등이 중심이 되어 “민중의 힘, 민주주의 희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1990년 11월 10일 창당한 정당이었다. 민중당은 노동운동가와 농민 및 여성운동가 출신 등 총 43명을 공천하였다. 민중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는 서울 은평구제6선거구의 노영희 전 여성의전화 대표, 강원도 정선군제2선거구의 탄광촌 시인 성희직 등이 있었다.

공명민주당은 고태만 등이 중심이 되어 “진보적인 민주정부 수립과 선진정치문화 창달”의 가치를 내걸고 1990년 8월 3일 창당한 정당이었다. 공명민주당은 서울 동대문구제1선거구 정재복 등 총 3명의 후보를 공천하였다.

이외에도 정당은 아니지만 일부 단체가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참여와자치를 위한시민연대회의’가 시민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여 지역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4명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가 교육부문 직능단체 대표로서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교육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19명을 각각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은 「정당법」상에 규정된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추천한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야 했다.

2. 후보자 등록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991년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6일간이었다.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기간 중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였다.

가. 후보자 등록상황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의원정수 866명에 2,885명이 등록신청을 하여 평균 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경쟁률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쟁률 4.7 대 1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3개월 전 치러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쟁률 2.4 대 1보다는 높았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정당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구·시·군의회의원선거보다는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선거구별 경쟁률을 보면 서울 송파구제7선거구와 충남 예산군제3선거구가 각각 8 대 1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충남 부여군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를 비롯하여 전국 16개 선거구는 후보자가 1명만 등록(13개 선거구)했거나 다른 후보가 사퇴(2개 선거구) 또는 등록무효(1개 선거구) 처리됨으로써 1명의 후보자만 남게 되어 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1 대 1인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가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자여서 야당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표 4-2〉 시·도의회의원선거 경쟁률

구 분	선거구수	의원정수	등록 후보자수	경쟁률
계	866	866	2,885	3.3 : 1
투표 실시 선거구	850	850	2,869	3.4 : 1
무투표 선거구	16	16	16	1 : 1

정당별 후보자등록상황을 보면 민주자유당이 가장 많은 840명을 공천하였고 그 다음은 신민주연합당 557명, 민주당 470명, 민중당 43명, 공명민주당 3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972명이 출마하였다. 무소속은 대도시와 수도권 등에서 많이 출마하였고, 경북과 전남 및 전북 등 특정 정당의 지지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많지 않았다.

〈표 4-3〉 시·도의회의원선거 정당별 후보자 등록상황

합 계	민주자유당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공명민주당	민중당	무소속
2,885	840	557	470	3	43	972

후보자의 직업은 상업이 1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농업 15.5%, 정치인 10.8%, 건설업 9.2%, 공업 6.6%, 회사원 5.0%, 의사 및 약사 4.4% 등의 순이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농수산업 종사자가 대폭 줄어든 반면, 광업 공업 운수업 건설업 출판업 등 제2차 및 제3차 산업종사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특히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에는 별로 없었던 변호사, 의사, 약사, 교육자 등의 전문직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각 정당이 전문직업인을 영입하였고, 또한 시·도의회의원의 위상이 구·시·군의회의원보다 높았기 때문이었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후보자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학력은 대졸이 33.5%(967명)로 주류를 이루었고, 대학원 졸업도 29.2%(842명)에 달했다. 그 다음은 고졸 18.3%(527명), 대학중퇴 7.5%(217명), 전문대졸 2.5%(72명) 등의 순이었다. 독학과 초등졸도 각각 1.5%(42명)와 2.5%(72명)였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에 비해 고학력자가 많았다.

연령별 현황은 40대와 50대가 71.2%(2,055명)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30대는 18.9%(545명), 20대는 2.0%였다. 후보자 중 최고령자는 강원 춘천시제2선거구에 출마한 이창근 후보로 81세였고, 최연소자는 서울 동대문제2선거구의 지용호 후보로 26세였다.

성별 현황은 남성이 2,822명이고, 여성은 63명(전체 후보자의 2.2%)이었다. 여성 후보자의

비율이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에는 1.2%(123명)이었으나 2.2%로 다소 늘어났다. 여성단체 등에서 지방자치에 여성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정당들도 여성을 배려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여성 후보자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적었다.

후보자등록 과정에 피선거권 연령과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 마포구 제3선거구에서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이선희 후보는 당초 생년월일이 '1967년 3월 10일생'으로 만 25세가 안 돼 피선거권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1991년 5월 31일 충남 홍성지원에서 '1964년 11월 11일생'으로 호적을 정정한 후 다시 후보등록신청을 하여 수리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 후보자 자격에 대한 시비가 일었으나 선거법상 하자가 없어 후보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

후보등록 후 사퇴 또는 등록무효된 후보자는 총 25명(사퇴 17명, 등록무효 8명)이었다. 이들의 사퇴 또는 등록무효로 선거일 당시 후보자 수는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60명으로 줄어들었다.

<표 4-4>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사퇴 및 등록무효 상황

(단위: 명)

최초 등록 후보자수	사퇴 및 등록무효			선거일 현재 후보자수 (최종 후보자수)
	계	사퇴	등록무효	
2,885	25	17	8	2,860

등록무효 사유는 무소속후보자의 당적보유 4건, 형의 미실효로 피선거권 결격 4건이었다. 등록무효된 후보자의 소속정당은 신민주연합당 2명, 민주당 1명, 민중당 1명, 무소속 4명이었다.

사퇴사유는 '일신상'이나 '건강상' 등이었다. 사퇴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은 민주자유당 1명, 신민주연합당 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2명이었다. 무소속후보자들의 사퇴가 많은 관계로 이들의 전(前) 소속정당에서 사퇴압력을 가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한때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 이부영 총재는 1991년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여당에서 무소속후보자들에게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3. 기탁금

후보자등록신청 시 내는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 구분 없이 모두 400만 원이었다. 이 기준에 의해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총 115억 4,000만 원(2,885명×400만 원)이었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때, 또는 선거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사본 작성비용, 선전벽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 선거공보의 작성 및 발송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이하 이 장에서 “공영비용”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후보자의 기탁금은 공영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끝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는 2,730명(전체 후보자의 94.6%)의 기탁금 59억 764만 1,000원은 후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155명(5.4%)의 후보자 기탁금 4억 3,183만 8,000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다. 구체적인 기탁금 반환 및 귀속내역은 <표 4-5>와 같다.

<표 4-5> 시·도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및 귀속 상황

(단위: 천원)

기탁금액	공제금액(집행내역)						반환액	귀속액
	명부사본 작성비용	선전벽보 비 용	선거공보 비 용	합동연설회 비 용	투·개표참 관인 수당	합계		
11,540,000 (2,885명)	120,751	883,338	1,475,374	1,554,519	1,180,313	5,214,295	5,907,641 (2,730명)	431,838 (155명)

※귀속금액은 이자 1,377만 4,321원을 포함한 것임.

한편 기탁금 4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후보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대전시 대덕구제3선거구에 출마하려던 이근식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1991년 6월 6일 오후 4시(마감 시각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신청을 하러 왔다. 그가 가지고 온 기탁금은 280만 원으로 법정금액에 120만 원이 부족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족한 금액을 오후 5시까지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근식이 이를 보완하지 못하여 결국 후보등록이 거부되었다.

제4절



선거운동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개월 전에 치러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달리 정당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정당은 소형인쇄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당원단합대회 등의 형식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지원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하였다. 정당의 개입으로 인해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이 치열했다.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여당은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지역 일꾼론’ 등을 내세우며 조용하게 선거를 치르려는 선거전략을 사용하였고, 야당은 공안통치 및 시국사건 등 정치적 문제를 크게 쟁점화하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선거전략을 사용하였다.

가.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1991년 6월 1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와 김윤환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당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시·도와 지구당별로 별도의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1) 선거전략

민주자유당의 선거전략은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즉,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지역선거라고 강조하며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전략을 썼다.

이러한 전략 하에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 등에 “새일꾼 바른선택 안정속에 지역발전” (구미시제2선거구 한기조 후보), “참일꾼 바른선택 안정속의 지역발전” (김해시제1선거구 김문국 후보), “일꾼 뽑아 발전이냐? 말꾼 뽑아 싹질이냐?”, “혼란속의 좌절이냐? 일꾼 뽑아 발전이냐?” 등 ‘일꾼’ 이 들어가는 선전문구를 많이 게재하였다.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뒤의 “3. 선거쟁점” 참조)이 일어난 뒤에는 여당의 전통적인 선거전략인 안정론을 내세웠다. 1991년 4월 26일 강경대 명지대학교 학생이 경찰의 구타로 사망한 이후 여당에게 불리하던 여론이, 6월 3일 대학생들이 정원식 국무총리서리를 폭행한 사건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었다고 보고 집권당의 안정 속 개혁추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이 사건을 거론하며 야당을 공격하였고, 중앙당에서 제작한 소형인쇄물에도 “안정속의 개혁이냐? 혼란속의 좌절이냐?” 등의 문구를 게재하였다.

2) 선거공약

민주자유당은 1991년 5월 30일 11개 부문 58개항으로 구성된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선거공약은 주로 물가안정, 농어촌 개발, 환경개선, 실업교육 확충 및 지방문화 창달, 주택난 해소, 근로자 중산층화 실현, 취약계층 보호, 민생치안 확립, 교통난 개선, 여성지위 향상 등에 관한 것이었다.

‘농어촌 개발’ 에 관한 공약으로 쌀시장 개방 불허, 농수산업구조 개선, 농수산물수급 및 가격 안정, 농어민관련 세제개편 및 금융지원확대, 농공단지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충격으로 농어업인들이 정부·여당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보고 쌀 등의 기초식량은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수입개방으로 피해가 생겼을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등 수입개방 보완대책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경제문제’ 와 관련하여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한 자릿수 물가를 달성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부동산 투기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환경정책’ 과 관련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주요 강 하류까지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고,

공단주변의 공기를 정화하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교통문제’에 관한 공약으로는 정부·호남 동서고속전철 건설, 전 국도의 완전 포장, 새 국제공항 건설, 10개 항구와 항만시설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개발’에 관한 공약에서는 도시지역의 주택·교통·영세민·공해문제와 농어촌지역의 구조조정사업·소득증대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우리의 대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활기찬 새 전북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시·도별 선거공약집도 함께 펴냈다.

나. 신민주연합당

신민주연합당은 1991년 4월 17일 전국지구당위원장회의를 개최한 후 김대중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우정 수석최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1) 선거전략

신민주연합당의 선거전략은 정부의 공안통치 및 실정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이 시위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여론이 정부·여당에게 비판적이라고 보고 이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신민주연합당 후보자들은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에 “공안통치나 밝은 내일이냐”(종로구제1선거구 박명수 후보), “물가폭등·공안통치 6공에게 국민적 심판을”(여수시제2선거구 이상윤 후보) 등과 같은 선전문구를 게재하였다. 또한 당원단합대회 등의 집회를 통해 시·도의회의원선거를 물가와 부동산값 폭등, 환경오염, 수서비리 등 제6공화국 3년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공격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은 야당의 전통적 선거전략인 견제론도 내세웠다. 이 전략에 따라 신민주연합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선전벽보 등에 “막아내자! 여당독주” 등의 문구를 게재했고,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세력을 육성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외에도 신민주연합당은 소형인쇄물에 “지방자치를 반대한 민자당이 무슨 꿈꿨이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을까요?”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킨 정당이 신민주연합당임을 선전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도 사용하였다.

2) 선거공약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 시국문제에 초점을 맞춰온 신민주연합당은 시·도의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오자 민생문제가 선거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치안, 물가, 부동산, 농촌문제 등에 관한 34개항의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의 선거공약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경제부문’에 관한 것이 많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벌기업 금융독점 배제, 공공요금 동결 등 종합물가대책, 무주택자 위주 주택정책, 맑은 물 대책, 농수축산물 수출입특례법 제정, 추하곡수매가 및 수매량 보장 등이 있었다. 또한 경제위기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재정 운용,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재벌기업의 금융독점 배제 즉각 실시 등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환경정책’에 관한 공약으로는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남북환경공동대책 기구설치,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제 도입, 국회에 ‘맑은물대책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주민 환경오염 감시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등을 내놓았다.

‘교통문제’에 관한 공약으로는 권역별 광역교통행정체제 도입, 모노레일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의 개발, 도로·공원·학교의 지하주차시설 강화, 서비스개선을 위한 운송사업의 자유경쟁체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당면 주요정책’이란 선거자료집을 발간하여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고, 3년 동안 연간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토지관련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0.03% 수준에서 1% 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등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8 대 2 배분비율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권 등 각종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다. 민주당

민주당은 1991년 4월 16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이부영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철 사무총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을 본격적인 시·도의회의원선거 체제로 전환하였다.

1) 선거전략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3김 비판과 세대교체를 내세우는 것이었다. 민주자유당과 신민주연합당에 비해 당세가 약한 민주당으로서는 양당을 공격하는데 3김 비판과 세대교체가 최선의 전략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신민주연합당도 부패한 기성정당에 불과하다고 공격하였다. 민주당 후보자 중에는 “1노 3김인가? 세대교체인가?”(서울 마포구제6선거구 황경섭 후보) 등의 문구를 게재한 후보자가 있었다. 민주당 이기택 총재는 당원단체대회 등에서 “3김씨가 30년 이상 같은 짓만 하니 국민들이 정치무관심증에 빠져 있다”며 세대교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2) 선거공약

민주당은 1991년 5월 29일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경제문제’에 관한 선거공약으로는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재벌기업의 금융독점 방지, 세계개혁을 통한 분배정의 실현 등을 내놓았다. 식수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보전 강화 등에 관한 것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농어촌 분야’에 관한 선거공약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반대, 농업에 대한 획기적 투자, 비농민 소유농지에 대한 중과세, 유통구조조정에 따른 농산물 값 안정, 추곡 전량수매제 등을 내놓았다. 또한 골프장 건립금지, 지방자치 보장을 위해 행정개혁위원회 구성 등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특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 및 예술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유선방송 허가 관리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어 지역정보체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였다.

라. 기타정당

앞의 3개 정당 외에도 공명민주당과 민중당이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다. 공명민주당은 후보자를 3명만 추천하여 정당 차원의 특별한 활동은 없었으나, 민중당은 당의 노선과 진보정당의 창당배경 등을 알리며 활발하게 득표활동을 하였다.

민중당은 민주자유당과 신민주연합당 등 보수정치의 부패를 막으려면 민중당 후보의 지방의회 진입이 필요하다고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득표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민중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많은 수도권과 영남의 공단지역에서 주로 득표활동을 벌였다. 민중당이 내놓은 선거공약으로는 금융실명제 실시, 토지관련 세율 인상, 영구임대주택 대량 공급, 협동조합을 통한 생산유통 판매망 구축, 비업무용 기업토지의 국유화 등이 있었다. 또한 경찰의 실질적인 중립화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 아래 시·도공안위원회를 두어 경찰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주민발안권과 주민소환권을 부여하겠다는 것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2. 선거운동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991년 6월 1부터 6월 19일까지(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9일간이었다. 선거운동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 현수막 등 5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보자가 1명인 16개 무투표선거구는 당선이 이미 확정되었기 별도의 선거운동이 필요 없었다.

가. 선전벽보

선전벽보는 후보자가 원고를 작성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쇄하여 1991년 6월 14일까지 첩부하였다. 선전벽보의 첩부기준은 구·시지역은 인구 300인에 1매, 군지역은 인구 200인에 5매 비율이었다. 이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384,678개소에 1,258,736매의 선전벽보가 첩부되었다.

후보자들이 선전벽보에 게재한 선전구호는 소속 정당에 따라 대조를 이루었다.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지방자치와 연계하여 지역발전과 관련된 선전문구를 주로 게재하였다.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새일꾼 바른 선택 안정 속에 지역발전”(구미시제2선거구 한기조 후보)이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등 정치적 대결보다는 지역일꾼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문구를 많이 게재하였다.

반면에 야당 후보자들은 지역발전보다는 정치문제와 관련된 선전문구를 주로 게재하였다. 신민주연합당 후보자들은 “공안통치나 밝은 내일이야”(종로구제1선거구 박명수 후보), “막아내자! 여당독주” 등의 문구를 많이 게재하였다. 민주당 후보자들은 3당 합당을 비판하는 “변

절과 썩은 정치” 등의 문구를, 민중당 후보자들은 “민주개혁”이라는 진보정당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문구 등을 많이 게재하였다. 일부 무소속후보자는 “금품공천 신물난다”(여천시제1선거구 김석우 후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이전에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시·도의회의원선거 선전벽보



전남 광양군제3선거구에 출마한 신민주연합당 황학선 후보가 선전벽보에 “도의원은 황학선, 대통령은 김대중”이라는 선전문구를 게재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민주자유당은 1991년 6월 11일 이 선전벽보의 내용이 선거법²⁴⁾에 위반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신민주연합당은 정당공천후보가 자기당 총재의 집권을 지지하는 구호를 넣는 것은 정견 또는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러한 문구를 선전벽보에 게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달리 모든 후보자의 선전벽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함에 따라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착오로 신민주연합당 후보자의 사진을 원본보다 4분의 3정도로 작게 인쇄하여, 그 후보자로부터

24) 당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7조 (선전벽보) 제2항에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위의 번호를 말한다)·사진·성명·연령·직업·경력·정견과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정강·정책 이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터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고의로 작게 인쇄한 것이라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전벽보를 다시 인쇄하였다. 전남 동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민주연합당 후보의 당명이 인쇄되지 않은 선전벽보를 첩부하였다가 해당 후보자에게 항의를 받았다.

나. 선거공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원고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쇄하였다.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는 선거구 단위로 전 후보자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었고, 후보자 1인당 1매로 작성할 수도 있었다. 전 후보자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선거공보 발송과정에서 어느 한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 후보자를 1매로 작성한 선거구는 449곳이었고, 후보자마다 1매로 작성한 선거구는 401곳이었다. 16개 무투표선거구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별도의 선거운동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선거공보를 인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작성된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991년 6월 13일까지, 매세대에는 6월 16일까지 우편발송하였다. 전국적으로 발송된 선거공보는 총 12,765,532통(부재자 633,593통, 매세대 12,131,939통)이었다.

후보자들이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 역시 선전벽보의 내용과 비슷하였다. 하지만 선전벽보에 비해 더 많은 글자(선전벽보는 1천 자를 초과할 수 없었지만 선거공보에는 3천 자까지 게재할 수 있었음)를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가급적 정치적 내용을 배제하고 “참일꾼 바른선택 안정속의 지역발전”(경남 김해시제1선거구 김문국 후보) 등과 같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문구를 주로 게재하였다. 신민주연합당 후보자들은 “물가폭등·공안통치 6공에게 국민적 심판을”(여수시제2선거구 이상운 후보) 등과 같이 정치문제에 관한 문구를 주로 게재하였다. 민주당 후보자들은 “돈받고 찍은 한표 우리살림 망친다”(구로구제4선거구 성성용 후보) 등과 같이 유권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문구를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민중당 후보자들은 “야당생활 10년 이제 서민을 대변할 참 정당을 찾았습니다”(서울 구로구제6선거구) 등과 같이 깨끗한 정당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문구를 주로 게재하였다.

하면서 일부가 뒤섞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안성군제1선거구 민주자유당 허장회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공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선거공보 200여 매를 빼내 1991년 6월 12일 개최된 합동 연설회장에서 이를 배부하였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다. 소형인쇄물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3종, 정당이 2종 이내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었다. 제작·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선거구 안의 유권자 수에 상당하는 매수 이내였다.

소형인쇄물을 제작한 후보자는 2,750명이었다. 3종을 모두 제작한 후보자는 1,769명, 2종을 제작한 후보자는 748명, 1종만 제작한 후보자는 233명이었다. 나머지 135명의 후보자는 제작하지 않았다. 한편 정당 소형인쇄물은 민주자유당이 610개 선거구(1종 329선거구, 2종 281선거구), 신민주연합당이 237개 선거구(1종 132개 선거구, 2종 105개 선거구), 민주당이 126개 선거구(1종 82개 선거구, 2종 44개 선거구), 민중당이 23개 선거구(1종 11개 선거구, 2종 12개 선거구)에서 제작하였다. 후보자와 정당은 이와 같이 제작된 소형인쇄물을 주로 합동연설회장이나 선거사무소 또는 가두에서 배부하였다. 또한 우편배달에 의한 방법으로도 배부하였다.

후보자들이 소형인쇄물에 게재한 내용은 지역발전 공약과 경력사항, 소속정당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것 등이었다. 민주자유당 일부 후보자들은 “일꾼 뽑아 발전이냐? 말꾼 뽑아 싹질이냐?”라는 선전문구를 공통적으로 실어 야당을 비판하였다. 또한 “안정숙의 개혁이냐? 혼란숙의 좌절이냐? 일꾼 뽑아 발전이냐?” 등의 문구를 게재한 후보자도 있었다.

신민주연합당 일부 후보자들은 고양에 생선이 놓인 그림에 “지방자치에 반대한 민자당이 무슨 꿈꾸이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을까요?”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그동안 민주자유당이 지방자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후보자들은 “1노 3김인가?, 세대교체인가?”(서울 마포구제6선거구 황경섭 후보) 등의 문구를 게재하였다.

시·도의회의원선거 소형인쇄물

민주당 후보자

신민주연합당 후보자

민주당 후보자

30년 평균 성장률		30년 평균 물가 상승률	
재벌특별시	서민특별시	재벌특별시	서민특별시
10.2%	9.2%	12.5%	11.5%

민주당 후보자

소형인쇄물의 배부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울 성북구제5선거구에서 민주당자유당 구제남 후보의 소형인쇄물 발송용 우편봉투 안에 한국통신의 전화요금고지서가 함께 철해진 채 선거구민에게 배달되었다. 야당 측은 체신당국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이라

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우체국은 “월말을 앞두고 발송해야 할 각종 고지서가 몰려든 데다 해당 후보가 소형인쇄물을 늦게 가져와 밤샘으로 우편물 분류작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배달을 쉽게 하고자 두 우편물을 철해 묶었다”고 해명하였다.

부산우체국 소속 한 집배원은 부산 동구제3선거구 민주자유당 이영규 후보의 소형인쇄물 400여 매를 오토바이에 싣고 배달하던 중 200여 매를 배달하고, 주소 찾기가 어려운 나머지 200여 매는 흑색 매직펜으로 수취인 주소와 성명을 지우고 골목길과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적발되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991년 6월 19일 그 집배원을 「우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라.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마다 2회씩 개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기준에 의해 1991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에서 1,701회의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법정개최횟수는 1,732회(866선거구×2회)였으나 무투표선거구 31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합동연설회는 주로 주말과 휴일에 개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합동연설회에 참여한 총 청중 수는 약 189만여 명이었고, 1회당 평균 1,100여 명이 모여 3개월 전에 치러진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청중이 모인 곳은 1991년 6월 16일 개최된 대구 동구제4선거구 합동연설회로 5,200여 명이 모였고, 가장 적게 모인 곳은 같은 날 개최된 울산군제2선거구로 55명이 모였다.

인기가수나 텔런트 등 연예인이 출마한 선거구의 합동연설회장에는 다른 선거구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유권자들이 모여들어 관심을 보였다. 1991년 6월 9일 서울 마포구제3선거구 합동연설회에는 이 선거구에 출마한 인기가수 이선희 후보를 보기 위해 1,500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 합동연설회장에는 이선희 후보의 사인을 받으려는 팬들이 몰려다녀 마치 사인회장을 방불케 하였다. 같은 날 동대문구제2선거구 합동연설회장에도 이 선거구에 출마한 텔런트 김을동 후보를 보기 위해 많은 청중이 모였다.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합동연설회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야당의 무책임성을 비판하고, 개혁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집권당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 후보자들은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물가와 부동산값 폭등, 환경오염, 수서비리 등 제6공화국 3년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주장하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세력을 육성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특히 신민주연합당 후보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공안통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무소속후보자들은 정치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환기시키면서 여야의 공천현금설, 수서사건, 뇌물외유 등 정치권 비리와 기존 정당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비판하고 참신한 지역일꾼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 합동연설회 장면(서울)

합동연설회 개최과정에서 사건·사고도 일어났다. 1991년 6월 16일 개최된 서울 용산구제3선거구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들의 연설순위 추첨 직후 민주당 이태식 후보가 검찰에 연행되었다. 이태식 후보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에 출마 의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날 합동연설회장에서 연행된 것이었다. 이태식 후보가 연행되자 그를 지지하는 청중들이 “이태식”을 연호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연설회 시작이 지연되었다.

1991년 6월 11일 개최된 전남 나주군제2선거구 합동연설회장에서 무소속 한상근 후보가 신민주연합당 김명국 후보의 공천과정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자 한 20대 청년이 이에 항의하

며 폭언을 하였다. 그러자 청중 10여 명이 그 청년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91년 6월 5일 죽곡중학교에서 개최된 전남 곡성군제1선거구 합동연설회장에서 무소속 조형래 후보가 연설할 때 청중 10여 명이 연단 앞에 몰려와 폭언과 야유를 하였다. 그 중 한 명이 안전관리구역 설치용 말뚝을 뽑아 조형래 후보를 위협하여 14분간 연설이 중단되었다.

1991년 6월 9일 11시 30분경 민주당 김정권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과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폭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합동연설회 장소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거사무원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마. 현수막

현수막은 후보자가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선거구 관내 읍·면·동마다 2매 이내로 게시할 수 있었다. 이런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총 31,370매의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이 중 8,057매는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교체 게시하였다.

3. 선거쟁점

시·도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 3당 합당의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공방, 내각제 개헌문제 등이었다. 또한 지역감정 문제도 선거쟁점이 되었다.

가.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 폭행사건

1991년 4월 26일 시위진압 경찰의 집단구타로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야당은 ‘노재봉 국무총리의 사임’과 ‘공안통치 종식’을 주장하며 잇따른 대규모 집회를 열어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5월 22일 노재봉 총리를 경질하고 그 후임에 정원식 전 문교부장관을 지명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제1절. 3. 강경대 학생 사망사건” 참조).

야당과 재야는 정원식 전 문교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정원식 국무총리 지명자가 1989년 1,500여 명의 교사들이 대량 해직된 사건인 이른바 ‘전교조 사태’ 당시 문교부장관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신민주연합당은 1991년 5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교조 탄압에 앞장섰던 정씨의 총리 임명은 공안통치 종식을 바라는 국민여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민주화를 원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어긋난다”며 총리 임명 철회를 요구하였다. 민주당 장석화 대변인도 성명을 발표하여 “정 전 장관의 국무총리 임명은 위기정국 수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안통치 강화의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세력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민주연합당 김대중 총재는 1991년 5월 31일 여의도에서 ‘현 정권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정원식 총리 지명자는 공안통치의 표본이며 공안통치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내의 공안세력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3일째인 1991년 6월 3일, 정원식 국무총리서리가 취임 전 시간강사로 출강했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마지막 특강을 하러 갔다. 정원식 국무총리서리가 특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300여명에 둘러싸여 교문밖으로 나가는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1991년 6월 3일)

학생회회장 등을 비롯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강의실 밖에서 야유를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정원식 국무총리서리가 서둘러 강의를 끝내고 돌아가던 중 학생들로부터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받고 발길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장면이 TV와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선거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민주자유당은 ‘참담·비통·패륜’ 등 격렬한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1991년 6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마지막 수업에 임하는 스승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은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패륜행위이다”, “학원이 이렇게까지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정치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 등 야당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과격행동을 일제히 비난하였다. 신민주연합당 김대중 총재는 1991년 6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성인인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폭행을 자행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에 의한 의사표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학생들이 상징적으로 달걀 정도는 던질 수 있으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은 이후 선거전의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강경대 학생 사망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자유당은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이 그동안 정부·여당을 불신해온 중산층이나 부동층의 안정심리와 운동권에 대한 반발심을 자극하여 여당 지지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합동연설회 등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야당을 공격하였다.

야당은 이 사건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며 공식대응을 자제하는 등 파장을 줄이려고 하였다. 야당은 이 사건이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정국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은 폭행 학생들이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비난함과 동시에 정부가 이를 공안통치 강화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정원식 총리서리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의가 의도된 행동이라는 등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나. 3당 합당의 정당성·부당성 공방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한 이후 정당이 참여하는 첫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라는 점에서 3당 합당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후보자들은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출현한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해졌다고 3당 합당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신민주연합당 김대중 총재는 당원단합대회 등 전국순회 집회를 통해 3당 합당은 유권자의 뜻을 무시한 채 몇몇 정치인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3당 합당은 무효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이기택 총재도 지구당창당대회 및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해 3당 합당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면서, 정치불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민주자유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3당 합당이야말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며, 3당 합당이 없었더라면 정국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라고 반격하였다. 3당 합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위원은 “소련이 개방화의 길로 나가고, 동유럽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져가는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만이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라는 구시대적 정치구도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3당 합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안정이 없이는 사회·경제적인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라 구국적 차원에서 3당 합당을 결단하게 됐다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야당이 3당 합당의 부당성을 공격하는 목적은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득표에 활용하려는 것인 동시에 차기 여당의 대권주자로 유력시되는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위원의 도덕성에 미리 흠집을 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3당 합당에 대한 공방은 이후 9개월 후에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이어졌다.

다. 내각제 개헌 논란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 일을 4일 앞둔 1991년 5월 28일, 민주자유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은 당정회의에서 “지금은 국민 다수가 내각책임제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은 할 수도 없을 뿐 아

나라 추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소신이다”라고 밝혀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동안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봉쇄하기 위해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야당후보를 대거 당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의 내각제개헌 포기발언은 이러한 야당의 주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야당이 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신민주연합당 김대중 총재는 1991년 5월 31일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현 정권 규탄 및 공안통치종식대회’에서 “노태우 씨는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할 것인지의 여부와 애매한 국민의 뜻을 운운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헌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우리가 언제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내각제개헌을 포기하겠다고 언명한 이상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한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각제 개헌문제를 거론하며 여당을 공격하였다. 신민주연합당 김대중 총재는 당원단합대회 등 집회에서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 여세를 몰아 내각제개헌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기택 민주당 총재도 선거운동개시 후 20여 곳의 단합대회에서 ‘공안통치’와 함께 내각제 음모 분쇄를 이슈로 삼으며 “내각제를 통한 장기집권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민주자유당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자유당 김윤환 사무총장은 “내각제 개헌을 않겠다고 수차 확인했는데도 이를 거론하는 것은 광역선거를 대통령선거로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저의”라고 반박하였고, 박희태 대변인도 “이는 불신증의 일환”이라며 비난하였다.



▶ 노태우대통령 내각제 개헌 포기 발언 보도(조선일보1991년 5월 29일)

라. 지역감정 논란

그 지역 사람들만이 출마하여 치러지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만큼은 아니었지만 지역감정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났다. 지역감정 논란은 지원활동에 나선 일부 중앙당 당직자나 후보자들이 지역정서를 득표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민주자유당 김윤환 사무총장은 1991년 6월 15일 점촌·문경 등 대구·경북지역 지원유세에서 “호남지역에서는 민주자유당이 한 사람도 당선되기 어렵다”, “노태우 대통령이 안정되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람이 단합해서 밀어줘야 한다”며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다.

호남지역에서 출마한 신민주연합당 일부 후보자들은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에 “대통령은 김대중”이라는 선전문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김대중 총재의 시도 때도 없는 대권 욕심이 드러났다고 공격했고, 신민주연합당은 호남 이외 다른 지역에서 유권자의 지역감정을 유발하려는 비열한 작태라고 반격하였다.

한편 지역적 기반이 없는 민주당과 민중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자유당과 신민주연합당 양당에 대해 지역 분할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자신들을 제3의 대안으로 선택해줄 것을 호소하며 세대교체를 주장하였다. 민주당 이기택 총재는 1991년 6월 10일 당원단합대회에서 “3김씨가 30년 이상 같은 짓만 하니 국민들이 정치무관심 중에 빠져 있다”, “이제는 새로운 노래를 들을 때”라며 세대교체를 역설하였다.

제5절

선거비용

시·도의회의원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등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1. 선거비용제한액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달한 비목별 산출기준에 의해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후 1991년 6월 4일까지 공시하였다. 비목별 산출기준은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지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기준에 의해 산출된 전국 866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172만 2,150원이었다.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비목은 전체의 36.9%를 차지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였고, 그 다음은 26.2%를 차지한 ‘소형인쇄물 및 현수막의 작성·게시·배부에 필요한 경비’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4-6>과 같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목포시제3선거구로 5,767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경기 의왕시제2선거구로 1,665만 7,000원이었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출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와 투표구 수 및 세대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런 것들이 많은 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도 많았다.

〈표 4-6〉 시·도의회의원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천원)

평균 선거 비용제한액 (합계)	선거사무 소·연락소 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선거사무장·선거연 락소책임자 및 선거사 무원 등의 수당·실비 보상	소형인쇄물 및 현 수막의 작성·배 부·게시 비용	자동차·선박 임차료 또는 유지비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 요한 경비	기타 선거 사 무의 연락에 필요한 경비
31,722	3,489	11,706	8,311	4,631	2,284	1,301
비율(100%)	11.0	36.9	26.2	14.6	7.2	4.1

2. 선거비용 지출

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나고 1991년 7월 5일까지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대상 후보자 2,885명이 모두 제출하였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후보자는 없었다. 후보자 1인당 평균지출액은 1,980만 485원으로 공시된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의 62.4%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지출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비목은 선거운동에 관한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과 실비보상비'로 평균 지출액의 37.6%였다.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제1선거구 박명수 후보로 제한액의 99.7%인 5,207만 7,270원을 지출하였다.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한 후보자는 대구 동구제3선거구의 김선출 후보로 제한액의 0.2%인 10만 2,380원을 지출했다.

3. 선거비용지출 실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지조사를 벌였다. 실지조사는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 있는 선거기획사와 인쇄업체 등을 방문하고, 선거비용을 지급받은 선거사무원들의 면담을 통하여 지출보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실지조사는 1991년 3월에 치러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의심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실시한 것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결과 현금출납부 및 지출내역서에 지출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지출 금액 누락, 영수증 일부 미구비, 선거비용지출보고서상의 지출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불일치 사례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고의에 의한 허위기재인지, 회계처리 미숙에 의한 것인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때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9개월 후에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시작하였다.

제6절



공명선거활동



1991년 6월 20일 실시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활동을 한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및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등의 시민단체였다. 특히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공명선거활동을 시작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활동의 목표를 ‘공명선거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정당·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 자제 및 공정경쟁 촉구’,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참여 및 올바른 선택유도’에 두고 언론매체와 인쇄물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공명선거활동을 펼쳤다.

가. 언론매체 이용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은 방송 및 신문광고, 자막·멘트, 대담·토론회 참석 등이었다. 방송광고는 644회(텔레비전 124회, 라디오 520회), 신문광고는 83회를 실시하였다. 광고의 내용은 주로 선거절차 안내, 위법선거운동 자제, 투표참여 권유 등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담화문을 신문에 2회 게재하였다.

광고문구에는 “이제, 지방자치 두 번째 걸음을 내딛는 시·도의회의원선거 — 주민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다립니다”, “유권자는 금품과 선심을 거부하고 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정직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6월 20일 — 몸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날입니

다. 이렇게 좋은 날, 당신이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등을 사용하였다.

TV와 라디오의 자막·멘트는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공명선거 확산과 투표참여 등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각각 74회와 259회 방송하였다.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들이 284회(TV 8회, 라디오 151회, 신문 125회) 참석하여 같은 내용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나. 인쇄물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인쇄물로는 포스터, 계도전단, 스티커, 담뱃갑 등이었다. 포스터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 밝은 내일을 위한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홍보문구 등을 넣어 34만 매(4종)를 제작하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이나 담벼락, 행정기관의 민원실, 음식점 등에 첩부하였다.

계도전단과 스티커는 “바른 선거 바른 일꾼 밝은 미래”, “우리 지방 밝은 미래 올바른 선택으로” 등의 제목으로 각각 1,370만 매와 28만 매를 제작하여 전국 각 세대에 배부하거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첩부하였다. 또한 담배인삼공사의 협조를 얻어 공명선거 표어와 그림이 게재된 담배 2,000만 갑을 발매하였다.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는 투표참여를 권장하는 벽보 7만 매를 제작하여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첩부하였다. 이외에도 선거절차 해설책자 22만 부, 공명선거계도 만화집 15만 부, 선거법위반사례집 20만 부, 앰프방송 문안집 5만 부 등을 제작하여 공명선거활동에 활용하였다.

시·도의회의원선거 포스터



다. 시설물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시설물로는 선전탑, 육교현관, 청사현관, 현수막, 입간판, 게시판, 애드벌룬 등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선전탑은 26기, 육교현관 53개, 청사현관 138개, 현수막 4,070개, 입간판 135개, 게시판 185개, 애드벌룬 7기 등을 게시·설치하였다.

이러한 시설물에 게재된 주요 홍보문구는 “떳떳한 시민 되고 존경받는 후보 되자”, “공명선거 뿌리내려 주민자치 열매 맺자”, “올바른 나의 한 표 지역발전 나라발전”, “내 고장 내 일꾼 깨끗한 내 한 표로”, “정책대결 선의경쟁 고을마다 공명선거” 등이었다. 지방선거이다 보니 ‘주민자치’, ‘지역발전’, ‘내 고장’, ‘고을’ 과 같은 문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 시설물 이용 홍보(서울)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 선택 바른 미래’ 제하의 계도영화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전국 259개소 극장과 유선방송사 등을 통하여 상영 및 방송하게 하였다. 또한 확정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의 가두방송을 하였고, 아파트단지의 구내방송도 실시하였다.

라. 기타 공명선거활동

1991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의 1,600여 곳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연인원 12만여 명이 참여하여 위법행위 자제와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등을 권장하는 공명선거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1년 6월 1일 국무총리에게 선거기간 중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또한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도 당부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가두캠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1년 6월 1일 각 정당의 대표들에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치쟁점을 지방선거에서 부각시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흐리게 하고 진정한 지역대표 선택기준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한 정당의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한 위법·탈법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6월 7일에는 각 정당의 선거실무 국장들을 대상으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당간부와의 업무협의회 개최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정부는 각종 회의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선거법위반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억제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1991년 5월 22일 소집된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통해 “내무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해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과열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해 적발하라”고 지시하였다.

내무부는 “시·도의회의원선거가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개입의 소지를 일절 없애는 한편 불법선거운동을 방치하거나 단속을 소홀히 하는 각급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6월 1일에는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의 감시·단속활동 강화는 물론이고 통·리·반장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991년 6월 7일에는 정부 제1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내무부·법무부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엄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명선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6월 7일부터 경찰수사요원 5,800명으로 선거사범전담반과 기동수사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991년 6월 11일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내무·법무·교육·보사·환경처·공보처 장관, 보훈처장,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사회분야 관계 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명선거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선지·파출소요원 22,000여 명으로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강화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운영하는 등 후보자 간의 흑색선전·중상모략·유세장 폭력 등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관련개입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거기간에는 행사개최나 출장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명선거활동을 한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사단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한빈)였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이하 이 장에서 “공선협”이라고 한다)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이어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도 공명선거활동을 하였다.

공선협은 서울 16개 구별로 시민선거감시단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갖고 ‘부정선거규탄 캠페인’을 전개하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권장하였다. 공선협 소속 시민선거감시단원 400여 명은 1991년 6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홍사단 앞에서 공명선거 촉구 시민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공선협은 선거부정고발창구를 운영하여 총 163건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접수해 이 중 1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9건은 수사의뢰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참여와자치를위한시민연대회의’ 및 YMCA 등의 단체도 선거부정감시와 투표참여를 권장하는 공명선거활동을 하였다.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는 1991년 6월 1일 부정선거운동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공명선거운동을 범교단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정당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정당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면서 3개월 전에 치러진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보다 과열되었다. 선거가 과열된 만큼 선거법위반행위도 많이 발생하였다.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및 경찰이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에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것은 3개월 전에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이어 두 번째였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끝나고 보름 정도가 지난 1991년 4월 11일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임직원 870명, 구·시·군청 등에서 파견받은 지방공무원 6,007명 등 총 6,877명으로 편성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반 외에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간사·서기 등 총 96,715명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사례수집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사례수집반의 임무는 생활근거지 주변에서 선거법위반사건을 수집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단속활동을 펼쳐 총 768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 중 사안이 중한 26건은 고발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51건은 수사의뢰하였으며, 사안이 경미

한 27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다. 나머지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거나 자체 종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7>과 같다.

〈표 4-7〉 시·도의회의원선거 선관위의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상황

(단위: 건)

합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공명선거 협조요청	자체종결
768	26	51	274	149	268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이거나 기소권이 없었기 때문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의 법적 조치는 검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기소된 후 법원에서 유죄뿐만 아니라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26건 중 17건을 기소하고, 수사의뢰한 51건 중 7건을 기소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이어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도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정당이나 후보자 등은 검찰이나 경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의 주무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 검찰의 단속활동

대검찰청은 전국公安부장검사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지침과 금지된 선거운동 111개 사항을 전국 검찰에 시달하였다. 검찰은 고질적인 흑색선전, 금품선거, 선거폭력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의 공천관련 금품수수행위와 유권자의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적발된 선거사범의 경우 당락에 관계없이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하여 당선된 경우라도 당선무효는 물론 앞으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방침 아래 검찰은 전국 검찰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하루 24시간 수사지휘 및 비상 보고체제를 유지하는 등 단속활동을 하였다.

다. 경찰의 단속활동

치안본부는 1991년 6월 7일부터 5,8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전담반과 기동수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이들을 선거과열 및 취약 지역에 집중 투입해 금품수수·향응제공·선심관광 등 고질적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6월 11일부터는 일선 파출소 요원 등 2만 2,000명으로 지역별 담당책임자를 지정하여 후보자간의 흑색선전·중상모략·유세장 폭력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 막바지의 불법·타락선거운동에 대비해 1991년 6월 15일 밤 8시부터 세 시간 동안 1만 2,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서울시내 전역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선거일까지 세 차례의 전국적인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찰은 투표일이 임박해지자 불법·탈법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도심지 골목과 다방 등에 경찰관을 배치해 금전살포 등을 포함한 위법행위를 감시하였다.

2. 위반행위 발생상황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693명이었다. 검찰은 이 중 67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015명은 불기소 처분하였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구속된 사람은 79명이었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1,256명) 때보다 437명이 늘어났다.

〈표 4-8〉 시·도의회의원선거 선거사범 현황²⁵⁾

발생건수 (입건)	기 소			불기소				미 제
	계	구 속	불구속	소계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 타	
1,693	678	79	599	1,015	459	520	36	-

선거사범의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금전선거사범이 30.5%로 가장 많았고 불법유인물사범 26.5%,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19.9%, 현수막·벽보 불법부착사범 7.3%, 선거폭력사범 6.4%

25) 대검찰청, 1995, 『1995 4대 지방선거 선거사범백서』, 73 ~ 81쪽

등이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에도 금전선거사범과 불법유인물사범이 가장 많았었다.

당선자 중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이었다. 그중 11명은 구속되고 31명을 불구속되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재판결과 2명은 집행유예, 5명은 선고유예, 3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6명이었다.

3. 주요 위반사례

가. 불법유인물 배포

경기 수원시 권선구제4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종안 후보는 1991년 6월 3일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장 4,000여 통을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최종안 후보는 선거가 끝나고 1992년 5월 2일 법원에서 4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남 보령군제2선거구에서 선거구민인 유순희가 1991년 6월 6일 민주자유당 신홍식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500여 매를 제작하여 보령군 성주면 지역에 배부한 사례가 있었다. 유순희는 신홍식 후보와 탄광 소유문제로 소송 중이었는데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부한 것이었다. 유순희는 1991년 12월 13일 법원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금품제공

대전 대덕구제2선거구 민주자유당 이석환 후보가 1991년 5월 10일 대덕구 회덕1동의 부녀회가 주관하는 '경로위안잔치'에서 부녀회장 오순임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찬조금조로 10만 원을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석환 후보는 선거가 끝나고 1992년 3월 20일 법원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부천시제7선거구 민주자유당 조종호 후보가 1991년 4월과 5월에 5차례에 걸쳐 선거구내의 동사무소, 아파트자치회, 경로당 등에 현금 또는 냉장고 등 물품을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조종호 후보는 선거결과 당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되어 1992년 12월 30일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다. 불법당원단합대회

당원단합대회는 정당의 당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옥내에서만 개최해야 하는데, 일반선거구민을 참여시킨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옥외에서 개최한 경우도 있었다. 옥외 당원단합대회는 야당에서 많이 개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불법집회가 개최되자 각 정당에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정당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민주당은 1991년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 천변에서 3개 지구당 합동으로 옥외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후보자 9인을 소개하여 지지를 유도하였고, 고지벽보 4,000여 매와 현수막 30여 매를 게시·첩부하였으며, 소형인쇄물도 배부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창당대회 개최자 3인을 고발하였다. 이 집회에서 연설을 한 민주당 이기택 총재와 후보자 9명에게는 경고 처분하였다.

신민주연합당 광주직할시부는 1991년 6월 14일 광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당원단합대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후보자 3인 명의로 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또한 애드벌룬, 옥외 확장장치를 설치하여 당원단합대회 상황을 중계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민주연합당 광주직할시지부를 경고 처분하였다.

제8절 선거결과

1. 선거인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는 1991년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구·시·읍 면장이 작성하고, 열람 및 공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15일 확정되었다. 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1971년 6월 21일 이전 출생자(선거일 현재 20세 이상)로서 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인수는 28,416,241명이었다. 이 선거인수는 3개월 전인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28,301,580명)보다 114,661명 늘어나 0.4%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4-9〉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인구수 및 선거인수

(단위: 명)

인구수	선거인수			비고
	합계	남	여	
43,467,306	28,416,241 (643,065)	14,009,314 (618,364)	14,406,927 (24,701)	

※ () 안은 부재자신고인수로 본수에 포함

그러나 16개 무투표선거구의 선거인수 333,217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투표할 선거인수는 28,083,024명이었다. 투표를 실시한 선거구와 무투표선거구의 선거인수 및 투표구 수 등의 구체적인 현황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투표실시 선거구 및 무투표선거구의 선거인수 등 현황

구 분	합 계	투표실시 선거구	무투표 선거구	비 고
선거인수(명)	28,416,241	28,083,024	333,217	
선거구수(개)	866	850	16	
투표구수(개)	15,043	14,780	263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기간은 1991년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였다. 이 기간에 신고하여 확정된 부재자수는 643,065명이었다. 이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1991년 3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부재자수보다 7,017명이 줄어들었다.

부재자신고와 관련해 통장들이 대리 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와 부재자신고서를 대조·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 필적으로 작성된 부재자신고서 72매를 발견하였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밀양시장에게 통보하였고, 밀양시는 관련 통장 5명을 해임하였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통장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허위 신고된 부재자신고서를 무효로 결정하였다. 해당 선거인에게는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하였다.

2. 투 표

가. 투표상황

1991년 6월 20일(목)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780개 투표소에서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투표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전국 총투표구수는 15,043개였으나 무투표선거구인 263개의 투표구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다.

투표결과 무투표선거구를 제외한 투표대상 선거인수 28,083,024명 중 16,533,934명이 투표하여 58.9%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투표율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55.0%)보다 3.9% 포인트 높았지만,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75.8%)보다는 16.9% 포인트 낮았다.

〈표 4-11〉 시·도의회의원선거 투표율

선거인수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비고
28,083,024 (632,892)	16,533,934 (609,874)	11,549,090 (23,018)	58.9% (96.4%)	

※ 선거인수는 무투표선거구 선거인수를 제외한 것임. () 안은 부재자로 분수에 포함

시·도별 투표율을 보면 제주도가 7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충남 68.9%, 경북 68.7%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52.4%였고, 그 다음은 대구로 53.0%를 기록하였다. 구·시·군별 투표율을 보면 강원도 양양군이 8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안산시로 44.2%였다. 특히 양양군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84.6%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과 비교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 등 5개 직할시의 투표율은 크게 상승하였다. 서울은 42.3%에서 52.4%로 증가했고, 5개 직할 시도 평균 47.6%에서 55.9%로 증가하였다. 반면 도지역은 63.0%에서 63.5%로 약간 상승하였다. 대도시 지역의 투표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이 지역의 선거전이 치열했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선거인의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고 있다.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1)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

경기도 부천시 심곡3동 제2투표소에서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선거인을 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하여 한때 소란스러웠다. 같은 동 제1투표구의 선거인명부 2,490번에 등재

된 선거인이 잘 모르고 제2투표소로 투표하러 왔고, 투표사무종사원도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선거인으로 착각하여 그 번호란에 날인한 후 투표하게 하였다. 이 선거인은 투표 후 귀가하였고, 나중에 그 번호에 등재된 선거인이 투표하러 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투표하러 온 선거인은 자신의 번호에 이미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한 것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투표를 한 선거인이 이 중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제1투표소에 연락하고, 나중에 온 선거인은 정상적으로 투표하게 하였다.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제1투표소와 강원 춘천시 효자2동 제3투표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착오 투표사례가 발생하였다. 두 곳 모두 선거인명부 대조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는데 위와 같이 조치하여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 투표함에 담배꽂이 투입사건 등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제2투표소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넣는 척하면서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꽂이를 투표함에 집어넣은 사례가 있었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 전원이 참관한 가운데 즉시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에서 담배꽂이를 꺼내고 불에 탄 흔적이 있는 투표지 2매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개표 시 유효처리 하도록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배꽂이를 투입한 선거인을 용인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전남 함평군 대동면 제5투표소에서는 평소 정신질환이 있던 한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 갑자기 투표함을 들어 유리창에 던졌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약간 찌그러진 것 외에 다른 이상이 없어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3) 투표함 회송차량 교통사고 등

경북 금릉군 조마면 제3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후 오후 6시 40분경 승합차를 이용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송하던 중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투표구간사와 운전기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금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고 즉시 경비경찰로 하여금 투표함을 안전하게 경비토록 조치하고,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금릉군청 협조차량을 이용해 오후 8시 15분경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무사히 운송하였다.

부산 서구 아미2동 제7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시간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투표함을 운송차량 안으로 옮긴 후, 그 안에서 투표함 투입구를 봉인하였다. 또한 투표함 운송차량에 탑승할 자리가 없어서 참관인들을 승차시키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민주당 당원들이 개표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투표함을 실은 회송차량이 오자 투표참관인 승차거부 사실 등을 공개하고 부정투표함이라고 주장하며 개표소 안으로 운반하지 못하게 막았다. 1시간 정도의 실랑이 끝에 투표함을 개표소 안으로 운반할 수 있었다.

3. 개 표

1991년 6월 20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한 뒤 전국 298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시작되었다. 개표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원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27,806명(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351명, 개표사무종사원 25,455명)이었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17,328명이 개표과정을 지켜보았다.

개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전북 김제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1991년 6월 20일 오후 6시 13분에 시작되었다. 개표가 가장 늦게 끝난 곳은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1991년 6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 끝났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일부 투표소의 투표함 열쇠봉투가 봉인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표진행을 방해하여 개표가 10시간 이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늦게 끝났다.



▶ 개표소에서 후보자별 투표지 매수 확인

개표가 끝나자 시·도의회의원선거 당선자 866명이 결정되었다. 당선자 중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된 후보는 850명이었고, 나머지 16명은 무투표당선이었다. 무투표당선자 16명은 모두 민주자유당 소속이었다.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인

개표결과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한 5개 정당 중 민주자유당,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민중당의 4개 정당은 당선자를 냈으나, 공명민주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무소속후보자는 115명이 당선되었다. 구체적인 정당별 당선자수 및 득표상황은 <표 4-12>와 같다.

<표 4-12> 시·도의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자수 및 득표상황

정당명	당선자수	득표수	득표율(%)
합계	866	16,239,098	100.0
민주자유당	564	6,588,175	40.6
신민주연합당	165	3,562,988	21.9
민주당	21	2,316,528	14.3
공명민주당	-	1,954	-
민중당	1	125,488	0.8
무소속	115	3,643,965	22.4

민주자유당은 유효투표총수의 40.6%를 득표하여 전국 866개 선거구 중 564곳에서 당선자를 내며, 선거에 참여한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후보자를 당선시켰다. 민주자유당은 최대 접전지역이었던 서울에서도 전체 132개 의석 중 83.3%인 110석을 차지하는 등 광주·전남·전북 및 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의회 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그 지역의 시·도의회를 장악하였다. 시·도별 의석수는 <표 4-13>과 같다.

신민주연합당은 유효투표총수의 21.9%를 득표하여 전국 866개 선거구 중 165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신민주연합당이 얻은 165석 중 83.0%인 137석이 광주·전남·전북에서 얻은 것이어서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주연합당의 전신인 평화민주당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는데,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33.9%를 득표하여 41.3%를 얻은 민주자유당보다 7.4%포인트 뒤졌다.

민주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4.3%를 득표하여 전국 866개 선거구 중 21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기대를 했던 서울과 부산에서는 각 1석씩밖에 얻지 못하여 대안야당의 입지확보에 실패하였다. 43명의 후보자를 공천한 민중당은 강원도 정선에서 1석을 얻었다.

〈표 4-13〉 시·도의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자 현황

(단위: 명)

구분	당선자수						
	합계	민주자유당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공명민주당	민중당	무소속
합계	866	564	165	21	-	1	115
서울	132	110	21	1	-	-	-
부산	51	50	-	1	-	-	-
대구	28	26	-	-	-	-	2
인천	27	20	1	3	-	-	3
광주	23	-	19	-	-	-	4
대전	23	14	2	1	-	-	6
경기	117	94	3	2	-	-	18
강원	54	34	-	1	-	1	18
충북	38	31	-	2	-	-	5
충남	55	37	-	4	-	-	14
전북	52	-	51	-	-	-	1
전남	73	1	67	-	-	-	5
경북	87	66	-	5	-	-	16
경남	89	73	1	1	-	-	14
제주	17	8	-	-	-	-	9

무소속후보자는 총 972명이 출마하여 유효투표총수의 22.4%를 얻었고, 그 중 115명이 당선되었다. 무소속당선자 수는 민주자유당과 신민주연합당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득표율에 있어서 제1야당인 신민주연합당의 득표율 21.9%보다 0.5% 포인트 많았다. 제주도에서는 전체 17개 선거구 중 9개 선거구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당선되어 민주자유당(8명)보다 더 많이 당선되었다. 제주도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체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당선될 정도로 무소속 강세지역이었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선거구나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이색적인 당선자나 진기록들도 많았다. 최다득표 당선자는 부산진구제6선거구 도종이 후보로 24,629표를 얻었고, 최소득표 당선자는 경북 울릉군제2선거구 정무웅 후보로 1,401표를 얻고도 당선되었다.

강원도 동해시제3선거구 정홍교 후보는 차점자인 이상록 후보에게 불과 3표차로 앞서 당선되었다. 4명이 출마한 이 선거구에서 정홍교 후보는 1차 개표결과 3,879표를 얻어 이상록 후보보다 3표가 많았다. 이상록 후보의 요청에 의해 재검표한 결과 역시 3표차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인천 서구제1선거구 박장원 후보는 7,979표를 얻어 차점자 백석두 후보를 4표차로 앞서 당선되었다.

부산 남구제4선거구 서석호 후보는 아들이 3개월 전에 치러진 부산 북구의회선거에서 당선포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도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부자(父子) 지방의회의원이 되었다. 전남 동광양시제1선거구 이돈광 후보는 사망한 그의 아버지가 초대 도의회의원을 지냈었는데, 그도 당선되어 도의회의원 2대를 기록하였다. 관심을 끌었던 연예인 출신 후보자 중에서는 인기가수 이선희 후보와 코미디언 허원 후보만이 당선되었다.

당선자의 직업은 상업이 1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농·수산업 14.8%, 건설업 12.4%, 의·약사 8.4%, 정치인 7.7%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운수업, 회사원, 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1~5%였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비해 농업은 낮아진 반면, 전문직과 정치인의 비율은 높아졌다. 특히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1명도 없었던 변호사가 4명이나 당선되었다.

당선자들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599명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졸 150명(17.3%), 대학교 중퇴 60명(6.9%), 전문대졸 18명(2.1%), 중학교 졸업 17명(2.0%),

초등학교 졸업 9명(1.0%) 등의 순이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해서 고졸 이하는 27% 포인트 정도 낮아진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높아졌다.

당선자들의 연령은 40대와 50대가 694명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60대와 30대 등의 순이었으며 20대는 4명에 불과하였다. 전국 최고령 당선자는 경기도 포천군제3선거구 하유천 후보로 75세였고, 최연소 당선자는 서울 마포구제3선거구 이선희 후보로 26세였다. 당선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858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99.1%를 차지해 여성 당선자 8명(0.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1) 투표함 열쇠 등의 미봉인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영양읍 제8투표구 등 5개 투표함의 열쇠봉투가 봉인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개표가 10시간 이상 중단되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다음날인 6월 21일 새벽 2시 40분경 다른 투표함의 개표를 마치고 마지막 이 투표함들을 개함하려 했지만 개표참관인들이 항의하며 개함을 못하게 하였다. 10여 시간의 실랑이 끝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간사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오후 1시 30분경에 개표를 속개할 수 있었다.

경남 진양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내동면 제1투표구 투표함의 자물쇠가 봉인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마지막에 개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요구대로 이 투표함을 맨 마지막에 개함하였다. 개함하기에 앞서 해당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간사를 참석시켜 경위를 설명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도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도 성산읍 제7투표구의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가 봉인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어 개표가 지연되었다.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간사로부터 경위 설명을 들은 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개함하였다.

2) 일부 투표함의 회송 누락

서울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투표함 회송차량 안에 투표함 1개를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인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용산구 원효로 제1동 5개 투표소의 투표함 5개를 개표소로 운송하던 중 실수로 투표함 1개를 회송용 차량에 남겨둔 채 4개 투표함만 개표소에 인계하였다. 나중에 운전기사가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던 중 투표함 1개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개표소에 인계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민주연합당 개표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문제의 투표함을 맨 마지막에 개함하도록 요구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투표함의 개함을 마치고 이 투표함을 개함하려고 하였으나 개표참관인 일부가 증거보전을 주장하며 개함을 못하게 하였다.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투표참관인 등을 참석시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6월 21일 오전 7시경에 이 투표함을 개함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개표참관인들이 참관을 거부하고 개표소에서 퇴장하였다.

3) 투표지 분류 착오

부산진구을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부산진구제4선거구 민주당 최신도 후보의 유효표로 분류한 투표지 100매 묶음 1다발 중 맨 앞에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가 올라져 있어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부산진구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지 묶음을 다시 분류하였다.

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영덕군제2선거구의 개표과정에 제1선거구의 투표지 1매가 발견되었다. 이 투표지는 투표용지 가인 작업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투표지를 무효처리하였다.

4. 선거쟁송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먼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그 결정을 받은 다음, 이에 불복할 경우에만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가. 선거소청 제기 및 처리결과

선거소청은 총 35건이 제기되었다. 이 중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 17건,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13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5건이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때의 제기건수 43건보다는 8건이 감소하였다.

선거소청을 제기한 사람은 낙선 후보자가 31명이었고, 선거인과 정당도 각각 2건씩 제기했다.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한 선거인은 관내 3개 전 선거구의 선거무효소청을 제기했고, 강원도 춘천시 신민주연합당 부정선거고발센터본부장과 신민주연합당 춘천시지구당위원장이 각각 관내 3개 전 선거구의 선거무효소청을 제기하였다.

선거소청의 제기사유는 위장전입, 흑색유인물 배포, 허위학력 기재, 향응제공, 개표의 부정확 등 선거사무관리의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위반행위의 묵인·방치, 당선자의 이중당적 등이었다.

선거소청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처리결과 3건은 각하되고, 30건은 기각되었다. 나머지 2건은 소청 제기가 스스로 취하하였다. 따라서 선거소청인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표 4-14〉 선거소청의 제기 및 처리상황

제기건수	처리결과					비 고
	합계	각하	기각	취하	인용	
35	35	3	30	2	0	

나. 선거소송 제기 및 처리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결정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7건이었다. 이 중 3건은 선거무효소송, 4건은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이었다. 선거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관리 잘못 등이었다.

고등법원의 선거소송 처리결과 3건은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4건은 기각되었다. 기각사유는 주로 “당선인의 불법선거운동이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잘못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이었다. 전남 장성군제1선거구 이

길수 후보는 고등법원의 기각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하였다.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표 4-15>와 같다.

〈표 4-15〉 시·도의회의원선거 선거소송 처리결과

선거구명	소송 구분	소송 당사자		소송 청구원인	처리결과
		원고	피고		
서울 서대문구 제6선거구	선거 및 당선무효	신민주연합당 신경식	선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표 부정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관리 하자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취하
경기 고양군 제1선거구	선거 및 당선무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민주연합당 박원필 민주당 나진택 무소속 이세준 	선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관리 하자 	1991. 12. 27 기각
대구 중구 제3선거구	선거 및 당선무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민주연합당 김한수 민주당 오남수 	선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관리 하자 	1992. 7. 22 기각
대구 남구 제3선거구	선거무효	무소속 이단	선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관리 하자 	1992. 7. 22 기각
충남 논산군 제3선거구	선거무효	신민주연합당 김규명	선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관리 하자 	취하
전남 장성군 제1선거구	선거 및 당선무효	무소속 이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민주연합당 김국태 선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선자의 이중당적 	1993. 2. 12 상고기각
경북 칠곡군 제3선거구	선거무효	무소속 신한군	선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관리 하자 	취하

※피고란의 '선관위원장'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함.

5. 선거결과 특징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 결과의 특징으로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의회를 장악했고,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심하게 표출되었으

며,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들 수 있었다.

가. 여당의 시·도의회 장악

시·도회의의원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전체의석 866석의 65.1%인 564석을 차지하여 광주·전남·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의회를 장악하였다. 민주자유당의 시·도별 의석점유율을 보면 서울 83.3%, 부산 98.0%, 대구 92.9%, 인천 74.1%, 대전 60.9%, 경기 80.3%, 강원 63.0%, 충북 81.6%, 충남 67.3%, 경북 75.9%, 경남 82.0% 등이었다.

그러나 무소속 당선자의 대부분이 친여 성향이어서 민주자유당의 실질적인 의석점유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민주자유당이 전체 17석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8석을 차지하였지만 무소속 당선자 9명이 대부분 친여 성향이어서 제주도의 회도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므로 전국 15개 시·도의회 중 12개 시·도의회를 장악한 셈이었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민주자유당이 시·도회의의원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정치안정과 지역발전 공약을 내세운 선거전략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기간 중 발생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도 민주자유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중앙일보가 1991년 6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민주자유당이 승리한 이유로 시국불안과 국민의 안정욕구를 가장 많이 꼽았고(응답자의 31.3%), 자금 동원력(19.9%), 야당과 재야에 대한 불신감, 야권후보 난립 등을 들었다.

정당	당선	수석	대변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서울
민자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신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무소속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합계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 시·도회의의원선거결과 보도(조선일보 1991년 6월 21일)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은 야권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야당의 분열이 중요한 패배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서울의 득표율을 보면 왜 통합이 필요한지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신민주연합당은 33.9%를 득표하였고, 민주당은 14.4%를 득표하여 양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48.3%였다. 반면 민주자유당은 41.3%를 득표하였다. 따라서 득표율로는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민주자유당보다 7%를 더 얻은 셈이었다. 하지만 의석수에서는 민주자유당은 서울의 전체의석 132석 중 110석을 차지한 반면,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은 총 22석(신민주연합당 21석, 민주당 1석)을 차지하여 무려 88석이나 뒤졌다. 야당 표가 분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로 인해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은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통합논의를 시작하였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지도체제와 지분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1991년 9월 16일 ‘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신설합당을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참조).

나.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 투표성향 표출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이후 정당의 공식적인 참여가 허용된 첫 번째 전국규모의 선거였다. 또한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이후 정당의 참여가 허용된 첫 번째 전국규모의 선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의 재현여부가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시·도의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그 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지역주의가 어떻게 나타날지 더욱 주목을 끌었다.

선거결과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재현되었다. 특히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유력정당 최고지도자의 연고지역에 따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남, 광주·전남·전북의 4개 지역으로 나뉘었으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1990년 3당 합당의 영향으로 인해 호남 대 비호남으로 나뉘어졌다.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자유당은 광주·전남·전북의 호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의회의 전체의석 718석 중 563석을 차지하여 78.4%의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

나 호남지역에서는 148개 의석 중 단 1석 만을 얻는데 그쳤다.

반면 신민주연합당은 호남지역 전체의석의 92.6%를 차지하였지만, 비호남 지역에서는 전체의석 718석 중 3.9%인 28석밖에 얻지 못하였다. 특히 신민주연합당은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충남 등 민주자유당의 노태우 총재 및 김영삼·김종필 최고위원의 연고지역에서는 그 지역 전체의석 310석 중 단 1석만을 얻었다.

〈표 4-16〉 시·도의회의원선거 호남 대 비호남지역의 정당별 의석수 등 비교

지역별 정당별	합 계 (의원정수)	민주자유당		신민주연합당		기타 정당 및 무소속	
		의석수	의석비율 (%)	의석수	의석비율 (%)	의석수	의석비율 (%)
전 국	866(100.0%)	564	65.1	165	19.1	137	15.8
비호남지역	718(100.0%)	563	78.4	28	3.9	127	17.7
호남지역 (광주·전남·전북)	148(100.0%)	1	0.7	137	92.6	10	6.7

※ '기타 정당'은 민주당과 민중당을 말함.

다. 낮은 투표율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낮은 투표율이었다.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3개월 전에 치러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 55.0%보다는 3.9% 포인트 높은 58.9%였다. 하지만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 75.8%에 비해서는 16.9% 포인트,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89.2%에 비해서는 무려 30.3% 포인트 낮았다.

시·도의회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을 수는 없으므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2년과 1956년 및 1960년에 실시된 3회의 시·도의회의원선거 투표율이 각각 81.2%, 85.8%, 67.4%를 기록한 바 있어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전에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70%는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투표율은 58.9%에 그쳤다.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로는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선거 무관심, 정치

불신,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들의 지명도가 낮아서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곤란했고, 농촌의 경우 선거기간이 농번기와 겹친 것도 투표율을 낮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선거일 다음날인 1991년 6월 21일 동아일보사와 동서조사연구소가 전국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하게 나왔다. 이 조사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로 응답자의 49.2%가 정치 불신을 꼽았고, 17.7%는 후보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16.3%는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시·도의회의원의 임기(1991. 7. 1 ~ 1995. 6. 30) 중에 총 50명의 시·도의회의원이 궐원되었다. 이들의 궐원사유는 사망이 17명, 사직 15명, 피선거권 상실 10명, 당선무효 7명, 제명 1명 등이었다.

시·도의회의원이 궐원된 곳에서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총 50개 선거구에서 궐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30개 선거구(재선거 7, 보궐선거 23)에서만 선거가 치러졌다. 나머지 20개 선거구는 “의원정수가 3분의 2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하거나 선출되는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4-17〉 시·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실시상황

(단위: 선거구)

구 분	사유 발생	선거 실시					선거 미실시
		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계	50	30	1	12	16	1	20
재선거	7	7	-	4	3	-	-
보궐선거	43	23	1	8	13	1	20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가 1명밖에 등록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자를 결정한 무투표선거구가 있었다. 경북 청도군제2선거구, 경기도 양주군제2선거구, 전남 무안군제3선거구, 경남 거창군제2선거구, 경북 구미시제1선거구 등 5개 선거구의 재·보궐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가 나왔다.

시·도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 역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재·보궐선거와 같이 특정지역 몇 개 선거구에서 소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언론이나 유권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투표율도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평균투표율이 37%대였다.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1991년 7월 10일 실시한 강원도 양구군제1선거구로 73.1%였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1993년 7월 9일 실시한 경기 부천시제7선거구로 20.7%였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높았고, 도시지역에서는 낮았다.

시·도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 결과 본선거(1991년 6월 20일 실시한 시·도의회의원선거를 말함)와 마찬가지로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30개의 선거구 중 민주자유당 후보자가 2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고, 민주당(1991년 9월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만든 정당을 말함)은 5곳, 나머지 2곳은 무소속후보자가 당선되었다.

5 장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992. 3. 24 실시)

개요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1992년 3월 24일 실시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9개월 앞두고 실시되어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최대 재벌 중의 하나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전은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3당 대결구도가 되었다.

선거전에서 쟁점이 된 것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재벌그룹 회장 출신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안정론·견제론 등이었다. 또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선거개입과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폭로 사건 등도 큰 선거쟁점이 되었다.

선거결과 민주자유당은 전체의석의 49.8%인 149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고, 민주당은 97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이 되었으며, 통일국민당은 31석을 차지하여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 민주정의당은 처음에 과반수의석에서 1석이 부족하여 여소야대였으나 선거가 끝난 후 무소속 당선자들을 계속 영입하여 제14대 국회 개원 전에는 과반수를 확보하여 여대야소가 되었다.

제1절 _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2절 _ 선거제도

제3절 _ 후보자 추천과 등록

제4절 _ 선거운동

제5절 _ 선거비용

제6절 _ 공명선거활동

제7절 _ 선거법위반행위

제8절 _ 선거결과

제9절 _ 보궐선거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92년 3월 24일 실시하였다.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후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까지 4년간 정치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되어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야당은 국회에 5공비리특위와 5·18광주특위를 구성한 후, 1988년 11월 3일부터 관련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정권시절의 각종 비리’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의 발포책임자 및 정확한 사망자 수’ 등을 추궁하였다. 청문회 장면은 TV로 생중계되었는데 1988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88 서울올림픽의 시청률을 뛰어 넘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청문회는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로 은둔하게 만들었다.

1990년 1월에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총재 노태우)과 야당인 통일국민당(총재 김영삼) 및 신민주공화당(총재 김종필) 등 3당이 전격적으로 합당하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이에 대해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총재 김대중)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한동안 극심한 대결국면을 보였다. 이러한 대치국면 속에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1990년 10월 20일부터 13일간 단식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1991년 1월에는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사건인 ‘수서비리사건’이 터져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3월 26일에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 6월 20일에는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앞의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1991년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선거 이후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

거가 실시되기까지 9개월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주요 정치적 사건으로는 제1야당인 신민주연합당이 민주당과 합당하여 새로운 민주당 창당, 우리나라 최대재벌 중의 하나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중심이 되어 통일국민당 창당, 그리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선언 등을 들 수 있었다.

1.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신설합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9개월 정도 앞두고 1991년 6월 20일 치러진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시·도의회의원 전체의석(866석)의 65.1%인 564석을 차지하였지만, 제1야당인 신민주연합당(총재 김대중)은 19.1%인 165석을 얻는데 그쳤다. 특히 신민주연합당은 165석 중 137석을 광주 전남 전북에서 얻은 것이어서 지역당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 다른 야당인 민주당(총재 이기택)도 시·도의회의원 전체의석의 2.4%인 21석을 얻는데 그쳐 대안야당이라는 위상 정립에 실패하였다. 이보다 3개월 앞서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도 비록 정당의 공천이 배제된 선거였지만 각 정당이 자체 집계한 바에 의하면 시·도의회의원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2회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패배한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은 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경우 또다시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양당의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양당은 이전에도 통합을 논의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다. 1990년 2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이 통합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만들자 상대적으로 왜소해진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신민주연합당의 전신)과 민주당이 통합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지도체제와 당내 지분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가 양당의 통합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1990년 12월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민주당과의 통합에 실패한 평화민주당은 1991년 3월 일부 재야단체와 통합하여 당명을 ‘신민주연합당’으로 바꾸고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치러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선거결과가 나온 것이었다(구체인 내용은 “제4장 시·도의회의원선거” 참조).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끝나고 4일이 지난 1991년 6월 24일 신민주연합당은 의원총회를 열



▶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 합당선언 (1991년 9월 10일)

어 야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민주당도 7월 10일 범야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협상을 논의하였다. 양당은 야권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지도체제와 지분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통합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기택 총재는 7월 30일 ‘공동대표제와 김대중 총재의 일선후퇴’를 합당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는 8월 17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순수 집단지도체제, 상임대표 하의 공동대표제’ 등 3개 방안을 제시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선택할 것을 요구하며 갈등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듯 극명하게 갈리자 야권통합을 바라는 신민주연합당 내부의 정치발전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별도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1991년 9월 초순 양당 지도부간 막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타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양당은 지도체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김대중 총재 단독대표, 정치적으로는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제라는 절충안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냈다. 마침내 1991년 9월 10일 신민주연합당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 이기택 총재가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

을 열고 합당을 선언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의 당명은 '민주당' 으로 하고, 지도체제는 최고위원 동수의 집단지도체제로 하되 김대중·이기택 총재가 공동대표가 되며, 중앙당의 당직배분은 신민 6, 민주 4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이기택 총재는 “모든 민주세력이 참여하는 범민주 수권정당을 결성함으로써 민주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고 내년에 기필코 민간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이룩하고자 할 것”이라며 양당통합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통합선언 다음날인 1991년 9월 11일 신민주연합당 67명, 민주당 7명 등 총 74명의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 9월 16일에는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의 합당수입기관합동회의를 열어 김대중·이기택 양당총재를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최고위원에 이우정 박영록 박영숙 허경만(이상 신민주연합당), 김현규 조순형 이부영 목요상(이상 민주당) 등 8인을 선출하였다. 사무총장은 김원기 의원이 맡았고, 대변인은 노무현 의원이 맡았다. 같은 날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 수리됨으로써 법적인 정당성립 절차도 마쳤다.

한편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민주당 박찬종·김광일 의원 등 30여 명의 지구당 위원장들은 참여를 거부하고 탈당하였다. 박찬종 의원은 1991년 11월 '정치개혁협의회' 를 결성한 후,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가 주축이 된 '태평양시대위원회' 와 연대하여 '새한당' (가칭) 창당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김동길 교수가 통일국민당 참여를 선언하며 이탈하자 1992년 2월 중순 '신정치개혁당' 을 만들어 그 정당의 대표가 되었다. 김광일 의원은 통일국민당의 창당에 참여하였다.

2. 통일국민당 창당

1992년 1월 3일 우리나라 최대 재벌 중의 하나인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그룹경영에서 완전히 떠나 새로운 일을 하겠다” 며 정계진출 의사를 밝혔다. 정주영 회장은 이전에도 정계진출 의사를 내비쳤었는데 이날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둔 정가를 긴장시켰다.

정계진출을 선언한 정주영 회장은 '통일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를 결성하여 창당발



▶ 통일국민당 창당대회 (1992년 2월 8일)

기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창당작업을 시작하였다. 정주영 회장은 1992년 1월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진빌딩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국민당(가칭)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창당준비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창당준비위원장에 선출된 정주영 회장은 유능한 인물 영입 등 세 확장에 나섰다. 영입대상에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등에서 국회의원선거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인들과 제5공화국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992년 2월 7일에는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가 중심이 되어 창당작업을 하고 있던 '새한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²⁶⁾을 이루어 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주영 회장이 정계진출을 선언한 지 1개월 만인 1992년 2월 8일,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대의원 700여 명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국민당 중앙당창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정주영 회장이 대표최고위원으로, 김동길 교수와 김광일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양순직·박한상 전 의원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었고, 사무총장은 이용준, 대변인은 이인원이 맡았다. 이외에도 통일국민당에 참여한 인

26) 새한당창당준비위원회 전원이 통합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유제연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는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신정치개혁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사로는 정주영 대표의 아들인 정몽준 의원을 비롯하여 봉두완·홍성우 전 의원 등이 있었다.

통일국민당은 이날 창당선언문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방식을 일소하고 정당의 사당화·지역당화를 배제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실천하겠다”, “경제발전과 통일의 당으로서 서민층과 중간계층을 대변하겠다”고 밝히며 중도개혁 국민정당임을 표방하였다. 강령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민족통일, 세계평화에의 기여, 경제정의 실현, 복지사회 구현 등을 내걸었다. 통일국민당은 창당대회를 마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여 1992년 2월 10일 수리됨으로써 법적인 정당성립 절차도 마쳤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양당구도로 흘러가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정국은 3자 경쟁구도로 전환되었다.

3.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한 해에 4번의 선거²⁷⁾를 치르고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1~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시기는 제14대 국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90년 12월 31일 여야합의에 의해 개정된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부칙에 1992년 6월 30일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1년 6월 30일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날 노태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992년 1월 12일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가 연두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장 체제로 치름으로써 관권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연기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법에 규정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노태우 대통령을 비난하였다.

27) 4번의 선거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제14대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자치구청장선거'를 말한다.



▶ 노태우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1992년 1월 10일)

반면에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4대 선거를 그대로 치를 경우 물가상승과 약 80만 명의 제조업 인력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며 노태우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방침을 지지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위반’ 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현행법에 1992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4대 국회가 6월 이전에 구성되기 때문에 제14대 국회가 이를 개정하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통일국민당, 민중당, 재야단체 등은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1992년 1월 17일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하겠다고 한 것은 헌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 문제를 놓고 침예하게 대립하면서 제14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 지 125일이 지나도록 국회 원(院)구성도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러한 대결국면은 1992년 12월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이어졌다(구체적인 내용은 “제6장 제

14대 대통령선거”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준비 중이거나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과 통일국민당 및 일부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한 대통령의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992년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 지난 1994년 8월 31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이를 각하하였다(92헌마174). 이때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지방자치법」(법률 제4741호, 1994. 3. 16)을 개정한 후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계속 중에 법령제도의 변동이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지연하고 본안판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였다.

제2절

선거제도

1991년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끝나자 정가의 관심은 1992년 3월에 실시예정인 제14대 국회의원선거로 옮겨갔다. 여야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국회의원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개정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쟁점사항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한때 여당의 단독처리 일보직전 상태까지 갔으나 조금씩 양보하여 여야합의로 처리하였다.

1. 선거법 개정경위

가. 개정경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논의는 1991년 10월 18일 ‘6인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도 여야가 선거법개정 논의는 하였었다.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끝나고 보름 정도가 지난 1991년 7월 5일 민주자유당과 신민주연합당(이때에는 신민주연합당이 민주당으로 합당하기 전이었음)의 사무총장이 회담을 갖고 10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고, 7월 16일에는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가 만나 선거공영제 강화와 정치자금 공정배분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바로 ‘6인 실무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였다.

‘6인 실무소위원회’는 민주자유당 3인(장경우·강신옥·윤재기 의원)과 민주당 3인(박상천·이철·정균환 의원) 등 6인으로 구성되었다. ‘6인 실무소위원회’는 자기 당이 마련한 선거법개정안을 토대로 협상을 시작하였다. 7차례 회의를 통해 20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 국회의원선거법 등의 개정을 위한 여야 6인소위협상(1991년 10월 21일)

하였으나 선거구 증설, 합동연설회 존폐, 정당연설회 부활, 선거권 연령인하 등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6인 실무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양당 사무총장이 만나 막후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급기야 민주자유당은 11월 22일 선거법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민주당은 실력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12월 9일 민주자유당은 단독으로 선거법개정안을 국회 내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대치상황 속에서도 양당이 협상을 계속한 결과 민주자유당이 단독상정 방침을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양당은 1991년 12월 13일과 14일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 등의 당 3역 회담을 잇달아 열고 막바지 절충에 나섰다. 이 회담에서 민주자유당이 정당연설회를 양보하는 대신 민주당은 선거구 증설 문제를 양보함으로써 쟁점사항을 타결하였다.

여야는 합의된 선거법개정안을 1991년 12월 16일 국회의원 279명의 공동발의로 국회 내무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 5인으로 ‘정치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심사한 다음 일부내용을 수정²⁸⁾하여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선거법

28)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은 “국회의원이 귀향보고회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는 것과 “선거법의 공소시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1991년 12월 17일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고, 12월 31일 법률 제4462호로 공포되어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될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의 선거법 개정협상과는 별도로 1991년 8월 30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의견을 제출한 이유는 그동안의 선거관리 경험을 토대로 선거의 공정성 보장장치를 강화하고,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 중에는 후보자 초청토론회 실시, 방송연설 및 신문광고 허용, 개인연설회 허용 등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었다.

나. 선거법개정 주요쟁점

여야가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 번째 쟁점은 선거구 증설문제로 여야는 서로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에서 선거구를 늘리려고 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선거구 증설기준으로 기존의 인구상한선 35만 명을 30만 명으로 낮추자고 제안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21개 선거구가 증설되는데, 영남지역에서 10개가 증설되는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광주 북구 1개만 증설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도시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7 대 1까지 벌어져²⁹⁾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구상한선 30만 명을 기준으로 분구하는 안에 민주당이 반대하자 민주자유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인구기준인 35만 명을 넘거나 행정구역이 신설된 서울 구로구와 부산 강서구 등 10개 선거구를 증설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복합선거구인 무주군·장수군선거구 등 호남지역과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5개 선거구를 추가하여 총 15개 선거구를 증설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최소선거구인 전북 옥구군의 인구수 7만 2,000명을 넘어야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결국 민주당이 호남지역 선거

29) 당시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도봉구갑선거구는 514,000명이었고, 인구가 가장 적은 전북 옥구군선거구는 71,000명으로 최대 편차가 7 대 1을 넘는 상태였다. 따라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때의 기준인 4 대 1과 큰 차이가 있었다.

구 추가 증설문제를 양보하여 전남 화순군·곡성군선거구와 구례군·승주군선거구의 2개 선거구를 ‘화순군선거구’, ‘승주군선거구’, ‘곡성군·구례군선거구’의 3개로 분구하고, 경기도 수원시갑선거구와 부천시 중구선거구 등 13개 선거구를 증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합동연설회의 존폐와 정당연설회의 부활문제였다. 민주자유당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만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동연설회 폐지에 반대하고,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폐지된 정당연설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정당연설회의 부활은 무소속후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된다고 반대하였다. 양당의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선거공영제 원칙 하에 ‘돈은 묶고 입은 풀어주는 선거’를 지향하며 각종 연설회를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 반면에 민주자유당은 선거의 과열이 우려되고 선거공영비용이 국고에서 지출된다고 선거운동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당은 합동연설회 유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정당연설회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민주자유당이 1991년 12월 9일 정당연설회를 배제한 선거법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협상과정에서 이를 양보하여 결국 정당연설회를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세 번째 쟁점은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에 관한 문제였다. 민주자유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종전방식을 유지하되, 군소정당 배려 차원에서 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민주당은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에게도 투표하는 정당투표제, 즉 ‘1인 2표제’를 도입하여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하자고 주장하였다. 양당은 협상과정에서 정당투표제는 채택하지 않되 기존 제1당에게 50% 의석을 배분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네 번째 쟁점은 선거권연령 인하 문제였다. 민주자유당은 기존 20세를 고수하였고, 민주당은 18세로 낮추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일본만 20세이고 대부분 서구 국가들은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18세의 상당수가 고교생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교육 등 사회전반의 제도와 관행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였다. 선거권연령 인하는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협상중반부터는 크게 쟁점화되지 못하였고, 민주당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 기존 20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간의 차등을 완화하였으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 중심으로 주요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구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와 전국선거구(이하 “전국구”라고 한다)로 구분하였다(법³⁰⁾ 제13조). 1개 지역구에서 선출할 인원도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법 15조).

지역구수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224개에서 13개를 증설하여 237개로 하였다. 이 지역구수는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 14회의 국회의원선거 중 가장 많은 것이었다. 증설된 지역구는 서울 도봉구병, 구로구병, 대구 동구을, 수성구을, 달서구을, 광주 북구을, 경기 시흥시·군포시, 수원 권선구을, 부천 중구을, 경남 창원시을, 부산 강서구, 대전 대덕구, 전남 곡성군·구례군 선거구등이었다.

의원정수는 299명으로 정수화하였다(법 제14조).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지역구의원 정수의 증감에 비례하여 전국구의원 정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정 선거법에서는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299명으로 명문화한 것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비해 지역구의원 정수는 224명에서 13명이 증가한 237명이 되었고, 반면 전국구의원 정수는 75명에서 13명이 줄어든 62명이 되었다.

30) 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함은 「국회의원선거법」(1991. 12. 31. 법률 제4462호)을 말함

〈표 5-1〉 역대 국회의원선거 의원정수 및 선거구수 변천상황

선거별	선거일	의원정수			지역 선거구수	1지역구당 선출인원
		계	지역구	전국구		
제헌 국회의원선거	1948. 5. 10	200	200		200	1인
제2대 국회의원선거	1950. 5. 30	210	210		210	„
제3대 국회의원선거	1954. 5. 20	203	203		203	„
제4대 국회의원선거	1958. 5. 2	233	233		233	„
제5대 국회의원선거	1960. 7. 29	233	233		233	„
제6대 국회의원선거	1963. 11. 26	175	131	44	131	„
제7대 국회의원선거	1967. 6. 8	175	131	44	131	„
제8대 국회의원선거	1971. 5. 25	204	153	51	153	„
제9대 국회의원선거	1973. 2. 27	219	146	73	73	2인
제10대 국회의원선거	1978. 12. 12	231	154	77	77	„
제11대 국회의원선거	1981. 3. 25	276	184	92	92	„
제12대 국회의원선거	1985. 2. 12	276	184	92	92	„
제13대 국회의원선거	1988. 4. 26	299	224	75	224	1인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992. 3. 24	299	237	62	237	„

※ 제9대와 제10대 국회의원선거의 전국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 의원임.

나. 선거인명부

구·시·읍·면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라도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때까지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인명부 누락자구제 제도’를 도입하였다(법 제23조의2).

다. 후보자 등록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2일 단축하였다(법 제27조). 선거운동기간이 종전 18일에서 17일로 1일 단축됨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도 이와 연계

시켜 단축한 것이었다.

기탁금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정당추천후보자는 1,000만 원, 무소속후보자는 2,000만 원으로 차등을 두었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정당·무소속 구분 없이 모두 1,000만 원으로 통일하였다(법 제33조). 그 이유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헌법재판소가 정당 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간의 기탁금에 차등을 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1989. 9. 8, 사건번호 88헌가6,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제2절 선거제도” 참조).

기탁금의 반환요건도 종전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득표’ 한 경우에서 ‘유효 투표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득표’ 한 경우로 개정하여 그 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법 제34조).

라.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18일에서 17일로 1일 단축하였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선거운동원 수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40인과 20인에서 각각 20인과 5인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법 제45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의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다(법 제39조 및 제41조).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폐지되었던 정당연설회를 20년 만에 부활시켜 선거구당 1회(하나의 선거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시·군마다 각 1회)씩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 제55조의3), 대통령선거에서만 허용하였던 경력방송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할 수 있게(법 제55조의2)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였다. 또한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74조).

소형인쇄물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수량과 종수를 제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지역구후보자는 4종,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마다 2종으로 그 종수를 제한하고, 배부수량도 종별로 지역구 안의 유권자 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법 56조).

한편 정당에게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소형인쇄물을 배부하여 소속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소속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1992년 2월 25일, 서울 종로구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준비를 하던 정인봉 변호사 등 3인이 이러한 제도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1992년 3월 13일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라는 조건부 위헌결정(1992. 3. 13, 92헌마37)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권자들에게도 소형 인쇄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마. 선거비용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선거공영제를 다소 확대하였다. 즉,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득표한 때에는 선전벽보의 작성·첩부·철거비용,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법 제58조). 선거운동을 자원봉사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 선거법에서는 실비만을 보상하도록 하였다(법 제98조).

바. 투표 및 개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정당추천후보자는 2인,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모두 2인씩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표참관인도 정당추천후보자는 8인, 무소속후보자는 4인씩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모두 8인씩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간의 차별을 없앴다(법 제112조 및 제126조).

부재자투표함의 개함을 종전에는 일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하였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분리하여 먼저 개표하도록 하였다(법 제124조). 이는 부재자투표를 둘러싼 부정시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사. 당선인 결정

당해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변함이 없었다. 다만,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을 바꾸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선거결과 제1당의 지역구의석수가 지역구의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전국구의석총수의 2분의 1을 우선적으로 제1당에게 배분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다. 다만,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인 정당이 있는 경우 그 정당에게 전국구 1석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여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법 제133조).

아. 기타사항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약속받은 선거인(후보자와 그 가족 및 선거운동원 등은 제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다(법 제183조의2).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종전 선거일 후 3월(범인 도피 시 1년)이던 것을 선거일 후 6월(범인 도피 시 3년)로 연장하여 처벌 가능성을 더 높였다(법 제189조).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신속히 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당선된 자가 재판이 늦어지면서 국회의원직을 장기간 유지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5-2〉 국회의원선거법 주요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제13대 국회의원선거)	개정 후(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정수	299명(지역구 224명, 전국구 75명)	299명(지역구 237명, 전국구 62명)
기탁금	○정당추천후보자 : 1,000만 원 ○무소속후보자 : 2,000만 원	정당·무소속후보자 모두 1,000만 원
기탁금 반환요건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득표한 경우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1을 초과하여 득표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18일	17일
선거운동방법	5가지(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현수막, 소형인쇄물)	7가지(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현수막, 소형인쇄물, 정당연설회, 경력방송)
정당연설회	(규정 없음)	지역구당 1회(하나의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1회)
소형인쇄물 종수 및 수량	종수 및 수량 제한 없음	○종수 : 후보자용 4종, 정당용 2종 ○수량 : 지역구의 유권자수에 상당하는 매수
선거운동원 등의 수상·실비	수당 및 실비 지급	실비만 지급
투표참관인수	정당추천후보 2인, 무소속후보 1인	정당·무소속후보 구분 없이 모두 2인
개표참관인수	정당추천후보 8인, 무소속후보 4인	정당·무소속후보 구분 없이 모두 8인
전국구 의석배분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 ○다만, 제1당이 지역구에서 지역구의석총수의 50% 이상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당에게 전국구의석총수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 ○다만,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때에는 전국구의석 1석 우선 배분
당선무효 형량	징역, 금고 또는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징역, 금고 또는 15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거사범 공소시효	선거일 후 3월(범인 도피 시 1년)	선거일 후 6월(범인 도피 시 3년)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여야는 1991년 12월 3일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어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자 당을 제 14대 국회의원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후보자 공천작업을 시작하였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였고, 제1야당인 민주당도 신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공천과정에서 계파 간 지분안배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가. 민주자유당

1991년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정가의 관심이 다음해 3월에 치러질 제14대 국회의원선거로 옮겨가면서 민주자유당 내부에서는 연내 국회의원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보다 먼저 대통령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김영삼 대표위원을 지지하는 당내 인사들로 지칭되는 ‘민주계’ (이하 이 장에서 “민주계”라고 한다)는 “가시화된 대권주자 없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선거 전에 김영삼 대표위원을 대통령후보로 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3당 합당 전 민주정의당 소속 인사들로 지칭되는 ‘민정계’ (이하 이 장에서 “민정계”라고 한다)와 김종필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지칭되는 ‘공화계’ (이하 이 장에서 “공화계”라고 한다)는 이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91년 12월 20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의원선거 전에 대통령후보 가시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해 1992년 1월 7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국회의원선거 전에 차기 대통령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절정에 달

했다. 그러나 1992년 1월 9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이 만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당내 위상을 다소 격상시키는 대신 대통령후보는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전당대회에서 자유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갈등이 진정되었다.

민주자유당은 1992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신청을 받았다. 접수결과 전국 237개 지역구에서 비공개 신청자 26명을 포함한 총 719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약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경남 거창군선거구로 1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시·도별 경쟁률은 경북지역이 5 대 1로 가장 높았고, 전남지역이 1.6 대 1로 가장 낮았다.

민주자유당은 1992년 1월 27일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착수하였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김윤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자현 원내총무, 나용배 정책위의장, 최형우 정무1장관 등 당 4역과 서정화 김용채 김덕룡 이한동 심명보 이춘구 김용환 지연태 김용태 정순덕 의원과 임방현 전 의원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 동안의 심사를 거쳐 공천대상자를 선정하고, 1월 31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의 4자회담에서 이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종필 최고위원이 공화계에 불리하게 공천되었다며 한때 반발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자유당은 1992년 2월 1일 전국 237개 지역구의 공천자를 발표하였다. 민주자유당의 지역구 공천결과 특징으로는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의 3대 계파 간 지분안배로 인해 기존 지구당위원장이나 현역의원 교체율이 적었다는 것을 들 수 있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였기 때문에 계파 간 지분안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민주자유당의 지역구 공천결과 김종필 최고위원이 충남 부여군선거구에 공천을 받았고, 김윤환 사무총장은 경북 군위군·선산군선거구, 이자현 원내총무는 경기 평택군선거구, 박희태 대변인은 경남 남해군·하동군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서울에서 이종찬(종로구) 이세기(성동구갑) 이순재(중랑구갑) 김용채(노원구을) 서청원(동작구갑) 김수한(관악구을) 김덕룡(서초구을) 등이 공천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김형오(영도구) 박관용(동래구갑) 최형우(동래구을) 등이 공천을 받았다.

대구에서는 김복동(동구갑) 박준규(동구을) 문희갑(서구갑) 박철언(수성구갑) 강재섭(서구을), 인천에서는 서정화(중구·동구) 이승윤(북구을), 광주에서는 지대섭(북구갑), 대전에서

는 이인구(대덕구), 경기도에서는 이인제(안양시갑) 장경우(안산시·용진군) 이한동(연천군·포천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강원도에서는 한승수(춘천시) 김재순(철원군·화천군), 충북에서는 이춘구(제천시) 박준병(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남에서는 김용환(대천시·보령군) 유한열(금산군), 전북에서는 황인성(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남에서는 나창주(나주시·나주군) 조기상(함평군·영광군), 경북에서는 박세직(구미시) 금진호(영주시·영풍군) 구자춘(달성군·고령군) 유학성(예천군), 경남에서는 황낙주(창원시울) 심완구(울산시남구) 강삼재(마산시회원구) 등이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 관료출신으로 김만제 전 부총리(서울 강남구울), 이연택 전 총무처장관(전주시완산구), 강현욱 전 기획원차관(군산시), 김영일 전 청와대 사정수석(김해시·김해군), 임재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연기군), 서수종 전 안기부비서실장(경주시) 등이 공천을 받았다. 경제계 인사로는 김채겸 쌍용부회장(울산군), 김동권 쌍마섬유대표(의성군), 임광수 임광토건대표(청주시울), 강신조 동양투자신탁대표(영양군·봉화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전국구 공천지는 1992년 3월 5일 발표하였다. 공천지는 모두 54명이었는데 당선 안정권이 라고 할 수 있는 30번까지는 주로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전국구 후보의 1번과 2번에 김영삼 대표와 박태준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노재봉(4번) 권익현(5번) 이만섭(6번) 이원조(9번) 최병렬(10번) 서상목(21번) 이명박(25번) 강인섭(27번) 등이 공천을 받았다. 직능대표로는 여성계의 강춘자 예총연맹회장(14번)과 주양자 의보공단이사장(30번)이 공천을 받았다.

민주자유당은 공천탈락자들의 반발과 탈당으로 공천후유증을 겪기도 하였다. 공천심사가 진행 중이던 1992년 1월말부터 권정달과 이정택 등 구 민주정의당 소속 인사들 10여 명이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무소속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반발하였다. 이러한 반발기류는 충북과 경남 지역의 현역의원들에게도 번져 현역의원 11명을 비롯하여 공천에서 탈락한 30여 명이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이나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여 선거에 출마하였다.

나. 민주당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으로 합당한 후 1개월 정도가 지난 1991년 10월 11일 민주당은 신문광고 등을 내고 지구당조직책 희망자를 공모하였다. 당시 「정당법」에 중앙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지구당도 개편대회를 개최하여 번

경등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구당조직책을 모집한 것이었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조직책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바로 공천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1992년 10월 25일까지 조직책을 공모한 결과 224개 지구당에 698명이 지원하여 평균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지역(5대 1)과 서울지역(3.4대 1)은 지원자가 많은 반면 취약지역인 영남(2.2대 1)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민주당은 1991년 11월 12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책 선정작업을 시작하였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김원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신민계(합당 전 신민주연합당 소속 인사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유준상 권노갑 이길재 김말룡 등 4명과, 민주계(합당 전 '민주당' 소속 인사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김정길 이철 노무현 김성식 유인태(민주계)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민주당의 조직책 선정작업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신민계와 민주계가 조직책의 임명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1991년 11월 18일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신민계는 지구당 법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역의원 중심으로 조직책을 발표하고 공천자 결정은 1992년 1월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단계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계는 '조직책이 바로 공천자'라는 원칙 하에 일괄적으로 공천자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계파 간 지분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논의를 계속한 끝에 조직책을 신속히 인선하고 이를 공천과 연계시키는 절충안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조직책 선정이 지연되고 민주계가 반발하면서 다시 갈등양상이 나타났다. 12월 초순에는 현역의원 탈락자 명단이 적힌 괴문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민주계의 안대로 조직책과 공천자를 일괄 발표하기로 하고, 대신 조직책 선정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고 공천심사에 들어갔다.

공천심사를 마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992년 2월 1일 178개 선거구의 공천자를 발표하였다. 당초에는 201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계파 간 지분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178명만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몇 차례로 나누어 공천자를 더 발표하여 2월말까지 총 225개 지역구의 공천자를 발표하였다.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특징으로는 민주자유당과 같이 계파 간 지분안배가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기존 정치인들의 교체율이 적었다는 것을 들 수

있었다.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결과 김원기 사무총장은 전북 정주시·정읍군선거구에, 김정길 원내총무는 부산 영도구선거구에, 노무현 대변인은 부산 동구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지역별 주요 공천자 내역을 보면 서울에서 정대철(중구) 이철(성북구갑) 조순형(도봉구병) 김상현(서대문갑) 김민석(영등포구을) 한광옥(관악구갑) 홍사덕(강남구을) 이부영(강동구갑) 등이 공천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안경률(북구갑) 김영백(사하구), 대구에서는 이강철(중구) 백승홍(서구갑), 인천에서는 명화섭(남구갑), 광주에서는 신기하(동구) 조홍규(광산구), 대전에서는 송천영(동구을) 김원웅(대덕구) 등이 공천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문희상(의정부시) 안동선(부천시중구갑) 원혜영(부천시 중구을) 제정구(시흥시·군포시) 이규택(여주군), 강원 지역에서는 최옥철(명주군·양양군), 충북 지역에서는 정기호(청주시을) 허탁(진천군·음성군), 충남 지역에서는 홍문표(청양군·홍성군) 한영수(서산시·서산군·태안군)등이 공천을 받았다. 전북에서는 장영달(전주시 완산구) 김태식(완주군) 정균환(고창군) 최락도(김제시·김제군), 전남에서는 허경만(순천시) 박상천(고흥군) 김봉호(해남군·진도군) 김인곤(함평군·영광군) 권노갑(목포시) 한화갑(신안군), 경북에서는 김호길(경주군), 경남에서는 김재천(진주시) 권기술(울산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전국구 공천자는 1992년 3월 10일 발표하였다. 공천자는 모두 50명이었는데 당선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20번째 중반까지는 주로 군 출신, 재력가, 직능단체의 대표자 등이 들어있었다. 전국구 1번은 김대중 대표, 2번은 이기택 대표, 3번은 영입인사인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 4번은 장재식 전 주택은행장이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도 6번 나병선(예비역 장성), 8번 김옥천(중소기업인), 11번 도종남(중소기업인), 17번 박은태(미주산업 회장) 등이 공천을 받았다. 미주지역 한인회 총연합회장인 박지원도 21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은 공천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개적으로 전국구후보자 당선권의 3분의 1 정도를 공천헌금 납부자로 공천하겠다고 밝혔는데, 매관매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야당의 전국구 공천사상 유례없이 외부 영입자를 3분의 1이나 공천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민주당 역시 공천탈락자들의 탈당으로 심한 공천후유증을 겪었다. 민주당 이찬구 의원이 1992년 1월 하순 탈당한 것을 시작으로 조운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손주항 정웅 박형오 의

원 등이 공천결과에 반발하여 탈당하였다. 탈당한 의원들은 민주당 공천을 측근정치와 보복 정치의 결과라고 비난하고 김대중 대표의 퇴진과 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2월초에는 원외 지구당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이 집단으로 탈당하였으며, 2월 중반까지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하였다. 탈당자들은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에 합류하였으며, 이형배 의원 등 일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다. 통일국민당

1992년 1월 1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친 통일국민당은 12일부터 공모를 통해 지역구 조직책을 모집하는 한편, 정주영 창당준비위원장이 외부인사 영입에 나섰다. 통일국민당은 당시 창당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조직책에 선정되는 것은 곧 공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통일국민당이 1월 중반까지 조직책을 모집한 결과 759명이 신청해 평균 3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자들의 면면으로는 정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를 느끼고 신인을 대체할 기존 정치인에 대한 영입에 나섰다. 통일국민당은 1992년 2월 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영입작업을 계속하였다. 영입대상은 주로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었다. 이 같은 영입 노력에 따라 2월 초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득수 의원 등 4명을, 2월 12일에는 민주당 조운형 의원을 영입하였다. 이후에도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계속 영입하였다.

통일국민당은 1992년 2월 20일 1차적으로 122명의 공천자를 발표한 데 이어서 몇 차례로 나누어 총 189명의 공천자를 발표하였다. 통일국민당은 신생정당으로서 양적으로는 많은 후보자를 공천하였지만, 새로운 정치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의 낙천자들을 많이 공천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통일국민당의 공천결과 김동길 최고위원은 서울 강남구갑선거구에, 김광일 최고위원은 부산 중구선거구에, 홍성우 당무위원은 서울 노원구을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봉두원(용산구) 이필선(성북구을) 박한상(강서구을) 김한길(동작구을), 부산에서 이영근(남구갑), 대구에서는 윤영탁(수정구을), 인천에서는 이원복(남동구), 광주에서는 윤재걸(동구), 대전에서는 김태룡(서구·유성구) 등이 공천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박왕식(수원시 권선구을) 목요상(의정부시) 정주일(예명 이주일, 구리시), 강원도에서는 손승덕(춘천시), 충

북에서는 정우택(진천군·음성군), 충남에서는 송영진(당진군), 전북에서는 송주인(완주군), 전남에서는 이진연(함평군·영광군), 경북에서는 임진출(경주군) 이학원(울진군), 경남에서는 정몽준(울산시 동구) 등이 공천을 받았다.

전국구 공천자는 1992년 3월 10일 발표하였다. 공천자는 모두 32명이었는데 1번에는 문창모 전 세브란스병원장, 2번에 양순직 전 의원, 3번은 정주영 대표, 4번은 조운형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도 텔런트 최영한(예명 최불암)이 5번, 이견영 전 3군사령관이 6번, 텔런트 강부자가 8번에 공천을 받았다.

라. 기타 정당

앞의 3개 정당 외에도 신정치개혁당, 민중당, 공명민주당 등 3개 정당이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이들 정당은 조직력과 지지기반 등이 미약하여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신정치개혁당은 박찬중 의원이 중심이 되어 1992년 2월 25일 창당된 정당이었다. 박찬중 의원은 1991년 9월 민주당이 신민주연합당과 합당할 때 참여를 거부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후 ‘정치개혁협의회’를 결성하였고, 한때 김동길 전 연세대학교수가 중심이 되어 창당준비를 하던 ‘새한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와 연대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김동길 교수가 통일국민당의 창당에 참여하자 새한당창당준비위원회 잔류인사들과 함께 ‘양김구도를 타파하고 재벌당을 배제한다’는 구호아래 신정치개혁당을 만들었다. 신정치개혁당은 지역구후보자 111명과 전국구후보자 14명을 공천하였다. 신정치개혁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는 지역구에 김동주(울산구), 김옥선(성동구갑), 박찬중(서초구갑), 이신범(강남구을), 김기수(전남 함평군·영광군), 이규정(울산시중구) 등이 있었다. 전국구에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던 송현섭(1번)·김봉욱(2번)·정웅(3번) 의원 등이 있었다.

민중당은 재야의 이부영 이재오 장기표 오세철 등이 중심이 되어 1990년 11월 10일 ‘민중의 힘, 민중의 희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창당한 정당으로,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에 43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여 1명을 당선시켰다. 민중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범민주 단일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한때 민주당과 연합공천을 모색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민중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52명, 전국구 4명 등 총 56명의 후보

자를 공천하였다. 민중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는 지역구에 이재오(은평구을) 이우재(구로구을) 장기표(동작구갑) 등이 있었고, 전국구에는 김락중(1번) 김문수(3번) 등이 있었다.

공명민주당은 고태만 등이 중심이 되어 “진보적인 민주정부 수립과 선진정치문화 창달”의 기치를 내걸고 1990년 8월 3일 창당한 정당으로,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에 3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나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공명민주당은 “기성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갈아야 한다”는 선거구호를 내세우고 지역구에서만 12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공명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는 정재복(동대문구갑), 문용한(부산 금정구) 등이 있었다.

2. 후보자 등록

후보자등록기간은 1992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이었다. 이 기간 중에 지역구후보자는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구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지역구후보자 1,052명, 전국구후보자 154명 등 총 1,206명이 등록하였다.

가. 후보자 등록 상황

1) 지역구후보자

지역구후보자는 237개 지역구에 총 1,052명이 등록하여 평균경쟁률 4.4 대 1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4.7 대 1보다 낮았다. 지역구별로는 경기도 광명시선거구에 9명이 등록하여 9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여주군선거구, 구미시선거구, 성주군·칠곡군선거구, 북제주군선거구 등 4곳은 단 2명만이 등록하여 2 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1,052명의 지역구후보자 중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826명이었고, 나머지 226명은 무소속후보자였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민중당 공명민주당 등 총 6개 정당이었다. 지역구후보자를 가장 많이 추천한 정당은 민주자유당으로 전 지역구에 1명씩 총 237명을 추천하였고, 그 다음은 민주당(225명), 통일국민당(189명), 신정치개혁당(111명), 민중당(52명), 공명민주당(12명) 순이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5-3>과 같다.

〈표 5-3〉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후보자 등록 상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민중당	공명민주당	무소속
합계	1,206	291	275	221	125	56	12	226
전국구	154	54	50	32	14	4	0	-
지역구	1,052	237	225	189	111	52	12	226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14개 정당이 참여하였는데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6개 정당만이 참여하였다. 이는 정당들이 다수 합당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하고, 1991년에는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합당하여 선거에 참여할 정당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의석을 얻은 정당이 5개에 불과해 군소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진 탓도 있었다.

무소속후보자는 226명으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111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다. 무소속후보자가 늘어난 것은 여야의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대거 출마한 데다 창당을 추진하던 정치인들이 창당을 하지 못해 다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무소속후보자의 기탁금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화된 것도 무소속후보자가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후보자등록기간이 6일에서 4일로 줄어들어 무소속후보자들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중에는 정인봉(종로구), 황산성(용산구), 서석재(부산 서구), 정호용(대구 서구갑), 강창희(대전 중구), 김상구(상주시·상주군), 허화평(포항시), 이강두(경남 거창군), 하순봉(경남 진주시), 현경대(제주시), 양정규(북제주군) 등이 있었다.

지역구후보자들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 전체 62.9%인 6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 39명, 변호사 38명, 교육자 36명, 농업종사자 33명, 건설업 20명, 회사원 17명, 의사 및 약사 16명 등의 순이었고 기타 191명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현직의원이 166명에서 215명으로 40여 명 늘어났다.



▶ 후보자 등록 장면(무소속후보자 기호추첨)

연령별 현황은 50대가 46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29명, 30대 147명, 60대 이상 78명, 20대 34명 등의 순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는 40대가 471명으로 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29명으로 142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50대 이상 장년층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398명보다 144명이 증가한 542명이었다. 이는 기성 정치인들의 교체비율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학력별 현황은 대졸 495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대학원 수료 이상 358명(34.0%), 고졸 79명(7.5%) 등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비교하면 대졸 이상은 96명이 줄어든 반면, 고졸은 54명이 늘어났다. 또한 초등졸이 14명, 독학이 12명으로 각각 10명, 8명 늘어났다.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후보자가 1,033명이고, 여성후보자는 서울지역 10명을 포함하여 모두 19명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13명보다는 6명이 늘어났으나 여성후보자 비율은 1.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2) 전국구후보자

전국구후보자는 5개 정당에서 총 154명을 등록하였다. 전국구의석이 62석이므로 경쟁률은 2.5 대 1이었고,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경쟁률 2.3 대 1보다 높았다. 정당별로는 민주자유

당이 가장 많은 54명을 추천하였고, 그 다음은 민주당 50명, 통일국민당 32명, 신정치개혁당 14명, 민중당 4명 순이었다.

전국구 후보자의 직업은 정치인 111명, 교육자 6명, 공업 5명 등이었다. 학력은 대졸(79명)과 대학원 수료 이상(64명)이 전체인원의 92.9%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50대 64명, 60대 이상 38명, 40대 44명, 30대 8명으로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년층이 많았다. 성별은 남자 138명, 여자 16명이었다.

나. 등록무효 및 후보 사퇴

후보등록 후 사퇴 또는 등록무효된 후보자는 총 5명(사퇴 2명, 등록무효 3명)으로 모두 지역구 후보자들이었다. 이들의 사퇴 및 등록무효로 선거일 현재 지역구 후보자는 당초 1,052명에서 1,047명으로 줄어들었다.

사퇴한 후보자는 전남 나주시·나주군선거구의 무소속 김강곤 후보와 김해시·김해군선거구의 무소속 이학봉 후보였다. 김강곤 후보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장곤 후보와 같은 문중 출신으로 1992년 3월 20일 민주당 정당연설회장에서 민주당의 결속을 위해 사퇴한다고 밝히고 다음날 사퇴하였다. 이학봉 후보는 5공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자 3월 10일 사퇴하였다. 이날이 후보자등록 마감일이었는데 대신에 그의 배우자 이설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등록무효된 후보자는 서울 동대문구을선거구 무소속 고달준 후보, 부산 북구을선거구 신정치개혁당 백한기 후보, 경남 창원시을선거구 민주당 이학용 후보였다. 고달준 후보는 “새행원”이라는 잡지의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밝혀져 언론인 등의 출마를 금지하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되었다. 백한기 후보는 종전에 받은 형이 실효되지 않았고, 이학용 후보는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나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되었다.

3. 기탁금

후보등록신청 시 내는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 구분 없이 모두 1,000만

원이었다. 이 기준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총액은 120억 6,000만 원(1,206명 × 1,000만 원)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정당추천후보자는 1,000만 원, 무소속후보자는 2,000만 원으로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간에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1989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탁금에 차등을 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모두 1,000만 원으로 통일하였다(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3절. 3. 기탁금” 참조). 무소속후보자 기탁금이 1,000만 원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총액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133억 원에 비해 12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때, 선거결과 지역구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때,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 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사본 작성비용 등의 공영비용을 공제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후보자의 기탁금은 공영비용을 공제한 후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끝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는 777명의 후보자(전체 후보자의 64.4%)는 기탁금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429명의 후보자(전체 후보자의 35.6%)는 반환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되었다.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4>와 같다.

<표 5-4>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 귀속상황

(단위 : 천원)

구분	기탁금액	공제 금액					반환액	귀속액
		합계	선거인명부 사본 작성비용	선전벽보 비용	선거공보 비용	합동연설회 비용		
합계	12,060,000 (1,206명)	1,456,033	154,470	337,753	603,676	360,134	7,663,033 (777명)	2,950,108 (429명)
지역구	10,520,000 (1,052명)	1,456,033	154,470	337,753	603,676	360,134	6,303,033 (641명)	2,768,973 (411명)
전국구	1,540,000 (154명)	-	-	-	-	-	1,360,000 (136명)	181,135 (18명)

※ 국고 귀속 금액에는 은행이자 917만 4,000원이 포함되었음.

제4절 선거운동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출범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이고, 또한 제14대 대통령선거를 9개월 앞두고 치러져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선거운동도 그만큼 치열하였다.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각 정당은 자신들의 득표에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선거전략을 사용하였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안정론을, 제1야당인 민주당은 견제론을, 통일국민당은 경제를 아는 정당임을 내세우는 것을 주요전략으로 사용하였다. 선거공약도 많이 내놓았으나 시행 불가능한 것도 다소 있었다.

가.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1992년 2월 중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와 김윤환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당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1) 선거전략

민주자유당의 선거전략은 ‘안정론’ 과 ‘지역발전 공약’, ‘노태우 정부의 치적’ 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첫째, ‘안정론’ 은 역대 선거에서도 매년 여당이 내세우는 선거전략이었다. 이전 선거에서는 주로 정치문제를 놓고 안정론을 내세웠으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경제문제

와 연계시키며 안정론을 폈다. 당시 경제가 어렵기도 하였지만 유권자들이 정치보다 경제에 더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표위원 등의 당 지도부는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최대 당면과제인 경제 재도약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정치안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 불안은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의석확보가 필요하다”며 안정론을 역설하였다.

둘째, ‘지역발전 공약’도 역대 선거에서 여당 후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선거전략이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당 후보자들은 자신이 당선되어야 지역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런 전략 하에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등에 주로 지역발전과 관련된 선전문구를 게재하였다. 김종필 최고위원(부여군)은 “시작된 부여발전 완성시킬 김종필”, 김윤환 사무총장(군위군·선산군)은 “고향의 명예를, 고장의 발전을”, 이자현 원내총무(경기도 평택군)는 “평택항 건설하여 군을 직할시로” 등의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외에도 “지역발전 손해났다. 다시뽑자 이세기”(성동구갑 이세기), “동대문의 밝은 미래 김영구와 함께 열자”(동대문구를 김영구) 등의 문구를 게재한 후보자도 있었다.

또한 “북구의 큰 일꾼”(대구 북구 김용태)과 같이 ‘지역일꾼’이라는 문구를 넣어 지역개발과 연계시키는 후보자도 있었다. 중앙당에서 만든 소형인쇄물에도 “다시 뛰는 한국인 일하는 민자당”이라는 문구를 부각시켜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였다.

셋째, ‘노태우 정부의 치적’과 관련해서는 민주화 성취, 주택 200만 호 건설, 북방외교 등의 성과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특히 중앙당에서 작성한 소형인쇄물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지도를 이어 붙이는 그림에다가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북방외교의 실적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민주자유당은 ‘계파별 득표분담제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민주계 김영삼 대표위원은 자신의 출신지역인 부산·경남을, 공화계 김종필 최고위원은 자신의 출신지인 충청권을, 민정계의 박태준 최고위원은 대구·경북을 맡아 그 지역의 정당연설회 등에 참여하여 민주자유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득표활동을 펼쳤다.

2) 선거공약

민주자유당은 1992년 2월 18일 ‘다시 뛰는 한민족, 일하는 민주자유당’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7대 주제, 50개 분야, 180개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정치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는 ‘성숙된 민주정치문화의 정착’ 을 주제로 깨끗하고 돈 안 쓰는 선거 정착, 지역 과당주의 타파를 통한 선거문화의 선진화, 당내 민주화 구현,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의 제도화를 통한 정당민주화 촉진, 국회기능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합리적 조정, 지방의회 위상 강화, 지방재정기반 확충, 광역행정체제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지방화 시대 개막 등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실천, ‘행정규제완화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행정 규제 완화,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 등을 통한 공직사회 안정 도모 등도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는 ‘선진경제의 조기 실현’ 을 주제로 연평균 7% 경제성장률 유지, 1996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달성, 물가 5% 내 유지, 국제수지 흑자 회복을 통한 경제안정기반 구축, 규제완화 등을 통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등을 내놓았다. 또한 금융실명제 단계적 실시,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과 지가 안정, 2001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 중소기업 적극 육성, 경제력 집중 완화, 금융자유화 추진, 세계개편과 세정개혁을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 지역 간 균형개발 등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농어촌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는 ‘젊고 활기찬 농어촌 건설’ 을 주제로 생산기반 정비, 새만금간척사업 본격개발 등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수입개방 압력 적극 대처, 정예농어업 인력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 제고’ 를 주제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조기 달성 등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한 주택난 해결, 상수원 보호대책 등을 통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 노력,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 확충, 의료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술교육체제 확립과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사회에 맞는 교육체제 개편 등을 내놓았다. 또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갈등 해소’ 를 주제로 완벽한 민생치안 태세의 확립, 인권보장, 여성복지 정책의 강화, 민주적이고 성숙된 노사관계의 정착 등도 선

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통일 및 외교관계에 관한 공약으로는 ‘다가오는 통일의 착실한 기반 구축’을 주제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통일기반 구축,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평화시’ 건설,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한 군사력의 단계적 균형 감축, 향토예비군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을 주제로 남북 군사관계 개선과 우루과이라운드(UR) 등 세계경제질서 대처, 자주의교 전개 등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나. 민주당

민주당은 1992년 2월 8일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월 28일에는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당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공천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체제 전환도 다소 늦어졌다.

1) 선거전략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거대여당 견제론’과 ‘3당 합당의 부당성’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첫째, ‘거대여당 견제론’은 선거 때마다 야당이 사용하는 선거전략이었다. 하지만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1990년 3당 합당(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참조)으로 개헌가능선인 3분의 2를 넘는 원내의석을 보유한 민주자유당을 상대하기에는 거대여당 견제론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등은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노태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거대여당이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후보자들도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에 “일당 독주 막아내자”(대구 북구 정병철), “지금이야말로 거대 여당의 횡포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합니다”(성동구갑 강금식) 등의 문구를 게재하였다. 중앙당이 발행한 소형인쇄물에도 “여당이 너무 커지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야당도 힘을 가져야 안정이 이루어집니다”라는 문구를 크게 부각시켜 게재하였다. 또한 “견제세력이 강해야 물가도 안정됩니다”라는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둘째, ‘3당 합당의 부당성’을 내세우는 것은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 때에 민주당이 이미 사용했던 선거전략으로, 그때에는 선거결과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하지

만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3당 합당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이고, 더구나 합당을 주도했던 3명 중 2명(김영삼 대표위원, 김종필 최고위원)이 직접 선거에 출마하였기 때문에 이 전략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전략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9개월 앞두고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였기 때문에 민주자유당의 대권주자로 부각된 김영삼 대표위원을 3당 합당의 부당성과 연결시켜 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민주당은 3당 합당을 유권자의 선택을 거스른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3당 합당 이후 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며 그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3당 합당 이후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이 심해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표위원이 자신의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 오랫동안의 야당생활을 접고 3당 통합을 하여 여당의 대표위원이 되었다며 그를 변절자라고 비판하였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수도권에 당력을 집중하는 선거전략을 사용하였다. 영남권과 충청권은 민주자유당의 지지성향이 워낙 강하여 전력을 쏟아도 득표가 쉽지 않았고, 호남권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민주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수도권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특히, 야당 지지성향이 강하면서도 정치적 무관심을 보이는 20~30대 유권자들의 기권을 방지하고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선거공약

민주당은 1992년 2월 18일 ‘정직한 정치, 물가안정 실현, 민생치안 회복, 지방자치 완전실시, 특정세력의 독점지배 종식’ 등 5대 정치공약과 세제개혁 및 금융실명제 전면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정책공약 등 모두 152개의 선거공약을 제시하였다.

정치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안기부의 권한 축소, 수서사건 등 특별검사제 도입, 경찰중립화를 통한 민생치안 확립, 전면적 선거공영제 실시, 정치자금 국고지원 강화, 관변단체 특혜지원 폐지 등을 제시하였다. 인권과 관련해서 양심수 석방과 서신검열 및 도청 금지, 형사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언론·출판의 자유보장과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행정개혁 등과 관련해서 정부기구의 대폭 축소와 직업공무원제 확립, 공무원인사의 지역차별성 배제, 6급 이하 공무원노조 인정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상반기 실시, 지방의회 권한강화와 행정감찰관 도입,

주민발의 및 주민소환제도 도입, 지방재정 확충 등을 내놓았다.

통일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는 '3원칙 3단계'에 의한 단계적 평화통일 추진, 민족통일범국민협의회 구성을 통한 통일논의 보장, 1965년 한일협정 재검토 등을 통한 한일관계 재정립, 남북경제협력 추진 등을 내놓았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자주적인 외교관계 재정립, 남북한 군사적 대결 해소와 군축 추진, 군복무기간과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 민방위 훈련연령 인하, 직업군인제 확립 등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경제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는 금융실명제 조기 실시, 한국은행 독립과 금융자유화, 토지거래실명제 도입, 직접세 비중 제고,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 기업자율성 보장,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체제 구축, 지방중소기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증권시장 활성화, 과학기술 진흥 등을 내놓았다. 또한 경부고속전철의 중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조기완공, 광역상수도 적극개발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건축예산 운용, 통화규모 적정 수준 유지, 공공요금 인상억제, 1가구 2주택 중과세, 연 10만 호 이상 중소형 분양주택 건설 등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농어촌과 관련하여 쌀 수입개방 반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곡수매 보장제도 계속 유지 등도 제시하였다.

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는 교육자치제 전면 실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교원단체 노조결성 자유보장, 대학에 학생선발권 전면 부여, 한국방송공사 등 시청료 폐지, 남북한 방송개방 촉진, 공직선거 및 공공기관에 여성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노사문제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노동관계법 개정, 고용보험제 도입과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다. 통일국민당

통일국민당은 1992년 2월 22일 정주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7일에는 조윤희 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당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1) 선거전략

통일국민당의 선거전략은 '깨끗한 정치'와 '경제를 이는 정당'임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첫째, ‘깨끗한 정치’는 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창당된 신생정당으로서 기성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었다. 또한 재벌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정주영 대표는 정당연설회 등에서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하여 대체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통일국민당 후보자들은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에 ‘깨끗한 정치’라는 문구를 많이 넣었다. 송화섭 후보(대구 북구)는 선전벽보에 “정치는 깨끗하게”, 박병호 후보(서울 성동구갑)는 선거공보에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중앙당에서 발행한 소형인쇄물에도 “깨끗한 정치 실현하는 정당”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둘째, ‘경제를 아는 정당’은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정부와 여당의 책임으로 돌리고, 대신 현실경제에 밝은 정주영 대표의 이미지와 경제적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정주영 대표는 정당연설회 등에서 “민주자유당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아무 한 일 없이 외채만 400억 달러로 늘려 놓았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경제에 관한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당시의 절반 가격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후보자들도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에 주로 “경제는 풍요롭게”(대구 북구 송화섭), “경제기적을 실천하겠습니다”(성동구갑 박병호) 등의 문구를 게재하였다.

2) 선거공약

통일국민당은 1992년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까지 주요 신문에 9회에 이르는 정책광고를 연달아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공약을 발표하였다. 통일국민당의 선거공약은 선거초반에는 경제 및 지역개발과 연관된 것이 많았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정치개혁과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았다.

정치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 현상유지적 양당 정치구도 타파, 상임위원회중심 국회활성화, 공작정치 일소, 타락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정당 국고지원 강화, 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대통령선거 동시실시, 행정규제 대폭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통일·외교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 ‘한민족 경제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통일추진, 남북 이

산가족 재회, 탈냉전 시대 민족자존외교와 북방외교 내실화, 남북한 군축 단계적실시, 군의 현대화 추진, 징병제의 점진적 지원병제로 변경 등을 내놓았다.

경제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 금융실명제 즉각 실시, 통화공급량 확대, 방만한 재정지출 억제, 금융기관 대출금리 하향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 및 자금지원 확대, 대기업 업종의 중소기업 이양 등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쌀 수입개방 저지와 미곡가의 적정유지, 경영규모의 확대 등을 통한 한국형 농업 정착 등을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경제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 '반값아파트' 공약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통일국민당은 채권입찰제를 없애고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지방도시에 각각 절반과 3분의 2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교육·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대학 자율성 보장과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문화 예술인 지원확대, 문화관련 예산 증가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남녀 고용평등 보장, 성폭력 근절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라. 기타 정당

앞의 3개 정당 외에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신정치개혁당, 민중당, 공명민주당 등 3개 정당도 자기 당의 특색에 맞는 선거전략을 사용하고, 선거공약도 내놓았다. 그러나 조직력이나 지명도에서 뒤떨어져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정치개혁당은 '잘못된 정치문화 개혁, 도덕정치와 무공해정치 구현'을 내걸고 민주자유당·민주당은 물론 통일국민당의 이탈표를 끌어 모으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선거공약으로는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민주평화적 통일, 정당정치와 정치개혁을 통한 도덕정치 구현, 자주 실리외교의 추구하고 군비축소, 빈부격차 해소, 금융자율화 및 금융실명제 실시, 토지공개념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수산물 수입개방 저지와 함께 농어촌 진흥 정책 추진, 도덕성과 법질서 회복을 통한 민생불안 해소, 입시위주 교육을 벗어난 전인교육 실시, 여성 사회참여 및 고용기회 확대, 균형 있는 국토개발 등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중당은 진보세력의 원내진출을 호소하면서도 전반적인 탈이념적 추세를 반영하는 선거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기존 정당의 보수성향을 공격하면서도 교통·민생 등 피부에 와 닿는 공약으로 이념성을 완화하여 대중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선거공약으로는 재벌해체, 노동자

의 경영참여, 금융실명제 및 국유 토지 임대제 실시, 부동산투기 토지 환수, 예비군·민방위제 폐지,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복지부문 정부예산 20% 증액, 정당·후보 연기명투표제 및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 임금억제정책 철폐, 외국농축산물 수입규제, 탄광의 공사화,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교직원의 노동3권 보장, 버스공영제 실시, 골프장건설 금지 등을 내놓았다.

2.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1992년 3월 7일부터 3월 23일까지(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7일간이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현수막, 경력방송 등 7가지였다.

가. 선전벽보

지역구후보자의 선전벽보는 후보자가 원고를 작성하여 1992년 3월 10일까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쇄하여 3월 18일까지 첩부하였다. 선전벽보의 첩부기준은 구·시지역은 인구 300인에 1매, 군지역은 인구 100인에 2매 비율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첩부된 선전벽보는 335,400개소에 1,4720,710매였다. 전국구후보자의 선전벽보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전벽보원고를 제출한 정당이 없어서 첩부하지 않았다.

후보자들은 소속정당이나 자신의 정치적 위상, 지역구의 제반 사정, 상대편 후보의 비중 정도에 따라 자신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짙막한 선전문구를 선전벽보에 게재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주로 지역개발과 지역일꾼 이미지를 나타내는 문구를, 민주당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통일국민당은 새정치와 함께 경제와 관련된 문구를 많이 게재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유하여 “나는 선거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한 후보자도 있었다.

민주자유당 김종필 최고위원(부여군)은 “시작된 부여발전 완성시킬 김종필”이라는 문구를, 김윤환 사무총장(군위군·선산군)은 “고향의 명예를, 고장의 발전을”이라는 문구를 게재

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려고 하였다.

민주당 조순형 최고위원(도봉구병)은 “도봉이 키운 바르고 정직한 인물”이라는 선전문구를 게재하였고, 김원기 사무총장(전북 정주시·정읍군)은 “큰 인물 더욱 키워 힘차게 부러보자”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통일국민당 김동길 최고위원(서울 강남구갑)는 “새시대 새인물 새희망”, 박찬중 신정치개혁당 대표최고위원(서울 서초구갑)은 “여러분을 믿었기에 오늘의 박찬중이 있습니다”, 민중당 이우재 상임대표(서울 구로구을)는 “21세기 서민시대를 여는 한국 진보정치의 대표”라는 선전문구를 게재하였다.

선전벽보와 관련한 사건·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후보자가 원고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한 관계로 인쇄상태가 좋지 않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인쇄를 요구하거나 학력·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훼손된 선전벽보의 재첩부와 관련해 일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선전벽보 (대구 북구선거구)



나. 선거공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자신의 원고를 작성하여 1992년 3월 10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쇄하여 부재자신고인에게는 3월 17일까지, 매세대에는 3월 19일까지 우편발송하였다. 전국적으로 발송한 선거공보는 총 13,366,471통(부재자 756,632통, 매세대 12,609,839통)이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공보(성동구갑 선거구)

 <p>지역발전 손해났다 다시 볼자 이세기!!</p> <p>1 이세기 기호</p> <p>민주자유당</p>	<p>66 부 탄압된 땅일수록 세상일수록 살만해 올리는 아제가— 그 수완을 보여 주십시오.</p> <p>1 이세기 (李世基)</p> <p>성동갑 발전을 기원코 이룩해 내겠습니다.</p>	 <p>민주당</p> <p>민주당 제1의 경제전문가</p> <p>2 강금식</p>	<p>흔들리는 우리경제를 되살리십시오!</p> <p>경제가 그야말로 국가의 생명입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국가의 생명도 흔들립니다.</p> <p>●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 실업률 완화를 위하여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장려하기 위하여</p> <p>민국의 영웅 이영남을 지지하십시오!</p> <p>● 이영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 이영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 이영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 이영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 이영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 이영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 이영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 이영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 이영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 이영남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p>
<p>덜컾나는 새강을 받들시나, 살맛나는 성동구를 만들시나.</p> <p>선거공보</p>  <p>3 박병호 기호</p> <p>통일국민당</p>	<p>정치혁신과 경제가격을 성동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p> <p>●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 실업률 완화를 위하여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장려하기 위하여</p> <p>통일국민당</p>	 <p>4 김옥선</p>	<p>진보와 노년의 새물결로 부패한 보수정치의 벽을 아들겠습니다.</p> <p>●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 실업률 완화를 위하여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장려하기 위하여</p>
 <p>5 김철수 기호</p> <p>신한국당</p>	<p>우리 새로 시작합니다</p> <p>●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 실업률 완화를 위하여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장려하기 위하여</p> <p>신한국당</p>	<p>여성의 힘으로!!</p> <p>6 한상필 (한상필)</p> <p>●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 실업률 완화를 위하여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장려하기 위하여</p>	<p>인사의 말씀</p> <p>●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 실업률 완화를 위하여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장려하기 위하여</p>

선거공보는 단색 2면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다. 후보자들은 선거공보 앞면에 주로 자신의 사진과 선전문구를 게재하였고 뒷면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였다.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지역개발에 관한 공약을 주로 게재하였고, 야당 후보자들은 정부의 실정과 소속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민주자유당 이자현 원내총무(경기도 평택군)는 앞면에 “평택항 건설하여 군을 직할시로”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뒷면에는 항구건설과 공단건설 등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민주당 유준상 정책위의장(전남 보성군)은 앞면에는 “큰인물 새정치 2000년대 새희망”, 뒷면에는 “통합야당 밀어주고 일당독재 막아내자”라는 선전구호와 함께 지역공약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통일국민당 정몽준 정책위의장(울산시 동구)은 앞면에는 사진과 기호 및 성명만 기재하고, 뒷면에는 “살기 좋은 복지동구 건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개발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선거공보와 관련된 사건·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공보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인쇄를 요구한 사례는 있었다. 한편 소형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선거공보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선거공보는 단색으로 작성되어 4색도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에 비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다. 소형인쇄물

소형인쇄물은 지역구후보자가 4종, 정당이 2종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제작·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종수별로 그 지역의 유권자 수에 상당하는 매수였다. 199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종수나 제작·배부 수량에 제한이 없었다.

선거법에서는 무소속후보자는 4종만 제작·배부하도록 하고, 정당추천후보자는 결과적으로 2종을 더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며 조건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권자들에게도 2종을 제작·배부하도록 허용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제2절 선거제도” 참조).

소형인쇄물을 제작한 지역구후보자는 모두 1,028명이었다. 4종을 모두 제작한 후보자는 542명, 3종을 제작한 후보자는 245명, 2종을 제작한 후보자는 181명, 1종만 제작한 후보자는 60명이었다. 정당 소형인쇄물은 민주자유당이 204곳, 민주당이 193곳, 통일국민당이 147곳, 신정치개혁당이 9곳, 공명민주당이 1곳, 민중당이 26곳의 지역구에서 제작하였다.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권자들도 소형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전체 무소속후보자 223명 중 47명이 추가로 제작하였다. 후보자들은 이와 같이 제작한 소형인쇄물을 주로 합동연설회장이나 정당연설회장 또는 가두에서 유권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호별투입이나 우편배달의 방법으로도 배부하였다.

후보자들이 제작한 소형인쇄물에는 주로 후보자 개인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정당에서 제작한 소형인쇄물은 정당의 선전구호와 주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다시 뛰는 한국인 일하는 민자당”, 민주당은 “여당이 너무 커지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야당도 힘을 가져야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통일국민당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통일국민당! 깨끗한 정치 실천하는 정당” 등의 선전구호를 게재하였다.

후보자 소형인쇄물(동대문구을선거구, 앞면)



정당의 소형인쇄물(앞면)



라. 합동연설회

합동연설회는 지역구마다 3회(하나의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시·군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시·군마다 각각 2회씩) 개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정 개최횟수는 총 785회였다. 그러나 경북 울릉군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전원이 불참한 관계로 개최되지 않아 실제로 개최된 횟수는 총 783회였다. 울릉군에서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도 같은 이유로 합동연설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청중수는 약 326만 명으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407만 명보다 줄어들었다. 청중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대구 서구갑선거구로 1회의 합동연설회에 35,000여 명이 모였고, 가장 적게 모인 곳은 경기도 안산시·옹진군선거구로 200여 명이 모였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어지면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합동연설회의 청중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이전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연설회장에서 청중들을 동원하는 듯하였다. 합동연설회장 주변에는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청중들 중에는 지지하는 후보자의 연설이 끝나면 썰물처럼 퇴장하는 모습이 재현되었기 때문이었다.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합동연설회를 통해 주로 안정론과 노태우 정부의 치적, 지역개발

에 관한 공약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즉 국회 안정의식의 필요성, 민주화와 북방 외교 등 노태우정부의 치적,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경제실적 등을 거론하였다.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은 전통적으로 합동연설회가 야당의 바람몰이에 이용되어 왔다는 판단 하에 가능하면 야당공세에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듯하였다. 지역구의 유권자 성향이 통일국민당과 겹치는 곳에서는 재벌당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비판하는 후보자들도 있었다.

민주당 후보자들은 주로 노태우 정부의 실정과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도시지역에서는 교통·주택·물가·민생·치안문제 등을, 농촌지역에서는 농정실패와 수입개방 문제점 및 농촌부흥 방안 등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여당의 안정논리에는 견제논리로 대응하고, 노태우 정부의 실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6공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발언도 하였다.

통일국민당 후보자들은 주로 신생정당으로서 기성정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고 유권자들에게 반민자·비민주 의식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특히 정주영 대표의 경제부흥 이미지를 살려 중소기업육성, 금융실명제 실시, 금리인하, 아파트 값 절반인하 등 주요 경제공약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신정치개혁당과 민중당의 후보자들은 주로 민주자유당·민주당·통일국민당 등 3당의 부도덕성을 집중 공격하는 한편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 합동연설회 광경

마. 정당연설회 및 무소속후보자 연설회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폐지되었던 정당연설회가 20여년 만에 부활되어 관심을 끌었다. 정당연설회는 지역구마다 1회(하나의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구·시·군마다 각 1회)씩 개최할 수 있었다. 선거법에는 정당추천후보자만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무소속후보라도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건부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후보라도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제2절 선거제도” 참조).

정당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개최하도록 하였는데 민주자유당은 176회, 민주당은 195회, 통일국민당은 154회, 신정치개혁당과 민중당은 각각 29회, 공명민주당은 4회를 신고하였다. 무소속후보자 연설회는 총 88회를 신고하였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이와 같이 신고한 후에 실제로 연설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민주자유당의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김영삼 대표위원은 주로 여당의 안정의석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선거는 3당 통합으로 이룬 정치·사회적 안정을 더욱 정착시켜 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과거의 혼란으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기”라고 주장하고 “집권당이 안정 속의 개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의석을 확보하게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주당의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는 주로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들은 “오늘의 정치·경제가 악화된 것은 3당 합당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만해진 거대여당이 국민과 야당을 깔보고 독주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 견제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국민의 힘만이 관권·금권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혼탁상이 우려되는 이번 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기권방지와 금권선거 타파 등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통일국민당의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정주영 대표는 주로 기성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체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제에 관한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는 “민주자유당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아무 한 일 없이 외채만 400억 달러로 늘려 놓았다”며 여당을 비판하고, “통일국민당이 집권하면 금리를 연 7%로 낮추고 아파트 값을 지금의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공약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당연설회는 20여년 만에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 정당연설회에 각 정당의 대표들과 수뇌부가 총동원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중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당연설회 개최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당연설회의 개최고지는 고지벽보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차량을 동원하여 고지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 정당연설회 (서울 중랑구갑선거구)

바. 기타 선거운동

앞에서 기술한 선거운동 외에도 경력방송과 현수막이 있었다. ‘경력방송’은 여야의 선거법 개정협상 과정에서 방송연설회 도입이 무산되면서 대신 도입된 것이었다. 경력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연령·소속정당명·직업·경력 등을 한국방송공사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각 1회씩 실시하였다. 후보자 1인의 방송시간이 TV의 경우 약 20초였고, 라디오의 경우 약 30초여서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현수막’은 구와 시의 경우 지역구 관할 동수에 상당하는 매수 이내, 군의 경우에는 읍마다 2매 이내, 면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었다. 이런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총 16,873매였고, 이 중 도중에 훼손·떨어진 6,047매는



▶ 후보자 현수막

교체하였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특별한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후보자 간에 서로 좋은 장소에 게시하기 위하여 다툼을 벌이거나, 교차로 또는 교통신호등을 가리게 게시하여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 사례 등은 있었다.

3. 선거쟁점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3당 합당에 대한 정당성과 부당성 공방,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안정론과 견제론,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선거개입 사건, 군부재자투표 부정폭로 사건, 민주자유당의 한백청년회 불법동원 사건 등이었다. 또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여부를 둘러싼 통일국민당 정주영 대표의 후보자격 논란도 선거쟁점이 되었다.

가. '3당 합당'에 대한 공방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한 것에 대한 평가는 1991년 두 번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통해 여야가 이미 공방을 벌였던 선거쟁점이었다. 그러나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3당 합당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라는 점에서 또다시 선거쟁점이 되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9개월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이니 만큼 3당 합당의 성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였다.

민주당은 3당 합당을 일부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야합하여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선택을 거스른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여당을 비판하였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의 혼란이 3당 합당에서 파생되고 있다면서 다음 대권주자인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이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 3당 합당을 한 것이라며 그를 변절자라고 거세게 비난하였다. 민주당 김대중 대표는 지구당개편대회와 정당연설회 등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숨겨왔던 내각책임제 개혁의 야망을 달성하고자 3당 합당을 감행한 이후부터 정치는 침체되고 경제는 악화되었다”며 3당 합당의 부당성을 줄곧 주장하였다. 3당 합당 당시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합당을 거부했던 이기택 민주당 공동대표는 1992년 3월 18일 경기지역 정당연설회에서 “여소야대 국회는 노동법 개정 등 많은 민주개혁 입법을 통해 민주발전에 기여했으나 3당 합당 이후 거대여당의 대권싸움으로 인해 파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였다.

통일국민당 후보들 또한 “3당 합당으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다”며 민주자유당에 대한 비난에 가세하였다. 3당 합당으로 인해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도 “3당 합당은 구국의 결단이기는커녕 철저한 밀실야합이다”라며 3당 합당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3당 합당이 4당 체제 하에서 나타난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구국적 차원의 결단이었음을 강조하고, 1991년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하여 이미 3당 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삼 대표위원은 지구당개편대회와 정당연설회 등에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 3당 통합의 심판을 받기 원한다”고 밝히며 3당 합당의 정통성 여부를 선거쟁점화하였다. 그는 “통합이 잘됐다고 보는 국민들은 우리 당에 투표해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합당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나. 안정론·견제론과 경제문제

안정론과 견제론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선거쟁점으로 주로 안정론은 여당이, 견제론은 야당이 주장하였다. 이것은 제11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줄곧 큰 선거쟁점이었는데,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쟁점으로 떠올랐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의 선거에서는 주로 정치적 문제를 놓고 안정론과 견제론을 주장

했는데,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경제문제를 놓고 안정론과 견제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 정당별 지역점검과 여론조사 과정에서 유권자의 관심이 정치보다 경제문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득표전략을 경제중심으로 수정한 결과였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표위원은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주체정당이 없는 가운데 견제세력만 커지면 혼란이 가중된다”고 전제하고 “최대 당면과제인 경제 재도약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정치안정이 필요하다”며 안정론을 거론하였다. 또한 “현재의 경제 불안이 여소야대 시절 야당의 인기정책과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후 “3당 통합 이후 아파트 값이 안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현재의 경제 불안은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의식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주당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는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노태우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들은 거대 여당의 오만에서 비롯된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키워주면 긴축예산 운용, 한국은행 독립, 통화량 조절, 토지투기 방지, 사치세 신설 등으로 물가를 잡아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견제세력이 강해야 물가도 안정됩니다”라는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통일국민당은 고물가 및 무역적자 누적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집권당의 경제실정을 비판하였다. 통일국민당 정주영 대표는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민주자유당 등장 후 무역적자가 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적 무능과 대권놀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공격하였다.

다.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선거개입사건

선거일을 3일 앞둔 1992년 3월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 125동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 사무관 등 4명이 민주당 홍사덕 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다가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붙잡혔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작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붙잡힌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은 모두 구속되었다. 한기용은 수사과정에서 평소 신세를 많이 진 외부 친구의 부탁으로 한 일이며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

도 한기용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인 것은 사실이나 국가안전기획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선거개입 논란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 홍사덕후보가 국가안전기획부 신분증을 들여보고 있다(1992년 3월 21일).

야당은 1992년 3월 21일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흑색선전물 유포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고, 한기용과 국가안전기획부가 범행을 개인차원으로 축소해 정치적인 부담을 벗어나려고 은폐조작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아울러 책임자 문책과 노태우 대통령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였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한기용 등은 1992년 3월 16일부터 우편발송하거나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800여장의 유인물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한기용 등 배후와 범행동기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이들만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여 사실상 종결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한기용 등 4명은 199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많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라. 군부재자 부정투표 논란

선거일을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밤 육군 제9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가 공명선거시민운동실천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부재자 투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내에서 실시된 부재자투표에서 지휘관의 정신교육, 공공연한 공개투표, 기무부대의 사전검열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야당은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다음날인 1992년 3월 23일 일제히 공정한 감시 하에 군부재자투표의 재실시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였다. 특히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각각 조사단을 구성하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선거구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하여 선거종반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국방부는 폭로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1992년 3월 24일 이지문 중위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이지문 중위의 소속 부대장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정정보도를 신청할 것임을 밝혔다. 선거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1992년 4월 3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지문 중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다른 부대에서도 부정투표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휘관의 정신교육이 다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였다.

군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주장한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 직후 군무 무단이탈죄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국방부 수사결과 1992년 4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처분에도 불구하고 이지문 중위는 사단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되었다. 이후 이지문 중위는 보병 제9사단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3년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지문 중위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부재자투표를 둘러싼 부정 의혹은 이 사건만이 아니었다. 1992년 4월 14일 국방부는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군부재자투표 과정에서 파견 근무자와 휴가병들에 대한 대리투표 행위가 확인되어 중대장 2명과 서무병 1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들이 통신중계소 요원 16명과 휴가병 3명 등 모두 19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선정한 후보자들에게 대신 기표하여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폭로사건으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소송이 많이 제기되었고, 9개월 후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상 처음으로 부재자투표소 투표제도를 도입하게 하여 이러한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마. 한맥청년회 불법 동원사건

민주자유당이 대규모 대학생 선거동원조직인 한맥청년회를 조직하여 연설회장 등에 동원한 뒤 1인당 하루 2만~3만 원씩의 일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한맥청년회는 검찰이 1992년 3월 17일 통일국민당에 대학생들을 동원해 준 선거브로커조직 ‘두 잇 이벤트’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실태의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자유당이 한맥청년회를 통해 일당을 주고 수십 차례나 대학생들을 선거운동에 불법 동원하였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야당은 한맥청년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1992년 3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맥청년회’의 불법 활동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와 민주자유당 관련자의 인책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한맥청년회 사건을 통해 법을 위반하고 금품으로 학생들을 매수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한 장본인이 민주자유당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민주자유당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 강용식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한맥청년회는 민주자유당의 정당정책을 지지하는 직능별 성격의 대학생 조직”이라며 일당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낸 사실만 인정하였다. 그러나 언론에서 1992년 3월 18일 한맥청년회의 상황보고서 내용을 입수하여 30여 차례에 걸친 동원내용과 3월 15일 구로구갑선거구의 유세장에 200명을 동원하고 1인당 2만 원씩 지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맥청년회 사건이 정치쟁점화되자 검찰은 1992년 3월 19일 선거가 끝난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맥청년회가 민주자유당 사무처 청년국 산하의 공식 외곽조직으로 정식당원 또는 자원봉사자 자격의 회원활동을 표방하고 있어 의혹만으로 선불리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검찰수사를 통해 한맥청년회 회장 최승욱의 혐의가 밝혀졌고, 최승욱은 이 사건으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바. 정주영 대표의 후보자격 논란

정주영 대표의 후보자격 논란은 1992년 3월 20일 민중당 서울구로을지구당 부위원장 김정곤이 제기하였다. 그는 정주영 대표가 정기간행물 ‘체육동우회보’의 발행인이기 때문에 당원 자격이 없는 언론인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당시 「정당법」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기간행물(정당의 기관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은 선거일 공고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전국구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원자격 등에 위법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주영 대표는 전국구후보자 자격은 물론 대표위원 자격도 원인무효로 소멸되는 상황이었다.

정주영 대표는 ‘체육동우회보’를 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실문제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없었고, ‘무가지의 발행인이 언론인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범조항 해석과 관련된 것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주영 대표의 자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이 의뢰되자 1992년 3월 23일까지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 이날까지 사실조사 및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유권해석을 일단 유보하였다. 특히 서울동대문구을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고달준 후보가 3월 17일 월간 ‘새행원’이라는 잡지의 발행인임이 확인되어 등록무효가 되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주영 대표에 대한 자격시비가 논란이 일자 통일국민당은 1992년 3월 23일 민주자유당의 박태준 최고위원과 김복동·김채겸 후보 등도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라며 이들의 국회의원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반발하였다. 이들 이외에도 여야 및 무소속 후보자들 17명에 대한 결격 여부를 추가로 질의하는 등 유권해석을 앞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하였다. 또한 같은 날 조간신문 일부 지방관에 “정주영 대표를 언론인으로 보고 당원 및 전국구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공작정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광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작정치의 하수인’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주영 대표를 언론인으로 유권해석하여 당원자격 등을 박탈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정치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일국민당의 광고가 위법이라며 경고하였고, 이에 따라 통일국민당은 바로 광고를 삭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일국민당이 정주영 대표의 체육동우회보 발행인 겸직문제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은 채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문광고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터무니없는 음해를 가한 것은 헌법상의 독립기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선거 후 사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속에 선거일인 1992년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주영 대표의 당원자격에 대해 ‘자격 있음’으로 결론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후보자가 될 수 없는 언론인이란 직업적으로 보도·논평 따위의 언론활동에 참여해 국민 여론형성에 영향을 주는 언론기업 종사자를 이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순수하게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업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거가 끝나고 1992년 3월 25일 통일국민당 조운형 선거대책본부장이, 3월 26일에는 정주영 대표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난한 광고와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

사. 기타 쟁점

앞에서 기술한 사항 외에도 관련개입, 정치자금 수수, 수서사건 등도 선거쟁점이 되었다. ‘관련개입’은 1992년 2월 중순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순시를 하면서 지역개발 공약을 거론하자 민주당이 이를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한 선심공약 남발로 규정하고,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대통령이 연두순시에서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전북 무주경찰서와 충북 음성군청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가 노출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선거가 끝난 후인 1992년 8월에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관련개입을 폭로하여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정치자금 수수’는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대표가 1992년 초 정계진출 선언 시 과거정권 시절부터 1990년 말까지 거액의 정치자금을 헌납해 왔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수서사건(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제1절. 선거전의 정치적 상황” 참조) 등 비리사건들과 연계되면서 여당과 노태우 정부의 부도덕성 문제로 확대되어 선거기간 동안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재벌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온 것은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수서사건도 이러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사례라며 여당을 공격하였다. 통일국민당은 수서사건이 청와대가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보그룹에 특혜를 주다 발생한 비리사건이라고 비난하면서 지금까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한보그룹 비자금 300억 원은 청와대와 민주자유당에 흘러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였고,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용했으며, 정치자금으로 변용된 일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수서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제5절

선거비용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등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정당이나 후보자가 부담하되 그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가 끝난 후 지출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1. 선거비용제한액

지역구후보자와 전국구후보자는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출방법도 달랐다. 또한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하였다.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달한 비목별 산출기준에 의해 산정한 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992년 3월 10일까지 공시하였다. 비목별 산출기준은 ①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②선거사무장 및 선거운동원 등의 실비보상, ③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④현수막·소형인쇄물 등의 작성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⑤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⑥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등 6가지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전국 237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2,327만 9,806원이었다. 이 금액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8,282만 4,196원)

보다 48.8% 인상된 것이었다. 이 인상률은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가장 높았다.

<표 5-5> 지역구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및 인상률

(단위: 원)

구 분	제10대 국선 (1978. 12. 12)	제11대 국선 (1981. 3. 25)	제12대 국선 (1985. 2. 12)	제13대 국선 (1988. 4. 25)	제14대 국선 (1992. 3. 24)
지역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11,629,016	49,431,000	70,580,783	82,824,196	123,279,806
직전 국회의원선거 대비 인상률(%)	-	325.1	42.8	17.4	48.8

선거비용제한액이 인상된 것은 소형인쇄물 제작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었고,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이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소형인쇄물의 제작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는 경남 충무시·통영군·고성군선거구로 1억 8,878만 3,000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충남 연기군선거구로 6,659만 2,000원이었다. 선거구 관내에 읍·면·동수나 투표구수가 많은 곳은 선거비용제한액이 많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었다.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①전국구선거사무소의 임차료 및 유지비, ②선거사무장 및 선거운동원의 실비, ③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④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등 4가지 비목에다가 전국구후보자 1인당 가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위 ①번부터 ④번까지의 비목별 합산액이 1억 3,005만 2,000원이었고, 1인당 가산액은 49만 6,000원이었다. 이런 기준에 의한 산출된 정당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민주자유당이 가장 많은 1억 5,638만 6,000원이었고, 민주당 1억 5,485만 2,000원, 통일국민당 1억 4,592만 4,000원, 신정치개혁당 1억 3,699만 6,000원, 민중당 1억 3,203만 6,000원이었다. 후보자 1인당 가산액이 있기 때문에 전국구후보자를 많이 공천한 정당은 선거비용제한액도 많았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비교할 때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목별 합산액은 736

만 7,000원이 증가(증가율 6.0%)하였으나 1인당 가산액은 75만 4,000원이 감소(감소율 60.3%)하였다. 1인당 가산액은 전국구 후보자의 식비와 숙박료 등을 고려한 것인데 단가 조정으로 감소되었다.

〈표 5-6〉 전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산출기준 비교

(단위 : 원)

선거별	비목별 합산액	1인당 가산액
제13대 국회의원선거	122,685,000	1,250,000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30,052,000	496,000

다. 정당의 소형인쇄물 및 연설회비용제한액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소형인쇄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거나 정당연설회를 개최하여 자기 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당의 소형인쇄물 제작 비용과 정당연설회 개최비용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과는 별도로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 비용의 지역구당 평균제한액은 3,058만 3,000원이었다. 서울 송파구을선거구가 5,016만 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금산군선거구가 1,506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2. 선거비용 지출

가.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지역구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나고 1992년 4월 8일까지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대상자 1,052명 중 1,049명이 제출하고 나머지 3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당의 소형인쇄물 및 연설회비용에 대한 지출보고서는 제출대상 826개 지구당 중 1곳을 제외한 825개 지구당이 제출하였다.

후보자나 정당이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는 없었다. 지역구후보자 1인당 평균지출액은 5,880만 9,000원으로 평균선거비용제한액 대비 47.7%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자는 경북 포항시선거구의 민주자유당 이진우 후

보로 제한액 대비 96.5%에 해당하는 1억 6,641만 2,000원을 지출하였다. 가장 적게 지출한 후보자는 서울 관악구을선거구의 이상열 후보로 제한액 대비 0.3%에 불과한 44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전국구후보자를 등록시킨 5개 정당 모두가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당별 지출상황을 보면 통일국민당이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1,694만 4,00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였고, 민주자유당은 627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4%를 지출하였다. 나머지 민주당, 신정치개혁당, 민중당은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아예 지출하지 않았다. 정당들이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적게 지출하거나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정당연설회 비용과 소형인쇄물 비용이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과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지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선거운동이 지역구후보자 위주로 전개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3. 선거비용지출 실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를 벌였다. 1992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5일간 실시된 실사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사상 처음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실사과정에서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된 선거기획사와 인쇄업체 등의 현장 방문, 선거비용을 지급받은 선거운동원들의 면담 등을 통해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실사결과 총 2,85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는 선거운동관계자의 실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회계장부의 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기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기·누락·착오 등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29건은 경고, 508건은 주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체종결 처리하였다.

제6절



공명선거활동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활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및 투표참여 권장에 중점을 두었고, 시민단체들은 선거법위반행위 감시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1992년을 ‘공명선거정착의 해’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활동 목표를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으로 정하고 언론매체,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공명선거활동을 펼쳤다.

가. 언론매체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명선거활동은 방송 및 신문광고, 보도자료 제공, 자막·멘트, 대담·토론회 참석 등이었다. 방송광고는 공명선거 홍보, 선거인명부 열람과 투표절차 안내, 기권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TV 150회, 라디오 560회를 실시하였다.

신문광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내용의 담화문,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절차 안내,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지는 내용,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는 내용 등으로 총 188회 실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잡지에도 3회 광고하였다.

보도자료는 선거절차 안내와 공명선거 홍보, 투표참여 등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총 1,549회

제공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들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237회 참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당부하였다.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TV와 라디오를 통해 공명선거 홍보 및 선거절차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자막 또는 멘트도 1,056회 방송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공명선거를 홍보하는 내용의 캠페인퀴즈를 신문을 통해 197회 게재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신문광고

“나를 낙선시켜 주시오!”

별다른 선거운동 없이도 당선되려?
아니도 연합연설회 참가 강요에나 불응중 제갈하시느
분이 있습니까?
거짓 주장 강박이 아니라 이해되는 일고 재시설이요?
홍보할 선거 후보에게 후원 강요에 얼마나 저항적인
것인지도 알고 계시겠습니까?
유권자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나” 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불합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낙선운동” 하고 재선거하십니까?
연합연설회 불참 불합선거운동 -
특히 기약했다가 반드시 낙선시킵시다.

중양선거관리위원회

중요합니다.
*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전 개표소마다 1인 1표의 투표권을 보장
할 것입니다.
* 투표권 행사에 방해하는 행위는 1년 30 이하
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투표권 행사에 방해하는 행위를 1년 30 이하
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투표권 행사에 방해하는 행위를 1년 30 이하
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991. 12. 25

**출중한 정책과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합시다**

**실현가능한
공약**

선거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나라의 임무를 보는
선정된 주민행차.
그러나 선거에만 되면 훌륭한 정책과
실현가능한 공약은 멀리한채
같은으로 표를 얻고자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같은공약을 화거나 안전공제, 후생선언을 하지 않고
훌륭한 정책과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공익은 후보자를 선택한채 없습니다.

중양선거관리위원회

▲ 1992. 3. 21

나. 인쇄물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인쇄물로는 팸플릿, 포스터, 전단(리플릿), 책자, 반상회보, 담뱃갑 등이 있었다. 팸플릿은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설 때입니다”, “바른 판단 바른 선택”,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한가?” 등의 제목으로 3종 640,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행정기관의 민원실, 언론기관과 정당의 사무실, 터미널과 역의 대합실 등에 비치하여 유권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포스터는 “우리 모두 바른 판단을 할 때”, “이런 후보에게 표를 줘시다”, “선거풍토 깨끗이 합시다” 등으로 3종 290,000매를 제작하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이나 담벼락, 행정기관의 민원실, 음식점 등에 첩부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지하철 전동차용 포스터를 1,200매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전단(리플릿)은 공명선거 홍보와 위법선거운동 사례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950,000매를 제작하여 가두 캠페인 등을 할 때 유권자들에게 배부하였고, 공명선거노래 악보 4,000부를 제작하여 정당과 방송사 및 후보자 등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담배인삼공사의 협조를 얻어 담뱃갑에 공명선거 표어와 그림들이 게재된 담배 2,500만 갑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포스터



다. 시설물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시설물은 아치, 선전탑, 육교현판, 청사현판, 현수막, 입간판 등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아치 13개, 선전탑 23개, 육교현판 37개, 청사현판은 23개, 현수막 5,512개, 입간판 313개를 게시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울 일원에 홍보문구를 게재한 무인 비행선을 띄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설물에 게재한 주요 홍보문구는 “공명선거 -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설 때입니다”, “민주발전은 돈 안드는 선거로부터”, “법따라 바른선거 양심따라 바른투표”, “선거질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집니다”, “받는 손 사라지면 주는 손도 사라진다”, “선거는 즐거운 민주행사”, “바른 한표 밝은 정치”, “올바른 한표가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알뜰한 선심에 자존심을 파는 일을 하지 맙시다”, “금품이 오가는 선거는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등이었다.



▶공명선거 홍보용 아치와 비행선 (경기, 서울)

이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슬라이드, 카세트용 녹음테이프, 가두방송, 구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명선거활동을 하였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설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화관용 35mm 필름 259벌을 제작하여 전국 극장에서 상영하게 하였다. “깨끗한 선거 바른 참여”, “공명선거 심포지엄 특집” 등의 제목으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유선방송사와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방송하거나 교육 등에 활용하게 하였다.

카세트용 녹음테이프 “재치만담-공명양과 선거씨”를 제작하여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및 열차 안에 방송하게 하였고, “공명선거의 노래”를 제작하여 방송사와 정당 및 리·동 행정방송

을 통해 방송하게 하였다. 확성장비가 장착된 자동차 약 300대로 기권방지와 공명선거를 안내하는 가두방송을 하였고, 같은 내용을 아파트나 기관·기업체 등의 구내방송을 통해 방송하게 하였다.

라. 기타 공명선거 활동

각급 학교를 통해 공명선거를 주제로 한 글짓기 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사회교육을 통해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자료 31,000부를 사회단체,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이 각 직장·단체를 방문하여 공명선거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공명선거 포스터와 표어, 방송광고와 신문광고 문안 등의 현상공모도 하였다. 정당과 학회 및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선거전·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또한 전국의 역·터미널 500여 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연인원 7만여 명이 참여하여 연말연시와 설날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공명선거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명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각 정당의 선거대책본부장급으로 ‘공명선거정당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후보자들의 선전벽보 등에 “나는 선거법을 준수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도록 요청하여 선전벽보에는 237명, 선거공보에는 324명, 소형인쇄물에는 260여 명의 후보자가 이 문구를 게재하였다.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법 준수와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협조공한을 발송하고, 선거철마다 논란이 되어온 통·리·반장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하여 이들에게도 협조공한을 발송하였다.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정부는 국무총리의 담화문이나 관계부처장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명선거의 의지를 밝혀 결과적으로 선거법위법행위를 억제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1992년 3월 7일 선거일 공고에

즈음하여 정원식 국무총리가 “정부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992년 3월 11일에는 이상연 내무부장관과 김기춘 법무부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탈법행위 집중단속방침과 선거사범 처리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민주화의 노력과 결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선거과정의 위법·탈법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릴 것이며, 특히 전국 경찰이 선거 과열지역이나 취약지역에서 각종 선거사범과 유세장폭력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는 엄정한 중립자세를 지키고 현직 통·반장의 선거개입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 기업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유용하는 기업인,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을 일삼는 후보자,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하여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시민단체는 1991년 두 차례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이어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공명선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가장 활발하게 공명선거활동을 한 단체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연합회(이하 이 절에서 “공선협”이라 한다)와 공명선거실현민간단체연합(이하 이 절에서 “공민련”이라 한다)이었다. 이외에도 학생단체나 종교단체들도 공명선거활동에 참여하였다.

공선협은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단체로 초기에는 57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나, 선거가 끝날 즈음에는 300여개의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노동자·농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가입한 연합체로 발전하였다.

공선협의 구성목적은 공명선거를 위하여 유권자 의식개혁,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선거참여운동, 금권·관권·타락선거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공선협은 1992년 1월 25일 공명선거 가두캠페인을 시작으로 신춘가곡의 밤, 공개 정책세미나, 공명선거 대자보 부착식 등 21회의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선거일 공고에 즈음하여서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 등 공명선거를 촉구·호소하는 성명서를 12회 발표하였으며, 투표참여 포스터 110,000매를 제작하

여 부착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월 15일에는 ‘공명선거 결의의 날’ 행사를 종교단체와 더불어 전국 40여개 지역에서 열기도 하였다.

공선협은 1992년 3월 7일 시민선거감시단 결성을 시작으로 각계에 선거감시단을 차례로 조직하고, 위법선거운동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총 382건의 위법행위를 접수받아 14건은 고발, 2건은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선거일에 즈음해서는 서울지역 대학생 1,500명을 비롯하여 전국 50여개 지역 공선협 회원 1만여 명에게 1회용 카메라와 호루라기 등을 지급하며 막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공선협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군부재자투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국회에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 공선협 공명선거감시단 발단식 (1992년 3월 7일)

공민련은 1992년 1월 23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였다. 이들은 유권자의 의식개혁과 부정선거 감시·고발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공민련은 스티커 150만매, 포스터 12만 매(3종), 전단 13만 8,000매(7종), 현수막 1,404만개(4종)를 제작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였으며, 2월 29일에는 서울 답골공원에서 공명

선거촉구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공민련에는 특별법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 다수 참여하였는데,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결성과정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 외에 공명선거활동을 한 단체로는 청년회의소가 있었다. 청년회의소는 공명선거 현수막 1,000매와 포스터 10,000매를 게시 또는 첩부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가두캠페인 및 건전선거다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공명선거활동은 아니었지만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한 단체도 있었다. 재야단체들의 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학생단체들과 함께 자신들이 지지할 후보자 50여 명에 대한 선거운동과 민주자유당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벌였다. 이들의 활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활동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9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관계로 각 정당은 국회의원선거가 향후 대권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쳤다. 따라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었고, 선거법위반행위도 많이 발생하였다.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및 경찰이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1989년 4월 13일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때부터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을 시작한 이래 1991년 두 번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선거법위반사례’ 책자 30만부를 제작하여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언론기관,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선거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 1만여 통을 발송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91년 10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6단계로 나누어 단속반을 증원 편성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을 벌였다. 단속반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임직원 1,010명, 구·시·군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위원 6,973명, 구·시·군청 등에서 파견받은 지방공무원 5,015명 등 총 13,043명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특별단속위원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편성·운영하였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일

반 국민들로부터 신고·제보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단속활동을 벌여 총 6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중 선거관리업무를 침해하였거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 공명선거 저해 정도가 심한 25건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61건은 수사의뢰하였으며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적발한 위반행위 건수는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 때의 적발 건수(351건)에 비해 92% 증가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선전물 배부가 29.8%(201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정당·후보자연설회 관련 위반행위 16.6%(112건), 금품·음식물 제공 15.4%(104건), 불법 벽보 및 현수막 등의 게시 11.1%(75건)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불법집회, 신문 이용, 합동연설회 관련, 선거관리 침해, 흑색선전, 호별방문 등의 행위였다.

〈표 5-7〉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선관위의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상황

(단위: 건)

합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의·시정	공명선거 협조요청	사직당국 이첩
674	25	61	237	160	79	112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소권이나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의 법적 조치는 검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25건 중 13건, 수사의뢰한 61건 중 6건만 검찰이 기소하였다.

나. 검찰의 단속활동

검찰은 1991년 10월 18일 ‘14대 총선관련 사전선거운동사범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하고 전국 50개 지검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본격 가동해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검찰은 주민단체 등 유권자의 금품요구, 선거브로커의 매표알선, 금품살포 및 각종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신분·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선거를 3개월여 앞둔 1991년 12월 19일에는 대검찰청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단속 및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전국 각 청의 선거전담반을 24시간 가동하여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1992년 3월 3일에는 김기춘 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처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검찰은 선거운동에서 투·개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 각종 선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여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금품살포·흑색선전 등 불법작태를 엄단하고 유권자 스스로 금품을 거부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 경찰의 단속활동

경찰은 1992년 2월 14일 전국지방경찰청장회의를 열고 공명선거추진 및 선거사범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날 김원환 경찰청장은 “본격적인 선거철로 접어들면서 탈법과 과열선거분위기가 예상된다”면서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전담반을 설치하고 231개소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공명선거저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하였다.

1992년 3월 17일 경찰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전국 일선경찰에 선거폭력사범과 금품수수행위를 추적하여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지시된 내용 중에는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여 후보자·선거운동원·선거관련시설 등에 대한 폭행·협박·파괴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고 선심관광 알선, 금품살포, 후보자사퇴를 빌미로 한 금품수수, 표몰이를 빙자한 금품요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라는 것 등이 들어 있었다. 이외에도 선거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등을 모두 투입하여 후보자의 신변경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2. 위반행위 발생상황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45명이었다. 검찰은 이 중 427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618명은 불기소하였다. 구속된 사람은 43명이었다.

〈표 5-8〉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현황³¹⁾

발생건수 (입건)	기 소			불 기 소			
	계	구 속	불구속	계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 타
1,045	427	43	384	618	160	410	48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범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선거사범(입건 656, 기소 79)에 비해 입건은 59.3%(389명), 기소는 440.5%(348명)가 증가하였다.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하지 않았으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단속활동을 한 것도 선거사범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앞의 “가. 선거관리 위원회의 단속활동”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 674건을 적발하여 이 중 86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였었다.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1,045명의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연하장이나 달력 등의 불법선전물 배포가 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금품·향응 제공 259명, 선거관련 폭력 130명, 흑색선전 93명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현수막·벽보 등의 불법 게시·부착,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 호별방문, 기타 제한규정 위반 등이었다.

입건된 선거사범 1,045명의 소속정당별 현황을 보면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174명(1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통일국민당 127명(12.2%), 민주당 119명(11.4%), 민중당 11명, 기타 정당 4명이었다. 무소속은 30명이었으며 나머지 580명은 일반인이었다.

기소된 선거사범 427명의 소속정당별 현황을 보면 통일국민당이 60명(14.1%)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민주당 43명(9.4%), 민주자유당 38명(8.9%), 기타 정당 5명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281명은 무소속(4명)과 일반인(277명)이었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가장 많았으나 기소는 반대로 민주자유당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선거사범의 재판결과 실행을 받은 사람은 6명이었고, 집행유예 114명, 선고유예 46명, 벌금 241명이었다. 무죄도 13명이었다.

31) 대검찰청, 1995, 『1995 4대 지방선거 선거사범백서』, 87쪽

3. 주요 위반사례

가. 금품·음식물 제공

1992년 2월 26일 민주자유당거창군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점심값과 교통비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나누어 준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이강두 민주자유당거창지구당위원장은 공천이 취소되고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강두는 무소속으로 옥중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이강두 당선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제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취지에 대해 “이강두가 지난 2월 지구당 개편대회 때 3,900만 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는 인정되나 이를 받은 사람들이 당원들인 점과 옥중출마로 4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점을 참작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강두 당선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경남 창원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에 찾아가 60명의 유권자 명단을 보여주고 이들이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금품을 요구한 후, 현금 125만 원을 제공받아 배포하려고 한 사람이 검거되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경북 김천에서는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아파트 입주식 겸 노인회관 개관식장에 참석하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100만 원을 기부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 지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음식물을 제공한 두 사람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1992년 2월 부산에서 여성대학을 차려놓고 교양강좌를 통해 2,000여 명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문구가 담긴 노트 등을 배포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었고, 3월 2일 경북의 한 지구당개편대회 참석자들에게 식권을 나눠준 사람이 적발되었다. 3월 3일에는 서울 용산에서 선거운동원 3명이 식당 3곳에서 당원단합대회를 빙자해 지역주민 180여 명에게 돼지갈비·맥주 등 140여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되었다.

나. 불법선전물 등 배부

전남 무안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인 1992년 3월 2일 상가를 방문하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할 안희석 후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안희석의 사진과 약력이 인쇄된 소형인쇄물 20부를 배부한 사람이 적발되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법원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북 울산에서는 후보자 친척이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 기사를 편집·복사하여 배포하였다가 검거되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한 대학생이 주택가의 담벼락 등에 민주자유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 30여 매를 부착하다 검거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충남 당진에서는 민주자유당 김현욱 후보를 비방하는 선전물 3,000여 매를 복사하여 통일국민당원 10여 명에게 살포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진읍 일원의 주택가 등에 수백 매를 배포한 사람이 적발되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전남 목포에서는 한 대학생이 민주자유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스티커 1,000여 매를 휴대하고 다니다가 민주자유당 후보의 선전벽보 얼굴 부위에 이 스티커를 붙여 6곳의 선전벽보를 훼손한 사례가 있었다.

통일국민당의 경산·청도지구당 등 8개 지구당에서 정주영 대표의 저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배부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지구당에 대해 경고처분하였다. 이러한 홍보책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배부한 사례가 있었다.

다. 기타 위법사례

인천 남동구에서는 1992년 3월 12일 통일국민당 이원복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이 소형인쇄물을 배부하고 다니자 이들에게 야유를 보내고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드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사람이 검거되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1992년 3월 6일 민주자유당 김병용 국회의원의 사무실 부설식당에서 주민 6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단속하러 현장에 간 선거관리위

원회 직원 4명을 폭행한 민주자유당 당원 2명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증거채집을 하기 위하여 비디오 촬영을 하자 이를 제지하고 카메라를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는 집회신고 없이 재야단체 회원 및 대학생 약 150명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특정 후보자 6명을 지지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람이 적발되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제8절 선거결과

1. 선거인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는 1992년 3월 7일부터 12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하였다. 선거인명부 등재 대상자는 1972년 3월 25일 이전 출생자(선거일 현재 20세 이상)로서 선거권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열람·공람과 이의신청, 명부누락자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18일 확정되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명부누락자 구제 제도가 도입되어 16,634명의 누락자가 구제를 받아 선거인명부에 추가 등재되었다.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인수는 29,003,828명이었다. 이 선거인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1991년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보다 920,804명이 늘어나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5-9〉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인구수 및 선거인수

(단위: 명)

인구수	선거인수			비 고
	계	남자	여자	
43,862,069	29,003,828 (756,832)	14,296,473 (717,745)	14,707,355 (39,087)	

※ () 안은 부재자선거인수로 본수에 포함됨.

시·도별선거인수는 서울이 가장 많은 7,346,986명으로 전체 선거인수의 25.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경기도 4,193,755명(14.5%), 부산 2,552,674명(8.8%), 경상남도 2,458,560명

(8.5%) 등의 순이었다. 가장 선거인수가 적은 곳은 제주도로 323,138명(1.1%)이었다.

부재자신고기간은 1992년 3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이었다. 이 기간 중 부재자신고를 하여 확정된 부재자수는 756,832명이었으며, 전체 선거인수의 2.6%를 차지하였다. 이 부재자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1991년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부재자수보다 113,767명이 늘어나 1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한 사건·사고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선거인 20명을 이중으로 등재한 사례가 있었다. 민주당 이중재 후보 측이 발견하여 해당 동사무소에 알려주었다. 당시는 주민등록 업무가 수작업에서 전산화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주민등록카드와 전산 입력 내용이 불일치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중으로 등재된 선거인들이 투표를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2. 투표

가. 투표상황

1992년 3월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5,187개의 투표구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원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161,179명(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85,208명, 투표사무종사원 75,971명)이었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182,244명이 투표과정을 지켜보았다.

투표결과 선거인수 29,003,828명 중 20,843,482명만이 투표하여 71.9%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투표율은 가장 최근에 실시한 1991년도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 58.9%보다는 높았지만 지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 75.8%보다 3.9% 포인트가 낮아진 것이었다. 또한 제헌 국회의원선거 이후 제14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역대 14번의 국회의원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로는 이전 선거만큼 민주화 등에 관한 뚜렷한 선거쟁점이 없었고, 유권자들의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시·도별 투표율을 보면 제주도가 7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북 78.4%, 강원 78.0%, 경남 77.3%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66.6%였다. 전반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5개 대도시와 수도권인 경기도는 전국 평균 71.9%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평균 이상이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의 투표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대구의 경우에는 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비해 10.2% 포인트 낮아져 가장 하락 폭이 컸고, 부산 8.6%, 광주 7.8%, 충북 7.1%, 대전 6.8% 포인트 등의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반면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서울은 0.1% 포인트 하락하였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1.7% 포인트와 2.1% 포인트가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다.

〈표 5-10〉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비고
29,003,828 (756,832)	20,843,482 (732,923)	8,160,346 (23,909)	71.9 (96.8)	

※ () 안은 부재자수로 본수에 포함됨.

나. 투표관련 사건·사고

1) 동일필적 우편투표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는 기재되지 않고 3명의 필적에 의해 성명만 기재된 우편투표봉투 85매를 발견하였다. 이 우편투표봉투는 모두 인천구치소에서 발송한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 본인이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모두 무효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대리투표는 없었고, 재소자에게 필기도구를 지급하지 않은 구치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우편투표봉투의 성명을 구치소 직원이 대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일 필적으로 작성된 우편투표봉투 14매를 발견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 39명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 다른 4명도 위장전입하여 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의 우편투표는 모두 무효처리하였다.

2) 대리투표

경기 이천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다른 사람의 투표통지표를 가지고 와서 대리투표한 사람이 투표참관인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 사람은 곧바로 도주하였으나 나중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 사람이 투표한 투표지는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었으나, 이미 투표함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무효처리할 수가 없었다.

3) 투표구위원장 사인 미달인

서울 성동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구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직무를 대리하던 부위원장이 사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30매 정도를 교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 투표지는 개표과정에서 모두 유효처리하였다.

4) 투표사무원 폭행

충남 당진군 석문면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투표를 하지 않은 세대주 20명의 명단을 발췌하여 석문면사무소의 총무계장에게 투표참여 계도방송을 하여 줄 것을 전화로 부탁하다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4명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투표사무원은 순수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선거운동원들은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표소 안으로 들어와 투표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로 오인한 우발적인 사건이고, 피해정도가 미약하며, 원만히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여 폭행에 가담한 선거운동원들을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3. 개 표

1992년 3월 24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한 뒤 전국 308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시작되었다. 개표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원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28,677명(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436명, 개표사무종사원 26,241명)이었고,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10,113명이 개표과정을 지켜보았다. 개표참관인수는 선거법 개정으로 무소속후보자의 개표참관인수가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면서 제13대 국회

의원선거의 개표참관인수(8,856명)보다 14.2%(1,257명)가 증가하였다.

개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경기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1992년 3월 24일 오후 7시 5분에 시작되었다. 개표가 가장 늦게 끝난 곳은 서울 동대문구을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3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끝났다. 개표가 끝나자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299명이 결정되었다.



▶ 개표장면

가. 정당별 득표상황 및 당선인

개표결과 선거에 참여한 6개 정당 중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등 3개 정당은 지역구와 전국구에서 모두 당선자를 냈다. 신정치개혁당은 지역구에서만 1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공명민주당과 민중당은 당선자를 1명도 내지 못했다. 무소속은 21명이 당선되었다. 구체적인 정당별 당선자수 및 득표율은 <표 5-11>과 같다.

1)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유효투표총수의 38.5%를 득표하여 지역구에서 116명, 전국구에서 33명 등 총 149명이 당선되었다. 이 당선자수는 국회의석 과반수에 1석이 모자라는 것이어서 제13대

〈표 5-11〉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자수 및 득표상황

(단위: 명, 표)

정당별 구분	당선자수			득표수	득표율(%)
	계	지역구	전국구		
합 계	299	237	62	20,583,812	100.0
민주자유당	149	116	33	7,923,719	38.5
민주당	97	75	22	6,004,577	29.2
통일국민당	31	24	7	3,574,419	17.4
신정치개혁당	1	1	-	369,044	1.8
공명민주당	-	-	-	21,007	0.1
민중당	-	-	-	319,041	1.5
무소속	21	21	-	2,372,005	11.5

에 이어 또다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자유당은 12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냈으로써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가장 고르게 당선자를 냈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9개 지역에서는 그 지역 의석수의 과반수를 당선시켰고, 민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전북에서도 2명을 당선시켰다. 그러나 광주 전남 제주 3개 지역에서는 1명도 당선시키지 못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지역구에서 김종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윤환 사무총장과 나웅배 정책위의장 등의 당직자가 당선되었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이종찬 서정화(徐廷和) 이순재 박명환 박범진 김기배 서청원 김덕룡, 부산에서 허삼수 김형오 박관용 최형우 신상우, 대구에서 김복동 박준규 정호용 강재섭 박철언, 인천에서 서정화(徐廷華), 대전에서 남재두, 경기도에서 이인제 이한동, 강원도에서 심명보, 충북에서 박준병, 경북에서 이상득, 경남에서는 강삼재 박희태 후보 등이 당선되었다. 특히 취약지역이던 전북에서 양창식 황인성 후보가 당선되어 주목을 받았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로는 6선 의원인 이병희 의원(수원 장안구), 4선의 남재희 국회의원리위원장(서울 강서구을), 박용만 국회 행정위원장(서울 성동구병)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정

동성(경기 여주), 이대엽(경기 성남 수정구), 유한열(충북 금산), 김종권(경북 울진), 이치호(대구 수성구을), 황병태(서울 강남구갑) 후보 등도 낙선하였다.

전국구에서는 김영삼·박태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재광, 노재봉, 권익현, 이만섭, 정석모, 최승렬, 김종인, 김영진, 강신옥, 이명박, 서상목 후보 등 전국구 순위 33번 후보자까지 당선되었다.

2) 민주당

민주당은 유효투표총수의 29.2%를 득표하여 지역구에서 75명, 전국구에서 22명 등 총 97명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자유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의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은 9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냄으로써 민주자유당 다음으로 고르게 당선자를 냈다. 특히 서울 광주 전북 전남 등 4개 지역에서는 그 지역 의석수의 과반수를 당선시켰다. 특히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충북 충남 대전 지역에서 총 4명을 당선시켰다. 그러나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인사로는 서울에서 정대철 조세형 이철 신계륜 유인태 조순형 김상현 김영배 박계동 한광옥 이해찬 홍사덕 이부영, 광주에서 신기하, 경기에서 문희상 이석현 안동선 원혜영 제정구, 전북에서 장영달 이협 최낙도 정균환, 전남에서 권노갑 허경만 신순범 박상천 김봉호 한화갑 후보 등이 있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에는 김정길 원내총무(부산 영도구), 노무현 대변인(부산 동구)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강금식(서울 성동구갑), 이상수(서울 중랑구갑), 이중재(서울 강남구갑), 김현규(서울 마포구을), 조찬형(전북 남원) 후보 등이 낙선하였다.

전국구에서는 당 공동대표인 김대중·이기택 후보를 비롯하여 강창성 장재식 이우정 장준익 김충현 김옥두 김말룡 박지원 후보 등 전국구 순위 22번까지 당선되었다.

3) 통일국민당

통일국민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7.4%를 득표하여 지역구에서 24명, 전국구에서 7명 등 총 31명의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통일국민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

통일국민당은 서울 대구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8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강원도에서 4명을 당선시켰다. 이는 정주영 대표의 고향이 강원도였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인사로는 서울에서 김동길 조순환, 경기도에서 정주일, 강원도에서 손승덕, 경북에서 이학원, 경남에서 차수명 정몽준 후보 등이 있었다. 전국구에서는 정주영 당 대표를 비롯하여 문창모 양순직 조윤희 최영한 이건영 정장현 후보 등 전국구 순위 7번까지 당선되었다.

4) 기타 정당 및 무소속

선거에 참여한 6개 정당 중 앞에서 기술한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등 3개 정당을 제외하고 당선자를 낸 정당은 신정치개혁당뿐이었다. 신정치개혁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8%를 득표하였고, 지역구에서 박찬중 후보(서울 서초구갑) 1명만 당선되었다.

나머지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은 각각 유효투표총수의 1.5%와 0.1%만을 득표하였으나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두 당은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30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무소속후보자들은 총 226명이 출마하여 21명이 당선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무소속 당선자 9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무소속 당선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북으로 5명이 당선되었고, 경남 4명, 제주 3명, 대전 강원 충남이 각각 2명, 부산 대구 인천이 각각 1명이 당선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3개의 지역구 모두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되어 주목을 받았다.

무소속 당선자로는 서석재(부산 사하구), 조진형(인천 북구갑), 강창희(대전 중구), 허화평(포항시), 하순봉(경남 진주시), 이강두(경남 거창군), 현경대(제주 제주시), 변정일(제주 서귀포시·남제주군) 후보 등이 있었다. 각 정당별 당선자 명단은 <표 5-12>와 같고, 선거구별 후보자 득표상황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표 5-1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자 명단

정당별	당선자수	당선자 성명 (가나다 순)
민주 자유당	149	<p>〈지역구〉 강삼재, 강신조, 강우혁, 강재섭, 곽정출, 구지춘, 권해옥, 금진호, 김기도, 김기배, 김덕룡, 김동권, 김문기, 김복동, 김봉조, 김영광, 김영구, 김영일, 김용채, 김용태, 김용환, 김윤환, 김윤환, 김인영, 김재순, 김정수,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종위, 김진재, 김채겸, 김한규, 김형오, 나오연, 나웅배, 남재두, 남평우, 노승우, 노인환, 류돈우, 문정수, 민태구, 박경수, 박관용, 박명근, 박명환, 박범진, 박세직, 박우병, 박정수, 박주천, 박준규, 박준병, 박철언, 박희태, 배명국, 백남치, 서수중, 서정화, 서정화, 서청원, 송두호, 신경식, 신상식, 신상우, 신재기, 심명보, 심정구, 안찬희, 양창식, 오세응, 오장섭, 유수호, 유승규, 유학성, 유희수, 이금규, 이민섭, 이상득, 이성호, 이세기, 이순재, 이승운, 이영문, 이영창, 이웅희, 이인제, 이자현, 이종근, 이종찬, 이춘구, 이택석, 이한동, 이해구, 임사빈, 장경우, 장영철, 정동호, 정상천, 정순덕, 정영훈, 정재문, 정재철, 정창현, 조부영, 조영장, 최재욱, 최형우, 함석재, 허삼수, 허재홍, 황낙주, 황명수, 황윤기, 황인성 (이상 116명)</p>
		<p>〈전국구〉 강신옥, 강용식, 강인섭, 강춘자, 곽영달, 구천서, 권익현, 김광수, 김동근, 김영삼, 김영수, 김영진, 김재광, 김종인, 노인도, 노재봉, 박구일, 박재홍, 박태준, 서상목, 안무혁, 윤태균, 이만섭, 이명박, 이원초, 이현수, 이환의, 정석모, 정시채, 주양자, 최병렬, 최상용, 최윤지 (이상 33명)</p>
민주당	97	<p>〈지역구〉 강수림, 강철선, 권노갑, 김덕규, 김명규, 김병오, 김봉호, 김상현, 김영배, 김영진,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인곤, 김장곤, 김종완, 김충조, 김태식, 문희상, 박계동, 박광태, 박규식, 박상천, 박석무, 박 실, 박태영, 손세일, 송천영, 신계륜, 신기하, 신순범, 안동선, 오 탄, 원혜영, 유인태, 유인학, 유준상, 이경재, 이규택, 이길재, 이부영, 이석현, 이영권, 이원형, 이윤수, 이 철,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춘원, 장석화, 장영달, 정균환, 정기호, 정대철, 정상용, 제정구, 조세형, 조순승, 조순형, 조홍규, 채영석, 최두환, 최락도, 최재승, 하근수, 한광욱, 한영수, 한화갑, 허경만,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황의성 (이상 75명)</p>
		<p>〈전국구〉 강창성, 강희찬, 국종남, 김대중, 김말용, 김옥두, 김옥천, 김충현, 나병선, 박은태, 박 일, 박정훈, 박지원, 신진욱, 양문희, 이기택, 이동근, 이우정, 이장희, 장기욱, 장재식, 장준익 (이상 22명)</p>
통일 국민당	31	<p>〈지역구〉 김동길, 김두섭, 김범명, 김진영, 김찬우, 김해석, 김효영, 박제상, 박희부, 손승덕, 송광호, 송영진, 원광호, 윤영탁, 윤항렬, 이학원, 이호정, 정몽준, 정주일, 정태영, 조순환, 조일현, 차수명, 차화준 (이상 24명)</p>
		<p>〈전국구〉 문창모, 양순직, 이건영, 정정현, 정주영, 조윤희, 최영한 (이상 7명)</p>
신정당	1	〈지역구〉 박찬중
무소속	21	〈지역구〉 강창희, 김길홍, 김상구, 김정남, 김호일, 박현기, 변정일, 서석재, 성무용, 양정규, 이강두, 이상재, 이승무, 이재환, 정필근, 정호용, 조진형, 최돈용, 하순봉, 허화평, 현경대
계	299	

나. 기타 개표결과 상황

당선자 중 최다득표자는 부산 동래구갑선거구의 자유민주당 박관용 후보로 92,353표를 얻었고, 최소득표 당선자는 전남 장흥군선거구의 민주당 이영권 후보로 13,704표를 얻고도 당선되었다. 최소득표차 당선자는 울산 중구선거구의 통일국민당 차화준 후보로 차점자인 민주자유당 김태호 후보보다 11표를 더 얻어 당선되었다. 최고령 당선자는 전북 임실군·순창군선거구의 홍영기 후보로 74세였고, 최연소 당선자는 강원 홍천군선거구의 조일현 후보로 37세였다.

당선자들의 당선횟수별 분포를 보면 초선이 당선자 전체의 39.1%인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선 86명(28.8%), 3선 46명(15.4%), 4선 29명(9.7%), 5선 9명(3.0%), 6선 6명(2.0%), 7선 3명(1.0%), 8선 2명(0.7%), 9선 1명(0.3%)이었다. 최다선인 9선은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였다.

당선자들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정치인이 2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회사원 10명, 변호사 9명, 상·공·광업 6명, 교육자 4명, 의사·약사 3명, 건설업 2명이었으며 기타 24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70명, 60대 이상 42명, 30대 8명이었다.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296명이었고, 여자는 3명이었다. 여자 당선자는 모두 전국구였고, 지역구 당선자는 1명도 없었다.

다. 개표관련 사건·사고

1) 부재자투표함 개표 방해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이지문 중위가 군부재자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폭로한 사건의 여파로 부재자 투표함을 개함하는 과정에 여러 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서울 동대문구갑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민주당 개표참관인들이 부재자투표함 개함을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며 개함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개표가 한동안 중단되었다. 성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도 부재자투표함을 열지 못하게 하여 개표가 두 시간 정도 중단되었다. 성동구을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접수된 부재자투표수와 회송된 우편투표봉투수가 맞지 않아 두 차례나 재검표하였다.

2) 개표결과 불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점거·농성

서울 노원구을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민주자유당 김용채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자 2위 득표자인 민주당 임채정 후보 측의 참관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개표소에서 4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 노원구을지구당 당원 70여 명은 개표가 종료되자 곧바로 1992년 3월 25일 오후 4시경에 재개표를 요구하며 노원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후 민주당 임채정 후보는 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검표한 결과 임채정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나와 임채정 후보가 최종 당선자가 되었다(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4. 선거소송” 참조).

3) 무더기표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칠곡군 지천면 제2투표구의 투표함을 열자 이른바 무더기표 89매가 나왔다. 무더기표는 투표지 5매·8매·6매·14매가 각각 한 뭉치로 접어져 있었고, 2매씩 한 뭉치로 접혀진 것이 56매였다. 민주당 도호기 후보 측의 개표참관인들이 이를 발견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무더기표는 모두 민주자유당 장영철 후보에게 기표되어 있었는데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투표로 보고 모두 무효처리 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천면 제2투표구의 투표를 관리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을 사위투표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수사 후 투표사무원 1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의 개표과정에서 동영면 제2투표구의 투표함을 비롯하여 4개 투표함의 투입구가 봉인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다. 민주당 도호기 후보 측의 개표참관인들은 이 투표함을 증거보전해야 한다며 개표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민주당 참관인들이 모두 퇴장하였다. 민주당 참관인들이 모두 퇴장하자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 4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참관 하에 나머지 개표를 모두 마쳤다.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 도호기 후보가 이런 이의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취하하였다.

4. 선거소송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선무효소송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무효소송은 1992년 4월 23일까지,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구에 따라 4월 24일까지 제기하였다.

가. 선거소송 제기상황

선거소송은 총 31건이 제기되었다. 이 소송건수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제기건수 26건보다 5건이 늘어난 것이었다. 선거소송이 늘어난 이유는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이지문 중위가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을 폭로한 사건(구체적인 내용은 “제4절. 3. 선거쟁점” 참조)의 영향 때문이었다. 즉 낙선한 후보자들이 군부재자투표의 위법을 이유로 선거소송을 많이 제기하였다.

소송 종류별로는 선거무효소송이 10건, 당선무효소송이 4건,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이 17건이었다. 주요 청구이유는 군부재자투표 과정의 위법(17개 선거구), 위법선거운동(16개 선거구), 개표 부정확(10개 선거구), 관권개입(5개 선거구), 입후보등록제한자의 후보등록(4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묵인·방치(3개 선거구), 위장전입(1개 선거구), 투표통지표 발급위법(1개 선거구) 등이었다. 특히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을 폭로한 사건의 영향으로 우편투표봉투의 동일필적 여부 등에 관한 것이 많았다. 그 외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등재 및 투표통지표 발급(서초구을), 무더기표 발견(성주군·칠곡군) 등도 청구의 원인이었다. 표차가 적은 선거구(울산시 중구, 노원구을 등)에서는 개표의 부정확을 청구이유로 하여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별 현황을 보면 민주당이 전체인원의 49%인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민주자유당이 6명(18%), 무소속 6명(18%), 통일국민당 4명(12%), 신정치개혁당 1명(3%) 등의 순이었다.

나. 선거소송 처리결과

대법원에 제기된 31건의 선거소송 중 소송진행 과정에 9건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를 취하하거나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최종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22건이었다. 법원의 판결

을 받은 22건 중 20건은 기각되고, 1건은 각하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소송제기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은 서울 노원구을선거구 민주당 임채정 후보가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이었다. 당초 노원구을선거구의 개표결과 민주자유당 김용채 후보는 40,551표를 얻어 40,515표를 얻은 민주당 임채정 후보보다 36표가 더 많아 당선되었다. 낙선한 임채정 후보는 개표과정에서 본인에게 기표한 유효표를 김용채 후보 쪽으로 집계하였거나 무효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1992년 4월 10일 소송제기와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1992년 7월 20일 증거보전된 투표지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임채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 100매 1묶음이 김용채 후보의 유효표로 잘못 집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일부 유효표와 무효표가 잘못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어 임채정 후보는 당초 득표수보다 87표가 늘어나 40,602표가 되었다. 반면 김용채 후보는 118표가 줄어들어 40,433표가 되었다. 대법원은 1992년 9월 8일 노원구을선거관리위원회가 김용채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 임채정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2년 7월 20일 법원의 투표지 검증종료 후 그 결과를 수용하면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였고, 조사반을 편성하여 개표사무의 하자 또는 부정의혹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투표집계의 잘못이 조직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고, 개표사무원의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표 5-13〉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을선거구 투표지 검증결과

(단위: 표수)

구 분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 (1992. 3. 24)	법원의 검증결과 (1992. 7. 20)	증감
임채정 후보	40,515	40,602	증 87
김용채 후보	40,551	40,433	감 118

기각된 20건의 주요 기각사유는 ‘불법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법선거운동이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조작 등 고의적인 선거부정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당락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등이었다. 특

히 군부재자투표의 절차위법 등을 이유로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부 군부대의 부재자투표에 부분적인 위법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 가지고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며 대부분 기각했다.

각하된 1건의 각하사유는 ‘지역구 후보자는 전국구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는 것이었다. 즉 지역구 후보자가 ‘전국구의원의 당선배분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고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지역구 후보자는 전국구의원 선거의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것이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구체적인 선거소송 처리결과는 <표 5-14>와 같다.

<표 5-14>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 처리결과

선거구명	소송 구분	소송 당사자		소송 청구원인	처리결과(사유)
		원 고	피 고		
서울 노원구을	선거 및 당선무효	민주당 임채정	선관위 위원장	○개표의 부정확 및 위법 선거운동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2. 9. 8 당선무효 (대법원의 투표지 검증결과 각 후보자의 득표수 변동)
”	당선무효	”	당선자 김용채	”	1992. 8. 11 취하
”	선거무효	신정치개혁당 전대열	선관위 위원장	”	1992. 9. 8 기각 (선거법위반 자체가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음)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 및 당선무효	○민주당 김민석 ○민주당 김대중	○선관위 위원장 ○당선자 나웅배	”	1992. 12. 22 취하 간주
서울 서초구을	선거 및 당선무효	○민주당 안동수 ○민주당 김대중	선관위 위원장	”	1993. 5. 25 기각 (대법원의 투표지 검증결과 득표순위 변동 없고, 부재자 우편투표봉투의 성명 등은 반드시 자필을 요하는 것이 아님)
”	당선무효	안동수 외 1인	당선자 김덕룡	”	1993 5. 25 기각
서울 서대문구갑	선거 및 당선무효	민주자유당 강성모	○선관위 위원장 ○당선자 김상현	위법선거운동	1992. 11. 20 기각 (위법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 동대문구갑	선거무효	민주당 최훈	선관위 위원장	○개표의 부정확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2. 11. 24 기각 (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부재자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 강동구을	"	민주당 장충준	"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2. 9. 1 취하
서울 송파구갑	"	민주당 김희완	"	○위법선거운동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2. 11. 24 기각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구 수성구갑	선거 및 당선무효	○민주당 권오선 ○통일국민당 이상희 ○무소속 박주철	○선관위 위원장 ○당선자 박철언	○투·개표 과정의 위법 ○관권개입 등 위법선거운동	1993. 1. 15 취하 간주
대구 수성구을	"	무소속 여동영	○선관위 위원장 ○당선자 운영탁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선거운동 방치 ○국회의원선거법 제72 조(각종 집회 등의 제 한) 위헌	1992. 10. 16 기각 (원고주장의 증거력 부족)
인천 남동구	"	통일국민당 이원복	선관위 위원장	○개표의 부정확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3. 5. 27 기각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인천 남구갑	선거무효	민주당 명화섭	선관위 위원장	○위법선거운동 및 투표 과정의 위법 ○부재자 투표 위법	1992. 12. 4 기각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경기 안양시갑	선거 및 당선무효	민주당 이석용	"	○개표의 부정확 ○위법선거운동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2. 11. 24 기각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경기 이천군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국민당 이희규	○선관위 위원장 ○당선자 이영문	○투·개표 과정의 위법 (대리투표) 및 관권개입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법선거운동 방치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2. 11. 10 취하
경기 수원시 권선구갑	선거무효	민주당 김정태	선관위 위원장	○투·개표 과정의 위법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2. 10. 16 기각 (위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부재자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경기 고양시	"	민주당 이교성	"	○위법선거운동 및 군부 재자투표 위법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후보등록	1992. 10. 16 기각 (부재자투표가 선거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법위반행위 가 바로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언론인으로 볼 수 없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선무효	무소속 손주향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전국국회의원 당선배분결 정 헌법에 위배	1992. 7. 22 각하 (지역구후보자가 전국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의 효력을 다룰 수 없음)
전북 고창군	선거무효	민주자유당 이호중	선관위 위원장	위법선거운동	1992. 12. 22 기각 (위법행위를 입 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전북 남원시· 남원군	"	민주당 조찬형	"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3. 2. 12 기각 (부재자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경북 경주군	선거 및 당선무효	통일국민당 임진출	"	○투·개표 과정의 위법 ○관권개입 등 위법선거 운동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3. 4. 27 기각 (위법행위를 입 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경북 영양군· 봉화군	선거 및 당선무효	무소속 오한구	○선관위 위원장 ○당선자 강신조	○관권개입 및 투·개표 과정의 위법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2. 10. 20 기각 (위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투·개표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경북 성주군· 칠곡군	선거무효	민주당 도호기	선관위 위원장	○관권개입 및 투표과정 의 위법(무더기표)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3. 1. 9 취하 (투표지 검증결과 당락변화 없었음)
경북 영천시· 영천군	선거 및 당선무효	민주자유당 정동윤	"	위법선거운동	1992. 9. 17 취하
경남 울산시 중구	"	민주자유당 김태호	○선관위 위원장 ○당선자 차화준	개표의 부정확	1992. 10. 30 취하 간주 (투표지 검증결과 당락변화 없었음)
경남 울산군	"	민주당 권기술	○선관위 위원장 ○당선자 김채겸	○군부재자투표 위법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후보등록	1992. 11. 7 취하 간주
경남 마산시 합포구	"	민주자유당 백찬기	선관위 위원장	○개표의 부정확 및 위법 선거운동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후보등록	1992. 12. 11 기각 (위법성 정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언론이라 볼 수 없음)
경남 합천군	"	무소속 박판제	○선관위 위원장 ○당선자 권해옥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법선거운동 방치 ○위장전입 및 투표과정 위법 ○군부재자투표 위법	1993. 5. 11 기각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사유는 당선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위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함)
경남 마산시 회원구	당선무효	무소속 김영길	당선자 강삼재	위법선거운동	1992. 11. 20 기각 (선거운동과정의 선거범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이 될 수 없음)
제주 북제주군	선거 및 당선무효	민주자유당 이기빈	○선관위 위원장 ○당선자 양정규	위법선거운동	1992. 10. 27 기각 (위법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음)

※ 피고 중 '선관위 위원장' 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함.

5. 선거결과 특징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특징으로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는 여소야대가 재현되었고,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들 수 있었다.

가. 여소야대 재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전체의석 299석 중 과반수에 1석이 부족한 149석을 얻어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여소야대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특히 민주자유당은 1990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및 신민주공화당 3당이 합당할 당시에는 헌법개정 정도 의결할 수 있는, 전체의석 3분의 2를 넘는 216석의 거대 여당이었는데 선거결과 약 70여석을 잃고 과반수에도 미달하였다. 득표율에 있어서도 민주자유당은 합당 전 3개 정당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의 산술적 합계(73.4%)의 절반수준인 38.5%밖에 얻지 못하였다.

여소야대 현상이 다시 나타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민주자유당 내의 계파 간 갈등, 유권자들의 거대여당 견제심리, 안기부 직원의 선거개입 사건,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폭로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신생 통일국민당과 무소속후보자들이 선전한 것도 여소야대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었다. 통일국민당은 선거를 앞두고 창당되었고, 재벌정당이라는 일부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31석을 차지하였다. 무소속후보자는 21명이 당선되어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무소속 당선자(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민주자유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과 경남에서 무소속후보자들이 9명이나 당선되어 그만큼 민주자유당 의석을 침식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보름 정도가 지난 1992년 4월 9일 무소속 이승무 당선자(점촌시·문경군)를 시작으로 김길홍(안동시)·최돈웅(강릉시) 등 무소속 당선자 10명이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여 제14대 국회 개원(1992년 6월 29일) 전에 민주자유당의 의석이 159석이 되어 여대야소로 바뀌었다.

나. 지역주의 투표성향 고착화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개월 전인 1987년 12월 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심하게 표출되었다. 즉 민주정의당은 노태우 총재의 연고지인 대구·경북에서, 평화민주당은 김대중 전 총재의 연고지인 광주·전남·전북에서,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전 총재의 연고지인 부산·경남에서, 신민주공화당은 김종필 총재의 연고지인 충청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었다(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5집』, “제2장. 제8절 선거결과” 참조).

이로부터 4년 뒤에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4대 대통령선거 전에 치러지고,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만든 후 처음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이며,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에서 투표성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 결과가 주목되었다.

선거결과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나타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다시 나타났다. 즉,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자기 당 최고지도자의 연고지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상대편 정당의 연고지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굳어지는 듯 하였다.

민주자유당은 <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의 연고지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전체의석 32석 중 22석,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연고지인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전체의석 39석 중 31석을 차지해 두 지역 모두 전체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김종필 최고위원의 연고지인 대전·충남·충북지역에서는 전체의석 28석의 절반인 14석을 차지했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연고지인 부산에서는 전체의석 16석 중 15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는 전체의석 39석 중 2석밖에 얻지 못하였다.

반면에 민주당은 김대중 대표의 연고지인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전체의석 39석 중 37석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민주자유당의 지지기반인 부산·대구·경남·경북지역에서는 전체의석 57석 중 1석도 얻지 못할 정도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통일민주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민주자유당이나 민주당과 달리 지역주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정주영 대표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전체의석 14석 중 4석을 차지하여 다른

시·도보다 높은 28.6%의 의석점유율을 보임으로써 통일민주당도 지역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나타난 것은 유권자들의 지역 연고주의 심리, 특정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내지는 피해의식, 정치인들의 득표전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1990년 3당 합당으로 형성된 호남 대 비호남의 대결구도가 지역주의 투표성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었다.

〈표 5-15〉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각 정당의 시·도별 당선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37	44	16	11	7	5	6	31	14	9	14	14	19	21	23	3
민주자유당	116	16	15	8	5	1		18	8	6	7	2		14	16	
민주당	75	25			1	2	6	8		1	1	12	19			
통일국민당	24	2		2				5	4	2	4			2	3	
신정치개혁당	1	1														
무소속	21		1	1	1	2			2		2			5	4	3

제9절



보궐선거



제14대 국회의원의 임기(1992. 5. 30 ~ 1996. 5. 29) 중에 전국구 35명, 지역구 21명 등 총 56명의 국회의원이 궐원되었다. 궐원된 전국구의원석은 후임자 31명이 의석을 승계받았고, 궐원된 11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1.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승계

전국구국회의원은 퇴직³²⁾ 22명, 사직 11명, 사망 2명 등 총 35명이 궐원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는 전국구국회의원이 총 4명이 궐원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었다.

제14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 전국구국회의원의 궐원이 많았던 이유는 “전국구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해산·합당이나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당하는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퇴직” 되도록 선거법에 규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제14대 국회가 개원도 되기 전인 1992년 5월, 통일국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조윤형 전국구당선자가 통일국민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에 입당하자 의석승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일어났다³³⁾. 9개월 후인 1993년 2월에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정주영 통일국민당 대표가 정계은퇴를 하자 통일국민당 전국구국회의원들이 대거

32) '퇴직'은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것이고, '사직'은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그 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통일국민당 전국구후보자명부상 조윤형 의원의 다음 순위인 강부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석승계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국구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없는 이상 전국구의원 승계결정의 작위행위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소제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다. (1994. 4. 28 92헌마153)

민주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전국구국회의원들의 당적변경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전국구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해산·합당이나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옮길 경우 강제로 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1995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하는 과정에 많은 전국구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즉,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후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여 정계에 복귀했고, 민주자유당 김종필 대표가 1995년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후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함에 따라 여기에 합류하기 위하여 그들을 지지하던 민주당 또는 민주자유당 내의 많은 전국구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다(‘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6집』 참조). 이런 요인으로 인해 제14대 전국구국회의원의 꺾임이 많았던 것이었다.

전국구국회의원이 꺾임되면 그 국회의원이 선거당시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승계자를 결정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표 5-16>과 같이 의석이 승계되었다. 다만, 1996년 3월 5일 퇴직한 배길량 의원 등 4명의 꺾임에 대해서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민주자유당 전국구후보자명부상 더 이상 의석을 승계받을 후보자가 없어서 의석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5-16〉 제14대 전국구국회의원 꺾임 및 의석승계 상황

연번	꺾임자			승계자	
	소속정당	성명	꺾임일자 및 사유	성명	승계일자
1	민주자유당	김영삼	1992. 10. 15 사직	조용직	1992. 10. 16
2	민주자유당	박태준	1992. 12. 26 사직	구창림	1992. 12. 29
3	민주자유당	김재광	1993. 1. 3 사망	박근호	1993. 1. 8
4	민주당	김대중	1993. 1. 6 사직 (정계은퇴)	남궁진	1993. 1. 8
5	민주자유당	김영수	1993. 2. 27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위해 사직	유성환	1993. 3. 31
6	통일국민당	정주영	1993. 2. 27 사직 (정계은퇴)	강부자	1993. 3. 3
7	민주자유당	이원조	1993. 5. 29 사직	이재명	1993. 6. 1

8	민주자유당	김종인	1994. 9. 12 동화은행 사건으로 피선거권 상실	정옥순	1994. 9. 15
9	민주자유당	최병렬	1994. 11. 2 서울시장에 임명되어 퇴직	김찬두	1994. 11. 4
10	민주자유당	정석모	1995. 2. 9 탈당으로 퇴직	김사성	1995. 2. 15
11	민주자유당	노재봉	1995. 2. 27 탈당으로 퇴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이연석	1995. 3. 2
12	민주당	박지원	1995. 8. 30 사직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배기선	1995. 11. 7
13	민주자유당	구창림	1995. 10. 18 탈당으로 퇴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이민현	1995. 10. 19
14	민주자유당	최운지	1995. 10. 26 탈당으로 퇴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이수담	1995. 10. 27
15	민주자유당	구천서	1995. 10. 31 사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배길량	1995. 11. 7
16	통일국민당	조운형	1996. 2. 2 사망 (사망 당시 민주당 소속)	이용준	1996. 2. 7
17	신한국당	최상용	1996. 2. 7 탈당으로 퇴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김정숙	1996. 2. 16
18	신한국당	조용직	1996. 2. 22 탈당으로 퇴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김현배	1996. 2. 29
19	신한국당	박재홍	1996. 2. 26 탈당으로 퇴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박승웅	1996. 2. 29
20	민주당	김옥두	1996. 3. 2 사직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최병욱	1996. 3. 8
21	민주당	남궁진	1996. 3. 2 사직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장정곤	1996. 3. 8
22	신한국당	주양자	1996. 3. 2 탈당으로 퇴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진경택	1996. 3. 8
23	민주당	장재식	1996. 3. 1 탈당으로 퇴직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김유진	1996. 3. 8
24	민주당	김충현	1996. 3. 1 탈당으로 퇴직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서호석	1996. 3. 8
25	민주당	나병선	1996. 3. 2 탈당으로 퇴직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장광근	1996. 3. 8
26	민주당	박정훈	1996. 3. 2 탈당으로 퇴직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박명서	1996. 3. 8
27	신한국당	김광수	1996. 3. 4 탈당으로 퇴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허세욱	1996. 3. 8
28	민주당	배기선	1996. 3. 4 탈당으로 퇴직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한원석	1996. 3. 8
29	민주당	이우정	1996. 3. 6 사직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김용덕	1996. 3. 8
30	민주당	장준익	1996. 3. 13 탈당으로 퇴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정양숙	1996. 3. 14
31	민주당	신진욱	1996. 3. 21 탈당으로 퇴직 (무소속 출마)	고홍길	1996. 3. 27
32	신한국당	배길량	1996. 3. 5 탈당으로 퇴직 (자유민주연합 입당)	(미승계)	-
33	신한국당	강신욱	1996. 3. 21 탈당으로 퇴직 (무소속 출마)	(미승계)	-
34	신한국당	이수담	1996. 3. 22 탈당으로 퇴직 (무소속 출마)	(미승계)	-
35	신한국당	이민현	1996. 3. 25 탈당으로 퇴직 (무소속 출마)	(미승계)	-

※ '신한국당' 은 1996년 2월 6일 민주자유당이 당명을 변경한 것임.

2.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은 사직 13명, 사망 5명,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퇴직 3명 등 총 21명이 궐원되었다. 제13대 지역구국회의원의 궐원은 5명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었다. 제14대 지역구국회의원의 사직이 많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 1993년 2월 25일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 재산축적의 의혹이 제기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직했기 때문이었다(재산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6집』 제2장 참조). 둘째, 1995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직했기 때문이었다.

지역구국회의원이 궐원된 21개 선거구 중 11개 선거구에서는 1993년 4월 23일부터 1994년 8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보궐선거(재선거는 없었고 모두 보궐선거였음)가 치러졌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선거구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지역구국회의원의 궐원 및 보궐선거 실시상황은 <표 5-17>과 같다.

<표 5-17> 제14대 지역구국회의원 궐원 및 보궐선거 현황

선거일	선거구명	궐원 사유
1993. 4. 23	부산 동래구갑	• 1993. 2. 27 민주자유당 박관용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위하여 사직
	부산 사하구	• 1993. 1. 29 민주자유당 서석재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로 퇴직
	광명시	• 1993. 1. 25 통일국민당 윤항렬 의원 사망
1993. 6. 11	명주·양양군	• 1993. 3. 31 민주자유당 김문기 의원 재산공개파문으로 사직
	철원·화천군	• 1993. 3. 31 민주자유당 김재순 의원 재산공개파문으로 사직
	예천군	• 1993. 3. 31 민주자유당 유학성 의원 재산공개파문으로 사직
1993. 8. 12	대구 동구을	• 1993. 6. 30 무소속(전민주자유당) 박준규 의원 재산공개 파문으로 사직
	춘천시	• 1993. 5. 22 통일국민당 손승덕 의원 사망

1994. 8. 2	수성구갑	• 1994. 6. 28 통일국민당 박철언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6억 원)로 퇴직
	영월·평창군	• 1994. 5. 24 민주자유당 심명보 의원 사망
	경주시	• 1994. 5. 15 민주자유당 서수중 의원 사망
미 실시	안양시갑	• 1995. 6. 7 민주자유당 이인제 의원 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직
	부산 북구갑	• 1995. 6. 7 민주자유당 문정수 의원 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직
	순천시	• 1995. 6. 7 민주당 허경만 의원 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직
	서초구갑	• 1995. 6. 7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의원 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직
	안산시·웅진군	• 1995. 6. 10 민주자유당 장경우 의원 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직
	동두천·양주군	• 1995. 6. 10 민주자유당 임사빈 의원 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직
	인천 남동구	• 1995. 6. 10 민주자유당 강우혁 의원 지방선거 출마 위해 사직
	관악구을	• 1995. 6. 30 민주당 이해찬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취임 위해 사직
	강동구갑	• 1995. 11. 11 민주당 이부영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징역1년 집행유예 2년)로 퇴직
	달성·고령군	• 1996. 2. 10 자유민주연합 구자춘 의원 사망

가. 1993. 4. 23 국회의원보궐선거

제14대 국회의원 첫 보궐선거는 부산 동래구갑, 부산 사하구, 경기 광명시선거구 등 3개 선거구에서 1993년 4월 23일 실시(이하 이 절에서 “4·23 보궐선거”라고 한다)되었다. 동래구갑선거구는 박관용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위하여 사직함에 따라, 부산사하구선거구는 민주자유당 서석재 의원이 선거법위반(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때의 후보자 매수사건을 말함.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5집』 제2장 참조)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광명시선거구는 통일국민당 윤항렬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4·23 보궐선거는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실시하는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1) 후보자공천과 입후보 상황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초기 ‘개혁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빨리 공천을 끝냈다. 민주자유당은 부산 동래구갑선거구에 강경식 전 재무장관, 부산 사하구선거구에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 박종웅, 경기 광명시선거구에 손학규 서강대 교수를 각각 공천하였다.

민주당은 당사자의 고사 또는 지구당의 반발로 공천이 쉽지 않았다. 민주당은 1993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잇따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진통 끝에 광명시선거구에 최정택 지구당위원장, 부산 동래구갑선거구에 정인조 지구당위원장, 부산 사하구선거구에 김정길 전 최고위원을 공천하였다.

통일국민당은 경기 광명시 한 곳에만 정순주를 공천하였고, 신정치개혁당은 사하구선거구와 광명시선거구 두 곳에 홍순오·권순필을 각각 공천하였다. 무소속은 사하구선거구에 2명, 광명시선거구에 5명이 출마하였다. 광명시선거구는 총 10명이 출마하여 3개 선거구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불과 두 달 만에 치르게 된 4·23 보궐선거의 선거쟁점은 ‘개혁논쟁’이었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이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보고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작업을 돕기 위해 여당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반면에 민주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견제세력으로서의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법제도의 뒷받침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선거 중반에는 민주당 이동근 의원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새로운 선거쟁점이 되었다. “월간 읍서버지”의 사실상 소유주이기도 한 민주당 이동근 의원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포항제철과 기아그룹으로부터 1억 7,000여만 원의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1993년 4월 16일 검찰에 구속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이동근 의원의 구속은 사이비언론의 척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영삼 정부가 불리한 정국의 국면전환을 위해서 이동근 의원을 구속하였고, 정치 보복적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의 주

장에 의하면 당시 민주자유당 최형우 사무총장이 차남의 경원대학교 부정입학 의혹사건으로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이를 호도하기 위하여 이동근 의원을 구속시켰다는 것이었다.

선거종반까지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가 보궐선거 지역을 방문하여 지지표를 다지고 부동표를 흡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10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광명시선거구는 각 정당들이 집중지원을 하면서 인신공격과 상호비방전이 펼쳐지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

3) 선거결과

4·23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광명시선거구가 41.2%, 동래구갑선거구가 40.4%, 사하구선거구가 42.1%로 평균 41.3%였다. 이 투표율은 1989년과 1990년 5개 선거구에서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았다.

개표결과 민주자유당 후보자들이 3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되었다. 세 곳에서 모두 승리한 민주자유당은 선거결과에 고무되었다. 특히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절에서 “총선거”라고 한다) 때에는 야당이 승리했던 광명시선거구에서도 재야교수 출신인 손학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를 확인한 것이라며 선거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반면에 민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후 김대중 대표가 정계를 은퇴하고 이기택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 실시한 선거에서 1석도 얻지 못함으로써 이기택 대표의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표 5-18〉 4·2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부산 동래구갑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강경식	민주당 정인조	계		
218,891	88,528 (40.4%)	72,233	15,667	87,900	628	130,36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이하 같음.

● 부산 사하구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박종웅	민주당 김정길	신정치개혁당 홍순오	무소속 박용수	무소속 유강렬	계		
242,762	102,298 (42.1%)	53,636	20,624	19,433	1,097	6,890	101,680	618	140,464

● 경기 광명시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손학규	민주당 최정택	통일국민당 정순주	신정치개혁당 권순필	정의당 김재용		
226,493	93,412 (41.2%)	41,683	28,373	960	5,988	433		
무소속 김은호	무소속 유덕상	무소속 이공훈	무소속 이철로	무소속 차종태	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4,186	514	120	1,161	9,326	92,744	668	133,081	

나. 1993. 6. 11 국회의원보궐선거

1993년 6월 11일 강원도 명주군·양양군선거구, 철원군·화천군선거구, 경북 예천군선거구 등 3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이하 이 절에서 “6·11 보궐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3개 선거구 모두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초기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전격 실시한 공직자재산공개 과정에서 재산축적에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이 사직하여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즉, 민주자유당 김재순(철원군·화천군), 유학성(예천군), 김문기(명주군·양양군) 의원이 재산축적에 의혹이 많다는 언론의 집중보도를 견디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사직한 것이었다.

1) 후보자공천과 입후보 상황

민주자유당은 6·11 보궐선거의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넘쳐났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 모두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지역인데다가,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 당선가능성 또한 높았다고 보고 많은 사람이 공천을 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민주자유당이 3개 선거구의 공천신청을 접수한 결과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 10명, 철원군·화천군선거구에 11명, 예천군선거구에 14명 등 모두 35명이 신청하여 평균 1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자유당은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 김명윤 당 고문을, 철원군·화천군선거구에 이용삼 변호사를, 예천군선거구에 반형식 전 의원을 각각 공천하였다.

민주당은 이기택 대표의 지도력을 놓고 당내 갈등이 발생하면서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2개월 전인 4·23 보궐선거에서 공천 잡음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공천을 매듭지으려고 하였다. 민주당의 공천신청 접수결과 3개 선거구에서 단 4명이 공천을 신청하였다. 민주당은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 최옥철, 철원군·화천군선거구에 김철배, 그리고 경북 예천군선거구에 안희대 등 3개 선거구 모두 당시 지구당위원장을 공천하였다.

통일국민당은 예천군선거구 한 곳에만 황병일을 공천하였고, 신정치개혁당은 철원군·화천군선거구 한 곳에만 이정희 전 통일국민당 지구당위원장을 공천하였다. 무소속은 명주군·양양군선거구와 예천군선거구에 각 1명씩 출마하였다.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6·11 보궐선거는 재산축적에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사직하여 치러짐에 따라 2개월 전인 4·23 보궐선거에서 거론되었던 개혁공방이 또다시 선거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4·23 보궐선거에서 한번 걸러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전승을 목표로 설정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개혁 작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 1개 지역에서라도 이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명주군·양양군선거구를 전략 지역으로 선정한 후 이곳에 당력을 집중하였다. 민주당 후보자들은 현 정부가 벌이는 개혁은 정치 보복적이며 편파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므로 야당후보를 밀어달라고 호소하였다.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야당은 민주자유당이 관련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선거쟁점이 되었다. 야당은 김덕룡 정무장관이 여당 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방문하여 선거지원을 하였고, 예천군수와 경찰서장이 여당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권자와 접촉했다고 주장하였다.

선거종반 여야가 민주자유당 김명운 후보, 민주당 최육철 후보, 무소속 선복기 후보가 출마한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이곳이 6·11 보궐선거의 최대격전지가 되었다. 각 정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심해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곳에 와있는 중앙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들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특별단속반을 파견하여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과열양상이 쉽게 진정되지는 않았다.

3) 선거결과

6·11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예천군선거구가 71.3%로 가장 높았고, 명주·양양군선거구는 68.5%, 철원·화천군선거구는 66.0%였다. 이 투표율은 2개월 전에 치러진 4·23 보궐선거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개표결과 철원군·화천군선거구와 예천군선거구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최육철 후보가 민주자유당 김명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민주자유당은 김명운 후보를 개혁의 실세라고 부각시키고 거당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여 개혁정책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이 전략지역으로 설정해 집중지원을 했던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서 승리하여 민주자유당 중심의 정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표 5-19〉 6·11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강원도 명주군·양양군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김명운	민주당 최육철	무소속 선복기	계		
69,336	47,483 (68.5%)	19,349	22,898	4,604	46,851	632	21,8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이하 같음.

●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이용삼	민주당 김철배	신정치개혁당 이경희	계		
55,062	36,320 (66.0%)	21,695	6,580	7,664	35,939	381	18,742

● 경북 예천군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반형식	민주당 안희대	통일국민당 황병호	무소속 정대수			계
51,906	37,005 (71.3%)	17,935	11,164	4,569	2,723	36,391	614	14,901

다. 1993. 8. 12 국회의원보궐선거

1993년 8월 12일 대구 동구을선거구와 춘천시선거구 두 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이하 이 절에서 “8·12 보궐선거”라고 한다)가 실시되었다. 대구 동구을선거구는 민주자유당 박준규 국회의장이 공직자재산공개 과정에서 재산축적 의혹이 제기되어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국회의장직을 사퇴한 후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가 의원직까지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춘천시선거구는 통일국민당 손승덕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와 야당은 8·12 보궐선거의 선거시기를 놓고 한때 논쟁을 벌였다. 정부는 ‘선거일 결정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선거일을 8월 12일로 결정하였고, 민주당 등 야당은 “혹서기 선거로 기권을 조장하려는 관권선거 음모”라고 비난하며 선거날짜 재조정을 요구하며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선거일을 8월 12일로 결정하였다.

1) 후보자 공천과 입후보 상황

민주자유당은 8·12 보궐선거의 후보결정을 세 차례나 연기한 후에 대구 동구을선거구에 노동일 경북대 정치학과 교수를, 춘천시선거구에 유종수 대한체육회 강원도지부 사무처장을 공천하였다.

민주당은 2개월 전인 6·11 보궐선거의 명주군·양양군선거구에서 승리한 것에 고무되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8·12 보궐선거의 후보자공천에 신중을 기하였다.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993년 7월 16일 통일국민당 김동길, 새한국당 이종찬 대표와 회담을 갖고 8·12 보궐선거에서 연합공천하기로 하는 등 야권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구 동구을선거구에 안택수 전 새한국당 대변인을, 춘천시선거구에는 유남선 지구당위원장을 공천하였다. 신정치개혁당은 춘천시선거구 한 곳에만 황환도를 공천하였다. 무소속은 대구 동구을선거구에서 서훈 후보 등 2명이, 춘천시선거구에는 강청룡 후보 등 2명이 출마하였다.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8·12 보궐선거의 쟁점은 선거초반부터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궐선거에 중앙당 개입을 자제시키는 문제였다. 김영삼 정부가 집권한 후 세 번째 실시하는 8·12 보궐선거가 어느 때보다 과열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3년 7월 27일 민주자유당, 민주당, 신정치개혁당 3당의 사무총장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여 8·12 보궐선거에 중앙당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은 당대표의 보궐선거지역 방문을 2회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원은 5명 이내, 동시에 체류하는 국회의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체류기간도 1박 2일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8·12 보궐선거의 과열방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재한 결과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민주당이 이를 파기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1993년 7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중앙당의 보궐선거 개입자제 합의'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과열 선거풍토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공명선거를 하자는 합의정신을 저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사항을 애초부터 약속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도 있지 않은 선거운동제한을 함으로써 야당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월권과, 이경식 부총리 등 3부 장관이 대구에서 선심공약성 발언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내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선거가 있다고 국정까지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상투적 구태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 간 대결양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과열양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만섭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대표에게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국회의원 및 중앙당당직자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키로 하는 등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자유당이 춘천에서 대표와 중앙당당직자가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이 일당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등 과열양상이 진정되지 않았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993년 8월 11일에는 대구 동구을선거구에서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선거운동원 간에 폭행시비가 일어나 맞고소하기도 하였다.

3) 선거결과

8·12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대구 동구을선거구가 60.1%, 춘천시선거구가 58.5%로 혹서기에 실시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로는 낮지 않은 편이었다. 개표결과 대구 동구을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서훈 후보가 민주자유당 노동일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고, 춘천시선거구에서는 민주자유당 유종수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민주당 유남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민주자유당은 대구 동구을선거구의 선거결과에 대해 의아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역은 여당세가 강했고, 총선거 때에도 민주자유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었는데 보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에게 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앙당 당직자를 비롯한 수십 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큰 표차(11,982표)로 패배하였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대구 동구을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놓고 공천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서훈 후보가 민주당의 공천을 신청했었으나 그를 공천하지 않고 안택수 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에 서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기 때문이었다.

〈표 5-20〉 8·12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대구 동구을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노동일	민주당 안택수	무소속 김용하	무소속 서훈	계		
111,179	66,871 (60.1%)	18,224	5,396	12,577	30,206	66,403	468	44,30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이하 같음.

● 강원도 춘천시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유종수	민주당 유남선	신정치개혁당 황환도	무소속 강정룡	무소속 유지한			계
123,853	72,464 (58.5)	26,956	24,426	8,904	1,215	10,365	71,866	598	51,389

라. 1994. 8. 2 국회의원보궐선거

1994년 8월 2일 대구 수성구갑, 영월군·평창군, 경주시 등 3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 선거(이하 이 절에서 “8·2 보궐선거”라고 한다)가 실시되었다. 대구 수성구갑선거구는 통일 국민당 박철언 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영월군·평창군선거구와 경주시선거구는 각각 그 지역의 민주자유당 심명보 의원과 서수중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8·2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3개 선거구 중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곳은 대구 수성구갑선거구였다. 이 선거구는 노태우 정부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이른바 ‘6공 황태자’라고 불리기도 했던 박철언 의원이 정권이 바뀌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박철언 의원의 부인인 현경자가 이 선거구에 출마하여 더욱 주목을 받았다.

8·2 보궐선거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확대하고 선거법위반행위의 처벌은 강화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³⁴⁾이 1994년 3월 16일 제정·공포된 후 처음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또한 8·2 보궐선거는 제14대 국회의원의 마지막 보궐선거이기도 하였다.

1) 후보자 공천과 입후보 상황

민주자유당은 3곳의 보궐선거 지역이 전통적으로 여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라서 최소한 2곳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른 정당에 비해 빨리 공천을 끝냈다. 민주자유당은 대구

34) 이 법은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4개의 선거법을 통합해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통합선거법’이라고도 불렸다.

수성구갑선거구에 정창화 전 의원을, 경주시선거구에 임진출 한국로타리클럽회장을, 영월군·평창군선거구에 김기수 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하였다.

반면에 민주당은 인물난과 당내 갈등 등으로 공천이 다소 늦어졌다. 민주당은 대구 수성구갑선거구에는 권오선 지구당위원장을, 영월군·평창군선거구에는 영월군 출신으로 총선거 때에 차점자였던 신민선 전 의원을, 경주시선거구에는 이상두 지구당위원장을 공천하였다.

통일국민당(당시 대표 김동길)과 신정치개혁당(당시 대표 박찬종)이 합당하여 1994년 7월 8일 만든 신민당은 대구 수성구갑선거구에는 박철언 전 의원의 부인 현경자를, 영월·평창선거구에 고려대평화연구소 김성룡 연구원을, 경주시선거구에는 최병찬 경주병원 이사장을 공천하였다.

이외에도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갑선거구에 김영술 등 9명, 영월군·평창군선거구에 강도원 등 2명, 경주시선거구에 김순규 등 3명이 출마하였다. 따라서 3개 선거구에 총 23명이 출마하여 평균 7.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대구 수성구갑선거구는 12명이 출마하여 1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 선거운동 양상과 쟁점

8·2 보궐선거는 1994년 3월 16일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을 받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였다. 새 선거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자필 서신과 전화 및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선거운동이 선을 보였다.

8·2 보궐선거의 선거쟁점은 선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3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구 수성구갑선거구는 박철언 전 의원에 대한 표적사정과 정치보복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박철언 전 의원의 부인인 신민당 현경자 후보는 김영삼 정부가 박철언 전 의원에 대해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을 하여 그가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동정심을 유발시켰다. 또한 현경자 후보는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반면에 민주자유당 정창화 후보는 지역개발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선거운동을 하였다.

경주시선거구는 뚜렷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다가 선거종반에 여성 후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감이 한때 논란이 되었다. 여성후보인 민주자유당 임진출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총선거에서 지역구 출신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원내진출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야당 후보자들은 보수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였다.

영월군·평창군선거구는 농업인구가 50%나 되는 지역특성상 우루과이라운드(UR)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거쟁점이 되었다. 민주자유당 김기수 후보는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한편, 농촌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큰 인물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반면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일제히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내세우며 우루과이라운드 비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농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선거초반에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으나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이전의 다른 보궐선거와 같이 불법선거운동이 나타났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단속반을 파견하여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각 후보자 측에서도 상대방 후보자의 불법·탈법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조를 편성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3) 선거결과

8·2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평균 51.6%였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갑선거구 47.0%, 영월군·평창군선거구 63.1%, 경주시선거구 49.6%의 투표율을 보였다.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보궐선거에서도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이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표결과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대구 수성구갑선거구는 신민당 현경자 후보가 민주자유당 정창화 후보에게 큰 표차로 당선되었다. 영월군·평창군선거구에서는 민주자유당 김기수 후보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큰 표차로 당선되었다. 경주시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상두 후보가 민주자유당 임진출 후보와 접전 끝에 521표차로 당선되었다.

최소 두 곳에서 승리를 장담했던 민주자유당은 두 곳에서 패하자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권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며 보궐선거 패배를 인정하였다. 반면 한 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당과 신민당은 보궐선거 결과를 김영삼 정

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규정하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신민당은 “현경자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것은 신민당과 국민의 승리”라고 주장하며 박철언 전 의원의 즉각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약세를 보여 왔던 경북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함으로써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선거결과에 큰 의미를 두었다.

〈표 5-21〉 8·2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 대구 수성구갑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정창화	민주당 권오선	신민당 현경자	무소속 김영술	무소속 김태우	무소속 서진수		
137,261	64,509 (47.0%)	16,820	3,403	35,440	164	1,839	1,162		
		무소속 윤영한	무소속 이상희	무소속 이선동	무소속 이영환	무소속 정두병	무소속 한점수	계	
		233	1,446	93	1,109	184	1,653	63,546	96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이하 같음.

● 강원도 영월군·평창군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김기수	민주당 신민선	신민당 김성룡	무소속 강도원	무소속 함수기	계		
73,069	46,073 (63.1%)	23,625	8,803	3,351	1,769	7,196	44,744	1,329	26,996

● 경상북도 경주시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자유당 임진출	민주당 이상두	신민당 최병찬	무소속 김순규	무소속 정강수	무소속 이사봉			계
98,865	49,074 (49.6%)	15,768	16,289	1,798	12,700	484	1,260	48,299	775	49,791

6 장

제14대 대통령선거 (1992. 12. 18 실시)

개요

제14대 대통령선거는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92년 12월 18일 실시되었다. 대통령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여파로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민주당을 탈당한 후 현승중 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중립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관권선거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는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선거초반부터 여당인 민주당 김영삼 후보, 제1야당인 민주당 김대중 후보, 통일민주당 정주영 후보의 3자 대결구도를 보였다. 김영삼 후보는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며 '신한국 창조'를 내세웠고, 김대중 후보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이번에는 비빔시다'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정주영 후보는 다른 후보보다 경제운용 능력에 우위가 있음을 선전하며 '경제대통령론'을 폈다.

선거전에서 쟁점이 된 것은 검찰·국세청이 현대그룹의 4개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금권선거와 관권선거 공방이었다. 또한 간첩단 사건과 사상논쟁, 부산 초원복집 사건 등도 선거쟁점이 되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대규모 청중을 동원하는 연설회나 폭력시태는 없었으나 지역주의 정서는 여전히 나타났다. 특히 3당 합당의 영향으로 호남 대 비호남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그동안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부재자투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선거사상 처음으로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하였다.

선거결과 민주당 김영삼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42%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은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선거결과에 승복하였다. 특히 김대중·정주영 후보는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제1절 _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2절 _ 선거제도

제3절 _ 후보자 추천과 등록

제4절 _ 선거운동

제5절 _ 선거비용

제6절 _ 공명선거활동

제7절 _ 선거법위반행위

제8절 _ 선거결과

제1절

선거 전의 정치적 상황

제14대 대통령선거는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고 9개월 만인 1992년 12월 18일 실시되었다.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주요 정치적 사건으로는 제14대 국회의 원(院) 구성 지연,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양심선언, 중립내각 구성 등을 들 수 있었다.

1. 제14대 국회 원(院) 구성 지연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1992년 3월 24일 실시되었고, 이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1992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임기가 개시되고 2개월이 넘도록 원(院) 구성도 하지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시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제14대 개원국회에서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지방자치법」에는 1992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민주자유당은 1992년 6월 1일 김영삼 대표위원과 정원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1995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황인성 민주자유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년 6월 30일 이전에 지방단체장선거를 실시할 경우 12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4번의 연속된 선거³⁵⁾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불가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제14대 개원국

35) '4번의 연속된 선거'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말한다.

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보다 약 6개월 전인 1992년 1월 10일, 민주자유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1, 2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 제1절 선거전의 정치적 상황” 참조)

야당은 민주자유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방침에 즉각 반발하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14대 대통령선거를 관권선거로 치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시키려고 한다”며 비난하였다. 민주당은 1992년 6월 13일부터 인천·광주 등 6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관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여론조성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자유당도 전국 지구당을 중심으로 주민간담회를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여야의 대결로 제14대 국회는 임기가 개시되었지만 개원도 하지 못하였다. 국회는 1991년 12월 18일 제156회 정기국회(제13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가 폐회된 이후 6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된 후에도 국회가 열리지 못하자 정치권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여야는 국회가 열리지 못한 책임이 서로 상대방



▶ 김대중 민주당 대표와 정주영 통일국민당 대표가 지방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등 야권 공조에 합의 (1992년 6월 25일)

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와중에 같은 야당인 민주당 김대중 대표와 통일국민당 정주영 대표가 1992년 6월 25일 만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위한 야권공조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당이 개원국회에 등원하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2년 6월 29일 제14대 개원국회(제157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그러나 국회의장(민주자유당 박준규 의원)과 부의장(민주자유당 황낙주 의원, 민주당 허경만 의원)을 선출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개원식 기념연설만 들었을 뿐, 국회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하지 못한 채 공전하다가 7월 29일 자동폐회 되었다. 개원국회가 폐회된 후 곧바로 민주자유당의 소집요구에 의해 1992년 8월 1일 제158회 임시국회(1992. 8. 1~8. 14)가 개최되었으나 공전상태는 계속되었다.

국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1992년 8월 6일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민주당 3당 대표가 만났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시기 문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에 부담을 느낀 여야는 마침내 대타협을 하였다. 1992년 8월 11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표위원과 민주당 김대중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여당이 「지방자치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회 파행이 수습되었다.

이에 따라 159회 정기국회(1992. 9. 14~12. 22)의 회기 중인 1992년 10월 2일 17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을 선출하여 제14대 국회의 원(院) 구성을 마쳤다. 제14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 지 125일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국회는 정상화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여야가 1992년 8월 12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결국 야당의 연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주장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로 미루어졌다. 따라서 1992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켜지지 않았다.

2.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양심선언

1992년 3월 24일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충남 연기군수였던 한준수가 1992년 8월 31일 민주당사에서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하여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때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 이었고, 특히 야당에서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대통령선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기라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준수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약 3개월 후인 1992년 7월 4일 공로연수 명목으로 군수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양심선언을 할 때에는 연기군수가 아니었다. 한준수 전 군수는 양심선언에서 “1992년 3월 4일, 15일, 18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종국 충남도지사와 도내 무국장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군(郡)에서 자체 조달한 4,000만 원, 연기군선거구의 민주자유당 임재길 후보로부터 받은 2,5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선거용으로 관내에 살포했다”고 주장하였다.

한준수 전 군수는 이와 같이 조성된 선거자금을 선거일 직전인 1992년 3월 1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7개 읍·면 196개 마을에 각각 10만 원씩 배포했고, 특별관리 세대인 2,174세대에 3만원씩 살포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읍·면에 군 과장급을 총책임관으로 하여 리단위에 군·읍·면공무원 2인씩의 책임관을 두고 선거를 독려했으며, 군의회 전문위원과 보건소 직원까지 전 공무원을 연고지별로 배치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행정 말단직원인 이장을 동원하여 ‘지역안정대책협의회 구성명단’이란 제목으로 관내 야당성향의 인사명부를 작성했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와 함께 한준수 전 군수는 이종국 충남도지사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중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표 10만 원권 90장의 사본 일부를 증거물로 공개하였다. 또한 선거자금 배포상황, 공무원 분담 책임방문, 관내 야당성향 인사명부 등 15종의 관련 증거자료도 제시하였다.

이어서 한준수 전 군수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연기군선거구에서 민주자유당 임재길 후보가 낙선하자 도지사로부터 “국회의원선거에 패해 대선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 군수직에서 물러나라”는 강요를 받았고, 이후 1992년 7월 4일 공로연수 퇴직이라는 보복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에 대해 당시 이동우 내무부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 한준수 전 연기군수 관련선거 폭로(1992년 8월 31일)

부인하였다. 이동우 내무부장관은 충남 연기군선거구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후보(통일국민당 박희부)가 당선된 것만 보더라도 한준수 전 군수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민주자유당 박희태 대변인도 “내무부에서 진상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흔히 있는 폭로전인지 철저히 가려지길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으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섰다. 또한 한준수 전 군수의 폭로를 기회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내에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당은 1992년 9월 5일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연기군 등 관권부정선거 규탄 및 한준수 전 군수 양심선언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확산시키며 정부를 압박하였다. 통일국민당 변정일 대변인도 한준수 전 군수의 양심선언으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관권선거였음이 증명됐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준수 전 군수는 1992년 9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였다. 그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주도로 도와 군 단위로 각급 기관장이 참석하는 비공

식 상설협의기구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참석한 5차례 대책회의의 시간·장소·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대책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에는 안기부 내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석하였으며, 여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1992년 9월 8일 민주당사에 있던 한준수 전 군수를 강제구인하여 다음날인 9월 9일 불법선거운동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9월 17일에는 임재길 민주자유당 연기군지구당위원장을 구속하고,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종국 지사가 한준수 전 군수에 1,000만 원을 준 것은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관여정도가 방조에 그쳐 가벌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어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선거지침서를 작성하여 시달한 충청남도 지방과장 강영중(당시 보령군수)과 한준수 전 군수에게 선거대책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홍종기 조치원읍장 등 7개 읍·면장들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서는 “당시 연기군 내 노사분규, 선거운동원간 폭행사건에 관한 협의를 위해 모였을 뿐 특정 후보지지 방안 등이 논의된 사실은 없다”며 관계기관대책회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사건진상을 외면한 축소수사로 끝났다고 반발하였다. 특히 관련 부정선거를 폭로한 한준수 전 군수는 구속 기속하고, 이종국 지사는 불구속 기속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검찰권 행사라고 비판하였다. 민주당은 1992년 9월 18일 서울역 등에서 한준수 전 군수의 석방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검찰의 재수사 등을 촉구하는 장외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준수 전 군수의 양심선언을 개인적인 불만에 의한 폭로사건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던 민주자유당은 야권의 계속적인 공세와 여론이 악화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9월 16일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³⁶⁾는 기자회견에서 “관련선거는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병의 징후들을 발생시키는 시대착오적 유물”이라면서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선거의 척결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2년의 세월이 흐른 1995년 2월 17일 대법원에서 한준수 전 군

36) 민주자유당은 1992년 8월 28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김영삼 대표위원을 민주자유당 총재로 선출하였다.

수의 양심선언 관련자에 대한 선거공판이 있었다. 대법원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임재길 전 민주자유당연기군지구당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종국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부 지시에 의해 관권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 중립내각 구성

검찰이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1992년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와 회동하였다. 회동 후 노태우 대통령은 김학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거관리 중립내각 구성과 민주자유당 탈당방침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통성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며 중립내각 구성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10월 6일 탈당계를 제출한 것을 필두로 10월 9일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최영철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이연택 노동부장관,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등 민주자유당 당적을 갖고 있던 장·차관 5명이 민주자유당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10월 9일 개각을 통해 현승중 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선거관리 중립내각을 출범시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당적을 포기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였지만 이후에도 ‘중립성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노태우 대통령의 처남인 김복동 의원이 1992년 11월 17일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통일국민당에 입당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러 지역구인 대구로 내려가던 중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강제로 귀경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은 “김복동 의원 납치사건은 중립내각의 중립의지를 심각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비난하며 노태우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였다. 통일국민당도 김복동 의원의 대구 기자회견 무산은 경찰이 그를 납치하였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난하였다. 김복동 의원은 5일 후인 11월 22일 결국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였다.

이후에도 대통령선거일을 3일 앞둔 1992년 12월 15일 전직 법무부장관과 현직 부산시장 및 부산경찰청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초원복집이라는 식당에 모여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의 지지를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제4절. 3. 선거쟁점” 참조).

한편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하자 길으로는 6·29 선언에 버금가는 혁명적 결심이라며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굉장히 당황해 하였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다.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선언을 하자 민주자유당 내의 민정·공화계 의원들이 집단탈당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지 1주일 정도가 지난 1992년 10월 14일 민주자유당 박철원·유수호·김용환·이자현 의원 등이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후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였고, 윤길중·채문식 고문 등 원외지구당위원장 10여 명도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였다.

제2절 선거제도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정가의 관심이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로 옮겨가면서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여야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시기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제14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2개월이 넘도록 원(院) 구성도 못한 상태라서 선거법 개정논의도 늦어졌다. 가까스로 국회과행을 수습한 여야는 대통령선거일을 4개월 정도 앞둔 1992년 8월 중순부터 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하였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협상 과정에서 개정안 도출을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하기로 하는 등 다른 선거 때에 비해 큰 갈등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1. 선거법 개정경위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적용할 「대통령선거법」의 개정논의는 제158회 임시국회(1992. 8. 1~8. 14)의 회기 중인 1992년 8월 12일 국회에서 여야 9명씩 모두 18명(민주자유당 9명, 민주당 6명, 통일국민당 3명)으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도 각 정당은 자체적으로 ‘대통령선거법 개정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개정방향을 논의하였으나 여야 간에 공식적인 논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1992년 8월 17일 첫 회의를 열어 민주자유당 신상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민주자유당 김중위 의원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및 통일국민당 정장현 의원을 각 당의 간사로 선임하였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3개 심의반을 편성하여 각각 「대통령선거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심의를 전담하게 하였다.

각 심의반에서 개정안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 합의제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곧바로 협상에 들어갔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의 「대통령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대규모 연설회가 선거폭력과 지역감정 등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로 선거과열을 방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연설회와 당원단 합대회의 무제한 허용, 선거운동기간 현행대로 유지,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금지규정 삭제 등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1992년 9월 14일 협상결과를 제156회 정기국회(1992. 9. 14~12. 22)에 보고하고 그 활동을 마쳤다. 이때 보고한 내용 중에는 110여 개의 사항은 여야가 합의하였지만, 9개 사항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회는 1992년 10월 2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였다. 이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10월 12일 민주자유당 3인(김중위·황윤기·이인제 의원), 민주당 2인(박상천·정기호 의원), 통일국민당 1인(차수명 의원) 등 총 6인으로 법안심의반을 구성하고 심의에 착수하였다. 법안심의반은 1992년 10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쟁점사항에 대해 타협하고, 기존 「대통령선거법」 조문 중 110여 군데를 수정 또는 신설한 ‘대통령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이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국회 본회의에서 1992년 11월 4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은 1992년 11월 11일 법률 제4495호로 공포되어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적용할 「대통령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여야의 선거법개정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반장의 사직 및 복직 시기, 선거권 연령, 선거운동기간 등이었다.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반장의 사직 및 복직 시기’와 관련해서 야당은 대통령임기만료일 180일 전까지 사임하고 선거일 후 2년 이내에는 복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야당은 통·반장을 통해 관권선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선거일공고일 10일 전까지 사임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협상결과 대통령임기만료일 100일 전까지 사임하고, 선거일 후 6개월 내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선거권의 연령’과 관련해서 민주자유당은 20세, 민주당은 18세, 통일국민당은 19세를 제시하였다. 협상결과 민주자유당의 안

과 같이 기존 20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선거운동기간’ 과 관련해서 민주자유당은 21일을,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30일을 주장하였다. 협상결과 기존 30일에서 28일로 2일간 단축하기로 결론이 났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가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기 약 2개월 전인 1992년 6월 13일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의견을 제출한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각종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부재자투표소 투표제도’ 와 ‘재정신청제도’ 의 도입, ‘선거운동기간 축소’,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금지규정 폐지’ 등이었다. 여야는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중 ‘부재자투표소 투표제도’ 와 ‘선거운동기간 축소’ 등은 받아들였으나,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금지규정 폐지’ 와 ‘재정신청제도’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대통령선거법」 개정과는 별도로 1992년 11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직급을 각각 국무위원과 차관급으로 상향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과’ 를 ‘사무국’ 으로 변경하여 국장은 4급, 과장은 5급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시정명령이나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가. 선거인명부

종전에는 선거인명부작성 감독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만이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³⁷⁾ 제18조제1항). 선거인명부작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는 1명이 그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 제도를 도입하였다(법 제18조제6항).

37) 이하 이장에서 법이라 함은 「대통령선거법」(1992. 11. 11 법률 제4495호)을 말함.

부재자신고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에서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로 2일간 단축하였다. 부재자신고대상자를 ‘투표구 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에서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 로 개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법 제17조제2항). 또한 신체장애로 인한 거동불능자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7조제2항).

정당한 선거권자가 구·시·읍·면장의 착오 등으로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을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등재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 경우 선거인명부에 추가 등재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선거인명부 누락자구제 제도’ 도 도입하였다(법 제21조의2).

나. 후보자 등록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에서 ‘5일 이내’ 로 2일 단축하였다(법 제26조제1항). 후보자등록기간이 단축된 것은 선거운동기간이 30일에서 28일로 2일간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것이었다.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 구별 없이 모두 3억 원으로 통일하였다(법 제26조제1항).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정당추천후보자는 5,000만 원, 무소속후보자는 1억 원이었다. 그러나 1989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간에 차등을 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기탁금도 정당·무소속 구분 없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한 것이었다.

기탁금 반환요건은 3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7 이상이거나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때에는 ‘선거인명부 사본작성비용’ 과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둘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였으나 100분의 7 미만인 때에는 ‘선거인명부 사본작성비용’ 과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및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송연설비용’ 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셋째,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선거인명부 사본작성비용’ 과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및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송연설비용’ 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다(법 제26조제7항).

다.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을 30일에서 28일로 축소하였다.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으로 방송광고, 정견·정책집, 소형인쇄물 등을 도입하였다. ‘방송광고’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한 후보자가 각각 5회까지 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45조의2). 소형인쇄물은 일정한 규격으로 4종(전단형 1종, 책자형 3종)을 제작하여 후보자 측에서 직접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게 하였다. 작성·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전국 세대수에 상당하는 매수 이내였다(법 제50조의3). 정견·정책집은 일정한 규격으로 1종을 제작하여 역시 후보자 측에서 직접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게 하였다. 정견·정책집의 작성·배부수량은 전국 세대수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수 이내였다(법 제50조의2).

연설회의 법정개최횟수는 크게 줄었다. 즉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시·도별로 3회(총 42회), 연설회연설회는 읍·면·동마다 1회(총 3,386회)만 개최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연설회 구별 없이 개표구마다 5회(총 1,540회)까지만 개최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47조).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연설회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려고 할 경우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선거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면 가능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100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해임된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36조).

라. 선거비용

지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운동원, 연설회, 회계책임자 등에게 일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선거운동원 등의 수당·실비가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인이 되어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실비만을 보상하고 일당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법 제79조). 만약 선거운동원 등에게 일당을 지급할 경우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법 제92조).

마. 투 표

투표분야에서는 투표용지 가인주체를 확대하고, 기표용구모형을 변경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선거사상 처음으로 부재자투표소 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주체를 국회의 다수의석 순에 의한 제1당과 제2당에서 추천한 정당추천위원으로 하던 것을 제3당에서 추천한 위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법 제101조제2항). 시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 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98조).

투표지에 찍히는 기표용구의 모형 ‘○’을 ‘⊗’으로 바꾸었다(법 제104조). 이는 기표의 전사여부를 쉽게 식별하여 무효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는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사용하였는데 40여년만인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바뀌게 되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선거제도는 그동안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부재자투표 방법이었다. 부재자투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유효가 되도록 개선하여 그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법 제95조의2). 다만 격오지 또는 함정 등에 장기 기거하여 부재자투표소에 갈 수 없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종전과 같은 방법인 이른바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하였다(법 제17조, 제103조).

바. 개 표

개표사무종사원을 종전에는 행정기관이나 법원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던 것을 ‘교원과 금융기관 직원’도 할 수 있도록 위촉 범위를 확대하였다(법 제116조).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종전에는 후보자가 부담하던 것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였다(법 제119조).

사. 기타 주요 개정내용

선거소송의 처리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히 선거소송

을 처리하도록 하였다(법 제137조). 또한 선거에 관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첨부하여야 할 인지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인상하였다(법 제138조의2).

선거범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고 범인도피 시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법 제170조).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제1심은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각각 전심 선고 후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여 1년 이내에 재판이 종결되도록 하였다(법 제171조의2).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선전물을 발견하였을 때에 중지·철거·수거·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법 제171조의3).

〈표 6-1〉 대통령선거제도 변경내용 비교

요 목	제13대 대통령선거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후보자 등록기간	8일간	6일간
기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추천 후보자 : 5,000만 원 무소속 후보자 : 1억 원 	정당·무소속 구분 없이 3억 원
선거운동기간	30일	28일
선거운동방법	9가지(선전벽보, 방송연설, 방송대담·토론, 경력방송, 신문광고, 연설회, 현수막, 기호표, 표지판)	14가지(선전벽보, 정견·정책집, 소형인쇄물, 방송연설, 방송대담·토론, 경력방송, 신문광고, 방송광고, 연설회, 현수막, 기호표, 표지판, 표찰, 수기)
선거운동원 일당·실비	일당과 실비 보상	실비만 보상(일당 지급불가)
부재자투표소	규정 없음	선거기간 중 10일간 설치·운영
선거범의 공소시효	선거일 후 3월(도피 시 1년)	선거일 후 6월(도피 시 3년)
선거범의 재판기간	규정 없음	제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재판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
선거소송 처리기간	1년 이내	180일 이내

제3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각 정당들은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2개월 정도가 지난 5월 중순부터 당내경선 등을 통해 제14대 대통령선거의 후보를 결정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유신체제 이후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각 정당은 지명이나 추대방식으로 대통령후보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일부 유력 정당의 경우 당내경선을 통해 대통령후보를 결정하였다. 과거 1인이 주도하던 정당이 1990년 3당 합당과 1991년 야당통합 등을 통해 당내 계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선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경선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하였다.

가.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이 합당하여 창당된 이후 내각제 개헌문제와 대통령선거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놓고 3개 계파 간에 이해득실을 따지며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갈등은 1991년 6월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끝나자 더욱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대표위원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지칭되는 ‘민주계’는 민주자유당 내의 내각제 논의가 비생산적이라면서 김영삼 대표위원의 대세론을 내세웠다. 이들은 “가시화된 대권주자 없이는 국회의원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1992년 3월에 실시예정인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김영삼 대표위원을 대통령후보로 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합당 전 민주정의당 소속 인사들로 지칭되는 ‘민정계’와 김종필 최고위원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지칭되는

‘공화계’는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며 김영삼 대표위원을 견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91년 7월 25일 최영철 대통령정치특별보좌관이 민주자유당의 차기 대통령후보는 야당식 자유경선에 의해 선출될 것이고, 사전임을 전제로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았다. 민주계는 다수인 민정·공화계가 야당식 자유경선을 주장하는 것은 곧 내각제를 받아들이라는 말과 같다면서 불만을 표출하였다. 김영삼 대표위원은 8월 1일 대통령후보 자유경선을 수용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후계구도를 조기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하였다. 이에 대해 민정계와 공화계는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후반 통치권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후 당헌·당규에 따라 차기 대통령후보를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때 민정계 이종찬 의원이 중심인 신정치연구모임도 대권후보경선을 주장하였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8월 10일 김영삼 대표위원을 포함한 3명의 최고위원과 회동한 후, 차기 대통령후보 결정 등 향후 정치일정을 연말까지 중지하기로 함으로써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민주계가 1991년 12월 정기국회 폐회를 기점으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대통령후보를 조기 확정해야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고, 민정계와 공화계는 국회의원선거를 치른 뒤 당헌·당규대로 전당대회를 열어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여 다시 충돌하였다.

해가 바뀌고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영삼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른 뒤 당헌과 당규에 따라 1992년 5월 19일 전당대회에서 자유경선을 통해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대표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민주자유당의 대통령후보 확정문제는 국회의원선거 후로 미뤄졌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4일 지난 1992년 3월 28일, 김영삼 대표위원이 대통령후보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선언하였다. 이때부터 민주자유당은 대통령후보경선 체제에 들어갔다.

민주계는 1992년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삼 대통령후보추대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동안 입장표명을 유보했던 김종필 최고위원이 김영삼 대표위원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계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민정계 내의 김영삼 대표위원을 반대하던 그룹도 1992년 4월 18일 새벽 7인 중진협의회를 열어 민정계의 대통령후보로 박태준 최고위원, 이종찬 의원, 이한동 의원 3명을 놓고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종찬 의원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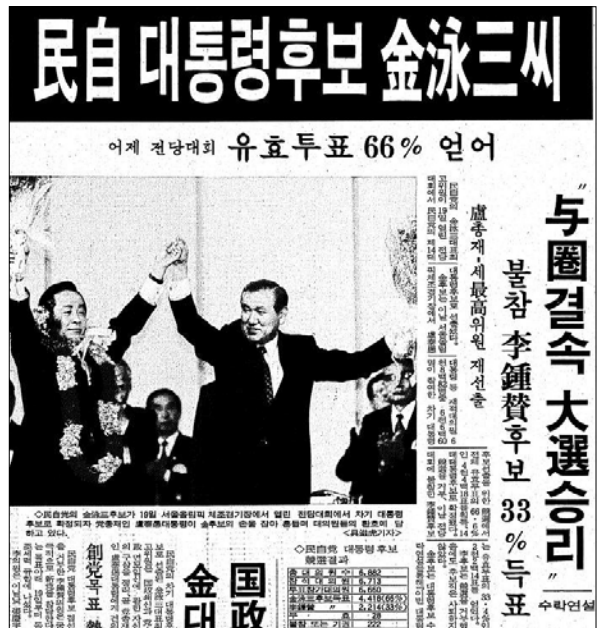
유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은 김영삼 대표위원과 이종찬 의원의 2파전이 되었다.

김영삼·이종찬 후보는 경선운동방식에서부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경선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종찬 후보는 정책대결을 위해 정견발표와 합동연설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시차제 개인연설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영삼 후보는 합동연설회 등은 선거과열을 조장한다면서 옥내 개인연설회를 제외한 다른 선거운동에 대해 반대하였다. 민주자유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도 장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종찬 후보가 장외 연설회를 강행하여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급기야 경선일을 이틀 앞둔 1992년 5월 17일 이종찬 후보가 “민자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은 밀실정치가 꾸며낸 위장된 자유경선”이라고 비난하면서 경선을 거부하고 말았다.

이종찬 후보의 경선거부에도 불구하고 민주자유당은 당초대로 1992년 5월 1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대통령후보경선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종찬 후보 진영이 불참한 가운데 대의원 6,67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결과 김영삼 후보가 유효투표의 66.3%인 4,418명의 지지를 얻어 2,214명(33%)의 지지를 얻은 이종찬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김영삼 후보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몇몇 동지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겸허한 자기반성으로 당의 단결과 화합을 굳건히 다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며 경선을 거부한 이종찬 후보 측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민주자유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은 이종찬 후보의 경선거부로 반쪽 대회가 되었지만 집권당 최초로 경선방식을 통해 대통령후보를 결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한편 민주



▶ 민주자유당 제14대 대통령후보 선출 보도 (조선일보 1992년 5월 20일)

자유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을 거부한 이종찬 의원은 3개월 후인 1992년 8월 17일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11월 17일 새한국당을 창당하여 그 당의 대통령후보로 추대되었다.

나. 민주당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10여 일이 지난 4월 5일 김대중 민주당 공동대표는 당헌에 따라 5월 중에 개최예정인 전당대회에서 제14대 대통령후보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경선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지칭되는 ‘신민계’와 이기택 대표 중심의 ‘민주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내 경선의 투표권자인 대의원 수가 약 3 대 2의 비율로 신민계가 많았다. 따라서 김대중 공동대표의 선출이 유력했으므로 당내경선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대표가 자유경선을 주장하고, 당내에서도 민주화와 개혁의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민주계에서는 이기택 공동대표가 경선후보로 나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은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의 2과전이 되었다.

민주당 역시 민주자유당의 경선과 같이 초반부터 계파 간 이견이 발생하였다. 신민계는 김대중 대표가 언론에 공표한 대로 당헌에 따라 5월 개최를 주장한 반면, 민주계는 7월에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민주계가 7월을 주장한 이유는 민주자유당 경선이 5월 19일에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5월에 후보를 결정하면 각 당이 곧바로 장기적 대선국면에 돌입하게 돼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통합야당과 정책정당으로서의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권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신민계는 당헌·당규에 따른 것을 주장하며 전당대회를 연기하면 대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5월에 전당대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이견은 1992년 4월 24일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가 회동한 후, 5월말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경선 이후에도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해소되었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6일 대통령후보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이기택 대표는 1992년 5월 14일 경선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양김 대결은 국가적 불행’ 이라면서 김대중 대표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춘천에서 개최된 강원도지부 결성대회 과정에서 폭

력사태가 발생하여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경선실시 여부가 다시 불확실해졌다. 이기택 대표 측은 김대중 대표 측이 금품살포 등 불공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후보등록을 보류하면서 경선보이콧 움직임을 보였다. 아울러 대통령후보경선과 최고위원경선의 분리투표, 대통령선거 후 김대중 대표의 당무 2선 후퇴 등을 요구하였다. 이 문제로 민주당은 한때 당내 진통을 겪었으나 신민계가 이를 수용하여 진정되었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경선 겸 전당대회는 1992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5월 25일에는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렸고, 5월 26일에는 투표를 실시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인 지역감정의 뿌리를 일소해 대화합의 세상을 만들겠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도 당당히 마주 앉아 자신 있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대내적으로는 지역주의 문제 해소,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기택 후보는 “시대적 요구인 새정치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후 “부패한 정치권에 새 물꼬를 트고 지역갈등을 극복하여 민족화합의 터를 만들기 위해 출마하였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에는 전체 대의원 2,426명 가운데 2,348명이 투표하였다. 개표결과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60.2%인 1,413표를 얻어 925표를 얻은 이기택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후보는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1987

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대화합정치를 위해 집권하면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 “일체의 정치 보복을 반대하고 대타협의 정치를 이룩하겠다”, “지역감정을 타파하겠다”, “감옥에 있는 정치범 중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제14대 대통령후보 선출 보도(조선일보 1992년 5월 27일)

다. 통일국민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10여 일이 지난 1992년 4월 4일 통일국민당 정주영 대표가 “통일국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일치단결의 노력으로 승리를 쟁취하여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이끌어 가겠다”, “다른 당에서 누가 대권 후보로 나서든 간에 당헌에 따라 5월 말을 전후해 열릴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국민당 후보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통령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통일국민당은 전당대회를 당초 1992년 5월 말경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그 일정을 5월 15일로 앞당겼다. 그 이유는 다른 당의 기선제압, 홍보효과 극대화, 대선준비 조기 착수 등이었다. 또한 당시 검찰이 현대그룹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하자 정주영 대표의 대선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압박으로 보고 당내에 번지는 불안심리를 해소하려고 한 것도 전당대회를 앞당긴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통일국민당은 1992년 5월 15일 서울 삼성동 종합전시장에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단독 출마한 정주영 대표를 제14대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투표 방법은 찬반 기립표결이었는데 투표에 참여한 1,738명의 대의원 중 1,727명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통일국민당은 정주영 대표가 정계진출을 하기 위하여 만든 정당이었으므로 대통령후보경선에 다른 경쟁자가 있을 수 없었다.

정주영 대표는 후보수락연설에서 “오늘의 시대는 분단에서 통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넓은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라며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분단극복과 선진경제 창출이라는 민족사적 과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통일국민당 제14대 대통령후보 선출 보도 (조선일보 1992년 5월 16일)

라. 기타 정당

앞에서 기술한 3개 정당 외에도 새한국당, 신정당, 대한정의당 등 3개 정당에서 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추천하였고, 정당은 아니었지만 일부 재야단체가 합동으로 무소속후보를 추대하기도 하였다.

새한국당은 민주자유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이종찬 의원이 중심이 되어 만든 정당이었다. 이종찬 의원은 민주자유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이 끝나고 약 3개월이 지난 1992년 8월 17일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였다. 이종찬 의원은 곧바로 창당작업을 시작하여 1992년 10월 23일 창당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17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새한국당을 창당하였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이종찬 의원이 당 대표 겸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에 앞서 새한국당은 창당과정에서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박태준 민주자유당 최고위원을 대통령후보로 영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채문식 전 국회의장이 통일국민당 정주영 대표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선언하였으나 이종찬 의원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정당(정식명칭 '신정치개혁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992년 2월 25일 '양김구도 타파와 재벌당 배제'를 표방한 박찬중 의원이 중심이 되어 만든 정당이었다. 신정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125명(지역구 111명, 전국구 14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나 박찬중 의원(서울 서초구갑) 혼자만 당선되었다. 신정당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약 3개월 후인 1992년 6월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박찬중 대표를 제14대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다.

대한정의당은 1992년 11월 18일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부 및 발전적이고 정직한 정권 수립'을 표방한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 회장인 이병호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만든 정당이었다. 대한정의당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이병호 변호사를 대표최고위원 겸 제14대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이외에도 정당은 아니었지만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1992년 10월 5일 결성된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가 11월 1일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싸이클경기장에서 전국선거인단대회를 개최하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제14대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등 여러 재야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데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선출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야 했다. 백기완 후보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도 ‘민중대통령후보 추대위원회’라는 재야단체의 추대를 받아 출마하였다가 도중에 사퇴한 적이 있었다.

2. 후보자 등록

가. 등록상황

제14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992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이었다. 이 기간 중에 정당추천후보자 6명, 무소속후보자 2명 등 총 8명이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였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도 8명(정당추천 7명, 무소속 1명)이 등록신청을 하였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각 정당의 사무총장 등이 대신하였다. 후보자등록 첫날인 1992년 11월 20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맨 처음으로 민주자유당 김영구 사무총장이 김영삼 후보의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 한광옥 사무총장이 김대중 후보의 등록신청을, 통일국민당 김효영 사무총장이 정주영 후보의 등록신청을, 새한국당 임경민 총무단장이 이종찬 후보의 등록신청을 하였다. 박찬중 후보는 같은 날 오후에 신청하였다. 11월 24일에는 유일한 여성 후보인 무소속 김옥선 후보가, 11월 25일에는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와 무소속 백기완 후보가 등록신청하였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후보등록마감일인 1992년 11월 25일 오후 2시에 오복근을 지지하는 이기민 등 수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와서 기탁금 3억 원을 납부하고 오복근의 후보등록신청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복근의 가족들이 이를 저지하며 이기민 등과 언쟁을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복근을 직접 출석시켜 진위를 확인한 결과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그의 후보등록신청을 각하하고 납부된 기탁금 3억 원은 돌려주었다.

후보자의 기호(투표용지 인쇄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2개 이상의 정당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 국회에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접수 장면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2개 이상의 정당이 있을 경우 정당명의 가·나·다 순), 무소속후보자(2명 이상이 있을 경우 성명의 가·나·다 순) 순으로 결정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1번,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2번,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3번, 새한국당 이종찬 후보 4번, 신정당 박찬중 후보 5번,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 6번, 무소속 김옥선 후보 7번, 무소속 백기완 후보는 8번을 부여받았다.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경력 등은 <표 6-2>와 같다.

<표 6-2> 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상황

기호	소 속 정당명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1	민주 자유당	김영삼 (金泳三)	1927.12.20 (64세)	민주자유당 총재	서울대학교 문리대 철학과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9선 • 신민당·통일민주당 총재 각 2선 • 민주자유당 총재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비고
2	민주당	김대중 (金大中)	1925.12.3 (67세)	국회의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2년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6선 • 제7대, 제13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3	통일 국민당	정주영 (鄭周永)	1915.11.25 (77세)	통일국민당 대표최고위원	송전소학교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대한체육회장 • 제14대 국회의원 • 통일국민당 대표최고의원 	
4	새한국당	이중찬 (李鍾贊)	1936.4.29 (56세)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12,13,14대 국회의원 • 민주정의당 원내총무·사무총장 • 새한국당 대표최고위원 	12,14 사퇴
5	신정당	박찬중 (朴燦鍾)	1939.4.19 (53세)	신정당 대표최고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5선 • 신정당 대표최고위원 	
6	대한 정의당	이병호 (李丙昊)	1926.3.17 (66세)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아태평양변호사협회 회장 • 아인슈타인노벨평화상 수상 • 대한정의당 대표 	
7	무소속	김옥선 (金玉仙)	1934.4.2 (58세)	학교법인 송죽학원 이사장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9,12대 국회의원 • 신민당부총재 	
8	무소속	백기완 (白基玩)	1932.1.24 (60세)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통일민중운동 연합' 본부 부의장 역임 • 제13대 대통령선거에 민중 대표로 출마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상임고문 	

후보자등록 전부터 유력 후보자들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이 소유한 재산을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후보자등록을 전후하여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였다. 1992년 11월 19일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조승형 비서실장을 통해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 총 3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5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다음날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도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 총 17억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후보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여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나. 후보 사퇴

후보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국민당과 합당협상을 벌여왔던 새한국당 이종찬 후보가 1992년 12월 14일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후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이종찬 후보는 “두 당은 그동안 내각책임제 개헌, 선거공영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실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오늘의 합당은 당연한 정치적 귀결”이라며 합당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종찬 후보의 사퇴로 선거일 현재 후보자는 7명으로 줄어들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3명이 사퇴(1명은 등록무효 처리되었으나 사실상 사퇴였음)하였었다.

3. 기탁금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구별 없이 1인당 3억 원씩이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기탁금은 5,000만 원, 무소속후보자는 1억 원으로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간에 차등을 두었었다. 그러나 1989년 9월 8일 헌법재판소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정당추천후보자(1,000만 원)와 무소속후보자(2,000만 원)의 기탁금액에 차등을 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기탁금도 정당·무소속 구분 없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한 것이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8명이 납부한 기탁금 총액은 24억 원이었다. 이 기탁금은 그 후보자가 신청·설치한 ‘선거인명부 사본작성비용’ 과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을 공제한 후, 잔액은 선거결과 후보자의 득표비율에 따라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선거법에 규

정되어 있었다. 즉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7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잔액을 모두 반환하고, 100분의 5를 초과하였으나 100분의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방송연설 비용(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후보자 각 3회분, 연설원 각 2회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제하여 당해 방송사에 납부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후보자의 유효득표총수가 100분의 5 이하이거나 후보직을 사퇴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방송연설 비용을 공제하여 방송사에 납부한 후, 잔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거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7 이상을 득표한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민주당 김대중 후보,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인명부 사본작성비용 등을 제외한 기탁금 잔액을 모두 반환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이종찬 박찬종 이병호 김옥선 백기완 5명의 후보는 100분의 5 이하를 득표하였거나 사퇴하여 반환받지 못하였다.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한 5명 후보자의 기탁금 잔액이 방송연설비용보다 부족함에

<표 6-3> 제14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반환상황

(단위: 천원)

구 분 후보자별	기탁금액	공제금액			반환금액	부족액
		선거인명부사본 작성비용 등	방송연설 비용	계		
합계	2,400,000	136,250	1,489,863	1,626,113	773,887	1,019,787
민주자유당 김영삼	300,000	44,253	-	44,253	255,747	-
민주당 김대중	300,000	38,533	-	38,533	261,467	-
통일국민당 정주영	300,000	43,327	-	43,327	256,673	-
새한국당 이종찬	300,000	9,212	290,788	300,000	-	193,212
신정당 박찬종	300,000	925	299,075	300,000	-	305,925
대한정의당 이병호	300,000	-	300,000	300,000	-	41,000
무소속 김옥선	300,000	-	300,000	300,000	-	174,650
무소속 백기완	300,000	-	300,000	300,000	-	305,000

※ '부족액'은 '기탁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방송연설비용임.

따라 국고에 귀속될 금액은 하나도 없었다.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한 5명의 후보자(이종찬 박찬종 이병호 김옥선 백기완)는 기탁금 잔액으로 충당하지 못한 방송연설비용의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고 1992년 12월 22일과 1993년 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였으나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만 4,1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납부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3년 1월 20일 부족액을 우선 국고에서 지출하여 방송사에 납부한 후, 1993년 2월 1일 후보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위탁하였다.

제4절 선거운동

제14대 대통령선거는 1960년대부터 야당에서 함께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숙명적 라이벌 관계였던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와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각각 여당후보와 제1야당의 후보가 되어 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나라 최대재벌 중에 하나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까지 가세하면서 선거운동도 그만큼 치열하였다.

1. 선거전략과 선거공약

각 정당의 창당배경과 지지기반이 달랐듯이 선거전략도 각기 달랐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신한국 창조'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제3당인 통일국민당은 '경제대통령론'을 주요 선거전략으로 삼았다. 선거공약도 선거전략과 연계시켜 특색 있는 것을 많이 내놓았으나 유사한 것도 많이 있었다.

가.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1992년 10월 17일 정원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김윤환·이춘구·이한동 국회의원을 상근 부위원장으로 하며, 54명의 당무위원급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김영구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기구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들어갔다.

1) 선거전략

민주자유당의 선거전략은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창조'를 내세우는 것이었다. 김영삼 후

보는 노태우 정부에서 발생했던 수서비리사건 등의 부정부패가 한국사회에 만연하였고, 상위 계층의 사치와 낭비가 한국을 병들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한국병’ 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같은 부정부패, 사치·낭비 등을 타파하기 위해 위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각계가 ‘윗물맑기운동’ 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고 신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건설” 이라는 선전구호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주자유당은 30년 동안 야당생활을 통해서 다져온 김영삼 후보의 민주화와 개혁의지가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며 그의 정치적 경륜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개혁은 국정이 안정되어야 실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안정론과 연계시켰다. 안정된 개혁은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이룩된 3년간의 집권경험, 여당 생활로 획득한 국정운영 경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면서 안정회구세력을 겨냥한 득표전략을 펼쳤다.

다른 정당 후보자의 단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도 구사하였다. 민주당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남한조선노동당 간첩단 사건’ 과, 민주당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과 정책연합을 한 것을 거론하며 사상적 공세를 펼쳤다.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에 대해서는 현대그룹이 통일국민당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유권자들에게 금권선거의 주범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였다.

2) 선거공약

민주자유당은 1992년 11월 3일 김영삼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대 대통령선거공약을 심의한 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선거공약은 ‘신한국·통일된 선진민주국가 건설’ 을 목표로 한 10대 과제, 77개 항목, 292개 분야의 세부 실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치·행정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획기적인 행정쇄신과 대통령직속 부정방지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95년 내에 실시하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경제·통일·외교의 일환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남북 간

직접적인 체육교류를 추진하며, 1995년 전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2년 내에 물가를 3% 수준으로 유지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술발전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기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위해 10년간 42조 원을 투입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쌀 수입개방에 반대하겠다는 것 등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며 근로자주택 연 10만 호를 공급하는 등 1998년까지 주택공급률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것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늘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학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복지대책위원회 설치, 노인건강관리법 제정, 국민연금 확대, 고용보험제와 지역의료보험제 실시 등을 통해 질 높은 사회복지 구현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나. 민주당

민주당은 1992년 10월 9일 이기택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고위원들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한 그 산하에 한광옥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이철 원내총무와 장재식 정책위원장 및 홍사덕 대변인을 부분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본부를 결성한 후 당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1) 선거 전략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정권교체’를 내세우는 것이었다. 즉, “이제는 바꿔보자”라는 선거 구호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권교체 심리를 자극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펼쳤다. 민주당은 ‘진정한 안정’은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억압통치시대로부터 진정한 민주정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정치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야만 이 같

은 정치실현이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이 주장하는 ‘한국병’은 그 원인이 여소야대에 따른 국가의 혼란이 아니라 3당 합당에 의한 민주자유당의 탄생이 그 원인이라며 김영삼 후보를 비난하는 네거티브 전략도 구사하였다.

민주당은 ‘뉴 DJ 이미지’라는 선거전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짜나가며 선거운동의 시스템을 여기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뉴 DJ 플랜’은 과거 김대중 후보의 강성·과격인상 씻기에 중점을 뒀던 이른바 야당 투사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완화하고 부드러운 면을 부각시키면서 ‘민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쌓기에 비중을 두었다. 연설회와 소형인쇄물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보다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로 비추어지도록 이 같은 이미지 변화를 모색하였다. 민주당은 김대중 후보의 이미지 개선을 유도하여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1992년 12월 2일 재야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결성하여 재야세력으로부터도 지원을 얻으려고 하였다.

2) 선거공약

민주당은 1992년 11월 2일 선거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한 후 20개 분야, 438개 항목의 선거공약과 100대 중점공약을 확정·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대화합의 정치를 슬로건으로 모든 정파·계층을 포함하는 거국내각 구성과 대사면의 실시로 국민화해시대를 열고, 전과기록의 말소를 확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제거하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것 등을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민주수호질서법’으로 대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3년 내에 실시하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연설회 등을 통해 1996년 실시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내각제 개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1연합 2독립정부 → 1연방 2지역 자치정부 → 1국가 1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추진, 이산가족의 인도적 교류, 500만 해외동포를 위한 교민청 설치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2년 안에 물가를 3% 내로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고, 과학기술 투자를 국민총생산(GNP)의 5%대로 확대하여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이루며, 한국은행과 금융계

인사권 등 금융정책을 정부에서 독립시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1993년까지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경제질서를 실현하고, 쌀·쇠고기 등의 수입개방을 불허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였다.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주택 위주로 연간 6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농어촌 부채를 대폭 감면하며, 수세 및 농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 등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급식과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1995년까지 교육재정을 GNP의 5%로 확충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교원의 신분보장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동안 불법단체로 간주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을 합법화하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복지·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수준으로 개정하고, 총액임금제를 폐지하여 생활급을 보장하는 임금제도를 확립하며, 고용보험제를 실시하겠다는 것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다. 통일국민당

통일국민당은 1992년 7월 중순 김광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선거기획단을 발족시키고, 10월 중순 김동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였다.

1) 선거전략

통일국민당의 선거전략은 ‘경제대통령론’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정주영 후보가 양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경제 부분이었으므로, ‘실물경제를 아는 대통령’이라고 집중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또한 통일국민당은 ‘양김 청산’을 주장하는 전략도 사용하였다. ‘구정치 대 새정치’를 주장하며 선거전을 ‘양김 대 반양김’으로 몰고 가면서 유권자들에게 정주영 후보만이 대안주자임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통일국민당은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에 대해서는 3당합당 책임과 정부의 실정 및 국가경영능력 부족을, 민주당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간첩단 사건을 거론하며 양김을 공격하였다.

2) 선거공약

통일국민당은 1992년 11월 7일 선거대책운영위원회를 열고 '잘사는 나라, 깨끗한 나라, 함께 사는 나라' 를 3대 국정지표로 한 11개 분야, 50대 세부사항으로 구성된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공약을 확정·발표하였다.

정치·행정 분야의 선거공약으로는 거국내각 구성, 1993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각제로 개헌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화해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에 관한 공약으로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 실시, 1년 내 물가를 3% 수준으로 억제, 3년 내 300억 달러 무역흑자 실현, 5년 내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금리 6%로 인하 등을 제시하였다. 농지거래 자유화로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농어가에 3%의 장기저리 융자로 농어가 부채 부담을 줄이며, 농어민 생산자 단체의 육성으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토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지가안정, 주거안정,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해 채권입찰제를 즉각 폐지하고 서민에게 30년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특히 아파트를 수도권은 반값, 지방도시는 3분의 2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여 언론이나 유권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교수평가제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노동자의 정년을 60~65세로 연장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며, 총액임금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라. 기타 정당

신정당 박찬중 후보는 양김구도 타파와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기존 정치인들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박찬중 후보는 세대교체와 체질개선된 국민내각 구성, 철저한 삼권분립 실현 등의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는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도덕과 정의가 지배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무소속 김옥선 후보는 전국구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원제로 의회권능을 신장시키

며,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문어발식 기업의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무소속 백기완 후보는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광주사태의 책임자 처벌, 5공청산, 반통일적인 분단억압착취구조 청산, 재벌기업의 몰수·해체,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표 6-4〉 제14대 대통령선거 유력정당 선거공약 비교

구 분	민주자유당	민 주 당	통일국민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995년 이내 실시	1993년 상반기 실시	1993년 상반기 실시
내각제개헌	미실시	1996년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견 수렴	집권 2년 6개월 내 실시
국가보안법	현행 유지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대체	개정(독소조항 제거)
금융실명제	실시(시기는 유동적)	1993년 내 실시	취임 즉시 실시
물가억제	집권 2년 내 3%선	집권 2년 내 3%	집권 1년 내 3%선
금리문제	1994년 이후 한자릿수로 인하		집권 즉시 금리 6%로 인하
재벌상호지급보증	단계적 축소	대폭 축소	대폭 축소
중소기업대출	신용보증 확대	여신 의무대출 50% 이상 확대	
주택건설	공공주택 연 30만 호	소형주택 위주 연 60만 호	대폭적 가격 인하를 통한 아파트 공급
노조정치활동	현행법 유지(불인정)	허용	허용
총액임금제	현행법 유지(고수)	폐지	폐지
쌀 시장 개방	반대	반대	반대

2. 선거운동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99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당해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였다. 선거운동방법은 선전벽보, 방송연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경력방송, 신문광고, 연설회, 기호표, 표지판, 현수막, 소형인쇄물, 정견·정책집, 방송광고, 표찰, 어깨띠 등 14가지였다. 이 중 소형인쇄물, 정견·정책집, 방송광고, 표찰, 어깨띠 등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선거운동 방법이었다.

가. 선전벽보

선전벽보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원고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인쇄하여 1992년 12월 4일까지 첩부하였다. 선전벽보의 첩부기준은 구는 인구 500명, 시는 인구 300명, 군은 인구 100명에 1매 비율이었다. 이 기준에 의해 전국에 첩부된 선전벽보의 수량은 총 1,728,304매였다. 후보자 1인당 첩부매수는 216,038매였다. 첩부된 선전벽보가 훼손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241,472매가 훼손되어 교체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 선전벽보



각 후보자들은 선전벽보에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짤막한 선전구호를 게재하였다. 이러한 선전구호는 그 정당의 선거전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기호1번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는 “신한국 창조!”, 기호2번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는 바뀔시다”, 기호3번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 이란 문구를 게재하였다.

기호4번 새한국당 이종찬 후보는 “변화하는 세계 새 한국의 선택!”, 기호5번 신정당 박찬중 후보는 “짧어서 좋다! 깨끗해서 좋다!”, 기호6번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는 “깨끗한 정치! 법을 지키는 정치!”, 기호7번 무소속 김옥선 후보는 “믿음·희망·사랑의 정치”, 기호 8번 무소속 백기완 후보는 “세상을 바뀔시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첨부된 선전벽보를 훼손하여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강원도 춘천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집 담벼락에 선전벽보를 첨부하였다며 도끼로 그 벽보를 수차례 찍어 훼손시킨 사람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선전벽보 훼손사례는 전국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나. 소형인쇄물 및 정견·정책집

후보자나 정당은 소형인쇄물 4종(전단형 1종, 책자형 3종)과 정견·정책집 1종을 제작하여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었다. 소형인쇄물과 정견·정책집 배부제도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2면 이내로,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20면 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나 정당이 직접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었다. 전단형·책자형 모두 작성·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전국 세대수에 상당하는 매수 이내였다. ‘정견·정책집’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70면 이내로 작성하여 역시 후보자나 정당이 직접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었다. 작성·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전국 세대수에 1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수 이내였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지도자 대통령은 김영삼” 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40년간 정치역정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인물임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담은 소형인쇄물 3종(27,715,398매)을 제작·배부하였다. 정견·정책집은 변화, 개혁, 신한국을 표제로 1종(2,039,645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 소형인쇄물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는 바뀐다, 바꾸면 이렇게 좋아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부정부패”, “3당야합”, “민자당 심판”, “정권교체의 필요성”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소형인쇄물 4종(25,288,904매)을 제작·배부하였다. 정권·정책집은 “추락하는 용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1종(2,318,097매)을 제작·배부하였다.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제업적을 소개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형인쇄물 4종(27,255,027매)을 제작·배부하였다. 정권·정책집은 “새 시대, 새 나라, 새 일꾼 자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종(1,818,586매)을 제작·배부하였다.

새한국당 이종찬 후보는 “밝은정치, 밝은정부, 알찬경제, 참된 사회”라는 제목 등으로 소형인쇄물 4종(4,301,152매)을, “변화하는 세계, 젊은 한국의 선택 이종찬”을 표제로 한 정권·정책집 1종(330,800매)을 제작·배부하였다.

신정당 박찬중 후보는 소형인쇄물만 3종(8,220,393매)을,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도 소형 인쇄물만 4종(16,791,161매)을, 무소속 김옥선 후보 역시 소형인쇄물만 3종(1,404,458매)을, 무소속 백기완 후보도 소형인쇄물만 4종(4,783,502매)을 제작·배부하였다.

소형인쇄물에는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 외에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은 색깔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소제목으로 김대중 후보가 북한·주사파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만화가 들어 있는 “92 한국의 선택”이라는 소형인쇄물을 제작하였다가 민주당의 반발로 배부하지 못하였다. 이 만화는 1988년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서경원 전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1992년 10월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김대중 대표의 비서인 이근희, 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 등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단체로 묘사하였다.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이 인공기를 등장시켜 색깔논쟁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과 「대통령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1992년 12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소형인쇄물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문제의 소형인쇄물이 아직 유권자에게 배부되지 않은 상태이며, 민주자유당이 자진 폐기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를 위한 지도·계몽의 차원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이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소형인쇄물은 게재내용뿐만 아니라 제작수량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소형인쇄물의 제작 및 배부를 후보자 측에서 하고,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정 제작매수(1종당 전국 세대수에 상당하는 매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소형인쇄물의 작성은 후보자가 하고, 배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바뀌게 된다.

다. 방송연설

방송연설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에 20분 이내에서 각각 5회까지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 후보자 측에서 총 20회(후보자 10회, 연설원 10회)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었다.

방송연설은 각 가정에 TV 보유가 보편화되어 전파력이 강하고, 한 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중요시 하는 선거운동이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싸서 유력 후보자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분(후보자 3회, 연설원 2회)의 방송연설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영삼·김대중·정주영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들은 법정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였다. 연설에 이용된 방송시설은 KBS1 TV 및 라디오, KBS2 TV, MBC TV 및 라디오, SBS TV 및 라디오,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이었다.

〈표 6-5〉 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방송연설 상황

(단위 : 회)

후보자별	구 분	계	구 분		연설원
			텔레비전	라디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자	10	5	5	정원식, 이순재, 이명박, 황산성,곽수일
	연설원	10	5	5	
민주당 김대중	후보자	10	5	5	이기택, 김민석, 한상진, 정한용, 한명숙
	연설원	10	5	5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자	10	5	5	김동길, 김복동, 김용환, 이인원
	연설원	10	5	5	
새한국당 이증찬	후보자	8	3	5	장경우, 오유방, 이영일
	연설원	8	3	5	
신정당 박찬중	후보자	10	5	5	김동주
	연설원	5	3	2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자	7	4	3	-
	연설원	-	-	-	
무소속 김옥선	후보자	6	3	3	김형욱
	연설원	3	2	1	
무소속 백기완	후보자	8	5	3	오세철
	연설원	4	2	2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는 방송연설을 통해 주로 3당합당 비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병 치유 등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김영삼 후보는 “1988년 국회의원선거 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의 무기력 속에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도래하였기에 3당 합당에 동의하였다” 며 3당 합당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얻은 반면 잃은 것도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중 가장 큰 것은 국가의 기강이 흔들린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영삼 후보는 “현재 우리사회는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고 국민들은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활력이 사라졌다” 며 이런 현상을 ‘한국병’ 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제일 먼저 활력을 잃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한국병의 원인이 부정부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부패 선언과 함께 안정의 기반 위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바꾸고, 공평무사한 인사를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성하며, 지역 차별 없는 탕평책을 쓰겠다고 말하였다. 연설원으로는 정원식 선거대책위원장, 이명박 의원, 이순재 의원, 황상성 변호사,곽수일 교수 등이 나서서 김영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방송연설을 통해 주로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와 국정수행 능력, 정권 교체 등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기존의 강성 이미지를 해소하려는 듯 유권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려고 하였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과거의 정치역정을 소회하면서 일관된 정치관을 갖고 행동해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두환 정부시절 미국에서 ‘대중경제론’ 등 경제서적을 저술한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만이 경제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경제전문가임을 자처하였다. 선거일 3일 전인 12월 15일 마지막 연설회에서는 ‘부산 초원복집 사건’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기술하는 “3. 선거쟁점” 참조)을 관련개입이라며 비난하였다. 연설원으로는 이기택 대표, 김민석 민주당영등포구을구지구당위원장, 한상진 교수, 텔런트 정한용, 한명숙 여성민우회장 등이 나서서 김대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한편 1992년 12월 15일 오후 7시 45분 KBS2 TV를 통해 김대중 후보의 연설이 방송되던 도중 제주지역에서 지역프로그램 화면과 겹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한때 논란이 일었다. KBS는 주조정실 기술자의 조작실수로 빚어진 방송사고였다고 해명하였다.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방송연설을 통해 과거 인생역정과 기업인으로서의 업적 및 신념 등을 밝히고 양김과 차별화시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정주영 후보는 어린 시절부터 노동

판에 뛰어들었고 후에 현대건설을 세운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나라의 경제근대화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용과 정직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말하고, 양김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경제를 되살릴 수 없고 정치도 깨끗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다고 밝혔다. 정주영 후보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양김은 갖은 공약을 내걸었으면서도 당시 노태우 후보에게 지지 않았느냐?”며 양김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주영 후보는 과거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킨 멕시코의 카를로스 살리나스 대통령의 예를 들며 자신이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였다. 연설원으로는 김동길·김용환 최고위원, 이인원 특보, 김복동 의원 등이 나서서 정주영 후보를 지지를 호소하였다.

신정당 박찬중 후보는 방송연설을 통해 주로 ‘깨끗한 정치구현’을 거론하고, 양김의 행태를 비난한 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대립과 분열을 일삼는 낡은 정치세력에게 맡길 수 없고, 젊은 생각과 강력한 의지 및 활기찬 행동을 가진 새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후 이것이 자신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클린턴, 러시아의 엘친, 일본의 자민당의 변화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세계의 시류에 발 맞춰 민주번영의 통일시대로 힘차게 달려가자고 역설하였다. 연설원으로는 김동주 대변인이 나서서 박찬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는 방송연설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변호사 생활을 하였음을 밝히고, 부정부패로 가득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다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무소속 백기완 후보는 기성 정치권이 ‘가진 자 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중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의 연설원으로는 오세철 교수가 나섰다.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한국선거연구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의 90.3%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본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선거운동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 주었다. 방송연설이 중요한 선거운동이 되면서 연설일시를 둘러싸고 물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각 후보자 측에서는 가급적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연설을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방송연설 일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되, 그 일시가 후보자 간에 중첩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TV 70건 중 38건, 라디오 68건 중 2건이 중첩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2년 11월 26일 후보자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방송일시를 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MBC로부터 통보받은 방송연설 가능시간 '22시 30분' 이 '21시 50분' 으로 40분간 앞당겨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후보자 대리인의 동의 하에 이미 조정된 방송일정표를 여기에 맞추어 변경하였다.

그러자 민주자유당에서 변경된 방송시간은 자기 당에 불리하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후보자가 사용하지 않은 비어 있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민주자유당이 신청한 건수 중 7건의 방송연설 일시를 조정해주었다. 민주자유당에게 새로이 배정한 7건의 연설일시 중에는 '1992년 12월 15일 21시 50분'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방송시간은 원래 무소속 백기완 후보에게 배정되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방송일정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21시 50분' 을 '22시 50분' 으로 잘못 기재하여 이 시간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보고 착오로 민주자유당에게 배정한 것이었다.

이에 백기완 후보 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자유당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민주당이나 통일국민당에서도 이를 비난하며 방송연설 일시를 전면 재조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로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 새로이 추첨하여 방송연설 일시를 결정하였다.

라. 방송광고

방송광고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방송광고는 한 후보자당 1회 1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5회까지 할 수 있었다. 광고에 이용된 방송은 주로 KBS와 MBC였고, 방송시간은 TV의 경우 주로 밤 9시 뉴스 시작 전이었다.

방송광고는 제작비가 편당 4,000만~5,000만 원, 광고비는 1회 방영에 1,400만~2,00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비싸서 유력 후보자가 아니면 하기가 쉽지 않았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민주당 김대중 후보,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신정당 박찬중 후보는 법정 광고횟수 10회(TV 5회, 라디오 5회)를 다 하였지만 나머지 4명의 후보는 1회도 하지 못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신한국 창조를 주제로 4편의 방송광고를 내보냈다. 한 편의 광고내용을 보면 켈러리맨과 농부, 택시운전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사심 없이 일해야 경제가 산다”는 등의 각자의 의견과 소망을 밝히고, 이에 김영삼 후보가 “노력한 만큼 보람을 누리 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화답하며 신한국 창조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와 진정한 경제대통령을 주제로 하여 3편의 방송광고를 내보냈다. 한 편의 광고내용을 보면 젊은 남녀가 등장하여 “잘못하면 바뀌야죠”와 “이번에 바뀌보자”라고 말 하자, 화면의 내레이터가 “그렇습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이 바뀌야 할 때입니다”라고 화답하면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통일국민당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격동기의 우리나라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정주영 후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 근대화의 역군으로 성공하였다는 내용의 방송광고를 내보냈다.

마. 신문광고

신문광고는 각 일간신문마다 4회까지 할 수 있었다. 일간신문은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법정 광고횟수는 260회 이상이었다. 하지만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후보는 200회 이상 신문광고를 하였지만 나머지 후보는 아주 적은 횟수를 하거나 단 1회도 하지 못하였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표 6-6> 제14대 대통령선거 신문광고 상황

(단위 : 회)

민주자유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새한국당 이종찬	신정당 박찬중	대한정의당 이병호	무소속 김옥선	무소속 백기완
259	208	254	-	18	2	-	-

민주자유당은 신문광고를 통해 김영삼 후보의 도덕성과 지도력, 안정, 신한국 창조 등을 부각시켰다. 특정 큰 주제 아래 연관성이 있는 작은 주제들을 시리즈로 광고하여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통일을 이루었다. 민주자유당의 신문광고 내용 중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김영삼 뿐입니다! 김영삼과 함께 신한국을 창조합시다!”, “땀 흘린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정직한 사람들이 주인인 나라,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등이 있었다. 또한 민주당 김

통일국민당은 시종일관 정주영 후보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였다. 통일국민당은 경제문제 해결, 지도력 변화 등을 주제로 각종 정책을 시리즈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금권선거 시비에 휘말리자 상당량을 이에 대한 해명성, 방어성 광고를 게재하였다. 통일국민당의 신문광고 내용 중에는 “기호 3번 정주영이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반드시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수지에 맞는 농수산업, 풍요로운 농어촌, 도로를 2층으로 만들어 교통지옥을 없애겠습니다”, “내각책임제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겠습니다” 등이 있었다.

▲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신문광고(동아일보 12월 17일)

신정당 박찬종 후보는 “젊어서 좋다! 깨끗해서 좋다! 박찬종은 젊습니다. 박찬종은 깨끗합니다”란 구호를 게재하여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내용을 광고하였다.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는 “세계평화운동에 평생을 바친 국제적 인물 이병호!” 등의 내용으로 자신이 아세아·태평양변호사협회 회장이었음을 내세우는 광고를 하였다.

바. 연설회

연설회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개표구³⁸⁾별로 1회 5시간 이내에서 5회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 이 기준에 의해 한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정개최 횟수는 1,540회(308개표구×5회)였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법정 개최횟수가

38) 개표구란 구·시·군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구·시·군 안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당시「대통령선거법」 제14조)

3,428회였는데 이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었다.

연설회의 법정 개최횟수가 줄어들었지만 후보자들은 이를 다 채우지 못하였다.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법정 개최횟수의 65.8%인 1,014회를 개최하여 가장 많이 개최하였고, 그 다음은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로 844회를 개최하였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는 571회, 무소속 백기완 후보는 281회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7>과 같다.

<표 6-7> 제14대 대통령선거 연설회 개최 상황

(단위: 회)

법정개최 가능횟수	민주자유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새한국당 이종찬	신정당 박찬종	대한정의당 이병호	무소속 김옥선	무소속 백기완
1,540	571	1,014	844	101	147	36	42	281

제13대 대통령선거 때까지만 해도 연설회는 가장 정통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었다.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후보자의 연설을 경청하고 박수를 보내며 연호하는 장면은 대통령선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대규모 연설회보다는 중·소규모로 개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세과시를 위해 청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그 과정에 많은 선거비용이 들어갔으며, 연설회장에서 폭력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 폐해가 심각했었다. 이 때문에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은 청중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대규모 연설회를 자제하였다. 다만, 통일국민당은 1992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후보자들은 연설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과 출마이유를 밝히고, 선거공약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상대방의 약점도 공격하였는데 선거종반으로 갈수록 그 빈도가 높아졌다. 후보자들은 연설회장에 대형 화면이 설치된 영상광고 차량(점보트론)을 배치하여 연설 장면을 중계하는 등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였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농악대나 치어걸 또는 인기연예인 등을 동원하여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후보자들이 연설회를 통해 밝힌 내용은 소형인쇄물, 방송광고, 신문광고 등에서 기술한 것과 큰 차이는 없었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주로 여당의 선거전략인 ‘안정론’, ‘3당 합당의 당위성’, ‘신한국 건설’, 자신의 경제관,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

하였다. 안정론과 관련해서는 “힘없는 소수정당에 정권을 맡겨 정치·경제를 혼란스럽게 할 수는 없다”, “안정 없는 개혁은 혼란만 부를 뿐이다”, “만약 소수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정계개편이다 파벌싸움이다 하여 극심한 논쟁 속에 또 몇 년이 흐를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3당 합당과 관련해서는 “현 경제가 어려운 원인은 6공화국 초기 여소야대 4당 체제의 혼란과 정부의 무능력에 기인한 것이다”, “만약 3당 합당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헌정질서는 중단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경제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모두가 다시 뛰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후 “기업인과 근로자 모두가 희망과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여 민주시대에 걸맞게 경제정책을 일신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신경제 구상이다”라고 말하였다.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호남지역 연설회에서 거론하였다. 그는 “제14대 대통령선거는 과거의 민주 대 반민주, 관권 대 민권, 호남 대 영남의 대결선거와는 분명히 다른 선거다”, “선거는 지역선택이 아니라 정책의 선택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김영삼 후보는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도 하였다. 민주당이 38개 재야단체 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이하 이 장에서 “전국연합”이라 한다)과 정



▶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의 인천 연설회 (1992년 12월 5일)

책연합한 것을 겨냥하여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사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주영 후보에 대해서는 “현대그룹 조직을 이용한 금권·타락선거의 주범”이라고 비난하였다.



▶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부평 연설회 (1992년 12월 17일)

민주당은 김대중 후보와 이기택 대표가 각자 별도의 유세반을 편성하였다. 지역주의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호남 출신인 김대중 후보는 주로 중부권과 영남권에서, 영남 출신인 이기택 대표는 호남권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주로 정권 교체의 필요성, 3당 합당에 대한 비판, 상대후보의 색깔론 제기에 대한 해명과 반박, 여당의 금권선거 등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바꿔보자’라는 선전구호를 내걸고 “정권이 바뀌어야 화합과 변화를 위한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당 합당과 관련해서는 “3당 야합으로 민주자유당이 출범하기 전에는 4년간 국제수지 흑자가 32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민주자유당 출범 후 불과 3년 사이에 200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한국은 이제 한국병이 아닌 민자당병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작금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3당 합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3당 합당을 비판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자신에 대한 용공시비와 관련해서 “자기와 협력하면 괜찮고 경쟁자와 협력하

면 용공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주당이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한 것에 대해 민주자유당에서 용공론을 제기하자 “1991년 12월 27일 전국연합 사무실개소식 때 김영삼 총재 명의로 축하 화환과 금일봉이 전달되었는데 그들이 좌익이라면 김영삼 후보도 좌익이 아닌가”라고 반격하였다. 금권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자유당은 시계를 400만 개나 만들고 민주산악회를 통해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김영삼 후보는 봐주고 현대그룹만 수사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용산역연설회 (1992년 12월 3일)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주로 경제대통령론을 거론하고 양김을 비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통일국민당이 금권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하였다. 정주영 후보는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을 연설회의 선전문구로 내걸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양김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양김 씨만 없었어도 나라 형편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를 하려면 적어도 몇 년 앞은 내다보고 국가경영의 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세계는 지나간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으며 변화 없이 발전은 없다”고 주장하며 양김을 공격하였다. 또한 “김영삼 후보가 정권을 잡기 위해 여당으

로 변신해 3년 동안 민자당과 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노태우 대통령과 6공을 비난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다”라며 김영삼 후보를 비난하였다. 1992년 12월 5일 현대중공업 직원이 “회사자금 338억 원을 통일국민당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우리 당은 금권선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오히려 정부가 통일국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정당 박찬중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대규모 연설회를 개최하지 않고 트럭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 중심가를 찾아다니며 연설하였다. 특히 박찬중 후보는 노상에서 유세를 하여 유권자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찬중 후보는 연설회에서 “제14대 대통령은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이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 “세대교체를 위해 나선 나를 지지해 온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등 주로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 신정당 박찬중 후보가 거리에서 연설하고있다.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김영삼·김대중·정주영 후보가 금권선거를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후,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정치인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무소속 김옥선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야합과 변절을 일삼는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참다운

의회정치를 기대할 수 없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출마이유를 밝힌 후, “믿음 희망 사랑의 정치로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무소속 백기완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김영삼 후보는 정치행적이 변절과 거짓으로 얼룩졌고, 김대중 후보는 전국연합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역사적인 청산대상과 청산주체인 진보세력을 엮어 잡탕을 만들었다”며 양김을 비판하였다.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는 재벌경제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일정 부분 정주영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재벌경제는 민중경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연설회 개최과정에 잡음도 일어났다.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예인이나 무용수 등을 동원하여 연설회 전후에 흥을 돋우게 하는 행사를 하였다. 이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급기야 통일국민당이 충남 대천·보령에서 개최한 연설회에서 무용수들이 스트립쇼를 연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장면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자 통일국민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사. 기타 선거운동

앞에서 기술한 선거운동 외에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력방송, 현수막,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표지판, 표찰, 어깨띠, 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경력방송’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 정당명, 직업, 학력, 경력 등을 3회 이상 방송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TV로는 KBS1, KBS2, MBC, SBS 등 4개사에서 각 3회씩 방송하였고, 라디오로는 KBS1, MBC, SBS, CBS, BBS, PBS 등 6개사에서 각 3회씩 방송하였다.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소속 정당명만을 게재하여 구·시 지역은 관할 동수에 상당하는 매수 이내, 군 지역에서는 읍은 2매 이내, 면은 1매씩 게시할 수 있었다. 이 기준에 의해 전국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법정 게시매수는 총 3,838매였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는 3,837매, 민주당 김대중 후보도 3,837매,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3,833매, 새한국당이종찬 후보는 3,373매를 게시하여 법정 게시매수를 거의 다 게시하였다. 그러나 신정당 박찬종 후보는 2,154매,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는 990매, 무소속 김옥선 후보는 2,062매, 무소속

백기완 후보는 1,733매밖에 게시하지 못하였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1회에 2시간 이내에서 각 3회씩 개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었고, 후보자들이 토론방식과 참석대상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여 단 1회도 개최하지 못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선거법 정신을 존중하여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는 ‘8인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였다.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처음에는 주요 3당 후보자(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간의 ‘3자 토론회’를 주장하다가 민주자유당에서 ‘8인 토론회’를 주장하자 절충안으로 3가지 토론방식을 제의하였다. 즉 민주자유당이 주장하는 ‘8인 토론회’, 김영삼·김대중·정주영 후보와 원내의석을 가지고 있는 새한국당 이종찬 및 신정당 박찬종 후보가 참여하는 ‘5인 토론회’, 실질적 3과전을 벌이고 있는 김영삼·김대중·정주영 후보 간의 ‘3자 토론회’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후보자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1992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열리지 못하였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은 후보자의 자질과 성품 등이 그대로 드러나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하는 연설회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선거비용이 적게 들며, 정견·정책대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선거운동이었다. 따라서 당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으나 무산되었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때에도 참석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여 1회도 개최하지 못하였었다. 대담·토론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는 참석에 적극적인 반면 자신이 없는 후보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면서 열리게 된다.

‘표지판, 표찰, 어깨띠, 수기’ 등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을 게재할 수 있었다. 표지판 등은 일정한 규격으로 작성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설회장 안에서만 부착·착용하거나 휴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 등으로 신고 되지 않은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었고, 선거사무원 등이라고 하더라도 연설회장이 아닌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 및 연구단체인 관훈클럽은 1992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김영삼·김대중·정주영 후보를 각각 초청하여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는 법정 선거 운동은 아니었지만 앞의 “사. 기타 선거운동”에서 기술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도 관훈클럽은 당시 유력 후보자 4명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TV 방송국에서 전 과정을 녹화 방송하였었다. 그러나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방송하지 못하였다. 선거일을 3일 남겨둔 1992년 12월 15일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이 공동성명을 통해 방송국에 녹화방영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신문지면과 TV뉴스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이 보도되어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의 질문자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의 논설위원 등이었다. 이들은 주로 후보자들의 정견, 정치철학,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첫 번째 토론회는 1992년 12월 1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를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김영삼 후보에게는 ‘쌀 개방 문제’, ‘3당 합당과 김영삼 후보의 평소 언행 일치여부’, ‘집권 후 내각제 실시 여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한국병에 대한 책임론’, ‘금융제도 개혁 등의 신경제 구상’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삼 후보는 “멕시코 등 쌀 개방 반대국가와 협력 대응하여 저지하겠다”,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으면 헌정중단의 비극이 왔을 것이다”, “내각제는 당선된 후에도 전혀 추진할 생각이 없다”, “한국병은 나부터 정치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금융을 포함한 경제체제를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고치려는 것이 신경제다” 라고 답변하였다.



▶ 김영삼 후보 관훈클럽 토론회(1992년 12월 1일)

두 번째 토론회는 1992년 12월 2일 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김대중 후보에게는 주로 ‘거국내각에 전국연합이 포함되는지’, ‘간첩단 사건에 대한 안기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의 조직원에게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농어촌 부채경감법과 농어민에 대한 저리융자의 현실



▶ 김대중 후보 관훈클럽 토론회(1992년 12월 2일)

성’, ‘과거 10·26 사태 이후 군부의 김대중 비토론이 지금도 지속되는지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후보는 “전국연합과의 연립내각 구성은 생각 없다”, “간첩단 사건은 수사기관이 정권유지를 위해 반대세력을 음해하려는 것일 수 있고 오히려 김일성에게 농락당하는 것이다”, “농어촌 구조개선과 유통구조가 병행되면 부채경감과 저리융자는 가능하다”, “군부의 비토론은 정적 매장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지금은 그런 걱정 없다”고 답변하였다.

세 번째 토론회는 1992년 12월 3일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를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정주영 후보에게는 ‘재산을 영세민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금권선거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아닌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는데 과거 정경유착을 하지 않았는가?’, ‘선거사범으로 통일국민당 당원이 가장 많이



▶ 정주영 후보 관훈클럽 토론회(1992년 12월 3일)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정주영 후보는 “금권선거는 오히려 민주자유당에서 하고 있다”, “과거 정치권에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이권을 얻은 적은 없었다”, “통일국민당 당원들의 기를 죽이기 위한 관권선거이지 이들이 결코 현행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선거쟁점

선거운동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통일국민당과 정부·여당을 둘러싼 ‘금권·관권선거 논쟁’, 지역주의와 관권선거의 논란을 일으킨 부산지역 기관장 모임인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둘러싼 ‘간첩단 사건과 사상논쟁’ 등이었다. 또한 민주자유당 ‘박태준 최고위원의 통일국민당 입당설’도 쟁점이 되었다.

가. 금권·관권선거 논란

‘금권선거’는 민주자유당이 통일국민당을 겨냥해서, ‘관권선거’는 통일국민당이 민주자유당과 정부를 겨냥하여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 민주당은 통일국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금권선거 논란은 우리나라 최대 재벌 중의 하나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자유당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와 현대그룹과의 관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통일국민당이 금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역대 선거에서 금권선거는 주로 야당이 여당을 겨냥하여 제기하였는데,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인 통일국민당을 향하여 제기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는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경제력이 워낙 컸기 때문이겠지만, 정주영 후보와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이 비슷하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즉, 민주자유당 입장에서는 정주영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하면 그만큼 김영삼 후보의 표가 줄어들어 최대 경쟁자인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유리해진다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었다.

금권선거 논란은 1992년 11월 4일 검찰과 경찰이 “현대그룹이 선심관공과 당원확보 운동 등을 통해 정주영 후보를 위하여 대대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현대그룹과 그 방계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확대되었다. 12월 4일에는 검찰·경찰·국세청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대그룹 4개 계열기업이 통일국민당의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검찰의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통일국민당은 중립내각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여당에 기울어져 있다며 ‘편파적 탄압’이자 ‘관권선거’라고 주장하였다. 1992년 11월 30일 통



▶ 경찰의 현대그룹본사 재무담당 사무실 조사(1992년 12월 4일)

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개최한 연설회에서 “민주자유당이 우리 당 선거운동을 매도하는 것은 통일국민당을 묶어두고 자신들이 돈을 뿌리려는 사전 포석”이라며 “돈을 뿌려도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금권작태를 우리 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12월 4일 통일국민당 변정일 대변인은 “현대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수사는 통일국민당과 현대에 대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탄압”이라면서 정부가 관련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일관되게 통일국민당이 금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1992년 11월 30일 정원식 민주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통일국민당은 현대그룹을 통한 금권선거를 중단하라”고 공격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정부의 현대계열사 세무조사 및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당연한 귀결이라며 반색하면서 “그동안 기업조직을 동원한 통일국민당의 극심한 불법·타락상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와중에 통일국민당 김광일 최고위원이 1992년 11월 17일 통일국민당을 탈당한 후 “통일국민당은 현대그룹의 외피에 불과하다. 현대그룹의 계열사가 현대 인력으로 관리장을 임명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자금을 살포하는 등 소위 정경일체식 선거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2월 5일에는 현대중공업 출납담당 직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의 기업

자금 338억여 원이 통일국민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통일국민당은 현대중공업 출납담당 직원의 선거자금 폭로에 대해 ‘여권의 공작정치’라고 반박하고,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의 사조직인 민주산악회와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등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였다. 통일국민당은 1992년 12월 10일에는 서울시지부 17개 지구당별로 ‘통일국민당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통일국민당 및 현대그룹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공격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국민당과 민주자유당의 공방에 대해서 민주당은 처음에는 양당을 모두 비난하였다. 1992년 11월 30일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권선거”라고 전제한 후 “민주자유당과 통일국민당이 선거법을 무시하고 금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찰과 국세청이 12월 4일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통일국민당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12월 6일 김대중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03 시계’ (김영삼 후보의 휘호가 새겨진 시계를 말함)가 전국에 홍수를 이루고 있고, 민주자유당이 각 지구당에 2억 내지 5억 원의 선거자금을 보냈으며, 사조직을 통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도 정부는 요식수사만 하고 있다”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권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중립내각을 비난하였다.

이때부터 민주자유당은 통일국민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낮추고 대신 김대중 후보의 ‘편파 수사’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현대계열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면서 야권에서 제기한 ‘정부의 민주자유당 비호설’이 확산되어 선거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민주자유당 박희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대중 후보가 당국의 수사를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 비자금 조성과 선거자금 유출이 적법한 행위라는 뜻인지 밝혀라”라며 민주당을 공격하였다.

나. 부산 초원복집 사건

선거일을 3일 앞둔 1992년 12월 15일 통일국민당 김동길 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주재 하에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한 부산의 주요 기관장들이 1992년 12월 11일 부산 ‘초원복집’이라는 식당에 모여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과 함께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폭로하여 파문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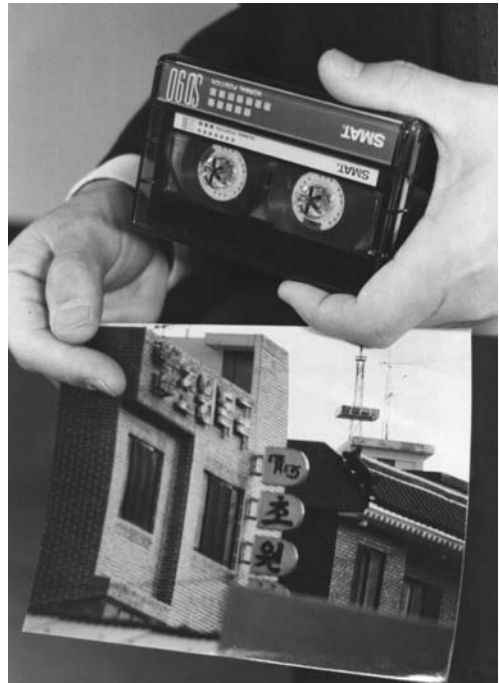
으켰다.

통일국민당은 초원복집에 모였던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물로 공개하였다. 녹음테이프에는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등이 “다른 사람이 되면 부산·경남 사람들은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등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과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는 발언들이 녹음되어 있었다. 통일국민당은 “이 사건으로 현승중 총리의 중립내각이 허수아비임이 드러났고 정치군인 문제보다 심각한 정치관료의 비민주적 작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통일국민당이 초원복집 사건을 폭로한 1992년 12월 15일 정부는 곧바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영환 부산시장을 해임하고,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지부장과 기무사 지역부대장 등을 직위해제하였다. 현승중 총리는 “이 모임이 비록 전직 장관이 주선한 사적인 회식자리였다고 하나 선거기간 중의 민감한 시기에 시장 등이 참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국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김영삼 후보가 져야 한다고 공격하였다. 변정일 통일국민당 대변인은 1992년 12월 15일 정부의 부산시장 경질과 관련하여 “이 조치는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특유의 책임전가 술책”이라며 “김영삼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책략을 포기하고 현승중 국무총리와 함께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초원복집 사건’이 선거 막판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당정분리론’으로 대응하였다. 즉, 이 사건은 민주자유당 및 김영삼 후보와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엄중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992년 12월 15일 저녁 정원식 선거대책위원장은 “김기춘 씨라는 자연인의 얘기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하였고, 김영구 사무총장도 “당과



▶ 김동길 통일국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증거자료

는 관계없는 김기춘 전 장관 개인의 일”이라며 김영삼 후보와 무관한 사건임을 강조하였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초원복집 사건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992년 12월 15일 이기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관련자 구속 및 현승중 총리 사임과 김영삼 후보 사퇴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노태우 대통령 탄핵과 법정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자유당을 공격하였다.

이후 초원복집 사건은 증거물로 제출된 녹음테이프가 도청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당초의 ‘지역주의와 관권선거’ 보다는 ‘불법도청’ 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되었다. 통일국민당은 녹음테이프를 익명의 부산시민이 제공하였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1992년 12월 16일 민주자유당 박희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특히 그 방법이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한 도청이었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수단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통일국민당을 공격하였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초원복집 사건의 초점을 ‘지역주의와 관권선거’ 보다는 ‘비합법적인 도청’에 더 무게를 두었다. 검찰 조사결과 문제의 녹음테이프는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의해 도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초원복집 사건의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1992년 12월 29일, 모임을 주도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도청실행자에게 도피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난 통일국민당 정몽준 의원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도청을 실행한 사람들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러나 초원복집에 모였던 기관장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

선거가 끝난 후 초원복집 사건은 통일국민당이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오히려 부산 등 영남에서 김영삼 후보의 지지표를 결집시키고, 상대적으로 정주영 후보가 영남권에서 고전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부산에서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도 관권선거 논란이 일어 당시 이규호 건설부장관이 선거기간 중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었다.

다. 간첩단 사건과 사상논쟁

제14대 대통령선거일을 2달 정도 남겨둔 1992년 10월 6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하고 간첩활동을 해온 ‘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권력서열 22위의 이선실을 남파하여 공작을 총지휘하게 하였고, ‘중부지역당’을 비롯해 영남·호남·경인지역당을 포괄하는 전국 규모의 지하정당을 조직하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이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것도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황인오, 손병선, 김낙중, 장기표(전 민중당 정책위의장) 등 모두 62명을 간첩혐의로 구속하고, 연루자 300여 명을 지명 수배하였다고 밝혔다. 구속자 명단에는 10여 일 전인 9월 26일 군사 기밀유출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대중 민주당대표의 비서 이근희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 다음날인 1992년 10월 7일, 민주자유당은 간첩단 사건에 민주당 김대중 대표의 비서가 연루되어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김대중 대표가 책임을 지고 국회 국방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정치쟁점화하였다. 통일국민당도 이 사실을 적시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역대 정권이 흔히 선거를 앞두고 간첩사건을 이용해왔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악용이 중립내각 아래에서는 있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며 간첩단 사건을 선거전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잠잠해지던 간첩단 사건은 현승중 국무총리가 1992년 10월 31일 경향신문과의 단독회견(11월 2일 보도)에서 “간첩과 접촉한 정치인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은 내사 중이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다시 쟁점화되었다.

1992년 11월 3일 민주당은 현승중 총리의 ‘정치권 인사 접촉설’은 민주당을 음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더 이상의 음해나 중상모략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간첩 이선실이 접촉한 인사 중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자유당의 고위인사도 있다



▶ 간첩단 사건 보도(조선일보 1992년 10월 7일)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민주자유당은 박희태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기를 바란다” 며 “당국의 발표 전까지는 함부로 추측하거나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김부겸 민주당 부대변인이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한겨레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그의 장모를 통해 남파 간첩 이선실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³⁹⁾로 구속되면서 간첩단 사건의 논쟁이 뜨거워졌다.

민주자유당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이근희 전 김대중 대표의 비서와 김부겸 민주당 부대변인의 간첩단 사건 연루혐의를 김대중 후보의 사상 문제와 연계시키며 공격하였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는 연설회 등에서 “북한은 남북대화를 하면서 미소를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간첩을 파견하여 남한 내에 혁명세력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면서 김대중 후보를 겨냥하였다. 특히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이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한 것을 거론하며 김대중 후보의 사상적 의혹을 확산시켰다.

민주당은 민주자유당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집요한 중상모략’ 이라고 성토했다. 김대중 후보는 연설회 때마다 “뽕뽕 숨었던 간첩이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느냐” 며 “군사정권 30년 동안 선거 때마다 국민을 헐박해온 버릇을 이번엔 고쳐야 한다” 고 반격하였다. 전국연합과의 정책연합에 대한 민주자유당의 공격에 대해서는 “전국연합 인사들은 독재치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 이라고 전제한 후 “그들이 좌익이라면 전국연합 개소식 때 화환과 금일봉을 보낸 김영삼 후보도 좌익이 아니고 무엇이냐” 고 반문하였다.

선거일을 이틀 남겨두고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면서 공방이 가열되었다. 통일국민당이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측근 2명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고 주장하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민주당도 박지원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우리 당이 전문한 바로는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의 측근 의원들이 1989년 방북한 것을 알고 있다” 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그동안 수세적 위치에서 공세적 자세로 전환하였다.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이원중 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김영삼 후보 측근 2명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은 거짓말” 이라고 부인하고, “정부는 간첩 이

39) 김부겸 민주당 부대변인은 1994년 대법원판결에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5년 11월 1일 사면·복권되었다.

선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6~7명의 민주당 인사의 접촉사실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반격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1993년 2월 간첩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간첩단 조직의 명칭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조직은 북한공작원 이선화와 연계되어 조직된 남한의 자생적 주사파이고, 황인오를 만났던 이선화를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 이선실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선화를 북한 공작원으로 인정하여 구속된 사람들에게 ‘간첩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을 적용하였다.

선거기간 중 북한과 관련된 사건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북한의 사주에 의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비행기가 폭발하여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었다. 특히 이때에는 바레인에서 체포된 폭파범 김현희를 선거일 전날 서울로 압송하여 TV 방송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안보심리를 자극하는 등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제8장 제13대 대통령 선거” 참조).

라. 박태준 의원의 통일국민당 입당설 논란

1991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만들 때부터 당내 최대계파인 민정계 몫의 최고위원을 맡아온 박태준 최고위원(전국구의원)이 제14대 대통령선거를 2달 정도 앞둔 1992년 10월 10일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가 전남 광양체철 사무소에 머무르고 있던 박태준 최고위원을 찾아가 만류하였으나 탈당의사를 막지 못하였다.

박태준 최고위원이 탈당의사를 밝히기 5일 전인 1992년 10월 5일,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였다. 당시는 대통령후보경선이 불공정하다며 민주자유당을 탈당했던 이종찬 의원 등이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이었고, 일부 민정계 국회의원들도 탈당의사를 내비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박태준 의원의 탈당선언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연쇄탈당으로 이어져 민주자유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박태준 의원이 탈당의사를 밝힌 지 3일 후인 1992년 10월 13일 채문식·윤길중 고문 등 원외 지구당위원장 11명이 탈당을 선언하였다. 다음날인 10월 14일에는 박철언·유수호·김용환·이자현 의원 등이 김영삼 총재의 지도체제에 불만을 품고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여 분열이 현실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후 11월 4일까지 탈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었고, 박태준 의원도 더 이상 특별한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아 민주자유당의 내분 우려는 사라졌다. 다만, 창당과정에 있던 새한국당에서 박태준 의원을 영입하려 했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총재도 그를 영입하기 위하여 접촉했다는 설 등은 있었다.

1992년 11월 5일 박태준 의원이 일본과 베트남 등을 순방한다며 출국함으로써 그의 민주자유당 탈당문제는 완전히 수그러지는 듯하였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박태준 의원을 놓고 민주자유당과 통일국민당 간에 설전을 벌였다.

통일국민당은 박태준 의원이 통일국민당에 입당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정부와 민주자유당이 관권을 동원해 그의 귀국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992년 11월 27일 통일국민당 변정일 대변인은 “박태준 의원이 외압에 의해 귀국을 못한 채 이리저리 떠돌아야만 하는 공작정치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주영 후보도 같은 날 대구연설회에서 “박태준 의원은 통일국민당에 합류해 경제대국의 건설에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후보가 통일국민당 입당을 봉쇄하기 위해 관권을 동원해 귀국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영삼 후보를 공격하였다. 1992년 12월 3일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도 정주영 후보는 박태준 의원이 12월 10일까지 귀국할 것이고, 출국 전에 통일국민당에 입당하기로 완전히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12월 8일에는 변정일 통일민주당 대변인이 “박태준 의원의 귀국을 만류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일본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박태준 의원의 외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통일국민당이 심리전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992년 11월 28일 민주자유당 김영구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1월 21일 박태준 의원 본인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통일국민당 입당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외압설을 부인하였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박태준 의원의 귀국을 만류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아무도 출국한 사실이 없다면서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략정치의 구태라며 통일국민당을 비난하였다.

통일국민당과 민주자유당의 이러한 공방에 대하여 민주당은 통일국민당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1992년 11월 27일 박지원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박태준 의원의 강제외유로 이득을 보는 쪽은 김영삼 후보 측이므로 이것은 다른 형태의 관권선거라며 민주자유당을 공격하였다.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1992년 12월 17일에도 통일민주당과 민주자유당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박태준 의원을 놓고 자기당에 유리한 주장을 하며 논쟁을 벌였다.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박태준 의원이 귀국한 후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면 통일국민당 입당의사를 밝힐 것이다”, “박태준 의원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사람을 보내 입당의사를 거듭 확인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민주자유당 박희태 대변인은 박태준 의원이 김영삼 후보에게 보냈다는 서한을 공개하며 “박태준 의원이 민주자유당을 지지하고 다른 당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였다.

박희태 대변인이 서한을 공개하자 홍콩에 머무르고 있던 박태준 의원은 1992년 12월 17일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박태준 의원은 김영삼 후보에게 보낸 서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 서한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진의를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박태준 의원의 사직서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8일이 지난 12월 22일 수리되었다.

제5절

선거 비용

「대통령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등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정당이나 후보자가 부담하되, 그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가 끝난 후 그 지출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소형 인쇄물과 방송광고 등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이 도입되고,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어 이전 대통령 선거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크게 늘어났다.

1. 선거비용제한액

1992년 11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개 비목으로 구성된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시하였다. 이날 공시된 선거비용제한액은 <표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67억 78만 7,000원이었다. 이는 제13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139억 520만 원)보다 163.9%가 늘어난 것이었다.

<표 6-8>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천원)

합계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등 의 실비보상	연설회 소요경비	확성장치· 자동차· 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투표 참관인 수당	방송연설비용, 방송광고료, 신문광고료, 현수막·선전현 판·홍보용 게시판의 제작· 게시경비, 소형인쇄물 등의 작성·배부에 필요한 경비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
36,700,787	1,226,880	13,055,360	3,375,090	5,481,305	1,699,600	11,009,469	89,538	763,545
비율(100%)	3.3	35.6	9.2	15.0	4.6	30.0	0.2	2.1

선거비용제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비목은 전체금액의 35.6%인 ‘선거사무장 및 선거운동원 등의 실비보상비’였다. 이 비목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의 대통령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었다. 그러나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46.9%에 비하면 11.3% 포인트 줄어든 것이었다. 그 이유는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일당’과 ‘실비’를 지급하였으나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실비’만 지급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비목은 ‘방송연설비용, 방송광고료, 현수막·소형인쇄물 등의 작성·배부에 필요한 경비’로 전체금액의 30.0%였다. 이 비목은 제13대 대통령선거의 9.7%에 비해 20.3%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방송광고와 소형인쇄물 등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었다.

2. 선거비용 지출

후보자들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끝나고 1993년 1월 2일까지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후보자는 없었다.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자는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로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77.6%인 284억 8,464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 다음은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220억 1,505만 원), 민주당 김대중 후보(207억 1,825만 원)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6-9>와 같다.

〈표 6-9〉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지출상황

(단위: 천원)

선거비용 제한액	후보자별 선거비용지출액							
	민주자유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새한국당 이종찬	신정당 박찬중	대한정의당 이병호	무소속 김옥선	무소속 백기완
36,700,787	28,484,649	20,718,258	22,015,057	3,379,501	903,311	327,469	146,539	379,217
지출비율(%)	77.6	56.5	60.0	9.2	2.5	0.9	0.4	1.0

※ 지출비율은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후보자별 지출비율임.

이 지출금액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초반부터 금권선거 논란이 일었고, 5년 후인 1997년에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잔여금 문제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선거사 제6집』 “제4장 제15대 대통령선거” 참조).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비목은 인건비성 경비인 ‘선거사무장 및 선거운동원 등의 실비보상비’로 8명 후보자들의 평균지출율이 36.4%였다. 선거운동원 등의 ‘일당’을 폐지하고 ‘실비’만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방송연설비용, 방송광고료, 신문광고료, 현수막·소형인쇄물 등의 작성·배부에 필요한 경비’로 평균지출율이 35.8%였다.

3. 선거비용지출 실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의 진실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가 끝난 후 1993년 1월 4일부터 2월 4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조사는 선거비용지출보고서의 서면심사,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된 선거기획사와 인쇄업체 등의 현장 방문, 선거비용을 지급받은 선거운동원들의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실사결과 총 1,07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위반사항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오기, 누락, 착오 등이었는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규모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쉽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은 워낙 비밀리에 수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6절

공명선거활동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선거활동을 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였다. 시민단체도 8개월 전에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서 활발하게 공명선거활동을 전개하였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활동 목표를 ‘정책중심의 경쟁분위기 유도’와 ‘준법선거 풍토의 조성’으로 삼고 언론매체, 인쇄물, 시설물, 각종 행사 등을 이용하여 공명선거활동을 펼쳤다.

가. 언론매체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명선거활동은 방송·신문광고, 각종 보도자료 제공, 대담·토론회 참석, 인터뷰 등이었다. ‘광고’는 정책대결 권장, 공명선거 풍토조성, 투표절차 안내, 기권방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총 1,192회(TV 181회, 라디오 754회, 신문 257회)를 실시하였다. 정당·후보자·유권자 등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담화문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이를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보도·광고하였다.

‘보도자료’는 공명선거 홍보와 선거절차 안내 및 투표참여 등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총 1,789회 제공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들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180여 회의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 같은 내용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중앙일간지 2개에 선거법 해설 기사를 30회 연재하였고, 방송원고 작성 시 공명선거홍보 내용을 삽입하도록 방송작가협회에 협조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 신문광고

정견·정책 중심의 선거풍토를 만듭시다.

■ 선거를 민주 속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의 대표성을 높여주는 44년 —
경선이 빛이나 번개같은 긴 세월동안 우리 시대의 대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거풍토는 어떤가요?
급물-황천계곡, 흑색안, 지역감정 유발 등
선거제에 반대의 온 세상이 대안선거 —
이제 무고하고 그로써 선거풍토는 개선되어야 하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민주속대로 할 수는 없을까요?

■ 최선의 선제기준은 정견·정책입니다.
급변하는 세태정세속에 다가오는 21세기 —
멀리는 도전을 극복하면서 후진국에 선진국에 진입시킬
경력과 비전이 필요한 책임입니다.
후보자를 판단할 최선의 선제기준은 정견·정책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보자가 앞으로 펼칠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나타내어 이끌어갈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정견·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후보자를 뽑는 것입니다.

■ 정견·정책을 통한 경쟁이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듭니다.
정견·정책을 통한 경쟁
정당감정된 선거풍토를 하게 합니다.
공권·타락 선거풍토를 선거개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역감정, 국민간의 분산분리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에 수적할 수 있는 절묘기 조성됩니다.
정견·정책을 통한 선거풍토는 깨끗하고
공명방대한 선거를 보장하는 지름길입니다.

■ 관영선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관영선거 —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결코 정착될 수 없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제를 준수하면서 정책대결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유권자는 불합 입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표를 주지 않습니다.
관영선거는 실현될 것입니다.
정책경쟁 중심의 깨끗한 선거풍토, 이번선거에도 꼭 지켜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설명회 개최 안내

정견·정책 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정당의 정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개최일시
● 92. 11. 12(목)
— 10:00—13:00 민주자유당
— 14:00—17:00 민주당
● 92. 11. 13(금)
— 10:00—13:00 통일국민당
— 14:00—17:00 신성당계합당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 참석대상: 제한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동아일보 1992년 11월 10일

바로 그렇습니다!

제 14대 대통령은 정견·정책과 선거법준수 여부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선택해야 합니다.

20여기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께 꼭짓을 당부드립니다. 선거 —
그중으로 선제기준을 바로 후견하여 정견·정책과 선거법준수 여부입니다.
후보자의 정견·정책 내용은 무엇인가?
실현가능한 것이냐 실현가능한 것인가?
실현할 때와 능력이 있는가?
또한 이의 후보자가 선거제를 준수하여 정당한 선거풍토를 하는지.
유권자가 최선의 선제기준을 삼고 투표할 것인가로, 유권자의
책임이 커져있는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만듭시다.

공명, 투명, 선진경쟁, 지역감정 단호히 배격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준수 여부를 꼭 지켜야 하는 필수사항에 대해 꼭 알아주세요.

- 선거법준수 의무는 선거사무 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 시·도 및 구·시·군에 두는 선거비용 10,000원 이상
- 투표소에 두는 선거비용 7,000원 이상

이 두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선거비용이 불합격합니다.

▶ 조선일보 1992년 12월 2일

부재자 우편투표 안내

제 14대 대통령선거

■ 투표소선 우편투표부 투 권제일
투표권자에게
소중한 보편권이 됩니다. 99%

**부재자 우편투표
변경 되었습니다.**
부재자 우편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 투표권을 행사한
후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투표절차



투표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투표절차	부재자 우편투표	투표지	거소 투표자
대상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대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대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대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거소: 지방선거의 정당선거비용총액 11,000원 이상

부재자투표소에 갈때 꼭 잊지 마십시오.

1. 선거일 당일 투표권 우편투표용 봉투를
투표소에 비치된 투표함에 넣어 투표권을
투표합니다.

투표지

1. 투표권이 없는 선거구 투표권을 봉투에
넣고 투표권을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
투표합니다.

2. 투표권이 있는 선거구 투표권을 봉투에
넣고 투표권을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
투표합니다.

3. 투표권이 있는 선거구 투표권을 봉투에
넣고 투표권을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
투표합니다.

4. 투표권이 있는 선거구 투표권을 봉투에
넣고 투표권을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
투표합니다.

5. 투표권이 있는 선거구 투표권을 봉투에
넣고 투표권을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
투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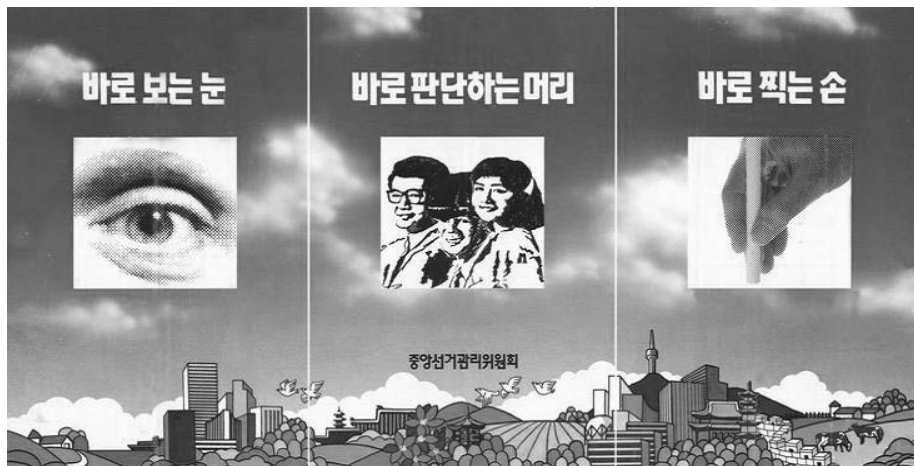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선일보 1992년 12월 5일

나. 인쇄물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인쇄물은 팸플릿, 포스터, 전단(리플릿), 책자, 반상회보, 담뱃갑 등이었다. 팸플릿은 “깨끗한 선거풍토 유권자가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299,400부를 제작하여 전국 행정기관의 민원실, 언론기관, 정당 사무소, 대합실 등에 배부·비치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 포스터



포스터는 ‘깨끗한 한표 나라사랑의 소중한 마음입니다’, ‘올바른 정견 정책 밝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현명한 판단 밝은 내일’ 등의 제목으로 3종 324,790매를 제작하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이나 담벼락, 음식점, 지하철 전동차 차내,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 첩부하였다. 전단은 ‘제14대 대통령선거 -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299,860매를 제작하여 같은 장소에 배부·비치하였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절차 안내도 35,121매, 시각장애자용 투표안내책자 6,200부, 영국의 공명선거 정착과정을 담은 ‘영국 공명선거 정착의 발자취’ 26,960부를 발간하여 공명선거활동에 활용하였다. 담배인삼공사의 협조를 얻어 담뱃갑에 공명선거 표어와 그림 등을 넣은 담배도 3,000만 갑을 발매하게 하였다.

다. 시설물 이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활동에 이용한 시설물은 현수막, 육교현판, 청사현판, 입간판, 게시판 등이었다. 전국적으로 현수막 5,817매, 육교현판 39개, 청사현판 143개, 입간판 296개, 게시판 71개를 설치·게시하였다.

이러한 시설물에 게재한 주요 홍보문구는 ‘정책보고 판단하고 양심 따라 바로찍자’, ‘깨끗한 선거풍토 정치안정 경제발전’, ‘공정한 선택 깨끗한 후보자 희망찬 2000년’,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 등이었다. 무인비행선에 ‘선거법을 지킵시다’ 라는 계도표어를 부착해 서울 반포대교 상공 및 한강둔치, 올림픽대로 주변 등을 비행하게 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청사 현판



▲ 무인비행선

라. 기타 공명선거활동

‘공명선거의 새아침’이라는 35mm용 영화필름 132개를 제작하여 전국 극장에서 상영하게 하였다. 비디오테이프 3,417개(‘바른선거 바른절차’ 1,340개, ‘공명선거의 새아침’ 1,727개, ‘대통령선거 중간평가를 위한 토론회 개최실황’ 350개)를 제작하여 TV방송사, 유선방송사, 역·터미널·여객선 등의 대합실에서 상영하게 하였다.

기권방지와 공명선거를 홍보하는 내용의 114 전화안내용 녹음테이프 700여개를 제작하여 활용하였고, 리·동에 설치된 전국의 행정방송과 가두방송용 차량 592대를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외에도 ‘공명선거추진협의체 구성’, ‘선거관계자를 위한 대통령선거법 설명회’ ‘제14대 대통령선거 중간평가를 위한 토론회’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공명선거활동을 하였다.

1992년 11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또는 선거사무장과 정부 측 관계자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추진협의체’를 구성한 후, 11월 7일과 11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공명선거실천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제14대 대통령선거 중간평가를 위한 토론회(1992년 12월 11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당의 간부 및 선거운동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명선거실천을 다짐하는 회의를 전국적으로 748회 개최하였다.

1992년 11월 14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당간부 및 사회단체 임원 등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계자를 위한 대통령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2월 11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명선거 구현방안을 주제로 ‘제14대 대통령선거 중간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11월 12일과 13일에는 정책경쟁 중심의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정책학회가 개최한 ‘정당의 정책설명회’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2. 정부의 공명선거활동

정부는 담화문이나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활동을 하였다. 특히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며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한 터라 이전 선거 때에 비해 그 정도가 더 강했다고 할 수 있었다.

1992년 10월 9일 노태우 대통령은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중립내각 출범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나와 새 내각의 결의는 매우 단호하며, 나 자신 국민과 역사에 책임진다는 결의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992년 11월 20일에는 현승중 국무총리가 대통령선거일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탈법·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법규를 엄정하고 철저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립내각의 공명선거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선거일까지 현승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공명선거실천 관계장관회의’를 11회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 정무제1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여 정당활동을 병자한 사전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관리활동지원, 기업자금의 선거유입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윤성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 하에 내무부 차관보, 법무부 검찰국장, 공보처 공보정책실장,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하는 공명선거실무대책협의회를 7회 개최하여 선거

과열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법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활동

시민단체는 8개월 전에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활발하게 공명선거활동을 전개하였다. 가장 활발하게 공명선거활동을 한 단체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이하 이 절에서 ‘공선협’ 이라고 한다)였다.

공선협은 1991년 2월 7일 결성된 단체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자총연맹, YMCA, YWCA 등 50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선협은 시·군 단위 지부결성, 선거법위반행위 반행위 고발창구 개설, 공명선거 가두캠페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활동, 공명선거홍보 스티커 배부, 언론의 공정보도 감시, 종교인의 선거중립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선협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26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재야계열의 25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 등도 공명선거활동을 하였다.

종교단체에서도 후보자들에게 엄정중립을 촉구하고 공명선거 감시기구를 발족시키는 등 공명선거활동을 하였다. 천주교는 한국천주교주교단의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주교단 담화문’을 통해 “지연·혈연·학연에 얽매이고 집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관권·금권선거를 단호히 배격해야한다”며 신자들의 의식개혁을 강조하였다. 개신교 측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주사회구현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선협과 연합하여 기권방지와 불법선거감시고발 운동을 전개하였다. 불교계에서는 ‘공명선거실천 불교대책위원회’와 ‘불교도 주권 바르게 행사하기 운동본부’ 등이 선거에 임하는 불교신도들의 자세를 수차례 성명을 통해 표명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1992년 12월 1일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의 종교지도자 63명이 ‘종교인의 선거운동 참여를 염려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같은 종파나 출신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을 삼가고, 각종 종교집회가 선거유세장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제7절



선거법위반행위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숙명적 라이벌관계인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또다시 격돌하고, 여기에 국내 최대 재벌 중의 하나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가세하면서 초반부터 금권선거의 논란이 일었던 터라 그만큼 선거법위반행위도 많이 발생하였다.

1.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및 경찰이었다. 특히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992년 11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게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시정명령이나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⁴⁰⁾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였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1992년 8월 28일부터 선거일까지)이 도래하자 신문광고와 공문 등을 통해 이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였다. ‘사전선거운동사례 예시’ 및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책자를 각각 10,000부와 300,000부 제작하여 정당, 후보자, 언론기관, 행정기관, 공명선거추진 단체 등에 배부하였다.

40)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14대 대통령선거 기부행위제한기간 안내 신문광고

오늘 (8월28일) 부터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풍토—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반드시 정착 시킵시다.**

■ 기부행위 금지기간 : '92. 8. 28부터 선거일까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지

- 후보자 (예정자 포함, 이하 관중) 및 그 가족
- 정당·지역단체장
- 후보자의 권징인 친·구·지인·연인

■ 금지되는 기부행위

대통령선거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실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명의로 선거비용이 그 가족에게 갈아나오도록 하는 기증, 제공되는 행위 (단, 봉사활동자금을 제외하고는 자선단체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주요기부행위 사례

- 후원회 및 세이빙은행을 이용하여 금이나나 선금 받은 행위
- 당원회·동맹회·아름다운 동행회 등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 정당원외의 사람에게 금을 주는 행위
- 당원회·당원단체·지구당원대회, 인사회에 참석해서에 금권, 선금 주는 행위, 향응은 예외거나, 교직원 금주 제공하는 행위
- 선거비용·정당비용을 선의회장은 지급하는 행위

■ 벌칙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큰 과징금은 500만원에 30만원 이하로 과징하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명선거에 관한 작품을 찾습니다

1. 공무직원내
● 당선가능권자는 가족제 권역내에서 10원 이하의 금액을 출수하는 내용
● 공중 및 공적인 재산, 무제한의 등 일면, 대의선거등을 제외하고 지역, 향민등 연(연선)이나, 가설 출수한 금액은 재내하는 후보자에게 부과할 것은 조서하는 내용

2. 후보자외의 재공권과 한 표의 수송함을 2배수로 판매하는 내용
2. 후보자외의 재공권과 한 표의 수송함을 2배수로 판매하는 내용 (가 무공정선거에 상응한 양에 상응함)

종류	수량	수량	수량	수량
표	1천 500만	1천 500만	1천 500만	1천 500만
표 스티커	1천 500만	1천 500만	1천 500만	1천 500만
일회용기	1천 500만	1천 500만	1천 500만	1천 500만
TV광고 (CF)	1천 500만	1천 500만	1천 500만	1천 500만

3. 관공리권 : '92. 8. 25 (이달)부터 도(광역)에 한함

4. 문의 및 접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310-1100) (088-765-5582)

5. 말 : '92. 10. 15 (11월)까지 및 위원회 (02-310-1100)

6. 문의사항

● 중앙선거는 주선, 수령,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공개
●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이 없으며, 당선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후회행위에 귀속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동아일보 1992년 8월 28일

선거관리위원회는 1992년 9월 1일부터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벌였다. 단속반은 선거양상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증원편성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전임직원 1,164명, 구·시·군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위원 6,559명, 구·시·군청 등에서 파견 받은 지방공무원 17,538명 등 총 25,261명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고·제보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단속활동을 벌여 총 7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경고·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즉, 금품·음식물 제공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하면 고발하였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수사의뢰하였으며,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나 위반자의 수용자세 등을 고려하여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6-10>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정당·후보자별 위반건수를 보면 민주자유당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통일국민당 175건, 민주당 104건, 무소속 백기완 후보 측 30건, 새한국당 23건, 신정당 15건, 무소속 김옥선 후보 측 6건, 대한정의당 4건 등의 순이었다.

〈표 6-10〉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상황

(단위: 건)

유형	조치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사직당국 이 첩
합 계		715	5	69	553	88
금품·음식물 제공		119	2	21	79	17
선심관광		20		8	9	3
교통편의제공		10		7	2	1
연설회		226			224	2
정당집회		11			10	1
기타 집회		22	1	1	16	4
선전물		161	1	20	114	26
신문·방송 부정이용		49		6	39	4
유사기관·사조직		61		2	52	7
가두방송·행렬		4			4	
선거관리침해		2	1		1	
기타		30		4	3	23

나. 검찰의 단속활동

법무부는 1992년 8월 26일 전국 5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1992년 10월 16일 이정우 법무부장관은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어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자가 특정후보나 정당과 유착해 선거에 관여하는 등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구영 검찰총장은 “사전선거운동,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단속하여 차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1992년 12월 3일 이정우 법무부장관은 “일부 정당들의 금권선거로 지난날의 폐습과 불법 타락상이 재연되고 있다”며 검찰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권선거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전국 50개 검찰청에 설치된 고발전화를 가동하여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금품살포 사례가 적발되면 배후 조종자나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선거 중반인 12월 14일에는 대통령선거의 투·개표질서 교란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하였다.

다. 경찰의 단속활동

1992년 8월 31일 이동호 내무부 장관은 “9월 1일부터 향응 및 금품제공 등 불법기부행위,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행위,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선거불법행위, 정당·기관·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하였다.

1992년 10월 16일 경찰청은 전국 시·도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어 선거개입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근절하고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이날 이민섭 경찰청장은 “업무를 빙자한 특정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 등 직무를 이용한 선거 관여행위를 척결하라”고 지시하였다. 10월 27일에는 전국 경찰에 불법선거운동 단속지침을 시달하였다.

2. 위반행위 발생상황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표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258명이었다. 검찰은 이 중 994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264명은 불기소 처분하였다. 기소율은 44.0%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기소율 14.0%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졌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에 구속된 사람은 136명이었다.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별 현황을 보면 통일국민당이 7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민주자유당 234명, 민주당 186명, 대한정의당 8명, 신정당 4명, 새한국당 3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5명이었고, 정당과 관련 없는 일반인은 1,058명이었다.

<표 6-11>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현황⁴¹⁾

발생건수 (입건)	기 소			불기소				미 제
	계	구 속	불구속	소계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 타	
2,258	994	136	858	1,264	921	252	91	-

41) 대검찰청, 1995년, 『1995 4대 지방선거 선거사범백서』, 94쪽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의 유형별 현황은 불법인쇄물 배포가 515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금품살포 509명(22.5%), 향응제공 255명(11.3%), 후보자의 선전벽보나 현수막 훼손 149명(6.6%) 순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12>와 같다.

〈표 6-12〉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유형별 입건상황⁴²⁾

총계	불법유인물 배포	벽보· 현수막제시	벽보· 현수막훼손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매수 유도	호별 방문	후보 비방	선거 폭력	투표 사범	기타
2,258 (100%)	515 (22.8%)	114 (5.1%)	149 (6.6%)	509 (22.5%)	255 (11.3%)	28 (1.2%)	141 (6.2%)	87 (3.9%)	59 (2.6%)	7 (0.3%)	394 (17.5%)

3. 주요 위반사례

가. 서산 간척지 등 선심관광

통일국민당 지구당(대구) 조직부장 방윤백이 당원연수 명목으로 20명에게 충남 서산 간척지 농장 등에 선심관광을 제공했다가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방윤백은 1993년 5월 4일 법원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산 간척지 농장’은 정주영 후보가 현대그룹 회장으로 있을 때 바다를 막아 조성한 간척지로 그가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곳이었다. 다른 지역의 통일국민당 지구당에서도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곳을 견학시킨다는 명목으로 당원들에게 관광을 제공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통일국민당 대전 동구갑지구당위원장 한영교도 현장교육 명목으로 당원들에게 서산 간척지 농장과 울산 현대중공업단지 등에 선심관광을 제공했다가 적발되었다. 한영교는 1993년 6월 18일 제2심 법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통일국민당 용인군지구당위원장은 서산 간척지 농장을 견학하기 위해 모인 당원 32명에게 통일국민당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나눠주었다가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이 지구당위원장은 1993년 1월 26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42) 대검찰청, 1995년, 『1995 4대 지방선거 선거사범백서』, 92쪽

나. 금품제공

통일국민당 예천군지구당 청년부장 황세원이 연설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되었다. 황세원은 선거가 끝나고 1993년 4월 23일 제1심 법원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품을 받은 유권자 3명은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에 처분하였다.

민주자유당 임실·순창지구당 조직부장 최주석이 연설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가 적발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최주석은 1993년 4월 2일 법원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남 목포에서 민주자유당 선거운동원 김춘호가 지역 주민 25명에게 현금 1만 원과 홍보물 및 입당원서가 든 봉투를 배부했다가 적발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김춘호는 1993년 4월 1일 법원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통일국민당 함안군지구당위원장 이세희가 관내 면단위 책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이세희는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3년 8월 17일 제2심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다. 신문·방송 부정이용

통일국민당 유성구지구당 부위원장 박찬규가 당원 412명 명의로 통일국민당 탈당과 관련한 성명서를 1992년 12월 3일에 대전일보에 광고하였다. 박찬규는 1993년 5월 27일 제2심 법원에서 「대통령선거법」 제55조(신문, 잡지 등의 불법이용 제한) 위반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라.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민주자유당 중앙당 정책부장이자 전국문구인연합회 회장이 1992년 10월 중순경 '전국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 이라는 제목으로 민주자유당의 지지와 입당을 권유하는 내용의 서신과 입당원서를 동봉하여 회원 1,906명에게 발송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 사람은 선거가 끝나고 1993년 8월 5일 법원에서 '직업적 단체 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93고합236).

마.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민주산악회 부회장인 황명수 의원이 충남에서 6회의 민주산악회 결성식 모임을 개최하고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검찰은 1992년 12월 23일 황명수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1993년 2월 23일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인 '민주산악회'가 연설회장 등에서 김영삼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활동을 하였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선언한 '전국연합'이 연설회장 등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과 깃발 및 유인물 등을 배포하였다가 1992년 12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제8절

선거결과

1. 선거인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는 199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하였다. 선거인명부 등재대상자는 1972년 12월 19일 이전 출생자(선거일 현재 20세 이상)로서 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은 이전의 선거 때에 비해 달라진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이란 읍·면·동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작성하는지 현장에서 지켜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후보자 측에서 읍·면·동별로 1명씩 입회시킬 수 있었다.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거나, 반대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거나, 또는 한 사람이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도 있어서 종종 시비가 일었는데 이러한 시비를 막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입회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에서 1,297명(법정신고인원 3,660명 대비 35.4%), 민주당에서 793명(21.7%), 통일국민당에서 1,823명(49.8%)의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둘째, 선거인명부를 처음으로 전산에 의해 작성하였다. 이전에는 선거인명부를 읍·면·동사무소의 직원이 손으로 직접 썼으나,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처음으로 전산에 의해 작성하게 된 것이었다. 수작업에 의해 작성할 때에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오기나 누락 또는 이중 등재자가 있는 등 착오도 발생하였으나, 전산으로 작성함에 따라 인력절감과 함께 선거인명부 작성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국 3,660개 읍·면·동에서 모두 전산으로 작성한 것

이 아니라 3,583개 읍·면·동에서만 전산으로 작성하였다. 나머지 77개 읍·면·동에서는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이전과 같이 수작업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선거인명부누락자 구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선거인명부누락자 구제제도’란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992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 경과한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12월 11일) 전일까지 사이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이나 선거권자가 등재신청을 하고,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23,126명이 구제되어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등재되었다.

선거인명부는 이와 같은 과정과 열람 및 공람,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1992년 12월 11일 확정되었다.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인수는 29,422,658명이었다. 이 선거인수는 8개월 전에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선거인수(29,003,828명)보다 418,830명이 늘어나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6-13〉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인구수 및 선거인수 현황

(단위: 명)

인구수	선거인수		
	계	남자	여자
44,107,551	29,422,658 (748,843)	14,499,358 (704,645)	14,923,300 (44,198)

※ ()안은 부재자수로 본수에 포함

시·도별 선거인수는 서울이 7,394,554명으로 전체 선거인수의 25.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기도 4,354,271명(14.8%), 부산직할시 2,565,831명(8.7%), 경상남도 2,504,339명(8.5%) 순이었다. 제주도는 330,470명으로 전체 선거인수의 1.1%를 차지해 가장 적은 선거인수를 기록했고, 그 다음은 대전직할시로 725,583명(2.5%)이었다.

한편 부재자신고기간은 199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신체상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과 ‘선거사무 종사자’ 등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부재자신고인수는 748,843명

으로 전체 선거인수의 2.5%였다. 이 부재자신고인수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부재자신고인수(854,700명)보다 105,857명이 줄어들어 12.4%의 감소율을 보였다. 선거인수가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비해 약 35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났고, 부재자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신고인수가 줄어든 것은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투표율에도 반영되었다.

부재자신고의 사유를 보면 영내나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600,994명으로 전체 부재자신고인의 80.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선거종사자는 55,721명(전체 부재자신고인의 7.4%)이었으며, 나머지 92,128(12.3%)명은 주민등록지 구·시·군 밖으로 출타하였거나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등이었다.

2. 투 표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 부재자투표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전 선거에서는 부재자신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주면 장소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유효가 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와 ‘일반투표소’⁴³⁾의 투표상황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가. 부재자투표소 투표상황

부재자투표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선거 때이고,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 때였다.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재자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부재자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부재자신고인은 투표장소 제한을

43) 여기에서 ‘일반투표소’란 선거일 당일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투표소를 말한다. ‘일반투표소’란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재자투표소’와의 비교 편의상 이하 이 장에서 ‘일반투표소’라고 하기로 한다.

받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기표한 후 그 투표지를 우편으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보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정당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부정투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군부대에서는 지휘관의 정신 교육 또는 공개투표 등의 방법으로 여당후보에 표를 찍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정연관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군부재자투표사건’(『대한민국선거사 제4집』 “제8장. 제8절. 5. 선거결과 특징” 참조)과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이지문 육군중위의 ‘군부재자투표 부정 폭로사건’(“제5장. 제4절. 3. 선거쟁점” 참조)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부재자투표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자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부재자투표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재자투표소 투표제도’를 고안하여 정치 권에 제시하였고, 정치권에서 이를 받아들여 입법화되었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제도’는 부재자투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정당참관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해야 유효가 되도록 하는 제도였다. 다만,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격오지나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이전과 같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투표하는 이른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 때에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은 전체 부재자신고인 748,843명의 92.9%인 696,036명이었고, 거소투표 대상자는 52,807(7.1%)명이었다.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기간은 1992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이었고, 부재자투표소는 전국적으로 505개(기관·시설 안의 부



▶ 부재자투표를 위해 군인들이 부재자투표소 앞에 대기하고 있다(서울 관악구을선거관리위원회).

재자투표소⁴⁴⁾ 83개 포함)가 설치되었다. 이 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의 95.7%인 666,016명(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자 20,529명 포함)이 투표하였다. 거소투표대상자는 95.3%인 50,312명이 투표하였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되면서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부재자투표의 부정시비는 사라졌다.

나. 일반투표소 투표상황

1992년 12월 18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5,346개 투표소에서 제14대 대통령선거의 투표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투표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원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171,872명(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3,819명, 투표사무종사원 78,053명)이었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151,871명이 투표과정을 지켜보았다.

투표결과 총선거인수 29,422,658명 중 24,095,170명이 투표하여 81.9%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투표율은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71.9%) 보다는 10%포인트 높았지만,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89.2%)에 비해서는 7.3%포인트 낮았다.

〈표 6-14〉 제14대 대통령선거 투표상황

선거인수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비 고
29,422,658 (748,843)	24,095,170 (716,328)	5,327,488 (32,515)	81.9 (95.7)	

※ () 안은 부재자수로 본수에 포함

또한 제14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표 6-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선제로 치러진 역대 여덟 차례의 대통령선거 중 1971년에 실시한 제7대 대통령선거 다음으로 낮았다.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통령선거의 투표율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표 6-15〉 역대 직선제 대통령선거 투표율 비교

(단위 : %)

제2대 대선 (1952. 8. 5)	제3대 대선 (1956. 8. 15)	제4대 대선 (1960. 3. 15)	제5대 대선 (1963 10. 15)	제6대 대선 (1967. 5. 3)	제7대 대선 (1971. 4. 27)	제13대 대선 (1987. 12. 16)	제14대 대선 (1992. 12. 18)
88.1	94.4	97.0	85.0	83.6	79.8	89.2	81.9

44)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란 병원·요양소·교도소·감호소 등에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말하며, 투표방법은 부재자투표소의 방법과 같았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89.1%였고, 그 다음은 전남 85.6%, 전북 85.2%, 경남 84.6%, 부산 83.2%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78.5%였고, 그 다음은 충남으로 78.9%였다. 그 지역 출신이 출마한 곳은 투표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낮았다. 즉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의 출신지역인 부산·경남과 김대중 후보의 출신지역인 호남은 투표율이 높았다. 반면에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민주자유당 김종필 최고위원의 출신지역인 충남과 노태우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대구·경북은 낮았다.



▶ 투표소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앞의 “제2절 선거제도”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투표지에 표시되는 기표용구의 모형을 ‘○’에서 ‘⊗’으로 바꾸었다. 즉 ‘○’ 안에 ‘선거’를 의미하는 ‘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이었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사용하던 것을 40년 만에 바꾼 것인데, 기표의 전사(轉寫)여부 식별을 쉽게 하여 무효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여야 간에 다른 주장을 하여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야당에서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의 이름 속에 들어 있는 ‘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무소속 김옥선 후보의 이름에도 ‘사’가 들어 있다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다. 투표관련 사건·사고

1) 선거인명부 대조 착오

서울시 양천구 목재4동 제1투표소에서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을 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하여 한때 소란스러웠다. 같은 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명부 1,413번'에 등재된 사람이 잘 모르고 제1투표소로 투표하러 왔고, 투표사무종사원도 제1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 번호란에 날인한 후 투표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투표한 후 귀가하였고, 나중에 그 번호에 등재된 사람이 투표하러 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투표하러 온 사람은 자신의 번호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한 것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제1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투표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제2투표소에 연락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투표하게 하여 일단락 되었다.

부산 부산진구 가야제1동 제4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종사원이 선거인명부 대조과정에서 착오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2,021' 번에 등재된 사람을 '2,121' 번란에 날인한 후 투표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나중에 '2,121' 번에 등재된 사람이 투표하러 와서 이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경위를 설명한 후 정상적으로 투표하게 하여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 대리투표

부산시 서구 아미2동 제2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그의 딸이 기표소 안까지 부축한 후 대신하여 투표한 사례가 있었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대리투표지임을 표시하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투표함에 투입하였고 개표 시 무효처리하였다.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투표통지표를 이용하여 대리투표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민주자유당 당원에게 발각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제1투표소에서는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을 수상히 여긴 민주당 추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 사람은 이를 거부하였다. 제1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비경찰에 확인조사를 요청하였고, 경찰의 조사결과 대리투표한 것으로 판명되어 고성경찰서에 입건되었다.

3) 투표마감시각 경과 후 투표요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난 후에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해 달라며 농성을 벌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투표소에서는 오후 6시 전에 투표하러 와서 대기한 사람들 107명에게 번호표를 교부하고, 오후 6시가 지난 후에 이들을 상대로 계속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투표소 입구를 닫지 않았는데, 6시가 지난 후에 다른 사람들 40여명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와 자기들도 투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후 6시가 지나서 온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다고 하자 이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 과정에 민주당완산구지구당 당원 수십 명이 이들과 합세하여 농성을 벌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번호표를 교부한 사람들에게만 투표를 하게 한 후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운송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당원과 공명선거협의회 회원 등 150여 명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투표함 운송을 가로 막았다. 그러나 투표소 경비경찰과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들을 설득하여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다.

4) 침수로 인한 투표용지 훼손

대구시 동구갑·동구을선거관리위원회는 1992년 12월 15일 오전 9시 동구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중 지하수 배관 파열로 투표함이 물에 잠긴 것을 발견하였다. 투표함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있던 동구갑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133,853매와 동구을위원회의 투표용지 85,000매가 물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못쓰게 된 투표용지는 폐기한 후 부족한 매수 만큼 다시 인쇄하였다.

5) 투표개시 지연

대구 달서구을 월배3동 제4투표구에서는 투표용지가 보관된 투표함열쇠를 가지고 있던 이 투표구의 간사가 투표개시 시각까지 나타나지 않아 오전 7시에 투표를 개시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거인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간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2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투표함을 열고 7시 30분부터 투표를 시작하였다.

3. 개 표

1992년 12월 18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한 뒤 전국 308개 개표소에서 제14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일제히 시작되었다. 개표관리에 동원된 인력은 전국적으로 33,634명(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2,749명, 개표사무종사원 30,885명)이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은행직원 1,286명을 개표사무에 동원하였다.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11,338명이 개표과정을 지켜보았다.

개표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대구 달서구을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소로 1992년 12월 18일 오후 7시 17분에 시작되었다.

개표가 가장 늦게 끝난 곳은 강원도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 12월 19일 오후 8시 25분에 끝났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의 개표가 늦게 끝난 이유는 잔여투표용지 부족사건으로 개표가 한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이었다(자세한 내용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참조).



▶ 부재자투표 개표과정에서 부재자투표봉투의 유효·무효 확인과 분류작업을 하고있다.

가. 후보자별 득표상황

개표결과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유효투표총수(23,775,409표)의 42.0%인 9,977,332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2위는 민주당 김대중 후보로 8,041,284표(유효투표총수의 33.8%)를 얻었다.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수 차는 1,936,048표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표차

1,945,158표와 비슷하였다.

3위는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로 3,880,067표(16.3%)를 얻었고, 4위는 신정당 박찬중 후보로 1,516,047표(6.4%)를 얻었다. 그 다음은 무소속 백기완 후보, 무소속 김옥선 후보,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 순이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6-16>과 같다.

시·도별 후보자 득표상황을 보면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는 전국 15개 시·도 중 서울·광주·전남·전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후보가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서울·광주·전남·전북 등 4개 지역에서 1위를 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도 이 4개 시·도에서 1위를 했었다.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어느 시·도에서도 1위를 하지 못하였다. 정주영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곳은 자신의 출신지인 강원도로 34.1%를 득표하였다. 이곳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41.5%를 득표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 신정당 박찬중 후보 역시 어느 지역에서도 1위를 하지 못하였지만 8개월 전인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정당이 얻은 득표수(369,044표)와 득표율(1.8%)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1,516,047표(6.4%)를 얻어 선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삼 후보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1992년 12월 19일 오전 여의도 민주자유당 당사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소감과 향후 국정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 후보는 “이번 선거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통해 선거문화의 새 장을 열고 정통성을 확보했다”면서 “이제부터 비생산적인 정치논쟁을 지양하고 민생중심의 생활정치를 펴겠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신한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국민의 열정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선거구호였던 ‘신한국 창조’를 거론하였다.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김대중 후보와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성명서 등을 통해 선거결과에 승복하면서,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였다.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지 약 2개월이 지나고,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종료된 다음날인 1993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직무를 시작하였다.

〈표 6-16〉 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합계	민주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통일 국민당 정주영	신정당 박찬종	대한 정의당 이병호	무소속 김옥선	무소속 백기완			
합계	29,422,658	24,095,170	23,775,409	9,977,332 (42.0)	8,041,284 (33.8)	3,880,067 (16.3)	1,516,047 (6.4)	35,739 (0.1)	86,292 (0.4)	238,648 (1.0)	319,761	5,327,488	81.9
서울	7,394,554	6,021,311	5,951,777	2,167,298 (36.4)	2,246,636 (37.7)	1,070,629 (18.0)	381,535 (6.4)	4,797 (0.1)	13,098 (0.2)	67,784 (1.1)	69,534	1,373,243	81.4
부산	2,565,831	2,135,546	2,115,389	1,551,473 (73.3)	265,055 (12.5)	133,907 (6.3)	139,004 (6.6)	978 (0.0)	3,236 (0.2)	21,736 (1.0)	20,157	430,285	83.2
대구	1,494,057	1,172,636	1,158,193	690,245 (59.6)	90,641 (7.8)	224,642 (19.4)	136,037 (11.7)	1,103 (0.1)	2,753 (0.2)	12,772 (1.1)	14,443	321,421	78.5
인천	1,346,964	1,081,011	1,066,288	397,361 (37.3)	338,538 (31.7)	228,505 (21.4)	84,211 (7.9)	1,351 (0.1)	3,867 (0.4)	12,455 (1.2)	14,723	265,953	80.3
광주	769,300	685,797	680,600	14,504 (2.1)	652,337 (95.8)	8,085 (1.2)	2,827 (0.4)	133 (0.0)	1,149 (0.2)	1,565 (0.2)	5,197	83,503	89.1
대전	725,583	582,613	574,403	202,137 (35.2)	165,067 (28.7)	133,646 (23.3)	64,526 (11.2)	961 (0.2)	2,294 (0.4)	5,772 (1.0)	8,210	142,970	80.3
경기	4,354,271	3,502,774	3,451,395	1,254,025 (36.3)	1,103,498 (32.0)	798,356 (23.1)	239,140 (6.9)	6,299 (0.2)	13,685 (0.4)	36,392 (1.1)	51,379	851,497	80.4
강원	1,025,018	834,891	820,255	340,528 (41.5)	127,265 (15.5)	279,610 (34.1)	56,199 (6.9)	3,047 (0.4)	4,007 (0.5)	9,599 (1.2)	14,636	190,127	81.5
충북	922,701	750,483	736,171	281,678 (38.3)	191,743 (26.0)	175,767 (23.9)	68,900 (9.4)	4,844 (0.7)	4,568 (0.6)	8,671 (1.2)	14,312	172,218	81.3
충남	1,232,586	973,070	952,454	351,789 (36.9)	271,921 (28.5)	240,400 (25.2)	64,117 (6.7)	4,143 (0.4)	9,899 (1.0)	10,185 (1.1)	20,616	259,516	78.9
전북	1,321,778	1,126,597	1,112,350	63,175 (5.7)	991,483 (89.1)	35,923 (3.2)	9,320 (0.8)	1,087 (0.1)	7,130 (0.6)	4,232 (0.4)	14,247	195,181	85.2
전남	1,500,662	1,285,110	1,270,023	53,360 (4.2)	1,170,398 (92.2)	26,686 (2.1)	7,210 (0.6)	1,048 (0.1)	8,010 (0.6)	3,311 (0.3)	15,087	215,552	85.6
경북	1,934,544	1,559,478	1,531,637	991,424 (64.7)	147,440 (9.6)	240,646 (15.7)	124,858 (8.2)	3,365 (0.2)	6,240 (0.4)	17,664 (1.2)	27,841	375,066	80.6
경남	2,504,339	2,118,601	2,093,590	1,514,043 (72.3)	193,373 (9.2)	241,135 (11.5)	115,086 (5.5)	2,020 (0.1)	5,070 (0.2)	22,863 (1.1)	25,011	385,738	84.6
제주	330,470	265,252	260,884	104,292 (40.0)	85,889 (32.9)	42,130 (16.1)	23,077 (8.8)	563 (0.2)	1,286 (0.5)	3,647 (1.4)	4,368	65,218	80.3

※ 집계란의 () 안은 후보자별 전국 득표비율이고, 시·도란의 () 안은 해당 시·도의 후보자별 득표비율임

나. 개표관련 사건·사고

1) 잔여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개표중단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제6투표소의 투표가 끝난 후 잔여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매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다. 제6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과정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로 하고, 일단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 등을 개표소로 운송하였다.

개표소에서 야당 개표참관인들이 이 투표소의 잔여 투표용지가 부족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개표진행을 막았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날인자수, 절취된 일련번호지수, 회수된 투표통지표수를 확인하였으나 투표자수와 모두 일치하여 이상 유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랜 시간동안 참관인들을 설득시킨 끝에 개표를 속개하여 선거일 다음날인 1992년 12월 19일 오후 8시 25분에야 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없어진 투표용지를 찾기 위하여 12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도 이를 찾지 못하고 1993년 1월 16일 수사를 종결하였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조사 결과 투표용지 100매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 인쇄과정에서 일련번호가 누락되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 사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개표소의 개표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 당선자 결정을 하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의 개표가 종료되기 약 2시간 전인 1992년 12월 19일 오후 6시에 공식적으로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를 제14대 대통령당선자로 결정하였다. 비록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원주시 관내 유권자들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선자 결정을 한 것이었다.

2) 유효투표집계전 첩부 착오로 인한 개표중단

충청북도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황간면 제3투표구의 투표지를 분류하는 과정에 개표종사원이 착오로 민주당 김대중 후보 표의 100매 단위 한 묶음에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의 유효투표집계전을 부착하려는 것을 민주당 개표참관인이 발견하였다. 민주당 개표참관인이 거세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표가 30분간 중단되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시정하고 개표를 속행하려 했으나 민주당 개표참관인 2명이 계속 항의하면서 개표진행을 방해하자 이들을 퇴장시켰다. 이에 반발하여 민주당 개표참관인 모두가 자진 퇴장하였다가 얼마 후 돌아와 개표진행을 지켜보았다.

3) 참관인이 아닌 자의 개표참관

서울특별시 성북구갑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는 한 개표참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믿을 수 없다며 직접 투표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신정당 개표참관인의 신분증과 완장을 차고 있었지만 신분증에 기재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람을 개표소에서 퇴장시키고 개표를 속개하였다. 이 사람은 나중에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4. 선거소송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소송은 3건이 제기되어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1건에 비해 늘어났다. 3건 모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아닌 선거인이 제기하였는데 선거무효소송 2건,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1건이었다.

선거소송을 청구한 이유는 당선자인 김영삼 후보와 민주자유당의 불법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선거를 한 것은 관권을 이용한 불공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선거관리 등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17>과 같다.

대법원의 선거소송 처리결과 2건은 각하되고, 1건은 소송제기자가 스스로 취하하였다. 각하된 2건의 사유는 인지 미보정이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인지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인지액의 10배로 인상하였는데, 이것이 소송제기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표 6-17〉 제14대 대통령선거 선거소송 처리결과

소송구분	소송 당사자		소송 청구이유	처리결과(사유)
	원 고	피 고		
선거 및 당선무효	정종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우 김영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미실시한 상태에서의 대통령선거는 무효 김영삼 후보가 여당 총재로 단체장선거를 하지 않음은 불공정선거로 인한 불법적 당선이므로 무효 	인지 미보정 각하 (1993. 2. 13)
선거무효	심덕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심용물품 범람 흑색선전 난무 부산기관장 대책회의 등에 의한 불법선거 	취 하 (1993. 10. 15)
선거무효	정재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선거관리(TV토론원천봉쇄, 민주자유당 인쇄물 위법성 유권해석 기피, 편파적인 TV연설 재조정) 조선일보의 특정후보 편들기 	인지 미보정 각하 (1993. 2. 13)

5. 선거결과 특징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 특징으로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표출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제14대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졌고, 이전의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낙선한 후보자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었다.

가. 지역주의 투표성향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에 극심하게 표출된 이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991년 두 차례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더욱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그 지역출신이 최고 지도자로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게 무조건 투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영남과 호남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적 지지기반을 가지고 오랫동안 숙명적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오던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와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양자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었다. 또한 대권을 놓고 양김의 마지막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점과, 1991년 3당 합당 후 처음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라는 점에서도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을 끌었다.

선거결과 양김은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전국 득표율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아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김영삼 후보의 전국 득표율은 42.0%였으나 출신지역인 부산·경남에서는 72.8%의 지지를 받았고, 같은 영남인 대구·경북에서도 62.5%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김대중 후보의 출신지역인 광주·전남·전북에서는 4.3%라는 아주 낮은 지지를 받았다.

김대중 후보의 전국 득표율은 33.8%였으나 출신지역인 광주·전남·전북에서는 91.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비교적 호남지역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수도권에서도 전국 득표율보다 1.4% 포인트 높은 35.2%를 득표하여 다른 후보자보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김영삼 후보의 출신지역인 부산·경남에서는 10.9%, 대구·경북에서는 8.9%의 낮은 지지를 받았다.

제13대 대통령선거와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양김 득표율을 비교해보아도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6-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영삼 후보의 제14대 대통령선거 전국득표율(42.0%)은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전국득표율(28.0%)보다 14% 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의 득표율은 각각 19.1% 포인트와 35.9% 포인트 높아져 전국 득표율 상승폭보다 훨씬 컸다. 민주자유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지역에서 같은 영남출신인 김영삼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정서를 자극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하였듯이 대구·경북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김대중 후보의 제14대 대통령선거 전국득표율(33.8%)은 제13대 대통령선거 때의 전국 득표율(27.1%)보다 6.7%포인트 높아졌으나, 광주·전남·전북의 득표율은 3.5% 포인트 높아져 전국득표율 상승폭보다 낮았다. 김대중 후보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광주·전남·전

북 지역에서 워낙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더 높아질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김영삼과 김대중 두 후보뿐만 아니라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에게도 나타났다. 강원도 출신인 정주영 후보는 강원도에서 자신의 전국득표율 16.8%보다 2배 이상 많은 34.1%를 득표하였다.

〈표 6-18〉 김영삼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 비교

(단위 : %)

지역별 선거별	전 국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충남·대전	강원·충북·제주
제13대 대통령선거	28.0	28.7	53.7	26.6	1.2	16.1	27.0
제14대 대통령선거	42.0	36.5	72.8	62.5	4.3	36.3	40.0
비 교	증 14	증 7.8	증 19.1	증 35.9	증 3.1	증 20.2	증 13.0

〈표 6-19〉 김대중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 비교

(단위 : %)

지역별 선거별	전 국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충남·대전	강원·충북·제주
제13대 대통령선거	27.1	28.4	6.9	2.5	88.4	12.4	10.9
제14대 대통령선거	33.8	35.2	10.9	8.9	91.9	28.6	22.3
비 교	증 6.7	증 6.8	증 4	증 6.4	증 3.5	증 16.2	증 11.4

나. 낙선한 후보자들의 선거결과 승복

낙선한 후보자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였다는 것도 제14대 대통령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 직선제로 치러진 역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낙선한 후보자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당시 신민당 윤보선 후보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당시 신민당 김대중 후보는 각각 당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며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당시 통일국민당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도 민주정의

당 노태우 후보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며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민주당 김대중 후보와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바로 선거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후보는 선거일 다음날인 1992년 12월 19일 민주당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여러분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을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패배를 겸허한 심정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중 후보는 국회의 원직과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말도 하였다. 그는 이틀 후인 12월 21일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1993년 1월 6일 수리되었다. 김대중 전 후보는 김영삼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약 1개월 전인 1993년 1월 26일,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객원교수 자격으로 6개월간 연구활동을 하기로 하였다며 출국하였다.



▶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정계은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1992년 12월 19일).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도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만, 정주영 후보는 김대중 후보와는 달리 처음에는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운영에 대한 내부 반발과, 현대중공업에서 비자금에 조성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993년 2월 6일 검찰이 기소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하자 결국 정계은퇴를 선

언하였다. 정주영 전 후보는 통일국민당을 창당한 지 만 1년 하루가 지난 1993년 2월 9일 통일 국민당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대신 경제를 하겠다” 고 밝히고 정계를 은 퇴하였다.

大韓民國

選舉史

부록



-
- 1_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상황
 - 2_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통계
 - 3_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별 득표상황
 - 4_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별 득표상황
 - 5_ 연표
 - 6_ 참고문헌

1.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상황

① 총괄

공화국	연번	선거명	선거일 (국민투표일)	요일	비고
제 1 공 화 국	1	제헌 국회의원선거	1948. 5.10	월	
	2	초대 대통령선거	1948. 7.20	화	
	3	제2대 국회의원선거	1950. 5.30	화	
	4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2. 4.25	금	
	5	도회의원선거	1952. 5.10	토	
	6	제2대 대통령선거	1952. 8. 5	화	
	7	제3대 국회의원선거	1954. 5.20	목	
	8	제3대 대통령선거	1956. 5.15	화	
	9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6. 8. 8	수	
	10	시·읍·면장선거	1956. 8. 8	수	
	11	서울시·도회의원선거	1956. 8.13	월	
	12	제4대 국회의원선거	1958. 5. 2	금	
	13	제4대 대통령선거	1960. 3.15	화	
제 2 공 화 국	14	제5대 국회의원(참의원)선거	1960. 7.29	금	
	15	제4대 대통령선거	1960. 8.12	금	
	16	서울시·도회의원선거	1960.12.12	월	
	17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60.12.19	월	
	18	시·읍·면장선거	1960.12.26	월	
	19	서울시장·시도지사선거	1960.12.29	목	

공화국	연번	선거명	선거일 (국민투표일)	요일	비고
제 3 공 화 국	20	제1차 국민투표	1962.12.17	월	
	21	제5대 대통령선거	1963.10.15	화	
	22	제6대 국회의원선거	1963.11.26	화	
	23	제6대 대통령선거	1967. 5. 3	수	
	24	제7대 국회의원선거	1967. 6. 8	목	
	25	제2차 국민투표	1969.10.17	금	
	26	제7대 대통령선거	1971. 4.27	화	
	27	제8대 국회의원선거	1971. 5.25	화	
	28	제3차 국민투표	1972.11.21	화	
	29	제8대 대통령선거	1972.12.23	토	
제 4 공 화 국	30	제9대 국회의원선거	1973. 2.27	화	
	31	제4차 국민투표	1975. 2.12	수	
	32	제9대 대통령선거	1978. 7. 6	목	
	33	제10대 국회의원선거	1978.12.12	화	
	34	제10대 대통령선거	1979.12. 6	목	
	35	제11대 대통령선거	1980. 8.27	수	
	36	제5차 국민투표	1980.10.22	수	
	37	제12대 대통령선거	1981. 2.25	수	
제 5 공 화 국	38	제11대 국회의원선거	1981. 3.25	수	
	39	제12대 국회의원선거	1985. 2.12	화	
	40	제6차 국민투표	1987.10.27	화	
	41	제13대 대통령선거	1987.12.16	수	
제 6 공 화 국	42	제13대 국회의원선거	1988. 4.26	화	
	43	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	1991. 3.26	화	
	44	시 · 도의회의원선거	1991. 6.20	목	
	45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992. 3.24	화	
	46	제14대 대통령선거	1992.12.18	금	

② 대통령선거

구 분	선거일	선출방법	후보자수	당선인	비고
초대	1948. 7.20	간접선거 (국회)	3	이승만	
제2대	1952. 8. 5	직접선거	4	자유당 이승만	
제3대	1956. 5.15	직접선거	3	자유당 이승만	
제4대	1960. 3.15	직접선거	2	자유당 이승만	선거무효 (3·15부정선거)
제4대	1960. 8.12	간접선거(국회)	12	민주당 윤보선	
제5대	1963.10.15	직접선거	7	민주공화당 박정희	
제6대	1967. 5. 3	직접선거	7	민주공화당 박정희	
제7대	1971. 4.27	직접선거	7	민주공화당 박정희	
제8대	1972.12.23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1	민주공화당 박정희	
제9대	1978. 7. 6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1	민주공화당 박정희	
제10대	1979.12. 6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1	최규하	
제11대	1980. 8.27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1	전두환	
제12대	1981. 2.25	간접선거 (대통령선거인단)	4	민주정의당 전두환	
제13대	1987.12.16	직접선거	8	민주정의당 노태우	
제14대	1992.12.18	직접선거	8	민주자유당 김영삼	

③ 국회의원선거

구 분	선거일	선출인원			지 역 선거구수	선거구제	비고
		계	지역구	전국구 (비례대표)			
제 헌	1948. 5. 10	200	200		200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2대	1950. 5. 30	210	210		210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3대	1954. 5. 20	203	203		203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4대	1958. 5. 2	233	233		233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5대	1960. 7. 29	233	233		233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6대	1963. 11. 26	175	131	44	131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7대	1967. 6. 8	175	131	44	131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8대	1971. 5. 25	204	153	51	153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9대	1973. 2. 27	219	146	(73)	73	중선거구제 (2인 선출)	
제10대	1978. 12. 12	231	154	(77)	77	중선거구제 (2인 선출)	
제11대	1981. 3. 25	276	184	92	92	중선거구제 (2인 선출)	
제12대	1985. 2. 12	276	184	92	92	중선거구제 (2인 선출)	
제13대	1988. 4. 26	299	224	75	224	소선거구제 (1인 선출)	
제14대	1992. 3. 24	299	237	62	237	소선거구제 (1인 선출)	

※ 제9대 및 제10대 전국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을 말함.

④ 지방선거

구 분	선거일	지방자치 단체수	선거실시지방 자치단체수	정수	비고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2. 4.25	1,542	1,397	17,559	시의원선거 : 19개 시 중 17개 시 실시 읍의원선거 : 75개 읍 중 72개 읍 실시 면의원선거 : 1,448개 면 중 1,308개 면 실시
도회의원선거	1952. 5.10	9	7	306	7개도 실시(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미실시)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56. 8. 8	1,491	1,458	16,961	시의원선거 : 26개 시 중 25개 시 실시 읍의원선거 : 자료 없음 면의원선거 : 자료 없음
시·읍·면장선거	1956. 8. 8	1,491	580	1,491	시장선거 : 26개 시 중 6개 시 실시 읍장선거 : 76개 읍 중 30개 읍 실시 면장선거 : 1,389개 면 중 544개 면 실시
서울시·도회의원선거	1956. 8. 13	10	10	437	10개 시·도 모두 실시
서울시·도회의원선거	1960.12.12	10	10	487	10개 시·도 모두 실시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60.12.19	1,518	1,468	16,909	시의원선거 : 26개 시 모두 실시 읍의원선거 : 82개 읍 모두 실시 면의원선거 : 1,360개 면 모두 실시
시·읍면장선거	1960.12.26	1,468	1,468	1,468	시장선거 : 26개 시 모두 실시 읍장선거 : 82개 읍 모두 실시 면장선거 : 1,360개 면 모두 실시
서울시장·도지사선거	1960.12.29	10	10	10	10개 시·도 모두 실시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991. 3.26	3,562	3,562	4,304	
시·도회의원선거	1991. 6.20	866	866	866	

⑤ 국민투표

구 분	투표일	투표율(%)	찬성투표율(%)	비고
제1차	1962.12.17	85.3	78.8	헌법 개정 (제3공화국 출범)
제2차	1969.10.17	77.1	65.1	헌법 개정 (3선 개헌)
제3차	1972.11.21	91.9	91.5	헌법 개정 (유신헌법)
제4차	1975. 2.12	79.8	73.1	유신헌법 찬반 및 정부신임
제5차	1980.10.22	95.5	91.6	헌법 개정 (제5공화국 출범)
제6차	1987.10.27	78.2	93.1	헌법 개정 (제6공화국 출범)

2.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주요통계

① 대통령선거

구 분	선거일(요일)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	비고
				유효	무효	계			
초대	1948. 7.20(화)	-	198	195	1	196	2	99,0	간접선거 (국회)
제2대	1952. 8. 5(화)	20,188,641	8,259,428	7,020,684	255,199	7,275,883	983,545	88.1	
제3대	1956. 5.15(화)	21,526,374	9,606,870	7,210,245	1,856,818	9,067,063	539,807	94.4	
제4대	1960. 3.15(화)	21,526,374	11,196,490	9,633,376	1,228,896	10,862,272	334,218	97,0	선거무효
제4대	1960. 8.12(금)	-	263	253	6	259	4	98,5	간접선거 (국회)
제5대	1963.10.15(화)	26,278,025	12,985,015	10,081,198	954,977	11,036,175	1,948,840	85,0	
제6대	1967. 5. 3(수)	29,174,190	13,935,093	11,058,721	586,494	11,645,215	2,289,878	83,6	
제7대	1971. 4.27(화)	30,839,687	15,552,236	11,923,218	494,606	12,417,824	3,134,412	79,8	
제8대	1972.12.23(토)	-	2,359	2,357	2	2,359	0	100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9대	1978. 7. 6(목)	-	2,581	2,577	1	2,578	3	99,9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0대	1979.12. 6(목)	-	2,560	2,465	84	2,549	11	99,6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1대	1980. 8.27(수)	-	2,540	2,524	1	2,525	15	99,4	간접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2대	1981. 2.25(수)	-	5,277	5,270	1	5,271	6	99,9	간접선거 (대통령선거인단)
제13대	1987.12.16(수)	41,338,959	25,873,624	22,603,411	463,008	23,066,419	2,807,205	89,2	
제14대	1992.12.18(금)	44,107,551	29,442,658	23,775,409	319,761	24,095,170	5,327,488	81,9	

② 국회의원선거

구 분	선거일(요일)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	비고
				유효	무효	계			
제헌	1948. 5.10(월)	19,190,877	7,840,871	7,216,942	270,707	7,487,649	353,222	95.5	
제2대	1950. 5.30(화)	20,178,641	8,434,737	6,987,040	765,036	7,752,076	682,661	91.9	
제3대	1954. 5.20(목)	20,178,641	8,446,509	7,492,308	206,082	7,698,390	748,119	91.1	
제4대	1958. 5. 2(금)	21,526,374	10,164,428 (323,773)	8,576,757	347,148	8,923,905	916,750	90.7	()는 무투표 선거구 의 선거인수
제5대	1960. 7.29(금)	21,526,374	11,593,432	9,077,835	701,086	9,778,921	1,814,511	84.3	
참의원	1960. 7.29(금)	21,526,374	11,593,432	9,337,705	409,983	9,747,688	1,845,744	84.1	
제6대	1963.11.26(화)	26,278,025	13,344,149	9,298,830	323,353	9,622,183	3,721,966	72.1	
제7대	1967. 6. 8(목)	29,174,190	14,717,354	10,856,008	346,309	11,202,317	3,515,037	76.1	
제8대	1971. 5.25(화)	30,839,687	15,610,258	11,195,922	234,280	11,430,202	4,180,056	73.2	
제9대	1973. 2.27(화)	31,502,534	15,690,130 (342,081)	10,991,436	205,048	11,196,484	4,151,565	73.0	()는 무투표 선거구 의 선거인수
제10대	1978.12.12(화)	36,228,754	19,489,490	14,812,443	210,927	15,023,370	4,466,120	77.1	
제11대	1981. 3.25(수)	37,768,977	21,094,468 (185,348)	16,207,325	190,520	16,397,845	4,511,275	78.4	()는 무투표 선거구 의 선거인수
제12대	1985. 2.12(화)	40,361,844	23,987,830	19,974,643	312,029	20,286,672	3,701,158	84.6	
제13대	1988. 4.26(화)	41,578,821	26,198,205	19,642,040	208,775	19,850,815	6,347,390	75.8	
제14대	1992. 3.24(화)	43,862,069	29,003,828	20,583,812	259,670	20,843,482	8,160,346	71.9	

③ 지방선거

구 분	선거일(요일)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
				유효	무효	계		
시의회의원 선거	1952. 4.25(금)	2,668,745	1,111,849	869,877 (97.5%)	21,851 (2.5%)	891,728	220,121	80.2
	1956. 8. 8(수)	3,734,564	1,578,678	1,207,171 (96.1%)	48,877 (3.9%)	1,256,048	322,630	79.6
	1960.12.19(월)	3,949,946	1,995,994	1,214,235 (97.2%)	35,019 (2.8%)	1,249,254	746,740	62.6
읍의회의원 선거	1952. 4.25(금)	1,750,102	734,538	631,003 (97.1%)	18,541 (2.9%)	649,544	84,994	88.4
	1956. 8. 8(수)	자료 없음						
	1960.12.19(월)	1,877,544	989,574	745,291 (97.2%)	21,405 (2.8%)	766,696	222,878	77.5
면의회의원 선거	1952. 4.25(금)	13,464,032	5,689,917	5,171,720 (97.7%)	123,742 (2.3%)	5,295,462	394,455	93.1
	1956. 8. 8(수)	자료 없음						
	1960.12.19(월)	13,678,821	7,128,216	5,799,728 (97.2%)	169,009 (2.8%)	5,968,737	1,159,479	83.7
도회의원 선거	1952. 5.10(토)	14,836,791	6,358,383	5,013,524 (97.1%)	151,702 (2.9%)	5,165,226	1,193,157	81.2
서울시·도의회 의원선거	1956. 8.13(월)	19,140,219	8,421,772	7,031,854 (97.3%)	191,751 (2.7%)	7,223,605	1,198,167	85.8
	1960.12.12(월)	21,526,374	11,263,445	7,222,376 (95.1%)	373,376 (4.9%)	7,595,752	3,667,693	67.4
시장선거	1956. 8. 8(수)	500,106	209,815	173,708 (95.5%)	8,155 (4.5%)	181,863	27,952	86.7
	1960.12.26(월)	3,949,946	2,035,429	1,071,998 (96.5%)	38,945 (3.5%)	1,110,943	924,486	54.6
읍장선거	1956. 8. 8(수)	자료 없음						
	1960.12.26(월)	1,877,544	1,021,388	714,952 (96.2%)	27,945 (3.8%)	742,897	278,491	72.7
면장선거	1956. 8. 8(수)	자료 없음						
	1960.12.26(월)	13,678,821	7,228,937	5,647,849 (95.8%)	250,516 (4.2%)	5,898,365	1,330,572	81.6
서울시장· 시도지사선거	1960.12.29(목)	21,526,374	11,343,336	4,188,020 (95.2%)	211,400 (4.8%)	4,399,420	6,943,916	38.8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1991. 3.26(화)	43,422,640	28,301,580	12,907,978 (97.5%)	329,115 (2.5%)	13,237,093	10,830,051	55.0
시·도의회 의원선거	1991. 6.20(목)	43,467,306	28,416,241	16,239,098 (98.2%)	294,836 (1.8%)	16,533,934	11,549,090	58.9

④ 국민투표

구 분	투표일(요일)	인구수	투표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	찬성률 (%)
				유효		무효	소계			
				찬성	반대					
제1차	1962.12.17(월)	26,278,025	12,412,798	8,339,333	2,008,801	237,864	10,585,998	1,826,800	85.3	78.8
제2차	1969.10.17(금)	30,481,835	15,048,925	7,553,655	3,636,369	414,014	11,604,038	3,444,887	77.1	65.1
제3차	1972.11.21(화)	31,536,109	15,676,395	13,186,559	1,106,143	118,012	14,410,714	1,265,681	91.9	91.5
제4차	1975. 2.12(수)	33,290,921	16,788,839	9,800,201	3,370,085	233,959	13,404,245	3,384,594	79.8	73.1
제5차	1980.10.22(수)	37,589,091	20,373,869	17,829,354	1,357,673	266,899	19,453,926	919,943	95.5	91.6
제6차	1987.10.27(화)	41,338,959	25,619,648	18,640,625	1,092,702	295,345	20,028,672	5,590,976	78.2	93.1

3.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서울특별시

● 종로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이종찬	통일민주당 김명운	신민주공화당 정인봉	한겨레민주당 제정구	사회민주당 한상필	우리정의당 차장량	한주의통일한국당 김경민	계			
종로구	175,660	123,664	46,534	44,488	15,139	15,031	418	305	683	122,598	1,066	51,996	70.4

● 중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장기홍	통일민주당 김중태	평화민주당 정대철	신민주공화당 문창택	한국국민당 김명주	민중의당 이세춘	계			
중구	137,878	97,346	27,617	20,721	38,228	8,935	240	837	96,578	768	40,532	70.6

● 용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당 서정화	통일민주당 김재영	평화민주당 한영애	신민주공화당 설송웅	한겨레민주당 정무형	우리정의당 이부규	계			
용산구	214,226	147,750	48,103	33,691	34,364	25,721	3,779	599	146,257	1,493	66,476	69.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성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이세기	통 일 민주당 박종철	평 화 민주당 강금식	신민주 공화당 박병호	무소속 이연국	계			
성동구갑	164,250	112,439	35,666	18,512	36,819	18,267	2,185	111,449	990	51,811	68.5

● 성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설영주	통 일 민주당 심의석	평 화 민주당 조세형	신민주 공화당 노진환	한겨레 민주당 최운기	무소속 김원식				계
성동구을	161,859	106,876	21,019	16,922	43,901	16,953	3,580	3,538	105,913	963	54,983	66.0

● 성동구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신영균	통 일 민주당 박용만	평 화 민주당 최운상	신민주 공화당 윤백현	우 리 정의당 신상수	계			
성동구병	169,502	117,949	36,142	37,769	26,591	15,496	1,047	117,045	904	51,553	69.6

● 동대문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유종열	통 일 민주당 노승우	평 화 민주당 최 훈	신민주 공화당 이인근	한겨레 민주당 장광근	우 리 정의당 전명환	무소속 강두원				계
동대문구갑	165,466	114,405	26,900	26,716	28,475	24,442	4,348	594	1,878	113,353	1,052	51,061	69.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동대문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김영균	통 일 민주당 송원영	평 화 민주당 고광진	신민주 공화당 김태웅	민 중 의 당 진영효	무소속 고달준	계			
동대문구을	165,359	115,775	34,821	23,364	32,017	15,352	4,054	5,043	114,651	1,124	49,584	70.0

● 중랑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순재	통일 민주당 유택형	평화 민주당 이상수	신민주 공화당 박 훈	무소속 황익수	계			
중랑구갑	118,671	84,988	26,483	17,052	27,242	9,984	3,560	84,321	667	33,683	71.6

● 중랑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천명기	통일 민주당 박 찬	평화 민주당 김덕규	신민주 공화당 강병진	한겨레 민주당 김성식	계			
중랑구을	160,719	109,031	27,619	26,287	31,328	20,080	2,559	107,873	1,158	51,688	67.8

● 성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김정례	통 일 민주당 고인순	평 화 민주당 설 훈	신민주 공화당 최재우	한겨레 민주당 김현식	사 회 민주당 송영기	무소속 이 철	계			
성북구갑	191,086	131,515	30,603	10,578	29,482	16,326	953	1,882	40,652	130,476	1,039	59,571	68.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성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강성재	통 일 민주당 현승일	평 화 민주당 조운형	신민주 공화당 김 유	한겨레 민주당 임태백	계			
성북구을	190,003	131,365	30,771	30,600	50,310	16,833	1,904	130,418	947	58,638	69.1

● 도봉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장천석	통 일 민주당 박정태	평 화 민주당 한호상	신민주 공화당 신오철	한겨레 민주당 조순형	계			
도봉구갑	175,484	120,695	23,183	16,436	22,532	39,873	17,817	119,841	854	54,789	68.8

● 도봉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민주 정의당 배성동	통일 민주당 임정규	평화 민주당 이철용	신민주 공화당 김우경	신한민주당 박영식
도봉구을	149,467	101,503	23,981	17,714	32,283	12,932	1,200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한겨레민주당 전대열	기독 성민당 진복기	무소속 김원길	무소속 이영수	계			
3,262	901	7,344	973	100,590	913	47,964	67.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노원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안대륜	통일 민주당 백남치	평화 민주당 박병일	신민주 공화당 성정기	한겨레 민주당 유인태	계			
노원구갑	134,013	90,993	21,754	25,699	24,602	10,640	7,575	90,270	723	43,020	67.9

● 노원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권오주	통일 민주당 신두희	평화 민주당 임채정	신민주 공화당 김용채	우리 정의당 정선배	계			
노원구을	147,108	102,187	16,161	21,028	30,346	31,150	2,474	101,159	1,028	44,921	69.5

● 은평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오유방	통일 민주당 오상현	평화 민주당 조동희	신민주 공화당 송지현	신한 민주당 황 성	한겨레 민주당 송창달	우리 정의당 손가명				계
은평구갑	141,534	97,342	30,687	23,644	29,127	9,555	487	2,139	832	96,471	871	44,192	68.8

● 은평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완일	통일 민주당 김재광	평화 민주당 이원형	신민주 공화당 임인채	한겨레 민주당 이현배				계
은평구을	153,073	104,733	26,814	27,154	26,612	13,619	9,700	103,899	834	48,340	68.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서대문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강성모	통 일 민주당 김상현	평 화 민주당 김학민	신민주 공화당 신순원	우 리 정의당 오재관	무소속 고은석	계			
서대문구갑	138,825	98,212	36,097	30,598	23,054	5,621	1,341	736	97,447	765	40,613	70.7

● 서대문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안성혁	통일 민주당 강원채	평화 민주당 임춘원	신민주 공화당 이승일	한겨레 민주당 이근봉	계			
서대문구을	133,355	93,009	24,417	22,620	35,478	7,295	2,498	92,308	701	40,346	69.7

● 마포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명환	통일 민주당 박홍섭	평화 민주당 노승환	신민주 공화당 이종순				
마포구갑	150,678	102,047	29,836	25,012	36,134	10,203	101,185	862	48,631	67.7

● 마포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주천	통일 민주당 강신욱	평화 민주당 김승목	신민주 공화당 장덕환				
마포구을	148,200	106,175	28,178	40,563	22,955	13,814	105,510	665	42,025	71.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양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박범진	통 일 민주당 박수복	평 화 민주당 양성우	신민주 공화당 이규정	사 회 민주당 고순복	우 리 정의당 서병찬	무소속 김항식	무소속 이종일	계			
양천구갑	135,424	91,897	22,075	23,510	25,717	14,683	262	533	3,448	1,076	91,304	593	43,527	67.9

● 양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양창중	통일 민주당 탁형춘	평화 민주당 김영배	신민주 공화당 최후집	무소속 서태중	계			
양천구을	143,829	100,091	22,036	16,121	34,866	25,034	1,156	99,213	878	43,738	69.6

● 강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유영	통일 민주당 이원중	평화 민주당 이원배	신민주 공화당 고병현	무소속 김수태	계			
강서구갑	115,847	82,286	18,805	21,026	21,988	17,319	2,502	81,640	646	33,561	71.0

● 강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남재희	통일 민주당 최두환	평화 민주당 김재현	신민주 공화당 김인식	한겨레 민주당 최수영	제3 세대당 이경표	계			
강서구을	118,528	81,081	25,198	21,755	17,534	10,509	1,317	4,125	80,438	643	37,447	68.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구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기배	통일 민주당 김정강	평화 민주당 박영록	신민주 공화당 정순주	제3 세대당 최영남	계			
구로구갑	238,346	166,426	53,853	28,311	51,786	30,016	1,049	165,015	1,411	71,920	69.8

● 구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민주 정의당 최백희	통일 민주당 김종배	평화 민주당 나이균	신민주 공화당 유기수	신한 민주당 한인수
구로구을	220,045	151,940	29,147	18,138	42,025	44,588	3,387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한국 민주당 전수복	민중의당 정태윤	우리 정의당 김영재	무소속 조봉제	계			
992	5,380	805	6,202	150,664	1,276	68,105	69.0

● 영등포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득현	통 일 민주당 장석화	평 화 민주당 김수일	신민주 공화당 유관석	한겨레 민주당 권혁충	우 리 정의당 백 철	무소속 박한상				
영등포구갑	139,785	98,164	24,669	29,825	26,961	8,417	1,536	2,599	3,333	97,340	824	41,621	70.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영등포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명섭	통일 민주당 이원범	평화 민주당 이용희	신민주 공화당 박상웅				계
영등포구을	162,702	110,352	31,888	31,423	31,337	14,739	109,387	965	52,350	67.8

● 동작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허청일	통 일 민주당 서청원	평 화 민주당 김상균	신민주 공화당 윤용구	한겨레 민주당 김부겸	한 국 국민당 지창수	우 리 정의당 조용국				계
동작구갑	134,523	95,594	25,675	37,270	18,222	9,883	3,088	451	255	94,844	750	38,929	71.1

● 동작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류용태	통일 민주당 양해준	평화 민주당 박 실	신민주 공화당 조준호	우리 정의당 편영우				계
동작구을	132,700	91,992	23,560	12,017	37,247	17,675	756	91,255	737	40,708	69.3

● 관악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우연	통일 민주당 임광순	평화 민주당 한광욱	신민주 공화당 이상현			
관악구갑	182,934	132,356	21,829	14,473	51,199	37,390		321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한겨레 민주당 정혜원	우리 정의당 심덕원	무소속 이영희	무소속 최병순	계			
1,645	741	2,277	1,431	131,306	1,050	50,578	72.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관악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종인	통일 민주당 김수한	평화 민주당 이해찬	신민주 공화당 권태오	민중의당 엄정남	계				
관악구을	186,625	129,148	34,752	31,017	39,950	18,664	3,731	128,114	1,034	57,477	69.2	

● 서초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종률	통일 민주당 김형래	평화 민주당 장 현	신민주 공화당 이하우	한겨레 민주당 이석원	무소속 박찬종	무소속 임길수				계
서초구갑	128,742	90,919	22,743	17,820	11,372	10,165	506	27,584	342	90,532	387	37,823	70.6

● 서초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동복	통일 민주당 김덕룡	평화 민주당 정완기	신민주 공화당 한병기	신한 민주당 김병욱	무소속 구자호	계			
서초구을	132,004	91,252	19,424	31,377	14,715	19,591	1,335	4,296	90,738	514	40,752	69.1

● 강남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희경	통일 민주당 황병태	평화 민주당 김경재	신민주 공화당 최재구	한국 국민당 강봉수	우리 정의당 김상철	무소속 장기욱				계
강남구갑	133,103	92,588	16,448	24,850	16,438	19,681	248	2,720	11,528	91,913	675	40,515	69.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강남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이태섭	통 일 민주당 민창기	평 화 민주당 박명서	신민주 공화당 박춘응	우 리 정의당 김용덕	무소속 홍사덕	계			
강남구을	155,882	114,726	41,123	23,949	10,732	3,392	367	34,746	114,309	417	41,156	73.6

● 송파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조순환	통 일 민주당 김우석	평 화 민주당 남현식	신민주 공화당 조용직	신 한 민주당 김병수	한겨레 민주당 이대용	무소속 허경구				계
송파구갑	163,643	113,210	22,538	27,627	21,884	18,221	3,598	2,329	16,343	112,540	670	50,433	69.2

● 송파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박종남	통 일 민주당 김병태	평 화 민주당 김종완	신민주 공화당 류호필	한겨레 민주당 박용일	무소속 안영명	계			
송파구을	168,361	115,218	25,858	28,930	30,419	22,120	6,259	797	114,383	835	53,143	68.4

● 강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황동현	통 일 민주당 김동규	평 화 민주당 정진길	신민주 공화당 김익중	한겨레 민주당 임도빈	계			
강동구갑	172,133	114,584	25,806	37,837	30,658	15,912	3,613	113,826	758	57,549	66.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강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김중위	통 일 민주당 이상윤	평 화 민주당 장충준	신민주 공화당 김종택	신 한 민주당 김종수	한겨레 민주당 홍성표	제3 세대당 이종수	계			
강동구을	151,782	103,022	30,698	26,179	27,170	13,435	735	1,989	1,970	102,176	846	48,760	67.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부산직할시

●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정의당 우병택	통일민주당 김광일	평화민주당 송정섭	신민주공화당 이만웅	무소속 김영백	계			
중 구	60,507	48,322	18,636	21,731	1,187	776	5,591	47,921	401	12,185	79.9

● 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정의당 곽정출	통일민주당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최기복	우리정의당 신순기	무소속 김일택	계			
서 구	138,752	110,184	33,139	72,599	1,639	722	1,103	109,202	982	28,568	79.4

● 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정의당 허삼수	통일민주당 노무현	평화민주당 이후근	신민주공화당 한기승	한주의통일 한국당 이상철	계			
동 구	129,454	104,869	43,986	53,075	2,049	4,384	565	104,059	810	24,585	81.0

● 영도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정의당 안병해	통일민주당 김정길	평화민주당 정동철	신민주공화당 노차태	한겨레민주당 예춘호	무소속 전국진				계
영도구	134,489	101,308	17,476	47,433	4,601	16,946	11,945	1,921	100,322	986	33,181	7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부산진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상희	통일 민주당 정재문	신한 민주당 고병수	한겨레 민주당 심용래	계			
부산진구갑	167,004	129,753	56,853	67,159	2,371	2,078	128,461	1,292	37,251	77.7

● 부산진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조승남	통일 민주당 김정수	신민주 공화당 강경식	신한 민주당 장동호	민주 한국당 안상준	민중의당 이창용	우리 정의당 정윤석				계
부산진구을	165,901	131,501	43,926	63,491	15,842	906	503	4,234	1,481	130,383	1,118	34,400	79.3

● 동래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강경식	통일 민주당 박관용	신민주 공화당 도상수	계			
동래구갑	202,149	157,067	57,491	93,550	4,878	155,919	1,148	45,082	77.7

● 동래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용균	통일 민주당 최형우	평화 민주당 이용운	신민주 공화당 양찬우	한겨레 민주당 나경락	무소속 권태망				계
동래구을	167,268	129,591	27,991	76,174	4,301	16,420	2,125	1,556	128,567	1,024	37,677	77.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남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유흥수	통일 민주당 히재홍	신민주 공화당 최인규	무소속 이영근	계			
남구갑	168,957	130,461	43,401	58,372	4,529	23,142	129,444	1,017	38,496	77.2

● 남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수천	통일 민주당 정상구	신민주 공화당 왕찬권	한겨레 민주당 최시명	계			
남구을	179,274	136,813	34,188	80,702	13,542	7,298	135,730	1,083	42,461	76.3

● 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장성만	통일 민주당 문정수	신민주 공화당 김용호	무소속 이재수	계			
북구갑	154,944	119,900	29,960	67,968	20,241	868	119,037	863	35,044	77.4

● 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최두열	통일 민주당 신상우	평화 민주당 김갑주	신민주 공화당 김종필	한겨레 민주당 박용태				계
북구을	141,519	107,701	29,107	66,709	6,657	2,680	1,609	106,762	939	33,818	76.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해운대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상천	통일 민주당 이기택	평화 민주당 이병희	신민주 공화당 이건일	무소속 최상환	계			
해운대구	146,912	113,010	33,990	54,223	4,454	10,523	9,057	112,247	763	33,902	76.9

● 사하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최용수	통일 민주당 서석재	평화 민주당 유강열	신민주 공화당 조영래	한겨레 민주당 백성조	계			
사하구	189,073	143,637	37,075	83,731	11,724	5,326	4,743	142,599	1,038	45,436	76.0

● 금정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계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진재	통일 민주당 이대우	신민주 공화당 문용한	한겨레 민주당 전한도				
금정구	183,035	144,588	68,751	66,985	4,920	2,980	143,636	952	38,447	79.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대구직할시

●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정의당 유우호	통일민주당 김현규	평화민주당 구영	신민주공화당 이수만	무소속 서병환	계			
중구	105,892	84,269	47,594	31,660	549	2,783	1,099	83,685	584	21,623	79.6

● 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정의당 박준규	통일민주당 목요상	평화민주당 안병달	신민주공화당 최규태	한겨레민주당 권영식	계			
동구	204,483	157,607	85,854	46,725	2,163	16,230	5,350	156,322	1,285	46,876	77.1

● 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정의당 정호용	통일민주당 서훈	평화민주당 양의강	신민주공화당 백승홍	민중의당 김현근	계			
서구갑	126,408	97,919	52,847	19,242	884	22,234	2,044	97,251	668	28,489	77.5

● 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정의당 최운지	통일민주당 유성환	신민주공화당 신달선	한겨레민주당 서중현	한국국민당 이종섭	민중의당 최영	계			
서구을	115,282	88,948	43,323	30,575	5,391	2,333	4,785	1,730	88,137	811	26,334	77.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남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정무	통일 민주당 성만현	평화 민주당 송효익	신민주 공화당 김해석	무소속 신진욱	계			
남 구	168,551	133,772	55,611	14,440	1,839	42,540	18,352	132,782	990	34,779	79.4

● 북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용태	통일 민주당 박승국	신민주 공화당 서정식	무소속 서정달	계			
북 구	198,046	149,226	68,064	62,293	14,136	3,314	147,807	1,419	48,820	75.3

● 수성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치호	통일 민주당 윤영탁	신민주 공화당 이상희	한겨레 민주당 이강철	무소속 권만성	계			
수성구	198,674	150,715	66,731	50,184	21,727	8,459	2,366	149,467	1,248	47,959	75.9

● 달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한규	통일 민주당 권병태	평화 민주당 이왕식	신민주 공화당 임갑수	신한 민주당 최한별	한국 국민당 이만섭	계			
달서구	182,743	136,379	57,434	25,806	1,101	5,353	972	44,742	135,408	971	46,364	74.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인천직할시

● 중구·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서정화	통일 민주당 전봉삼	평화 민주당 백종길	신민주 공화당 민만기	기독 성민당 김철성	계			
합계	142,140	104,686	48,502	17,752	18,825	16,892	1,346	103,317	1,369	37,454	73.6
중구	51,916	37,328	16,942	7,162	5,915	6,258	595	36,872	456	14,588	71.9
동구	90,224	67,358	31,560	10,590	12,910	10,634	751	66,445	913	22,866	74.7

● 남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심정구	통일 민주당 명화섭	평화 민주당 배종달	신민주 공화당 서춘택	한겨레 민주당 박경선	계			
남구갑	153,588	112,614	48,663	38,702	11,074	10,786	2,514	111,739	875	40,974	73.3

● 남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강희	통일 민주당 하근수	평화 민주당 이신웅	신민주 공화당 임배영	계				
남구을	129,456	92,719	35,618	30,984	9,094	16,124	91,820	899	36,737	71.6	

● 남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강우혁	통일 민주당 이원복	평화 민주당 차상열	신민주 공화당 박종철	계				
남동구	145,455	102,775	37,137	34,541	14,199	16,074	101,951	824	42,680	70.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조진형	통일 민주당 정정훈	평화 민주당 김용석	신민주 공화당 이정대	한겨레 민주당 하필승	계			
북구갑	160,442	110,013	33,201	38,252	16,755	17,832	3,052	109,092	921	50,429	68.6

● 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승윤	통일 민주당 이병현	평화 민주당 지영길	신민주 공화당 허 섭	민중의당 송경평				계
북구을	145,665	95,984	30,389	15,565	14,675	20,431	13,911	94,971	1,013	49,681	65.9

● 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조영장	통일 민주당 류제연	평화 민주당 오석보	신민주 공화당 김장환	한겨레 민주당 오순부	무소속 이훈국	계			
서 구	102,246	67,919	21,812	16,932	11,196	7,365	3,859	5,984	67,148	771	34,327	66.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광 주 직 할 시

● 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고귀남	평화 민주당 신기하	신민주 공화당 안광양	계			
동 구	115,994	89,329	9,512	78,093	1,086	88,691	638	26,665	77.0

● 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영일	통일 민주당 장기연	평화 민주당 정상용	무소속 이필선				계
서구갑	105,477	82,828	8,705	593	71,349	1,710	82,357	471	22,649	78.5

● 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현채	평화 민주당 박종태	신민주 공화당 최순자	무소속 강도석				계
서구을	126,468	96,499	6,724	86,941	1,037	1,229	95,931	568	29,969	76.3

● 북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지대섭	통일 민주당 정길성	평화 민주당 정 응	한주의통일 한국당 신금남				계
북 구	180,221	140,604	10,211	1,321	127,579	394	139,505	1,099	39,617	78.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광산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재완	평화 민주당 조흥규	신민주 공화당 정원섭	계			
광산구	81,418	65,875	10,538	53,705	902	65,145	730	15,543	80.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기도

● 수원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인영	통일 민주당 박왕식	평화 민주당 이일구	계			
수원시갑	161,408	107,517	47,745	40,071	18,246	106,062	1,455	53,891	66.6

● 수원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남평우	통일 민주당 김정태	평화 민주당 유용근	신민주 공화당 이병희	무소속 이응철				계
수원시을	156,669	112,300	32,383	21,857	18,766	35,947	2,520	111,473	827	44,369	71.7

● 성남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충호	통일 민주당 장문영	평화 민주당 이윤수	신민주 공화당 이대엽				계
성남시갑	166,994	115,120	29,237	9,909	30,420	44,625	114,191	929	51,874	68.9

● 성남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오세응	통일 민주당 양건주	평화 민주당 이찬구	신민주 공화당 김기평	한국 국민당 정원립				계
성남시을	141,893	94,385	30,056	7,448	33,187	19,754	3,096	93,541	844	47,508	66.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의정부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홍우준	통일 민주당 홍사임	평화 민주당 문희상	신민주 공화당 김문원	계			
의정부시	111,724	82,525	26,414	3,751	22,492	29,103	81,760	765	29,199	73.9

● 안양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정숙	통 일 민주당 이인제	평 화 민주당 이석용	신민주 공화당 진성범	민 주 한국당 김재중	한겨레 민주당 임정조	우 리 정의당 김채순	무소속 이택돈				계
안양시갑	132,835	90,721	20,652	29,325	19,958	6,430	1,158	3,436	839	8,179	89,977	744	42,114	68.3

● 안양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일주	통 일 민주당 신하철	평 화 민주당 이석현	신민주 공화당 박제상	민중의당 안기석	무소속 김정묵	무소속 이광훈				계
안양시을	128,841	88,030	16,518	21,754	18,990	15,008	1,177	12,728	1,082	87,257	773	40,811	68.3

● 부천시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임무웅	통일 민주당 김길홍	평화 민주당 안동선	신민주 공화당 김정운				계
부천시 중 구	168,237	114,405	38,785	20,942	37,022	16,569	113,318	1,087	53,832	68.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부천시 남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이형기	통 일 민주당 최기선	평 화 민주당 김정웅	신민주 공화당 이경용	한겨레 민주당 원혜영	제3 세대당 한상운	무소속 박규식	계			
부천시 남 구	183,049	124,234	24,767	30,616	21,378	8,907	6,839	565	30,264	123,336	898	58,815	67.9

● 광명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윤항열	통 일 민주당 노병구	평 화 민주당 최정택	신민주 공화당 김병용	한겨레 민주당 이기한	한 국 국민당 팽인수	계			
광명시	156,737	109,256	27,743	18,747	23,471	33,978	2,480	1,906	108,325	931	47,481	69.7

● 송탄시·평택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권달수	통일 민주당 최동화	평화 민주당 조성진	민주 한국당 유치송	계			
합 계	93,292	70,805	28,480	13,337	10,967	17,251	770	22,487	75.9	
송탄시	44,961	33,768	13,610	8,890	4,552	6,340	376	11,193	75.1	
평택시	48,331	37,037	14,870	4,447	6,415	10,911	394	11,294	76.6	

● 동두천시·양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덕호	통일 민주당 김형광	평화 민주당 김국환	신민주 공화당 정진영	계			
합 계	94,668	71,267	31,879	25,847	6,112	6,649	780	23,401	75.3	
동두천시	44,104	34,141	15,973	12,312	3,217	2,303	336	9,963	77.4	
양주군	50,564	37,126	15,906	13,535	2,895	4,346	444	13,438	73.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안산시 · 용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장경우	통일 민주당 정진일	평화 민주당 송진섭	무소속 이영복	계			
합 계	116,154	77,489	35,161	18,518	16,865	5,977	76,521	968	38,665	66.7
안산시	93,580	57,657	20,135	16,176	15,504	5,194	57,009	648	35,923	61.6
용진군	22,574	19,832	15,026	2,342	1,361	783	19,512	320	2,742	87.9

● 과천시 · 시흥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황철수	통일 민주당 김상원	평화 민주당 강상섭	우리 정의당 김형규				계
합 계	198,174	127,126	48,354	42,548	29,662	5,139	125,703	1,423	71,048	98.9
과천시	45,021	30,172	10,934	12,201	5,553	1,207	29,895	277	14,849	67.0
시흥군	153,153	96,954	37,420	30,347	24,109	3,932	95,808	1,146	56,199	63.3

● 구리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전용원	통 일 민주당 조병봉	평 화 민주당 권운상	신민주 공화당 손명렬	무소속 김대근	무소속 조정무	계			
구리시	60,376	43,572	14,738	8,427	7,427	6,276	2,458	3,790	43,116	456	16,804	72.2

● 남양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성호	통일 민주당 안종목	평화 민주당 신동균	신민주 공화당 이진용	무소속 김성오				계
남양주군	110,014	77,547	30,592	7,697	10,327	24,447	3,665	76,728	819	32,467	70.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여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동성	통일 민주당 이규택	평화 민주당 조종오	신민주 공화당 권혁준	계			
여주군	62,273	47,882	21,561	19,934	1,007	4,776	47,278	604	14,391	76.9

● 평택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자현	통일 민주당 장기천	평화 민주당 장순식	민주 한국당 서화택	계			
평택군	74,655	57,062	27,134	11,928	3,720	13,566	56,348	714	17,593	76.4

● 화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지원	통일 민주당 차진모	평화 민주당 박형우	신민주 공화당 이창기	한국 국민당 김문병	계			
화성군	151,984	108,208	49,083	27,655	13,126	11,519	5,545	106,928	1,280	43,776	71.2

● 파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용호	통일 민주당 김현수	평화 민주당 윤승중	신민주 공화당 최무룡	한겨레 민주당 박영석	계			
파주군	107,565	82,707	33,953	5,634	5,908	34,219	2,145	81,859	848	24,858	76.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고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국현	통일 민주당 이근진	평화 민주당 김진택	신민주 공화당 이택석	신한 민주당 황인형	계			
고양군	131,723	95,274	19,272	16,957	8,814	47,928	1,426	94,397	877	36,449	72.3

● 광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영훈	통일 민주당 유기준	평화 민주당 강광호	계			
광주군	101,729	69,873	23,799	38,300	6,931	69,030	843	31,856	68.7

● 연천군·포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한동	통일 민주당 홍찬기	평화 민주당 김유근	계			
합 계	112,657	90,368	57,531	23,865	7,782	89,178	1,190	22,289	80.2
연천군	73,596	58,408	37,379	15,523	4,764	57,666	742	15,188	79.4
포천군	39,061	31,960	20,152	8,342	3,018	31,512	448	7,101	81.8

● 가평군·양평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영선	통일 민주당 정재인	신민주 공화당 오치성	계			
합 계	93,617	74,417	38,913	10,894	23,590	73,397	1,020	19,200	79.5
가평군	37,050	30,326	13,794	6,711	9,403	29,908	418	6,724	81.9
양평군	56,567	44,091	25,119	4,183	14,187	43,489	602	12,476	77.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이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영문	통일 민주당 황규선	평화 민주당 구재춘	신민주 공화당 김정현	무소속 이종원				계
이천군	83,048	62,430	27,022	18,497	5,580	7,390	3,307	61,796	634	20,618	75.2

● 용인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용희	통일 민주당 조종익	신민주 공화당 박창희				계
용인군	98,444	72,282	30,127	24,029	17,206	71,362	920	26,162	73.4

● 안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신호양	통일 민주당 정진환	신민주 공화당 김홍수	무소속 이해구				계
안성군	80,426	63,957	7,850	25,390	2,744	27,255	63,239	718	16,469	79.5

● 김포군·강화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해남	통일 민주당 김선홍	평화 민주당 이주완	신민주 공화당 김두섭				계
합 계	134,327	104,356	49,061	8,213	4,948	40,752	102,974	1,382	29,971	77.7
김포군	79,483	58,931	20,707	3,649	4,056	29,681	58,093	838	20,552	74.1
강화군	54,844	45,425	28,354	4,564	892	11,071	44,881	544	9,419	82.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강 원 도

● 춘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한승수	통일 민주당 김준섭	평화 민주당 백태열	신민주 공화당 손승덕	민중의당 최 윤				계
춘천시	102,555	81,511	34,166	11,785	3,003	26,130	5,678	80,762	749	21,044	79.5

● 원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함종한	통일 민주당 정봉철	평화 민주당 김천희	신민주 공화당 원광호	무소속 김광림				계
원주시	91,986	70,980	31,144	11,026	4,564	20,552	2,818	70,104	876	21,006	77.2

● 강릉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봉모	통일 민주당 허순옥	평화 민주당 이 훈	신민주 공화당 최각규	계			
강릉시	80,733	65,843	19,220	4,460	1,171	40,526	65,377	466	14,890	81.6

● 동해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형배	통일 민주당 이관형	평화 민주당 지일웅	신민주 공화당 이홍섭	무소속 홍희표				계
동해시	57,226	47,214	14,794	7,057	4,361	5,435	15,166	46,813	401	10,012	82.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태백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택기	통일 민주당 김진하	신민주 공화당 김호영	무소속 유승규	계			
태백시	67,957	55,803	18,637	2,758	9,080	24,864	55,339	464	12,154	82.1

● 명주군·양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문기	통일 민주당 함종빈	평화 민주당 정인수	신민주 공화당 최육철	계			
합 계	73,327	61,048	29,082	10,590	5,903	14,573	60,148	900	12,279	83.3
명주군	50,740	40,715	20,473	3,158	4,815	11,717	40,163	552	10,025	80.2
양양군	22,587	20,333	8,609	7,432	1,088	2,856	19,985	348	2,254	90.0

● 삼척시·삼척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정남	통일 민주당 김일동	평화 민주당 조복형	계			
합 계	69,751	57,820	26,520	29,253	1,267	57,040	780	11,931	82.9
삼척시	24,371	20,285	8,974	10,725	314	20,013	272	4,086	83.2
삼척군	45,380	37,535	17,546	18,528	953	37,027	508	7,845	82.7

● 흥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응선	통일 민주당 장원준	평화 민주당 이만연	신민주 공화당 조일현	한겨레 민주당 이정춘	무소속 황승모	계			
흥천군	56,373	45,933	19,648	7,090	1,522	8,667	1,458	6,882	45,267	666	10,440	81.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춘성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민섭	통일 민주당 이동희	신민주 공화당 박주성	계			
합 계	77,131	64,853	33,993	7,023	22,770	63,786	1,067	12,278	84.1
춘성군	32,849	27,352	16,194	3,451	7,206	26,851	501	5,497	83.3
양구군	18,572	15,610	8,732	2,000	4,659	15,391	219	2,962	84.1
인제군	25,710	21,891	9,067	1,572	10,905	21,544	347	3,819	85.1

● 횡성군·원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용대	통일 민주당 박경수	계			
합 계	73,371	60,729	29,541	29,766	59,307	1,422	12,642	82.8
횡성군	37,668	31,279	16,614	14,005	30,619	660	6,389	83.0
원주군	35,703	29,450	12,927	15,761	28,688	762	6,253	82.5

● 영월군·평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심명보	통 일 민주당 원성희	평 화 민주당 이상춘	신민주 공화당 엄만영	신 한 민주당 이수춘	무소속 김경래	계			
합 계	87,219	72,919	39,376	8,446	1,372	5,109	830	16,852	71,985	934	14,300	83.6
영월군	47,665	39,620	24,695	6,864	936	4,322	526	1,777	39,120	500	8,045	83.1
평창군	39,554	33,299	14,681	1,582	436	787	304	15,075	32,865	434	6,255	84.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정선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박우병	통 일 민주당 엄영달	평 화 민주당 안영배	신민주 공화당 정연승	한 국 국민당 전제웅	무소속 유돈대	계			
정선군	73,088	60,596	24,109	21,462	5,620	2,006	1,621	5,091	59,909	687	12,492	82.9

● 속초시·고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재철	통일 민주당 최정식	계			
합 계	71,919	59,533	27,297	31,395	58,692	841	12,386	82.8
속초시	43,002	35,208	14,966	19,768	34,734	474	7,794	81.9
고성군	28,917	24,325	12,331	11,627	23,958	367	4,592	84.1

● 철원군·화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재순	평화 민주당 김철배	신민주 공화당 이경희	무소속 박동일	계			
합 계	58,539	49,022	20,159	4,823	15,484	7,773	48,239	783	9,517	83.7
철원군	37,571	31,390	11,539	3,392	13,035	2,946	30,912	478	6,181	83.5
화천군	20,968	17,632	8,620	1,431	2,449	4,827	17,327	305	3,336	84.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충 청 북 도

● **청주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종택	통일 민주당 김현수	평화 민주당 이관복	신민주 공화당 김진영	계			
청주시갑	105,566	83,020	30,375	23,362	3,197	25,094	82,028	992	22,546	78.6

● **청주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조성훈	통일 민주당 정기호	평화 민주당 고영태	신민주 공화당 오용운	민중의당 김재수				계
청주시을	115,962	90,019	26,940	19,902	2,049	37,064	3,099	89,054	965	25,943	77.6

● **충주시·증원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선길	통일 민주당 윤대희	평화 민주당 유재홍	신민주 공화당 이종근	무소속 이택희				계
합 계	124,339	102,368	28,530	4,683	2,057	50,370	15,571	101,211	1,157	21,971	82.3
충주시	71,356	57,928	12,293	2,553	1,159	31,911	9,466	57,382	546	13,428	81.2
증원군	52,983	44,440	16,237	2,130	898	18,459	6,105	43,829	611	8,543	83.9

● **제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춘구	통일 민주당 김영준	신민주 공화당 황영태	계			
제천시	57,804	48,125	25,478	20,688	1,447	47,613	512	9,679	98.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청원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신경식	통일 민주당 박종진	평화 민주당 오윤수	신민주 공화당 윤석민				계
청원군	91,405	75,147	34,472	11,084	2,421	26,167	74,144	1,003	16,258	98.7

●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준병	통일 민주당 정희택	신민주 공화당 어준선				계
합 계	142,423	123,005	59,449	15,525	45,934	120,908	2,097	19,418	86.4
보은군	43,874	37,600	12,735	1,129	23,196	37,060	540	6,274	85.7
옥천군	49,786	44,105	28,356	2,085	12,851	43,292	813	5,681	88.6
영동군	48,763	41,300	18,358	12,311	9,887	40,556	744	7,463	84.7

● 괴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종호	신민주 공화당 고경수				계
괴산군	63,366	56,197	37,830	17,451	55,281	916	7,169	88.7

● 진천군·음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완태	신민주 공화당 이재철	무소속 허 탁				계
합 계	91,198	77,575	34,246	23,215	18,743	76,204	1,371	13,623	85.1
진천군	36,922	31,092	8,571	16,414	5,597	30,582	510	5,830	84.2
음성군	54,276	46,483	25,675	6,801	13,146	45,622	861	7,793	85.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제원군 · 단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안영기	통일 민주당 우창수	신민주 공화당 이범윤	신한민주당 김영호	계			
합 계	65,090	56,755	29,231	16,887	6,867	2,785	55,770	985	8,335	87.2
제원군	28,841	25,935	14,624	6,774	3,100	948	25,446	489	2,906	89.9
단양군	36,249	30,820	14,607	10,113	3,767	1,837	30,324	496	5,429	85.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충청남도

● 대전시 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남재두	통일 민주당 한영교	평화 민주당 송좌빈	신민주 공화당 김현	신한 민주당 송재호	우리 정의당 최옥중	무소속 오세철	계			
대전시 동구갑	86,961	68,343	23,577	6,885	8,774	26,182	843	288	1,209	67,758	585	18,618	78.6

● 대전시 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조병득	통일 민주당 송천영	평화 민주당 신동국	신민주 공화당 윤성한	한겨레 민주당 오원진	무소속 박완규	무소속 이석환	계			
대전시 동구을	125,032	91,892	15,547	23,913	6,695	37,594	1,857	3,862	1,607	91,075	817	33,140	73.5

● 대전시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강창희	통일 민주당 유동열	평화 민주당 신제철	신민주 공화당 김흥만	제3 세대당 민호기	무소속 유명규	무소속 이상열	계			
대전시 중구	165,465	131,108	33,728	3,104	3,554	87,925	717	401	665	130,094	1,014	34,357	79.2

● 대전시 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재환	통일 민주당 김태룡	평화 민주당 송석찬	신민주 공화당 박충순	한겨레 민주당 최병욱	계			
대전시 서구	136,852	104,113	24,305	30,805	8,880	37,862	1,456	103,308	805	32,739	76.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천안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성무용	통일 민주당 이승준	평화 민주당 조병현	신민주 공화당 정일영	계			
천안시	89,524	70,816	19,930	3,010	2,620	44,659	70,219	597	18,708	79.1

● 공주시 · 공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상재	통일 민주당 이종길	평화 민주당 윤완중	신민주 공화당 윤재기	민중의당 김용명				계
합 계	96,776	79,933	31,855	2,656	2,651	40,914	893	78,969	964	16,843	82.6
공주시	32,112	26,754	11,155	670	799	13,535	338	26,497	257	5,358	83.3
공주군	64,664	53,179	20,700	1,986	1,852	27,379	555	52,472	707	11,485	82.2

● 대천시 · 보령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대희	통일 민주당 김경두	평화 민주당 이시우	신민주 공화당 김용환	계			
합 계	87,070	68,826	20,147	4,295	4,483	39,072	67,997	829	18,244	79.0
대천시	30,738	24,172	5,447	1,351	2,098	15,045	23,941	231	6,566	78.6
보령군	56,332	44,654	14,700	2,944	2,385	24,027	44,056	598	11,678	79.3

● 온양시 · 아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세배	통일 민주당 황명수	평화 민주당 이진구	신민주 공화당 유인명	한주의통일 한국당 최정환				계
합 계	99,749	79,589	29,695	37,233	2,748	8,376	588	78,640	949	20,160	79.8
온양시	34,964	27,909	9,043	15,387	1,142	1,954	131	27,657	252	7,055	79.8
아산군	64,785	51,680	20,652	21,846	1,606	6,422	457	50,983	697	13,105	79.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금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장관정	통 일 민주당 김정신	신민주 공화당 정태영	한겨레 민주당 박찬중	우 리 정의당 인창원	무소속 유한열	계			
금산군	57,487	46,526	11,902	2,433	13,831	1,707	996	14,922	45,791	735	10,961	80.9

● 대덕군·연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천영성	통일 민주당 박희부	평화 민주당 임창수	신민주 공화당 이인구	한겨레 민주당 김준희	계			
합 계	110,398	88,411	16,170	17,894	2,198	49,114	2,051	87,427	984	21,987	80.1
대덕군	50,813	40,399	8,066	3,532	977	26,854	551	39,980	419	10,414	79.5
연기군	59,585	48,012	8,104	14,362	1,221	22,260	1,500	47,447	565	11,573	80.6

● 논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범명	통일 민주당 김한수	평화 민주당 김형중	신민주 공화당 김제태	한겨레 민주당 박우석				계
논산군	116,272	90,223	32,668	7,544	4,140	41,414	3,273	89,039	1,184	26,049	77.6

● 부여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임두빈	통일 민주당 김택수	신민주 공화당 김종필	계			
부여군	83,540	66,667	10,009	1,926	53,967	65,902	765	16,873	79.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서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금규	신민주 공화당 조중연	한국 국민당 장현관	무소속 김옥선	무소속 신정철	계			
서천군	65,239	52,414	21,838	19,353	1,406	8,715	403	51,715	699	12,825	80.3

● 청양군·홍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종관	통일 민주당 복진풍	신민주 공화당 조부영	무소속 홍문표	계			
합 계	111,394	89,555	26,865	11,991	43,511	5,972	88,339	1,216	21,839	80.4
청양군	38,539	30,913	9,648	6,077	13,163	1,606	30,494	419	7,626	98.6
홍성군	72,855	58,642	17,217	5,914	30,348	4,366	57,845	797	14,213	98.6

● 예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성기범	통일 민주당 김성식	평화 민주당 장동찬	신민주 공화당 박병선	신한 민주당 이우성	계			
예산군	81,968	63,862	21,419	12,366	2,034	26,064	1,066	62,949	913	18,106	77.9

● 서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유근환	통일 민주당 박태권	평화 민주당 장경순	신민주 공화당 박성호	신한 민주당 서희종	무소속 류영래	계			
서산군	138,977	107,727	35,148	36,311	2,732	28,189	997	3,097	106,474	1,253	31,250	77.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당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현욱	통일 민주당 박준호	신민주 공화당 송영진	제3세대당 고영석	계			
당진군	83,752	67,063	31,744	2,463	29,089	2,947	66,243	820	16,689	80.1

● 천원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선호	통일 민주당 박동인	평화 민주당 황규영	신민주 공화당 김종식	무소속 정재원				계
천원군	67,165	53,526	17,072	5,955	2,364	25,497	1,992	52,880	646	13,639	79.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전라북도

● 전주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임방현	통일 민주당 김동진	평화 민주당 오 탄	무소속 유훈근	계			
전주시갑	139,137	105,998	19,550	1,468	75,419	8,261	104,698	1,300	33,139	76.2

● 전주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태기표	통일 민주당 이강선	평화 민주당 손주향	신한 민주당 이철승	한겨레 민주당 임인철				계
전주시을	135,067	102,716	11,310	1,078	78,890	9,918	636	101,832	884	32,351	76.0

● 군산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고 건	통일 민주당 이대우	평화 민주당 채영석	신민주 공화당 신동안				계
군산시	101,622	80,255	28,118	1,712	48,182	1,083	79,095	1,160	21,367	79.0

● 이리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공천섭	통일 민주당 김병국	평화 민주당 이 협	한겨레 민주당 박경철				계
이리시	109,921	89,930	25,626	1,708	61,369	435	89,138	792	19,991	81.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정주시 · 정읍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임철수	통 일 민주당 은종숙	평 화 민주당 김원기	신민주 공화당 유종기	신 한 민주당 유갑종	무소속 임희동	무소속 정태진				계
합 계	115,006	91,749	25,311	1,015	58,276	513	2,327	1,244	1,951	90,637	1,112	23,257	79.8
정주시	43,560	35,265	9,220	256	23,482	189		553	378	34,944	321	8,295	81.0
정읍군	71,446	56,484	16,091	759	34,794	324		691	1,573	55,693	791	14,962	79.1

● 남원시 · 남원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양창식	평화 민주당 조찬형	무소속 김병수	계			
합 계	78,873	65,022	19,806	38,912	5,217	63,935	1,087	13,851	82.4
남원시	31,020	25,739	6,996	16,122	2,298	25,416	323	5,281	83.0
남원군	47,853	39,283	12,810	22,790	2,919	38,519	764	8,570	82.1

● 완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유기정	통일 민주당 이평구	평화 민주당 김태식	계			
완주군	70,600	56,291	17,819	2,075	35,605	55,499	792	14,309	79.7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전병우	평화 민주당 이상욱	신민주 공화당 최규홍	계			
합 계	89,829	76,220	29,901	43,761	1,173	74,835	1,385	13,609	84.9
진안군	36,393	30,698	12,567	17,357	240	30,164	534	5,695	84.4
무주군	26,514	23,052	10,187	12,122	346	22,655	397	3,462	86.9
장수군	26,922	22,470	7,147	14,282	587	22,016	454	4,452	83.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임실군·순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최낙철	평화 민주당 홍영기	신민주 공화당 권영의	한겨레 민주당 신 호	계			
합 계	76,434	62,976	24,226	33,114	3,783	693	61,816	1,160	13,458	82.4
임실군	41,466	33,629	14,900	16,565	1,251	289	33,005	624	7,837	81.1
순창군	34,968	29,347	9,326	16,549	2,532	404	28,811	536	5,621	83.9

● 고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호종	통일 민주당 정재길	평화 민주당 정균환	무소속 노동채				
고창군	71,420	58,281	13,159	2,421	31,188	10,657	57,425	856	13,139	81.6

● 부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최규환	통일 민주당 홍순철	평화 민주당 이희천	신민주 공화당 김 손	무소속 이재환				
부안군	68,590	54,492	16,735	744	34,256	1,028	983	53,746	746	14,098	79.4

● 김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조철권	통 일 민주당 박형철	평 화 민주당 최락도	신민주 공화당 오민수	신 한 민주당 최규정	무소속 이창렬				
김제군	104,643	84,419	26,215	605	41,776	703	560	13,594	83,453	966	20,224	80.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옥구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원형연	통일 민주당 고희곤	평화 민주당 김봉욱	신민주 공화당 최지신	한겨레 민주당 두병우	계			
옥구군	59,417	48,728	14,816	623	26,376	4,772	1,472	48,059	669	10,689	82.0

● 익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조남조	평화 민주당 김득수	신민주 공화당 이승홍	신한 민주당 조성준	무소속 오승엽	계			
익산군	79,649	63,728	22,919	24,421	12,341	568	2,653	62,902	826	15,921	80.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전 라 남 도

● 목포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최영철	통일 민주당 배종덕	평화 민주당 권노갑	무소속 안 철	무소속 차남륜	계			
목포시	128,261	105,063	14,568	593	87,735	684	618	104,198	865	23,198	81.9

● 여수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선규	통일 민주당 김인수	평화 민주당 김충조	계			
여수시	99,706	77,799	12,915	894	63,360	77,169	630	21,907	78.0

● 순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윤상철	통일 민주당 박강근	평화 민주당 허경만	신민주 공화당 김천석	한겨레 민주당 이기우				계
순천시	75,095	60,430	7,980	987	46,629	4,110	276	59,982	448	14,665	80.5

● 나주시 · 나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한갑수	평화 민주당 이재근	무소속 김장근	계			
합 계	96,940	78,145	15,092	57,451	4,083	76,626	1,519	18,795	80.6
나주시	26,799	22,369	4,401	16,830	803	22,034	335	4,430	83.5
나주군	70,141	55,776	10,691	40,621	3,280	54,592	1,184	14,365	79.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여천시 · 여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황하택	통일 민주당 신장호	평화 민주당 신순범	계			
합 계	86,823	67,527	13,878	2,918	49,723	66,519	1,008	19,296	77.8
여천시	31,941	24,354	3,920	1,268	18,815	24,003	351	7,587	76.2
여천군	54,882	43,173	9,958	1,650	30,908	42,516	657	11,709	78.7

● 담양군 · 장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용훈	통일 민주당 김영석	평화 민주당 김길곤	신민주 공화당 김재식	한주의통 일한국당 김사석	무소속 백상규	계			
합 계	98,725	80,402	15,834	1,172	54,430	2,795	366	4,842	79,439	963	18,323	81.4
담양군	50,666	42,113	9,715	406	29,651	705	228	864	41,569	544	8,553	83.1
장성군	48,059	38,289	6,119	766	24,779	2,090	138	3,978	37,870	419	9,770	89.7

● 곡성군 · 화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구용상	평화 민주당 홍기훈	신민주 공화당 기대웅	한주의통 일한국당 양동희	계			
합 계	93,311	76,809	16,174	56,582	1,739	1,140	75,635	1,174	16,502	82.3
곡성군	36,625	30,631	7,489	21,327	1,034	286	30,136	495	5,994	83.6
화순군	56,686	46,178	8,685	35,255	705	854	45,499	679	10,508	81.5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구례군·승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유경현	평화 민주당 조순승	계			
합 계	90,130	70,886	16,306	53,103	69,409	1,477	19,244	78.6
구례군	29,806	24,054	5,865	17,656	23,521	533	5,752	80.7
승주군	60,324	46,832	10,441	35,447	45,888	944	13,492	77.6

● 광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종호	통일 민주당 김현옥	평화 민주당 이돈만	신민주 공화당 김형주	한겨레 민주당 이익노				계
광양군	64,759	52,258	18,104	1,259	29,223	2,531	657	51,774	484	12,501	80.7

● 고흥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대순	평화 민주당 박상천	신민주 공화당 최성희	신한민주당 송점진				계
고흥군	99,907	80,373	23,768	54,513	882	338	79,501	872	19,534	84.0

● 보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용식	평화 민주당 유준상	계			
보성군	66,062	52,426	17,523	34,071	51,594	832	13,636	79.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장흥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성준	통일 민주당 강신만	평화 민주당 이영권	계			
장흥군	51,770	42,443	11,109	711	30,060	41,880	563	9,327	82.0

● 강진군·완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 식	통일 민주당 김석영	평화 민주당 김영진	무소속 이선동	계			
합 계	109,028	87,628	22,305	1,352	35,065	27,925	86,647	981	21,400	80.4
강진군	46,037	37,326	10,264	743	23,226	2,702	36,935	391	8,711	81.1
완도군	62,991	50,302	12,041	609	11,839	25,223	49,712	590	12,689	79.9

● 해남군·진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시채	평 화 민주당 김봉호	신민주 공화당 성관실	한겨레 민주당 양동주	무소속 박영상	무소속 임영득	계			
합 계	128,684	105,990	25,302	65,937	636	486	2,884	9,319	104,564	1,426	22,694	82.4
해남군	87,380	72,012	11,470	50,443	458	387	555	7,711	71,024	988	15,368	82.4
진도군	41,304	33,978	13,832	15,494	178	99	2,329	1,608	33,540	438	7,326	82.3

● 영암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환의	평화 민주당 유인학	신민주 공화당 황규돈	계			
영암군	53,568	44,999	13,517	30,389	393	44,299	700	8,569	84.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무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노인옥	평화 민주당 박석무	신민주 공화당 윤무중	한겨레 민주당 이재욱	계			
무안군	58,814	47,826	10,945	34,220	783	1,355	47,303	523	10,988	81.3

● 함평군·영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조기상	평화 민주당 서경원	신민주 공화당 최주경	계			
합 계	111,644	87,445	19,826	64,220	1,818	85,864	1,581	24,199	78.3
함평군	47,875	36,863	5,465	30,344	484	36,293	570	11,012	77.0
영광군	63,769	50,582	14,361	33,876	1,334	49,571	1,011	13,187	79.3

● 신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복수	한겨레 민주당 박형오	계			
신안군	62,257	47,277	9,827	34,162	43,989	3,288	14,980	75.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상 북 도

● 포항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이진우	통 일 민주당 최수환	신민주 공화당 이성수	신 한 민주당 이진택	한겨레 민주당 김병구	무소속 이성석	계			
포항시	168,833	138,259	59,433	21,105	46,245	1,360	5,843	2,738	136,724	1,535	30,574	81.9

● 경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김일윤	통 일 민주당 김양호	평 화 민주당 이상두	신민주 공화당 임진출	무소속 박광도	무소속 백수근	무소속 정강주				계
경주시	79,158	65,213	25,400	13,230	1,088	20,333	874	2,772	962	64,659	554	13,945	82.4

● 김천시·금릉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박정수	통 일 민주당 박희동	평 화 민주당 정정문	신민주 공화당 조석환	계			
합 계	102,200	85,761	54,067	20,922	2,957	6,651	84,597	1,164	16,439	83.9
김천시	46,553	37,554	23,002	9,588	1,521	3,027	37,138	416	8,979	80.7
금릉군	55,667	48,207	31,065	11,334	1,436	3,624	47,459	748	7,460	86.6

● 안동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정의당 권중동	통 일 민주당 오경의	한겨레 민주당 김노식	사 회 민주당 김성현	계			
안동시	65,251	52,864	21,854	23,258	6,545	705	52,362	502	12,387	81.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구미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재홍	통일 민주당 박도태	신민주 공화당 박준홍	계			
구미시	89,850	70,244	31,481	8,831	29,198	69,510	734	19,606	78.2

● 영주시·영풍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진영	신민주 공화당 전우창	무소속 김창근	계			
합 계	94,534	79,462	39,354	4,687	34,367	78,408	1,054	15,072	84.1
영주시	48,956	41,473	18,841	2,458	19,777	41,076	397	7,483	84.7
영풍군	45,578	37,989	20,513	2,229	14,590	37,332	657	7,589	83.3

● 영천시·영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동윤	통일 민주당 권오태	평화 민주당 조병환	계			
합 계	87,787	73,477	37,237	33,715	1,511	72,463	1,014	14,310	83.7
영천시	29,358	24,733	11,961	11,871	593	24,425	308	4,625	84.2
영천군	58,429	48,744	25,276	21,844	918	48,038	706	9,685	83.4

● 상주시·상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근수	통일 민주당 이재욱	무소속 정휘동	계			
합 계	106,089	90,347	46,141	22,686	20,034	88,861	1,486	15,742	85.2
상주시	33,121	27,430	14,799	7,332	4,971	27,102	328	5,691	82.8
상주군	72,968	62,917	31,342	15,354	15,063	61,759	1,158	10,051	86.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점촌시 · 문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영화	통일 민주당 신영국	신민주 공화당 고목훈	계			
합 계	78,623	66,184	27,474	28,177	9,434	65,085	1,099	12,439	84.2
점촌시	29,612	24,387	10,312	10,590	3,211	24,113	274	5,225	82.4
문경군	49,011	41,797	17,162	17,587	6,223	40,972	825	7,214	85.3

● 달성군 · 고령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용택	통일 민주당 배영수	신민주 공화당 구자춘	계			
합 계	86,315	71,352	29,154	5,346	35,818	70,318	1,034	14,963	82.7
달성군	57,706	47,229	18,845	3,217	24,460	46,522	707	10,477	81.8
고령군	28,609	24,123	10,309	2,129	11,358	23,796	327	4,486	84.3

● 군위군 · 선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윤환	통일 민주당 윤창한	무소속 구문장	계			
합 계	73,492	67,452	50,692	7,689	8,171	66,552	900	6,040	91.8
군위군	29,187	25,797	17,216	3,568	4,616	25,400	397	3,390	88.4
선산군	44,305	41,655	33,476	4,121	3,555	41,152	503	2,650	94.0

● 의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창화	통일 민주당 양재범	신민주 공화당 김상윤	계			
의성군	78,144	67,259	38,345	4,475	23,464	66,284	975	10,885	86.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안동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류돈우	통일 민주당 정석교	평화 민주당 김재환	신민주 공화당 김시명	무소속 박해충	계			
안동군	68,249	57,480	29,230	4,729	1,212	12,860	8,544	56,575	905	10,769	84.2

● 청송군·영덕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황병우	통일 민주당 김찬우	신민주 공화당 남상걸	제3세대당 박종욱				계
합 계	80,852	69,205	30,440	29,992	6,315	1,588	68,335	870	11,647	85.6
청송군	33,509	29,423	18,911	5,099	3,945	1,145	29,100	323	4,086	87.8
영덕군	47,343	39,782	11,529	24,893	2,370	443	39,235	547	7,561	84.0

● 영양군·봉화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오한구	통일 민주당 김경기	평화 민주당 유상기	계			
합 계	70,350	60,990	35,536	20,569	3,786	59,891	1,099	9,360	86.7
영양군	24,797	21,124	11,953	6,180	2,631	20,764	360	3,673	85.2
봉화군	45,553	39,866	23,583	14,389	1,155	39,127	739	5,687	87.5

● 영일군·울릉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상득	통일 민주당 박기환	무소속 서종열	계			
합 계	116,913	94,143	47,795	25,652	19,051	92,498	1,645	22,770	80.5
영일군	107,134	85,891	42,337	24,118	17,880	84,335	1,556	21,243	80.2
울릉군	9,779	8,252	5,458	1,534	1,171	8,163	89	1,527	84.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월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황윤기	통일 민주당 심봉섭	계			
월성군	93,347	76,214	42,661	32,381	75,042	1,172	17,133	81.6

● 경산군·청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재욱	통일 민주당 박정규	신민주 공화당 이재연	계			
합 계	132,694	106,382	41,719	21,362	41,827	104,908	1,474	26,312	80.2
경산군	85,161	67,896	27,506	8,330	31,254	67,090	806	17,265	79.7
청도군	47,533	38,486	14,213	13,032	10,573	37,818	668	9,047	81.0

● 성주군·칠곡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장영철	통일 민주당 김창환	계			
합 계	94,305	79,840	44,539	33,868	78,407	1,433	14,465	84.7
성주군	42,458	35,788	14,267	20,787	35,054	734	6,670	84.3
칠곡군	51,847	44,052	30,272	13,081	43,353	699	7,795	85.0

● 예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유학성	통일 민주당 반형식	신민주 공화당 황병호	계			
예천군	59,984	50,306	31,196	12,179	6,090	49,465	841	9,678	83.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울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중권	통일 민주당 황지성	평화 민주당 장소택	신민주 공화당 최순열	무소속 이동일	계			
울진군	52,604	43,444	23,484	8,336	3,370	3,755	3,924	42,869	575	9,160	82.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상 남 도

● 창원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이규호	통 일 민주당 황낙주	평 화 민주당 김기수	한겨레 민주당 이두한	무소속 김종하	무소속 손정만	무소속 엄판호				계
창원시	133,770	107,827	34,454	38,134	2,831	1,989	25,176	1,593	2,843	107,020	807	25,943	80.6

● 울산시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태호	신민주 공화당 이철수	민중의당 최영준	계			
울산시 중 구	139,313	94,872	46,532	36,716	10,276	93,524	1,348	44,441	68.1

● 울산시 남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차수명	통 일 민주당 심원구	신민주 공화당 이 북	한겨레 민주당 백기환	계			
울산시 남 구	133,228	102,960	36,935	46,210	16,887	2,175	102,207	753	30,268	77.3

● 울산시 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고찬수	통 일 민주당 신현창	평 화 민주당 정천석	무소속 김진국	무소속 정몽준				계
울산시 동 구	92,376	74,535	3,122	4,520	3,524	22,641	40,253	74,060	475	17,841	80.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마산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우병규	통일 민주당 백찬기	신민주 공화당 김호일	계			
마산시갑	128,814	101,260	24,507	48,194	27,648	100,349	911	27,554	78.6

● 마산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김주호	통 일 민주당 강삼재	평 화 민주당 김창원	신민주 공화당 박경환	한겨레 민주당 신건욱	무소속 박홍기	계			
마산시을	130,779	100,645	30,751	54,067	2,156	8,087	2,975	1,848	99,884	761	30,134	77.0

● 진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하순봉	통일 민주당 조만후	평화 민주당 최조환	무소속 강일만	무소속 이위태	계			
진주시	130,824	105,660	42,165	50,192	843	2,916	8,613	104,729	931	25,164	80.8

● 진해시·의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배명국	통일 민주당 박재규	신민주 공화당 조기석	민중의당 임수태				계
합 계	130,167	106,044	43,645	48,709	6,932	5,776	105,062	982	24,123	81.5
진해시	76,839	64,377	27,637	28,423	5,401	2,398	63,859	518	12,462	83.8
의창군	53,328	41,667	16,008	20,286	1,531	3,378	41,203	464	11,661	78.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충무시·통영군·고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정의당 정순덕	통일민주당 김동욱	신민주공화당 박청정	한겨레민주당 제정훈	계			
합계	142,961	114,006	54,366	50,196	3,438	4,735	112,735	1,271	28,955	79.7
충무시	53,248	42,900	19,156	21,814	1,234	359	42,563	337	10,348	80.6
통영군	35,728	28,329	14,802	11,277	1,498	421	27,998	331	7,399	79.3
고성군	53,985	42,777	20,408	17,105	706	3,955	42,174	603	11,208	79.2

● 삼천포시·사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정의당 황성균	통일민주당 이상민	신민주공화당 최방광	한겨레민주당 유홍재	제3세대당 이순근	계			
합계	79,254	65,258	34,346	26,119	1,793	790	1,383	64,431	827	13,996	82.3
삼천포시	38,900	31,489	12,961	16,696	669	273	570	31,169	320	7,411	80.9
사천군	40,354	33,769	21,385	9,423	1,124	517	813	33,262	507	6,585	83.7

● 김해시·김해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정의당 이학봉	통일민주당 류신현	평화민주당 오세호	신민주공화당 배정일	신한민주당 김정봉	제3세대당 홍의표	무소속 신원식	계			
합계	115,507	91,986	38,020	27,322	1,996	4,044	1,503	1,804	16,403	91,092	894	23,521	79.6
김해시	50,809	39,991	13,083	11,567	1,230	2,049	888	1,059	9,788	39,664	327	10,818	78.7
김해군	64,698	51,995	24,937	15,755	766	1,995	615	745	6,615	51,428	567	12,703	80.4

● 진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정의당 안병규	통일민주당 김재천	신민주공화당 이찬석	계			
진양군	55,618	46,844	19,005	18,796	8,349	46,150	694	8,774	84.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의령군·함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정동호	통일 민주당 조홍래	신민주 공화당 조일제	계			
합 계	84,317	71,216	34,861	21,895	13,564	70,320	896	13,101	84.5
의령군	34,486	29,334	20,351	5,793	2,785	28,929	405	5,152	85.1
함안군	49,831	41,882	14,510	16,102	10,779	41,391	491	7,949	84.0

● 창녕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신재기	통일 민주당 박상곤	평화 민주당 김정수	신민주 공화당 윤석현	한겨레 민주당 하정구				계
창녕군	63,999	50,945	26,688	11,885	2,108	7,308	2,368	50,357	588	13,054	79.6

● 밀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신상식	통일 민주당 박 일	평화 민주당 이태권	신민주 공화당 박희선	한겨레 민주당 손명석				계
밀양군	92,954	75,092	37,392	22,879	1,500	11,282	1,170	74,223	869	17,862	80.8

● 양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나오연	통일 민주당 김동주	계			
양산군	92,109	76,128	36,604	38,537	75,141	987	15,981	82.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울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진구	통일 민주당 신기섭	신민주 공화당 김원규	무소속 권기술	계			
울주군	81,582	66,023	26,177	9,141	13,303	16,601	65,222	801	15,559	80.9

● 거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반성우	통일 민주당 김봉조	평화 민주당 윤병한	계			
거제군	92,853	72,843	21,605	47,608	2,951	72,164	679	20,010	78.4

● 남해군·하동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박희태	통일 민주당 문부식	신민주 공화당 한춘기	민중의당 김두관	계			
합 계	106,056	88,673	46,381	36,990	1,418	2,830	87,619	1,054	17,383	83.6
남해군	55,148	47,194	35,340	8,588	273	2,501	46,702	492	7,954	85.6
하동군	50,908	41,479	11,041	28,402	1,145	329	40,917	562	9,429	81.5

● 산청군·함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노인환	통일 민주당 김진권	신민주 공화당 임채홍	무소속 정영모	무소속 하상영	계			
합 계	79,967	67,160	27,598	12,185	17,117	6,027	3,226	66,153	1,007	12,807	84.0
산청군	38,908	31,984	12,468	8,703	4,697	4,923	752	31,543	441	6,924	82.2
함양군	41,059	35,176	15,130	3,482	12,420	1,104	2,474	34,610	566	5,883	85.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거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곽후섭	통일 민주당 김동영	계			
거창군	55,220	47,079	18,473	27,513	45,986	1,093	8,141	85.3

● 합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권해욱	통일 민주당 안경률	신민주 공화당 이재복	신한 민주당 강석정	무소속 진종한	계			
합천군	60,879	49,049	23,219	7,391	3,412	7,365	6,897	48,284	765	11,830	80.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제 주 도

● 제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현경대	통일 민주당 김성범	평화 민주당 강종호	신민주 공화당 신두완	무소속 고세진	계			
제주시	118,847	95,528	31,720	13,621	7,913	2,172	39,239	94,665	863	23,319	80.4

● 북제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양정규	통일 민주당 강봉찬	평화 민주당 이양화	신민주 공화당 강창호	무소속 이기빈	계			
북제주군	65,060	55,156	17,077	5,141	1,952	5,672	24,441	54,283	873	9,904	84.8

● 서귀포시·남제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정의당 강지순	통일 민주당 강보성	평화 민주당 김홍수	계			
합 계	99,782	83,663	34,518	43,885	3,922	82,325	1,338	16,119	83.8
서귀포시	48,219	40,645	16,127	22,300	1,684	40,111	534	7,574	84.3
남제주군	51,563	43,018	18,391	21,585	2,238	42,214	804	8,545	83.4

4.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별 득표상황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서울특별시

● 종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종찬	민주당 김경재	통일국민당 이내흔	신정당 심재섭	무소속 신두완	무소속 윤인식	무소속 정인봉	계			
종로구	165,877	117,403	41,208	29,820	28,336	839	418	409	15,127	116,157	1,246	48,474	70.8

●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장기홍	민주당 정대철	신정당 진성범	계			
중 구	129,783	88,849	36,944	46,810	4,027	87,781	1,068	40,934	68.5

● 용산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서정화	민주당 한영애	통일국민당 봉두완	신정당 김동주	무소속 설송웅	무소속 엄금자	무소속 정한성				계
용산구	205,488	141,808	49,977	39,556	32,177	3,733	12,802	996	927	140,168	1,640	63,680	69.0

● 성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세기	민주당 강금식	통일국민당 박병호	신정당 김옥선	민중당 김철수	무소속 한상필	계			
성동구갑	169,627	118,693	52,922	40,027	10,849	6,996	5,701	941	117,436	1,257	50,934	70.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성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도현	민주당 조세형	통일국민당 설영주	계			
성동구을	169,206	111,543	38,454	52,833	18,893	110,180	1,363	57,663	65.9

● 성동구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용만	민주당 강수림	통일국민당 최운상	신정당 이기수	민중당 유윤석	계			
성동구병	199,765	133,845	40,774	47,063	36,284	4,008	4,442	132,571	1,274	65,920	67.0

● 동대문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노승우	민주당 최 훈	통일국민당 유종열	신정당 송차갑	공명민주당 정재복	무소속 곽병기	무소속 문승국	무소속 윤 용				계
동대문구갑	168,961	114,514	35,587	34,710	25,486	2,188	301	1,002	1,564	12,489	113,327	1,187	54,447	67.8

● 동대문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소속 고달준	계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영구	민주당 고광진	통일국민당 윤금중	신정당 박상일	무소속 고달준					
동대문구을	164,004	115,540	49,700	46,962	13,069	3,188	(등록무효)	112,919	2,621	48,464	70.4	

● 종랑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순재	민주당 이상수	통일국민당 김상두	계			
종랑구갑	131,497	96,112	46,297	42,530	6,202	95,029	1,083	35,385	73.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중랑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충일	민주당 김덕규	통일국민당 강병진	계			
중랑구을	171,204	117,195	41,504	51,368	23,066	115,938	1,257	54,009	68.5

● 성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정래	민주당 이 철	통일국민당 유인현	신정당 송영기				계
성북구갑	186,008	125,490	43,846	61,719	14,243	4,354	124,162	1,328	60,518	67.5

● 성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성재	민주당 신계륜	통일국민당 이필선	신정당 송수강				계
성북구을	187,639	128,486	44,999	52,935	25,661	3,423	127,018	1,468	59,153	68.5

● 도봉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신오철	민주당 유인태	통일국민당 한호상	신정당 윤응순	무소속 김종윤	무소속 박영철	무소속 조성국				계
도봉구갑	177,153	120,049	37,838	48,603	23,766	2,670	1,631	1,166	3,216	118,890	1,159	57,104	67.8

● 도봉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규원	민주당 김원길	통일국민당 김충섭	신정당 조수휘	무소속 박종애	무소속 소순관	무소속 이철용				계
도봉구을	153,596	104,867	32,336	39,749	14,638	2,423	1,489	2,401	10,546	103,582	1,285	48,729	68.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도봉구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양경자	민주당 조순형	통일국민당 송태희	신정당 유 양	계			
도봉구병	174,214	118,266	36,270	51,866	24,924	3,968	117,028	1,238	55,948	67.9

● 노원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백남치	민주당 고영하	통일국민당 박병일	계			
노원구갑	181,137	123,116	42,487	40,517	38,684	121,688	1,428	58,021	68.0

● 노원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용채	민주당 임채정	통일국민당 홍성우	신정당 전대열	무소속 오세철	무소속 장성욱	계			
노원구을	174,554	124,292	40,551	40,515	29,621	2,589	9,181	743	123,200	1,092	50,262	71.2

※ 선거소송으로 법원의 투표지 검증결과 임채정 후보 40,602표, 김용채 후보 40,433표로 확인되어 임채정 후보가 최종 당선됨.

● 은평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오유방	민주당 손세일	통일국민당 임인채	무소속 나강수	계			
은평구갑	156,231	107,599	38,759	42,361	19,105	6,285	106,510	1,089	48,632	68.9

● 은평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완일	민주당 이원형	통일국민당 노양학	신정당 김진택	민중당 이재오	계			
은평구을	182,048	126,009	36,547	40,806	22,506	3,026	21,716	124,601	1,408	56,039	69.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서대문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성모	민주당 김상현	통일국민당 류갑종	계			
서대문구갑	134,548	94,789	37,843	42,591	13,178	93,612	1,177	39,759	70.4

● 서대문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안성혁	민주당 임춘원	통일국민당 이근봉	계			
서대문구을	140,426	96,258	37,124	40,762	17,212	95,098	1,160	44,168	68.5

● 마포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명환	민주당 김용술	통일국민당 김재영	신정당 김경민	무소속 고명관	무소속 진영환				계
마포구갑	144,540	97,222	39,098	31,437	17,716	5,137	1,622	1,125	96,135	1,087	47,318	67.3

● 마포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주천	민주당 김현규	통일국민당 장덕환	신정당 이익균	계			
마포구을	162,564	114,183	48,057	42,988	19,524	2,464	113,033	1,150	48,381	70.2

● 양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범진	민주당 양성우	통일국민당 박수복	신정당 정호근				계
양천구갑	156,548	111,150	41,369	34,005	29,008	5,864	110,246	904	45,398	71.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양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후집	민주당 김영배	통일국민당 고병현	계			
양천구을	170,883	117,131	44,857	50,262	20,766	115,885	1,246	53,752	68.5

● 강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원종	민주당 박계동	통일국민당 유영	신정당 진형욱	무소속 이상락	계			
강서구갑	137,179	95,650	30,658	32,190	27,176	2,146	2,700	94,870	780	41,529	69.7

● 강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남재희	민주당 최두환	통일국민당 박한상	신정당 이경표	무소속 김인식	무소속 김재현	계			
강서구을	130,563	88,847	26,356	27,699	19,789	5,844	3,397	5,004	88,089	758	41,716	68.0

● 구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기배	민주당 정병원	통일국민당 정순주	신정당 김기선	계			
구로구갑	149,486	103,770	36,319	30,555	30,082	5,751	102,707	1,063	45,716	69.4

● 구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유기수	민주당 이경재	통일국민당 나이균	민중당 이우재	무소속 류지효				계
구로구을	178,012	124,353	28,899	38,119	17,010	25,134	14,030	123,192	1,161	53,659	69.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구로구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신행	민주당 김병오	통일국민당 이홍배	민중당 김경은	무소속 문순덕	계			
구로구병	169,467	115,919	43,475	50,709	13,298	3,367	3,685	114,534	1,385	53,548	68.4

● 영등포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명섭	민주당 장석화	통일국민당 김수일	신정당 백 철	계			
영등포구갑	137,245	95,607	32,082	39,408	18,975	3,932	94,397	1,210	41,638	69.7

● 영등포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나웅배	민주당 김민석	통일국민당 유중현	민중당 나덕주	계			
영등포구을	175,365	118,800	48,411	48,151	16,637	4,360	117,559	1,241	56,565	67.7

● 동작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서청원	민주당 박문수	통일국민당 박원규	신정당 신나계	민중당 장기표				계
동작구갑	151,122	104,217	38,182	26,708	14,885	1,176	22,181	103,132	1,085	46,905	69.0

● 동작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유용태	민주당 박 실	통일국민당 김한길	계			
동작구을	147,850	103,843	38,494	41,869	22,424	102,787	1,056	44,007	70.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관악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우연	민주당 한광옥	무소속 이상현	무소속 정성일	계			
관악구갑	190,866	133,268	34,445	56,061	38,743	2,598	131,847	1,421	57,598	69.8

● 관악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수한	민주당 이해찬	통일국민당 권태오	신정당 이상열	민중당 류민용	무소속 박장식	무소속 이길범				계
관악구을	210,879	144,548	44,413	64,035	22,359	1,959	3,690	1,712	5,115	143,283	1,265	66,331	68.5

● 서초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종률	민주당 김호산	통일국민당 이충우	신정당 박찬중	계			
서초구갑	135,537	96,852	29,653	12,684	16,574	37,172	96,083	769	38,685	71.5

● 서초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덕룡	민주당 안동수	통일국민당 왕제광	신정당 정대균	무소속 김용갑				계
서초구을	136,498	98,168	31,051	30,459	10,229	4,101	21,497	97,337	831	38,330	71.9

● 강남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황병태	민주당 이중재	통일국민당 김동길	계			
강남구갑	163,297	119,245	35,907	27,876	54,568	118,351	894	44,052	73.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강남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만제	민주당 홍사덕	신정당 이신범	계			
강남구을	170,302	123,976	43,627	64,201	15,064	122,892	1,084	46,326	72.8

● 송파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우석	민주당 김희완	통일국민당 조순환	무소속 황한섭				계
송파구갑	220,449	152,755	47,513	48,962	50,941	4,137	151,553	1,202	67,694	69.3

● 송파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병태	민주당 김종완	통일국민당 김중태	신정당 김정호	무소속 고광철				계
송파구을	229,208	153,234	49,778	51,611	40,562	5,198	4,635	151,784	1,450	75,974	66.9

● 강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동규	민주당 이부영	통일국민당 정진길	무소속 황동현				계
강동구갑	186,258	129,918	34,134	49,646	29,583	15,545	128,908	1,010	56,340	69.8

● 강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중위	민주당 장충준	통일국민당 정 남	신정당 손은봉				계
강동구을	169,902	115,169	40,459	38,908	30,769	3,942	114,078	1,091	54,733	67.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부 산 직 할 시

●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상천	민주당 조상태	통일국민당 김광일	계			
중 구	54,955	40,736	25,131	3,700	11,483	40,314	422	14,219	74.1

● 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곽정출	민주당 최기복	통일국민당 임정남	신정당 신순기	계			
서 구	140,800	95,533	61,692	12,841	10,670	9,059	94,262	1,271	45,267	67.9

● 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허삼수	민주당 노무현	통일국민당 윤소년	무소속 박상욱	계			
동 구	126,440	95,233	59,894	30,397	2,506	1,447	94,244	989	31,207	75.3

● 영도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형오	민주당 김정길	신정당 이영희	무소속 노차태	무소속 윤석순	계			
영도구	138,912	101,474	41,922	25,492	3,096	18,922	11,967	101,399	1,075	36,438	73.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부산진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재문	민주당 이흥록	통일국민당 신현기	신정당 심상국	무소속 서종범	계			
부산진구갑	173,377	117,684	59,544	25,970	21,683	3,438	5,469	116,104	1,580	55,693	67.9

● 부산진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정수	민주당 황백현	민중당 김영수	계			
부산진구을	171,757	116,677	67,254	34,575	13,146	114,975	1,702	55,080	67.9

● 동래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관용	민주당 정인조	무소속 김상훈	계			
동래구갑	218,453	142,342	92,353	32,902	15,064	140,319	2,023	76,111	65.2

● 동래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형우	통일국민당 노경규	무소속 박순보	계			
동래구을	172,820	120,787	65,708	19,041	34,626	119,375	1,412	52,033	69.9

● 남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허재홍	민주당 송정섭	통일국민당 이영근	무소속 권현성	무소속 임기배				계
남구갑	178,055	127,677	57,117	10,839	40,508	12,111	5,821	126,396	1,281	50,378	71.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남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유흥수	민주당 손태인	무소속 권쌍현	계			
남구을	190,765	131,486	86,355	35,041	8,551	129,947	1,539	59,279	68.9

● 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문정수	민주당 안경률	통일국민당 김갑주	무소속 장성만			
북구갑	170,771	116,649	56,333	21,586	9,105	28,517	1,108	54,122	68.3

● 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신상우	민주당 배갑상	통일국민당 최윤기	신정당 백한기	민중당 윤도혁				계
북구을	150,516	98,396	53,728	22,822	13,934	(등록무효)	5,194	95,678	2,718	52,120	65.4

● 해운대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운환	민주당 최달웅	통일국민당 이병희	민중당 이동환				계
해운대구	174,364	119,375	61,013	33,267	13,434	10,198	117,912	1,463	54,989	68.5

● 사하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재국	민주당 김영백	통일국민당 유강열	신정당 홍순오	무소속 서석재	무소속 최용수				계
사하구	225,744	154,273	7,364	19,637	15,006	7,450	68,300	34,924	152,681	1,592	71,471	68.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금정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진재	민주당 김재규	통일국민당 박창종	공명민주당 문용한	민중당 김용규	무소속 노창동	무소속 채선수	계			
금정구	209,782	144,705	86,284	25,741	17,049	1,704	4,090	6,070	2,162	143,100	1,605	65,077	69.0

● 강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송두호	민주당 오세호	통일국민당 기우탁	무소속 안병해	무소속 윤만영	계			
강서구	55,163	39,964	21,119	3,514	3,639	4,129	6,982	39,383	581	15,199	72.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대구직할시

●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유수호	민주당 이강철	통일국민당 박양식	계			
중 구	93,739	64,182	29,625	12,122	21,454	63,201	981	29,557	68.5

● 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복동	민주당 임대운	통일국민당 최규태	신정당 윤창한				계
동구갑	138,727	93,192	54,557	11,763	20,613	5,095	92,028	1,164	45,535	67.2

● 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준규	민주당 도영화	통일국민당 서 훈	계			
동구을	104,451	70,954	35,083	5,139	29,843	70,065	889	33,497	67.9

● 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문희갑	민주당 백승홍	민중당 김현근	무소속 정호용				계
서구갑	133,591	98,936	26,763	16,795	3,938	50,533	98,029	907	34,655	74.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재섭	민주당 서중현	통일국민당 이종섭	무소속 김기석	계			
서구을	118,927	80,126	44,117	13,394	14,745	6,827	79,083	1,043	38,801	67.4

● 남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정무	민주당 김진태	통일국민당 김해석	신정당 성만현	계			
남 구	174,385	118,760	47,531	8,105	52,840	8,931	117,407	1,353	55,625	68.1

● 북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용태	민주당 정병철	통일국민당 송화섭	신정당 진원규	민중당 서상학	무소속 안경욱				계
북 구	205,757	130,380	60,107	12,637	37,383	7,462	4,457	6,333	128,379	2,001	75,377	63.4

● 수성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철언	민주당 권오선	통일국민당 이상희	무소속 박주철	계			
수성구갑	132,847	89,021	51,756	6,451	22,883	6,910	88,000	1,021	43,826	67.0

● 수성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치호	민주당 송효익	통일국민당 윤영탁	무소속 여동영	계			
수성구을	119,542	82,389	30,072	4,640	31,990	14,836	81,538	851	37,153	68.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달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한규	민주당 이상섭	통일국민당 임갑수	계			
달서구갑	130,569	81,040	39,132	16,257	24,529	79,918	1,122	49,529	62.1

● 달서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재욱	민주당 이광수	통일국민당 서병환	신정당 배재연				계
달서구을	119,479	71,785	35,616	7,029	20,360	7,944	70,949	836	47,694	60.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인천직할시

● 중구·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서정화	민주당 신용석	통일국민당 구자현	신정당 민만기	민중당 이원주	계			
합계	137,839	99,805	44,698	32,104	12,494	3,417	5,652	98,365	1,440	38,034	72.4
중구	57,255	40,888	18,718	13,215	5,074	1,479	1,883	40,369	519	16,367	71.4
동구	80,584	58,917	25,980	18,889	7,420	1,938	3,769	57,996	921	21,667	73.1

● 남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심정구	민주당 명화섭	통일국민당 정의성	신정당 성관실	공명민주당 장호진				계
남구갑	172,781	118,055	42,808	40,110	28,942	3,609	1,191	116,660	1,395	54,726	68.3

● 남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강희	민주당 하근수	통일국민당 김갑영	계			
남구을	145,858	100,916	39,010	42,203	18,539	99,752	1,164	44,942	69.2

● 남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우혁	민주당 이호웅	통일국민당 이원복	신정당 조의춘	민중당 박귀현				계
남동구	229,402	157,572	53,004	41,982	51,861	3,049	5,767	155,663	1,909	71,830	68.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정훈	민주당 송선근	통일국민당 이정대	신정당 이수일	민중당 전희식	무소속 조진형				계
북구갑	224,072	150,965	36,745	37,703	19,292	2,721	7,675	44,990	149,126	1,839	73,107	67.4

● 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승윤	민주당 이병현	통일국민당 김숙현	민중당 송경평	계			
북구을	227,012	146,751	49,455	42,657	31,271	21,299	144,682	2,069	80,261	64.6

● 서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영장	민주당 조철구	통일국민당 이현재	민중당 황선진	무소속 이기문				계
서 구	162,001	108,676	33,384	31,095	15,573	6,763	20,511	107,326	1,350	53,325	67.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광 주 직 할 시

● 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규범	민주당 신기하	통일국민당 윤재걸	민중당 황광우	무소속 이문옥	계			
동 구	116,094	83,293	4,043	51,804	2,712	1,267	22,731	82,557	736	32,801	71.7

● 서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영일	민주당 정상용	통일국민당 최운용	민중당 정봉희				계
서구갑	121,575	84,660	12,683	66,982	2,389	1,936	83,990	670	36,915	69.6

● 서구를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문준식	민주당 임복진	통일국민당 박행삼	민중당 김 결	무소속 강도석				계
서구를	161,851	109,785	7,430	91,736	3,984	3,178	2,482	108,810	975	52,066	67.8

● 북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지대섭	민주당 박광태	무소속 이관형	계			
북구갑	118,702	82,912	10,806	68,643	2,620	82,069	843	35,790	69.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북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차상록	민주당 이길재	통일국민당 조영전	무소속 김철희	계			
북구을	122,945	83,673	6,556	71,022	2,619	2,702	82,899	774	39,272	68.1

● 광산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용호	민주당 조흥규	통일국민당 김면중	민중당 조진태	무소속 손종규	무소속 이식재	계			
광산구	103,727	77,687	5,616	44,685	8,527	1,416	1,043	15,538	76,825	862	26,040	74.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대전직할시

● 동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남재두	민주당 김 현	통일국민당 이대형	무소속 송재호	계			
동구갑	110,228	78,430	37,860	18,003	16,936	4,661	77,460	970	31,798	71.2

● 동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윤성한	민주당 송천영	통일국민당 오윤배	신정당 김석기	공명민주당 김성욱	무소속 이선권	무소속 정구국				계
동구을	87,697	59,246	16,667	26,195	10,720	1,193	398	941	2,436	58,550	696	28,451	67.6

●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홍만	민주당 류인범	통일국민당 송두영	신정당 정희원	무소속 강창희	무소속 박종배	무소속 송재호	무소속 이선우				계
중 구	190,538	135,240	29,438	24,069	24,542	2,164	46,533	2,957	704	3,408	133,815	1,425	55,298	71.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서구·유성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충순	민주당 이희원	통일국민당 김태룡	신정당 류관석	무소속 박영문	무소속 윤태현	무소속 이재환	무소속 정길준	계			
합계	200,532	140,217	19,474	22,394	39,588	2,818	2,793	1,058	48,464	2,071	138,840	1,377	60,315	69.9
서구	156,941	109,710	15,671	17,753	30,780	2,050	2,379	572	37,746	1,712	108,663	1,047	47,231	69.9
유성구	43,591	30,507	3,803	4,641	8,808	768	594	486	10,718	359	30,177	330	13,084	70.0

● 대덕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인구	민주당 김원웅	통일국민당 구지윤	민중당 선재규	계			
대덕구	113,921	79,714	31,159	33,393	12,070	2,111	78,733	981	34,207	70.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기 도

● 수원시 권선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인영	민주당 김정태	통일국민당 이일구	신정당 김문병	민중당 이판돌	무소속 박지원	계			
수원시 권선구갑	124,092	82,282	23,842	22,919	13,133	1,245	4,332	15,854	81,325	957	41,810	66.3

● 수원시 권선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남평우	민주당 손 민	통일국민당 박왕식	계			
수원시 권선구을	107,702	71,541	25,526	22,523	22,650	70,699	842	36,161	66.4

● 수원시 장안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병희	민주당 박만원	통일국민당 이호정	계			
수원시 장안구	207,095	137,895	46,095	28,759	61,187	136,041	1,854	69,200	66.6

● 성남시 수정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대엽	민주당 이윤수	신정당 최상면	계			
성남시 수정구	182,085	122,313	55,013	58,727	7,194	120,934	1,379	59,772	67.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성남시 중원구 · 분당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오세응	민주당 조성준	통일국민당 이찬구	신정당 김기평	민중당 임동현	무소속 홍대원	계			
합 계	195,832	132,537	51,989	41,583	25,063	5,052	3,955	3,355	130,997	1,540	63,295	67.7
성남시 중원구	175,436	117,335	45,677	38,549	20,842	4,712	3,604	2,573	115,957	1,378	58,101	66.9
성남시 분당구	20,396	15,202	6,312	3,034	4,221	340	351	782	15,040	162	5,194	74.5

● 의정부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문원	민주당 문희상	통일국민당 목요상	계			
의정부시	150,235	105,142	38,580	40,171	25,152	103,903	1,239	45,093	70.0

● 안양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인제	민주당 이석용	통일국민당 박두철	신정당 김선배	민중당 송운학	계			
안양시갑	164,378	110,733	39,232	38,674	23,230	3,262	5,110	109,508	1,225	53,645	67.4

● 안양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신하철	민주당 이석현	통일국민당 김일주	공명민주당 이경호	무소속 안기석	계			
안양시을	157,717	107,538	28,603	39,146	34,109	1,649	3,035	106,542	996	50,179	68.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부천시 중구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길홍	민주당 안동선	신정당 이은재	민중당 신철영	계			
부천시 중구갑	119,198	77,947	26,300	39,082	4,505	7,002	76,889	1,058	41,251	65.4

● 부천시 중구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임무웅	민주당 원혜영	신정당 김재석	민중당 임동섭	무소속 한재희				계
부천시 중구을	110,369	70,653	22,985	36,608	2,407	3,582	4,170	69,752	901	39,716	64.0

● 부천시 남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기선	민주당 박규식	통일국민당 김정웅	신정당 한상운				계
부천시 남 구	217,496	147,589	50,077	69,625	19,288	7,031	146,021	1,568	69,907	67.9

● 광명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병용	민주당 최정택	통일국민당 윤항렬	신정당 김은배			
광명시	222,575	154,142	28,627	38,292	53,269	2,350	471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중당 유인렬	무소속 김성기	무소속 김재주	무소속 박인식	계			
14,505	930	13,147	913	152,504	1,638	68,433	69.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평택시 · 송탄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영광	민주당 장기천	통일국민당 조성진	계			
합 계	113,139	80,248	32,896	27,030	19,181	79,107	1,141	32,891	70.9
평택시	56,237	40,241	13,310	15,821	10,578	39,709	532	15,996	71.6
송탄시	56,902	40,007	19,586	11,209	8,603	39,398	609	16,895	70.3

● 동두천시 · 양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임사빈	민주당 김형광	통일국민당 김국환	신정당 윤근용	무소속 이성수	무소속 정진영	계			
합 계	103,869	78,407	35,911	32,310	5,798	690	1,142	1,533	77,384	1,023	25,462	75.5
동두천시	46,924	35,882	14,556	16,494	2,608	307	638	797	35,400	482	11,042	76.5
양주군	56,945	42,525	21,355	15,816	3,190	383	504	736	41,984	541	14,420	74.7

● 안산시 · 용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장경우	민주당 김동현	통일국민당 송진섭	민중당 전 성	무소속 장용열	계			
합 계	220,569	139,147	51,837	47,496	27,036	4,859	6,179	137,407	1,740	81,422	63.1
안산시	206,472	127,296	43,141	45,588	26,402	4,733	5,904	125,768	1,528	79,176	61.7
용진군	14,097	11,851	8,696	1,908	634	126	275	11,639	212	2,246	84.1

● 과천시 · 의왕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경목	민주당 이희숙	통일국민당 박제상	무소속 임승원				계
합 계	113,003	77,417	24,316	22,307	26,953	3,029	76,605	812	35,586	68.5
과천시	49,602	34,231	12,013	10,441	10,318	1,155	33,927	304	15,371	69.0
의왕시	63,401	43,186	12,303	11,866	16,635	1,874	42,678	508	20,215	68.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시흥시·군포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황철수	민주당 제정구	통일국민당 장학수	신정당 이강원	민중당 박재영	무소속 김종호	무소속 서정선	계			
합계	151,992	104,068	32,362	48,406	12,339	1,590	2,099	1,257	4,660	102,713	1,355	47,924	68.5
시흥시	81,289	55,327	18,195	27,092	6,302	650	657	808	711	54,415	912	25,962	68.1
군포시	70,703	48,741	14,167	21,314	6,037	940	1,442	449	3,949	48,298	443	21,962	68.9

● 구리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전용원	민주당 조정무	통일국민당 정주일	계			
구리시	81,382	57,522	18,142	12,900	25,751	56,793	729	23,860	70.7

● 미금시·남양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이성호	민주당 신동균	통일국민당 이용곤	민중당 전광표	계			
합계	137,152	93,835	36,880	16,289	33,337	5,982	92,488	1,347	43,317	68.4
미금시	48,724	33,372	13,142	6,499	10,967	2,400	33,008	364	15,352	68.5
남양주군	88,428	60,463	23,738	9,790	22,370	3,582	59,480	983	27,965	68.4

● 여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정동성	민주당 이규택	계			
여주군	63,223	48,456	21,310	26,368	47,678	778	14,767	76.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평택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자현	민주당 서화택	무소속 정기용	계			
평택군	74,915	56,517	24,512	18,647	12,705	55,864	653	18,398	75.4

● 오산시·화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창현	민주당 정동호	통일국민당 김인규	민중당 박용준	무소속 황선정	계			
합 계	159,145	114,249	41,370	22,592	14,565	3,211	30,856	112,594	1,655	44,896	71.8
오산시	38,161	26,849	10,117	6,219	4,799	774	4,605	26,514	335	11,312	70.4
화성군	120,984	87,400	31,253	16,373	9,766	2,437	26,251	86,080	1,320	33,584	72.2

● 파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명근	민주당 이준희	공명민주당 윤승중	무소속 박영석	무소속 우종림	계			
파주군	112,759	85,981	40,197	16,885	1,979	2,186	23,647	84,894	1,087	26,778	76.3

● 고양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택석	민주당 이교성	신정당 최성권	무소속 이국현	무소속 최영덕	계			
고양시	169,058	111,542	35,635	30,941	5,581	23,231	14,787	110,175	1,367	57,516	66.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하남시 · 광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영훈	민주당 곽용식	통일국민당 김용원	신정당 강광호	무소속 박정무	무소속 박종진	무소속 이용배	계			
합 계	115,782	80,420	29,632	14,800	18,471	1,568	1,245	7,936	5,737	79,389	1,031	35,362	69.7
하남시	61,880	42,228	16,114	8,513	11,149	993	862	1,086	3,022	41,739	489	19,652	68.2
광주군	53,902	38,192	13,518	6,287	7,322	575	383	6,850	2,715	37,650	542	15,710	70.9

● **연천군 · 포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한동	민주당 손광운	통일국민당 홍찬기	신정당 김 만	계			
합 계	116,330	90,802	51,920	25,626	10,651	1,433	89,630	1,172	25,528	78.1
연천군	38,107	30,015	13,140	13,980	2,234	314	29,668	347	8,092	78.8
포천군	78,223	60,787	38,780	11,646	8,417	1,119	59,962	825	17,436	77.7

● **가평군 · 양평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안찬희	민주당 조원석	통일국민당 홍성표	신정당 지순기	무소속 이병대	계			
합 계	89,805	67,602	33,484	9,085	11,140	1,560	11,211	66,480	1,122	22,203	75.3
가평군	36,400	27,990	13,470	4,852	7,183	560	1,543	27,608	382	8,410	76.9
양평군	53,405	39,612	20,014	4,233	3,957	1,000	9,668	38,872	740	13,793	74.2

● **이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영문	민주당 황규선	통일국민당 이희규	민중당 장홍석	계			
이천군	93,574	70,764	26,385	16,068	25,545	1,860	69,858	906	22,810	75.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용인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용희	민주당 나진우	무소속 김정길	계			
용인군	114,312	83,765	31,457	21,885	29,077	82,419	1,346	30,547	73.3

● 안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해구	민주당 오우영	통일국민당 정진환	신정당 이무역	무소속 신호양	계			
안성군	80,733	62,948	32,196	3,307	23,373	882	2,403	62,161	787	17,785	78.0

● 김포군·강화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해남	민주당 김선홍	통일국민당 김두섭	계			
합 계	124,239	93,217	32,112	27,341	32,218	91,671	1,546	31,022	75.0
김포군	73,519	53,198	15,096	10,959	26,266	52,321	877	20,321	72.4
강화군	50,720	40,019	17,016	16,382	5,952	39,350	669	10,701	78.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강 원 도

● 춘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한승수	민주당 유남선	통 일 국민당 손승덕	신정당 백태열	민중당 최 윤	무소속 이상수	계			
춘천시	117,987	88,550	32,804	6,813	38,069	637	7,940	1,320	87,583	967	29,437	75.1

● 원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함종환	민주당 박영록	통일국민당 원광호	민중당 이정구	무소속 김광림				계
원주시	109,302	81,937	32,432	9,909	34,579	2,483	1,735	81,138	799	27,365	75.0

● 강릉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종완	민주당 함영희	신정당 김필기	무소속 심기섭	무소속 최돈웅				계
강릉시	96,020	72,718	18,239	6,909	2,961	16,754	27,068	71,931	787	23,302	75.7

● 동해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홍희표	민주당 지일웅	통일국민당 김효영	신정당 조대형				계
동해시	60,975	47,060	16,117	8,230	21,554	662	46,563	497	13,915	77.2

● 태백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유승규	민주당 김성태	통일국민당 김상봉	민중당 배 진	무소속 정수룡				계
태백시	52,006	40,115	17,975	1,658	13,804	4,473	1,750	39,660	455	11,891	77.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명주군 · 양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문기	민주당 최욱철	통일국민당 최각길	신정당 김시환	무소속 함영주	계			
합 계	69,116	55,646	19,992	13,167	18,562	1,014	2,099	54,834	812	13,470	80.5
명주군	47,351	37,153	13,477	9,873	11,648	222	1,443	36,663	490	10,198	78.5
양양군	21,765	18,493	6,515	3,294	6,914	792	656	18,171	322	3,272	85.0

● 삼척시 · 삼척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일동	통일 국민당 김재철	신정당 심재정	무소속 김정남	무소속 엄영석	무소속 정용교	계			
합 계	65,057	53,443	17,813	5,913	680	20,076	5,681	2,613	52,776	667	11,614	82.1
삼척시	26,484	21,922	7,029	1,829	243	9,795	2,473	299	21,668	254	4,562	82.8
삼척군	38,573	31,521	10,784	4,084	437	10,281	3,208	2,314	31,108	413	7,052	81.7

● 흥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응선	민주당 장만준	통일국민당 조일현	신정당 이만연	무소속 박성문	계			
흥천군	52,976	41,612	14,815	3,686	21,601	422	406	40,930	682	11,364	78.5

● 춘천군 · 양구군 · 인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민섭	민주당 허경구	통일국민당 홍종욱	신정당 박영석				
합 계	70,671	57,156	25,084	6,994	22,218	1,910	56,206	950	13,515	80.9
춘천군	30,250	24,431	10,575	2,489	10,433	438	23,935	496	5,819	80.8
양구군	17,007	13,720	6,499	1,645	4,564	850	13,558	162	3,287	80.7
인제군	23,414	19,005	8,010	2,860	7,221	622	18,713	292	4,409	81.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횡성군 · 원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경수	민주당 김천희	통일국민당 김용호	무소속 엄재선	무소속 정봉철	계			
합 계	69,207	53,280	22,534	5,239	18,240	2,159	4,334	52,506	774	15,927	77.0
횡성군	35,288	26,948	10,786	2,575	8,019	1,529	3,653	26,562	386	8,340	76.4
원주군	33,919	26,332	11,748	2,664	10,221	630	681	25,944	388	7,587	77.6

● **영월군 · 평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심명보	민주당 김경래	통일국민당 신민선	신정당 이상춘	무소속 박영훈				계
합 계	75,271	59,659	27,406	13,204	15,339	1,125	1,696	58,770	889	15,612	79.3
영월군	39,734	31,184	16,883	3,447	8,555	643	1,194	30,722	462	8,550	78.5
평창군	35,537	28,475	10,523	9,757	6,784	482	502	28,048	427	7,062	80.1

● **정선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우병	민주당 안영배	통일국민당 엄영달	신정당 정연송	민중당 정운환				계
정선군	51,818	39,922	16,930	9,086	9,544	457	3,434	39,451	471	11,896	77.0

● **속초시 · 고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재철	민주당 함종빈	통일국민당 김용현	무소속 조영두	무소속 최정식				계
합 계	76,441	61,897	27,598	2,862	17,422	5,626	7,644	61,152	745	14,544	81.0
속초시	48,378	38,294	15,038	1,850	12,493	4,249	4,205	37,835	459	10,084	79.2
고성군	28,063	23,603	12,560	1,012	4,929	1,377	3,439	23,317	286	4,460	84.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철원군·화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재순	민주당 김철배	통일국민당 이경희	무소속 이용삼	계			
합 계	54,549	44,074	15,855	4,420	14,211	8,967	43,453	621	10,475	80.8
철원군	36,303	29,270	9,373	3,296	11,521	4,707	28,897	373	7,033	80.6
화천군	18,246	14,804	6,482	1,124	2,690	4,260	14,556	248	3,442	81.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총 청 북 도

제 14 대 국 선

● 청주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종택	민주당 장한량	통일국민당 김진영	신정당 이운영	무소속 이경동	계			
청주시갑	121,978	86,951	28,461	19,012	30,540	3,333	4,479	85,825	1,126	35,027	71.3

● 청주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임광수	민주당 정기호	신정당 류병두	민중당 이효식	계			
청주시을	166,967	116,930	40,825	62,413	6,222	5,871	115,331	1,599	50,037	68.2

● 충주시·중원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종근	민주당 정기영	통일국민당 진치범	신정당 김순태	무소속 김선길	계			
합 계	133,765	99,173	32,452	16,531	16,825	2,170	29,873	97,851	1,322	34,592	74.1
충주시	86,233	62,051	19,684	10,526	11,741	1,519	17,854	61,324	727	24,182	72.0
중원군	47,532	37,122	12,768	6,005	5,084	651	12,019	36,527	595	10,410	78.1

● 제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춘구	민주당 권운상	통일국민당 신영식	신정당 김대한	계			
제천시	66,893	49,927	33,148	8,819	6,155	1,207	49,329	598	16,966	74.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청원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신경식	민주당 신언관	통일국민당 김현수	신정당 이규택	계			
청원군	81,144	62,997	30,712	10,797	18,069	2,481	62,059	938	18,147	77.6

●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준병	민주당 최극	통일국민당 어준선	신정당 최옥중	계			
합계	129,657	105,967	53,084	16,231	33,614	1,407	104,336	1,631	23,690	81.7
보은군	37,622	30,675	10,757	1,974	17,082	371	30,184	491	6,947	81.5
옥천군	46,828	39,034	25,086	3,246	9,526	588	38,446	588	7,794	83.4
영동군	45,207	36,258	17,241	11,011	7,006	448	35,706	552	8,949	80.2

● 괴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종호	민주당 김동관	통일국민당 고경수	계			
괴산군	58,979	47,626	29,897	14,861	2,062	46,820	806	11,353	80.8

● 진천군·음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민태구	민주당 허탁	통일국민당 정우택	신정당 이인수	무소속 박병남	무소속 이규필	무소속 이원배	계			
합계	91,089	73,396	34,803	10,621	17,597	801	804	465	7,322	72,413	983	17,693	80.6
진천군	37,297	29,368	10,733	3,688	11,836	570	570	294	1,267	28,958	410	7,929	78.7
음성군	53,792	44,028	24,070	6,933	5,761	231	234	171	6,055	43,455	573	9,764	81.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제천군·단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안영기	민주당 박주진	통일국민당 송광호	무소속 김대부	계			
합 계	58,279	47,319	20,142	2,989	21,752	1,550	46,433	886	10,960	81.2
제천군	25,782	21,070	9,847	1,225	8,773	799	20,644	426	4,712	81.7
단양군	32,497	26,249	10,295	1,764	12,979	751	25,789	460	6,248	80.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충 청 남 도

● 천안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정일영	민주당 오대영	신정당 박종구	무소속 성무용	무소속 정재원	계			
천안시	120,108	82,577	27,075	11,887	3,848	35,395	3,465	81,670	907	37,531	68.8

● 공주시·공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윤재기	민주당 윤완중	통일국민당 이성구	신정당 이종길	무소속 이상재	계			
합 계	94,485	74,341	26,495	11,829	2,685	3,114	29,180	73,303	1,038	20,144	78.7
공주시	35,179	27,784	9,491	3,755	1,201	915	12,147	27,509	275	7,395	79.0
공주군	59,306	46,557	17,004	8,074	1,484	2,199	17,033	45,794	763	12,749	78.5

● 대천시·보령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용환	민주당 백성남	통일국민당 박창규	신정당 이문규	계			
합 계	84,008	64,569	44,246	4,987	13,073	1,316	63,622	947	19,439	76.9
대천시	33,515	25,007	17,588	1,889	4,719	517	24,713	294	8,508	74.6
보령군	50,493	39,562	26,658	3,098	8,354	799	38,909	653	10,931	78.4

● 온양시·아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황명수	민주당 이진구	통일국민당 박인재	신정당 박창호	무소속 김태현	무소속 이하원	계			
합 계	100,406	71,405	30,521	28,062	8,253	1,246	557	1,848	70,487	918	29,001	71.1
온양시	38,658	26,885	12,062	10,836	2,601	373	170	544	26,586	299	11,773	69.5
아산군	61,748	44,520	18,459	17,226	5,652	873	387	1,304	43,901	619	17,228	72.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금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유한열	민주당 송준빈	통일국민당 정태영	무소속 박은영	무소속 박천우	계			
금산군	52,069	40,421	11,748	2,134	14,171	3,151	8,617	39,821	600	11,648	77.6

● 연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임재길	민주당 김준희	통일국민당 박희부	신정당 김홍식	계			
연기군	57,499	46,206	18,892	2,483	22,305	1,716	45,396	810	11,293	80.4

● 논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제태	민주당 김형중	통일국민당 김범명	신정당 조주형	무소속 박우석	무소속 우희정	무소속 윤관식				계
논산군	110,889	84,656	17,657	16,228	20,703	5,949	6,199	1,216	15,506	83,458	1,198	26,233	76.3

● 부여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종필	민주당 김택수	통일국민당 조종구	신정당 김홍조				계
부여군	75,414	59,452	42,358	6,796	6,250	2,990	58,394	1,058	15,962	78.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서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금규	통일국민당 이상익	신정당 임연택	무소속 조중연	계			
서천군	62,115	48,854	21,475	4,973	1,323	20,427	48,198	656	13,261	78.7

● 청양·홍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부영	민주당 홍문표	무소속 이인배	계			
합 계	105,334	80,706	40,064	34,100	5,193	79,357	1,349	24,628	76.6
청양군	34,686	26,179	13,007	11,027	1,727	25,761	418	8,507	75.5
홍성군	70,648	54,527	27,057	23,073	3,466	53,596	931	16,121	77.2

● 예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오장섭	민주당 김성식	통일국민당 박병선	신정당 김동분				계
예산군	78,324	60,578	35,834	17,914	4,797	1,148	59,693	885	17,746	77.3

● 서산시·서산군·태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박태권	민주당 한영수	통일국민당 박성호	무소속 문석호	무소속 장기욱				계
합 계	141,888	107,551	35,586	36,943	15,559	10,822	7,189	106,099	1,452	34,337	75.8
서산시	33,987	25,271	8,959	8,088	4,832	1,433	1,687	24,999	272	8,716	74.4
서산군	57,621	44,151	15,375	13,105	8,041	3,068	3,929	43,518	633	13,470	76.6
태안군	50,280	38,129	11,252	15,750	2,686	6,321	1,573	37,582	547	12,151	75.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당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현욱	민주당 백종길	통일 국민당 송영진	신정당 유제연	무소속 고영석	무소속 이세운	계			
당진군	81,144	62,568	23,008	7,467	24,709	4,667	1,281	729	61,861	707	18,576	77.1

● 천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함석재	민주당 김종택	통일국민당 박동인	무소속 김종식	무소속 정태용				계
천안군	65,227	49,809	24,393	4,335	10,063	7,515	2,735	49,041	768	15,418	76.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전라북도

● 전주시 덕진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민 주 당	통 일 국민당	신정당	공 명 민주당	민중당	무소속	계			
			임방현	오 탄	임광순	홍범식	신금철	최형재	김동진				
전주시 덕진구	170,815	117,351	28,301	67,301	13,771	1,709	386	3,183	1,432	116,083	1,268	53,464	68.7

● 전주시 완산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민 주 당	신정당	무소속	무소속	계			
			이연택	장영달	허위남	손주향	한기호				
전주시 완산구	160,714	114,394	31,564	69,509	1,359	6,437	4,204	113,073	1,321	46,320	71.2

● 군산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민 주 당	통 일 국민당	민중당	무소속	무소속				
			강현욱	채영석	신동안	김종철	고세정	엄대우				
군산시	123,779	90,545	33,011	38,281	4,094	1,499	833	11,758	89,476	1,069	33,234	73.2

● 이리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민 주 당	신정당	민중당	무소속	무소속				
			공천섭	이 협	김득수	손인범	박경철	정창기				
이리시	126,515	93,083	24,348	61,100	626	1,532	3,708	863	92,177	906	33,432	73.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정주시·정읍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계			
			정원조	김원기	권영신	정태진				
합 계	106,469	75,527	11,836	55,616	2,570	4,382	74,404	1,123	30,942	70.9
정주시	45,223	31,564	5,262	23,587	843	1,474	31,166	398	13,659	69.8
정읍군	61,246	43,963	6,574	32,029	1,727	2,908	43,238	725	17,283	71.8

● 남원시·남원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계			
			양창식	조찬형	이형배				
합 계	75,406	60,876	20,491	19,916	19,519	59,926	950	14,530	80.7
남원시	33,304	26,889	8,079	9,237	9,249	26,565	324	6,415	80.7
남원군	42,102	33,987	12,412	10,679	10,270	33,361	626	8,115	80.7

● 완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계			
			신통옥	김태식	송주인				
완주군	61,615	44,859	9,160	28,899	5,910	43,969	890	16,756	72.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황인성	민주당 오상현	통일국민당 이상옥	계			
합 계	79,673	64,333	32,280	24,989	5,962	63,231	1,102	15,340	80.7
진안군	32,166	25,784	10,990	10,640	3,648	25,278	506	6,382	80.2
무주군	23,909	19,701	12,340	6,090	1,005	19,435	266	4,208	87.4
장수군	23,598	18,848	8,950	8,259	1,309	18,518	330	4,750	79.9

● 임실군·순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최용안	민주당 홍영기	무소속 신 호	무소속 양영두				계
합 계	65,927	50,991	13,893	24,204	1,557	10,548	50,202	789	14,936	77.3
임실군	34,931	26,955	7,699	10,195	599	8,023	26,516	439	7,976	77.2
순창군	30,996	24,036	6,194	14,009	958	2,525	23,686	350	6,960	77.5

● 고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호종	민주당 정균환	통일국민당 노동채				계
고창군	64,004	49,669	17,868	26,061	5,034	48,963	706	14,335	77.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부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고명승	민주당 이희천	통일국민당 최규환	무소속 김송철	무소속 김종수	무소속 장중현				계
부안군	62,675	49,143	20,529	22,422	4,432	215	536	361	48,495	648	13,532	78.4

● 김제시·김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이건식	민주당 최락도	신정당 노귀철	계			
합계	95,619	70,512	26,427	41,886	1,125	69,438	1,074	25,107	73.7
김제시	30,636	22,221	9,139	12,454	313	21,906	315	8,415	72.5
김제군	64,983	48,291	17,288	29,432	812	47,532	759	16,692	74.3

● 옥구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원형연	민주당 강철선	통일국민당 채의석	계			
옥구군	48,401	38,141	12,771	18,878	5,868	37,517	624	10,260	78.8

● 익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조남조	민주당 최재승	통일국민당 류재석	신정당 오승엽				계
익산군	73,694	58,017	23,676	31,046	1,631	876	57,229	788	15,677	78.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전라남도

● 목포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배종덕	민주당 권노갑	통일국민당 안철	무소속 김봉현	무소속 함윤식				계
목포시	136,166	94,191	6,580	76,486	7,486	1,050	1,621	93,223	968	41,975	69.2

● 여수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김선규	민주당 김충조	통일국민당 박정웅	무소속 김영로				계
여수시	113,440	81,695	18,012	57,061	1,949	3,846	80,868	827	31,745	72.0

● 순천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김우경	민주당 허경만	통일국민당 박강근	무소속 유길수				계
순천시	92,477	69,215	7,203	45,554	4,665	11,006	68,428	787	23,262	74.8

● 나주시·나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나창주	민주당 김장근	통일국민당 김덕영	신정당 이계대	무소속 김강근			
합계	86,649	67,835	21,580	36,285	7,876	690	66,431	1,404	18,814	78.3
나주시	25,325	20,332	5,783	10,111	3,926	166	(사퇴) 19,986	346	4,993	96.3
나주군	61,324	47,503	15,797	26,174	3,950	524		46,445	1,058	13,82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여천시 · 여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유길종	민주당 신순범	통일 국민당 김용일	신정당 신장호	계			
합 계	94,352	71,834	23,450	39,067	6,222	2,058	70,797	1,037	22,518	76.1
여천시	43,388	32,776	9,114	18,298	3,789	1,129	32,330	446	10,612	75.5
여천군	50,964	39,058	14,336	20,769	2,433	929	38,467	591	11,906	76.6

● 담양군 · 장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이상하	민주당 박태영	신정당 김사석	무소속 백상규				계
합 계	89,286	68,809	16,162	43,285	1,003	7,358	67,808	1,001	20,477	77.1
담양군	46,180	36,383	11,011	22,640	549	1,636	35,836	547	9,797	78.8
장성군	43,106	32,426	5,151	20,645	454	5,722	31,972	454	10,680	75.2

● 곡성군 · 구례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심상준	민주당 황의성	통일 국민당 김문일	계			
합 계	60,362	46,437	6,613	32,436	6,601	45,650	787	13,925	76.9
곡성군	32,981	25,420	4,643	16,537	3,816	24,996	424	7,561	77.1
구례군	27,381	21,017	1,970	15,899	2,785	20,654	363	6,364	76.8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동광양시 · 광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이도선	민주당 김명규	통일 국민당 이돈만	무소속 김형주	무소속 장정환				계
합 계	82,148	68,573	30,244	34,292	1,209	1,601	443	67,789	784	13,575	83.5
동광양시	34,458	29,731	16,079	12,099	458	574	243	29,453	278	4,727	86.3
광양군	47,690	38,842	14,165	22,193	751	1,027	200	38,336	506	8,848	81.4

● 승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유경현	민주당 조순승	계			
승주군	54,633	39,578	8,590	30,283	38,873	705	15,055	72.4

● 고흥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지연태	민주당 박상천	통일 국민당 신귀자	민중당 김범태				계
고흥군	88,409	68,499	23,426	41,207	1,865	1,182	67,680	819	19,910	77.5

● 보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이용식	민주당 유준상	계			
보성군	55,754	43,726	19,216	23,816	43,032	694	12,028	78.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화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구용상	민주당 홍기훈	무소속 박판석	무소속 조병수	계			
화순군	51,220	39,114	10,310	23,118	993	4,151	38,572	542	12,106	76.4

● 장흥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이종환	민주당 이영권	통일 국민당 김인규	무소속 김환수	무소속 문철성				계
장흥군	45,880	36,564	5,209	13,704	9,577	2,721	4,879	36,090	474	9,316	79.7

● 강진군 · 완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 식	민주당 김영진	무소속 이선동	계			
합 계	96,184	74,742	29,139	33,685	10,879	73,703	1,039	21,442	77.7
강진군	41,324	33,048	14,363	17,395	895	32,653	395	8,276	80.0
완도군	54,860	41,694	14,776	16,290	9,984	41,050	644	13,166	76.0

● 해남군 · 진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기식	민주당 김봉호	통일 국민당 최장현	신정당 박봉근	무소속 김봉욱				계
합 계	113,824	83,530	17,923	46,157	1,943	2,597	13,818	82,438	1,092	30,294	73.4
해남군	78,132	57,516	10,708	31,589	1,528	813	12,188	56,826	690	20,616	73.6
진도군	35,692	26,014	7,215	14,568	415	1,784	1,630	25,612	402	9,678	72.9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영암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윤제영	민주당 유인학	계			
영암군	47,547	36,550	12,241	23,611	35,852	698	10,997	76.9

● 무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안희석	민주당 박석무	무소속 노인옥	계			
무안군	55,335	42,178	3,957	25,031	12,568	41,556	622	13,157	76.2

● 함평군·영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조기상	민주당 김인곤	통일국민당 이진연	신정당 김기수	무소속 안평수				계
합 계	98,258	72,555	18,048	42,421	2,870	1,520	6,682	71,541	1,014	25,703	73.8
함평군	41,162	29,993	4,847	17,931	1,456	542	4,857	29,633	360	11,169	72.9
영광군	57,096	42,562	13,201	24,490	1,414	978	1,825	41,908	654	14,534	74.5

● 신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복수	민주당 한화갑	통일 국민당 김인태				계
신안군	52,310	36,409	5,575	26,044	4,092	35,711	698	15,901	69.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상 북 도

● 포항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이진우	민주당 박기환	무소속 박성현	무소속 허화평	계			
포항시	193,433	151,249	59,764	17,442	3,171	69,395	149,772	1,477	42,184	78.2

● 경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서수종	민주당 이상두	통일 국민당 황한수	무소속 김석환	무소속 김양호				계
경주시	89,230	67,149	32,276	5,141	7,086	887	20,585	65,975	1,174	22,081	75.3

● 김천시 · 금릉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박정수	민주당 정정문	통일 국민당 정취동	신정당 박희동	무소속 문종철				계
합 계	104,739	83,674	43,687	4,083	22,343	2,123	10,163	82,399	1,275	21,065	79.9
김천시	52,166	41,256	22,080	2,222	11,310	1,080	4,066	40,758	498	10,910	79.1
금릉군	52,573	42,418	21,607	1,861	11,033	1,043	6,097	41,641	777	10,155	80.7

● 안동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오경의	민중당 김성현	무소속 권중동	무소속 김길홍	무소속 김창환				계
안동시	73,216	58,799	16,182	1,461	16,948	20,950	2,723	58,264	535	14,417	80.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구미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박세직	민중당 윤상규	계			
구미시	119,784	82,234	59,098	21,974	81,072	1,162	37,550	68.7

● 영주시·영풍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진호	민주당 우성구	통일 국민당 김두영	신정당 박성만				계
합 계	93,693	74,766	47,198	3,199	19,778	3,515	73,690	1,076	18,927	79.8
영주시	52,343	40,875	24,862	1,510	12,248	1,824	40,444	431	11,468	78.1
영풍군	41,350	33,891	22,336	1,689	7,530	1,691	33,246	645	7,459	82.0

● 영천시·영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정동윤	민주당 이육만	무소속 박헌기	무소속 조병환	무소속 조영건				계
합 계	87,540	70,081	25,996	2,104	38,822	1,244	1,013	69,179	902	17,459	80.1
영천시	33,358	26,685	9,704	861	15,103	477	253	26,398	287	6,673	80.0
영천군	54,182	43,396	16,292	1,243	23,719	767	760	42,781	615	10,786	80.1

● 상주시·상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근수	통일 국민당 이재욱	무소속 김상구	계			
합 계	98,744	80,515	27,399	12,113	39,586	79,098	1,417	18,229	81.5
상주시	34,114	27,370	8,764	3,488	14,757	27,009	361	6,744	80.2
상주군	64,630	53,145	18,635	8,625	24,829	52,089	1,056	11,485	82.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점촌시 · 문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신영국	통일 국민당 최주영	무소속 오세동	무소속 이승무	계			
합 계	71,271	57,264	14,342	11,821	1,644	28,663	56,470	794	14,007	80.3
점촌시	30,226	24,218	5,762	4,815	732	12,622	23,931	287	6,008	80.1
문경군	41,045	33,046	8,580	7,006	912	16,041	32,539	507	7,999	80.5

● 달성군 · 고령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구자춘	민주당 김창문	통일 국민당 이용택	무소속 김문조	계			
합 계	99,587	73,657	30,147	4,872	16,973	20,491	72,483	1,174	25,930	74.0
달성군	71,901	51,876	21,629	2,672	13,149	13,609	51,059	817	20,025	72.1
고령군	27,686	21,781	8,518	2,200	3,824	6,882	21,424	357	5,905	78.7

● 군위군 · 선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윤환	통일 국민당 권천문	무소속 구문장	무소속 최종두	계			
합 계	71,148	60,353	36,607	1,484	1,968	19,466	59,525	828	10,795	84.8
군위군	26,583	22,890	13,549	763	1,166	7,061	22,539	351	3,693	86.1
선산군	44,565	37,463	23,058	721	802	12,405	36,986	477	7,102	84.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의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김동권	민주당 이왕식	통일국민당 김동호	무소속 정창화	계			
의성군	69,381	57,386	25,084	2,694	6,465	22,216	56,459	927	11,995	82.7

● 안동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류돈우	민주당 권혁구	통일국민당 김시명	계			
안동군	58,640	46,544	24,000	4,764	16,658	45,422	1,122	12,096	79.4

● 청송군·영덕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황병우	민주당 박종욱	통일국민당 김찬우	신정당 김호연	민중당 이무호	계			
합계	73,882	60,408	25,645	2,180	29,772	489	1,511	59,597	811	13,474	81.8
청송군	28,835	24,439	15,029	1,568	6,148	224	1,135	24,104	335	4,396	84.8
영덕군	45,047	35,969	10,616	612	23,624	265	376	35,493	476	9,078	79.8

● 영양군·봉화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자유당 강신조	민주당 류상기	통일국민당 이철희	신정당 김경기	민중당 권영일	무소속 김충립	무소속 오한구				계
합계	59,935	49,677	24,538	2,011	3,576	855	1,135	2,146	14,147	48,408	1,269	10,258	82.9
영양군	20,171	17,176	8,312	1,508	967	276	184	884	4,664	16,795	381	2,995	85.2
봉화군	39,764	32,501	16,226	503	2,609	579	951	1,262	9,483	31,613	888	7,263	81.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영일군 · 울릉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이상득	민주당 김병구	통일 국민당 박경석	신정당 이재열	계			
합 계	128,995	97,021	50,435	12,488	30,630	1,801	95,354	1,667	31,974	75.2
영일군	120,101	89,976	45,103	12,100	29,563	1,638	88,404	1,572	30,125	74.9
울릉군	8,894	7,045	5,332	388	1,067	163	6,950	95	1,849	79.2

● 경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황윤기	민주당 김호길	통일 국민당 임진출	계			
경주군	93,154	72,655	34,360	4,026	33,073	71,459	1,196	20,499	78.0

● 경산시 · 경산군 · 청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이영창	민주당 김경운	통 일 국민당 엄길정	신정당 이경희	무소속 박정규	무소속 이재연	계			
합 계	138,957	105,967	56,676	4,679	23,340	1,469	10,331	7,735	104,230	1,737	32,990	76.3
경산시	40,646	28,491	12,310	1,722	9,045	446	1,937	2,655	28,115	376	12,155	70.1
경산군	55,562	41,983	21,226	2,023	10,102	737	3,999	3,252	41,339	644	13,579	75.6
청도군	42,749	35,493	23,140	934	4,193	286	4,395	1,828	34,776	717	7,256	83.0

● 성주군 · 칠곡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장영철	민주당 도호기	계			
합 계	94,585	78,731	55,124	21,468	76,592	2,139	15,854	83.2
성주군	40,387	34,520	22,664	10,797	33,461	1,059	5,867	85.5
칠곡군	54,198	44,211	32,460	10,671	43,131	1,080	9,987	81.6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예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유학성	민주당 안희대	통일 국민당 황병호	계			
예천군	53,377	41,017	24,361	7,477	8,272	40,110	907	12,360	76.8

● 울진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중권	민주당 장소택	통일 국민당 이학원	무소속 박만순	무소속 이동일				계
울진군	48,038	37,589	14,285	1,510	19,444	797	1,067	37,103	486	10,449	78.2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경 상 남 도

● 창원시갑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종하	민주당 이상익	통일 국민당 황성권	계			
창원시갑	119,754	80,433	44,989	14,731	19,654	79,374	1,059	39,321	67.2

● 창원시을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황낙주	민주당 성종대	통 일 국민당 서선호	신정당 강청웅	민중당 이학용	무소속 권대운	무소속 제선수	계			
창원시을	108,914	76,484	32,278	11,408	23,816	1,587	(등록무효)	3,595	2,484	75,168	1,316	32,430	70.2

● 울산시 중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태호	민주당 송철호	통일 국민당 차화준	신정당 이규정	무소속 이철수	계			
울산시 중 구	168,725	128,944	50,127	19,685	50,138	4,736	2,906	127,592	1,352	39,781	76.4

● 울산시 남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심완구	민주당 서동우	통일 국민당 차수명	신정당 박 인	공명 민주당 이 복	계			
울산시 남 구	176,491	132,937	43,471	8,090	68,647	3,554	8,013	131,775	1,162	43,554	7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울산시 동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서정의	통일 국민당 정몽준	무소속 권처홍	계			
울산시 동 구	109,672	86,936	5,592	61,263	19,259	86,114	822	22,736	79.3

● 마산시 합포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백찬기	통일 국민당 이영창	무소속 김호일	계			
마산시 합포구	127,548	92,056	42,977	4,958	43,040	90,975	1,081	35,492	72.2

● 마산시 회원구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강삼재	민주당 박창규	민중당 임수태	무소속 김영길				
마산시 회원구	129,996	89,515	47,370	8,092	6,938	26,016	88,416	1,099	40,481	68.9

● 진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조만후	민주당 김재천	통일 국민당 이원근	신정당 김기한	무소속 하순봉				
진주시	154,413	125,134	31,955	10,937	2,433	3,443	75,270	124,038	1,096	29,279	81.0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진해시 · 창원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배명국	민주당 김종준	통일 국민당 정차두	무소속 최갑식	계			
합 계	135,334	108,252	72,934	8,001	22,971	3,076	106,982	1,270	27,082	79.9
진해시	81,407	67,202	45,114	3,518	16,352	1,459	66,443	759	14,205	82.6
창원군	53,927	41,050	27,820	4,483	6,619	1,617	40,539	511	12,877	76.1

● 충무시 · 통영군 · 고성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정순덕	민주당 홍순우	신정당 송기태	무소속 최이호	무소속 허문도	계			
합 계	144,261	113,671	64,570	3,717	2,712	7,650	33,471	112,120	1,551	30,590	78.8
충무시	58,686	46,222	32,889	2,046	1,391	979	8,421	45,726	496	12,464	78.8
통영군	33,423	25,866	17,272	591	754	690	6,180	25,487	379	7,557	77.4
고성군	52,152	41,583	14,409	1,080	567	5,981	18,870	40,907	676	10,569	79.9

● 삼천포시 · 사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기도	민주당 유홍재	신정당 이순근	무소속 조갑주	계			
합 계	81,280	64,179	30,671	4,126	3,230	25,299	63,326	853	17,101	79.0
삼천포시	41,926	32,662	17,070	1,630	1,125	12,444	32,269	393	9,264	77.9
사천군	39,354	31,517	13,601	2,496	2,105	12,855	31,057	460	7,837	80.1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김해시 · 김해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김영일	민주당 이광희	공명 민주당 홍의표	무소속 이설혜	계			
합 계	138,792	107,204	57,047	11,586	3,027	34,295	105,955	1,249	31,588	77.2
김해시	81,213	61,143	31,393	7,986	1,899	19,134	60,412	731	20,070	75.3
김해군	57,579	46,061	25,654	3,600	1,128	15,161	45,543	518	11,518	80.0

● 진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안병규	민주당 강갑중	통일 국민당 박영식	무소속 정필근				
진양군	54,216	44,482	17,152	5,601	996	20,139	43,888	584	9,734	82.0

● 의령군 · 함안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정동호	민주당 강정주	무소속 조홍래	계			
합 계	80,598	66,762	34,813	2,485	28,348	65,646	1,116	13,836	82.8
의령군	31,702	26,166	16,606	1,108	7,932	25,646	520	5,536	82.5
함안군	48,896	40,596	18,207	1,377	20,416	40,000	596	8,300	83.0

● 창녕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신재기	민주당 박상곤	통일 국민당 구자호	무소속 하종만				
창녕군	61,303	48,885	22,190	1,657	6,737	17,614	48,198	687	12,418	79.7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밀양시 · 밀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신상식	민주당 이태권	통 일 국민당 박성규	신정당 박상웅	공 명 민주당 박종억	무소속 이장우	무소속 이차균	무소속 정길원	계			
합 계	91,871	72,162	26,106	4,857	21,652	3,656	782	1,883	6,391	5,979	71,306	856	19,709	78.5
밀양시	31,322	24,034	8,114	1,079	6,231	1,550	122	549	2,731	3,439	23,815	219	7,288	76.7
밀양군	60,549	48,128	17,992	3,778	15,421	2,106	660	1,334	3,660	2,540	47,491	637	12,421	79.5

● 양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나오연	통일 국민당 오근섭	무소속 김대오	무소속 허지성	계			
양산군	110,021	83,801	49,001	30,718	1,635	1,374	82,728	1,073	26,220	76.2

● 울산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김채겸	민주당 권기술	통일 국민당 박진구	공명 민주당 이해형	계			
울산군	93,165	75,148	29,445	26,333	17,449	1,106	74,333	815	18,017	80.7

● 장승포시 · 거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 주 자유당 김봉조	민주당 윤병한	민중당 장대현	무소속 양동생	계			
합 계	89,633	66,862	50,313	4,197	8,525	2,949	65,984	878	22,771	74.6
장승포시	29,819	21,833	13,028	2,183	5,207	1,178	21,596	237	7,986	73.2
거제군	59,814	45,029	37,285	2,014	3,318	1,771	44,388	641	14,785	75.3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 남해군 · 하동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박희태	민주당 이수중	통일 국민당 김욱태	신정당 김중채	민중당 박종선	무소속 홍재표	계			
합 계	100,504	83,279	49,378	9,261	20,466	600	725	1,553	81,983	1,296	17,225	82.9
남해군	51,974	44,197	27,639	725	14,178	194	439	330	43,505	692	7,777	85.0
하동군	48,530	39,082	21,739	8,536	6,288	406	286	1,223	38,478	604	9,448	80.5

● 산청군 · 함양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노인환	민주당 정영모	통일 국민당 임채홍	신정당 하상영	무소속 오원환	계			
합 계	74,908	62,099	22,664	3,843	15,623	1,479	17,561	61,170	929	12,809	82.9
산청군	36,395	29,641	8,780	2,468	3,844	365	13,714	29,171	470	6,754	81.4
함양군	38,513	32,458	13,884	1,375	11,779	1,114	3,847	31,999	459	6,055	84.3

● 거창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이현목	민주당 백신종	통일 국민당 최태현	신정당 정태인	무소속 박진철	무소속 이강두	계			
거창군	52,614	44,904	13,329	2,912	4,586	448	858	22,018	44,151	753	7,710	85.3

● 합천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권해욱	민주당 공정무	통일 국민당 유상호	무소속 박판제				계
합천군	54,547	46,037	18,028	1,386	10,245	15,594	45,253	784	8,510	84.4

※ 굵은 글자는 당선자임.

제 주 도

● **제주시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고세진	민주당 양승부	무소속 임말시아	무소속 현경대	계			
제주시	146,196	111,593	26,341	38,115	2,290	43,734	110,480	1,113	34,603	76.3

● **북제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이기빈	무소속 양정규	계			
북제주군	67,700	54,922	24,350	29,343	53,693	1,229	12,778	81.1

● **서귀포시·남제주군선거구**

구·시·군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민주자유당 강보성	민주당 강승훈	무소속 변정일	계			
합계	109,242	87,422	34,688	11,678	39,811	86,177	1,245	21,820	80.0
서귀포시	54,230	42,654	16,735	7,662	17,704	42,101	553	11,576	78.7
남제주군	55,012	44,768	17,953	4,016	22,107	44,076	692	10,244	81.4

5. 연표

(1988. 2. 25 ~ 1993. 2. 24)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88	2. 25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3. 8	국회,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관련 6개 법안 의결
	4. 8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일 공고(선거일 4월 26일) / 후보자 등록(4월 13일까지)
	4. 26	제13대 국회의원선거(투표율 75.8%)
	6. 27	국회, 양대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7. 15	제7대 윤일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퇴임
	7. 27	제8대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취임
	9. 17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막
	11. 23	전두환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발표 후 백담사 은둔
	1989	1. 17
3. 27		강원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일 공고(4월 14일)
4. 12		정부,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유보 발표
4. 14		동해시국회의원 재선거 실시
7. 31		서울 영등포구를 국회의원재선거일 공고(8월 18일)
8. 18		서울 영등포구를 국회의원재선거
10. 13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동해시·영등포구를 국회의원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규제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표명
10. 24		제8대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퇴임
10. 30		제9대 윤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취임
12. 15		여야 4당 대표, 5공 청산 11개항에 합의
1990	1. 22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 통합선언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90	2. 9	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신설합당(2월 15일 정당등록)	
	3. 16	대구 서구갑 및 충북진천 · 음성군 국회의원보궐선거일 공고(4월 3일)	
	4. 3	대구 서구갑 및 충북진천 · 음성군 국회의원보궐선거	
	5. 9	민주자유당 전당대회, 당 총재에 노태우 대통령, 대표위원에 김영삼 · 김종필 · 박태준 의원 선출	
	6. 15	민주당 창당대회(당 총재 이기택, 6월 18일 정당등록)	
	10. 22	전남 영광 · 함평군 국회의원보궐선거일 공고(11월 9일)	
	10. 25	민주자유당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파문	
	11. 9	영광 · 함평군 국회의원보궐선거	
	12. 31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공포	
	1991	2. 3	민주당, 재야민주연합 측과 통합(총재 이기택)
		2. 18	검찰, 수서지구 택지 특혜공급사건 수사결과 발표
		3. 5	노태우 대통령, 지방의회의원선거 분리 실시에 대한 대국민 담화
3. 8		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일 공고(3월 26일)	
3. 26		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투표율 55.0%)	
4. 9		평화민주당 · 신민주연합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통합,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변경	
4. 15		260개 시 · 군 · 구 기초의회 개원	
4. 26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 시위 중 경찰의 집단구타로 사망	
6. 1		시 · 도의회의원선거일 공고(6월 20일)	
6. 20		시 · 도의회의원선거 실시(투표율 59.9%)	
7. 8		전국 15개 시 · 도의회 개원	
9. 10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신설합당, 김대중 · 이기택 공동대표 선임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92	1. 8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역대 정권에 정치자금 제공사실 공개 및 정계 진출 선언
	1. 10	노태우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내각제 개헌논의 중단 등 입장 표명
	2. 8	통일국민당 창당, 대표최고위원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추대(2. 10 정당등록)
	2. 25	신정치개혁당 창당대회, 대표최고위원에 박찬중 의원 선출(3. 4 정당등록)
	3. 7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일(3월 24일) 공고
	3. 13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법 정당연설회 및 소형인쇄물 관련조항 조건부 위헌 결정
	3. 17	대학생 선거브로커 조직 '두잇이벤트' 수사, 한맥청년회 선거운동 동원 논란
	3. 21	안기부 직원 4명, 야당 후보 비방 흑색선전물 배포 중 경찰에 검거됨
	3. 22	육군 제9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 군 부재자투표의 선거부정 폭로
	3. 24	제14대 국회의원선거(투표율 71.9%)
	5. 15	통일국민당 임시 전당대회, 정주영 대표최고위원 제14대 대통령후보로 선출
	5. 19	민주자유당, 대통령후보에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선출
	5. 26	민주당, 대통령후보에 김대중 공동대표 선출
	6. 9	신정당 임시전당대회, 대통령후보에 박찬중 대표최고위원 선출
	8. 31	한준수 전 연기군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관권개입 관련 양심선언
	9. 3	새정치국민연합 결성대회 개최(대표위원 이종찬)
	9. 18	노태우 대통령 민주자유당 탈당
	10. 6	국가안전기획부, 조선노동당 사건 발표
	10. 9	정부 개각 단행, 선거관리 중립내각 출범(국무총리에 현승중 한림대 총장)
	11. 17	새한국당 창당, 대선후보에 이종찬 의원 선출
	11. 20	제14대 대통령선거일(12월 18일) 공고
	12. 5	군 부재자투표 실시(12월 14일까지 10일간)
	12. 14	통일국민당과 새한국당 합당선언 / 새한국당 이종찬 후보 사퇴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92	12. 15	통일국민당 기자회견, 부산 초원복집 사건 폭로
	12. 18	제14대 대통령선거(투표율 81.9%,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당선)
	12. 19	김대중 전 민주당 공동대표 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 선언
1993	1. 4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동
	2. 9	정주영 통일국민당 대표, 대표최고위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 의사발표
	2. 25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6. 참고문헌

1. 정기간행물

- 국가기관발행 : 경찰청 『경찰백서』, 국회사무처 『국회공보』, 『국회보』, 대검찰청 『검찰연감』, 법무부 『법무연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정당의 활동 및 활동개황보고』
- 연감류 : 『동아연감』, 『연합연감』
- 일간신문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 기 타 : 『뉴스+』, 『시사저널』, 『신동아』, 『오피저버』, 『월간말지』, 『월간조선』, 『월간중앙』, 『자치행정』, 『저널리즘』, 『경제와 사회』, 『동향과 전망』, 『사상』, 『신문로』, 『역사비평』, 『정책논단』, 『한국정치학회보』

2. 각 기관과 단체 등의 편찬자료

-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1996, 『제15대 총선보고서』
- 국민신당, 1997, 『국민신당 정책공약집』
- 국사편찬위원회, 2008, 『대한민국연표(1968.1~1987.12.1)』
- 국회사무처
 - 1998, 『국회개원 50년』
 - 『국회본회의회의록』
 - 1996, 『국회사(제11대)』
 - 2005, 『국회사(제12대)』

- 2006, 『국회사(제13대)』
- 2006, 『국회사(제14대)』
- 2007, 『국회사(제15대)』
- 대검찰청
 - 1995, 『95 4대지방선거 선거사범백서』
 - 199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벌칙해설』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보고서』
- 문화방송, 1999, 『1퍼센트의 승부』
- 민주당정책위원회, 1995, 『6.27 4대 지방선거지역공약개발모형』
- 민주자유당, 1995, 『95지방선거 당선길잡이』
- 민주쟁취국민운동중앙선거감시본부, 1988, 『12.16부정선거백서 I』
- 법무부, 1988, 『법무부사』
- 새정치국민회의 · 자민련, 1997, 『21세기로 가는 길』
-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1998, 『97 15대 대통령선거보도감시백서』
-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보도분석』
- 세종연구소, 1996, 『제15대 총선분석』
- 자유민주연합정책위원회, 1995, 『6.27 지방선거공약 "작은 약속 큰 실천"』
- 조선일보
 - 1988, 『제13대 대통령선거자료집』
 -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자료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982, 『1980.10.22 시행 국민투표투표구별상황』
 - 1983, 『각종선거 및 국민투표 등 결과통계분석』
 - 1991, 『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 선거소청결정문집』
 - 1991, 『구시군의회의원선거총람』
 - 1988, 『국민투표총람(1987. 10. 27)』
 - 1983, 『국회의원선거법 변천상황』

- 1989, 『국회의원선거관결집 : 제10대~제13대』
- 2002, 『선거관계관례집』
- 1994, 『선거관리위원회사(1963~1993)』
- 1996, 『선거법연혁집』
- 2007, 『선거소송판결문집(II)』
- 1991, 『시·도의회의원선거 선거소청결정문집』
- 1991, 『시도의회의원선거총람』
- 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 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 1988, 『정당의 선거공약』
- 1981, 『제1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후보자득표상황』
- 1985, 『제12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1985, 『제12대 대통령선거총람』
- 1988, 『제13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1988, 『제13대 대통령선거총람』
- 1992,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 1993, 『제14대 대선투표율분석』
-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 1992, 『제14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총람』
-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
-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 조사』
-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율분석』
-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 조사』
-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총람』
-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분석』

-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 조사』
-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소청결정문집』
-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 1992,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 투표율분석결과』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6, 『한국인의 투표행동(95 지방선거 중심으로)』
- 한국언론연구원, 1995, 『선거와 미디어(6.27 지방자치제선거보도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지방의회의원선거분석을 위한 연구』
- 한나라당, 1997, 『21세기 선진대국 건설을 위한 실천약속』
- 현대사회연구소, 1991, 『지방의회의원선거 사례연구 I, II』

3. 단행본

- 강우석컨설팅그룹, 1995, 『6·27 4대선거백서』, 정보여행
- 견학필, 1996, 『현대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인간사랑
- 국회저널사, 1996, 『대한민국의정46년(II)』, 국회저널사
- 권영갑, 1995,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한국기자협회
- 권영성, 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광웅, 1990, 『한국의 선거정치학』, 나남
- 김만흠, 1997,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 김명기·박연호 공저, 2008, 『한국정부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김삼웅, 2006,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 김영명, 1992, 『한국현대정치사-정치변동의 역할』, 을유문화사
- 김영철, 1998, 『선거운동전략』, 유정
- 김철수·양승두 외 7인 공저, 1995, 『해설지방자치단체선거법』,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춘식, 2005, 『대통령선거와 정치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출판사업부
- 김현태, 2008, 『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발전 :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오름
- 다홀미디어, 2007, 『한국사연표』, 다홀편집실
- 민준기 · 신명순 · 양성철 · 이정복 · 장달중, 1996, 『한국의 정치』, 나남신서
- 박광주, 2007, 『한국정치 전개와 전망』, 한울 아카데미
- 박기출, 2004, 『한국정치사』, 새한학회
- 박세길, 1992,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들베개
- 박이석 · 조훈 · 이영춘, 2007, 『정치관계법』, 새롭
- 박철언, 2005,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 1, 2』, 랜덤하우스중앙
- 백선기, 1997, 『한국선거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사진문화, 1995,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의정사』, 사진문화
- 서중석, 2006,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 손영호, 2006, 『역사의 이해』, 학지사
- 손호철, 2003,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역사 1945~2003』, 사회평론
- 송근원 · 정봉성, 2005, 『선거와 이슈전략』, 신지사서원
- 송찬섭 · 김남윤 · 윤대원 공저, 2007, 『한국사의 이해』,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심재철, 1995, 『제14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약집』, 문예당
- 오명호, 1999,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름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 이병도, 1995, 『6공화국은 한번은 죽어야 한다』, 가교
- 이은국, 2008, 『한국의 선거와 경제』, 나남
- 이은진 · 김석준 외, 1992,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 사회문화연구소
- 이정복, 1997, 『한국의 정치적 과제』, 서울대학교
- 임현진 · 송호근 공편, 1995,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사회비평사
- 정대수 · 김벽옥 · 백선기 · 류한호 공저, 1995, 『선거와 홍보전략』, 한울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 지병문 · 김용철 · 천성권, 2001, 『현대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 박영사
- 최창호, 1993, 『지방자치제토론』, 삼영사
- 추부길,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백서』, 모스트커뮤니케이션
- 한국정치학회 편, 1996, 『한국현대정치사』, 법문사
- 한기찬 · 임종훈 · 임인규 · 조성욱, 2000, 『선거법바로알기』, 나라아이넷
- 한만봉, 2007, 『국회의원학』, 한국학술정보
- 한배호, 2008, 『자유를 향한 20세기 한국정치사』, 일조각
- 함정훈, 1997, 『대통령선거취재와보도』, 한국언론연구원
-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보고서』

4. 논문 및 기고문

- 강명세, 1998, “여야의 균열구조와 한국정당체제의 역사적 변화 1948-1996”, 『국가전략』 4권 2호
- 강영석, 2000,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 강원택, 1992, “게임이론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27호
- 권오남, 1994, “대한민국정당변천에 관한 고찰”, 『선거관리』 제40호
- 김경아, 1996, “4.11총선 투표자조사 오류 원인분석”, 『연구논집』 제31집
- 김기대, 1997, “15대 대선의 황금분할구도하의 지지도 변동과 함의”, 『지방자치』 33호
- 김선종, 1995, “선거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정책포럼』 1995 가을호
- 김용학 · 김익기 · 서주성 · 이경용 공저, 1998, “1997년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의 신뢰도 분석”, 『사회비평』 제18권
- 김용호, 1992, “선거와 정치불신”, 『사회비평』 1992년 7호
- 김유남, 2000, “한국대통령선거의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 김정우, 2003, “한국의 지방선거와 지방정치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 김정택, 1992, “정치사회화 모델에 입각한 한국인의 투표행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종래, 1997, “여권의 대선전략”, 『사상』 여름호

- 김지연, 1995, “서울시민의 투표행태에 대한 경험적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 김형기, 1995, “6.27 선거와 진정한 개혁”, 『신문로포럼』7월
- 김호열, 1995, “통합선거법의 올바른 이해”, 『계간 다리』1995 겨울호
- 문용직,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분석과 전망”, 『의정연구』2권 1호
- 문용직, 1997,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효과”, 『한국과 국제정치』1997년 가을 겨울
- 박찬욱, 1997, “한국인의 투표성향” 『계간 사상』1997년 여름호
- 박찬욱 · 김형준 공저,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배재연, 1998, “역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제4집 3호
- 백종국, 1992, “금권과 복지의 기로에 선 한국정치”, 『읍저버』8월호
- 서기준, 1998, “한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선거과제”, 조선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 성낙인, 1995, “통합선거법의 정립을 위한 실천적 과제”, 『법과 사회』1995년 하반기
- 손혁재
 - 1996, “4.11총선과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경제와 사회』여름호
 - 1997, “공명선거 뿌리내려야 한다”, 『수사연구』166호
- 송근원
 - 1996, “4.11총선의 평가와 문제점”, 『국회보』1996년 5월호
 - 1993, “대통령선거 아젠다분석: 제14대 대통령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28집 1호
- 심지연 · 김민전 공저
 - 2001,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평가”, 『한국정치학회보』제35집
 - 2002,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제36집 1호
- 안광식, 1994, “한국언론이 대통령선거때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제64집
- 안병만 · 김인철 · 서진완 공저, 1995, “6.27 지방선거에 나타난 유권자의 자치정향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보』1995년 제4호
- 양재인

-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분석”, 『연구원논집』 제3집(경남대학교)
- 2001, “한국의 선거와 투표행태 : 지역주의가 표출된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4집
- 원성연, 1995, “컴퓨터선거운동론”, 『계간 다리』 1995년 겨울
- 윤용희, 1992, “선거비용규제의 현실화와 선거공영제 확충방안”, 『선거관리』 제38호
- 윤천주, 1997,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참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발전”, 『학술원논문집』 1997
- 이기선, 2004, “1990년대 이후 한국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내영, 1996, “제15대 총선과 한국정치의 진로”, 『경제와 사회』 여름호
- 이달곤, 1995, “역대지방선거의 반성과 6.27지방선거의 과제”, 『사회과학논총』 제14집
- 이도성, 1997, “97 대선 레이스와 야권전략”, 『사상』 여름호
- 이영기, 2000, “정치적 선거비용과 한국경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0권 제1호(한독사회과학회)
- 이정희, 1996, “선거문화와 선거제도 문제”, 『경제정의』 1996년 30호
- 이충천, 1995, “한국유권자의 인물지향적 투표행태분석”, 『동서연구』 제7권
- 임명재, 1997, “달라진 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해설”, 『수사연구』 166호
- 정대화, 1996, “4.19 정신으로 본 4.11총선”, 『신문로포럼』 제32호
- 정만희, 2000, “선거비용제한과 선거공영제”,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1권(한국공법학회)
- 정봉성, 2004, “사건 및 이슈가 대통령후보 지지율의 변화에 미친 영향”, 경상대학교대학원
- 정상호, 1998, “제15대 대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동향과 전망』 통권 제37호
- 정영우, 1994, “선거전략 구상과 이행의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부산여자전문대학
- 정영태, 1998, “15대 대선, 김대중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제37권
- 정윤재, 1997, “부패정치와 선거공영제”, 『신문로』 45호
- 정진민, 1992,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26집 1호
- 정진민 · 황아란 공저, 1999,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 정해구, 1992,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맞선 라이벌 : 1987년 대선과 1노 3김”, 『역사비평』 여름호
- 조병량,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 정치광고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 조연현, 1997, “제15대 대통령선거와 DJP지역연합”, 『동향과 전망』 제33호

- 조중빈, 1995, “한국민주화와 선거제도”, 『의정연구』1995년 1호
- 최기재, 2003,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최태복, 1994, “한국의 선거운동 양태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한수, 1996, “선거법과 선거구도로 본 4·11총선의 구도”, 『정책논단』2월호
- 한일남, 2000, “한국선거비용규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정일, 1997,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총선거의 비교연구”, 『사회과학논총』제2집
- 황근, 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평가”, 『동향과 전망』1998년 봄호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호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유영렬	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중빈	국민대학교 교수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심지연	경남대학교 교수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병도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김현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간사장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간사장(전)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간사장(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간 사	이계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장
간 사(전)	서재영	선거연수원 교수
서 기	이영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편찬실무단

집필진

이영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김성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사무관)
장성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강창길(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송권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행정주사)
심현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행정주사)
김성욱(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김영준(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장형순(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보)
오경화(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영철(전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강재수(전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교열

임좌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병우(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박정기(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조 훈(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창희(전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大韓民國選舉史 第5輯

인 쇄	2009년 12월 1일
발 행	2009년 12월 10일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길 30 (중앙동 2-3) 전화 02-503-0863 팩스 02-503-0864 http://www.nec.go.kr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2264-5298
